맑 스

자 본 론

제 2 권

전 세계 무산자는 련합하라!

맑 스

자 본 론

제 2 권

중국민족어문번역센터 중역

민 족 출 판 사

범 례

1. 본문과 부록중의 문헌은 집필 또는 발표한 시간의 순서대로 배렬했다. 개별적인 경우에 한부의 저작 또는 문헌시리즈의 완전성과 유기적인 련계를 유지하기 위해 배렬순서를 융통성있게 처리했다.

2. 차례와 본문중에 별표 * 가 있는 표제들은 모두 편자가 단것이다.

3. 인용문에 있는 거듭서명표 〈 〉 내의 문자와 문장부호는 맑스 또는 엥겔스가 단것이고 인용문중에 찍힌 방점·은 맑스 또는 엥겔스가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단것이다.

4. 차례와 본문중에 있는 꺾쇠괄호 [ ] 내의 문자는 편자가 첨가한것이다.

5. 편자 주석이라 밝히지 않은 각주는 맑스 또는 엥겔스가 단 원주이다.

차 례

F · 엥겔스. 서문 3-31
F · 엥겔스. 제2판 서문 32-33

제 2 부
자본의 류통과정

제 1 편
자본의 변태와 그 순환

제1장 화폐자본의 순환 37-90
1. 제1단계 G—W 38
2. 제2단계 생산자본의 기능 50
3. 제3단계 W′—G′ 55
4. 총순환 73
제2장 생산자본의 순환 91-123
1. 단순재생산 92
2. 축적과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 111
3. 화폐축적 118
4. 준비금 121
제3장 상품자본의 순환 124-142
제4장 순환과정의 세 공식 143-170
현물경제, 화폐경제 및 신용경제 163

수요와 공급의 일치 165
제5장 류통기간 171-181
제6장 류통비 182-213
1. 순수한 류통비 182
A. 매매기간 182
B. 부기 188
C. 화폐 191
2. 보관비 192
A. 재고형성 일반 193
B. 본래의 상품재고 202
3. 운수비 209

제 2 편
자본의 회전

제7장 회전기간과 회전수 215-220
제8장 고정자본과 류동자본 221-256
1. 형태상의 차이 221
2. 고정자본의 구성부분, 보상, 수리, 축적 237
제9장 선대자본의 총회전. 회전의 순환 257-265
제10장 고정자본과 류동자본에 관한 제 학설.
중농학파와 애담 스미스 266-304
제11장 고정자본과 류동자본에 관한 제 학설.
리카도 305-323
제12장 로동기간 324-337
제13장 생산기간 338-351
제14장 류통기간 352-362
제15장 회전기간이 선대자본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 363-416

1. 로동기간이 류통기간과 같은 경우 ····· 376
2. 로동기간이 류통기간보다 큰 경우 ····· 383
3. 로동기간이 류통기간보다 작은 경우 ····· 390
4. 결론 ····· 395
5. 가격변동의 영향 ····· 404
제16장 가변자본의 회전 ····· 417-452
1. 잉여가치의 년률 ····· 417
2. 개별적가변자본의 회전 ····· 438
3. 사회적으로 본 가변자본의 회전 ····· 444
제17장 잉여가치의 류통 ····· 453-497
1. 단순재생산 ····· 460
2. 축적과 확대재생산 ····· 489

제 3 편
사회적총자본의 재생산과 류통

제18장 서론 ····· 499-510
1. 연구의 대상 ····· 499
2. 화폐자본의 역할 ····· 503
제19장 대상에 관한 이전의 제 서술 ····· 511-558
1. 중농학파 ····· 511
2. 애담 스미스 ····· 515
A. 스미스의 일반적관점 ····· 515
B. 스미스에 의한 교환가치의 v+m으로의 분해 ····· 527
C. 불변자본부분 ····· 531
D. A. 스미스에게 있어서의 자본과 수입 ····· 539
E. 개괄 ····· 549
3. 그후의 경제학자들 ····· 555
제20장 단순재생산 ····· 559-704
1. 문제의 제기 ····· 559

2. 사회적생산의 두 부류 564
3. 두 부류간의 교환: Ⅰ(v+m) 대 Ⅱc 568
4. Ⅱ부류내부에서의 교환. 필요생활수단과 사치품 574
5. 화폐류통에 의한 교환의 매개역할 588
6. Ⅰ부류의 불변자본 603
7. 두 부류의 가변자본과 잉여가치 608
8. 두 부류의 불변자본 613
9. A. 스미스, 슈또르흐 및 램지에 대한 회고 620
10. 자본과 수입: 가변자본과 로임 625
11. 고정자본의 보상 642
A. 마멸가치부분의 화폐형태에서의 보상 648
B. 고정자본의 현물로의 보상 655
C. 결론 669
12. 화폐재료의 재생산 673
13. 데스뛰뜨 드 뜨라씨의 재생산리론 690

제21장 축적과 확대재생산 705-757
1. Ⅰ부류에서의 축적 709
A. 화폐축장 709
B. 추가적불변자본 715
C. 추가적가변자본 723
2. Ⅱ부류에서의 축적 724
3. 공식에 의한 축적의 서술 730
A. 제1례 736
B. 제2례 742
C. 축적에 있어서의 Ⅱc의 교환 751
4. 보충설명 755

주해 761-776

사 진

《자본론》 제2권 독일문 제1판 속표지 ····· 5
맑스의 《자본론》 제2권 원고의 한페지 ····· 69
엥겔스가 편집하고 전서한 《자본론》 제2권
원고의 한페지 ····· 75

맑 스

자 본 론

정 치 경 제 학 비 판

제 2 권

제2부 자본의 류통과정

엥겔스 편집

서 문

《자본론》 제2권[1]을 인쇄에 붙일수 있도록 하며 그것도 한편으로는 련관성이 있으며 될수 있는대로 완결된 저작이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편집자의 저작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저자의 저작으로 되도록 하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대개는 단편으로 되여있는, 초고가 많이 있는것이 이 과업을 어렵게 하였다. 그대로 인쇄에 회부할수 있도록 완전히 정리되여있었던것은 겨우 하나(제4고)뿐이였는데 그나마 대부분은 그후의 원고에 비하면 낡아진것이였다. 재료의 주요부분은 비록 그 대부분이 사실상으로는 완성되여있었지만 문자상으로는 완성되여있지 않았다. 그것은 맑스가 발취를 할 때에 흔히 쓰던 말로 씌여있었다. 그러므로 문체는 소홀히 되여있으며 표현과 어법은 구술식이고 종종 지독하게 해학적이며 술어들이 영어와 프랑스어로 되여있으며 자주 구절 전체가 지어는 몇페지나 영어로 되여있었다. 그것은 저자의 머리속에서 사상이 그때그때 전개되는 그대로 적어둔것이다. 어떤 부분은 자세히 서술되여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것임에도 불구하고 암시하는데 그치고있다. 례증을 위한 사실재료는 수집되여있으나 정리는 고사하고 분류도 거의 되여있지 않다. 장의 마지막에서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려고 서두른 나머지 여기에서 전개를 다 마치지 않았

다는 표시로서 종종 문맥이 닿지 않는 몇개 문구가 있을뿐이다. 끝으로는 유명한 필적인데 이것은 저자자신도 때로는 알아볼수 없었던것이다.

나는 원고를 될수 있는대로 원문 그대로 재현하고 문체에 있어서는 맑스자신도 변경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것만을 변경하고 또 설명을 위한 삽입문이나 련결구들은 그것이 절대로 필요할뿐만아니라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만 삽입하는것으로써 만족하였다. 해석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는 문장은 오히려 원문 그대로 인쇄에 붙이기로 하였다. 내가 수정한것과 삽입한것은 인쇄물로 10페지를 넘지 않으며 그것도 모두 형식적인 성질의것뿐이다.

맑스가 제2권을 위하여 남긴 자필재료를 세여보기만 하여도 그가 자기의 경제학적대발견들을 공포하기전에 얼마나 비할바없는 성실성과 얼마나 엄격한 자기비판으로써 그러한 발견을 최후적으로 완성할 때까지 노력하였는가를 알수 있다. 이 자기비판으로 하여 그는 서술을 새로운 연구에 의하여 부단히 확대되는 자기의 시야에 내용상으로나 형식상으로나 거의 적응시킬수 없었던것이다. 그런데 이 재료는 다음과 같은것으로 이루어지고있다.

우선 1861년 8월부터 1863년 6월까지에 씌여진 23책으로 된 4절판 1,472페지의 원고 《정치경제학비판》이 있다. 이것은 1859년에 베를린에서 발간된, 동일한 표제의 제1분책[2]의 속편이다. 이것은 1～220페지(제1～5책)에서는, 그리고 또 1159～1472페지(제19～23책)에서는 《자본론》 제1권에서 연구된 주제들, 즉 화폐의 자본으로의 전화로부터 그 끝까지를 취급하고있는데 이 주제들에 대한 현존하는 최초의 원고이다. 973～1158페지(제16～18책)에서는 자본과 리윤,

Das Kapital.

Kritik der politischen Oekonomie.

Von

Karl Marx.

Zweiter Band.

Buch II: Der Circulationsprocess des Kapitals.

Herausgegeben von Friedrich Engels.

Das Recht der Übersetzung ist vorbehalten.

Hamburg
Verlag von Otto Meissner.
1885.

《자본론》 제2권 독일문 제1판 속표지

리윤률, 상인자본과 화폐자본 즉 나중에 제3권의 원고에서 전개되고있는 주제들을 취급하고있다. 그러나 제2권에서 취급된 주제들과 나중에 제3권에서 취급된 극히 많은 주제들은 여기에서는 아직 특별히 정리되여있지는 않다. 이러한 주제들은 특히 원고의 주체를 이루고있는 편, 즉 220~972페지(제6~15책)의 《잉여가치에 관한 제 학설》에서 부대적으로 취급되고있다. 이 편은 정치경제학의 핵심인 잉여가치학설의 상세한 비판적인 력사를 포함하고있으며 또 그밖에 나중에 제2권과 제3권의 원고에서 특별히 그리고 론리적련관속에서 연구된 대부분의 점들을 선인들에 대한 론전적대립의 형태로 전개하고있다. 나는 이 원고의 비판적부분을, 제2권과 제3권에서 이미 남김없이 서술된 많은 개소들을 제외하고 《자본론》 제4권으로서 발간하기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였다.[3] 이 원고는 대단히 가치있는것이지만 제2권의 이 판에서는 거의 리용할수 없는것이였다.

날자로 보아 이에 계속되는 원고는 제3권의 원고이다. 그것은 적어도 대부분이 1864년과 1865년에 씌여진것이다. 이것을 대체적으로 완성한 다음에야 맑스는 비로소 제1권, 즉 1867년에 간행된 제1권의 추고에 착수하였다. 이 제3권의 원고를 나는 인쇄에 붙이기 위하여 지금 정리하고있다.

그다음시기—제1권 간행후—의것으로는 제2권을 위하여 2절판의 원고 4개를 모은것이 있는데 맑스자신이 제1부터 제4까지의 번호를 붙이였다. 그중 1865년 또는 1867년에 쓰인것으로 추정되는 제1고(150페지)는 현재의 구분으로는 제2권이 되는 그 최초의 독립적인 그러나 다소간 단편적인 론술이다. 이 원고에도 리용될수 있는것이 없었다. 제3고는 일부분은 인용문들과 맑스의 발취책에 대한 지시들을 모은것

(주로 제2권 제1편에 관한것)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일부분은 개별적인 론점들에 대한 론술, 특히 고정자본과 류동자본에 관한 또 리윤의 원천에 관한 A. 스미스의 명제들에 대한 비판의 론술로써 이루어져있다. 그리고 또 리윤률과 잉여가치률의 관계에 관한 론술도 있는데 이것은 제3권에 속하는것이다. 그 지시들에서 새로 얻은것은 거의 없었으며 제2권이나 제3권에서 사용할 론술들도 그후의 원고들이 더 나았으므로 이것도 대부분은 사용하지 않았다. —제4고는 제2권의 제1편과 제2편의 제1장을 인쇄에 붙일수 있게 추고된 원고여서 해당한 개소에서 리용되였다. 이것은 제2고보다 먼저 씌여진것이 분명하지만 형식이 보다 완전하였으므로 제2권의 해당한 부분들을 위하여 유익하게 리용될수 있었다. 제2고로부터 약간의 보충을 하는것만으로 충분하였다. —이 제2고는 제2권의 원고중 어느 정도까지 완성된 유일한 원고로서 1870년의것이다. 이제 곧 언급하게 되는 최종적수정을 위한 비망록에는 《제2고를 기초로 할것》이라고 명백히 씌여있다.

1870년이후는 다시 하나의 휴지기였는데 그것은 주로 맑스의 병때문이였다. 관례에 따라 맑스는 이 시기를 제반 연구에 바치였다. 농학, 미국의 특히 로씨야의 농촌상태, 화폐시장, 은행업, 끝으로 자연과학 즉 지질학과 생리학 특히 독립적인 수학적연구, 이러한것들이 이 시기의 맑스의 많은 발취책의 내용을 이루고있다. 1877년초에 그는 자기가 본래의 사업에 다시 착수할수 있으리만큼 건강이 회복되였다고 느끼였다. 1877년 3월말에는 제2권의 새 원고의 기초로 된, 상술한 네개의 원고로부터의 지시들과 비망록들을 써냈는데 그 새 원고의 처음부분이 제5고(2절판, 56페지)로 되여있다. 이 제5고는 최초의 4개 장을 포괄하고있는데 아직 거의 완

성되여있지 않다. 몇개의 중요한 점들이 본문아래의 주에서 취급되고있다. 소재는 선별되여있다기보다 수집된대로 있으나 이것은 제1편의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의 최후의 완전한 서술이다. —이것을 가지고 인쇄용 원고를 작성하려는 최초의 시도는 제6고(1877년 10월**이후** 1878년 7월이전)이다. 이것은 제1장의 대부분을 포함하고있으나 4절판으로 17페지뿐이며 제2의—최후의—시도는 《1878년 7월 2일》의 제7고이다. 이것은 2절판으로 7페지뿐이다.

아마도 이 시기에 맑스는 자기의 건강상태에 완전한 혁명이 없이는 자기자신이 만족할만한 제2권과 제3권의 집필을 완성하지 못하게 되리라는것을 똑똑히 느끼고있은것 같다. 사실상 제5~8고는 모진 질병에 대한 무리한 항쟁의 흔적을 너무나 자주 남기였다. 제1편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제5고에서 개작하였다. 제1편의 나머지와 제2편 전체(제17장을 제외하고)는 리론적으로 그리 어려운 점은 없었다. 그와는 반대로 제3편, 즉 사회적자본의 재생산과 류통은 개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그에게 생각되였다. 그것은 제2고에서는 재생산이 처음에는 그것을 매개하는 화폐류통을 고려함이 없이 취급되였는데 그다음에는 이를 고려하면서 다시한번 취급되고있기때문이다. 이것은 제거되여야 할것이였으며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이 편 전체를 저자의 확대된 시야에 상응하도록 개작되여야 할것이였다. 그렇게 되여 나온것이 제8고인데 이것은 4절판으로 불과 70페지의 한책이였다. 그러나 맑스가 이 지면에 얼마만한것을 압축하여 넣을수 있었는가 하는것은 인쇄된 제3편에서, 제2고로부터 삽입한 부분들을 공제한것과 대비하여보면 알수 있을것이다.

이 원고도 대상을 일시적으로 취급한것에 불과하며 이

취급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제2고에 없는 새로 얻은 관점들을 확립하고 전개하는것이였으며, 아무것도 새로 말할것이 없는 점들은 고려되지 않았다. 본래 어느 정도 제3편의 령역에 침입하고있는 제2편 제17장의 중요한 한부분도 다시 취급되여 확대되였다. 론리적련계가 종종 중단되였고 군데군데 론술이 끊어졌으며 특히 마지막부분은 아주 단편적이다. 그러나 맑스가 말하고저 한것은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여기에서 표명되여있다.

이상이 제2권의 재료인데, 맑스가 서거하기 조금전에 자기 딸 엘리너에게 말한바에 의하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유용한것을 만들어내야》 할것이였다. 나는 이 위탁을 그 가장 좁은 한계에서 접수하였다. 어떻게든 가능한 한에서 나는 나의 할바를 각이한 원고들중에서 단순히 선택하는것에 국한하였다. 그리고 언제나 현존하는 원고들중의 최후의것을 이전것들과 비교하면서 기초로 삼았다. 그 경우에 실제적인 곤난, 즉 단순히 기술적인것과는 다른 곤난을 준것은 제1편과 제3편뿐이였는데 그러나 이것은 작은 곤난이 아니였다. 나는 이러한 곤난을 전적으로 저자의 정신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본권에 나오는 인용문은 사실을 립증하는 경우나 또는 A. 스미스로부터의 인용문에 있어서와 같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규명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문을 입수할수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내가 번역하였다. 다만 제10장에서는 그렇게 할수 없었다. 왜냐 하면 여기에서는 직접 영어원문이 비판되고있기때문이다. —제1권으로부터의 인용문에는 맑스 생전의 최종판인 제2판의 페지수를 적어넣었다.

제3권을 위하여서는 《정치경제학비판》의 원고중 최초에 쓴것과 제3고중 상술한 부분들과 또 발취책에 이따금 씌

여있는 짤막한 약간의 비망록외에는 다만 제2권의 제2고와 거의 같은 정도로 완전히 작성된 상술한 1864~1865년의 2절판원고와 끝으로 수학적으로(방정식으로) 전개된 리윤률에 대한 잉여가치률의 관계라는 1875년의 한책이 있을뿐이다. 이 제3권을 인쇄에 붙이기 위한 준비사업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내가 지금까지 판단할수 있는 한에서는 물론 극히 중요한 약간의 편들을 례외로 하고는 주로 다만 기술적곤난이 있을뿐일것이다.

여기에서 맑스에 대한 하나의 비난을 론박하려고 한다. 이 비난은 처음에는 낮은 소리로 이따금 소근거릴뿐이였는데 맑스가 사망한 오늘날에는 독일강단사회주의자—국가사회주의자[4] 또는 그 아류들에 의하여 기성사실처럼 불어대는것—맑스가 로드베르투스를 표절하였다는것이다. 나는 이미 다른 개소에서 이에 관한 가장 긴급한것은 말한바 있으나(1) 여기에서 비로소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을수 있다.

이 비난은 내가 아는 한에서는 R. 마이에르의 《제4신분의 해방투쟁》 43페지중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던것이다.

《이 출판물〈30년대 후반기까지 소급하는 로드베르투스의 출판물〉로부터 맑스가 자기의 비판의 대부분을 흡취하였다는것을 **립증할수 있는것이다.**》

나는 그 이상의 립증이 없는 한 이 주장의 모든 《립증가능성》은 로드베르투스가 마이에르씨에게 이것을 확언한데 있다고 인정해도 좋을것이다. —1879년에는 로드베르투스자

---

(1) 칼 맑스《철학의 빈곤, 쁘루동씨의 빈곤의 철학에 대한 대답》(E. 베른슈타인과 K. 카우츠키의 공동번역, 독일어, 1885년 슈투트가르트판)의 서문에서.[5]

신이 등장하여[6] 자기의 저서 《우리 국가경제상태의 인식을 위하여》(1842년)에 관하여 J. 쩰레르에게 보내는 편지(튀빙겐에서 간행된 《종합국가학잡지》, 1879년, 219페지)에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당신은 그것 (우에서 든 저서에서 전개된 사상의 과정) ①이 맑스에 의하여 아주 솜씨있게 … 물론 나의 이름도 들지 않고 리용되고 있는것을 발견하게 될것이다.》

그의 유고의 편집자 Th. 코짜크도 그의 말 그대로 되풀이하고있다. (로드베르투스《자본》, 1884년, 베를린판, 서론, 별페지 15)—끝으로 1881년 R. 마이에르에 의하여 출판된 로드베르투스—야게초우박사의 《서한 및 사회정치론집》[7]중에서 로드베르투스는 로골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이제 쇄플레와 맑스가 나의 이름도 들지 않고 **표절한**것을 알고있다.》(서한 제60호, 134페지)

그리고 다른 개소에서 로드베르투스의 주장은 더욱 명확한 모습을 띠고있다.

《자본가의 **잉여가치**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하는것을 나는 나의 제3사회서한에서 **본질적으로는** 맑스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보다 더 간단명료하게 제시하였다.》(서한 제48호, 111페지)

표절에 대한 이 모든 비난에 관하여 맑스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있었다. 그의 장서인 《해방투쟁》에서 오려져있던 페지는 다만 국제공산당에 관한 부분이였고 그 나머지페지는

---

① 1893년 독일문 제2판에서 사용한 대괄호〔 〕는 본권에서 모두 꺽쇠괄호 ( ) 로 바꾸었다.—편집자

그의 서거후에 비로소 나자신이 오려낸것이다. 튀빙겐의 잡지는 그가 본일이 없었다. R. 마이에르에게 보낸 《서한》도 또한 그는 마지막까지 모르고있었다. 그리고 《표절》에 관한 개소에는 나도 1884년에 비로소 박사 마이에르씨자신의 호의에 의하여 주의를 돌리게 되였다. 그러나 서한 제48호는 맑스도 알고있었다. 그것은 마이에르씨가 친절하게도 원본을 맑스의 막내딸에게 보내주었기때문이였다. 자기의 비판의 비밀의 원천이 로드베르투스에 있다고 쑥덕거리는 약간의 풍문을 물론 듣게 되였던 맑스는 그 서한을 나에게 보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로드베르투스가 자기의것으로서 요구하는것에 대하여 드디여 확실한것을 알았다. 로드베르투스가 그 이상 더 주장하는것이 없다면 자기, 즉 맑스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다. 그리고 로드베르투스가 자기자신의 서술을 보다 간단명료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만족해하도록 내버려 두어도 좋다고. 사실 맑스는 로드베르투스의 이 서한으로써 문제는 전부 처리되였다고 생각하였다.

맑스가 그렇게 생각한것도 무리는 아니였다. 왜냐 하면 내가 확실히 알고있는바에 의하면 그는 자기자신의 경제학비판이 대강에 있어서뿐만아니라 극히 중요한 세목에 있어서도 완성되여있었던 1859년경까지 로드베르투스의 문필활동을 전혀 모르고있었기때문이다. 그는 자기의 경제학적연구를 1843년에 빠리에서 위대한 영국인과 프랑스인의것으로부터 시작하였으며 독일인들중에서는 그는 라우와 리스트밖에 모르고있었으며 또한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맑스나 나나 1848년에 《신라인신문》 지상에서 베를린 선출 의원으로서의 로드베르투스의 연설과 대신으로서의 그의 행동을 비판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을 때[8]까지는 그의 존재에 관하여 한마디도

들어본적이 없었다. 우리는 갑자기 대신이 된 이 로드베르투스란 대체 어떤 인물인가 하고 라인 선출 의원들에게 물어볼 정도로 그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있었다. 그러나 그 의원들도 로드베르투스의 경제학적저술에 관하여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들려줄수가 없었다. 그런데 맑스가 로드베르투스의 도움이 없이도 당시에 이미 어디에서 《자본가의 잉여가치가 발생하는가》 하는데 대해서뿐만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것이 발생하는가 하는것까지도 매우 잘 알고있었다는 사실은 1847년의 《철학의 빈곤》과 1847년에 브류쎌에서 하였으며 1849년에 《신라인신문》 제264~269호에 발표된, 임금로동과 자본에 관한 강연이 증명해주고있다. 맑스는 1859년경에 라쌀에게서 비로소 로드베르투스라는 경제학자가 있다는것을 들었으며 또 그후에 대영박물관에서 로드베르투스의 《제3사회서한》을 발견하였다.

이상이 실제정형이다. 그러면 로드베르투스를 맑스가 《표절》하였다고 말하는 내용은 어떠한것인가? 로드베르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자본가의 잉여가치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하는것을 나는 나의 제3사회서한에서 맑스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보다 간단명료하게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핵심은 잉여가치론이다. 또 사실상 그밖에 로드베르투스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것이라고 맑스에게 항의할수 있는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하여 로드베르투스는 여기에서 자기가 잉여가치론의 실제상의 창시자이며 맑스는 그것을 자기에게서 표절하였다고 선언하고있는것이다.

그러면 제3사회서한은 잉여가치의 발생에 관하여 우리에

게 무엇을 말하고있는가? 다만 다음과 같은것뿐이다. 그가 지대와 리윤을 총괄하여 부르고있는 《임차료》라는것은 상품의 가치에 대한 《가치추가》에서 발생하는것이 아니라

《로임이 당하는 가치공제의 결과로서 발생하는것이며 바꾸어말하면 로임이 생산물가치의 일부분에 불과하기때문에》

그리고 로동의 생산성이 충분한 경우에는 로임이

《로동생산물의 자연적교환가치와 같을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이 자연적교환가치중에는 또한 자본의 보상분(!)과 임차료가 남기때문에》[9]

발생한다는것이다.

이 경우에 《자본보상》을 위하여, 따라서 원료를 위해서도 도구의 마멸의 보상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생산물의 《자연적교환가치》란 무엇인가 하는것은 우리에게 말하여주지 않고있다.

다행히도 우리는 로드베르투스의 이 획기적발견이 맑스에게 어떠한 인상을 주었는가 하는것을 확증할수 있다. 《정치경제학비판》원고[10] 제10책 445페지이하에 《주제에서 벗어남. 로드베르투스씨. 하나의 새로운 지대론》이라는것이 발견된다. 여기에서는 이 관점에서만 제3사회서한이 고찰되고있다. 로드베르투스의 잉여가치론리론에 대하여 맑스는 다음과 같은 말로 풍자하고있다. 《로드베르투스씨는 우선 토지소유와 자본소유가 분리되지 않은 나라에서 사태가 어떠한가를 연구하고 그다음에 임차료(그는 이 말을 잉여가치전체의 의미에서 사용한다.)는 단순히 부지불로동 또는 부지불로동을 표시하는 생산물량과 같다는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고있다.》

자본주의시대의 인간은 이미 수세기동안이나 잉여가치를

생산하여왔으며 또한 점차 잉여가치의 발생에 관하여도 사색하게 되였다. 최초의 견해는 상업의 직접적인 실천에서 나온것이였다. 즉 잉여가치는 생산물의 가치에 대한 첨가에서 발생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중상주의자[11]들사이에서 지배하였으나 이미 제임즈 스튜어트는 그 경우에 일방이 얻는것을 타방이 반드시 잃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간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견해는 그후에도 오래동안 특히 사회주의자들사이에서 출몰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고전파경제학으로부터는 A. 스미스에 의하여 구축되였다.

스미스는 《제 국민의 부》 제1편 제6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자본이 개개인의 수중에 집적되면 그중 일부 사람들은 자연 그것을 리용하여 근면한 사람들을 일시키며 이들에게 원료와 생활수단을 제공하고 이들의 로동생산물의 판매에 의하여 또는 **이들의 로동이 그 원료의 가치에 첨가한것**에 의하여 **리윤**을 얻으려 할것이다. … 로동자들이 **원료에 첨가하는 가치**는 여기서는 **두 부분**으로 나뉘여지며 그중 하나는 **그들의 임금**을 지불하고 다른 하나는 고용주가 선대한 원료와 로임의 총액에 대한 **고용주의 리윤**을 지불한다.》[12]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 나라의 토지가 전부 사유지로 되여버리면 토지소유자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씨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수확을 얻으려고 하며 토지의 천연산물들에 대해서까지도 지대를 요구한다. … 로동자는 … 자기의 **로동**이 채집 또는 생산한것에서 어떤 **몫**을 토지소유자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몫이 또는 같은것이지만 이 몫의 가격이 **지대**를 이룬다.》[13]

이 개소에 관하여 맑스는 상술한 《정치경제학비판》`원

고의 253페지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그러므로 A. 스미스는 잉여가치를, 즉 잉여로동을, 즉 이미 수행되여 상품에 대상화된 로동중 지불된 로동을 **넘는** 초과분을, 즉 그 등가를 임금으로서 받은 로동을 넘는 초과분을 **일반적인 범주**로서 파악하고 본래의 리윤과 지대는 다만 거기에서 갈라진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또 A. 스미스는 제1편 제8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토지가 사유지로 되면 토지소유자는 로동자가 그 토지에서 생산 또는 채집할수 있는 거의 모든 생산물에서 한몫을 요구한다. 그의 지대는 **토지에 사용되는 로동의 생산물**중에서 **첫번째 공제**를 이룬다. 그러나 토지의 경작지가 수확물을 거둘 때까지 생활을 유지할 자금을 가지고있는 일은 드물다. 그의 생활비는 보통 고용주자본에서 선대되는데, 이 고용주 즉 차지농업가는 **로동자의 로동생산물을 로동자와 나누지** 않는다면, 또는 자기의 자본이 리윤과 함께 회수되지 않는다면 로동자를 고용하는데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을것이다. 이 리윤은 토지에 사용되는 로동의 생산물로부터의 **두번째 공제**를 이룬다. 거의 모든 로동의 생산물은 리윤을 위한 이러한 공제를 당한다. 어느 산업부문에서나 대부분의 로동자들은 로동이 끝날 때까지 원료와 로임과 생활비를 선대하여주는 고용주를 필요로 한다. 이 고용주는 **로동자의 로동의 생산물을** 또는 이 로동이 가공되는 원료에 첨가하는 가치를 **로동자들과 나누는데** 이 몫이 그의 리윤을 이룬다.》[14]

이에 대하여 맑스는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원고, 256페지) 《그리하여 여기에서 A. 스미스는 솔직한 말로 지대와 자본리윤을 로동자의 생산물로부터의, 또는 그가 원료에 첨가하는 로동과 같은 그의 생산물가치로부터의 단순한 **공제**이라고 말하고있다. 그러나 이 공제는 A. 스미스자신이 앞에서

설명하고있듯이 로동자의 임금을 지불하는데 불과한 또는 그의 임금의 등가를 제공하는데 불과한 로동량을 초과하여 로동자가 소재에 첨가하는 로동부분으로만—즉 그의 로동의 부지불부분인 잉여로동으로만—이루어질수 있다.》

따라서 A. 스미스는 이미 《자본가의 잉여가치는》 또 그 외에 토지소유자의 잉여가치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를 알고있었다. 맑스는 이 사실을 이미 1861년에 솔직하게 인정하고있는데 로드베르투스와 국가사회주의라는 따스한 여름비를 받아서 우후죽순처럼 자라난 그의 숭배자들의 무리는 아마도 그것을 깨끗이 잊어버리고있었던것 같다.

맑스는 계속하여 말한다. 《그렇지만 스미스는 잉여가치 그 자체를 그것이 리윤과 지대로서 취하는 특수한 형태들로부터 독특한 범주로서 구별하지는 않았다. 그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리카도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지만—연구상의 많은 오유와 결함이 생긴것이다.》[15] 이 문장은 한마디한마디 그대로 로드베르투스에게 들어맞는다. 그의 《임차료》란 지대 플루스 리윤의 합계에 불과하다. 그는 지대에 관하여는 전혀 그릇된 리론을 만들었으며, 리윤에 관하여는 선인들이 말한 것을 음미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있다. —이와는 반대로 맑스가 말하는 잉여가치는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등가없이 취득하는 가치총액의 **일반적형태**이며 이 형태가 맑스에 의하여 처음으로 발견된, 완전히 독특한 법칙들에 따라 리윤과 지대라는 특수한, **전화된** 형태들로 나뉘여진다. 이 법칙들은 제3권에서 전개되는데 거기서 비로소 잉여가치일반의 리해로부터 리윤과 지대로의 잉여가치의 전화의 리해에, 즉 자본가계급내부에서의 잉여가치의 분배의 법칙들의 리해에 도달하기 위하여서는 얼마나 많은 중간항들이 필요한가 하는것

이 분명히 될것이다.

리카도는 이미 A. 스미스보다 퍽 앞으로 나가고있다. 그는 자기의 잉여가치관을, A. 스미스에게서 이미 맹아로서 나타났으나 론술에서는 거의 언제나 망각되고있는 새로운 가치론우에 세우고있으며 이 가치론은 그후의 전체 경제학의 출발점으로 되고있다. 그는 상품에 실현된 로동량에 의한 상품가치의 규정으로부터 로동에 의하여 원료에 첨가되는 가치량의 로동자와 자본가에로의 분배를 도출하고 로임과 리윤(즉 여기에서는 잉여가치)으로의 그 분렬을 도출하고있다. 그는 이 두 부분간의 비률이 어떻게 변동하더라도 상품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것을 지적하고있는데 이 법칙에 대하여서는 개별적인 례외들만 인정한다. 그뿐만아니라 그는 너무나 일반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로임과 잉여가치(리윤의 형태로 파악되고있는)의 호상관계에 관한 약간의 주요한 법칙들을 확립하고있으며(맑스 《자본론》 제1권 제15장 A[16]) 또 지대는 일정한 사정하에서 리윤을 넘어서 얻는 초과분이라는것을 지적하고있다. —이상의 어떤 점에서도 로드베르투스는 리카도를 넘어서지 못하고있다. 리카도학파를 파멸시킨 리카도학설의 내적모순들은 로드베르투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를 미혹시켜 여러가지 유토피아적요구를 내놓게 하였을뿐(《인식을 위하여》, 130페지) 경제학적 해결에는 이끌지 못하였다.

그러나 가치와 잉여가치에 관한 리카도의 학설이 사회주의적으로 리용되기 위하여서는 로드베르투스의 《인식을 위하여》를 기다릴 필요는 없었다. 《자본론》 제1권(제2판), 609페지[17]에는 《국민적고난의 근원과 구제책. 죤 라슬경에게 보내는 서한》(1821년 런던판)이라는 한 저서로부터

《잉여생산물 또는 자본의 소유자》라는 구절이 인용되여있다. 이 저서는 잉여생산물 또는 자본이라는 표현에서도 이미 그 의의에 주목을 돌려야 할것이며 맑스 덕분에 소실을 면한 40페지의 소책자인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자본가에게 돌아가는것이 얼마나 되든간에 (자본가의 립장에서는) 자본가는 언제나 로동자의 잉여로동을 취득할수 있을뿐이다. 왜냐하면 로동자는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이다.》(23페지)

그러나 로동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따라서 자본가가 취득하는 잉여로동이 얼마나 될수 있는가 하는것은 극히 상대적이다.

《만약 자본의 량이 증가하는데 비례하여 그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다면 자본가는 로동자가 살아갈수 있는 최저한을 넘는 매 로동시간의 생산물을 로동자에게서 착취할것이다. … 자본가는 결국 로동자에게 너는 빵을 먹어서는 안된다, 사람은 사탕무우와 감자를 먹고 살수 있으니까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다.》(23, 24페지)《만약 로동자가 빵 대신에 감자를 먹고 살아가게 할수 있다면 그의 로동으로부터 더 많이 짜낼수가 있다는것은 다를 여지 없이 옳은 말이다. 즉 로동자가 빵을 먹고 살기 위하여서는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존을 위하여 **월요일과 화요일의 로동을** 자기것으로 **보유할** 필요가 있었다면 감자로 사는 경우에는 **월요일의 절반**만 자기것으로 보유하게 될것이다. 그리하여 월요일의 나머지 절반과 화요일 전부는 국가에 대한 봉사를 위하여서나 **자본가를 위하여 유리된다.**》(26페지)《자본가에게 지불되는 리자는 그 형태가 지대이건 화폐리자이건 기업리윤이건간에 타인의 로동으로부터 지불된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것이다.》(23페지)

그리하여 여기에서 말하는것은 로드베르투스의 《임차료》라는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것인데 다만 《임차료》라

고 하지 않고 《리자》라고 말하고있을뿐이다.

이에 대하여 맑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정치경제학비판》 원고, 852페지) 《거의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 소책자는 〈믿어지지 않은 구두쟁이〉 매칼러크[18]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기 시작하던 때에 나타난것인데 이것은 리카도에 비하여 중요한 진보를 포함하고있다. 이 소책자는 잉여가치 또는 리카도가 말하는 〈리윤〉(종종 잉여생산물이라고도 부르고있다.) 또는 이 소책자의 필자가 말하는 리자를 직접 surplus labour (잉여로동) 이라고 부르고있다. 즉 로동자가 무상으로 수행하는 로동이며 로동자가 자기의 로동력의 가치를 보상하고 자기의 임금의 등가를 생산하는 로동량을 넘어서 수행하는 로동이다. **가치를 로동으로** 환원하는것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잉여생산물**로 표시되는 잉여가치를 **잉여로동**으로 환원하는것도 중요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A. **스미스가 이미 말한것이고 또 리카도의 전개에 있어서 하나의 주요계기를 이루고있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에 의하여서는 어디서도 절대적인 형태로 언명도 확립도 되여있지 않다.》 그 다음에 또 원고 859페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그밖에 이 저자는 자기앞에 있는 경제학적범주들에 사로잡혀있다. 리카도에게 있어서 잉여가치와 리윤의 혼동이 불쾌한 모순에 이르게 한것과 마찬가지로 이 저자에게 있어서도 잉여가치를 자본리자라고 명명한것이 불쾌한 모순에 이르게 하였다. 확실히 그가 리카도보다 우월한 점은 그가 첫째로 모든 잉여가치를 잉여로동으로 환원하였다는것이며 또 다음에는 잉여가치를 자본리자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동시에 자본리자를 잉여로동의 일반적형태로 리해하고 그 특수한 형태들인 지대, 화폐리자, 기업리윤과 구별할것을 강조하고있다는것이

다. 그러나 그는 이 특수한 형태들의 하나의 명칭인 〈리자〉를 다시 일반적인 형태의 명칭으로 채용하고있다. 그리하여 이것만으로도 그가 다시 경제학적인 횡설수설(원고에는 "Slang"라고 되여있다.)에 되돌아가는데 충분하다.》

이 최후의 구절은 우리의 로드베르투스에게 그대로 들어맞는다. 그도 또한 자기앞에 있는 경제학적범주들에 사로잡혀있다. 그도 또한 잉여가치를 그 전화된 아종형태들의 하나의 명칭으로 부르며 게다가 그것을 아주 불명확한것으로 되게 한다. 즉 임차료라는 명칭이 그것이다. 이 두 잘못의 결과로 그는 경제학적인 횡설수설에 되돌아가고있으며, 리카도를 초월한 진보를 그이상 비판적으로 추진시키지 못하고 도리여 그릇되게도 자기의 미숙한 리론이 아직도 알을 깨고나오기도 전에 그것을 유토피아의 기초로 만들고있는데 이 유토피아도 언제나 그렇듯이 너무나 뒤늦었던것이다. 우에서 말한 소책자는 1821년에 나타난것인데 로드베르투스의 1842년의 《임차료》보다 이미 훨씬 앞섰던것이다.

이 소책자는 20년대에 리카도의 가치리론 및 잉여가치리론의 예봉을 무산계급을 위하여 자본주의적생산을 반대하는데 돌렸으며 자산계급자신의 무기로써 자산계급을 공격하는 일련의 문헌의 최선단의 전초에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오엔의 공산주의[19]도 경제학론전에 등장하는 한에서는 그 전체가 리카도에 의거하고있다. 그러나 리카도외에도 매우 많은 저술가들이 있는데 맑스는 이미 1847년에 그중에서 에드먼즈, 톰프슨, 호지스킨 등등의 몇명만을 쁘루동을 반대하여(《철학의 빈곤》, 49페지[20]) 인용하고있으며 《그리고 또 4페지분의 많은 사람들》을 들수 있다고 말하고있다. 이 무수한 저술중에서 닥치는대로 하나만을 들어보면 윌리엄 톰프슨의 《인류의 행

복을 제일 촉진하는 부의 분배원리의 연구》(1850년, 런던, 신판)이 있다. 1822년에 집필된 이 저술은 1824년에 처음 발간되였다. 이 저서에서도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계급들에 의하여 취득되는 부는 어디서나 로동자의 생산물로부터의 공제라고 지적되여있으며 그것도 상당히 강한 표현으로 되여있다.

《우리가 사회라고 부르는 그것의 부단한 노력은 기만이나 설득, 협박이나 강제로써 생산적로동자를 움직이며 그들자신의 로동생산물의 될수록 적은 부분을 보상으로 로동을 시킨다는데 있다.》(28페지) 《왜 로동자는 자기 로동의 생산물의 무제한한 전체를 받아서는 안되는가?》(32페지) 《이 자본가가 생산적로동자에게서 지대 또는 리윤의 명의로 강요하는 보상은 토지나 기타의 대상의 사용료로서 요구되는것이다. … 자기의 생산능력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있지 않는 무산생산로동자가 자기의 이 생산능력을 발휘할수 있는 재료나 수단으로 되는 모든 자연적소재는 모두 타인의 소유물이며 이러한 타인의 리해는 그의 리해와 대립하며 또 이러한 타인의 동의는 그의 활동의 하나의 전제조건이므로 **로동자 자신의 로동의 열매**중에서 얼마만큼한 **부분**을 이 로동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에게 주려 하는가 하는것은 이 자본가가 베푸는 자비에 달린것이 아닌가 또 달리지 않을수 없지 않은가?》(125페지) …《**보류되는 생산물**이 조세라고 불리우든 리윤이라고 불리우든 또는 장물이라고 불리우든간에 그 크기에 비례하여 … 이러한 공제된 장물》(126페지) 운운.

나는 이 몇줄의 글을 쓰면서 어느 정도 부끄러움을 금치 못한다는것을 고백한다. 20년대와 30년대의 영국의 반자본주의적문헌들에 대하여서는 이미 맑스가 《철학의 빈곤》에서 직접 그것을 지적하였으며 또 그중 몇개 문헌들—1821년의 소책자, 레이븐스턴, 호지스킨 등등—은 《자본론》 제1권에서 여러번 인용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헌들이 독일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있다는것은 그래도 참을만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배운바가 없으며》 절망속에서 로드

베르투스의 소매에 매달리는 속류저술가①뿐만아니라 《학식을 뽐내는》 당당한 학직을 가진 교수②까지도 자기의 고전파 경제학을 잊고 이미 A. 스미스나 리카도의 저서에까지 씌여있는것을 맑스가 로드베르투스에게서 표절하였다고 정색하고 그를 비난하게 된데 이르러서는 오늘날 공인경제학이 얼마나 심히 타락하였는가를 보여주는것이다.

그렇다면 맑스가 잉여가치에 관하여 새로 말한것은 무엇인가? 로드베르투스를 포함한 맑스이전의 모든 사회주의자들의 학설은 효과없이 사라지고말았는데 맑스의 잉여가치학설은 청천벽력과 같이, 그것도 모든 문명국에 진동을 준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화학의 력사는 이것을 한 실례로써 우리에게 보여준다.

다 아는바와 같이 전세기말에는 아직도 연소설이 지배하였는데 이 설에 의하면 모든 연소의 본질은 연소체로부터 다른 가설적물체, 즉 연소라는 명칭을 가진 절대적가연물질이 분리하는데 있다는것이다. 이 설은 때로는 무리한 적용이 없지 않았지만 당시에 알려진 대다수의 화학적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런데 1774년에 프리스틀리는 일종의 기체를 석출하였는데

《그것에 비하면 보통의 공기도 불순한것으로 보이였을만큼 그것이 순수한것을, 즉 연소를 포함하지 않은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이것을 탈연소기체라 불렀다. 그후 얼마 안가서 스웨리예의 쉘레도 동종의 기체를 석출하고 그것이 대기속에 존재한다는것을 증명하였다. 그는 또 이 기체는 그속에서나

---

① R. 마이에르를 가리킨다.—편집자
② A. 와그네르를 가리킨다.—편집자

또는 보통의 공기속에서 물체를 연소시키면 그 기체가 없어진다는것을 발견하고 그때문에 그 기체를 화기체라고 불렀다.

《그리하여 이러한 결과로부터 그가 끌어낸 결론은 연소가 공기의 한 성분과 결합할 때(즉 연소가 진행될 때) 생기는 화합물은 불이나 열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며 그것이 유리를 통과하여 빠져나간다는것이였다.》(2)

프리스틀리나 쉘레는 산소를 석출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수중에 있는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 그들은 《그들의 앞에 있는》 연소설의 《범주들에 의연히 사로잡혀있었다.》 연소설적관념전체를 뒤엎고 화학에 변혁을 일으켰어야 하였던 원소도 그들의 수중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말았다. 그러나 프리스틀리는 자기의 발견을 즉시로 빠리에서 라봐지에에게 알렸으며 그리하여 라봐지에는 이 새로운 사실에 근거하여 전체 연소화학을 연구하였으며 그리하여 비로소 이 새로운 기체는 새로운 원소라는것과 연소에 있어서 신비로운 연소가 연소체로부터 **나가버리는**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원소가 연소체와 **화합한다**는것을 발견하였으며 이리하여 연소설 형태로서 머리로 서있었던 전체 화학을 비로소 다리로 서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가 나중에 주장하듯이 다른 두사람과 동시에 또 그들과 관계없이 산소를 석출한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는 다른 두사람과는 달리 산소의 진짜 **발견**자였으며 다른 두사람은 산소를 **석출**하였을뿐이고 자기들이 **무엇**을 석출하였는지는 알지 못하였다.

라봐지에와 프리스틀리 및 쉘레와의 관계는 그대로 잉여

---

(2) 로스코우—쇼를렘메르 《상설화학교과서》, 1877년 브라운쉬와이그판, 제1권, 13, 18페지.

가치론에서의 맑스와 그 선행자들과의 관계이다. 우리가 지금 잉여가치라고 부르는 생산물가치부분의 **존재**는 맑스보다 오래전에 확인되여있었다. 또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것, 즉 그것에 대하여 취득자가 아무 등가도 지불하지 않은 로동의 생산물로 이루어진다는것도 역시 정도의 차는 있으나 명료하게 진술되고있었다. 그러나 그 이상 나가지는 못하였다. 한편의 사람들—고전파자산계급경제학자들—은 기껏해야 로동생산물이 로동자와 생산수단소유자간에 분배되는 량적관계를 연구하였을따름이다. 다른 한편의 사람들—사회주의자들—은 이 분배가 불공정한것을 발견하였고 이 불공정을 제거하기 위한 공상적수단을 탐구하였다. 그리고 그들 량편이 다 그들의 앞에 있는 경제학적범주들에 사로잡혀있었다.

거기에 맑스가 등장하였다. 그것도 그의 모든 선행자들에 직접 대립하여 나타났다. 그의 선행자들이 **해답**을 본곳에서 그는 다만 **문제**를 보았다. 맑스가 본것은 여기에는 탈연소기체가 있는것도, 화기체가 있는것도 아니며 산소가 있다는것, 여기서는 어떤 하나의 경제학적 사실의 단순한 확인이나 이 사실과 영원한 정의 및 진정한 도덕과의 충돌이 문제인것이 아니라 전체 경제학을 변혁할 사명을 가진 하나의 사실이 문제이며 이 사실이야말로 전체 자본주의적생산의 리해를 위한 열쇠를—그것을 사용할줄 아는 사람에게—제공하는것이라는 것이였다. 마치 라봐지에가 산소에 근거하여 연소설화학의 기존범주들을 검토한것처럼 그는 이 사실에 근거하여 모든 기존범주들을 검토하였다. 잉여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그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지 않으면 안되였다. 리카도의 가치론자체가 우선 비판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리하여 맑스는 로동을 연구하여 그 가치형성적성질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어**

떠한 로동이, 어떤 리유로, 어떻게 하여 가치를 형성하는가, 또 대체로 가치란 **이러한** 종류의 로동의 응고된것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라는것을 처음으로 확정하였다. 이것이 바로 로드베르투스가 최후까지 리해못한 점이다. 다음으로 맑스는 상품과 화폐와의 관계를 연구하고 어떻게, 어떤 리유로 상품에 내재하는 가치속성에 의하여 상품이, 그리고 상품교환이 상품과 화폐와의 대립을 낳지 않을수 없는가를 론증하였다. 이 론증에 기초한 그의 화폐리론은 최초의 전면적인 화폐리론이며 현재는 묵인속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되고있는것이다. 그는 화폐의 자본으로의 전화를 연구하고 이 전화가 로동력의 매매에 기초하고있다는것을 증명하였다. 그는 여기에서 로동 대신에 가치창조적속성인 로동력을 놓음으로써 리카도학파의 파멸의 원인으로 된 제 난점의 하나, 즉 자본과 로동의 호상교환과 로동에 의한 가치규정의 리카도의 법칙과의 조화의 불가능성을 단번에 해결하였다. 그는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으로의 자본의 구별을 확인함으로써 처음으로 잉여가치의 형성과정을 그 현실적과정의 가장 상세한 점에 이르기까지 보여주었으며 그리하여 그것을 해명하는데 성공하였다. 이것은 그의 선행자들이 누구나 달성할수 없었던것이다. 따라서 그는 자본자체내에 하나의 구별을 확인하였는데 이 구별은 로드베르투스도 자산계급경제학자들도 전혀 할수 없는것이며 그러나 경제학의 가장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열쇠를 제공하는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여기에서 다시 제2권이—그리고 차후에 보는바와 같이 제3권이 더한층—가장 적절한 증거로 된다. 그는 더 나아가서 잉여가치자체를 연구하고 그 두 형태, 즉 절대적잉여가치와 상대적잉여가치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 형태들이 자본주의적생산의 력사적발전에서 논 각이한, 그

러나 두가지가 다 결정적인 역할을 론증하였다. 그는 잉여가치에 립각하여 로임에 관하여 우리가 가지고있는 최초의 합리적인 리론을 전개하였으며 또 처음으로 자본주의적축적사의 륜곽과 이 축적의 력사적경향을 서술하였다.

그러면 로드베르투스는 어떠한가? 그는 이상의 모든것을 읽은 다음에—경향적경제학자가 언제나 그렇듯이!—거기에서 《사회에 대한 침입》[21]을 발견하며 잉여가치가 무엇에서 발생하는가를 그자신이 이미 훨씬 보다 간단명료하게 말하였다는것을 발견하며 그리고 끝으로 그 모든것은 물론 《오늘의 자본형태》, 즉 력사적으로 존재하고있는 그대로의 자본에는 적합하나 《자본개념》, 즉 자본에 관한 로드베르투스씨의 공상적관념에는 적합하지 않다는것을 발견한다. 죽을 때까지 연소를 고집하고 산소에 관하여는 조금도 알려고 하지 않았던 로프리스틀리와 꼭같다. 다만 프리스틀리는 산소를 현실적으로 최초에 석출하였으나 로드베르투스는 그의 잉여가치 또는 오히려 그의 《임차료》에 있어서 낡아빠진 문구를 재발견하였을따름이며 맑스는 라봐지에의 방식과는 반대로 잉여가치의 존재하는 **사실**을 폭로한 최초의 사람은 자기라고 주장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을따름이다.

경제학에서 그밖에 로드베르투스가 해놓은것도 동일한 수준의것이다. 그가 잉여가치를 하나의 공상으로 조작해낸데 대하여는 맑스에 의하여 《철학의 빈곤》에서 의도한바는 아니였으나 이미 비판되였다. 이것에 관하여 그밖에 더 말하여야 할것은 내가 이 저술의 독일어역본서문[5]에서 말하였다. 로드베르투스는 상업공황을 로동자계급의 소비부족으로 설명하고있는데 이러한 설명은 이미 씨스몽디의 《정치경제학의 새원리》, 제4권, 제4장에서 볼수 있다.(3) 다만 씨스몽디는 그

경우에 항상 세계시장을 념두에 두고있는데 로드베르투스의 시야는 프로씨아의 국경을 넘지 못하고있을따름이다. 로임이 자본에서 나오는가 소득에서 나오는가 하는것에 관한 그의 사변은 스콜라학에 속하는것인데 그것은 이 《자본론》의 제2권 제3편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처치되고있다. 그의 지대론은 아직 그의 전유재산으로 남아서 그것을 비판한 맑스의 원고[22]가 발간될 때까지는 계속 편한 잠을 잘수 있다. 끝으로 구프로씨아의 토지소유를 자본의 압박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그의 제안도 역시 완전히 공상적인것이다. 즉 그 제안은 이 경우에 제기되는 유일한 실제문제를 회피하고있다. 즉 구프로씨아의 융케르가 매년 가령 2만마르크의 수입에서 가령 3만마르크를 지출하면서도 어떻게 빚을 지지 않을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회피하고있는것이다.

리카도학파는 1830년경에 잉여가치에 부딪치여 난파하였다. 이 학파가 해결할수 없었던것은 그 후계자인 속류경제학에 의하여서는 더구나 해결될수 없는것이였다. 리카도학파가 부딪치여 침몰한것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점이였다.

첫째, 로동은 가치의 척도이다. 그런데 자본과의 교환에서는 산로동은 그것과 교환되는 대상화된 로동보다 작은 가치를 가진다. 로임 즉 일정한 량의 산로동의 가치는 그것과 동일한 량의 산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생산물 또는 이 로동량이 표시되는 생산물의 가치보다 항상 작다. 문제를 이렇게 리해하여서는 사실상 해결할수 없다. 문제는 맑스에 의하여 옳게 제출되였으며 동시에 해답도 얻었다. 가치를 가지고있

(3) 《그리하여 소수의 소유자들의 수중에 부가 집적되는 결과 국내시장은 점점 더 축소되고 산업은 점점 더 국외시장을 구하지 않을수 없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보다 큰 변혁이 기다리고있다.》(즉 이 글에 곧 이어 서술되고있는 1817년의 공황) 《새 원리》, 1819년판, 제1권, 336페지

는것은 로동이 아니다. 가치창조활동으로서 로동이 특수한 가치를 가질수 없는것은 바로 무게가 어떤 특수한 중량을 가질수 없으며 열이 어떤 특수한 온도를 가질수 없으며 전기가 어떤 특수한 전류강도를 가질수 없는것과 마찬가지이다. 상품으로서 매매되는것은 로동이 아니라 로동력이다. 로동력이 상품으로 되면 그 가치는 하나의 사회적생산물로서의 로동력에 구현된 로동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것은 로동력의 생산 및 재생산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로동과 같다. 그러므로 로동력의 이 가치에 기초한 로동력의 매매는 결코 경제학적 가치법칙과 모순되지 않는다.

둘째, 리카도의 가치법칙에 의하면 두 자본이 같은 량의 산로동을 사용하여 그 로동에 같은 액수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다른 모든 사정이 같다면 이 두 자본은 같은 시간에 같은 가치의 생산물을 생산하며 또 같은 크기의 잉여가치 또는 리윤을 생산한다. 그러나 이 자본들이 같지 않은 량의 산로동을 사용한다면 이 자본들은 같은 크기의 잉여가치 또는 리카도학파가 말하는바에 의하면 같은 크기의 리윤을 생산할수 없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이다. 실제는 같은 크기의 자본들은 그것들이 사용하는 산로동이 많고적은데 관계없이 같은 시간에는 평균적으로 같은 액의 리윤을 생산한다. 그러므로 여기에 가치법칙과의 모순이 있다는것이며 이 모순을 리카도는 벌써 발견하였지만 그의 학파는 역시 이 모순을 해결할수 없었다. 이 모순은 로드베르투스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도리여 그것을 자기의 공상의 출발점의 하나로 삼았다. (《인식을 위하여》, 131페지) 이 모순을 맑스는 이미 《비판》 원고에서 해결하였다.[23] 이 해결은 《자본론》의 계획에 의하면 제3권

에서 진행하게 된다.[24] 제3권을 출판하기까지는 아직도 수개월이 걸릴것이다. 그러므로 로드베르투스에게서 맑스의 비밀의 원천이나 탁월한 선구자를 발견하려고 하는 경제학자들은 여기에서 로드베르투스의 경제학이 무엇을 줄수 있는가 하는것을 보여줄 기회를 가질수 있다. 만일 그러한 경제학자들이 가치법칙을 위반하지 않을뿐만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초로 하면서 어떻게 균등한 평균리윤이 형성될수 있으며 또 형성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론증한다면 그때에 우리는 서로 더 이야기하기로 하자. 여하간 그들이 빨리 해주기를 바란다. 이 제2권의 빛나는 연구들과 그 연구들이 지금까지 거의 누구도 들어본적이 없는 령역에서 도달한 아주 새로운 성과들은 제3권의 내용에 대한 앞문장에 불과한것이며 바로 이 제3권이 자본주의적기초우에서의 사회적재생산과정에 관한 맑스의 서술의 최후의 결과들을 전개하는것이다. 이 제3권이 출판될 때에는 로드베르투스라는 경제학자는 더는 문제로 되지 않을것이다.

《자본론》 제2권과 제3권은 맑스가 나에게 루차 말한 바에 의하면 그의 부인에게 드리기로 되여있었다.

프리드리히 엥겔스

1885년 5월 5일 맑스의 탄생일에, 런던에서

제 2 판 서 문①

이 제2판은 대체로 제1판을 그대로 다시 인쇄한것이다. 오식이 정정되였으며 약간의 문체상 부주의가 제거되였으며 그저 반복을 포함할따름인 약간의 짤막한 문구들이 삭제되였다.

제3권은 전혀 예기하지 않았던 곤난들이 있었으나 이것도 이제는 원고가 거의 완성되여있다. 나의 건강이 허락한다면 이 가을에는 인쇄에 착수할수 있을것이다.

F. 엥겔스

1893년 7월 15일, 런던에서

일람의 편리를 위하여 제2～8고에서 취한 개소들을 간단히 총괄하여 다음과 같이 적어둔다.

제 1 편

31～32페지, 제2고에서. — 32～44페지, 제7고에서. —

① 표제는 독일문판 편집자가 가한것이다.—편집자

44～48페지, 제6고에서. —48～134페지, 제5고에서. —134～137페지, 발취책중에 있는 주. —138페지부터 본편 마지막까지, 제4고에서. 다만 다음과 같은 삽입이 있다. 146～148페지, 제8고의 여러 개소. 151, 158페지의 주, 제2고에서.

제 2 편

본편의 앞부분 171～182페지는 제4고의 마지막부분이다. 여기서부터 본편의 마지막 388페지까지, 전부 제2고에서.

제 3 편

제18장: (389～397페지) 제2고에서.

제19장: 제1, 2절(398～432페지) 제8고에서.
제3절(432～434페지) 제2고에서.

제20장: 제1절(435～438페지) 제2고에서.
다만 마지막부분의 한단락만은 제8고에서.
제2절(438～442페지), 대체로 제2고에서.
제3, 4, 5절(442～470페지), 제8고에서.
제6, 7, 8, 9절(470～487페지), 제2고에서.
제10, 11, 12절(488～540페지), 제8고에서.
제13절(540～550페지), 제2고에서.

제21장: (551～592페지), 전부 제8고에서.

제 2 부

자본의 류통과정

제 1 편

자본의 변태와 그 순환

제 1 장

화폐자본의 순환

자본의 순환과정은(1) 세개의 단계를 통하여 진행되며 이 단계들은 제1권에서 서술한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를 이룬다.

제1단계 자본가는 상품시장이나 로동시장에 구매자로서 나타난다. 그의 화폐는 상품으로 전화된다. 즉 류통행위 G—W를 통과한다.

제2단계 구매된 상품의 자본가에 의한 생산적소비에 자본가는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자로서 행동한다. 그의 자본은 생산과정을 통과한다. 그 결과는 그 자신의 생산요소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 상품이다.

제3단계 자본가는 판매자로서 시장에 돌아온다. 그의 상품은 화폐로 전화된다. 즉 류통행위 W—G를 통과한다.

따라서 화폐자본의 순환을 표시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이

---

(1) 제2고에서.

된다. G—W…P…W′—G′. 여기서 점선은 류통과정이 중단된것을 표시하며 W′와 G′는 잉여가치에 의하여 증대된 W와 G를 표시한다.

제1단계 및 제3단계는 제1권에서는 다만 제2단계, 즉 자본의 생산과정을 리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에서만 연구되였을뿐이다. 그러므로 거기서는 자본이 그 각이한 단계들에서 취하는 그리고 반복되는 순환에서 때로는 취하고 때로는 버리는 각이한 형태들은 고려되지 않았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형태들이 당면한 연구대상으로 된다.

이러한 형태들을 순수하게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형태변환 및 형태형성 그자체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계기들을 모두 사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상품들이 그 가치대로 판매된다고 가정할뿐만아니라 그 판매가 변하지 않은 사정밑에서 진행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순환과정에서 일어날수 있는 가치변동도 무시된다.

1. 제1단계 G—W(2)

G—W는 어떤 화폐액이 어떤 액의 상품으로 전화되는것을 표시한다. 그것은 구매자에 대하여서는 그의 화폐의 상품으로의 전화이고 판매자에 대하여서는 그의 상품의 화폐로의 전화이다. 일반적상품류통의 이 과정을 동시에 개별적자본의 자립적순환에서 기능적으로 규정된 한 단계로 만드는것은 우선 이 과정의 형태가 아니라 그의 물질적내용이며 화폐와 자리를 바꾸는 상품들의 특수한 사용성질이다. 이 상품들은 한

(2) 이하는 1878년 7월 2일에 시작한 제7고이다.

편으로는 생산수단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로동력이며 상품생산의 물적요인과 인적요인이다. 이 요인들의 특수한 성질은 물론 생산되는 물품의 종류에 상응되여야 한다. 만일 로동력을 A라 하고 생산수단을 Pm이라 한다면 구매되여야 할 상품총액 W=A+Pm이며 간단히 표시하면 $W<^{A}_{Pm}$①이다. 따라서 G—W는 그 내용으로 보면 $G—W<^{A}_{Pm}$으로서 나타난다. 즉 G—W는 G—A와 G—Pm으로 나뉘여진다. 화폐액 G는 두개의 부분으로 나뉘여 일방은 로동력을 구매하고 타방은 생산수단을 구매한다. 이 두 계렬로 갈라지는 구매는 완전히 각이한 시장들에서, 즉 일방은 본래의 상품시장에서, 타방은 로동시장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G가 전화되는 상품액의 이러한 질적인 분렬외에 $G—W<^{A}_{Pm}$은 또 하나의 극히 특징적인 량적관계도 표시한다.

우리가 아는바와 같이 로동력의 가치 또는 가격은 로동력을 상품으로서 판매하는 로동력의 소유자에게는 로임의 형태로, 즉 잉여로동을 포함하는 로동량의 가격으로서 지불된다. 따라서 례컨대 로동력의 일가치가 5시간로동의 생산물인 3마르크와 같다면 이 금액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계약에서는 례컨대 10로동시간의 가격 또는 임금으로서 나타난다. 만일 그러한 계약이 례컨대 50명의 로동자들과 체결된다면 이 로동자전체는 하루동안에 도합 500로동시간을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중의 절반, 즉 250로동시간=25개의 10시간 로동일은 오직 잉여로동으로써만 이루어진다. 구매하여야 할 생산수단의 량과 규모는 이 로동량의 사용을 위하여 충분하여야 한다.

---

① 엥겔스가 1888년 4월 27일에 B. 제빌에게 보낸 서한에 의하면 이 도식의 정확한 필기는 $W<^{A}_{P_m}$ 이다. 현재의 표기법은 독일문 제1판이후 조판인쇄과정에 잘못된것이다.—편집자

따라서 G—W<$^{A}_{Pm}$은 일정한 화폐액, 레컨대 422파운드가 서로 적응하는 생산수단과 로동력으로 전환된다는 질적관계를 표시할뿐만아니라 로동력 A에 지출되는 화폐부분과 생산수단 Pm에 지출되는 화폐부분과의 량적관계도 표시한다. 이 량적관계는 일정한 수의 로동자들에 의하여 지출될 여분인 잉여로동총량에 의하여 처음부터 규정되여있는것이다.

그리하여 레컨대 어떤 방적공장에서 50명의 로동자의 주임금이 50파운드인 경우에는 1,500시간의 잉여로동을 포함하여 3,000시간의 주로동이 실에 전화시키는 생산수단의 가치가 372파운드라면 이 372파운드가 생산수단에 지출되여야 한다.

각이한 산업부문들에서 추가적로동의 사용이 생산수단의 형태에서의 가치추가를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는가 하는것은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좋다. 문제로 되는것은 다만 생산수단에 지출되는 화폐부분—G—Pm에서 구매되는 생산수단—이 어떤 사정하에서도 충분하여야 한다는것, 따라서 처음부터 추가의 필요를 고려하며 적당한 비률로 준비되여있어야 한다는 것뿐이다. 바꾸어말하면 생산수단의 량은 이 로동량을 흡수하는데, 즉 이 로동량에 의하여 생산물로 전화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 만약 충분한 생산수단이 없다면 구매자가 처분할 수 있는 여분의 로동은 사용될수 없을것이다. 그가 가지고있는 그 로동의 처분권은 아무런 소용도 없을것이다. 또 만약 처분할수 있는 로동보다 더 많은 생산수단이 있다면 그것은 충분한 로동이 가해지지 않은채로 남아있을것이며 생산물로 전화되지 않을것이다.

G—W<$^{A}_{Pm}$이 끝나면 구매자는 어떤 유용한 물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생산수단과 로동력을 처분할수 있을뿐만이 아니다. 그는 또한 로동력의 가치를 보상하기에 필요한것보다 더

많은 로동력을 류동시킬수 있다. 달리 말하면 그는 로동력의 가치를 보상하기에 필요한것보다 더 많은 량의 로동을 처분할 수 있다. 동시에 그는 이 로동량의 실현 또는 대상화에 필요한 생산수단도 처분할수 있다. 따라서 그는 그 생산 제 요소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는 물품, 다시말하면 잉여가치를 포함하는 상품량의 생산에 필요한 제 요인을 처분할수 있다. 따라서 그가 화폐형태로 선대한 가치는 이제는 그것이 잉여가치를(상품의 모습으로) 낳는 가치로서 실현될수 있는 현물형태를 취한다. 바꾸어말하면 그 가치는 가치와 잉여가치를 창조하는것으로서 기능하는 능력을 가진 **생산자본**의 상태 또는 형태에 있는것이다. 이 형태에 있는 자본을 P라고 하자.

그런데 P의 가치는 A+Pm의 가치이며 A와 Pm으로 전화된 G와 같다. G는 P와 동일한 자본가치이며 다만 그 존재방식이 다를뿐이다. 즉 G는 화폐상태 또는 화폐형태로 있는 자본가치—**화폐자본**이다.

그러므로 G—W$<^{A}_{P_m}$ 또는 그의 일반적형태 G—W, 즉 모든 상품구입의 총계, 이 일반적인 상품류통의 과정은 자본의 자립적인 순환과정의 단계로서는 동시에 화폐형태로부터 생산형태로의 자본가치의 전화이며 간단히 말하면 **화폐자본**으로부터 **생산자본**으로의 전화이다. 따라서 여기서 우선 고찰되는 순환공식에서는 화폐는 자본가치의 최초의 담당자로서 나타나며 따라서 화폐자본은 자본이 선대되는 형태로서 나타난다.

화폐자본으로서의 자본은 여러가지 화폐기능을, 지금의 경우에는 일반적구매수단과 일반적지불수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로동력이 처음부터 구매됨에 틀림없으나 그 지불이 진행되는것은 그것이 작용한후이라는 한에서는 화폐는 지불수단이다. 생산수단이 기성품으로서 시장에 있지

않고 이제부터 주문하여야 하는 한에서는 화폐는 G—Pm에서도 역시 지불수단으로서 기능한다.). 이 능력은 화폐자본이 자본이기때문에 생기는것이 아니라 그것이 화폐이기때문에 생긴다.

다른 한편 화폐상태에 있는 자본가치는 화폐의 기능만을 수행할수 있을뿐 다른 기능은 수행할수 없다. 이 화폐의 기능을 자본의 기능으로 되게 하는것은 자본의 운동에 있어서의 화폐의 기능의 일정한 역할이며 따라서 화폐의 기능이 나타나는 단계와 자본순환의 다른 단계들과의 관련이다. 례컨대 지금의 경우에는 화폐가 상품들로 전환되며 이 상품들의 결합이 생산자본의 현물형태를 이루며 따라서 이 결합은 잠재적으로는, 가능성으로는 이미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의 결과를 자체속에 간수하고있다.

G—W$<^{A}_{Pm}$에서 화폐자본의 기능을 수행하는 화폐의 일부분은 이 류통 그자체의 완성에 의하여 다른 하나의 기능으로 이행하는데 이 기능에서는 그 자본성격은 사라지고 그 화폐성격이 남는다. 화폐자본 G의 류통은 G—Pm과 G—A로, 즉 생산수단의 구매와 로동력의 구매로 나뉘여진다. 후자의 과정을 그자체로서 고찰하여보자. G—A는 자본가측에서 보면 로동력을 구매하는것이다. 그것은 로동자, 즉 로동력의 소유자에서 보면 로동력—여기서는 로임형태가 전제되여있는만큼 로동이라 해도 좋다. —을 판매하는것이다. 구매자에게 있어서 G—W(=G—A)인것이 여기에서는 어느 구매에 있어서나 다 그런것처럼 판매자(로동자)에게 있어서는 A—G(=W—G)이며 자기의 로동력을 판매하는것이다. 이것은 상품의 제일 류통단계 또는 제일 변태이다.(제1권 제3장 제2절 a) 이것은 로동의 판매자측에서 보면 그의 상품이 그 화폐형태로 전화하

는것이다. 이렇게 얻은 화폐를 로동자는 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상품들의 총계에, 즉 여러가지 소비품들로 점차 지출한다. 따라서 그의 상품의 총류통은 A—G—W로서, 즉 첫째로는 A—G(=W—G), 둘째로는 G—W로서 나타난다. 즉 단순한 상품류통의 일반적형태 W—G—W로 나타나며 여기에서는 화폐는 단순한 순간적인 류통수단으로서, 상품과 상품과의 교환의 단순한 매개자로서 역할한다.

G—A는 화폐자본으로부터 생산자본으로의 전화를 특징짓는 계기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화폐형태로 선대된 가치가 자본으로, 잉여가치를 낳은 가치로 현실적으로 전화하기 위한 본질적인 조건이기때문이다. G—Pm은 오직 G—A에 의하여 구매된 로동량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할뿐이다. 그러므로 제1권 제2편 《화폐의 자본에로의 전화》에서는 G—A가 이 관점으로부터 서술되였다. 여기에서는 사태가 또 하나의 관점으로부터, 특히 자본의 현상형태로서의 화폐자본과 관련하여 고찰되여야 한다.

G—A는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적생산방식에 특징적인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결코 상술한 리유에서는 아니다. 즉 로동력의 구매가 로동력의 가격인 로임의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것보다 더 많은 량의 로동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따라서 선대된 가치의 자본화를 위한 또는 같은 말이지만 잉여가치의 생산을 위한 근본적조건인 잉여로동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구매계약이라는 리유에서는 결코 아니다. 그런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G—A라는 형태때문이며, 로임이라는 형태에서 **화폐로** 로동이 구매되기 때문인데, 이것이 화폐경제의 표지로 간주되는것이다.

또 여기서는 특징적인것으로 간주되는것은 형태의 불합

리성이 아니다. 오히려 이 불합리성은 간과된다. 이 불합리성은 가치형성요소로서의 로동 그자체는 가치를 가질수 없다는데, 따라서 또 일정한 량의 로동이 그 로동의 가격, 즉 일정한 량의 화폐와의 그 로동의 등가성으로 나타나는 가치를 가질수 없다는데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바와 같이 로임은 다만 하나의 가장된 형태에 지나지 않으며 이 형태에 있어서는 례컨대 로동력의 일가격은 이 로동력에 의하여 하루동안에 류동화되는 로동의 가격으로서 나타내며 그리하여 례컨대 이 로동력에 의하여, 6시간의 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가치가 이 로동력의 12시간의 기능 또는 12시간 로동의 가치로서 나타난다.

G—A가 소위 화폐경제의 특징, 표식으로 간주되는것은 여기서는 로동이 그 소유자의 상품으로서 나타나며 따라서 화폐가 구매자로서 나타나기때문이다. —즉 화폐관계(즉 인간활동의 매매)때문이다. 그러나 G가 화폐자본으로 전화하지도 않았고 경제의 일반적성격이 변혁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화폐는 이미 매우 오래전부터 소위 봉사의 구매자로 나타났다.

화폐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상품으로 전화되는가 하는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 화폐는 모든 상품의 일반적 등가형태이며 모든 상품은 그것들이 관념적으로 일정한 화폐액을 대표하며 화폐로의 전화를 기대하고있으며 오직 화폐와의 장소변동에 의하여서만 자기의 소유자를 위하여 사용가치로 전환될수 있는 형태를 얻는다는것을 이미 그 가격으로써 표시하고있다. 그러므로 일단 로동력이 그 소유자의 상품으로서 시장에 나타나며 이 상품의 판매가 로동에 대한 지불의 형태로, 로임의 모습으로 진행된다면 그 매매에는 다른 모든 상품의 매매에 비하여 특별히 눈에 뜨이는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로동력이라는 상품이 구매될수 있는것이 특징적인것이 아니라 로동력이 상품으로서 나타난다는것이 특징적이다.

생산의 대상적요인과 인적요인이 상품들로써 이루어지는 한 자본가는 이 요인들의 결합을 G—W<$^{A}_{P_m}$, 즉 화폐자본으로부터 생산자본으로의 전화에 의하여 실현한다. 화폐가 처음으로 생산자본으로 전화되는 경우 또는 그 소유자를 위하여 처음으로 화폐자본으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는 로동력을 구매하기전에 우선 생산수단들, 즉 작업용 건물, 기계 등등을 구매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 하면 로동력이 그의 지배하에 넘어가기전에 그에게는 로동력을 로동력으로서 사용하기 위한 생산수단들이 있어야 하기때문이다.

자본가측으로 볼 때 사태는 이상과 같이 되여있다.

로동자측으로 보면 그의 로동력의 생산적발휘는 그것이 판매되여 생산수단들과 결합되는 순간부터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로동력은 판매되기전에는 생산수단들로부터, 그것을 발휘하기 위한 대상적조건들로부터 분리되여있는것이다. 이러한 분리상태에서는 로동력은 직접 소유자를 위한 사용가치의 생산에 사용될수 없으며 또 그 소유자가 살아가기 위하여 판매하지 않으면 안될 상품들의 생산에도 사용될수 없다. 그러나 로동력이 판매됨으로써 생산수단들과 결합되자마자 로동력도 생산수단들과 마찬가지로 그 구매자의 생산자본의 한 구성부분으로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G—A라는 행위에서는 화폐소유자와 로동력소유자는 다만 서로 구매자와 판매자로서 관계하며 서로 화폐소유자와 상품소유자로서 대립하며 따라서 이 면에서 보면 서로 단순한 화폐관계에 처해있을뿐이지만—그렇다 하더라도 구매자는 처음부터 동시에 생산수단의 소유자로서 나타나며

그 생산수단은 로동력이 그 소유자에 의하여 생산적으로 지출되는 대상적조건을 이룬다. 바꾸어말하면 이 생산수단들은 로동력의 소유자에 대하여 타인의 소유물로서 나타난다. 다른 한편 로동의 판매자는 그 구매자에 대하여 타인의 로동력으로서 대립하는데 이 로동력은 구매자의 자본이 현실적으로 생산자본으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구매자의 지배하에 넘어가야 하며 그의 자본에 합체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자본가와 임금로동자와의 계급관계는 량자가 G—A(로동자측에서 볼 때에는 A—G)라는 행위에서 서로 대립하여 나타나는 순간에 이미 존재하여 이미 전제되여있다. 그것은 구매와 판매이며 화폐관계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본가로서의 구매자와 임금로동자로서의 판매자가 전제되여있는 구매와 판매이다. 그리고 이 관계는 로동력의 실현을 위한 제 조건—생활수단과 생산수단—이 타인의 소유물로서 로동력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여있는데로부터 생긴다.

이러한 분리가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것은 여기에서는 문제로 되지 않는다. G—A가 수행될 때 그것은 이미 존재한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것은 다음과 같은것이다. 즉 G—A가 화폐자본의 하나의 기능으로서 나타나지만, 즉 화폐가 여기에서는 자본의 존재형태로서 나타나지만 그것은 결코 다만 화폐가 여기에서 어떤 유용효과를 가지는 인간활동, 즉 어떤 봉사에 대한 지불수단으로서 나타나기때문이 아니다. 즉 결코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에 기인하는것이 아니다. 화폐를 이 형태로 지출할수 있는것은 다만 로동력이 그 생산수단(로동력자체의 생산수단으로서의 생활수단도 포함하여)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 있기때문이다. 그리고 이 분리상태는 로동력이 생산수단의 소유자에게 판매됨으로써만, 따라

서 또 결코 로동력자체의 가격을 재생산하는데 필요한 로동량과 같은 한도내에 머물지 않는 로동력의 류동화도 이 구매자에게 속함으로써만 해소될수 있기때문이다. 자본관계가 생산과정에서 나타나는것은 오직 이 관계가 그자체로서 류통행위속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대립할 때의 량자의 경제적 근본조건들의 차이속에, 그들의 계급적관계속에 존재하고있기때문일따름이다. 화폐의 본성과 함께 이 관계가 나오는것이 아니다. 도리여 이 관계의 존재만이 단순한 화폐기능을 자본기능으로 전화시킬수 있다.

화폐자본(그런데 우리는 당분간 이것이 우리앞에서 수행하는 일정한 기능의 범위내에서만 이것을 문제로 한다.)의 리해에 있어서는 보통 두개의 오유가 병행하든가 또는 교차되여 있다. 첫째로는 자본가치가 화폐자본으로서 수행하며 또 바로 그것이 화폐형태에 있기때문에 수행할수 있는 기능들이 그릇되게도 자본가치의 자본성격으로부터 유도되는것인데 그러나 실상 이 기능들이 수행되는것은 다만 자본가치의 화폐상태의 덕택이며 자본가치의 화폐로서의 현상형태의 덕택인것이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와 반대로 화폐기능을 동시에 하나의 자본기능으로 만드는 이 화폐기능의 특수한 내용이 화폐의 본성으로부터 유도되는것(따라서 화폐가 자본과 혼동된다.)인데 그러나 실상 화폐자본의 기능은 여기에서 G—A가 수행되는 경우에 그러한것처럼 단순한 상품류통과 그에 상응하는 화폐류통에서는 결코 주어지지 않은 사회적조건들을 전제로 하는것이다.

노예의 매매로 그 형태로 보면 역시 상품의 매매이다. 그러나 노예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화폐는 이 기능을 수행할수 없다. 노예제도가 존재하면 화폐는 노예의 구입에 지출될수 있다. 반대로 화폐가 구매자의 수중에 있다는것으로

는 결코 노예제도를 가능하게 하는데 충족하지 않다.

자기의 로동력을 판매하는것(자기의 로동을 판매하는 형태 또는 로임의 형태로서의)이 고립된 현상이 아니라 상품생산의 사회적으로 결정적인 전제로 나타난다는것, 따라서 화폐자본이 여기에서 고찰되는 기능 G—W<$^{A}_{Pm}$을 사회적인 규모에서 수행한다는것—이것은 생산수단과 로동력의 원래의 결합을 해체시킨 력사적인 제 과정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서 이 생산수단의 비소유자로서의 인민대중, 즉 로동자와 이 생산수단의 소유자로서의 비로동자가 대립하게 된다. 이 경우에 이 결합이 그 해체이전에 어떤 형태를 취하였는가, 그것은 로동자자신이 생산수단으로서 다른 생산수단에 부속하는 형태를 취하였는가 또는 로동자가 생산수단의 소유자였는가 하는것은 사태를 조금도 변경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G—W<$^{A}_{Pm}$이라는 행위의 기초에 놓여있는 사실은 분배이다. 그러나 소비수단의 분배는 보통의 의미에서의 분배인것이 아니라 생산요소자체의 분배인데 이 요소들중 대상적요인들은 일방에 집중되며 로동력은 대상적요인들로부터 분리되여 타방에 고립되여있다.

그러므로 G—A라는 행위가 일반적인 사회적행위로 될수있기전에 생산자본의 대상적부분인 생산수단들은 이미 그자체로서, 자본으로서 로동자와 대립되여있지 않으면 안된다.

우에서 본바와 같이[25] 일단 확립된 자본주의적생산은 그 발전도상에서 이 분리를 재생산할뿐만아니라 그것을 부단히 더 큰 규모에서 확대하며 드디여 이 분리가 보편적으로 지배하는 사회적상태로 된다. 그러나 사태에는 또 하나의 다른 측면이 있다. 자본이 형성되여 생산을 지배할수 있기 위하여는 상업의 일정한 발전단계가 전제로 되며 따라서 상품류통,

또 그와 함께 상품생산의 일정한 발전단계가 전제로 된다. 왜냐 하면 물품은 그것들이 판매를 위하여, 따라서 상품으로서 생산되지 않는 한 상품으로서 류통에 들어갈수 없기때문이다. 그러나 상품생산은 자본주의적생산의 기초우에서 비로소 생산의 정상적인 지배적인 성격으로서 나타난다.

로씨야의 토지소유자들은 이른바 농민해방[26]의 결과 이제는 농노적강제로동자들 대신에 임금로동자들을 사용하여 그들의 농업을 경영하고있는데 그들은 두가지 불평을 말하고 있다. 첫째로는 화폐자본의 부족에 대하여서이다. 례컨대 그들은 수확물을 팔기전에 임금로동자들에게 비교적 많은 금액을 지불하여야 하는데 그 경우에 첫째조건인 현금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자본주의적으로 생산을 경영하기 위하여서는 바로 로임지불을 위하여 화폐형태로서의 자본이 항상 수중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들은 이 점에 관하여 안심하여도 좋다. 철이 되면 장미를 딸수 있다. 산업자본가는 자기 자신의 화폐뿐만아니라 타인의 화폐도 움직일수 있다.

그런데 더 특징적인것은 둘째 불평이다. 즉 돈이 있어도 구매할수 있는 로동력을 충분하게 아무때나 사들여 리용할수 없다는것이다. 그것은 로씨야의 농촌로동자는 촌락공동체의 토지공유로 말미암아 아직 자신의 생산수단으로부터 완전히는 분리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는 아직 완전한 의미에서의 《자유로운 임금로동자》로 되여있지 않기때문이다. 그러나 이 자유로운 임금로동자가 사회적규모에서 존재한다는것이 G—W, 즉 화폐의 상품으로의 전화가 화폐자본의 생산자본으로의 전화로서 나타날수 있기 위하여 불가결한 조건인것이다.

그러므로 화폐자본의 순환을 표시하는 공식 G—W…P…W′—G′는 이미 발전된 자본주의적생산의 기초우에서만 자

본순환의 자명한 형태인것은 아주 명백하다. 왜냐 하면 그것은 임금로동자계급이 사회적규모에서 현존하는것을 전제로 하기때문이다. 자본주의적생산은 우리가 본바와 같이 상품과 잉여가치를 생산할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임금로동자계급을 재생산하며 그것도 부단히 확대되는 규모에서 재생산하며 또한 직접적생산자들의 절대다수를 임금로동자로 전화시킨다. 그러므로 G—W…P…W′—G′는 그 진행의 첫째 전제가 임금로동자계급의 부단한 현존이므로 이미 생산자본의 형태에 있는 자본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또 생산자본의 순환형태도 전제로 하고있다.

2. 제2단계 생산자본의 기능

여기서 고찰되는 자본의 순환은 류통행위 G—W, 화폐의 상품으로의 전화, 구매로써 시작된다. 그러므로 류통은 반대의 변태 W—G, 상품의 화폐로의 전화, 판매에 의하여 보충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G—W<^{A}_{Pm}$의 직접적결과는 화폐형태로 선대된 자본가치의 류통의 중단이다. 화폐자본으로부터 생산자본으로의 전화를 통하여 자본가치는 하나의 현물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이 형태에서 자본가치는 류통을 계속할수 없으며 소비로, 즉 생산적소비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로동력의 사용인 로동은 로동과정에서만 실현될수 있다. 자본가는 로동자를 상품으로서 다시 팔수 없다. 왜냐 하면 로동자는 그의 노예가 아니며 또 그가 산것은 일정한 시간에 한한 로동자의 로동력의 소비이외의 아무것도 아니기때문이다. 다른 한편 자본가는 로동력으로 하여금 생산수단들을 상품형성자로서 소

비하게 함으로써만 로동력을 소비할수 있다. 따라서 제1단계의 결과는 제2단계, 즉 자본의 생산단계의 개시이다.

이 운동은 G—W<$^{A}_{P_m}$…P로 표시된다. 여기에서 점선은 자본의 류통은 중단되여있으나 자본은 상품류통의 분야로부터 생산분야로 들어가므로 그 순환과정은 계속되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1단계인 화폐자본의 생산자본으로의 전화는 제2단계인 생산자본의 기능의 선행자로서, 그 준비단계로서 나타날뿐이다.

G—W<$^{A}_{P_m}$은 이 행위를 수행하는 개인이 임의의 사용형태로 있는 어떤 가치들을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다는것을 전제로 할뿐만아니라 그가 이 가치들을 화폐형태로 소유하고있다는것, 즉 그가 화폐소유자라는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 행위는 바로 화폐를 넘겨주는것인데 이 개인이 화폐소유자로 될수 있는것은 오직 이 넘겨주는 행위 그자체를 통하여 화폐가 그의 수중에로 환류한다는것이 포함되고있는 한에서이다. 그런데 화폐는 상품을 판매하는데 의하여서만 그의 수중에로 환류할수 있다. 따라서 이 행위는 그가 상품생산자라는것을 전제로 하고있다.

G—A. 임금로동자는 다만 로동력의 판매에 의하여서만 살아간다. 로동력의 유지—임금로동자의 자기보존—에는 매일의 소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로동자가 받는 지불은 그가 그의 자기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구입—A—G—W 또는 W—G—W라는 행위—을 반복할수 있도록 부단히 비교적 짧은 기간마다 반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자본가는 임금로동자에 대하여 부단히 화폐자본가로서 대립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 그의 자본은 화폐자본으로서 대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다수의 직접적생산자들인 임금로동자들이 A—G

—W라는 행위를 수행할수 있기 위하여서는 필요한 생활수단들이 구매될수 있는 형태로, 즉 상품형태로 부단히 그들에게 대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는 이미 높은 정도의 생산물의 상품으로서의 류통을, 따라서 또 상품생산의 광범한 규모를 요구한다. 임금로동에 의한 생산이 일반적으로 되면 상품생산이 생산의 일반적형태로 되지 않을수 없다. 상품생산이 일반적인것으로 전제하면, 그것은 또 사회적 분업의 부단한 장성, 즉 일정한 자본가에 의하여 상품으로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특수화의 부단한 증대, 서로 보충하는 생산과정들의 독립적생산과정들로의 분렬의 부단한 증대를 필연적인것으로 만든다. 따라서 G—A가 발전하는 정도와 동일한 정도로 G—Pm가 발전한다. 즉 그와 동일한 정도로 생산수단의 생산이 그것을 생산수단으로 하는 상품의 생산으로부터 분리된다. 그리고 생산수단은 매개 상품생산자자신에 대하여 상품으로서, 즉 생산자가 생산하는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의 일정한 생산과정을 위하여 구매하는 상품으로서 대립한다. 그의 생산수단은 그의 생산부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여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생산부문들로부터 나와서 상품으로서 그의 생산부문에 들어가며 따라서 그것은 구매되지 않으면 안된다. 상품생산의 물적조건들은 그에 대하여 부단히 증대되는 범위에서 다른 상품생산자의 생산물로서, 상품으로서 대립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와 동일한 규모로 자본가는 화폐자본가로서 등장하지 않으면 안되며 바꾸어말하면 그의 자본이 화폐자본으로서 기능하지 않으면 안되는 규모가 확대된다.

다른 한편 자본주의적생산의 근본조건—임금로동자계급의 존재—을 낳는 동일한 사정들은 모든 상품생산의 자본주의적상품생산에로의 이행을 촉진한다. 자본주의적상품생산이

발전함에 따라 그것은 모든 그 이전의 생산형태, 즉 주로 직접 자기 수요에 돌려지고 생산물의 잉여만을 상품으로 전화시키는 생산형태에 대하여 파괴적이며 분해적인 작용을 한다. 그것은 생산물의 판매를 주요한 관심사로 하는데 우선 생산방식 그자체를 눈에 띄일만큼 침습하지 않는다. 례컨대 자본주의적세계무역이 중국인, 인도인, 아랍인 등등과 같은 민족들에 준 최초의 영향이 그러하였다. 그러나 둘째로 이 자본주의적상품생산이 뿌리를 박은 곳에서는 그것은 생산자들의 자기 로동에 기초하거나 또는 잉여생산물을 상품으로 파는데만 기초하는 상품생산의 형태들을 남김없이 파괴해버린다. 그것은 처음에는 상품생산을 일반화하며 그다음에는 점차적으로 모든 상품생산을 자본주의적상품생산으로 전화시킨다.(3)

생산의 사회적형태가 어떠하든간에 로동자와 생산수단은 언제나 생산의 요인들이다. 그러나 전자나 후자나 서로 분리된 상태에서는 가능성으로 보아서만 그러할뿐이다. 대체로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그것들이 결합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결합이 이루어지는 특수한 방식과 방법에 의하여 사회구조의 각이한 경제적시대들이 구별된다. 우리가 고찰하고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로동자가 자신의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되여있다는것이 미리 주어진 출발점이며 그리하여 우리는 어떻게, 어떤 조건하에서 로동자와 생산수단이 자본가의 수중에서 결합되는가를, 즉 그의 자본의 생산적존재방식으로서 결합되는가를 이미 보았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결합된 상품형성의 인적요인과 물적요인이 함께 들어서는 현실적과정인 생산과정은 그자체가 자본의 한 기능—자본주의적생산과정으

---

(3) 이상은 제7고에서. 이하는 제6고에서.

로 된다. 그 본성은 이 저서의 제1권에서 이미 상세히 설명되였다. 상품생산의 매 하나의 경영은 모두다 동시에 로동력 착취의 경영으로 된다. 그러나 자본주의적상품생산이 비로소 하나의 획기적인 착취방식으로 되는데 이 착취방식이야말로 그것이 더 력사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로동과정의 조직과 기술의 거대한 발전에 의하여 사회의 전체 경제구조를 변혁하며 그 이전의 모든 시대를 비할바없이 릉가한다.

생산수단과 로동력은 그것이 선대자본가치의 존재형태인 한에 있어서는 생산과정중에 가치형성 또 따라서 잉여가치의 생산에서 노는 각이한 역할들에 의하여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으로 구별된다. 생산자본의 각이한 구성부분들로서는 그것들은 또한, 자본가의 수중에 있는 생산수단은 생산과정밖에서도 여전히 그의 자본이지만 로동력은 생산과정내부에서만 개별적자본의 존재형태로 된다는 점에 의하여 구별된다. 로동력은 오직 그 판매자인 임금로동자의 수중에서만 상품이라면 그것은 반대로 오직 그 구매자, 즉 일시적사용권을 가지고있는 자본가의 수중에서만 자본으로 된다. 생산수단 그자체는 로동력이 생산자본의 인적존재형태로서 생산수단에 합체될수 있는것으로 된 그 순간으로부터만 생산자본의 대상적모습 또는 생산자본으로 된다. 따라서 인간의 로동력은 천연적으로 자본이 아닌것과 마찬가지로 생산수단도 천연적으로 자본인 것은 아니다, 생산수단은 오직 력사적으로 발전된 일정한 제 조건하에서만 이 특수한 사회적성격을 얻는데 그것은 마치도 오직 이러한 제 조건하에서만 귀금속에 화폐라는 사회적성격이 새겨지고 또 화폐에 화폐자본이라는 사회적성격이 새겨지는것과 마찬가지이다.

생산자본은 그것이 기능하고있는 동안 자기자체의 구성

부분을 소비하여 그것들을 보다 가치가 높은 생산물량으로 전화시킨다. 로동력은 생산자본의 기관들중의 하나로서 작용할따름이므로 로동력의 잉여로동에 의하여 창조된 생산물가치중 생산물의 형성요소들의 가치를 넘는 초과분도 자본의 과실이다. 로동력의 잉여로동은 자본의 무상로동이며 따라서 그것은 자본가에게 잉여가치, 즉 자본가에게 아무런 등가도 들이게 하지 않는 가치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생산물은 상품일뿐만아니라 잉여가치를 잉태하고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의 가치는 P+M, 즉 그 상품의 생산에 소비된 생산자본의 가치 P에 이 생산자본에 의하여 산생된 잉여가치 M을 가한것과 같다. 이 상품이 10,000폰드의 방사이며 그 생산에 372파운드라는 가치의 생산수단과 50파운드라는 가치의 로동력이 소비되였다고 가정하자. 방적과정에서 방적공들은 그들의 로동에 의하여 소비된 372파운드의 생산수단의 가치를 방사에 이전한 동시에 그들의 로동지출에 따라 례컨대 128파운드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냈다. 그러므로 10,000폰드의 방사는 500파운드라는 가치의 담당자이다.

3. 제3단계 $W'-G'$

상품은 직접 생산과정자체로부터 생겨난 이미 증식된 자본가치의 기능적존재형태로서는 **상품자본**으로 된다. 만약 상품생산이 그 전사회적범위에서 자본주의적으로 경영된다면 모든 상품은 그것이 선철이든, 브류쎌의 레스이든, 류산이든 또는 려송연이든간에 처음부터 상품자본의 요소일것이다. 어떤 종류의 상품군이 그 속성에 의하여 자본의 지위가 부여되

고 다른 어떤 종류의 상품이 보통상품으로 복무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는 스콜라적경제학이 스스로 만들어낸 우습강스러운 난제의 하나이다.

자본은 상품형태로서는 상품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본을 구성하는 물품들은 처음부터 시장을 위하여 생산된것으로서 그것은 판매되여야 하며 화폐로 전화되여야 한다. 말하자면 반드시 W—G의 운동을 통과하여야 한다.

자본가의 상품이 10,000폰드의 면사로 구성되여있다고 하자. 방적과정에서 372파운드의 가치의 생산수단이 소비되여 128파운드의 새로운 가치가 창조되였다면 이 면사는 500파운드의 가치를 가지며 이 가치를 그것과 같은 명칭의 가격으로 나타낸다. 이 가격이 판매 W—G에 의하여 실현된다고 하자. 모든 상품류통의 이 단순한 과정을 동시에 하나의 자본기능으로 만드는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과정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변화도 아니다. 상품의 사용상의 성질에 일어나는 변화도 아니다. 왜냐 하면 이 상품은 사용대상으로서 구매자의 수중에로 이행하기때문이다. 또 그 가치에 일어나는 변화도 아니다. 왜냐 하면 그 가치는 량적으로 변화하는것이 아니며 다만 형태변화를 경과할뿐이기때문이다. 그 가치는 처음에는 면사속에 존재하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화폐속에 존재한다, 이리하여 최초의 단계 G—W와 최후의 단계인 W—G간에는 하나의 본질적차이가 나타난다. 전자에 있어서 선대된 화폐가 화폐자본으로서 기능하는것은 그것이 류통의 매개에 의하여 특수한 사용가치의 상품들로 전환되기때문이다. 후자에 있어서 상품이 자본으로서 기능할수 있는것은 다만 이 상품이 그 류통이 시작되기전에 이미 기성적인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생산과정으로부터 나오는 한에 있어서만이다.

방적과정에서 방적공은 128파운드라는 금액의 방사가치를 창조하였다. 그중에서 례컨대 50파운드는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로동력에 대한 그의 지출의 등가를 형성할뿐이며 78파운드는 —로동력의 착취도는 156%로 된다. —잉여가치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10,000폰드의 방사의 가치는 첫째로, 소비된 생산자는 P의 가치를 포함하고있는데 그중 불변부분은 372파운드, 가변부분은 50파운드이며 그 합계는 422파운드로서 8,440폰드의 실에 상당하다. 그러나 생산자본 P의 가치는 W와 같다. 즉 G—W의 단계에서 판매자들의 수준에 있는 상품으로서 이 자본가에게 대립하였던 생산자본 형성요소들의 가치와 같다. 그런데 둘째로, 이 방사의 가치는 78파운드의 잉여가치를 포함하고있다. 이것은 1,560폰드의 방사에 상당하다. 그러므로 10,000폰드의 방사의 가치표현으로서의 W는 W+⊿W, 즉 W에 플루스 W의 증가분(=78파운드)과 같다. 이 증가분은 원가치 W가 지금 취하고있는것과 동일한 상품형태로서 존재하고있기때문에 이것을 W라고 부르자. 따라서 10,000폰드의 방사의 가치=500파운드는 W+w=W′이다. 10,000폰드의 방사의 가치표현으로서의 W를 W′로 되게 하는것은 W′의 절대적 가치량(500파운드)이 아니다. 왜냐 하면 이 가치량은 어떤 다른 상품량의 가치표현으로서의 다른 모든 W와 마찬가지로 그 상품량에 대상화되여있는 로동량에 의하여 규정되여있기 때문이다. W를 W′로 되게 하는것은 그 상대적가치량, 즉 W의 생산에 소비된 자본 P의 가치에 비한 그 가치량이다. 이 자본가치는 생산자본에 의하여 제공된 잉여가치를 더 가지고 W′의 가치량에 포함되여있다. W′의 가치는 이 잉여가치 w만큼 이 자본가치를 넘어서 더 크게 되여있다. 10,000폰드의 방사는 증식되며 잉여가치로 증대된 자본가치의 담당자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된것은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의 생산물로서이다. W′는 하나의 가치관계를 표현한다. 즉 상품생산물의 가치와 그 생산에 지출된 자본의 가치와의 관계를, 따라서 상품생산물의 가치가 자본가치와 잉여가치로 구성되여있다는것을 표현한다. 10,000폰드의 방사가 상품자본 W′인것은 오직 생산자본 P의 전화된 형태로서만이며 따라서 우선은 다만 이 개별자본의 순환중에 존재하는 련관속에서만이며 바꾸어말하면 자기의 자본으로써 방사를 생산한 자본가에 대하여서만이다. 가치의 담당자로서의 이 10,000폰드의 방사를 상품자본으로 되게 하는것은 말하자면 오직 내적관계에 불과하며 결코 어떠한 외적관계가 아니다. 이 방사가 자본주의적태반을 달고있는것은 그 가치의 절대량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그 가치의 상대량에 의하여서며 즉 그 방사에 포함되여있는 생산자본이 상품으로 전화되기전에 가지고있었던 가치량에 비한 이 실의 가치량에 의하여서다. 그러므로 만일 이 10,000폰드의 방사가 500파운드라는 그 가치대로 판매된다면 이 류통행위는 그자체로서 보면 W—G이며 어떤 불변한 가치가 단순히 상품형태로부터 화폐형태로 전화하는것이다. 그러나 한 개별적자본의 순환에서의 특수한 단계로서는 이 동일한 행위가 상품이 지니고있는 자본가치 422파운드+상품이 지니고있는 잉여가치 78파운드의 실현이며 따라서 W′—G′이며 상품형태로부터 화폐형태로의 상품자본의 전화이다.(4)

그런데 W′의 기능은 이제는 모든 상품생산물의 기능으로 된다. 즉 화폐로 전화되는것이며 판매되는것이며 류통단계 W—G를 통과하는것이다. 이미 증식된 자본이 상품자본의 형태

(4) 이상은 제6고에서. 이하는 제5고에서.

로 머물러있으며 시장에 정체되여있는 동안에 생산과정은 정지된다. 그 자본은 생산물형성자로서도 가치형성자로서도 작용하지 않는다. 자본이 그 상품형태를 내던지고 그 화폐형태를 취하는 속도가 다름에 따라 또는 판매되는 속도가 다름에 따라 동일한 자본가치가 매우 다른 정도에서 생산물형성자 및 가치형성자로서 작용할것이며 재생산의 규모도 확대되거나 또는 축소될것이다. 제1권에서 밝혀진바와 같이 소여자본의 작용정도는, 자본가치의 크기와는 어느 정도 독립한 생산과정의 잠재력에 의하여 제약되여있다.[27] 여기에서는 류통과정이 자본의 작용정도, 그 팽창 및 수축을 제약하는, 그리고 자본의 가치량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잠재력을 운동시킨다.

또 증식된 자본의 담당자로서의 상품량 W′는 그 전체가 변태 W′—G′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는 판매된 량이 본질적인 규정으로 된다. 개개의 상품은 총량의 구성부분의 역할을 할뿐이다. 500파운드의 가치는 10,000폰드의 방사속에 존재한다. 만약 자본가가 7,440폰드만을 그 가치대로 372파운드로 판매하게 된다면 그는 자기의 불변자본의 가치, 즉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만을 보상한것으로 된다. 만약 방사를 8,440폰드 판매하게 된다면 전체 선대자본의 가치량만을 보상한것으로 된다. 그는 잉여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더 많이 판매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 78파운드(=1,560폰드의 방사)라는 잉여가치를 전부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10,000폰드의 방사를 전부 판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그는 500파운드의 화폐로는 판매된 상품의 등가를 받을따름이다. 류통내부에서의 그의 거래는 단순한 W—G이다. 만일 그가 자기의 로동자들에게 임금으로 50파운드가 아니라 64파운드를 지불하였다면 그의 잉여가치는 78파운드가 아니라 64파운드

일것이며 착취도는 156%가 아니라 100%일것이다. 그러나 그의 실의 가치는 여전히 원래대로 남아있을것이며 다만 그 각이한 부분들의 비률만이 변할것이다. 류통행위 W—G는 여전히 10,000폰드의 실을 500파운드라는 그 가치대로 판매하는 것일것이다.

W′=W+w(=422파운드+78파운드). —W는 P의 가치 또는 생산자본의 가치와 같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생산 제 요소를 구매하는 G—W에 선대된 G의 가치와 같으며 우리의 례에서는 422파운드이다. 그 상품량이 그 가치대로 판매된다면 W=422파운드이며 w=78파운드, 즉 1,560폰드의 방사라는 잉여생산물의 가치와 같다. 화페로 표현된 w를 g라고 한다면 W′—G′=(W+w)—(G+g)로 되며 따라서 G—W…P…W′—G′라는 순환은 상세히 전개된 형태에서는 G—W<$^{A}_{Pm}$…P(W+w)—(G+g)로 된다.

제1단계에서 자본가는 사용대상을 본래의 상품시장과 로동시장으로부터 끌어내고 제3단계에서는 그는 상품을 다만 **하나의** 시장에, 본래의 상품시장에 도로 투입한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최초에 시장에 투입한것보다 더 큰 가치를 자기의 상품에 의하여 다시 시장으로부터 끌어낸다면 그것은 오직 그가 최초에 끌어낸것보다 더 큰 상품가치를 시장에 투입하기때문일따름이다. 과거에 그는 가치 G를 투입하고 동등한 가치 W를 끌어냈다. 이제는 그는 W+w를 투입하고 동등한 가치 G+g를 끌어낸다. —우리의 례에서 G는 8,440폰드의 방사의 가치와 같았다. 그런데 그는 10,000폰드의 방사를 시장에 투입하므로 그는 시장으로부터 얻은것보다 더 큰 가치를 시장에 주는것이다. 다른 한편 그가 이 증대된 가치를 시장에 투입한것은 오직 그가 생산과정에서 로동력의 착취에 의하여 잉여가치(생산물의 일정한 부분으로서의 잉여생산물에 표현된)를 생산하였

기때문이다. 다만 이 과정의 생산물로서만 상품량은 상품자본이며 증대된 자본가치의 담당자이다. W′—G′의 수행에 의하여 선대된 자본가치도, 잉여가치도 실현된다. 이 량자의 실현은 W′—G′로 표현되는, 총상품량의 여러번의 판매 또는 단꺼번의 판매에서 동시에 수행된다. 그러나 동일한 류통행정 W′—G′에서도 그것이 자본가치와 잉여가치의 각자에 대하여 그것들의 각이한 류통단계를 표현하는 한, 즉 그것들이 류통내부에서 통과하여야 할 변태계렬내에서의 각이한 단계를 표현하는 한, 자본가치의 경우와 잉여가치의 경우에 각이하다. 잉여가치 w는 생산과정내부에서 비로소 세상에 나왔다. 따라서 그것은 처음으로 상품시장에 나타나며 그것도 바로 상품형태로서 나타난다. 상품형태는 w의 최초의 류통형태이며 따라서 w—g라는 행위도 w의 최초의 류통행위 또는 그 최초의 변태이며 이 변태는 이제부터 반대의 류통행위 또는 거꾸로의 변태 g—w에 의하여 보충되여야 한다.(5)

자본가치 W가 동일한 류통행위 W′—G′에서 수행하는 류통은 이와는 다르다. 이 류통행위는 자본가치 W에 대하여서는 류통행위 W—G이며 여기에서는 W는 P와 같고 최초에 선대된 G와 같다. 이 자본가치는 그 최초의 류통행위를 G로서, 화폐자본으로서 개시하였다. 그리고 W—G라는 행위에 의하여 같은 형태로 돌아간다. 이리하여 그것은 (1) G—W와 (2) W—G라는 두개의 대립되는 류통단계들을 통과하여 다시 동일한 순환과정을 새로 개시할수 있는 형태를 취한다. 잉여가치에 대하여서는 상품형태로부터 화폐형태로의 최초의 전화인것이

---

(5) 이것은 자본가치와 잉여가치를 어떻게 구분하든간에 마찬가지이다. 10,000폰드의 방사에는 1,560폰드=78파운드의 잉여가치가 포함되여있는데 1폰드의 방사=1실링에도 역시 2.496온스=1.872펜스의 잉여가치가 포함되여있다.

자본가치에 대하여서는 그 최초의 화폐형태로의 복귀 또는 재전화이다.

화폐자본은 G—W<$^{A}_{Pm}$에 의하여 동등한 가치액의 상품들인 A와 Pm으로 전환되였다. 이 상품들은 다시는 상품들로서, 판매대상으로서는 기능하지 않는다. 이것들의 가치는 이것들의 구매자인 자본가의 수중에서 그의 생산자본 P의 가치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P의 기능인 생산적소비에서 이 상품들은 생산수단들과는 소재적으로 상이한 하나의 상품종류인 방사로 전화되며 이 방사에서 그 상품들의 가치가 보존될뿐만아니라 422파운드로부터 500파운드로 증대된다. 이 현실적인 변태에 의하여 제1단계 G—W에서 시장으로부터 끌려나온 상품들은 소재적으로나 가치적으로나 다른 상품들로 대체된다. 이제는 이 상품들이 상품으로서 기능하여야 하며 화폐로 전화되여야 하며 판매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생산과정은 자본가치의 류통과정의 중단으로서만 나타나며 여기까지는 류통과정중에서 제1단계 G—W가 통과되고있을뿐이다. 자본가치는 W가 소재적으로나 가치적으로나 변화된후에야 제2의 종결적인 단계 W—G를 통과한다. 그러나 자본가치를 그자체로서 고찰한다면 그것은 생산과정에서 그 사용형태의 변화를 받을뿐이다. 그것은 A와 Pm에 422파운드의 가치로서 존재하고있었는데 이제는 8,440폰드의 방사의 422파운드의 가치로서 존재하고있다. 따라서 잉여가치로부터 분리하여 생각한 자본가치의 류통과정의 두 단계만을 본다면 이 자본가치는 (1) G—W와 (2) W—G를 통과하며 이 경우에 제2의 W는 제1의 W에 비하여 사용형태는 변하였지만 가치는 동일하다. 따라서 자본가치는 G—W—G를 통과하는데 이 류통형태는 화폐로부터 상품으로의 전화와 상품으로부터 화폐로의 전화라는 반대방향

으로의 상품의 두번에 걸치는 장소변경에 의하여, 화폐로서 선대된 가치의 화폐형태로의 복귀, 즉 그 화폐로의 재전화를 필연적인것으로 되게 한다.

화폐로 선대된 자본가치에 대하여서는 제2의 종결적인 변태이며 화폐형태로의 복귀인 그 동일한 류통행위 W′—G′는 동시에 상품자본에 의하여 함께 지니며 상품자본의 화폐형태로의 전환에 의하여 실현되는 잉여가치에 대하여서는 제1의 변태, 상품형태로부터 화폐형태로의 전화, W—G이며 제1의 류통단계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두가지 사정에 대하여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자본가치가 그 최초의 화폐형태로, 최후로 재전화하는것은 상품자본의 기능이다. 둘째로, 이 기능은 최초의 상품형태로부터 화폐형태로의 잉여가치의 제1의 형태전화를 포함하고있다. 따라서 화폐형태는 여기에서 이중의 역할을 논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최초에 화폐로 선대된 가치의 복귀형태이며 따라서 과정을 개시한 가치형태로의 복귀이다.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처음에 상품형태로써 류통에 들어가는 가치의 제1의 전화형태이다. 상품자본을 구성하는 상품들이 여기에서 전제되고있는바와 같이 그 가치대로 판매된다면 W+w는 동등한 가치의 G+g로 전화된다. 이 G+g(422파운드+78파운드=500파운드)라는 형태에 있어서 실현된 상품자본이 이제는 자본가의 수중에 존재한다. 자본가치와 잉여가치는 이제는 화폐로서, 따라서 일반적등가형태로서 존재한다.

이리하여 과정의 종말에서 다시 자본가치는 그것이 과정에 들어간 때와 동일한 형태에 있으며 따라서 다시 화폐자본으로서 과정을 개시하고 통과할수 있다. 바로 과정의 출발형태도, 종말형태도 화폐자본 (G)의 형태이기때문에 순환과정

의 이 형태를 우리는 화폐자본의 순환이라고 부르는것이다. 과정의 종말에서 변화되여있는것은 선대된 가치의 형태가 아니라 다만 그 크기이다.

G+g는 일정한 크기의,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500파운드 화폐액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자본의 순환의 결과로서는, 상품자본이 실현된것으로서는 이 화폐액은 자본가치와 잉여가치를 포함한다. 게다가 이 자본가치와 잉여가치는 이제는 방사에서처럼 서로 유착되여있지는 않다. 그것들은 이제는 병존하고있다. 그것들의 실현이 그것들의 각자에게 독립적인 화폐형태를 부여하였다. 그 화폐액의 $\frac{211}{250}$은 422파운드의 자본가치이며 $\frac{39}{250}$는 78파운드의 잉여가치이다. 상품자본의 실현에 의하여 일어난 이 분리는 이제 곧 언급하게 될 형태상의 의미만을 가지는것이 아니다. 이 분리는 g가 G에 전부 첨가되는가, 일부분만 첨가되는가 또는 전혀 첨가되지 않는가에 따라, 즉 g가 선대자본가치의 구성부분으로서 계속 기능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라 자본의 재생산과정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g와 G의 류통은 또한 전혀 다를수도 있다.

G′에서 자본은 또다시 그 최초형태 G로, 그 화폐형태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 복귀는 그것이 자본으로서 실현되여있는 형태에서이다.

첫째로, 거기에는 량적차이가 있다. 자본은 G였으며 422파운드였다. 그것은 이제는 G′이며 500파운드이다. 그리고 이 차이는 량적으로 상이한 순환의 량극 G…G′에 표현되고있으며 순환의 운동자체는 다만 점선…으로 표시되여있을뿐이다. G′>G이며 G′−G=M, 즉 잉여가치이다. —그러나 이 순환 G…

G′의 결과로서 이제는 다만 G′가 있을뿐이다. 그것은 생산물이며 생산물에서는 그 형성과정이 소멸되여있다. G′는 이제는 그자체로서 독립하여 그것을 낳은 운동과는 관계없이 존재하고있다. 운동은 지나갔으며 그대신 G′가 거기에 존재한다.

그러나 G+g로서의 G′, 즉 422파운드의 선대자본 플루스 그 증가분 78파운드로서의 500파운드는 동시에 하나의 질적인 관계를 표시한다. —비록 이 질적관계자체는 다만 동일한 명칭의 총액의 부분들간의 관계로서만, 따라서 량적인 관계로서만 존재하는것이지만, 이제는 다시 그 최초의 형태(422파운드)로 존재하는 선대자본 G는 지금은 실현된 자본으로서 존재한다. 그것은 다만 보존되여있을뿐만이 아니라 또한 자본으로서 실현되여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자본으로서 g(78파운드)와 구별되기때문이다. 이 g에 대한 G의 관계는 **자기의** 증식분, **자기의** 열매에 대한, G자체가 낳은 증가분에 대한 관계이다. G가 자본으로서 실현된것은 가치를 낳은 가치로서 실현되였기때문이다. G′는 자본관계로서 존재한다. G는 이미 단순한 화폐로서 나타나는것이 아니라 명확히 화폐자본으로서 정립되여있다. 즉 자기를 증식시킨 가치로서, 따라서 또 자기를 증식시키는, 즉 자기가 가지고있는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낳는 속성을 가지는 가치로서 표현되고있다. G는 G′의 다른 한 부분에 대한 관계에 의하여 자본으로서 정립되여있다. 그리고 G′의 다른 한 부분이라는것은 G에 의하여 정립된것이며 G를 원인으로 하여 산생된것이며 G를 원인으로 하는 결과이다. 그리하여 G′는 자체속에서 분화된 가치총액, 그자체속에서 기능적으로(개념적으로) 구별되는 가치총액으로서, 자본관계를 표현하는 가치총액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이 관계는 다만 결과로서, 이 결과를 낳는 과정

의 매개없이 나타나고있을뿐이다.

가치의 여러 부분들은 그것들이 각이한 물품들, 즉 구체적물건들의 가치로서, 따라서 각이한 사용형태로 있는 가치로서, 따라서 각이한 상품체들의 가치로서 나타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자체들로서는 질적으로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 —이러한 구별은 단순한 가치부분들로서의 그 부분들자체로부터는 생기지 않는 구별이다. 화폐에서는 상품들의 모든 차이가 사라진다. 왜냐 하면 화폐는 바로 모든 상품들에 공통한 등가형태이기때문이다. 500파운드의 화폐액은 1파운드라는 동일한 명칭의 요소들로써 구성되여있다. 이 화폐총액의 단순한 존재에서는 그 유래의 매개가 사라졌으며 자본의 각이한 구성부분들이 생산과정에서 가지는 특수한 차이들의 모든 흔적이 사라졌기때문에 구별은 이제는 다만 422파운드의 선대자본과 같은 본전(영어로는 Principal)과 78파운드의 초과가치액이라는 개념적형태로 존재할뿐이다. 례컨대 G′는 110파운드이며 그중 100은 본전 G이며 10은 잉여가치 M이라고 하자. 110파운드라는 총액의 두 구성부분간에는 절대적동종성, 따라서 개념적무차별성이 있다. 어느 10파운드나 다 총액 110파운드의 $\frac{1}{11}$이며 그것이 선대된 본전 100파운드의 $\frac{1}{10}$이든 또는 본전을 넘는 10파운드이라는 초과액이든간에 그것은 변함없다. 그러므로 본전과 증가액, 자본과 잉여액은 총액의 분수로서 표현될수 있다. 우리의 례에서는 $\frac{10}{11}$이 본전 또는 자본을 이루고있으며 $\frac{1}{11}$이 잉여액을 이루고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과정의 종말에서 실현된 자본이 그 화폐적표현으로서 나타나는것은 자본관계의 무개념적표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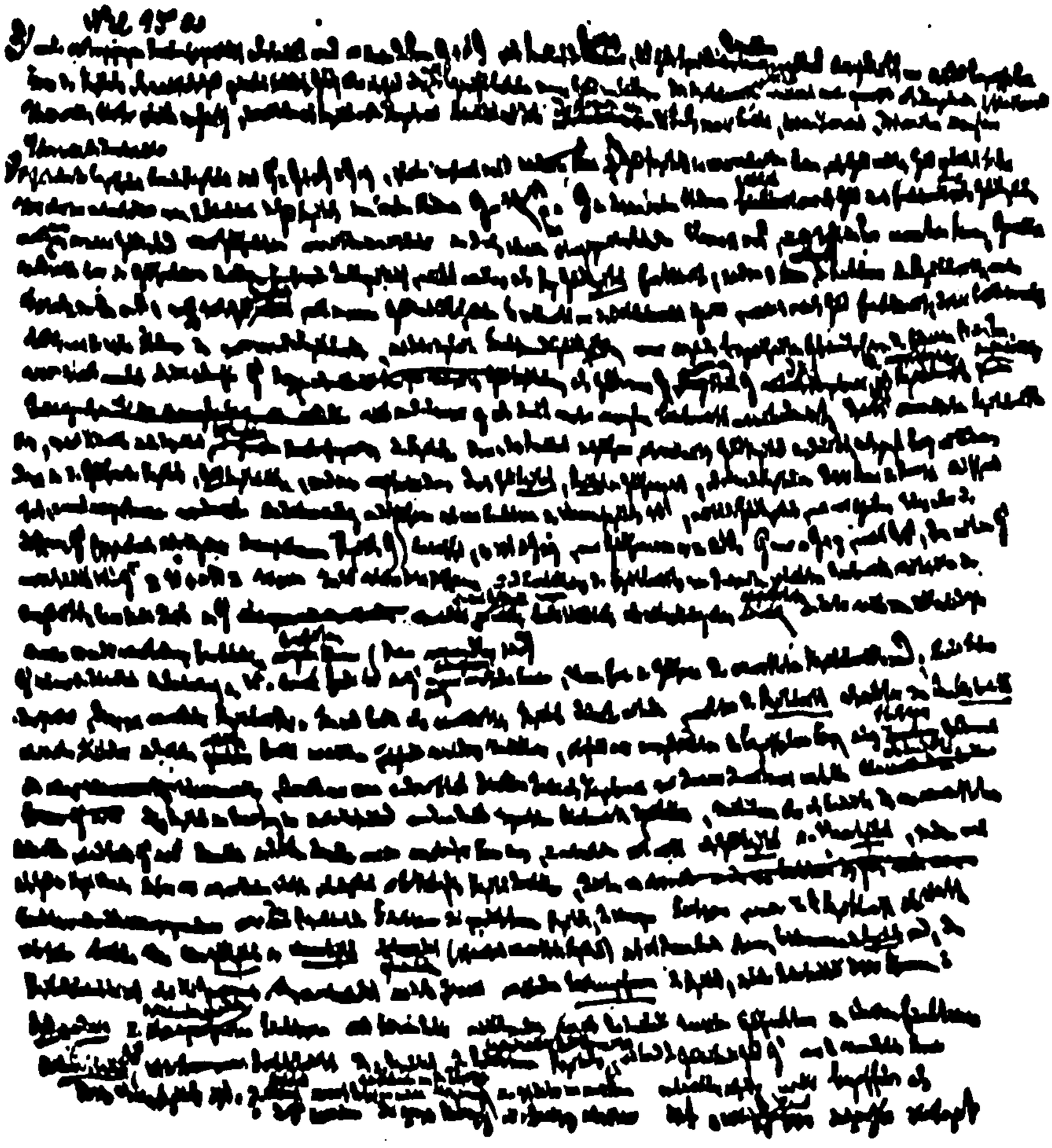
물론 이것은 W′(=W+w)에 대하여서도 적용된다. 그러나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즉 W′에서도 W와 w는 역시 동일한 동종상품량의 비례적가치부분들을 표시할따름이지만 W′는 자기가 그 직접적생산물로서 나오는 자기의 기원 P를 표시하고있는데 직접 류통으로부터 나온 형태인 G′에서는 P와의 직접적인 관계는 사라져버린것이다.

G′가 G…G′라는 운동의 결과를 표현하는 한에서는 G′에는 본전과 증가액의 무개념적차별이 포함되는데 이 차별은 G′가 적극적으로 화폐자본으로서 다시 기능하게 되면, 따라서 그와는 반대로 증식된 산업자본의 화폐적표현으로서 고정되지 않게 되면 곧 사라진다. 화폐자본의 순환은 결코 G′로 시작될수 없으며(G′가 이제는 G로서 기능한다 하더라도) 오직 G로써만 시작될수 있다. 즉 그것은 결코 자본관계의 표현으로서는 시작될수 없으며 오직 자본가치의 선대형태로서만 시작될수 있다. 500파운드가 새로 가치증식을 위하여 새로 자본으로서 선대된다면 그것은 복귀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422파운드의 자본대신에 이제는 500파운드의 자본이, 즉 이전보다 더 많은 화폐가, 더 큰 자본가치가 선대되여있으나 두 구성부분들간의 관계는 사라졌으며 마치도 최초에 422파운드가 아니라 500파운드의 금액이 자본으로서 기능할수 있었던것과 같다.

자기를 G′로서 표시하는것은 화폐자본의 적극적인 기능이 아니다. 그자신을 G′로 표시하는것은 오히려 W′의 기능이다. 이미 단순한 상품류통 (1) W_1—G (2) G—W_2에서도 G는 제2행위 G—W_2에서 비로소 적극적으로 기능한다. 그것이 G로서 표시되는것은 오직 제1행위의 결과일따름이며 이 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그것은 W_1의 전화형태로서 나타난다. G′에 포함

되는 자본관계, 즉 G′중의 자본가치로서의 한부분이 그 가치증가분으로서의 다른 부분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는 순환 G…G′의 부단한 반복에서 G′가 자본류통과 잉여가치류통이라는 두 류통으로 분렬되며 따라서 두 부분이 량적으로뿐만아니라 질적으로도 상이한 기능들을 수행하며 G가 g와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한에 있어서는 물론 기능적의의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그자체로서 본다면 G…G′라는 형태는 자본가의 소비를 포함하지 않으며 명확히 다만 자기 증식과 축적을, 그것도 우선 부단히 반복하여 선대되는 화폐자본의 주기적인 증대로 표현되는 한에 있어서의 축적을 포함할따름이다.

G′=G+g는 비록 자본의 무개념적형태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비로소 실현된 형태에 있는 화폐자본이며 화폐를 낳은 화폐로서의 화폐자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제1단계 G—W<$^{A}_{Pm}$에서의 화폐자본의 기능과 구별하여야 한다. 이 제1단계에서는 G는 화폐로서 류통한다. 그것이 화폐자본으로서 기능하는것은 다만 그것이 화폐상태에 있지 않으면 화폐기능을 수행할수 없으며 상품으로서 그에 대립하는 P의 요소들, 즉 A와 Pm으로 전화될수 없기때문이다. 이 류통행위에서는 그것은 다만 화폐로서 기능할뿐이다. 그러나 이 행위가 자본가치의 과정진행중의 제1단계이기때문에 그것은 또한 동시에 거기서 구매되는 상품 A와 Pm의 특수한 사용형태로 말미암아 화폐자본의 기능인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자본가치 G와 이것에 의하여 생산된 잉여가치 g로써 구성된 G′는 증식된 자본가치를, 자본의 총순환과정의 목적과 결과를, 이 과정의 기능을 표현한다. G′가 이 결과를 화폐형태로, 실현된 화폐자본으로 표현한다는것은 G′가 자본의 화폐형태이며 **화폐**자본



맑스의 《자본론》 제2권원고의 한페지

이라는 점에서 나오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것이 화폐자본이며 화폐형태에 있는 자본이라는 점에서, 자본이 이 형태로 과정을 개시하였다는 점에서, 즉 화폐형태로 선대되여있다는 점에서 나온다. 우리가 이미 본바와 같이 화폐형태로의 재전화는 상품자본 W′의 기능이고 화폐자본의 기능은 아니다. 그런데 G′와 G와의 차액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 차액(g)은 W의 증가분 w의 화폐형태에 불과하다. G′=G+g인것은 다만 W′=W+w였기때문이다. 따라서 W′에게서는 이 차액도, 자본가치와 그것에 의하여 산생된 잉여가치와의 관계도 이 량자가 G′로 전화되기전에 존재하며 표현되여있다. 즉 이 G′라는 화폐액중에서 두 가치부분이 독립적으로 서로 대립하여 나타나며 따라서 또 서로 각이한 독립적인 기능들에 사용될수 있는 모습으로 되기전부터 이미 존재하며 표현되여있는것이다.

G′는 W′의 실현의 결과에 불과하다. W′도 G′도 량자가 다 증식된 자본가치의 각이한 형태, 그 상품형태와 화폐형태에 있을뿐이며 이 증식된 자본가치라는 점은 이 량자에 공통하다. 량자는 다 실현된 자본이다. 왜냐 하면 여기에서는 자본가치자체가 그것과는 다른, 그것에 의하여 획득된 과실로서의 잉여가치와 함께 존재하고있기때문이다. —비록 이 관계는 다만 어떤 화폐액 또는 어떤 상품가치의 두 부분간의 관계라는 무개념적형태로 표현되고있을따름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자본에 의하여 생산된 잉여가치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또 그것과 구별되는것으로의 자본의 표현으로서는, 따라서 증식된 가치의 표현으로서는 G′와 W′는 동일한것이며 동일한것을 표현하고있으며 다만 그것을 각이한 형태로 표현하고있을따름이다. 그것들은 화폐자본과 상품자본으로서가 아니라 화폐와 상품으로서 서로 구별된다. 그것들이 증식된 가

치를 표시하며 자본으로서 실증된 자본을 표시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것들은 다만 생산자본의 기능, 즉 자본가치가 가치를 낳는 유일한 기능의 결과를 표현할뿐이다. 그것들의 공통점은 그것들 량자가, 즉 화폐자본과 상품자본이 자본의 존재방식이라는것이다. 일방은 화폐형태에 있는 자본이며 타방은 상품형태에 있는 자본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구별하게 하는 특수한 기능은 화폐기능과 상품기능간의 차이이외의 아무것일수도 없다. 상품자본은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의 직접적생산물로서 이러한 그 기원을 상기시키며 따라서 그것의 형태에 있어서 화폐자본보다 더 합리적이며 더 적게 무개념적이다. 화폐자본에 있어서는 이 과정의 온갖 흔적이 사라졌으며 그것은 마치 대체로 화폐에서는 상품의 특수한 사용형태는 죄다 사라진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G′자체가 상품자본으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만, 즉 G′가 하나의 생산과정의 직접적생산물이고 이 생산물의 전화형태가 아닌 경우에만 그 기이한 형태가 없어진다. —따라서 화폐재료자체의 생산에서는 그것이 없어진다. 례컨대 금생산에 있어서는 공식은 G—W $<^{A}_{Pm}$…P…G′(G+g)로 될것이다. 여기서는 G′가 상품생산물의 역할을 한다. 왜냐 하면 P는 최초의 G, 즉 화폐자본으로서의 금의 생산요소들을 위하여 선대된것보다 더 많은 금을 제공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어떤 화폐액의 한 부분이 동일한 화폐액의 다른 한 부분의 모체로 나타나는 G…G′(G+g)라는 표현의 불합리성이 없어진다.

4. 총 순 환

이미 본바와 같이 류통과정은 그 제1단계 G—W<A_{P_m}을 끝낸 다음 P에 의하여 중단되며 P에서는 시장에서 구매된 상품 A와 Pm이 이번에는 생산자본의 소재적 및 가치적 구성부분으로서 소비된다. 이 소비의 생산물은 소재적으로나 가치적으로나 변화된 새로운 상품 W′이다. 중단된 류통과정 G—W는 W—G에 의하여 보충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 제2의 종결적인 류통단계의 담당자로서 나타나는것은 W′이며 제1의 W와는 소재적으로나 가치적으로나 상이한 상품이다. 따라서 류통의 계렬은 (1) G—W_1, (2)W'_2 —G′로서 나타나며 여기서는 제2단계에서 제1의 상품 W_1은 그것보다 가치가 크고 사용형태도 같지 않은 다른 상품 W'_2와 교체되는데 이 교체는 P의 기능에 의하여 일어난 중단기간에, 즉 생산자본 P의 존재형태로서의 W의 요소들로부터 W′가 생산되는 동안에 일어난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자본이 우리앞에 나타난 최초의 현상형태(제1권, 제4장, 제1절) G—W—G′(이것은 (1) G—W_1과 (2) W_1—G′로 분해된다.)에서는 동일한 상품이 두번 나타난다. 제1단계에서 화폐가 전화되는 상품이나 제2단계에서 더 많은 화폐로 재전화되는 상품이나 다 동일한 상품이다. 두 류통의 이러한 본질적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류통에 공통한 점은 그 제1단계에서는 화폐가 상품으로 전화되며 제2단계에서는 상품이 화폐로 전화된다는 점 따라서 제1단계에서 지출된 화폐가 제2단계에서 다시 환류한다는 점이다. 두 류통에는 한편에서는 이와 같이 화폐가 그 출발점으로 환류한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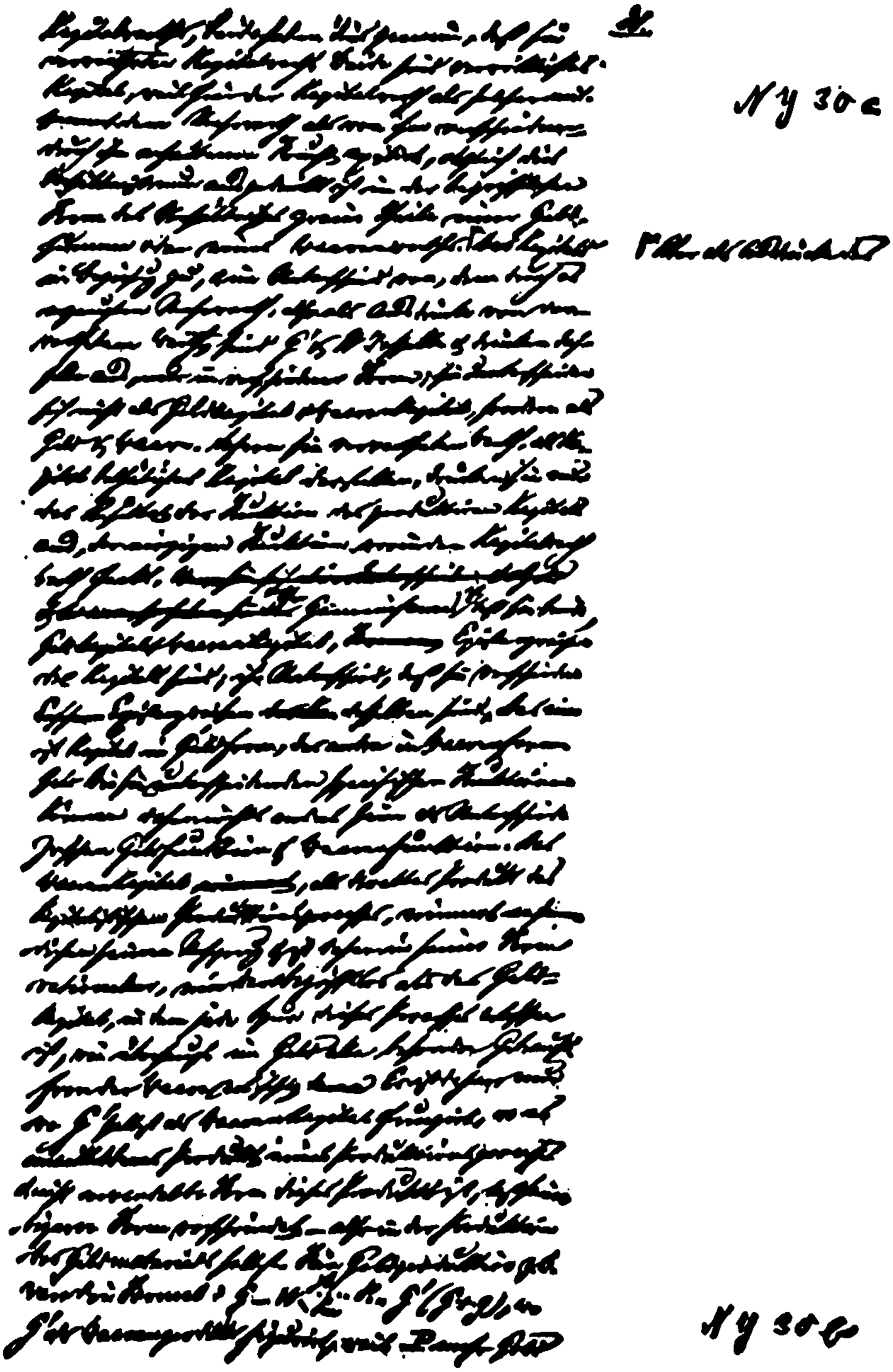
점이 공통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또 환류하는 화폐가 선대된 화폐를 초과한다는 점이 공통하다. 그러한 한에 있어서 G—W…W′—G′도 일반적공식 G—W—G′에 포함되여 나타난다.

또 여기에서 명백한것은 류통에 속하는 두 변태 G—W와 W′—G′에서는 동등한 크기의 동시에 존재하는 가치존재가 서로 대립하고 서로 대체한다는 점이다. 가치의 변화는 다만 변태 P, 즉 생산과정에서만 일어나며 따라서 생산과정은 류통의 단순한 형식적인 변태와는 반대로 자본의 현실적인 변태로서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총운동 G—W…P…W′—G′ 또는 그의 상세히 전개된 형태 $G—W<^{A}_{P_m}…P…W′(W+w)—G′(G+g)$를 고찰하자. 여기에서 자본은 서로 관련되고 서로 제약하는 일련의 전화, 즉 각기 한 총과정의 제 국면 또는 제 단계를 이루는 일련의 변태들을 경과하는 가치로서 나타난다. 이 단계들중 둘은 류통분야에 속하며 하나는 생산분야에 속한다. 이 매개 단계에서 자본가치는 각이한 모습을 취하고있으며 이 각이한 모습에는 각이한 특수한 기능이 대응한다. 이 운동에서 선대된 가치는 보존될뿐만 아니라 장성하며 그 량을 증대시킨다. 마지막으로 종말단계에서 선대된 가치는 총과정의 출발점에 나타났을 때와 같은 형태로 되돌아온다. 그러므로 이 총과정은 순환과정이다.

자본가치가 그 류통단계에서 취하는 두개의 형태는 **화폐자본**의 형태와 **상품자본**의 형태이며 생산의 단계에 속하는 그 형태는 **생산자본**의 형태이다. 그 총순환의 행정에서 이 형태들을 취하였다가 다시 버리며 이 매개 형태에서 그 형태에 대응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본은 **산업자본**이다. 여기에서 산업이라고 하는것은 자본주의적으로 경영되는 온갖 생산부문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말하는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화폐자본, 상품자본, 생산자본은



엥겔스가 편집하였고 전서한 《자본론》 제2권 원고의 한페지

독립적인 자본종류, 즉 기능들이 마찬가지로 독립적이며 서로 분리된 영업부문들의 내용을 이루는 그러한 독립적자본종류를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이러한 자본은 여기에서는 다만 산업자본의 특수한 기능형태들을 나타낼뿐이며 산업자본은 이 세 형태들을 순차로 취하는것이다.

자본의 순환은 한 단계로부터 다음 단계로 정체없이 넘어가는 한에서만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자본이 제1단계 G—W에서 정체된다면 화폐자본은 응고되여 축장화폐로 된다. 자본이 생산단계에서 정체된다면 한편에서는 생산수단들이 기능하지 않고 잠자게 되며 다른편에서는 로동력이 실업상태에 처하게 된다. 자본이 마지막단계인 W′—G′에서 정체된다면 팔리지 않고 쌓인 상품들이 류통의 흐름을 차단한다.

다른 한편 순환자체가 순환의 개별적단계들에서 일정한 기간 자본이 고착할것을 필연적인것으로 되게 한다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산업자본은 그 매개 단계에서 일정한 형태에—화폐자본, 생산자본, 상품자본으로서—속박되여있다. 산업자본은 매개의 단계에 그것이 취하고있는 형태에 상응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음에만 새로운 전화단계에 들어갈수 있는 형태를 획득한다. 이것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우리의 례에서는 생산단계에서 생산된 상품량의 자본가치는 최초에 화폐로서 선대된 가치의 총액과 같다고 가정하였다. 바꾸어말하면 화폐로서 선대된 자본가치가 전부 단번에 한 단계에서 그때그때의 다음단계로 들어간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이미 본바와 같이(제1권, 제6장) 불변자본의 일부분인 본래의 로동수단(례컨대 기계)은 동일한 생산과정이 다소간에 수차 반복되는 동안 부단히 반복적으로 복무하며 따라서 또 그 가치를 다만 조금씩 생산물에 이전한다. 이 사정이 어느 정도로

자본의 순환과정을 변화시키는가 하는것은 후에 보게 될것이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만을 지적하면 충분하다. 우리의 례에서 생산자본의 가치=422파운드는 공장건물, 기계 등등의 평균적으로 계산된 마멸분만을 포함하고있었다. 즉 10,600폰드의 면화를 10,000폰드의 방사로 전화할 때에 이러한 로동수단이 매주 60시간의 방적과정의 생산물로서의 이만큼한 방사에 이전하는 가치부분만을 포함하고있었다. 따라서 선대불변자본 372파운드가 전화되는 생산수단중에서 건물이나 기계 등등의 로동수단은 마치도 시장에서 매주 분할지불로 임차되는데 불과한것 같았다. 그러나 이것은 사태의 본질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1주일간에 생산되는 방사량 10,000폰드에다가 일정한 해수동안의 주일수를 승하기만 하면 구매되여 이 기간에 소비된 로동수단들의 전체 가치가 방사에 이전되는가를 알수 있다. 그다음에 또 명백한것은 선대된 화폐자본은 생산자본 P로서 기능할수 있기전에 우선 이 로동수단들로 전화되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제1단계 G—W를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이다.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례에서 명백한것은 생산과정중에 방사에 합체된 자본가치액 422파운드는 방사가 되기전에는 10,000폰드의 방사의 가치구성부분으로서 류통단계 W′—G′에 들어갈수 없다는것이다. 방사는 그것이 방적되기전에는 판매될수 없는것이다.

일반적공식에서는 P의 생산물은 생산자본의 요소들과는 물질적으로 다른 물건으로 여긴다. 즉 생산과정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를 가지며 생산요소들의 사용형태와는 다른 사용형태를 가지는 대상으로 여긴다. 생산과정의 결과가 물건으로서 나타나는 경우는 언제나 그러하며 생산물의 일부분이 새로 반복되는 생산에 다시 요소로서 들어가는 경우에도 역시

그러하다. 례컨대 곡물은 종자로서 곡물자체의 생산에 복무한다. 그러나 생산물은 오직 곡물로서만 이루어지며 따라서 함께 사용된 다른 요소들인 로동력, 도구, 비료와는 다른 모습을 가진다. 그런데 생산과정의 생산물이 새로운 대상적인 생산물이 아니며 상품이 아닌 독립적인 산업부문들이 있다. 이러한 부문들중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것은 교통업뿐인데 그것은 상품과 사람들을 수송하는 본래의 운수업일수도 있고 단순히 보도, 서신, 전보 등등의 전달일수도 있다.

이에 관하여 A. 츄쁘로브(6)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공장주는 우선 물품을 생산하고 그런 다음에 그 소비자를 찾을 수 있다.》

(그의 생산물은 완성품으로서, 생산과정으로부터 밀려나온후에 생산과정에서 분리된 상품으로서 류통으로 넘어간다.)

《그리하여 생산과 소비는 공간적 및 시간적으로 분리된 두개의 행위로서 나타난다. 새로운 생산물은 만들지 않고 다만 사람들과 물건들을 이전시키는 운수업에서는 이 두 행위가 일치한다. 철도의 봉사(장소변경)는 그것이 생산되는 그 동일한 순간에 소비된다. 그러므로 철도가 고객을 구할수 있는 지역은 기껏해야 철도연선 량측 50웨르스타[53키로메터]에 미칠뿐이다.》

그 결과는—사람이 수송되든 상품이 수송되든간에—그것들이 존재하는 장소를 변경하는것이다. 례컨대 방사가 이제는 그 생산지인 영국에 있는것이 아니라 인도에 있다는 사실이다.

---

(6) A. 츄쁘로브《철도경제》, 1875년 모스크바판, 69~70페지

그런데 운수업이 판매하는것은 장소변경 그자체이다. 그것이 산생한 유용효과는 운수과정, 즉 운수업의 생산과정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여있다. 사람이나 상품은 운수수단과 함께 려행한다. 그리고 바로 운수수단의 려행, 그 장소적운동이 운수수단에 의하여 생기는 생산과정이다. 그 유용효과는 오직 생산과정중에서만 소비될수 있다. 그것은 이 과정과 다른 사용물로서 존재하는것이 아니다. 즉 생산된 다음에야 비로소 거래품으로서 기능하며 상품으로서 류통하는 사용물로서 존재하는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유용효과의 교환가치는 다른 모든 상품의 교환가치와 마찬가지로 그 유용효과를 위하여 소비된 생산요소들(로동력과 생산수단)의 가치 플루스 운수업에 고용된 로동자들의 잉여로동이 창조한 잉여가치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 유용효과는 그 소비에 있어서도 다른 상품들의 소비와 완전히 마찬가지이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소비된다면 그 가치는 소비와 함께 소멸되며 그것이 생산적으로 소비된다면, 즉 그자체가 수송중에 있는 상품의 하나의 생산단계라면 그 가치는 추가적가치로서 그 상품 자체에 이전된다. 그러므로 운수업에 있어서의 공식은 $G-W<^{A}_{P_m}\cdots P-G'$로 된다. 왜냐 하면 여기서는 생산과정으로부터 분리될수 있는 생산물이 아니라 생산과정 그자체가 지불되고 소비되기때문이다. 따라서 이 공식은 귀금속생산의 공식과 거의 전적으로 동일한 형태를 가지는데 다만 운수업에서는 G'는 생산과정중에서 산생된 유용효과의 전화형태이고 생산과정중에서 산생되여 이 과정으로부터 밀려나온 금 또는 은의 현물형태가 아니다.

산업자본은 자본의 존재방식중에서 잉여가치 또는 잉여생산물의 취득뿐만아니라 동시에 그것의 창조도 자본의 기능으로 되는 그러한 유일한 존재방식이다. 그러므로 산업자본은 생산

의 자본주의적성격을 조건짓는다. 산업자본의 존재는 자본가와 임금로동자간의 계급적대립의 존재를 포함하고있다. 산업자본이 사회적생산을 지배하는 정도에 따라 로동과정의 기술과 사회적조직이 변혁되며 따라서 또 사회의 경제적—력사적류형도 변혁된다. 산업자본이전에 이미 지나갔거나 또는 몰락하고있는 사회적생산상태들중에 출현하였던 다른 종류의 자본은 산업자본에 종속되고 자기의 기능기구를 산업자본에 적응되게 변화할 뿐만아니라 다만 산업자본을 기초로 하여서만 운동하게 되며 따라서 그들자신의 이 기초와 생사존망을 같이하게 된다. 화폐자본과 상품자본은 그것들의 기능에 의하여 독자적인 사업부문의 담당자로서 산업자본과 나란히 등장하는 한에 있어서는 다만 산업자본이 류통분야에서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각이한 기능형태들의 사회적분업에 의하여 독립화되고 일면적으로 형성된 존재방식들에 지나지 않는다.

순환 G…G′는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상품류통과 엉키여있으며 거기로부터 나와 거기로 들어가며 그 일부분을 이룬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순환은 개별적자본가에 대하여 자본가치의 특유한 독립적인 운동을 이루고있으며 이 운동은 일부분은 일반적상품류통의 내부에서 진행되며 일부분은 그 외부에서 진행되지만 언제나 그 독립적성격을 보존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정때문이다. 첫째로, 류통분야에서 진행되는 이 운동의 두 단계 G—W와 W′—G′는 자본운동의 단계들로서 기능적으로 규정된 성격을 가지고있다. 즉 G—W에서는 W가 로동력과 생산수단으로서 소재적으로 규정되여있으며 W′—G′에서는 자본가치+잉여가치가 실현된다. 둘째로, 생산과정 P는 생산적소비를 포괄하고있다. 셋째로, 화폐가 운동의 출발점으로 복귀하는것은 운동 G…G′를 그자체로서 종결되는 하나의 순환운동으로 만든다.

이리하여 한편으로는 각 개별적자본은 그 류통의 전반과 후반 G—W와 W′—G′ 두 단계에서 일반적상품류통의 한 동인으로 되며 이 류통에서 화폐가 아니면 상품으로서 기능하거나 또는 련결되여있으며 따라서 그자체가 상품세계의 일반적변태계렬중의 한 고리를 이룬다. 다른 한편 각 개별적자본은 일반적인 류통의 내부에서 자기자체의 독립적인 순환을 이루며 이 순환에서 생산분야는 하나의 통과단계를 이루며 또 각 자본은 출발당시와 동일한 형태로서 그 출발점으로 돌아온다. 동시에 각 개별적자본은 생산과정에서의 그 현실적인 변태를 포함하는 그 자체의 순환속에서 그 가치의 크기를 변화시킨다. 그것은 다만 화폐가치로서 돌아올뿐만아니라 증대되고 장성된 화폐가치로서 돌아온다.

끝으로 G—W…P…W′—G′를 후에 연구할 다른 형태들과 병렬되는 자본순환과정의 특수한 형태로서 고찰한다면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있다.

1) 이 공식은 **화폐자본의 순환**으로서 나타난다. 왜냐 하면 화폐형태에 있는 산업자본은 화폐자본으로서 그 총과정의 출발점과 귀착점을 이루기때문이다. 이 공식자체는 화폐가 여기에서는 화폐로서 지출되는것이 아니라 다만 선대될뿐이며 따라서 자본의 화폐형태, 즉 화폐자본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준다. 또 그것은 사용가치가 아니라 교환가치가 운동의 규정적인 자기 목적이라는것을 보여준다. 바로 가치의 화폐모습이 가치의 독립적인 손으로 잡을수 있는 현상형태이기때문에 현실적화폐를 출발점과 종점으로 하는 류통형태 G…G′는 돈벌이를, 자본주의적생산의 추진적동기를 가장 간단명료하게 보여준다. 생산과정은 돈벌이를 위하여 불가피한 중간고리로서, 돈벌이를 위한 죄악으로서 나타날따름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생산방

식하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주기적으로 현훈증에 걸려 생산과정의 매개없이 돈벌이를 하려고 발광한다.)

2) 생산단계, P의 기능은 이 순환에서 G—W…W′—G′라는 류통의 두개 단계의 중단을 이루는데 이 중단은 또 다만 단순한 류통 G—W—G′의 매개를 이루고있을뿐이다. 생산과정은 순환과정의 이 형태자체에서 형태적으로 또 명확히 자본주의적생산방식내에서 생산과정이 그러한것으로서, 즉 선대가치의 증식을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서 나타나며 따라서 그와 같은 치부 그자체가 생산의 자기 목적으로서 나타난다.

3) 단계들의 순서가 G—W로 시작되기때문에 류통의 둘째 고리는 W′—G′이다. 따라서 출발점은 G, 증식되여야 할 화폐자본이고 종점은 G′, 증식된 화폐자본 G+g이며 여기에서 G는 실현된 자본으로서 그의 자식인 g와 함께 나타난다. 이것이 순환 G를 다른 두 순환 P 및 W′로부터 구별하게 한다. 그것도 이중의 방식으로서이다. 한편으로는 량극의 화폐형태에 의하여서이다. 그리고 화폐는 가치의 독립적인, 손으로 잡을수 있는 존재형태이다. 즉 상품의 사용가치의 모든 흔적이 없어진, 독립적인 가치형태에 있는 생산물의 가치이다. 다른 한편으로 P…P라는 형태는 반드시 P…P′(P+p)로 되는것은 아니며 또 W′…W′라는 형태에서는 량극사이의 가치의 차는 전혀 볼수 없다.—따라서 공식 G…G′의 특징으로 되는것은 한편으로는 자본가치가 출발점을 이루며 증식된 자본가치가 귀착점을 이룬다는 사정, 따라서 자본가치의 선대가 전체 행동의 수단으로 나타나며 증식된 자본가치가 그 목적으로서 나타난다는 사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관계가 화폐형태, 즉 독립적인 가치형태로서 나타나며 따라서 화폐자본이 화폐를 낳는 화폐로서 나타난다는 사정이다. 가치에 의하여 잉여가치를 낳는것이 과정의 시초와 종결로서 나타나고있을뿐

만아니라 번쩍번쩍 빛나는 화폐형태로서 명백하게 나타나고있다.

4) G—W를 보충하며 종결시키는 단계 W′—G′의 결과로서의 G′, 즉 실현된 화폐자본은 화폐자본이 그 최초의 순환을 시작하였을 때와 완전히 동일한 형태에 있으므로 그 순환으로부터 나오면 증대된(축적된) 화폐자본 G′=G+g로서 다시 동일한 순환을 시작할수 있다. 그리고 순환이 반복될 때 g의 류통이 G의 류통으로부터 분리된다는것은 적어도 G—G′라는 형태에 있어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화폐자본의 순환은 그 한번의 모습만을 본다면 형태적으로는 가치증식과정 및 축적과정만을 나타낸다. 이 순환에서 소비는 다만 생산적소비로서 G—W<$_{Pm}^{A}$에 의하여 표현될뿐이며 개별적자본의 이 순환속에는 생산적소비만이 포함되여있을뿐이다. G—A는 로동자측에서 본다면 A—G 또는 G—W이다. 따라서 로동자의 개인적소비가 매개역할을 하는 류통 A—G—W(생활수단)의 제1단계이다. 제2단계 G—W는 이미 개별적자본의 순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이 순환에 의하여 준비되며 이 순환을 전제로 한다. 왜냐 하면 로동자가 자본가의 착취재료로서 언제나 시장에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그는 우선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개인적소비에 의하여 자기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이다. 그러나 이 소비자체는 여기에서는 자본에 의한 로동력의 생산적소비의 조건으로서만, 따라서 또 로동자가 그 개인적소비에 의하여 자기를 로동력으로서 유지하며 재생산하는 한에 있어서만 전제로 되여있다. 그리고 순환에 들어가는 본래의 상품 Pm은 다만 생산적소비를 위한 식료로 될뿐이다. A—G라는 행위는 로동자의 개인적소비를, 즉 생활수단이 그의 피와 살로 되는것을 매개한다. 물론 자본가도 자본가로서 기능하기 위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생활하고 소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하여서는 그는 사실상

로동자로서 소비하기만 하면 되며 그 이상의것은 류통과정의 이 형태에서는 전제로 되여있지 않다. 형태적으로는 그것조차도 표현되여있지 않다. 왜냐 하면 이 공식은 G′로써, 즉 증대된 화폐자본으로서 다시 곧 기능할수 있는 결과로써 종결되기때문이다.

W′—G′에는 W′의 판매가 직접 포함되여있다. 그러나 일방에서의 판매 W′—G′는 타방에서의 구매 G—W이다. 또 상품은 종국적으로는 다만 그 사용가치때문에 구매되여(중간판매들을 무시한다면) 소비과정에 들어가며 이 소비과정은 구매된 물품의 성질에 따라 개인적소비일수도 있고 생산적소비일수도 있다. 그러나 이 소비는 W′를 생산물로 하는 개별적자본의 순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 생산물은 바로 판매되여야 할 상품으로서 순환으로부터 밀려나온다. 이 W′는 분명히 타인의 소비를 위한것으로 되여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상주의[11](그 기초에는 공식 G—W…P…W′—G′가 있다.)의 변호인들에게서 다음과 같은 장황한 설교를 듣게 된다. 즉 거개의 자본가는 로동자로서만 소비하여야 하며 또 자본가적국민은 자국의 상품소비, 일반적으로 소비과정을 다른 우매한 국민들에게 맡기고 그 대신에 생산적소비를 자기의 필생의 과업으로 삼아야 한다는것이다. 이러한 설교는 흔히 그 형식에서나 내용에서나 교부들의 입에서 나오는것과 같은 금욕주의적훈계를 상기시킨다.

이와 같이 자본의 순환과정은 류통과 생산의 통일이며 이 량자를 포함한다. 왜냐 하면 G—W, W′—G′라는 두 단계가 다 류통과정이기때문에 자본의 류통은 일반적상품류통의 한 부분을 이룬다. 그러나 이 두 단계는 류통분야에뿐만아니라 생산분야에도 속하는 자본순환에서의 기능적으로 규정된 단계들로서는 자본은 일반적상품류통에서 그 독자적순환을 수

행한다. 일반적상품류통은 자본에 대하여 제1단계에서는 자본이 생산자본으로서 기능할수 있는 모습을 취하는데 복무하며 제2단계에서는 상품기능에서는 그 순환을 갱신할수 없는 자본이 그 상품기능을 벗어버리는데 복무하며 동시에 자본을 위하여 그자신의 자본순환을 자본에 붙은 잉여가치의 류통으로부터 분리시킬 가능성을 지어주는데 복무한다.

그러므로 화폐자본의 순환은 산업자본의 순환의 가장 일면적이며 따라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특징적인 현상형태인데 여기에서는 산업자본의 목적이며 추진적동기인 가치의 증식, 돈벌이 및 축적이 일목료연하게 표시되여있다.(보다 더 비싸게 팔기 위하여 산다.) 제1단계가 G—W이기때문에 생산자본의 구성부분들이 상품시장으로부터 오며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이 류통, 상업에 의하여 제약된다는 사실이 또한 명백하여진다. 화폐자본의 순환은 상품생산뿐만이 아니다. 그 순환자체가 류통을 통하여서만 성립되며 류통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류통에 속하는 형태인 G가 선대자본가치의 최초의 순수한 형태로서 나타난다는데서도 이미 명백하나 다른 두개의 순환형태에서는 그렇지 않은것이다.

화폐자본의 순환은 그것이 언제나 자체속에 선대가치의 증식을 포함하는 한에서는 역시 언제나 상업자본의 일반적표현이다. P…P에 있어서는 자본의 화폐적표현은 생산요소들의 가격으로서만 나타나고 따라서 계산화폐로서 표현된 가치로서만 나타나며 부기에서 이 형태로 기입된다.

새로 등장하는 자본이 처음에 화폐로서 선대되고 그후에 동일한 화폐형태로서 회수되는 한에서는 그 산업자본이 한 사업부문으로부터 다른 사업부문으로 이전되는 경우이든 또는 사업으로부터 철수되는 경우이든간에 G…G′는 산업자본의 순환

의 특수한 형태로 된다. 이 형태는 처음에 화폐형태로 선대되는 잉여가치의 자본기능도 포함하며 잉여가치가 그것이 나온 사업과는 다른 사업에서 기능하는 경우에 가장 명백하게 나타난다. G…G′는 어떤 자본의 최초의 순환일수도 있다. 그것은 최후의 순환일수도 있다. 그것은 사회적총자본의 형태로 간주될수 있다. 그것은 새로 투하되는 자본의 형태이다. 새로 투하되는것은 화폐형태로서 새로 축적된 자본이여도 좋고 또는 한 생산부문으로부터 다른 생산부문으로 이전되기 위하여 전부 화폐로 전화된 낡은 자본이여도 좋다.

화폐자본은 모든 순환에 항상 포함되는 형태로서, 바로 잉여가치를 낳는 자본부분, 즉 가변자본을 위하여 이 순환을 수행한다. 로임선대의 정상적형태는 화폐로써의 지불이다. 로동자는 그날 벌어 그날 살아가기때문에 이 과정은 짧은 기간마다 부단히 반복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로동자에 대하여 자본가는 부단히 화폐자본가로서, 그의 자본은 화폐자본으로서 대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에는 생산수단을 사거나 생산된 상품을 팔거나 하는 경우와는 달라서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결제(화폐자본의 대부분이 사실상 다만 상품형태로만 나타나며 화폐는 다만 계산화폐의 형태로만 나타나며 끝으로 현금은 차액을 결제하기 위하여서만 나타나는것과 같은것)는 실시될수 없다. 다른 한편 가변자본에서 발생하는 잉여가치의 일부분은 자본가에 의하여 그자신의 사적소비에 지출되는데 이 소비는 소매상업의 분야에 속하며 어떤 에돌이길을 경과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결국 현금으로, 잉여가치의 화폐형태로 지출된다. 잉여가치의 이 부분의 대소 여하는 사태를 조금도 변경시키지 못한다. 가변자본은 부단히 새로 로임으로 투하되는 화폐자본으로서 나타나며 (G—A) g는 자본가의 사적욕망을 충족

시키는데 지출되는 잉여가치로서 나타난다. 따라서 선대가변자본가치로서의 G와 그 증가분으로서의 g는 량자가 다 반드시 화폐형태로 보전되여 화폐형태로 지출된다.

공식 G—W…P…W′—G′는 그 결과가 G′=G+g라는데 의하여 그 형태에 기만을 내포하고있으며 환상적성격을 띠는데 이러한 성격은 선대되여 증식된 가치가 그 등가형태인 화폐로 존재한다는데로부터 생긴다. 이 공식에서 력점은 가치의 증식에 있는것이 아니라 이 과정의 **화폐형태**에 있으며 최초에 류통에 선대된것보다 더 큰 가치가 나중에 화폐형태로서 류통으로부터 끌려나온다는데 있으며 따라서 자본가에 속하는 금은량의 증대에 있다. 이른바 중금주의[28]는 단지 무개념적형태 G—W—G′의 표현에 불과하며 이 운동은 오직 류통에서만 진행될뿐이며 따라서 (1) G—W (2) W—G′라는 두 행위는 제2행위에서 W가 그 가치보다 높게 판매되며 그에 따라서 구매시에 류통에 투입한것보다 더 많은 화폐를 류통으로부터 끌어낸다는것에 의하여서만 설명될수 있다. 그러나 보다 발전된 중상주의의 기초에는 G—W…P…W′—G′가 유일한 형태로서 고정되여있으며 이 형태에서는 상품류통뿐만아니라 상품생산도 필연적요소로서 나타나는것이다.

G—W…P…W′—G′의 환상적성격과 이 형태에 대응하는 환상적해석이 나타나는것은 이 형태가 류동하고 부단히 반복되는 형태로서가 아니라 한번만의 형태로서 고정되는 경우이며 따라서 순환의 제 형태들의 하나로서가 아니라 순환의 유일한 형태로 간주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 형태는 그자체가 다른 형태들을 지시하고있다.

첫째로, 이 전체 순환은 생산과정자체의 자본주의적성격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그 기초로서 이 생산과정과 함께 그것에 의하여 제약된 특수한 사회상태를 전제로 한다. G—W=G—W$<^{A}_{Pm}$ 이

다. 그러나 이 G—A는 임금로동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따라서 또 생산자본의 일부로서의 생산수단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로동과정과 가치증식과정을, 이미 자본의 기능으로서의 생산과정을 전제로 한다.

둘째로, G…G′가 반복된다면 화폐형태로의 복귀도 제1단계에서의 화폐형태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인것으로 나타난다. G—W는 사라지고 P에 자리를 내준다. 부단히 반복하여 화폐로써 진행되는 선대는 부단히 화폐로서 돌아오는것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오직 순환에서 사라지는 계기들로서 나타난다.

셋째로,

G—W…P…W′—G′. G—W…P…W′—G. G—W…P… 등등.

이미 순환의 둘째번 반복에 있어서는 G의 둘째번 순환이 끝나기전에 P…W′—G′. G—W…P라는 순환이 나타난다. 그리하여 G의 그후의 모든 순환은 P…W′—G—W…P라는 형태하에서 고찰될수 있으며 따라서 최초의 순환의 제1단계로서의 G—W는 부단히 반복되는 생산자본의 순환의 일시적인 준비를 하는데 불과하며 그것은 처음으로 화폐자본의 형태로 투하되는 산업자본의 경우에 실제로 그러하다.

다른 한편 P의 제2순환이 끝나기전에 W′—G′. G—W…P… W′(요약하면 W′—W′) 이런 최초의 순환, 즉 상품자본의 순환이 그려져있다. 그리하여 제1형태는 이미 다른 두 형태를 포함하고있으며 화폐형태는 단순한 가치표현이 아니라 등가형태로서의, 즉 화폐로서의 가치표현인 한에 있어서는 사라져버린다.

마지막으로 새로 등장하여. 처음으로 G—W…P…W′—G′이란 순환을 그리는 하나의 개별적자본을 들여다본다면 G—W는 이

개별적자본이 통과하는 최초의 생산과정의 준비단계이며 선행자이다. 그러므로 이 G—W라는 단계는 전제되여있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산과정에 의하여 정립되며 또는 필연적인것으로 된다. 그러나 이것은 이 개별적자본에 대하여서만 타당하다.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 전제로 되여있는 한, 따라서 자본주의적생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사회상태에서는 산업자본순환의 일반적형태는 화폐자본의 순환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은 선행조건으로서 전제되여있다. 비록 새로 투하되는 산업자본의 최초의 화폐자본의 순환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이외에서는 그러하다.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의 부단한 존재는 순환 P…P가 부단히 반복되는것을 전제로 한다. 제1단계 G—W $<^{A}_{Pm}$ 에서도 이미 이 전제자체가 나타난다. 왜냐 하면 이 단계는 한편으로는 임금로동자계급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수단들의 구매자에게 있어서 제1단계 G—W인것이 그 판매자에게 있어서는 W′—G′이며 따라서 W′는 상품자본을, 따라서 또 자본주의적생산의 결과로서의 상품자체를 전제로 하며 따라서 또 생산자본의 기능을 전제로 하고있기때문이다.

제 2 장

생산자본의 순환

생산자본의 순환은 P…W′—G′—W…P라는 일반적공식을 가진다. 이 순환이 의미하는것은 생산자본의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기능, 즉 재생산이며 바꾸어말하면 가치증식과 관련된 재생산과정으로서의 자본의 생산과정이다. 그것은 잉여가치의 생산뿐만아니라 그 주기적인 재생산이다. 그것은 생산적형태로 있는 산업자본의 기능이지만 한번만 진행되는 기능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기능이며 따라서 과정의 재개시는 이미 출발점 자체에 의하여 주어져있는것이다. W′의 일부분은(일정한 경우들에 산업자본의 일정한 투하부문들에서는) 그것이 상품으로서 나온 그 동일한 로동과정에 생산수단으로서 직접 다시 들어갈수 있다. 이것에 의하여서는 그 부분의 가치가, 현실적화폐 또는 화폐기호로 전화하는것이 생략될뿐이다. 바꾸어말하면 그 가치의 전화가 계산화폐로서의 독립적표현을 얻을뿐이다. 이 가치부분은 류통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하여 류통과정에 들어가지 않는 가치도 생산과정에는 들어간다. W′중에서 자본가가 잉여생산물의 일부분으로서 현물로 소비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도 동일한것을 말할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자본주의적생산에 있어서는 그리 중요한것이 아니다. 그것은 기껏해야 농업에서 문제로 될뿐이다.

이 형태에서 곧 눈에 띄이는것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사정이다.

첫째, 제1형태 G…G′에서는 생산과정 P의 기능은 화폐자본의 류통을 중단시키고 다만 화폐자본의 두 단계 G—W와 W′—G′간의 매개자로서 나타날뿐이며 여기에서는 산업자본의 총류통과정, 류통단계내부에서의 산업자본의 전체 운동은 다만 최초의 극으로서 순환을 개시하는 생산자본과 최후의 극으로서 동일한 형태, 즉 순환의 재개시의 형태로 순환을 종결시키는 생산자본간의 중단을, 따라서 또 그 량자간의 매개를 이룰뿐이다. 본래의 류통은 다만 주기적으로 갱신되며 갱신에 의하여 련속되는 재생산의 매개로서 나타날뿐이다.

둘째, 총류통은 그것이 화폐자본의 순환에서 취하는 형태와는 반대되는 형태로 표시된다. 그것은 화폐자본의 순환에서는 가치규정을 도외시하면 G—W—G(G—W. W—G)였다. 그것은 여기에서는 역시 가치규정을 도외시하면 W—G—W(W—G. G—W), 즉 단순상품류통의 형태이다.

1. 단순재생산

우선 량극 P…P간의 류통분야에서 진행되는 과정 W′—G′—W를 고찰하여보자.

이 류통의 출발점은 상품자본 W′=W+w=P+w이다. 상품자본의 기능 W′—G′(이제는 상품의 구성부분 W로서 존재하는 상품자본중의 자본가치=P의 실현과 동일한 상품량의 구성부분으로서, 가치 w로서 존재하는 상품자본중의 잉여가치의 실현)는 제1의 순환형태에서 고찰되였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이 기능은 중단된 류통의 제2단계로 되여있었으며 전체 순환의 종결단계로 되여있었다. 여기에서는 그것은 순환의 제2단계를 이루고있으나 류통의 제1단계를 이루고있다. 제1의 순환은 G′로써 끝났으나 G′는 최초의 G와 마찬가지로 다시 화폐자본으로서 제2의 순환을 개시할수 있기때문에 G′에 포함되여있는 G와 g(잉여가치)가 계속 같은 궤도로 나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서로 다른 궤도로 나가는가 하는것은 당분간 그 이상 더 고찰할 필요가 없었다. 이 고찰은 만약 우리가 제1의 순환을 그 반복에서 더 추구하였다면 그때에야 비로소 필요하게 되였을것이다, 그러나 생산자본의 순환에서는 이 점이 결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 하면 이미 생산자본의 최초의 순환의 성격이 이 점에 의존하기때문이며 또 이 순환에서는 W′—G′가 제1의 류통단계로서 나타나며 그것은 G—W에 의하여 보충되여야 하기때문이다. 공식이 단순재생산을 표시하는가 또는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을 표시하는가 하는것은 이 점의 결정에 의존한다. 그리하여 이 점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서 순환의 성격이 달라진다.

그러면 우선 생산자본의 단순재생산을 들어보자. 여기에서도 제1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정들이 변함없고 또 상품이 그 가치대로 매매된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는 잉여가치는 전부 자본가의 개인적소비로 들어간다. 상품자본 W′가 화폐로 전화되면 화폐총액중 자본가치를 나타내는 부분은 계속 산업자본의 순환속에서 류통한다. 다른 부분, 즉 도금된 잉여가치는 일반적상품류통으로 들어가며 이 류통은 자본가로부터 출발하는 화폐류통을 이루지만 그것은 이미 그의 개별적자본의 류통밖에서 진행된다.

우리의 례에서는 상품자본 W′는 10,000폰드의 방사였으

며 그 가치는 500파운드였다. 그중 422파운드는 생산자본의 가치이며 그것은 8,440폰드의 방사의 화폐형태로서 W′에 의하여 개시된 자본류통을 계속하지만 78파운드의 잉여가치, 즉 상품생산물의 초과부분인 1,560폰드의 방사의 화폐형태는 이 류통의 밖에 나가 일반적상품류통내부에서 다른 궤도를 밟게 된다.

$$W'\begin{cases} W \\ + \\ w \end{cases} \begin{matrix} \text{——} \\ -G' \\ \text{——} \end{matrix} \begin{cases} G \\ + \\ g \end{cases} \begin{matrix} -W < {}^{A}_{P_m} \\ \\ -w \end{matrix}$$

g—w는 화폐에 의하여 매개되는 일련의 구매이다. 이 화폐는 자본가가 본래의 상품으로 지출하거나 귀중한 일신 또는 가족을 위한 봉사로 지출하는것이다. 이 구매는 분산되여 있으며 상이한 시기들에 수행된다. 따라서 화폐는 일시적으로 일상적소비를 위하여 준비금 또는 축장화폐의 형태로 존재한다. 왜냐하면 류통이 중단된 화폐는 바로 축장화폐의 형태로 있기때문이다. 축장화폐로서의 일시적인 형태도 포함한 류통수단으로서 이 화폐가 수행하는 기능은 화폐형태에 있는 자본 G의 류통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화폐는 선대되는것이 아니라 지출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선대총자본이 항상 한 단계로부터 다음 단계로 전부 이행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도 P의 상품생산물이 생산자본 P의 총가치=422파운드에 생산과정에서 창조된 잉여가치=78파운드를 가한것을 대표한다고 전제한다. 분할할수 있는 상품생산물을 문제로 하는 우리의 례에서는 잉여가치는 1,500폰드의 방사의 형태로 존재하며 같은것을 1폰드의 방사에 대하여 계산한다면 잉여가치는 2.496온스의 방사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와는 반대로 만일 상품생산

물이 레컨대 또한 동일한 가치구성의 500파운드의 한대의 기계라고 한다면 이 기계의 가치의 일부분=78파운드는 잉여가치일것이나 이 78파운드는 기계전체속에만 존재할것이다. 이 기계를 자본가치와 잉여가치로 나눈다는것은 그 기계자체를 산산이 부시여 그 사용가치와 함께 그 가치도 파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두개의 가치구성부분들은 다만 관념적으로만 상품체의 구성부분들로 표시될수 있을뿐이며 1폰드의 방사가 10,000폰드의 방사의 분리할수 있는 독립적인 상품요소들로 표시되는것처럼 상품 W′의 독립적인 요소들로 표시될수는 없다. 기계의 경우에 있어서는 g가 자기의 특수한 류통에 들어가기전에 이 상품전체가 상품자본이, 기계가 전체적으로 판매되지 않으면 안된다. 방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본가가 8,440폰드의 방사를 판매한다면 그 나머지 1,560폰드의 판매는 완전히 분리된 잉여가치의 류통을 w(1,560폰드의 방사)－g(78파운드)－w(소비품)이라는 형태로 표시할것이다. 그런데 10,000폰드의 생산물인 방사의 매개 부분의 가치요소들도 총생산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산물의 부분들로서 표시될수 있다. 이 총생산물, 10,000폰드의 방사가 불변자본가치(c), 372파운드라는 가치의 7,440폰드의 방사와 가변자본가치(v), 50파운드라는 가치의 1,000폰드의 방사와, 잉여가치(m), 78파운드라는 가치의 1,560폰드의 방사로 나뉘여질수 있는것처럼 매 1폰드의 방사도 c=8.928펜스라는 가치의 11.904온스의 방사와 v=1.200펜스라는 가치의 1.600온스의 방사와 m=1.872펜스라는 가치의 2.496온스의 방사로 나뉘여질수 있다. 자본가도 10,000폰드를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판매함으로써 이 순차적인 부분들에 포함되여있는 잉여가치요소들을 순차적으로 소비할수 있을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c+v의 총액을 역시 순차적으로 실현할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이 행위도 역시 결국은 10,000폰드가 전부 판매되며 따라서 또 8,440폰드가 판매되는데 의하여 c와 v의 가치가 보상되는것을 전제로 한다.(제1권, 제7장, 제2절)

여하튼간에 W′에 포함되여있는 자본가치와 잉여가치는 W′—G′에 의하여 서로 분리될수 있는 존재, 각이한 화폐액으로서의 존재를 얻게 된다. 두 경우에 다 G 및 g는 최초에 W′속에서는 다만 상품의 가격으로서 그자신의 관념적인 표현밖에 가지지 못하였던 가치가 현실적으로 전화된 형태이다.

w—g—w는 단순한 상품류통이다. 그 제1단계 w—g는 상품자본의 류통 W′—G′에, 따라서 자본의 순환에 포함되여있다. 이와는 반대로 그 보충적단계 g—w는 이 순환의 밖에 나가 그 순환으로부터 분리된 일반적인 상품류통상의 과정으로서 진행된다. W와 w의 류통, 즉 자본가치와 잉여가치의 류통은 W′가 G′로 전화된후에 분렬된다. 이리하여 다음과 같이 된다.

첫째, W′—G′=W′—(G+g)에 의하여 상품자본이 실현되는데 의하여 W′—G′에서는 아직 동일한 상품량에 의하여 담당되여 공동으로 수행되는 자본가치와 잉여가치의 운동이 분리될수 있게 된다. 그것은 량자가 이제는 어떤 화폐액으로서 각기 독립적인 형태를 가지고있기때문이다.

둘째, g는 자본가의 수입으로서 지출되나 G는 자본가치의 기능적형태로서 이 순환에 의하여 규정된 자기의 궤도를 계속 나감으로써 이 분렬이 생긴다면 제1의 행위 W′—G′는 다음에 오는 두 행위 G—W 및 g—w와 관련시켜보면 두개의 각이한 류통, 즉 W—G—W와 w—g—w로서 표시될수 있다. 이 량자는 그 일반적형태로 보면 보통의 상품류통에 속하는 순

서이다.

그밖에 련속적인, 분할할수 없는 상품체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가치의 구성부분들이 관념적으로 각기 분리된다. 례컨대 대부분이 신용으로 경영되는 런던의 건축업에서는 건축업자는 가옥의 건축이 순차적으로 다른 단계로 넘어감에 따라 선불을 받는다. 이 단계들은 어느것이나 하나의 가옥은 아니며 다만 건설되여가고있는 장래가옥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한 구성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 현실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체 가옥의 관념적인 한 소부분에 지나지 않으나 그래도 그것은 추가적인 선불을 위한 담보로 복무할 만큼 충분히 현실적이다.(이 점에 관하여서는 후에 나오는 제12장을 참조하라.①)

셋째, 만약 W와 G에서는 아직 같이 진행되는 자본가치와 잉여가치의 운동이 부분적으로만 분리되거나(그리하여 잉여가치의 일부분은 수입으로서 지출되지 않는다.) 또는 전혀 분리되지 않는다면 자본가치 그자체내에서 자본가치의 순환이 끝나기전에 벌써 그 순환내부에서 하나의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 례에서는 생산자본의 가치는 422파운드와 같았다. 따라서 자본이 례컨대 480파운드 또는 500파운드로서 G—W를 계속 진행한다면 자본은 최초의 가치보다 58파운드 또는 78파운드만큼 더 큰 가치로서 순환의 그후의 단계들을 통과하게 된다. 이것은 동시에 자본의 가치구성의 변화와 결부될수도 있다.—

W′—G′는 순환 I(G…G′)의 제2류통단계이며 그 순환의 종결단계인데 지금 우리가 고찰하는 순환에서는 그 순환의

① 본권 260~261페지를 보라. —편집자

제2단계이며 상품류통의 제1단계이다. 따라서 류통이 고찰되는 한 그것은 G′—W′에 의하여 보충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W′—G′는 이미 가치증식과정(여기에서는 P의 기능이며 제1단계이다.)을 통과하였을뿐만아니라 가치증식과정의 결과인 상품생산물 W′가 이미 실현되여있다. 따라서 자본의 가치증식과정도 증식된 자본가치가 표시되여있는 상품생산물의 실현도 W′—G′로 종결되였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단순재생산을 전제하였다. 즉 g—w가 G—W로부터 분리된다고 전제하였다. 두 류통, 즉 w—g—w와 W—G—W는 모두 그 일반적형태로 보면 상품류통에 속하므로(따라서 량극간의 가치차를 표시하지 않는다.) 속류경제학이 하듯이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을 어떤 종류의 소비를 위한 상품, 사용가치의 단순한 생산으로서 보기 쉬우며 속류경제학이 그릇되게 주장하듯이 자본가가 상품을 생산하는것은 다만 그 상품을 다른 사용가치를 가진 상품과 교체 또는 교환하기 위한것이라고 보기 쉽다.

W′는 처음부터 상품자본으로서 나타난다. 그리고 전체과정의 목적인 치부(가치증식)는 잉여가치의(따라서 또 자본의) 크기와 함께 자본가의 소비가 증대하는것을 결코 배제하지 않을뿐만아니라 바로 그것을 포함한다.

자본가의 수입의 류통에서는 생산된 상품 w(또는 상품생산물 W′중의 관념적으로 w에 상당한 부분)는 사실상 다만 그 수입을 먼저 화폐로 전환시키며 다음에 화폐로부터 개인적소비에 복무하는 일련의 다른 상품들로 전환시키는데 복무할뿐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사소한 일이지만 무시하여서는 안될것은 w는 자본가에게 아무런 비용도 들이게 하지 않은 상품가치이며 잉여로동이 구현된것이며 따라서 처음에는 상품자

본 W′의 구성부분으로서 무대에 등장한다는것이다. 따라서 이 w자체는 이미 그 존재로 보아도 과정진행중의 자본가치의 순환과 결부되여있으며 만약 이 순환이 정체되거나 또는 교란된다면 w의 소비는 제한되거나 또는 완전히 정지될뿐만아니라 그와 동시에 w와 교체될 상품군들의 판로도 제한되거나 또는 완전히 정지된다. W′—G′가 실패하거나 또는 W′의 일부분밖에 팔리지 않는 경우에도 사태가 같게 된다.

이미 본바와 같이 자본가의 수입의 류통으로서의 w—g—w는 w가 W′, 즉 상품자본이라는 기능형태에 있는 자본의 가치부분인 한에 있어서만 자본류통에 들어간다. 그러나 수입의 류통은 g—w에 의하여, 따라서 w—g—w라는 전체 형태로서 독립화되면 그것은 자본가에 의하여 선대된 자본의 운동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비록 이 운동에서 나오기는 하나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것이 이 운동과 관련되는것은 다만 자본의 존재가 자본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자본가의 존재가 자본가의 잉여가치 소비에 의하여 조건지어지는 한에 있어서이다.

일반적류통에서는 W′, 레컨대 방사는 다만 상품으로서 기능할뿐이다. 그러나 자본류통의 계기로서는 그것은 **상품자본**으로서, 즉 자본가치가 취하였다가는 버리고 버렸다가는 취하는 모습으로서 기능한다. 방사는 그것이 상인에게 판매된후에는 그것을 생산물로 하는 자본의 순환과정으로부터 떨어져나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품으로서 일반적류통의 령역내에 있다. 동일한 상품량의 류통은 방적업자의 자본의 독립적순환의 한 계기가 아니게 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계속된다. 그러므로 자본가에 의하여 류통에 투입된 상품량의 현실적인 최종적변태, W—G, 이 상품량의 소비에로의

최종적탈락은 이 상품량이 자본가의 상품자본으로서 기능하는 변태로부터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완전히 분리될수 있다. 자본의 류통에서는 이미 끝난 그 동일한 변태가 일반적류통의 분야에서 앞으로도 수행되게 된다.

방사가 다시 다른 산업자본의 순환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사태는 변하지 않는다. 일반적류통은 사회적자본의 여러가지 독립적부분들의 순환의 호상 교차, 즉 많은 개별적자본들의 총체를 포괄하는 동시에 자본으로서는 시장에 투하되지 않은 가치 또는 개인적소비에 들어가는 가치의 류통도 포괄한다.

또 일반적류통의 일부분을 이루고있는 한에 있어서의 자본의 순환과 독립적인 순환의 한 고리를 이루고있는 한에 있어서의 자본의 순환과의 관계는 G′ 또는 G+g의 류통을 고찰하면 명백하게 된다. G는 화폐자본으로서 자본의 순환을 계속한다. g는 수입의 지출 (g—w)로서 일반적류통에 들어가나 자본의 순환으로부터는 떨어져나간다. 추가적화폐자본으로서 기능하는 부분만이 자본의 순환에 들어간다. w—g—w에서는 화폐는 다만 주화로서만 기능할뿐이다. 이 류통의 목적은 자본가의 개인적소비에 있다. 속류경제학이 자본의 순환에 들어가지 않는 이 류통—가치생산물중 수입으로서 소비되는 부분의 류통—을 자본의 특징적인 순환이라고 하는것은 그들의 백치병을 특징지어주는것이다.

제2단계 G—W에서는 자본가치 G=P(여기에서 산업자본의 순환을 개시하는 생산자본의 가치)가 잉여가치로부터 벗어나, 따라서 화폐자본순환의 제1단계 G—W에 있을 때와 동일한 가치량으로 다시 나타난다. 그 위치는 달라졌으나 지금 상품자본이 전화되여나온 화폐자본의 기능은 같은것이다. 즉 Pm과 A로의, 생산수단 및 로동력으로의 화폐자본의 전화이다.

이리하여 자본가치는 상품자본의 기능 W′ —G′ 에서는 w —g와 동시에 W—G의 단계를 통과하였으며 그리고 이번에는 보충적단계 G—W<$^{A}_{P_m}$에 들어간다. 따라서 자본가치의 총류통은 W—G—W<$^{A}_{P_m}$이다.

첫째로, 화폐자본 G는 형태 I(순환 G…G′)에서는 자본가치가 선대되는 최초의 형태로서 나타났다. 그것은 여기에서는 처음부터 상품자본이 류통의 제1단계 W′—G′에서 전화된 화폐액의 일부분으로서 나타났으며 따라서 처음부터 상품생산물의 판매에 의하여 매개된 생산자본 P의 화폐형태로의 전화로서 나타난다. 화폐자본은 여기에서 처음부터 자본가치의 최초의 형태도 종결적인 형태도 아닌 형태로서 존재한다. 왜냐 하면 단계 W—G를 종결짓는 단계 G—W는 다만 다시 한번 화폐형태를 포기함으로써만 수행될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G—W중에서 동시에 G—A인 부분도 이미 로동력의 구매에서 표현되는 단순한 화폐선대로서 나타나는것이 아니라 로동력에 의하여 창조된 상품가치의 일부분을 이루고있는, 50파운드이라는 가치가 있는, 1,000폰드의 방사가 화폐형태로 로동력의 구매에 선대되는 그러한 선대로서 나타난다. 여기에서 로동자에게 선대되는 화폐는 다만 로동자자신이 생산한 상품가치의 일부분이 전화한 등가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리유만으로도 G—W라는 행위는 그것이 G—A인 한에 있어서는 결코 화폐형태로 있는 상품을 사용형태로 있는 상품으로 교체할뿐만아니라 일반적상품류통자체로부터 독립한 다른 요소들을 포함하고있다.

G′는 W′의 전화된 형태로서 나타나며 이 W′는 그자체가 또 생산과정 P의 과거의 기능의 생산물이다. 그러므로 총화폐액 G′는 과거로동의 화폐적표현으로 나타난다. 우리의 례

에서는 10,000폰드의 방사=500파운드가 방적과정의 생산물이며 그중에서 7,440폰드의 방사=선대불변자본 c=372파운드이고 1,000폰드의 방사=선대가변자본 v=50파운드이며 또 1,560폰드의 방사=잉여가치 m=78파운드였다. G′중에서 최초의 자본=422파운드만이 다시 선대되고 다른 조건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G—A에서는 로동자는 이 주간에 생산된 10,000폰드의 방사의 일부분(1,000폰드의 방사의 화폐가치)만을 다음 주의 선대로서 받을것이다. W—G의 결과로서는 화폐는 항상 과거로동의 표현이다. 보충적행위 G—W가 상품시장에서 즉시 수행되고 따라서 G가 현존하는, 즉 시장에 있는 상품들로 전환된다면 이것도 역시 한 형태(화폐)로부터 다른 형태(상품)로의 과거로동의 전환이다. 그러나 G—W는 W—G와는 다른 시간에 수행된다. 그것은 례외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날수도 있다. 례컨대 G—W를 수행하는 자본가와 이 행위가 자기에게 있어서 W—G인 자본가가 자기들의 상품을 동시에 서로 인도하고 G는 그후에 다만 차액만을 결제하는 경우이다. W—G의 실행과 G—W의 실행간의 시간차는 큰 경우도 있고 그리 크지 않은 경우도 있을수 있다. W—G라는 행위의 결과로서는 G는 과거로동을 대표하지만 G—W라는 행위에 있어서는 G는 아직 시장에 전혀 없으며 장래에야 비로소 시장에 나타나게 될 상품들의 전화형태를 대표할수도 있다. 왜냐 하면 이 경우에는 W가 새로 생산된 다음에야 비로소 G—W가 수행되게 되기때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G는 이 G를 자기의 화폐적표현으로 하는 W와 동시에 생산되는 상품들을 대표할수도 있다. 례컨대 G—W라는 전환(생산수단의 구입)에서 석탄은 그것이 채굴되여 갱밖에 나오기전에 구매될수 있다. g가 수입으로서 지출되지 않고 화폐축적으로서 나타나면 그것은 다음해에야 비

로소 생산될 면화를 대표할수 있다. 자본가의 수입의 지출인 g—W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로임 A=50파운드도 마찬가지이다. 이 화폐는 로동자의 과거로동의 화폐형태일뿐만아니라 동시에 그것은 이제 비로소 실현되거나 또는 장래에 실현되여야 할, 동시적인 또는 장래의 로동에 대한 수형이다. 로동자는 이 화폐로써 다음 주에야 비로소 제조될 저고리를 구매할수도 있다. 생산되는 순간에 거의 곧 소비하지 않으면 못쓰게 되는 대단히 많은 수의 생활필수품들에 있어서 특히 그러하다. 이리하여 로동자는 자기의 로임으로서 지불받는 화폐로 자기자신 또는 다른 로동자들의 장래의 로동의 전화형태를 받는다. 자본가는 로동자의 과거로동의 일부분으로써 로동자에게 그자신의 장래의 로동에 대한 수형을 준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재고를 이루는 로동자자신의 동시적인 또는 장래의 로동으로 그의 과거로동이 지불되는것이다. 여기에서는 재고형성의 관념은 완전히 없어지고만다.

둘째로, 류통 W—G—W<$_{P_m}^{A}$에서는 동일한 화폐가 두번 위치를 바꾼다. 자본가는 처음에 판매자로서 그것을 받고 그런 다음에 구매자로서 그것을 내준다. 상품의 화폐형태로의 전화는 다만 상품을 화폐형태로부터 다시 상품형태로 전화하기 위하여서만 복무한다. 그러므로 자본의 화폐형태, 화폐자본으로서의 자본의 존재는 이 운동에 있어서는 다만 일시적인 계기에 지나지 않는다. 바꾸어말하면 운동이 거침없이 진행되는 한 그것이 구매수단으로서 복무할 경우에는 다만 류통수단으로서만 나타날뿐이다. 그것이 본래의 지불수단으로서 나타나는것은 자본가들이 서로 상대방에게서 구매하므로 지불차액만을 결제하면 되는 경우이다.

셋째로, 화폐자본의 기능은 그것이 단순한 류통수단으로

서 복무하든 또는 지불수단으로서 복무하든간에 다만 W를 A와 Pm로 교체하는것을, 즉 생산자본의 결과인 상품생산물(수입으로서 소비될 잉여가치를 공제한)로서의 방사를 그 생산요소로 교체하는것을, 따라서 자본가치가 상품으로서의 형태로부터 이 상품의 형성요소들로 재전화하는것을 매개할따름이다. 요컨대 그것은 다만 상품자본이 생산자본으로 재전화하는것을 매개할따름이다.

순환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기 위하여서는 W′가 그 가치대로 또 그 전체가 판매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W—G—W는 단지 어떤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교체한다는것뿐만아니라 동일한 가치관계로서 교체한다는것을 포함한다. 여기에서도 그렇다는것이 우리의 가정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생산수단의 가치는 변동한다. 가치관계의 부단한 변동은 다름아닌 이 자본주의적생산에 특유한것이며 그것은 자본주의적생산을 특징짓는 로동생산성의 부단한 변동에 의하여서도 그러하다. 이러한 생산요인들의 가치변동에 관하여는 후에 론하기로 하고① 여기에서는 그저 그것을 지적하는데 그치기로 하자. 생산요소로부터 상품생산물로의 전화, P로부터 W′로의 전화는 생산분야에서 진행되며 W′로부터 P로의 재전화는 류통분야에서 진행된다. 이 재전화는 단순한 상품변태에 의하여 매개된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전체로서 본 재생산과정의 한 계기이다. W—G—W는 자본의 류통형태로서는 기능적으로 규정된 물질변환을 포함하고있다. 그리고 W—G—W라는 전환은 W가 상품량 W′의 생산요소들과 같을것을, 또한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최초의 가치관계를 유지할것을 조건으로 한다.

① 본권 316~325페지를 보라. —편집자

따라서 여기에서는 상품들이 그 가치대로 구매된다는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품들에는 순환하는 동안에 조금도 가치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것도 전제되여있다. 그렇지 않으면 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될수 없다.

G…G′에서는 G는 자본가치의 최초의 형태이며 이 형태가 다시 포기되는것은 다시 취해지기 위하여서이다. P…W′—G′—W…P에서는 G는 다만 과정내부에서 취하는 형태이며 이 과정내부에서 다시 포기되는 형태이다. 화폐형태는 여기에서는 자본의 다만 일시적인 독립적가치형태로서 나타날뿐이다. 자본은 W′로서는 화폐형태를 취하려고 열망하나 G′로서는, 자본이 화폐형태로 들어가 번데기로 되면 이번에는 G′로서 화폐형태를 버리고 다시 생산자본의 형태로 전환되기를 열망한다. 자본은 화폐의 모습으로 있는 동안은 자본으로서 기능하지 않으며 따라서 가치증식도 되지 않는다. 자본은 놀고있는것이다. G는 여기에서 류통수단으로서, 그러나 자본의 류통수단으로서 작용한다.① 자본가치의 화폐형태가 그 제1순환형태(화폐자본의 순환)에서 가지는 독립의 외관은 이 제2형태에서는 사라지며 따라서 제2형태는 제1형태의 비판으로 되며 제1형태를 다만 특수한 한 형태로 만든다. 제2의 변태 G—W가 장애에 부닥치면(례컨대 생산수단이 시장에 없으면) 순환은, 재생산과정의 흐름은 중단되며 바로 자본이 상품자본의 형태로 동결될 때와 마찬가지로 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자본은 덧없는 상품형태에 있기보다는 화폐형태로 있는편이 오래간다.

---

① 맑스의 원고에는 《투크를 반박하여》라고 기입되여있다. 맑스가 투크를 비판한 내용은 《자본론》 제3권 제23장 《리자와 기업주의 소득》(《맑스엥겔스전집》 중문제2판 제46권 415~439페지)을 보라.—편집자

자본은 화폐자본으로서 기능하지 않아도 화폐가 아닌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본은 상품자본으로서 기능하는것을 너무 오래 저지당하면 상품으로 되지 않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가치로 되지 않는다. 둘째로, 그것은 화폐형태로 있으면 그 최초의 생산자본형과는 다른 생산자본형태를 취할수 있으나 W′로써는 전혀 제자리에서 움직일수 없다.

W′—G′—W는 다만 W′에 대하여서만 그 형태로 보아 W′의 재생산의 계기인 류통행위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W′—G′—W가 수행되기 위하여서는 W′가 전환되는 W의 현실적재생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재생산은 W′로 표시되는 개별적자본의 재생산과정밖에 있는 많은 재생산과정에 의하여 제약되여있다.—

형태 I에서는 G—W<$^{A}_{P_m}$은 다만 화폐자본으로부터 생산자본으로의 제1전화를 준비할뿐이지만, 형태 II에서는 상품자본으로부터 생산자본으로의 재전화를 준비한다. 따라서 그것은 산업자본의 투하가 이전과 동일한 한에 있어서는 상품자본을 낳은 그 동일한 생산 제 요소로의 상품자본의 재전화를 준비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형태 II에서도 형태 I에서와 마찬가지로 생산과정의 준비단계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형태 II에서는 생산과정으로의 복귀로서, 생산과정의 갱신으로서, 따라서 재생산과정의 선행단계로서, 따라서 또 가치증식과정의 반복적인 선행단계로서 나타난다.

여기에서 또 한번 지적해둘것은 G—A는 단순한 상품교환이 아니라 잉여가치생산에 복무하여야 할 상품 A의 구매이며 G—Pm은 다만 이 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소재적으로 불가결한 수속에 불과하다는것이다.

G—W<$^{A}_{P_m}$가 수행되면 G는 생산자본, P로 재전화되며 거기서 또 새로 순환이 시작된다.

따라서 P…W′—G′—W…P의 상세한 형태는 다음과 같다.

$$P\cdots W'\begin{cases} W \\ + \\ w \end{cases} - \begin{cases} G \\ + \\ g \end{cases} \begin{matrix} -W<^{A}_{Pm}\cdots P \\ \\ -w \end{matrix}$$

화폐자본으로부터 생산자본으로의 전화는 상품생산을 위한 상품의 구매이다. 소비가 이 생산적소비인 한에 있어서만 소비는 자본 그자체의 순환에 들어간다. 생산적소비의 조건은 이렇게 소비라는 상품을 매개로 하여 잉여가치가 생산된다는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생산자의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과는, 또 지어는 그러한 상품생산과도 매우 다른것이다. 이와 같이 잉여가치생산을 조건으로 하여 상품이 상품과 교체되는것은 생산물교환—다만 화폐에 의하여 매개될뿐인—그자체와는 전혀 다른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이것으로써 과잉생산이 불가능하다는것을 증명하는것이다.

A 및 Pm으로 전화되는 G의 생산적소비외에 이 순환은 G—A라는 첫째 고리를 포함하는데 이것은 로동자에게 있어서는 A—G=W—G이다. 로동자의 소비를 포함하는 로동자의 류통 A—G—W중에서 첫째 고리만이 G—A의 결과로서 자본의 순환에 들어간다. 제2의 행위, 즉 G—W는 비록 그것이 개별적자본의 류통에서 나오기는 하나 그 류통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본가계급에게 있어서 로동자계급의 부단한 존재가 필요하며 따라서 또 G—W에 의하여 매개되는 로동자의 소비도 필요하다.

W′—G′라는 행위는 자본가치의 순환의 계속을 위하여도 또 자본가에 의한 잉여가치의 소비를 위하여도 다만 W′가 화폐로 전화되였다는것, 그것이 판매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W′가 구매되는것은 물론 다만 그 물품이 어떤 사용가치이며

따라서 생산적인 또는 개인적인 어떤 종류의 소비를 위하여 쓸모가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W′가 례컨대 방사를 구매한 상인의 수중에서 더 류통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방사를 생산하여 상인에게 판매한 개별적자본의 순환의 계속에 대하여서는 처음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전체 과정이 계속 진행되며 또 그와 함께 그것을 조건으로 하는 자본가나 로동자의 개인적 소비도 계속 진행된다. 이 점은 공황을 고찰할 때 중요하다.

즉 W′는 판매되여 화폐로 전화되여있으면 로동과정의, 따라서 또 재생산과정의 현실적요인들로 재전화될수 있다. 그러므로 W′를 산 사람이 최종적소비자인가, 또는 그것을 다시 팔려고 하는 상인인가 하는것은 사태를 직접적으로는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자본주의적생산에 의하여 생산되는 상품량의 크기는 그 생산의 규모와 이것을 부단히 확대하려는 욕망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고 수요와 공급의 예정된 범위, 충족되여야 할 욕망의 예정된 범위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은 아니다. 대량생산에 있어서는 그 직접적인 구매자로서 다른 상업자본가들외에는 다만 도매상인이 있을뿐이다. 재생산과정은 거기로부터 방출된 상품들이 현실적으로 개인적 또는 생산적 소비로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느 한계내에서는 동일한 규모로나 또는 지어 확대된 규모로 진행될수 있다. 상품의 소비는 그 상품이 나온 자본의 순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례컨대 방사가 판매되면 판매된 방사가 우선은 어떻게 되든간에 방사로 표시된 자본가치의 순환은 다시 시작될수 있다. 생산물이 판매되는 동안은 자본주의적생산자의 관점에서는 만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그가 대표하는 자본가치의 순환은 중단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과정이 확대된다면—이것은 생산수단의 생산적소비의 확대를 포함한다.—자본의

이러한 재생산은 로동자들의 개인적소비의(따라서 수요의) 확대를 수반할수 있다. 왜냐 하면 이 과정이 생산적소비에 의하여 준비되며 매개되기때문이다. 이와 같이 잉여가치의 생산도, 또 그것과 함께 자본가의 개인적소비도 증대하며 재생산과정전체가 매우 번영한 상태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큰 한부분은 다만 외견상으로 소비로 들어간것처럼 보일뿐 현실상으로는 판매되지 않고 재판매자의 수중에 쌓여있으며 따라서 사실상 아직 시장에 있을수 있다. 그런데 상품의 흐름은 련달아 계속되며 그리하여 드디여 이전의 흐름은 다만 외견상으로만 소비에 의하여 삼켜졌다는것이 명백하게 된다. 많은 상품자본이 시장에서 서로 자리를 다투게 된다. 후에 밀려들어오는것들은 판매하기 위하여 가격이하로 판매된다. 이전의 흐름들이 아직 판매되지 않았는데 그 지불기한이 다가온다. 그 소유자들은 지불불능을 선포하거나 또는 지불하기 위하여 어떤 가격으로든 판매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판매는 수요의 현실적상태와는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것은 다만 **지불에 대한 수요**와만, 상품을 화폐로 전화시킬 절대적필요성과만 관계가 있을뿐이다. 그래서 공황이 일어난다. 공황이 눈에 보이게 되는것은 소비적수요, 즉 개인적소비를 위한 수요의 직접적감소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자본과 자본과의 교환의 감퇴, 자본의 재생산과정의 축소에 의하여서이다. —

G는 화폐자본으로서, 생산자본으로 재전화할 사명을 가진 자본가치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품 Pm과 A로 전화되는데 만일 이러한 상품들이 각이한 시기에 구매되든가 또는 지불되든가 하여야 한다면, 따라서 G—W가 련이어 진행되는 일련의 구매와 지불을 표시한다면 G의 일부분은 G—W라

는 행위를 수행하지만 다른 일부분은 화폐상태에 머물러있으며 과정자체의 조건들에 의하여 규정된 어떤 시기에 비로소 동시적으로 또는 련속적으로 진행되는 G—W라는 행위에 복무하게 된다. 이 부분은 일정한 시기에 행동하기 시작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만 일시적으로 류통으로부터 끌려나와있을뿐이다. 그 경우에 이 부분의 이러한 저장은 그 자체가 그 류통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 류통을 위하여 규정된 기능인것이다. 그 경우에는 구매기금 및 지불기금으로서의 그 부분의 존재, 그 운동의 정지, 그 류통중단의 상태는 화폐가 화폐자본으로서의 제 기능의 하나를 수행하는 상태이다. 화폐자본으로서라고 하는것은 이 경우에 일시적으로 정지상태에 머물러있는 화폐는 그 자체가 화폐자본 G(G′—g=G)의 일부분이기때문이며 상품자본의 가치중에서 순환의 출발점인 생산자본의 가치 P와 같은 부분의 일부분이기때문이다. 다른 한편 류통으로부터 끌려나온 모든 화폐는 축장화폐의 형태에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화폐의 축장화폐형태가 화폐자본의 기능으로 되는데, 그것은 마치도 G—W에서 구매수단 또는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이 화폐자본의 기능으로 되는것과 같은것이며 그것도 자본가치가 여기서는 화폐형태로 존재하기때문이며 여기서는 화폐상태가 그 제 단계의 하나에 있는 산업자본에 있어서 순환의 련관에 의하여 규정되는 상태이기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여기에서 다시 실증되는것은 화폐자본은 산업자본의 순환내부에서 화폐기능이외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는것, 그리고 이 화폐기능은 다만 이 순환의 다른 단계들과의 련계에 의하여서만 동시에 자본기능의 의의를 가진다는것이다.

G′를 G에 대한 g의 관계로서, 자본관계로서 표시하는것

은 직접적으로는 화폐자본의 기능이 아니라 상품자본 W′의 기능인데 이 W′자체도 또한 w와 W의 관계로서는 다만 생산과정의 결과를, 즉 생산과정에서 수행된 자본가치의 자기증식의 결과를 표시하고있을뿐이다.

만약 류통과정의 진행이 장애에 부닥치여 G가 시장상태 등등과 같은 외부적사정들로 말미암아 그 기능 G—W를 정지하지 않을수 없고 그때문에 길거나 짧은 기간 그 화폐상태에 머무르지 않을수 없게 되면 이것도 또한 화폐의 축장화폐상태에 있게 되며 이 축장화폐의 상태는 단순상품류통에서도 W—G로부터 G—W로의 이행이 외부적사정들에 의하여 중단되자마자 즉시 나타난다. 그것은 강제적인 화폐축장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는 화폐는 유휴상태에 있는 잠재적인 화폐자본의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는 당분간 이 이상 더 연구하지 않기로 하자.

그러나 두 경우에 다 화폐자본이 화폐상태에 머무르는것은 운동이 중단된 결과로서 나타는데 이것이 목적에 맞든 목적에 위반되든, 자원적이든 자원적이 아니든, 기능에 맞든 기능에 위반되든 그것은 관계가 없는것이다.

2. 축적과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

생산과정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비례관계는 임의적으로 규정되는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규정되기때문에 실현된 잉여가치는 비록 그것이 자본화될것이라 하더라도 흔히는 몇번의 순환을 반복함으로써만 비로소 현실적으로 추가자본으로서 기능할수 있는 규모로, 즉 과정중에 있는 자본가

치의 순환에 들어갈수 있는 그러한 규모로 성장하는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규모로 될 때까지 축적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잉여가치는 축장화폐로 경화되여 이 형태에서 잠재적 화폐자본을 이룬다. 잠재적이라고 말하는것은 그것이 화폐형태로 머물러있는 동안은 자본으로서 작용할수 없기때문이다.[(6[a])] 이리하여 여기서는 화폐축장은 자본주의적축적과정에 포함되여 그것에 수반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과정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한 계기로서 나타난다. 왜냐 하면 잠재적인 화폐자본의 형성에 있어서는 재생산과정자체는 확대되지 않기때문이다. 그 반대이다. 잠재적화폐자본이 여기서 형성되는것은 자본주의적생산자가 자기의 생산규모를 직접적으로는 확대시킬수 없기때문이다. 만약 그가 자기의 잉여생산물을 새로운 금은을 류통에 투입하는 금은생산자에게 판매한다면 또는—결국은 같은것이지만—국내의 잉여생산물의 일부분의 대금으로서 추가적인 금은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인에게 판매한다면 그의 잠재적인 화폐자본은 국내의 축장금은의 한 증가분을 이루게 된다. 그밖의 다른 모든 경우들에는 레컨대 구매자의 수중에서 류통수단이였던 78파운드가 자본가의 수중에 들어가 축장화폐형태를 취한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의 축장금은의 분배에 변화가 일어났을따름이다.

우리 자본가의 거래에서 화폐가 지불수단으로서 기능한다면(길거나 짧은 기간후에야 구매자가 상품의 대가를 지불

(6[a]) 《latent》(잠재적)이라는 표현은 잠재열이라는 물리학적개념으로부터 빌려온것인데 이 개념은 지금은 에네르기전환의 리론에 의하여 거의 배제되고있다. 그러므로 맑스는 제3편(나중에 쓴 부분)에서는 그것 대신에 《Potentielle Energie》(잠세적 에네르기)라는 개념으로부터 빌려온 《Potentiell》(잠세적인) 또는 달랑배르의 《Virtuelle Geschwindigkeit》(가능적속도)라는 말에 따라 《Virtuelles Kapital》(가능적자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있다. —F.E

하는 경우와 같이) 그 경우에는 자본화되여야 할 잉여생산물은 화폐로 전화되지 않고 채권으로, 즉 구매자에게 아마 이미 있거나 또는 장차 있을것이 예견되는 등가물에 대한 소유청구권으로 전화된다. 그것은 리자부증권 등등에 투하된 화폐와 마찬가지로 순환의 재생산과정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비록 다른 개별적산업자본의 순환에는 들어갈수 있지만.

자본주의적생산의 전체 성격은 선대자본가치의 증식에 의하여, 따라서 첫째로는 될수 있는대로 많은 잉여가치의 생산에 의하여 규정되며 둘째로는(제1권 제22장 참조) 자본의 생산에 의하여, 즉 잉여가치의 자본으로의 전화에 의하여 규정된다. 축적 또는 확대된 규모에서의 생산은 잉여가치생산의 부단한 확대를 위한, 따라서 자본가의 치부를 위한 수단으로서 자본가의 개인적목적으로서 나타나며 자본주의적생산의 일반적경향에 포함되여있는데 그것은 또 제1권에서 해명한바와 같이 자본주의적생산의 발전에 의하여 매 개별적자본가에 있어서 하나의 필연성으로 된다. 그의 자본의 부단한 증대가 그의 자본의 유지의 조건으로 된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전개한 문제로 이 이상 돌아갈 필요는 없다.

우리는 우선 단순재생산을 고찰하였는데 거기서는 잉여가치의 전부가 수입으로서 지출된다고 가정하였다. 현실에 있어서는 정상적조건하에서 잉여가치의 일부분은 언제나 수입으로서 지출되여야 하고 다른 일부분은 자본화되여야 하지만 이 경우에 일정한 기간에 생산되는 잉여가치가 때로는 전부 소비되고 때로는 전부 자본화되여도 그것은 전혀 상관없다. 운동의 평균으로는—그리고 일반적공식은 이 평균만을 표시할뿐이다.—두 경우가 다 생긴다. 그러나 공식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 위하여서는 잉여가치가 전부 축적된다고 가

정하는것이 좋다. 공식 P…W′—G′—W′<$_{P_m}^{A}$…P′는 생산자본이 보다 큰 규모에서 보다 더 큰 가치로서 재생산되고 증대된 생산자본으로서 그 제2순환을 시작한다는것, 또는 같은 말이지만 그 제1순환을 반복한다는것을 표시한다. 이 제2순환이 시작될 때에는 또다시 P가 출발점으로서 나타난다. 다만 이 P가 최초의 P보다 더 큰 생산자본으로 되여있을뿐이다. 마찬가지로 공식 G…G′에서 제2순환이 G′로써 시작될 때 이 G′는 G로서, 일정한 크기의 선대화폐자본으로서 기능한다. 그것은 제1순환이 시작될 때의 화폐자본보다 큰 화폐자본이지만 그것이 선대화폐자본의 기능을 수행하는것으로 나타날 때에는 그것이 잉여가치의 자본화에 의하여 증대되였다는것과의 관계는 완전히 없어진다. 이 기원은 그 순환을 개시하는 화폐자본으로서의 형태에서는 없어진다. P′도 그것이 새로운 순환의 출발점으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이다.

P…P′를 G…G′, 즉 제1순환과 비교해본다면 이 두 순환은 결코 같은 의의를 가지는것이 아니다. G…G′는 그자체를 단독적인 순환으로서 본다면 다만 화폐자본(또는 화폐자본으로서 순환중에 있는 산업자본) G는 화폐를 낳는 화폐, 가치를 낳는 가치이며 잉여가치를 낳는것이라는것을 표현할따름이다. 이와는 반대로 P의 순환에서는 가치증식과정자체는 제1단계인 생산과정이 경과하면 이미 완료되여있고 제2단계(제1의 류통단계) W′—G′를 통과한후에 자본가치+잉여가치는 실현된 화폐자본으로서, 제1순환에서는 마지막 극으로서 나타났던 G′로서 이미 존재하고있는것이다. 잉여가치가 생산되였다는것은 처음에 고찰된 P…P의 형태에서는(47페지의 상세히 전개된 공식을 보라[①]) w—g—w에 의하여 표시되여있는데 이

것은 그 제2단계에서 자본류통의 밖으로 나가며 수입으로서의 잉여가치의 류통을 표시한다. 따라서 이 형태, 즉 전체 운동이 P…P로 표시되며 이에 따라 량극들사이에 가치차가 나타나지 않는 이 형태에서도 선대가치의 증식, 즉 잉여가치의 생산은 G…G′에 표시되여있는것과 마찬가지로 표시되여있다. 다만 W′—G′라는 행위가 G…G′에서는 최후의 단계로서 나타나며 P…P에서는 순환의 제2단계로서, 류통의 제1단계로서 나타날따름이다.

P…P′에서 P′가 나타내는것은 잉여가치가 생산되였다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잉여가치가 자본화되였고 따라서 자본이 축적되여있다는것이며 따라서 P′는 P와는 달라서 최초의 자본가치 플루스 그 운동에 의하여 축적된 자본의 가치로 이루어져있다는것이다.

G…G′의 단순한 종결로서의 G′나 또 이 모든 순환들에서 나타나는 W′나 그자체로서 보면 운동을 나타내는것이 아니라 운동의 결과를 나타낸다. 즉 자본가치의 증식이 상품형태 또는 화폐형태로서 실현된것을 나타내며 따라서 또 자본가치를 G+g 또는 W+w로서, 즉 자기의 자식인 잉여가치에 대한 자본가치의 관계로서 나타낸다. 이 G′나 W′는 이 결과를 증식된 자본가치의 각이한 류통형태들로서 나타낸다. 그러나 W′의 형태에서나 또는 G′의 형태에서나 수행된 가치증식 그자체는 화폐자본의 기능도 아니고 상품자본의 기능도 아니다. 산업자본의 여러가지 특수한 기능에 대응하는 여러가지 특수한 형태, 존재방식으로서 화폐자본은 다만 화폐기능들만을, 상품자본은 다만 상품기능만을 수행할수 있는데 그것들간의 차

① 본권 87페지를 보라. —편집자

이는 다만 화폐와 상품간의 차이에 불과하다. 그와 마찬가지로 산업자본은 생산자본으로서의 그 형태에 있어서는 다른 모든 생산물형성적 로동과정과 같은 요소들만으로 구성되여 있다. 즉 한편으로는 대상화된 로동조건(생산수단),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적으로(합목적적으로) 작용하는 로동력이 그 요소들이다. 산업자본은 생산분야에서는 다만 생산과정일반에 적합한, 따라서 또 자본주의적이 아닌 생산과정에도 적합한 구성으로밖에는 존재할수 없는데 그것은 또 류통분야에서는 다만 상품과 화폐라는 이 분야에 적합한 두 형태로밖에는 존재할수 없다. 그러나 로동력은 다른 사람의 로동력이고 자본가는 자기의 생산수단을 다른 상품소유자에게서 구매한것과 꼭 마찬가지로 이 로동력도 로동력 그 자체의 소유자에게서 구매하였다는 사실에 의하여 생산요소의 총체는 자기가 생산자본이라는것을 처음부터 나타내며 따라서 생산과정자체도 산업자본의 생산적기능으로서 등장하며 이와 마찬가지로 화폐와 상품도 동일한 산업자본의 류통형태로서 등장하며 따라서 또 화폐와 상품의 기능도 산업자본의 류통기능으로서, 즉 생산자본의 기능을 준비하든가 또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류통기능으로서 등장한다. 화폐기능과 상품기능은 다만 산업자본이 그 순환과정의 각이한 단계들에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형태들로서의 량자의 관련에 의하여서만 여기에서는 동시에 각각 화폐자본의 기능이며 상품자본의 기능이다. 그러므로 화폐를 화폐로서 특징짓고 상품을 상품으로서 특징짓는 특수한 속성들과 기능을 화폐나 상품의 자본성격으로부터 도출하려는것은 잘못이며 또한 반대로 생산자본의 속성을 생산수단으로서의 생산자본의 그 존재방식으로부터 도출하는것도 역시 잘못이다.

G′ 또는 W′가 G+g 또는 W+w로서, 즉 자본가치와 그 자식으로서의 잉여가치와의 관계로서 고정되면 이 관계는 두 형태로서, 즉 한편으로는 화폐형태로서 또 한편으로는 상품형태로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사태자체를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이 관계는 화폐자체에 내재하는 속성이나 기능으로부터나 또는 상품자체에 내재하는 속성 및 기능들로부터 나오는것이 아니다. 두 경우에 가치를 낳는 가치라는 자본을 특징짓는 속성은 다만 결과로서만 표현되고있을뿐이다. W′는 언제나 P의 기능의 산물이며 또 G′는 언제나 다만 W′가 산업자본의 순환중에 전화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실현된 화폐자본이 다시 화폐자본으로서의 그 특수한 기능을 시작하자마자 그것은 G′=G+g에 포함되여있는 자본관계를 이제는 표현하지 않게 된다. G…G′가 끝나고 G′가 다시 순환을 시작할 때에는 그것은 G′의 역할을 하는것이 아니라 G의 역할을 하는데 G′에 포함되여있는 잉여가치가 전부 자본화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우리의 례에서는 제2순환은 제1순환에서처럼 422파운드로써 시작되는것이 아니라 500파운드의 화폐자본으로써 시작된다, 순환을 시작하는 화폐자본은 전번보다 78파운드가 더 크게 되였다. 이 차이는 한 순환과 다른 순환과의 대비중에 존재한다. 그러나 이 대비는 각개 순환의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화폐자본으로서 선대되는 500파운드중 78파운드는 이전에 잉여가치로서 존재하던것인데 이 500파운드는 다른 자본가가 이제부터 제1순환을 개시하는 500파운드에 비하여 조금도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것이 아니다. 생산자본의 순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증대된 P′는, 순환을 다시 시작할 때에 P로서 등장하며 단순재생산 P…P에서의 P와 마찬가지이다.

$G'-W'<_{Pm}^{A}$ 단계에서는 량의 증대는 다만 W′에 의하여 표시되여있을뿐이고 A′나 Pm′에 의하여서는 표시되여있지 않다. W는 A와 Pm의 합계이므로 W′에 포함되여있는 A와 Pm의 합계가 최초의 P보다 더 크다는것은 이미 W′에 의하여 표시되여있다. 또 그밖에도 A′ 및 Pm′의 표현방식은 잘못일것이다. 왜냐 하면 우리가 아는바와 같이 자본의 증대에는 자본의 가치구성의 변화가 결부되여있는것이며 그 변화의 진행에 따라 Pm의 가치는 증대되나 A의 가치는 언제나 상대적으로 흔히는 절대적으로 감소되기때문이다.

3. 화폐축적

도금된 잉여가치 g가 즉시로 다시 과정중에 있는 자본가치에 추가되여 자본 G와 함께 G′라는 크기로 순환과정에 들어갈수 있는가 어떤가 하는것은 g의 단순한 존재와는 관계없는 사정들에 달려있다. g가 제1의 사업과는 따로 생기는 제2의 독립적인 사업에서 화폐자본으로서 사용된다면 g가 사용될수 있는것은 오직 그러한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크기를 가지고있는 경우뿐이라는것은 분명하다. g가 원래의 사업의 확장에 사용된다 해도 P의 물질적요인들의 비률과 그것들의 가치의 비률은 의연히 g의 일정한 최소한의 크기를 요구한다. 이 사업에서 사용되는 전체 생산수단은 서로 질적관계를 가지고있을뿐만아니라 서로 일정한 량적관계, 일정한 비례적 크기를 가지고있다. 생산자본에 들어가는 요인들의 이러한 소재적비률과 그것들에 의하여 부담되는 가치의 비률은 g가 생산자본의 증가분으로서 추가적생산수단과 추가적로동력으

로 또는 생산수단만으로 전환할수 있기 위하여 가지고있어야 할 최소한의 크기를 규정한다. 례컨대 방적업자가 자기의 방추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확장에 필요한 면화 및 로임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켜야 한다는것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동시에 그에 상응한 수의 소면기 및 소정기를 획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잉여가치가 상당한 액수에 달하지 않으면 안된다.(보통은 방추 1개를 새로 마련하는데 1파운드로 계산된다.) g가 이 최소한의 크기를 가지지 않는 한 이 자본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생기는 g의 총액이 G와 함께, 즉 $G'-W'<^{A}_{Pm}$로서 기능할수 있게 될 때까지 자본의 순환이 여러번 반복되지 않으면 안된다. 례컨대 방적기의 세부를 변경하기만 하여도 이 변경이 방적기계를 보다 생산적으로 만드는 한 방적재료에 대한 지출의 증가나 소정기의 확장 등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그동안은 g가 축적되는데 그 축적은 g자신의 기능이 아니라 P…P의 반복의 결과이다. g자신의 기능은 화폐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몇번이고 가치증식순환으로부터, 즉 외부로부터 충분한 추가를 받아서 그 적극적인 기능에 필요한 최소한의 크기에 도달하는것이며 이 크기에 도달하여야 비로소 g는 현실적으로 화폐자본으로서, 이 경우에는 이미 기능하고있는 화폐자본 G의 축적부분으로서 함께 화폐자본의 기능에 들어갈 수 있는것이다. 그때까지의 사이에는 g는 축적되여 다만 형성과정중에 있는, 장성중에 있는 축장화폐의 형태로 존재하고있을뿐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화폐축적, 화폐축장은 현실적인 축적, 즉 사업자본의 작업규모의 확장에 일시적으로 수반되는 과정으로서 나타난다. 일시적이라고 말하는것은 축장화폐식 축장화폐의 상태에 머물러있는 한 그것은 자본으로

서 기능하지 않으며 가치증식과정에 참가하지 않으며 여전히 어떤 화폐액이기때문일따름이며 이 화폐액이 증대한다 해도 그것은 다만 이 화폐액의 협력없이 존재하는 화폐가 동일한 금고에 투입되기때문일따름이다.

축장화폐라는 형태는 다만 류통하지 않는 화폐의 형태, 류통이 중단되여 화폐형태로 보존되는 화폐의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화폐축장과정자체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모든 상품생산에 공통하지만 그것이 자기 목적으로서 역할을 노는 것은 다만 상품생산의 미발달한 전자본주의적형태들에서만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축장화폐가 화폐자본의 형태로서 나타나며 또 화폐축장이 자본의 축적에 일시적으로 수반되는 과정으로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화폐가 여기에서는 **잠재적인 화폐자본**의 역할을 하기때문이며 또 그러한 한에 있어서이다. 또 화폐축장, 즉 화폐형태로 존재하는 잉여가치의 축장화폐상태는 잉여가치가 현실적으로 기능하는 자본으로 전화하기 위하여 자본의 순환밖에서 진행되는 기능적으로 규정된 준비단계이기때문이다. 따라서 축장화폐는 이러한 그 규정에 의하여 잠재적인 화폐자본이며 그때문에 또 그것이 과정에 들어서기 위하여 도달하지 않으면 안되는 크기도 생산자본의 그때그때의 가치구성에 의하여 규정되여있다. 그러나 그것이 축장화폐의 상태에 있는 한 그것은 아직 화폐자본으로서 기능하지 않으며 또 놀고있는 화폐자본이다. 그것은 이전과 같이 그 기능이 중단된것이 아니라 아직 그 기능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화폐자본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념두에 두고있는것은 그 본래의 실재적 형태에서의 화폐의 적립이며 현실적인 축장화폐로서의 화폐적립이다. 그것은 W′를 판매한 자본가의 단순한 대금이나 채

권의 형태로 존재할수 있다. 그밖에도 이 잠재적화폐자본은 례컨대 은행에 있는 리자부예금이나 수형이나 어떤 종류의 유가증권같은 화폐를 낳는 화폐자본의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이러한 형태들은 여기에서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화폐로 실현된 잉여가치는 그것을 낳은 산업자본의 순환밖에서 특수한 자본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기능은 첫째로, 이 순환자체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둘째로, 산업자본의 기능들과는 구별되는 자본기능을 전제로 하는데 이 자본기능은 여기서는 아직 전개되여있지 않다.

4. 준 비 금

방금 고찰한 형태에서는 잉여가치의 존재형태로서의 축장화폐는 화폐축적기금이며 자본축적이 일시적으로 취하는 화폐형태이며 그리고 그 한에 있어서는 그자신이 자본축적의 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축적기금은 특수한 부차적구실도 할수 있다. 즉 자본의 순환과정이 P…P′의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서도, 즉 자본주의적재생산을 확대시키지 않으면서도 자본의 순환과정에 들어갈수 있다.

만약 과정 W′—G′가 정상적인 한도를 넘어서 오래 지속된다면, 즉 상품자본의 화폐형태로의 전화가 비정상적으로 지체된다면 또는 만약 이 전화가 수행되여도 례컨대 화폐자본이 전화되지 않으면 안될 생산수단의 가격이 순환의 개시당시의 수준보다 높게 등귀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축적기금으로서 기능하는 축장화폐를 사용하여 화폐자본 또는 그 일부분을 대신하게 할수 있다. 그리하여 화폐축적기금은 순

환의 교란을 조정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복무할수 있다.

그러한 준비금으로서의 축적기금은 순환 P…P에서 고찰된 구매수단 또는 지불수단의 기금과는 다르다. 구매수단 또는 지불수단은 기능하고있는 화폐자본의 일부분(따라서 과정중에 있는 자본가치일반의 일부분의 존재형태들)이며 다만 이 화폐자본의 각 부분들이 각이한 시기들에 잇달아 기능을 시작한다. 생산과정이 계속되고있는 동안에는 준비화폐자본이 부단히 형성된다. 왜냐 하면 례컨대 지불을 받은것은 오늘인데 지불하는것은 후일일수도 있으며 또는 다량의 상품을 판매한것은 오늘인데 다량의 상품을 구매하는것은 수일후일수도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이 중간기간에는 언제나 류통중에 있는 자본의 일부분은 화폐형태로 존재한다. 이와 반대로 준비금은 기능하고있는 자본, 자세히 말하면 화폐자본의 한 구성부분인것이 아니라 축적되기전 단계에 있는 자본, 아직 능동적자본으로 전화되지 않은 잉여가치의 한 구성부분인것이다. 그밖에 아주 자명한 일이지만 자본가는 궁하게 되면 그의 수중에 있는 화폐의 특정의 기능여하를 불구하고 자기 자본의 순환과정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수중에 있는 무엇이고 다 사용한다. 례컨대 우리의 례에서는 G는 422파운드, G′는 500파운드이다. 422파운드라는 자본의 일부분은 지불수단 또는 구매수단의 기금으로서, 화폐준비로서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기타의 조건들이 변하지 않는 한 전부 순환에 들어가는것으로 예정되여있으며 순환을 위하여 충분하다고 가정되여있다. 그런데 준비금은 78파운드라는 잉여가치의 일부분이다. 이것이 422파운드라는 가치의 자본의 순환과정에 들어갈수 있는것은 다만 이 순환이 변경된 조건들하에서 수행되는 경우뿐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축적기금의 일

부분이며 그것이 이 경우에는 재생산규모의 확대없이 나타나기때문이다.

화폐축적기금은 이미 잠재적인 화폐자본의 존재이며 따라서 화폐의 화폐자본으로의 전화이다.

단순재생산과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을 포괄하는 생산자본의 순환의 일반적공식은 다음과 같다.

$$P\cdots\overset{1}{\overbrace{W'-G'}}.\ \overset{2}{\overbrace{G-W<_{P_m}^{A}}}\cdots P(P')$$

P=P이면 (2)의 G는 G′−g와 같다. P=P′이면 (2)의 G는 G′−g보다 크다. 즉 g는 전부 또는 일부분이 화폐자본으로 전화되여있는것이다.

생산자본의 순환은 고전경제학이 산업자본의 순환과정을 고찰할 때 사용하는 형태이다.

제 3 장

상품자본의 순환

상품자본의 순환을 표시하는 일반적공식은 다음과 같다.

W′—G′—W…P…W′

W′는 상술한 두 순환의 산물로서 나타날뿐만아니라 그것들의 전제로서도 나타난다. 왜냐 하면 생산수단자체가 적어도 일부분은 지금 순환하고있는 다른 개별적자본의 상품생산물인 한에 있어서는, 한 자본에 있어서 G—W인것이 이미 다른 자본에 있어서의 W′—G′를 내포하고있기때문이다. 례컨대 우리의 례에서는 석탄, 기계 등등은 채탄업자, 자본주의적기계제조업자 등등의 상품자본이다. 그리고 제1장 제4절에서 보여준바와 같이 이미 G…G′의 최초의 반복에서는, 이미 화폐자본의 이 제2순환이 끝나기전에 순환 P…P뿐만아니라 순환 W′—W′도 전제로 되여있다.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이 수행된다면 마지막의 W′는 처음의 W′보다 더 크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것을 W′로써 표시하여야 한다.

제3형태와 처음 두 형태간의 차별은 다음과 같은데서 나타난다. 첫째로, 이 제3형태에서는 대립하는 두 단계로 된 총류통이 순환을 개시하는데 형태Ⅰ에서는 류통이 생산과정에 의하여 중단되며 형태Ⅱ에서는 서로 보충하는 두 단계로

된 총류통이 다만 재생산과정의 매개로서 나타날뿐이며 따라서 P…P간의 매개적운동을 이룬다. G…G′에서는 류통형태는 G—W…W′—G′=G—W—G이다. P…P에서는 류통형태는 그 반대의 형태 W′—G′. G—W=W—G—W이다. W′…W′에서도 류통형태는 역시 이 후자의 형태를 취한다.

둘째로, 순환 Ⅰ과 Ⅱ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종결점들인 G′ 및 P′가 새로 시작되는 순환의 출발점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 G′ 및 P′가 발생되던 형태는 없어진다. G′= G + g와 P′ = P + p는 다시 G 및 P로서 새로운 과정을 시작한다. 그러나 형태 Ⅲ에서는 순환이 동일한 규모로 갱신된다 하더라도 출발점 W는 W′로서 표시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것도 다음과 같은 리유에서이다. 형태 Ⅰ에서는 G′자체가 새로운 순환을 시작하자마자 그것은 화폐자본 G로서, 즉 증식되여야 할 자본가치의 화폐형태로의 선대로서 기능한다. 선대화폐자본의 크기는 최초의 순환에서 실시된 축적에 의하여 팽창되였기때문에 증대하였다. 그러나 선대화폐자본의 크기가 422파운드이든 또는 500파운드이든 그것이 단순한 자본가치로서 나타난다는 사정은 조금도 변경되지 않는다. G′는 이미 증식된 즉 잉여가치를 잉태한 자본으로서는, 자본관계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과정에서만 증식되여야 한다. P…P′의 경우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이다. P′는 항상 P로서, 잉여가치를 생산하여야 할 자본가치로서 기능을 계속하고 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 이와는 반대로 상품자본의 순환은 자본가치로써 시작되는것이 아니라 상품형태로 증식된 자본가치로써 시작되며 따라서 그것은 처음부터 상품형태로 존재하는 자본가치의 순환뿐만아니라 잉여가치의 순환도 포함하고있다. 그러므로 이 형태에서 단순재생산이 진행된다면

종결점에서나 출발점에서나 동일한 크기의 W′가 등장한다. 만약 잉여가치의 일부분이 자본순환에 들어간다면 종결에서는 W′가 아니라 W′가, 보다 더 큰 W′가 나타나지만 그다음 순환은 이전 순환에서보다 더 큰 W′에 불과한 W′를 가지고 시작되며 그것은 자체의 새로운 순환을 보다 더 큰, 축적된 자본가치를 가지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보다 더 큰 새로 생산된 잉여가치를 가지고 시작한다. 어느 경우에나 W′는 항상 자본가치+잉여가치와 같은 상품자본으로서 순환을 시작한다.

W′가 하나의 산업자본의 순환에서 W로서 나타나는것은 이 자본의 형태로서가 아니라 생산수단이 그 생산물인 한에 있어서의 다른 한 산업자본의 형태로서이다. 제1의 자본의 G—W(즉 G—Pm)라는 행위는 이 제2의 자본에 있어서는 W′—G′이다.

류통과정 $G—W<^{A}_{Pm}$에서 A와 Pm은 그것들이 그것들의 판매자들, 즉 일방에는 자기 로동력을 판매하는 로동자, 타방에는 생산수단을 판매하는 생산수단소유자의 수중에 있는 상품인 한에 있어서는 쌍방이 다 같은 상태에 있다. 구매자의 화폐는 여기서는 화폐자본으로서 기능하는데 구매자에게 있어서는 A와 Pm은 그가 아직 그것들을 구매하지 않은 동안은, 따라서 그의 화폐형태로 존재하는 자본에 대하여 타인의 상품으로서 대립하는 동안은 다만 상품으로서 기능할뿐이다. 여기서는 Pm과 A가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될뿐이다. 즉 Pm이 그 판매자의 자본의 상품형태인 경우에는 Pm은 그 판매자의 수중에서도 W′이며 따라서 자본일수 있으나, A는 로동자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상품에 불과하며 구매자의 수중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P의 구성부분으로서 자본으로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W′는 단순한 W로서는, 자본가치의 단순한 상품형태로서는 결코 순환을 개시할수 없다. 상품자본으로서는 그것은 언제나 하나의 이중물이다. 사용가치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P의 기능의 생산물, 여기서는 방사이며 그 요소인 A와 Pm은 상품으로서 류통에서 나오며 다만 이 생산물의 생산물형성자로서 기능하였을따름이다. 둘째로, 가치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자본가치 P 플루스 P의 기능에 의하여 생산된 잉여가치 m이다.

오직 W′는 그 자체의 순환에서만 W(=P=자본가치)는 W′중 잉여가치를 이루는 부분, 즉 잉여가치가 들어있는 잉여생산물로부터 분리될수 있으며 또 분리되지 않으면 안되며 이 량자가 방사의 경우에서와 같이 실지 분리될수 있는가 또는 기계에서와 같이 실지 분리될수 없는가 하는것은 아무래도 좋다. 이 량자는 W′가 G′로 전화되기만 하면 언제나 분리될수 있게 된다.

총상품생산물이 례컨대 우리의 10,000폰드 방사와 같이 독립적인 같은 질의 부분생산물들로 분리될수 있는것이고 따라서 W′—G′라는 행위가 순차로 수행되는 많은 판매의 합계로서 표시될수 있는 경우에는 따라서 전체로서의 W′가 실현되기전에 상품형태에 있는 자본가치는 잉여가치가 실현되기전에 W로서 기능할수 있으며 W′로부터 분리될수 있다.

500파운드이라는 가치의 10,000폰드의 방사중에서 8,440폰드의 가치=422파운드=자본가치는 잉여가치로부터 분리되여 있다. 자본가가 우선 8,440폰드의 방사를 422파운드로 판다면 이 8,440폰드의 방사는 상품형태에 있는 자본가치 W를 표시한다. 그밖에 W′에 포함되여있는 1,560폰드의 방사라는 잉여생산물=78파운드의 잉여가치는 후에야 류통하게 될것이다.

자본가는 W—G—W<$^{A}_{Pm}$을 잉여생산물의 류통 w—g—w가 진행되기전에 수행할수 있을것이다.

혹은 또 그가 우선 372파운드라는 가치의 7,440폰드의 방사를 팔고 그 다음에 50파운드라는 가치의 1,000폰드의 방사를 판다면 W의 제1부분으로써는 생산수단(불변자본부분 c)이 보상될수 있을것이며 W의 제2부분으로써는 가변자본부분 v, 즉 로동력이 보상될수 있을것이며 그리고 그다음에도 이상과 마찬가지로 될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몇번이고 판매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면, 그리고 순환의 제 조건이 이것을 허용한다면 자본가는 W′를 c+v+m으로 분할하지 않고 이러한 분할을 W′의 나누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역시 진행할수 있다.

례컨대 W′ (10,000폰드의 방사=500파운드)의 부분으로서 불변자본부분을 대표하는 7,440폰드의 방사 = 372파운드는 그 자체가 또 다만 불변부분, 즉 7,440폰드의 방사에 소비된 생산수단 가치만을 보상하는 276.768파운드라는 가치의 5,535.360폰드의 방사와 다만 가변자본만을 보상하는 37.200파운드라는 가치의 744폰드의 방사와 잉여생산물로서 잉여가치의 담당자인 58.032파운드라는 가치의 1,160.640폰드의 방사로 분할될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판매되는 7,440폰드중에서 6,279.360폰드의 방사를 313.968파운드라는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7,440폰드에 포함되여있는 자본가치를 보상할수 있으며 잉여생산물 1,160.640폰드의 가치=58.032파운드를 수입으로서 지출할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본가는 또 1,000폰드의 방사=50파운드=가변자본가치를 분할하여 또 그러한 방법으로 판매할수 있다. 37.200파운드라는 가치의 744폰드의 방사는 1,000폰드의 방

사의 불변자본가치에 상당하다. 5.000파운드라는 가치의 100폰드의 방사는 그 가변자본부분에 상당하다. 따라서 42.200파운드라는 가치의 844폰드의 방사는 1,000폰드의 방사에 포함되여있는 자본가치를 보상한다. 마지막으로 7.800파운드라는 가치의 156폰드의 방사가 남는데 그것은 1,000폰드의 방사속에 포함되여있는 잉여생산물을 표시하며 잉여생산물로서 소비될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직 남아있는 78파운드라는 가치의 1,560폰드의 방사를 판매하는데 성공한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이 나눌수 있다. 즉 58.032파운드라는 가치의 1,160.640폰드의 방사의 판매는 1,560폰드의 방사에 포함되여있는 생산수단의 가치를 보상하고 7.800파운드라는 가치의 156폰드의 방사의 판매는 가변자본의 가치를 보상한다. 합계 1,316.640폰드의 방사=65.832파운드는 총자본가치를 보상한다. 마지막으로 잉여생산물 243.360폰드=12.168파운드가 남아서 수입으로서 지출될수 있다.

방사속에 존재하는 c, v, m이라는 매개 요소가 각각 다시 동일한 구성부분들로 분할될수 있는것처럼 1실링=12펜스라는 가치의 1폰드의 방사도 다음과 같이 분할될수 있다.

c = 0.744폰드의 방사 = 8.928펜스
v = 0.100폰드의 방사 = 1.200펜스
m = 0.156폰드의 방사 = 1.872펜스

c + v + m = 1 폰드의 방사 = 12 펜스

상술한 세개의 부분적판매의 결과를 합계한다면 10,000폰드의 방사를 단번에 판매하는 경우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불변자본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다.

제1판매에서 5,535.360폰드의 방사=276.768파운드
제2판매에서 744.000폰드의 방사= 37.200파운드
제3판매에서 1,160.640폰드의 방사= 58.032파운드
합 계 7,440폰드의 방사= 372 파운드

가변자본에 있어서는

제1판매에서 744.000폰드의 방사=37.200파운드
제2판매에서 100.000폰드의 방사= 5.000파운드
제3판매에서 156.000폰드의 방사= 7.800파운드
합 계 1,000폰드의 방사= 50 파운드

잉여가치에 있어서는

제1판매에서 1,160.640폰드의 방사=58.032파운드
제2판매에서 156.000폰드의 방사= 7.800파운드
제3판매에서 243.360폰드의 방사=12.168파운드
합 계 1,560폰드의 방사= 78 파운드

총계에서는

불변자본 7,440폰드의 방사=372파운드
가변자본 1,000폰드의 방사= 50파운드
잉여가치 1,560폰드의 방사= 78파운드
합 계 10,000폰드의 방사=500파운드

W′—G′는 그자체로서는 10,000폰드의 방사의 판매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이 10,000폰드의 방사는 다른 모든 방사와 같이 상품이다. 구매자가 관심을 가지는것은 1폰드당 1실링, 즉 10,000폰드에 대하여 500파운드라는 가격이다. 만일 거래에 있어서 구매자가 가치구성을 운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만 교활한 의도에서, 1폰드를 1실링보다 싸게 판매할수 있으며 그렇게 되더라도 판매자는 리득을 많이 볼수 있다는것

을 증명하려고 하는 음험한 의도에 의한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가 구매하는 량은 그의 필요에 의하여 결정된다. 례컨대 그가 직조공장주라면 그가 구매하는 량은 직조공장에서 기능하는 그 자신의 자본의 구성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고 그에게 판매하는 방적업자의 자본의 구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W′가 한편으로는 그 생산에 소비된 자본(또는 그 각이한 구성부분들)을 보상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잉여가치의 지출을 위하여서든가 또는 자본축적을 위하여 잉여생산물로서 복무하여야 할 비률은 다만 10,000폰드의 방사를 상품형태로 하는 자본의 순환중에만 존재할뿐이다. 이러한 비률은 판매 그 자체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밖에 여기에서는 W′가 그 가치대로 판매된다는것, 따라서 W′의 상품형태로부터 화폐형태로의 전화만이 문제로 되고있다고 전제되여 있다. 이 개별적자본의 순환에서 생산자본을 보상하여야 하는 기능형태로서의 W′에 있어서는 판매할 때 가치와 가격이 서로 배리되는가 또 어느 정도로 배리되는가 하는것이 물론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형태의 차이만을 고찰하는데 있어서는 이 문제에 론급할 필요는 조금도 없다.

형태 I, 즉 G…G′에서는 생산과정은 두개의 서로 보충하며 서로 대립하는 자본류통단계들의 중간에서 진행된다. 그것은 종결단계인 W′—G′가 시작하기전에 지나가고있다. 화폐는 자본으로서 선대되여 우선 생산요소들로 전화되고 이 생산요소들로부터 상품생산물로 전화되며 그리고 이 상품생산물은 다시 화폐로 전화된다. 이것은 완전히 종결된 사업순환이며 이것의 결과는 무엇에나 사용될수 있는 화폐이다. 그리하여 과정의 새로운 개시는 다만 가능성으로서만 주어져있다. G…P…G′는 개별적자본이 사업으로부터 철수할 때 그 기능을

종결시키는 마지막 순환일수도 있으며 새로 기능을 개시하는 개별적자본의 최초의 순환일수도 있다. 일반적운동은 여기에서는 G…G′, 즉 화폐로부터 보다 많은 화폐로의 운동이다.

형태 Ⅱ, 즉 P…W′—G′—W…P(P′)에서는 총류통과정이 제1의 P에 뒤따르며 제2의 P에 앞선다. 그러나 그것은 형태 Ⅰ에서와는 반대되는 순서로 진행된다. 제1의 P는 생산자본이며 그 기능은 뒤따르는 류통과정의 선행조건으로서의 생산과정이다. 이와 반대로 마지막 P는 생산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 산업자본이 다시 생산자본의 형태로 존재하는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것으로 존재하는것은 최후의 류통단계에서 자본가치가 A+Pm로, 즉 결합되여 생산자본의 존재형태를 이루는 주체적요인과 객체적요인들로 전화된 결과로서이다. 자본은 P이든 P′이든간에 최후에는 다시 새로 생산자본으로서 기능하며 생산과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형태를 가지고 나타난다. 운동의 일반적형태, P…P는 재생산의 형태이며 그것은 G…G′처럼 가치증식을 과정의 목적으로서 표시하지 않는다. 그렇기때문에 이 형태는 고전경제학이 생산과정의 일정한 자본주의적형태를 무시하고 생산 그 자체를 과정의 목적으로서 묘사하며 그리하여 부분적으로는 생산의 갱신(G—W)을 위하여, 부분적으로는 소비(g—w)를 위하여 되도록 많이, 되도록 싸게 생산하며 생산물을 되도록 다방면의 생산물들과 교환하는것을 과정의 목적으로 설명하는것을 더욱 쉽게 한다. 즉 G나 g는 여기서는 다만 일시적인 류통수단으로서 나타날뿐이므로 화폐의 특성이나 화폐자본의 특성이 간과될수 있으며 전체 과정이 단순한 자연적인것으로서 나타난다. 즉 천박한 합리주의의 자연성을 가진다.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상품자본의 경우에는 때때로 리윤이 망각될수도 있

다. 그리고 전체로서의 생산순환이 문제로 될 때에는 상품자본은 다만 상품으로서 나타나고 가치의 구성부문들이 문제로 될 때에는 그것이 상품자본으로서 나타난다. 축적도 물론 생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형태 Ⅲ, 즉 W′—G′—W…P…W′에서는 류통과정의 두 단계가 순환을 시작하며 그리고 두 단계의 순서는 형태 Ⅱ, P…P의 경우와 동일하다. 그다음에 P가 뒤따르며 형태 Ⅰ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기능으로서 생산과정을 수반한다. 이 생산과정의 결과로서의 W′로써 순환은 종결된다. 형태 Ⅱ에서 생산자본의 단순한 재존재로서의 P로써 순환이 종결되는것과 같이 형태 Ⅲ에서는 상품자본의 재존재로서의 W′로써 순환이 종결된다. 형태 Ⅱ에서는 종결형태 P에 있는 자본이 다시 과정을 생산과정으로서 개시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마찬가지로 형태 Ⅲ에서는 산업자본이 상품자본의 형태로서 재현하는것과 함께 순환은 또 새로 류통단계 W′—G′로써 개시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두 순환형태는 완성되지 않았다. 왜냐 하면 이러한 형태는 G′, 즉 **화폐**로 재전화된 증식된 자본가치로써 종결되지 않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두 형태는 계속 더 진행되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재생산을 포함하고있다. 형태 Ⅲ에서의 총순환은 W′…W′이다.

제3형태를 처음의 두 형태로부터 구별하게 하는것은 다만 이 순환에서만 앞으로 증식되여야 할 최초의 자본가치가 아니라 이미 증식된 자본가치가 가치증식의 출발점으로서 나타난다는 사정이다. 여기에서는 자본관계로서의 W′가 출발점이며 그것은 그러한 관계로서 전체 순환에 대하여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왜냐 하면 W′는 이미 그 제1단계에서 자본가치의 순환도 잉여가치의 순환도 포함하고있으며 잉여가치는 비록

어느 순환에서는 아니더라도 평균적으로는 일부분은 수입으로서 지출되여 류통 w—g—w를 통가하지 않으면 안되며 일부분은 자본축적의 요소로서 기능하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이다.

W′…W′라는 형태에서는 총상품생산물의 소비가 자본자체의 순환의 정상적진행의 조건으로서 전제되여있다. 로동자의 개인적소비와 잉여생산물중 축적되지 않은 부분의 개인적소비는 개인적소비의 전체를 이룬다. 따라서 총체로서 본—개인적소비로서도 생산적소비로서도—소비는 W′의 순환에 그 조건으로서 들어간다. 생산적소비(여기에는 사실상 로동자의 개인적소비도 포함된다. 왜냐 하면 로동력은 일정한 한계내에서는 로동자의 개인적소비의 부단한 생산물이기때문이다.)는 매 개별적자본자체에 의하여 수행된다. 개인적소비는 개별적자본가의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것을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사회적행위로서 전제되고있을뿐 결코 개별적자본가의 행위로서는 전제되는것이 아니다.

형태 Ⅰ과 형태 Ⅱ에서는 총운동이 선대자본가치의 운동으로서 나타난다. 형태 Ⅲ에서는 증식된 자본이 총상품생산물의 모습을 가지고 출발점으로 되여있으며 운동하는 자본, 상품자본의 형태를 취하고있다. 이 상품자본이 화폐로 전화된후에야 비로소 이 운동은 자본의 운동과 수입의 운동으로 갈라진다. 이 형태에서는 한편으로는 개인적소비기금으로의, 다른 한편으로는 재생산기금으로의 사회적총생산물의 분배와 또 량자에로의 각 개별적상품자본에 대한 생산물의 특수한 분배가 자본의 순환에 포함되여있다.

G…G′에는 새로 반복되는 순환에 들어가는 g의 크기에 따라 순환확대의 가능성이 포함되여있다.

P…P에서는 P는 새로운 순환을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개

시하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더 작은 가치를 가지고 개시할수 있으나 그러면서도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을 표시할수 있다. 례컨대 로동의 생산성이 제고되였기때문에 상품의 요소들이 싸게 되는 경우에 그러하다. 거꾸로 이와 반대되는 경우에는 가치로 보아 증대된 생산자본이 소재상으로는 축소된 규모에서의 재생산을 표시할수도 있다. 례컨대 생산요소들이 비싸지는 경우에 그러하다. 동일한것은 W′…W′에 대하여서도 말할수 있다.

W′…W′에서는 상품형태로 있는 자본이 생산의 전제로 되고있다. 그것은 제2의 W로 되여 또다시 그 순환의 내부에서 전제로서 나타난다. 만약 이 W가 아직 생산되지 않았거나 또는 재생산되지 않았다면 순환은 저지된다. 이 W는 대부분은 다른 산업자본의 W′로서 재생산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순환에서 W′는 운동의 출발점, 통과점 및 종점으로서 존재하며 따라서 언제나 존재한다. 그것은 재생산과정의 일상적인 조건이다.

W′…W′는 또 하나의 계기에 의하여서도 형태 Ⅰ 및 형태 Ⅱ와 구별된다. 이 세 순환전체에 공통한것은 자본이 순환과정을 개시할 때 취하는 형태는 종결할 때 취하는 형태이라는것, 따라서 자본이 다시 시초형태로 나타나 그 형태로 또 동일한 순환을 새로 개시한다는것이다. 시초형태 G, P, W′는 어느 경우에나 자본가치가(형태 Ⅲ에서는 자본가치의 증대된 부분, 즉 잉여가치를 포함하여) 선대되는 형태이며 따라서 순환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본가치의 최초의 형태이다. 마지막형태 G′, P, W′는 어느 경우에나 순환에서 그것들에 선행하나 최초의 형태가 아닌 기능형태의 전화된 형태이다.

이리하여 형태 Ⅰ에서의 G′는 W′의 전화된 형태이며 형

태 Ⅱ에서의 마지막 P는 G의 전화된 형태이다. (그리고 형태 Ⅰ과 형태 Ⅱ에서는 이 전화는 상품류통의 단순한 과정에 의하여, 상품과 화폐의 형태적인 장소변경에 의하여 생긴다.) 형태 Ⅲ에서는 W′는 생산자본 P의 전화된 형태이다. 그러나 이 Ⅲ에서는 첫째로, 전화가 자본의 기능형태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량에도 관련된다. 그리고 둘째로, 이 전화는 류통과정에 속하는 단순히 형태적인 장소변경의 결과인 것이 아니라 생산자본의 상품구성부분들의 사용형태와 가치가 생산과정에서 수행한 현실적전화의 결과이다.

최초의 극의 형태 G, P, W′는 매번의 순환 Ⅰ, Ⅱ, Ⅲ에 대하여 전제로 되여있다. 최후의 극에서 재현하는 형태는 순환자체의 변태렬에 의하여 정립되며 따라서 또 이 변태렬에 의하여 제약된다. W′는 한 개별적산업자본의 순환의 종점으로서는 다만 그 W′를 생산물로 하는 동일한 산업자본의 류통에 속하지 않는 형태 P만을 전제로 한다. G′는 순환 Ⅰ의 종점으로서는, 즉 W′의 전화된 형태(W′—G′)로서는 구매자의 수중에 있는 G를 전제로 하며 G는 순환 G…G′의 외부에 존재하며 W′의 판매에 의하여 이 순환에 인입되여 이 순환자체의 종말형태로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순환 Ⅱ에서는 종점 P는 A와 Pm(W)을 순환의 외부에 존재하며 G—W에 의하여 결합되여 종말의 형태로서의 P가 되는것으로서 전제한다. 그러나 종말의 극을 도외시하면 개별적화폐자본의 순환은 화폐자본일반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또 개별적생산자본의 순환도 이미 순환하고있는 생산자본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순환 Ⅰ에서는 G가 력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최초의 화폐자본으로, Ⅱ에서는 P가 력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최초의 생산자본으로 될수 있다. 그러나 Ⅲ의

$$W' \begin{cases} W- \\ -G' \begin{cases} G-W<_{Pm}^{A} \cdots P \cdots W' \\ \\ g-w \end{cases} \\ w \end{cases}$$

.에서는 W가 순환의 외부에 존재하는것으로서 두번 전제되여 있다. 한번은 순환 $W'-G'-W<_{Pm}^{A}$에서이다. 이 W는 그것이 Pm으로 되여있는 한에서는 판매자의 수중에 있는 상품이다. 그것이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의 생산물인 한에서는 그자체가 상품자본이다.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상인의 수중에서는 상품자본으로서 나타난다. 또 한번은 w—g—w에서의 제2의 w에서이다. 이 w도 역시 구매될수 있기 위하여서는 상품으로서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쨌든 상품자본이든 아니든간에 A나 Pm은 W′와 마찬가지로 상품이며 또 상품으로서 서로 관계한다. 그 w—g—w에서의 제2의 w에 대하여서도 같은 말을 할수 있다. 그리하여 W′=W(A+Pm)인 한 그것은 상품들을 그 자체의 형성요소들로 하고있으며 류통에서 대등한 상품들로써 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 w—g—w에서도 제2의 w는 류통에서 다른 대등한 상품들로써 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또 지배적인 생산방식으로서의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기초우에서는 판매자의 수중에 있는 모든 상품은 상품자본이 아니면 안된다. 그것은 상인의 수중에서도 계속 상품자본이며 혹은 또 아직 그것이 상품자본이 아니였다면 상인의 수중에서 상품자본으로 된다. 혹은 또 그것은 최초의 상품자본을 보상하고 그리하여 이 상품자본에게 다만 다른 존재형태를 부여하는 그러한 상품—례컨대 수입품—이 아니면 안된다.

생산자본 P를 구성하는 상품요소 A와 Pm은 P의 존재형태들로서는 그것들이 수집되는 여러가지 상품시장들에 있을 때와

같은 모습을 가지지는 않는다. 그것들은 이제는 결합되여있으며 또 결합된 상태로 생산자본으로서 기능할수 있다.

다만 이 형태 Ⅲ에서만 순환자체의 내부에서 W가 W의 전제로서 나타난다는것은 출발점이 상품형태에 있는 자본이라는데 유래한다. 이 순환은 W′(잉여가치의 첨가에 의하여 증대되였건 안되였건간에 자본가치로서 기능하는 한)가 W′의 생산요소로 되는 상품들로 전환됨으로써 개시된다. 그러나 이 전환은 전체 류통과정 W—G—W(=A+Pm)를 포괄하며 이 과정의 결과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량극에 W가 서있으나 제2의 극, 즉 그 형태 W를 G—W에 의하여 외부의 상품시장으로부터 얻는 제2의 극은 순환의 최종극이 아니고 다만 순환의 최초의 두 단계, 즉 류통과정을 포괄하는 단계의 최종극에 지나지 않는다. 류통과정의 결과는 P이며 그다음에 이 P의 기능인 생산과정이 시작된다. W′는 류통과정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이 생산과정의 결과로서 비로소 순환의 종점으로서 시초의, 즉 W′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이와 반대로 G…G′와 P…P에서는 종말의 극들인 G′와 P는 류통과정의 직접적결과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다만 종점에서 첫째 경우에는 타인의 수중에 있는 G′가 전제로 되여있고 둘째 경우에는 타인의 수중에 있는 P가 전제로 되여있다. 순환이 두극간에서 진행되는 한 첫째 경우의 G도, 둘째 경우의 P도—타인의 화폐로서의 G의 존재도 타인의 생산과정으로서의 P의 존재도—이 순환들의 전제로서 나타나는것은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W′…W′는 타인의 수중에 있는 타인의 상품으로서의 W(=A+Pm)를 전제로 하며 이 상품들은 최초의 류통과정에 의하여 순환에 인입되여 생산자본으로 전화되고 이 생산자본의 기능의 결과로서 다음에는 W′가 다시 순환의 종말형태로 된다.

그러나 순환 W′…W′는 그 궤도안에서 W(=A+Pm)의 형태에 있는 다른 산업자본을 전제로 하기때문에(그리고 Pm은 각이한 종류의 다른 자본, 례컨대 우리의 경우에는 기계, 석탄, 기름 등등을 포괄하기때문에) 이 순환자체가 다음과 같은것을 요구한다. 즉 이 순환을 다만 순환의 **일반적**형태로서, 즉 각 개별적산업자본(그것이 최초에 투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을 그 아래에서 고찰할수 있는 사회적형태로서, 따라서 모든 개별적산업자본들에 공통한 운동형태로서 고찰할뿐만아니라 동시에 각이한 개별적자본들의 총화, 즉 자본가계급의 총자본의 운동형태로서 고찰할것을 요구하며 이 운동에서는 각 개별적산업자본의 운동은 다만 하나의 부분운동으로서 나타날뿐이며 이 부분운동은 또 다른 부분운동과 엉키며 다른 부분운동에 의하여 제약된다. 례컨대 우리가 어떤 나라의 1년간의 총상품생산물을 고찰하고 그 일부분이 모든 개별적기업들에서의 생산자본을 보상하며 다른 부분이 여러 계급들의 개인적소비로 들어가는 운동을 분석한다면 우리는 W′…W′를 사회적자본의 운동형태로서 또 사회적자본에 의하여 생산되는 잉여가치 또는 잉여생산물의 운동형태로서 고찰하는것이다. 사회적자본=개별적자본들의 총화(주식자본도 포함하여 또는 정부가 생산적임금로동을 광산, 철도 등등에서 사용하며 산업자본가로서 기능하는 한에서는 국가자본도 포함하여)이며 또 사회적자본의 총운동=개별적자본들의 운동의 대수적총화라는것은 결코 다음과 같은것을 배제하는것이 아니다. 즉 이 운동은 단독적인 개별적자본의 운동으로서는 이 동일한 운동이 사회적자본의 총운동의 일부분이라는 관점에서, 즉 사회적자본의 다른 부분들의 운동과의 관련에서 고찰되는 경우와는 다른 현상들을 보여준다는것, 또 동시에 이

운동은 여러가지 문제, 즉 개개의 개별적자본의 순환의 고찰에 의하여 해결되는것이 아니고 그러한 고찰에서는 해결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되는 제 문제를 해결한다는것이 그것이다.

W′…W′는 최초에 선대된 자본가치가 운동을 시작하는 극의 일부분만을 이루며 따라서 운동은 처음부터 산업자본의 전체 운동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유일한 순환이다. 이 전체 운동은 생산적자본을 보상하는 생산물부분의 운동이기도 하고 잉여생산물을 이루는(그리고 평균적으로 일부분은 수입으로서 지출되며 일부분은 축적의 요소로서 사용되여야 할) 생산물부분의 운동이기도 하다. 수입으로서의 잉여가치의 지출이 이 순환에 포함되여있는 한 이 순환에는 개인적소비도 포함되여있다. 그리고 또 이 개인적소비는 출발점의 상품 W가 그 어떤 사용물품으로서 존재한다는 사정에 의하여서도 이 순환에 포함된다. 자본주의적으로 생산되는 모든 물품은 그 사용형태가 그것을 생산적소비용으로 하거나 또는 개인적소비용으로 하거나 또는 이 량자용으로 하거나 할것없이 다 상품자본인것이다. G…G′는 가치측면을, 전체 과정의 목적으로서의 선대자본가치의 증식을 제시할따름이며 P…P(P′)는 생산자본의 불변한 크기의 재생산과정 또는 증대된 크기의 재생산과정(축적)으로서의 자본의 생산과정을 제시한다. W′…W′는 이미 그것의 최초의 극에서 자본주의적상품생산의 모습으로서 나타나며 따라서 처음부터 생산적소비와 개인적소비를 포함한다. 생산적소비와 그속에 포함되여있는 가치증식은 다만 W′…W′운동의 곁가지로서만 나타난다. 끝으로, W′는 이제는 어떠한 생산과정에도 들어갈수 없는 사용형태로 존재할 수 있기때문에 생산물의 부분들로 표현되는 W′의 각이한 가치구성부분들은 W′…W′가 사회적총자본의 운동형태로 인정되

는가 또는 개별적산업자본의 독립적운동으로 인정되는가에 따라 다른 지위를 차지하지 않을수 없다는것은 처음부터 제시되여있다. 이 순환은 그의 이러한 모든 특성들로 말미암아 단순한 개별적인 자본의 고립된 순환으로서의 그 자체의 범위를 넘어선것임을 보여준다.

공식 W′…W′에서는 상품자본, 즉 자본주의적으로 생산되는 총생산물의 운동은 개별적자본의 독립적순환의 전제로서 나타나는 동시에 그 자체가 이 순환에 의하여 제약되는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만일 이 형태의 특성이 파악된다면 변태 W′—G′와 G—W는 한편으로는 자본의 변태중의 기능적으로 규정된 단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상품류통의 고리라는것을 지적하는것만으로도 이미 불충분하다. 한 개별적자본의 변태와 다른 개별적자본들의 변태와의 엉킴, 또 그것과 총생산물중 개인적소비로 돌려지는 부분과의 엉킴을 분명히 하는것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개별적산업자본의 순환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우리는 주로 제1 및 제2의 형태를 기초로 삼는다.

순환 W′…W′가 하나의 개별적자본의 형태로서 나타나는것은 레컨대 수확으로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계산되는 농업에서이다. 공식 Ⅱ에서는 파종이, 공식 Ⅲ에서는 수확이 출발점으로 된다. 또는 중농학파들이 말하는데 의하면 전자에서는 《선대》(avances)가, 후자에서는 《회수》(reprises)가 출발점으로 된다. Ⅲ에서는 자본가치의 운동은 처음부터 일반적인 생산물량의 운동의 일부분으로서 나타날뿐인데 Ⅰ과 Ⅱ에서는 W′의 운동은 다만 개별적자본의 운동에 있어서의 한 계기를 이루고있을뿐이다.

공식 Ⅲ에서는 시장에 있는 상품이 생산과정 및 재생산

과정의 경상적인 전제를 이룬다. 그러므로 이 공식에 주의를 집중시킨다면 생산과정의 모든 요소들은 상품류통에서 오는 듯이 보이며 다만 상품들로만 구성되여있는듯이 보인다. 이러한 일면적인 리해는 생산과정의 요소들중 상품요소들과는 독립한 요소들을 간과하고있는것이다.

W'…W'에서는 총생산물(총가치)이 출발점이므로 거기에서는 생산성에 변화가 없어도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이 진행될수 있는것은 다만(대외무역을 무시한다면) 잉여생산물중의 자본화되는 부분속에 추가적생산자본의 소재적요소들이 이미 포함되여있는 경우뿐이라는것이 표시된다. 따라서 어떤 해의 생산이 다음해의 생산의 전제로 되는 한 또는 그것이 같은 한해동안의 단순재생산과정과 동시에 진행될수 있는 한 잉여생산물은 즉시 추가적자본으로서 기능할수 있는 형태로 생산된다는것도 표시된다. 생산성의 증대는 자본소재의 가치를 제고시킴이 없이 다만 자본소재의 량만을 증대시킬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가치증식을 위한 추가적 재료를 형성한다.

W'…W'는 께내의 《경제표》의 기초로 되여있다. 그리고 그가 G…G'(중상주의가 그것만을 고립시켜 고수한 형태)와 대립시켜 이 형태를 선택하였다는것, 그리고 P…P를 선택하지 않았다는것은 그의 위대하고 정확한 분별력을 보여주는것이다.

제 4 장

순환과정의 세 공식

Ck로써 총류통과정을 표시한다면 이 세 공식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수 있다.

(Ⅰ) G—W…P…W′—G′

(Ⅱ) P…Ck…P

(Ⅲ) Ck…P(W′)

세 형태를 총괄하여본다면 과정의 모든 전제들은 과정의 결과로서, 과정자체에 의하여 산생된 전제로서 나타난다. 매개계기가 출발점, 통과점 및 귀착점으로서 나타난다. 총과정은 생산과정과 류통과정의 통일로서 표시되며 생산과정은 류통과정의 매개자로 되며 또 그 반대로 후자가 전자의 매개자로 된다.

세 순환의 어느것에나 공통한것은 규정적목적으로서의 추진적동기로서의 가치증식이다. 형태 Ⅰ에서는 이것이 형태에 표현되여있다. 형태 Ⅱ는 P로 시작되며 가치증식과정 그 자체로 시작한다. 형태 Ⅲ에서는 순환은 증식된 가치로 시작되고 새로 증식된 가치로 종결되며 운동이 종전과 다름없는 규모로 반복될 때에도 그러하다.

W—G가 구매자에게 대하여서는 G—W이며 또 G—W가 판매자에게 대하여서는 W—G인만큼 자본의 류통은 상품의 보통의 상품변태를 표시할따름이며 상품변태의 개소에서(제1권, 제3

권 제2절) 전개된 류통화폐량에 관한 법칙들이 여기에서도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측면에 머물지 않고 여러가지 개별적자본들의 변태들간의 현실적련계를 본다면, 즉 사실상 사회적총자본의 재생산과정의 부분운동들로서의 개별적자본들의 순환의 련관을 본다면 이 련관을 화폐와 상품의 단순한 형태변환으로써는 설명할수 없다.

부단히 회전하는 원에서는 모든 점이 출발점인 동시에 귀착점이다. 회전을 중단시키고보면 어느 출발점이나 다 귀착점인것은 아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이미 본바와 같이 매개의 특수한 순환이 다른 순환을 전제할(포함할)뿐만아니라 어떤 한 형태에서의 순환의 반복은 다른 형태에서 순환을 그리는것을 포함하고있다. 이리하여 각 순환의 차이전체가 단순히 형식적인 차이로서 또는 단순히 주관적인, 다만 고찰자에게만 존재할뿐인 차이로서 나타난다.

이러한 매개 순환이 각이한 개별적산업자본들이 취하는 특수한 운동형태로서 고찰되는 한에서는 이 차이도 역시 다만 개별적인 차이로서만 존재할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떤 개별적자본이든지 다 모든 세 순환상태에 동시에 존재한다. 이 세 순환, 자본의 세 모습의 재생산형태들은 련속적으로 병행하여 진행된다. 례컨대 지금 상품자본으로서 기능하고있는 자본가치의 일부분은 화폐자본으로 전화되지만 동시에 다른 일부분은 생산과정으로부터 나와 새로운 상품자본으로서 류통에 들어간다. 이와 같이 하여 $W'\cdots W'$의 원형이 부단히 그려지며 다른 두 형태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어떤 형태, 어떤 단계에 있는 자본의 재생산이든지 다 이 형태들의 변태나 련속적으로 진행되는 세 단계의 통과와 마찬가지로 련속적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총순환은 자본의 세 형태의 현실적통일이다.

우리의 고찰에서는 자본가치는 그 총가치량으로 보아 그 전체가 화폐자본으로나 생산자본으로나 상품자본으로나 그 어느 하나로서 나타난다고 가정되였다. 례컨대 422파운드를 처음에는 전부 화폐자본으로 가정하였고 그다음에는 역시 그 전체가 생산자본으로 전화되는것으로 가정하였고 마지막에는 상품자본, 즉 500파운드(그중 78파운드는 잉여가치)라는 가치의 방사로 가정하였다. 여기서는 각이한 단계들이 그것들과 같은 수의 중단을 이루고있다. 례컨대 422파운드가 화폐형태로 있는 동안은, 즉 구매 G—W(A+Pm)가 진행될 때까지는 자본전체가 다만 화폐자본으로서만 존재하며 화폐자본으로서만 기능한다. 그것이 일단 생산자본으로 전화되면 그것은 이제는 화폐자본으로서도 또는 상품자본으로서도 기능하지 않는다. 그의 총류통과정은 중단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편 그것이 두 류통단계중의 어느 한 단계에서 G로서나 W′로서 기능할 때에는 그 총생산과정은 중단된것이다. 따라서 순환 P…P는 생산자본의 주기적갱신으로서 나타날뿐만아니라 마찬가지로 또한 류통과정이 끝나기전까지의 생산자본의 기능의 중단, 생산과정의 중단으로서 나타날것이다. 그리하여 생산은 련속적으로가 아니라 단속적으로 진행될것이다. 그리고 생산의 갱신은 류통과정의 두 단계가 빨리 끝나는가 늦게 끝나는가에 따라 길이가 달라지는 기간후에야 비로소 진행될것이다. 례컨대 중국의 수공업자의 경우가 그러한데 그는 다만 자기 개인의 주문자들을 위하여서만 일하므로 새로운 주문이 있기전에는 그의 생산과정은 중지되는것이다.

실제로 상술한것은 운동하고있는 자본의 매개 부분들에 적용되며 자본의 모든 부분은 이 운동을 순차로 통과한다. 례컨대 10,000폰드의 방사가 방적업자의 주간생산물이라고

하자. 이 10,000폰드의 방사는 전부 생산분야로부터 나와 류통분야로 들어간다. 그 방사에 포함되여있는 자본가치는 전부 화폐자본으로 전화되지 않으면 안되며 그리고 그것이 화폐자본의 형태로 있는 동안은 그것은 다시 생산과정에 들어갈수 없다. 그것은 먼저 류통에 들어가서 생산자본의 요소 A+Pm으로 재전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자본의 순환과정은 부단한 중단이며 한 단계를 떠나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것이다. 그것은 한 형태를 버리고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것이다. 이러한 단계들은 각각 다른 단계의 조건으로 될뿐만아니라 동시에 그것을 배제한다.

그러나 련속성은 자본주의적생산의 특징이다. 그것은 비록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달성되는것은 아니지만 자본주의적생산의 기술적기초에 의하여 조건지어진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사태가 어떻게 되고있는가를 보자. 례컨대 10,000폰드의 방사가 상품자본으로서 시장에 나타나 화폐(이 화폐가 지불수단이든 구매수단이든 또는 단순히 계산화폐이든간에)로 전화되여가는 동안에 생산과정에는 방사대신에 새로운 면화, 석탄 등등이 들어가며 따라서 이미 화폐형태와 상품형태로부터 다시 생산자본의 형태로 재전화되였고 생산자본으로서의 기능을 시작한다. 제1의 10,000폰드의 방사가 화폐로 전화되는것과 같은 시간에 그 이전의 10,000폰드의 방사는 이미 류통의 둘째 단계에 들어가 화폐로부터 생산자본의 요소들로 재전환된다. 자본의 모든 부분들이 순환과정을 순차로 통과하며 같은 시간에 순환과정의 각이한 단계들에 존재한다. 이와 같이 산업자본은 그 순환의 련속성에 의하여 동시에 순환의 모든 단계에 있으며 그 단계들에 상응하는 각이한 기능형태들로 존재한다. 처음으로 상품자본으로부터 화폐로 전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순환 W′…W′가 시작되지만 운동하고있는 전체로서의 산업자본에 있어서는 순환 W′…W′는 이미 통과되여있다. 한쪽 손으로는 화폐가 선대되며 다른 한쪽 손으로는 화폐가 취득된다. 어느 한 점에서의 순환 G…G′의 개시는 동시에 다른 한 점에서의 귀환이다. 생산자본에 있어서도 사태는 동일하다.

그러므로 련속적으로 진행되는 산업자본의 현실적순환은 단지 류통과정과 생산과정의 통일일뿐만아니라 그 모든 세 순환들의 통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러한 통일로 될수 있는것은 다만 자본의 각이한 매개 부분이 서로 뒤따르는 순환단계들을 순차로 통과할수 있으며 한 단계로부터 다른 단계로, 한 기능형태로부터 다른 기능형태로 이행할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의 전체로서의 산업자본이 동시에 각이한 단계들에 있고 각이한 기능들을 수행하며 그리하여 모든 세 순환을 동시에 통과하는 한에 있어서이다. 매개 부분들이 서로 뒤를 잇는것은 여기에서는 각 부분들의 병렬, 즉 자본의 분할을 조건으로 한다. 그리하여 레컨대 분업이 실시되고있는 공장체계에서는 생산물이 부단히 그의 형성과정의 각이한 단계들에 있는 동시에 부단히 한 생산단계로부터 다른 생산단계로 이행한다. 개별적산업자본은 어떤 일정한 크기를 표시하며 이 크기는 자본가의 자력에 의존하는 동시에 매개 산업부문마다 일정한 최소한도가 있으므로 산업자본의 분할에 있어서는 일정한 비률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현존하는 자본의 크기는 생산과정의 규모를 제약하며 이 규모는 생산과정과 나란히 기능하는 상품자본 및 화폐자본의 크기를 제약한다. 그러나 생산의 련속성의 조건을 이루는 병렬은 오직 자본의 각 부분들이 서로 뒤를 이어 각이한 단계들을 통과하는 운동에 의하여서만 존재한다. 이 병렬은 그 자체가 서로 뒤를 잇는것의 결과에 불과

하다. 례컨대 어떤 부분에 대하여 W′—G′가 정체되고 상품이 판매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의 순환은 중단되여 그 생산수단들의 보상은 진행되지 않는다. 또 그 뒤를 이어 생산과정으로부터 W′로 되여나오는 부분들은 그 기능전환을 선행자들에 의하여 저지당한다. 이러한 상태가 얼마간 계속된다면 생산은 제한되여 전체 과정이 정지상태에 놓인다. 서로 뒤를 잇는것이 정지될 때마다 병렬은 교란되게 되며 한 단계에서 정체될 때마다 정체된 자본부분의 총순환에 있어서뿐만아니라 이 개별적자본전체의 총순환에도 다소간의 정체를 일으킨다.

과정이 취하는 바로 그다음 형태는 새로운 단계로의 자본의 이행이. 다른 단계로부터의 자본의 퇴거에 의하여 필연적인 것으로 되는 단계들의 련속의 형태이다. 그러므로 매개의 특수한 순환은 자본의 기능형태들의 하나를 출발점으로 하며 귀착점으로 한다. 다른 한편 총과정은 사실상 세 순환의 통일이며 이러한 순환은 각기 과정의 련속성을 나타내는 각이한 형태들이다. 총순환은 자본의 매개 기능형태에 대하여서는 그 기능형태의 특수한 순환으로서 표현되며 그리고 이 순환들의 하나하나는 총과정의 련속성의 조건으로 된다. 한 기능형태의 순환운동이 다른 기능형태들의 순환의 조건으로 된다. 총생산과정이 동시에 재생산과정이며 따라서 또 그 각 계기의 순환이라는것은 총생산과정을 위한, 특히 사회적자본을 위한 하나의 필연적인 조건이다. 자본의 각이한 부분들은 각이한 단계들과 기능형태들을 순차적으로 통과한다. 이로 말미암아 매개 기능형태는 비록 그 형태에 있는 자본 부분은 부단히 달라진다 하더라도 다른 기능형태들과 동시에 그 자신의 순환을 통과한다. 자본의 한 부분, 부단히 교체되는 일부분은 부단히 재생산되고 상품자본으로서 존재하며 그것은 화폐로 전화한다. 다른 한 부분은

화폐자본으로서 존재하며 그것은 생산자본으로 전화된다. 제3부분은 생산자본으로서 존재하며 그것은 상품자본으로 전화된다. 언제나 세 형태가 모두 존재한다는것은 바로 이 세 단계를 통과하는 총자본의 순환에 의하여 매개된다.

따라서 자본은 전체로서는 동시적으로, 공간적으로 서로 병렬하여 그 각이한 단계들에 있게 된다. 그러나 매개 부분은 한단계, 한 기능형태로부터 다른 단계, 다른 기능형태로 부단히 순차로 이행하며 그리하여 순차로 모든 단계, 모든 형태에서 기능한다. 이와 같이 이 형태들은 류동적인 형태들이며 이것들의 동시성은 이것들이 서로 뒤를 잇는것에 의하여 매개된다. 매개 형태는 다른 형태에 뒤따르며 또 다른 형태에 선행한다. 그리하여 어떤 한 자본부분이 한 형태로 돌아오는것은 다른 자본부분이 다른 형태로 돌아오는것을 조건으로 한다. 매개 부분은 부단히 그 자신의 순환을 수행하지만 그러나 이 형태로 있는것은 언제나 자본의 다른 한 부분이며 이 특수한 순환들은 다만 총과정의 동시적이며 순차적인 계기들을 이루고있을뿐이다.

세 순환의 통일에 있어서만 총과정의 련속성—상술한바와 같은 중단이 아니라—이 실현된다. 사회적총자본은 언제나 이러한 련속성을 가지며 사회적총자본의 과정은 언제나 세 순환들의 통일을 가진다.

개별적자본들에 있어서는 재생산의 련속성이 때때로 많게나 적게 중단된다. 첫째로, 가치총량들이 흔히 각이한 시기들에 같지 않은 비률로 각이한 단계들과 기능형태들에 분배된다. 둘째로, 생산되는 상품의 성격에 따라, 즉 자본이 투하된 생산분야의 특수성에 따라 이 분배의 비률은 각이할 수 있다. 셋째로, 계절에 의존하는 생산부문들에서는 련속성

이 많게나 적게 중단될수 있다. 그것은 자연조건으로 인한것일수도 있고(농업이나 청어잡이 등등) 또는 례컨대 이른바 계절로동의 경우와 같이 관습적인 사정들로 인한것일수도 있다. 과정이 가장 규칙적으로, 가장 균일적으로 진행되는것은 공장과 광업에서이다. 그러나 생산부문들간의 이러한 차이는 순환과정의 일반적형태들의 차이를 일으키는것은 아니다.

자기를 증식하는 가치로서의 자본은 계급관계를, 임금로동으로서의 로동의 존재에 기초하는 일정한 사회적성격을 포함하고있을뿐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운동이며 여러가지 단계를 통과하는 순환과정이며 이 과정은 그 자체가 또한 순환과정의 세개의 각이한 형태를 포함하고있다. 그러므로 자본은 다만 운동으로서만 리해될수 있으며 정지하고있는 물건으로서는 리해될수 없다. 가치의 독립화를 단순한 추상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은 산업자본의 운동이 현실에 있어서의 이 추상이라는것을 잊어버리고있다. 가치는 여기에서는 여러가지 형태, 여러가지 운동들을 통과하며 이 운동중에서 자기를 보존하는 동시에 증식하고 확대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선 단순한 운동형태를 문제로 하고있으므로 자본가치가 그 순환과정에서 겪을수 있는 혁명은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일이지만 모든 가치혁명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적생산이 존재하는것은, 또 존재를 계속 할수 있는것은 오직 자본가치가 증식되는 한에 있어서이며 바꾸어말하면 독립화된 가치로서 그 순환과정을 그리는 한에 있어서이며 따라서 오직 가치혁명이 이렇게나 저렇게나 극복되고 상쇄되는 한에 있어서이다. 자본의 운동은 개개의 산업자본가의 행동으로서 나타난다. 즉 그가 상품과 로동의 구매자로서, 상품의 판매자로서, 생산적자본가로서 기능하는것이며 따라서 그의 활동에 의하여 순환을 매개하는것이다. 만일 사회

적자본가치가 가치혁명을 겪으면 소여자본가의 개별적자본은 이 가치운동의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기때문에 이 혁명에 패배하여 몰락하는 일이 생길수 있다. 가치혁명이 가일층 급성으로 되고 빈번하게 됨에 따라 독립화된 가치의 자동적인 운동, 불가항력적인 자연과정의 힘으로써 작용하는 운동은 개개의 자본가의 예견과 계산을 물리치고 더욱더 위력을 발휘하며 정상적생산의 진행은 더욱더 비정상적인 투기에 종속하게 되며 개별적자본의 생존에 대한 위험은 더욱더 크게 된다. 이리하여 이러한 주기적인 가치혁명은 그것이 부정한다고 하는것을, 즉 가치가 자본으로서 체험하며 자기의 운동에 의하여 유지하고 강화하는 독립화를 확증하는것이다.

과정을 진행하고있는 자본의 이러한 변태렬에는 순환중에서 일어난 자본의 가치량의 변화와 최초의 가치와 부단한 비교가 포함되여있다. 가치를 형성하는 힘, 즉 로동력과 대립되는 가치의 독립화가 G—A(로동력의 구매)라는 행위에서 준비되고 로동력의 착취로서의 생산과정에서 실현된다면 가치의 이러한 독립화는 이제는 이 순환에서는 다시 나타나지 않으며 이 순환에서는 화폐, 상품, 생산요소들이 다만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자본가치의 차례로 교체되는 형태들에 불과하며 거기서는 자본의 과거의 가치량이 현재의 변화된 가치량과 비교된다.

베일리는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을 특징짓는 가치의 독립화를 어떤 경제학자들의 환상으로 취급하면서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가치란 같은 시기에 존재하는 상품들간의 관계이다. 왜냐 하면 다만 이러한 상품들만이 서로 교환될수 있기때문이다.》[29]

그가 이렇게 말하는것은 각이한 시기들에 있어서의 상품

가치의 비교를 반대하는것이지만 이러한 비교는 각 시기에 있어서 화폐가치를 고정시켜놓기만 하면 다만 각이한 시기에 동일한 종류의 상품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로동지출의 비교를 의미할따름이다. 이러한 반대는 그의 일반적인 오해로부터 나오는것인데 그 견해에 의하면 교환가치는 가치와 같으며 가치의 형태가 가치 그자체이다. 즉 상품들의 가치는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교환가치로서 능동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며 따라서 현실적으로 서로 교환될수 없다면 상품가치들은 더는 비교될수 없다는것이다. 따라서 그는 가치가 자본가치 또는 자본으로서 기능하는것은 다만 그 순환의 결코 동시적이 아니고 계기적인 각이한 단계를 통하여 항상 가치가 자기자신과 동일하며 자기자신과 비교되는 한에 있어서만이라는것은 조금도 깨닫지 못한다.

순환의 공식을 순수하게 고찰하기 위하여서는 상품들이 가치대로 판매된다고 가정하는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기타의 사정도 변화되지 않는 조건하에서 가치대로의 판매가 진행된다고 가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례컨대 형태 P…P를 취하고 그때 일정한 한 자본가의 생산자본을 감가시킬수 있는 생산과정내에서의 기술적혁명은 모두 무시하기로 하자. 또 현존하는 상품자본의 가치는 만일 그 재고가 있다면 생산자본의 가치요소의 변동의 반작용에 의하여 오를수도 있고 내릴수도 있는데 이러한 반작용도 모두 무시하기로 하자. W′인 어떤 10,000폰드의 방사는 그 가치대로 500파운드로 판매된다고 하고 8,440폰드의 방사=422파운드는 W′에 포함되여있는 자본가치를 보상한다고 하자. 그러나 면화나 석탄 등의 가치가 오르면(여기에서는 단순한 가격변동은 무시하므로) 아마도 이 422파운드는 생산자본의 요소들을 전부 보상하기에는 부

족할것이다. 추가적화폐자본이 필요하며 화폐자본은 구속된다. 면화나 석탄 등의 가격이 내린다면 사태가 반대로 된다. 화폐자본은 유리된다. 과정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진행되는것은 가치관계가 변동하지 않는 경우뿐이다. 실지는 순환이 반복되는 동안에 교란이 상쇄되는 한에서 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교란이 크면 클수록 그것들이 상쇄되는것을 기다릴수 있기 위하여 산업자본가는 더욱더 큰 화폐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자본주의적생산이 진행됨에 따라 각 개별적생산과정의 규모가 확대되고 또 그에 따라 선대되여야 할 자본의 최소한도도 증대되므로 이상과 같은 사정이 기타의 제 사정에 첨가되여 더욱더 산업자본가의 기능을 개별적인 또는 결합된 대화폐자본가들의 독점으로 전화시킨다.

여기에서 겸하여 지적하고싶은것은 만일 생산요소의 가치변동이 생기면 일방으로는 형태 G…G′, 타방으로는 형태 P…P 및 W′…W′간의 차이가 분명하여진다.

우선 화폐자본으로서 등장하는 새로 투하되는 자본의 공식으로서의 G…G′에서는 생산수단, 례컨대 원료 및 보조재료 등등의 가치가 내리면 일정한 규모의 기업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화폐자본의 투하액은 그 가치저하전보다 더 적을것이다. 왜냐 하면 생산과정의 규모는(생산력의 발전이 변함없다면) 주어진 량의 로동력으로 처리될수 있는 생산수단의 량과 규모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고 이 생산수단의 가치에 의하여서도, 로동력의 가치에 의하여서도 결정되는것이 아니기때문이다.(후자는 다만 가치중식의 크기에만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만일 생산자본의 요소로 되는 상품들의 생산요소의 가치가 오른다면 주어진 규모의 기업을 만들기 위하여 이전보다 더 많은 화폐자본이 필요하다. 두 경우에 다 새로 투하되는 화폐자본의 량이

영향을 받을뿐이다. 새로운 개별적산업자본의 증가가 주어진 생산부문에서의 보통방식으로 진행되는 한, 첫째 경우에는 화폐자본이 과잉으로 되며 둘째 경우에는 화폐자본이 구속된다.

순환 P…P 및 W′…W′가 그 자체를 G…G′로서 나타내는것은 다만 P나 W′의 운동이 동시에 축적되며 따라서 추가적화폐 g가 화폐자본으로 전화되는 한에 있어서만이다. 그러나 이 경우를 도외시한다면 이 두 순환이 생산자본의 제 요소의 가치변동으로부터 받는 영향은 G…G′가 받는 영향과는 다르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이러한 가치변동이 생산과정에 있는 어떤 자본의 구성부분들에 미치는 반작용을 무시한다. 여기에서 직접 영향을 받는것은 최초의 투자가 아니다. 직접 영향을 받는것은 이미 재생산과정에 들어가 최초의 순환에 있는것이 아닌 산업자본이다. 따라서 W′…W$<^{A}_{Pm}$이며 상품들로 구성되여있는 한에서의 자기의 생산요소로의 상품자본의 재전화이다. 가치저하(또는 가격저하)에 있어서는 세가지 경우가 있을수 있다. 재생산과정이 동일한 규모에서 계속되는 경우에는 종래의 화폐자본의 일부분이 유리되여 화폐자본의 적립이 진행되지만 그러나 현실적축적(확대된 규모에서의 생산) 또는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에 수반되는 g(잉여가치)의 축적기금으로의 전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또는 기술적으로 필요한 균형들이 허용한다면 재생산과정은 이전에 진행되던것보다 더 큰 규모로 확대된다. 또는 원료 등등의 더 많은 재고형성이 일어난다.

상품자본과 교체되는 요소들의 가치가 오르는 경우에는 그와는 반대로 된다. 이 경우에는 재생산은 이제는 그 정상적인 규모에서는 진행되지 않는다(례컨대 작업시간이 단축된다.). 혹은 또 재생산을 이전의 규모대로 계속하기 위하여서는 추가적화폐자본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된다(화폐자본의 구축).

혹은 또 축적화폐기금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분이 재생산과정의 확대에가 아니라 종전의 규모대로의 그 경영에 복무한다. 이것도 또한 화폐자본의 구속인데 다만 이 경우에는 추가적화폐자본이 외부로부터, 화폐시장으로부터 오는것이 아니라 산업자본가자신의 자금으로부터 나올따름이다.

그러나 P…P와 W′…W′에서는 사태를 변화시키는 사정들이 생길수 있다. 례컨대 만일 우리의 면방적업자가 다량의 면화재고를(즉 그의 생산자본의 큰 부분을 재고면화의 형태로) 가지고있다면 그의 생산자본의 일부분은 면화가격의 저락에 의하여 가치가 감소된다. 반대로 면화의 가격이 오른다면 그의 생산자본의 이 부분의 가치는 오른다. 다른 한편 만일 그가 대량의 자본을 상품자본의 형태로, 례컨대 면사로 고정시켰다면 면화가격이 저락되는 경우에는 그의 상품자본의 일부분이, 따라서 일반적으로 그의 순환중에 있는 자본의 일부분이 가치가 감소된다. 면화가격이 오르면 그와 반대로 된다. 마지막으로 과정 $W'\frac{\cdots}{}G-W<^{A}_{Pm}$에서도 만약 W′—G, 즉 상품자본의 실현이 W의 제 요소의 가치변동이전에 있었다면 자본은 다만 첫째 경우에 고찰한 방식대로, 즉 제2의 류통행위 G—W$<^{A}_{Pm}$에서 영향을 받을뿐이다. 그러나 W′—G가 수행되기전에 가치변동이 일어났다면 다른 사정들이 변하지 않는 한 면화가격의 저락은 그에 상응하는 방사가격의 저락을 일으키며 또 반대로 면화가격의 등귀는 방사가격의 등귀를 일으킨다. 동일한 생산부문에 투하된 각이한 개별적자본들에 대한 영향은 이 자본들이 처할수 있는 각이한 사정들에 따라 극히 각이할수 있다. 一마찬가지로 화폐자본의 유리와 구속은 류통과정의 시간의 길이의 차이, 따라서 류통속도의 차이에 의하여서도 생길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회전의 고찰에 속한

다.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사로 되는것은 다만 생산자본의 제요소의 가치변동에 관하여 G…G′와 순환과정의 다른 두 형태간에 나타나는 현실적차이뿐이다.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 이미 발전하였고 따라서 지배적지위를 차지하고있는 시대에는 류통단계 $G-W<^{A}_{Pm}$에서는 Pm, 즉 생산수단으로 되는 상품의 큰 한부분은 그 자체가 타인의 기능하고있는 상품자본일것이다. 그러므로 판매자의 립장에서는 W′—G′, 즉 상품자본으로부터 화폐자본으로의 전화가 진행된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이라고 말할수 있는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이다. 산업자본이 화폐로서나 또는 상품으로서 기능하는 류통과정내부에서는 산업자본의 순환은 화폐자본으로서의 순환이든 또는 상품자본으로서의 순환이든간에 각이한 사회적생산방식—이 생산방식들이 동시에 상품생산인 한에 있어서—의 상품류통과 교차되여있다. 상품이 노예제도에 기초한 생산의 생산물이든, 또는 농민(중국인, 인도의 농노)의, 또는 공동체(화란령 동인도)의, 또는 국영생산(로씨야력사에서 이전시대에 나타난 농노제에 기초한 그러한것과 같은)의 생산물이든, 또는 반미개의 수렵민족들 등의 생산물이든간에 그것들은 상품 또는 화폐로서 산업자본을 나타내는 화폐 또는 상품에 대립하며 그것들은 산업자본의 순환에도 들어가고 상품자본이 지니고있는 잉여가치의 순환에도—이 잉여가치가 수입으로서 지출되는 한에서는—들어간다. 따라서 그것들은 상품자본의 두 류통부문의 쌍방에 다 들어간다. 그 상품이 나오는 생산과정의 성격은 아무래도 좋다. 그것들은 상품으로서 시장에서 기능하며 상품으로서 산업자본의 순환에도 들어가고 산업자본이 지니고있는 잉여가치의 류통에도 들어간다. 따라서 산업자본의 류통과정을 특

징짓는것은 상품의 출생지의 다방면적성격이며 세계시장으로서의 시장의 존재이다. 다른 나라의 상품들에 대하여 말할수 있는것은 다른 나라의 화폐에 대하여서도 말할수 있다. 상품자본은 다른 나라의 화폐에 대하여 다만 상품으로서만 기능하며 이 다른 나라의 화폐는 이 상품자본에 대하여 다만 화폐로서만 기능한다. 화폐는 여기서는 세계화폐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두가지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상품(Pm)은 G—Pm이라는 행위가 끝나면 상품이 아니게 되며 생산자본 P로서의 기능형태에 있는 산업자본의 존재방식중의 하나로 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상품의 유래는 사라진다. 상품은 다만 산업자본의 존재형태로서 존재할 뿐이며 산업자본에 합체된다. 그러나 그것들의 보상에는 그것들의 재생산이 필요하다는것은 변함없으며 그 한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은 그 발전단계의 밖에 있는 생산방식에 의하여 제약된다. 그러나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경향은 될수만 있으면 모든 생산을 상품생산으로 전화시키는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한 주요수단은 바로 모든 생산을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류통과정에 끌어들이는것이다. 그리고 발전된 상품생산자체는 바로 자본주의적상품생산이다. 산업자본의 침입은 어디서나 이 전화를 촉진하며 그와 함께 모든 직접적생산자들의 임금로동자로의 전화도 촉진한다.

둘째로, 산업자본의 류통과정에 들어가는 상품들(가변자본이 로동자들에게 지불된후 그것이 로동력의 재생산을 위하여 전화되는 필요생활수단도 이에 속한다.)은 그 유래, 그것들이 생산되는 생산과정의 사회적형태가 어떠한것이든지 산업자본자체에 대하여서는 이미 상품자본의 형태로, 상품거래자본 또는 상인자본의 형태로서 대립한다. 그리고 이 상인자

본은 그 성격으로 보아 온갖 생산방식의 상품들을 포괄한다.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은 생산의 대규모를 전제로 하며 또 마찬가지로 필연적으로 판매의 대규모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상품들을 개별적인 소비자들에게가 아니라 상인에게 판매하는것을 전제로 한다. 이 소비자자신이 생산적소비자이며 산업자본가인 한에서는, 따라서 어떤 생산부문의 산업자본이 다른 부문에 생산수단들을 제공하는 한에서는 한 산업자본가로부터 다른 많은 산업자본가들에 대한 직접적판매도(주문 등의 형태로) 진행된다. 그 한에 있어서는 어느 산업자본가나 직접적인 판매자이며 그 자신이 그의 상인이다. 혹은 또 상인에게 판매하는 때에도 역시 그러하다.

상인자본의 기능으로서의 상품거래는 자본주의적생산을 전제로 하고있으며 자본주의적생산의 발전에 따라 더욱 발전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자본주의적류통과정의 개별적 측면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상품거래를 가정한다. 그러나 이 류통과정의 일반적분석에 있어서는 상인의 중개없는 직접적 판매를 가정한다. 왜냐 하면 상인의 중개는 운동의 여러 요소들을 은폐하기때문이다.

이것을 좀 소박하게 묘사하는 씨스몽디의 말을 들어보자.

《상업은 많은 액수의 자본을 사용하나 이 자본은 얼핏 보아서는 우리가 그 운동을 상세히 론한 자본의 구성부분을 이루는것이 아닌것 같이 보인다. 직물상인의 창고에 쌓여있는 직물의 가치는 우선은 년생산물중에서 부자가 가난한자를 일시키기 위하여 그에게 임금으로서 주는 부분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자본은 우리가 지금까지 론한 다른 자본을 대체한것에 지나지 않는다. 부의 발전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는 부의 창조를 론하였고 그것이 소비되기까지를 추적하였다. 그 경우에 레컨대 직물제조에 사용된 자본

은 언제나 동일한것처럼 보이였다, 소비자의 수입과의 교환에서는 그것은 다만 두 부분으로 분할되였을뿐이다. 일부분은 수익으로 되여 공장주의 수입으로서 복무하였으며 다른 부분은 임금으로 되여 새로운 직물을 제조하고있는 로동자들의 수입으로서 복무하였다.

그러나 뒤이어 즉시 알려진것은 이 자본의 각이한 부분들이 서로 교체되는것이 또 공장주와 소비자간의 전체 류통을 실행하기 위하여 100,000에뀨로 충분하였다면 이 100,000에뀨가 공장주, 도매상인 및 소매상인간에 균등하게 분배되는것이 모든 사람들의 리익을 위하여 더 나을것이라는것이다. 공장주는 그가 전액으로써 수행하였던것과 같은 일을 이제는 3분의 1로써 수행하게 되였다. 왜냐 하면 그는 자기의 제조가 끝난 순간에 이전에 소비자를 발견하였을 때보다도 훨씬 빨리 상인을 구매자로서 발견하기때문이다. 도매상인의 자본도 훨씬 빨리 소매상인의 자본에 의하여 보상되였다. … 선대된 임금액과 최종소비자의 구매가격간의 차액은 이 자본의 리윤으로 되지 않을수 없었다. 이 리윤은 공장주, 도매상인 및 소매상인들이 각기 자기들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이래 그들사이에 분배되였다. 그리고 수행된 일은 한사람과 한 자본 대신에 세사람과 세 자본 부분을 필요로 하였지만 동일하였다.》(《경제학의 새 원리》 제1권, 139～140페지). —《모든 사람들 (상인들) 이 생산에 간접적으로 참가하였다. 왜냐 하면 생산은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것이므로 생산물을 소비자들사이에 보내기까지는 생산은 완료된것으로 볼수 없기때문이다.》(우와 같은 책, 137페지)[30]

우리는 순환의 일반적형태를 고찰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 제2권 전체에 걸쳐서 화폐를 금속화폐로 생각하며 상징화폐, 즉 일정한 국가들의 특수성을 이루는데 지나지 않는 단순한 가치기호와 또 아직 발전되지 않은 신용화폐를 제외한다. 첫째로, 그것은 력사적행정이다. 신용화폐는 자본주의적생산의 초기에는 어떠한 역할도 놀지 않거나 또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역할을 놀뿐이다. 둘째로, 이 행정의 필연성은 다음과 같은것에 의하여 리론적으로 립증되여있다. 즉 지금

까지 투크나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전개된 신용화폐의 류통에 관한 모든 비판적설명은 단순한 금속류통의 기초우에서는 사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것의 고찰에로 되돌아갈것을 그들에게 강요하였다는 사정이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될것은 금속화폐는 구매수단으로서도, 지불수단으로서도 기능할수 있다는것이다. 간단히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이 제2권에서는 화폐는 다만 첫째 기능형태에만 있는것으로 취급한다.

산업자본의 개별적순환과정의 일부분을 이룰따름인 산업자본의 류통과정은 그것이 일반적상품류통의 내부에서의 일련의 과정을 표시하는데 지나지 않는 한에서는 이전(제1권 제3장)에 전개된 일반적법칙들에 의하여 규정된다. 례컨대 500파운드라는 동일한 화폐량이라도 화폐의 류통속도가 크면 클수록, 따라서 매개 자본이 그 상품변태 또는 화폐변태의 계렬을 급속히 통과하는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많은 산업자본(또는 상품자본의 형태에 있는 개별적자본)을 차례로 류통시킨다. 따라서 화폐가 지불수단으로서 기능하는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즉 례컨대 상품자본을 그 생산수단과 교체함에 있어서 차액만을 지불해도 되는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례컨대 로임의 지불에서는 지불일과 지불일사이의 간격이 짧으면 짧을수록, 자본의 동일한 가치량이 그 류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화폐는 더욱더 적어진다. 다른 한편 류통속도나 기타 모든 사정들을 변동없는것으로 전제하면 화폐자본으로서 류통하지 않으면 안되는 화폐의 량은 상품가격총액(가격에 상품량을 승한것)에 의하여 규정되며 또는 상품의 량과 가치가 주어져있다면 화폐자체의 가치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러나 일반적상품류통의 법칙들이 적용되는것은 다만 자본의 류통과정이 일련의 단순한 류통과정들을 이루는 한에 있

어서만이며 이러한 류통과정이 개별적산업자본의 순환의 기능적으로 규정된 단계들을 이루는 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서는 류통과정을 다음의 두 형태에서 나타나는것과 같은 중단되지 않는 련관에서 고찰하는것이 가장 적당할것이다.

$$(\text{II})\quad P\cdots W'\begin{cases} W- & \begin{cases} G-W<^{A}_{Pm}\cdots P(P') \\ \\ g-w \end{cases} \\ -G' & \\ w- & \end{cases}$$

$$(\text{III})\quad W'\begin{cases} W- & \begin{cases} G-W<^{A}_{Pm}\cdots P\cdots W' \\ \\ g-w \end{cases} \\ -G' & \\ w- & \end{cases}$$

일련의 류통과정의 계렬로서는 일반적으로 류통과정은 (W—G—W로서이든 또는 G—W—G로서이든간에) 상품변태의 반대방향의 두 계렬을 표시할따름인데 이러한 상품변태들 각개는 또 타인의 상품 또는 그 상품에 대립하는 타인의 화폐측에서의 반대방향의 변태를 포함하고있다.

상품소유자측에서의 W—G는 구매자측에서의 G—W이다. W—G에서의 상품의 제1변태는 G로서 등장하는 상품의 제2변태이다. G—W에서는 그와 반대이다. 그러므로 한 단계에서의 상품변태와 다른 단계에서의 다른 상품의 변태와의 뒤엉킴에 관하여 명백히 된것은 자본가가 상품의 구매자 및 판매자로서 기능하는 한에서는, 따라서 그의 자본이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화폐로서 기능하며 타인의 화폐에 대하여 상품으로서 기능하는 한에서는 자본류통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그러나 이 뒤엉킴이 동시에 자본의 변태의 뒤엉킴을 표현하는것은 아니다.

첫째로, G—W(Pm)는 우리가 본바와 같이 여러가지 개별

적자본의 변태의 뒤엉킴을 표시할수 있다. 례컨대 면방적업자의 상품자본인 면사는 일부분은 석탄으로 보상된다. 그의 자본의 일부분은 화폐형태로 있으며 이 형태로부터 상품형태로 전환되는데 자본가적석탄생산자의 자본은 상품형태로 있으며 따라서 화폐형태로 전환된다. 동일한 류통행위가 여기서는 두개의(각이한 생산부문들에 속하는) 산업자본의 반대방향의 변태를 표시하며 따라서 이 자본들의 변태렬의 뒤엉킴을 표시한다. 그러나 우리가 본바와 같이 G가 전화되는 Pm은 절대적의미에서의 상품자본, 즉 산업자본의 기능형태여야 하는것은 아니며 자본가에 의하여 생산된것이여야 하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한측에서의 G—W이며 다른 측에서의 W—G이지만 언제나 자본들의 변태의 뒤엉킴인것은 아니다. 또 G—A, 즉 로동력의 구매는 결코 자본변태의 뒤엉킴은 아니다. 왜냐 하면 로동력은 로동자의 상품임은 틀림없으나 그것은 자본가에게 판매된 때에야 비로소 자본으로 되기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과정 W′—G′에서는 G′는 상품자본이 전화된것이여야 하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로동력이라는 상품의 화폐화(로임) 또는 독립로동자나 노예나 농노나 공동체에 의하여 생산된 생산물의 화폐화일수도 있다.

둘째로, 어떤 개별적자본의 류통과정내부에서 일어나는 각 변태가 노는, 기능적으로 규정된 역할에 대하여는 이 변태가 다른 자본의 순환에서는 그것에 대응하는 반대방향의 변태를 표시한다고는 결코 말할수 없으며 세계시장의 총생산이 자본주의적으로 운영된다고 전제하더라도 그렇게 말할수 없다. 례컨대 순환 P…P에서는 W′를 화폐화하는 G′는 구매자측에서는 다만 그의 잉여가치의 화폐화에 불과한것일수 있다(상품이 소비재인 경우에). 혹은 또 G′—W′<$^{A}_{Pm}$(따라서 자본

이 이미 축적되여 들어가는 경우)에서는 G′는 Pm의 판매자에 있어서는 다만 그의 선대자본의 보상으로서 그의 자본류통에 들어갈수 있으며 또는 G′가 수입의 지출로 들어갈 경우에는 더는 그의 자본류통에 들어가지 않을수도 있다.

이리하여 개별적자본들을 다만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자기의 구성부분들로서 포함하는 사회적총자본의 각이한 구성부분이—자본에 관하여서나 잉여가치에 관하여서나—류통과정에서 어떻게 서로 보상되는가 하는것은 자본류통의 과정들과 기타 모든 상품류통의 과정들에 공통적인 상품류통상의 단순한 변태의 뒤엉킴에서는 해결되지 않고 다른 연구방식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세히 분석하여본다면 모든 상품류통에 공통한 변태의 뒤엉킴에서 빌려온것에 불과한 불명확한 관념들 이외에는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는 상투적인 문구로써 만족하여왔다.

산업자본의 순환과정, 따라서 또 자본주의적생산의 가장 명백한 특성의 하나는 한편으로는 생산자본을 형성하는 요소가 상품시장에서 나오고 부단히 반복적으로 거기에서 상품으로서 구매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정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로동과정의 생산물이 상품으로서 로동과정으로부터 나가며 부단히 반복적으로 상품으로서 판매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정이다. 례컨대 스코틀랜드저지의 현대적차지농업가를 대륙의 구식소농민과 비교하여보자. 전자는 자기의 모든 생산물을 판매하며 따라서 생산물의 모든 요소를 종자까지도 시장에서 보상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후자는 자기의 생산물의 최대부분을 직접 소비하며 될수록 매매를 적게 하고 도구나 의류 등등을 될수록 자기로 만든다.

이러한데로부터 사람들은 현물경제, 화폐경제 및 신용경제를 사회적생산의 세개의 특징적인 경제적운동형태들로서 대비하여왔다.

첫째로, 이 세 형태는 대등한 발전단계들을 표시하는것은 아니다. 이른바 신용경제는 그 자체가 다만 화폐경제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즉 이 두 명칭이 생산자자신들간의 교역기능 또는 교역방식을 표현하는 한에서는 그러하다. 발전된 자본주의적생산에서는 화폐경제는 다만 신용경제의 기초로서 나타날따름이다. 그리하여 화폐경제와 신용경제는 자본주의적생산의 각이한 발전단계들에 대응할뿐이고 결코 현물경제에 대립되는 각이한 독립적인 교역형태인것은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와 동일한 권리로써 현물경제의 극히 각이한 형태들을 다른 두 형태와 대등한것으로서 대비할수도 있을것이다.

둘째로, 사람들이 화폐경제, 신용경제라는 범주에서 강조하고 또 구별적인 특징으로서 드는것이 경제 그자체, 즉 생산과정 그 자체가 아니라 경제에 대응하는 각이한 생산담당자들간 또는 생산자들간의 교역방식이므로 첫째 범주의 경우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따라서 현물경제가 아니라 교환경제로 될것이다. 완전히 폐쇄된 현물경제, 레컨대 뻬루의 잉카국[31]은 이 범주들의 어느것에도 속하지 않게 될것이다.

셋째로, 화폐경제는 모든 상품생산에 공통하며 또 생산물은 극히 각이한 사회적생산조직체에서 상품으로서 나타난다. 따라서 자본주의적생산을 특징짓는것은 생산물이 거래물품으로서, 상품으로서 생산되는 규모, 따라서 또 생산물자체의 형성요소가 생산물이 나오는 그 경제에 거래물품으로서, 상품으로서 다시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는 규모뿐이라는것이다.

사실상 자본주의적생산은 생산의 일반적형태로서의 상품

생산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러한것은, 그리고 또 발전에 따라서 점점 더 그렇게 되는것은 다만 여기에서는 로동자체가 상품으로서 나타나기때문이며 로동자가 로동을, 즉 자기의 로동력의 기능을 팔며 그것도 우리가 가정하고있는바와 같이 그 재생산비에 의하여 규정되는 그 가치대로 팔기때문이다. 로동이 임금로동으로 되는 정도에 따라 생산자는 산업자본가로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생산은(따라서 또 상품생산도) 농촌의 직접생산자도 임금로동자로 된 때에 비로소 그 충분한 규모로 나타난다. 자본가와 임금로동자간의 관계에서는 화폐관계,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가 생산자체에 내재하는 관계로 된다. 그러나 이 관계는 그 기초로 보면 생산의 사회적성격에 립각하고있으며 교역방식의 사회적성격에 립각하고있는것은 아니다. 반대로 후자가 전자로부터 생긴다. 여하튼 생산방식의 성격에서 그것에 대응하는 교역방식의 기초를 보지 않고 그것과는 반대로 보는것은 장사궁리가 머리속에 꽉 차있는 자산계급적시야에 알맞는것이다.(7)

자본가는 자기가 류통으로부터 끌어내는것보다 적은 가치를 화폐의 형태로 류통에 투입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상품의 형태로 류통으로부터 끌어낸것보다 많은 가치를 상품의 형태로 류통에 투입하기때문이다. 그가 다만 자본의 인격화로서만, 산업자본가로서만 기능하는 한에서는 그에 의한 상품가치의 공급은 상품가치에 대한 그의 수요보다 더 크다. 이 점에서 그의 공급과 그의 수요가 일치하다는것은 그의 자본이 증식되지 않는다는것과 같을것이다. 그의 자본은 생산

---

(7) 이상은 제5고에서. 이하로부터 본장의 마지막까지는 1877년 또는 1878년의 한 분책중에서 저서의 발취문사이에 있는 하나의 주다.

자본으로서 기능하지 않았을것이다. 생산자본은 잉여가치를 잉태하지 않은 상품자본으로 전화하였을것이다. 그것은 생산과정중에 로동력으로부터 잉여가치를 상품형태로 끌어내지 않았을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대체로 자본으로서 기능하지 않았을것이다. 사실상 그는 《자기가 산것보다 더 비싸게 팔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그가 이에 성공할수 있는것은 다만 그가 산, 가치가 보다 작기때문에 가격이 보다 싼 상품을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의 매개에 의하여 가치가 보다 큰, 따라서 가격이 보다 높은 상품으로 전화시켰기때문일따름이다. 그가 더 비싸게 판매하는것은 자기의 상품의 가치보다 비싸게 판매하기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상품의 생산요소들의 가치총액보다 큰 가치를 가진 상품을 판매하기때문이다.

자본가가 자기의 자본을 증식시키는 률은 그의 공급과 그의 수요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즉 그가 공급하는 상품가치가 그가 수요하는 상품가치를 넘는 초과분이 크면 클수록 더 크다. 그의 목적은 수요와 공급의 일치가 아니라 될수 있는대로의 불일치이며 그의 공급이 그의 수요를 초과하는것이다.

개별적자본가에 대하여 말할수 있는것은 자본가계급에 대하여서도 말할수 있다.

자본가가 다만 산업자본의 인격화에 불과한 한에서는 그 자신의 수요는 생산수단과 로동력에 대한 수요뿐이다. Pm에 대한 그의 수요는 그 가치의 측면에서 보면 그의 선대자본보다 더 적다, 그가 구매하는 생산수단의 가치는 그의 자본의 가치보다 더 적으며 따라서 그가 공급하는 상품자본의 가치에 비하면 훨씬 더 적다.

로동력에 대한 그의 수요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가치의 측면에서 보면 그의 총자본에 대한 가변자본의 비률,

즉 v:C에 의하여 규정되며 따라서 자본주의적생산에서는 비률로 보면 생산수단에 대한 그의 수요보다 점점 더 적어진다. 그가 A의 구매자로 되기보다 부단히 증대되는 정도에서 Pm의 구매자로 된다.

로동자는 자기의 임금을 거의 전부 생활수단으로 전화시키고 그것도 최대부분을 필요생활수단으로 전환시키는만큼 로동력에 대한 자본가의 수요는 간접으로는 동시에 로동자계급의 소비로 들어가는 소비수단들에 대한 수요이다. 그러나 이 수요는 v와 같으며 결코 그보다 더 크지는 않다(만약 로동자가 자기 임금의 일부분을 저축한다면—우리는 여기에서 물론 일체 신용관계를 도외시한다.—그것은 그가 자기 임금의 일부분을 축장화폐로 전화시키고 그 정도만큼 수요자, 즉 구매자로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한다.) 자본가의 수요의 최대한은 C=c+v이나 그 공급은 c+v+m이다. 따라서 만약 그의 상품자본의 구성이 80c+20v+20m이라면 그의 수요는 80c+20v이며 가치의 측면에서 보면 그의 공급보다 $\frac{1}{5}$이 더 적다. 그가 생산하는 m량의 백분률(리윤률)이 크면 클수록 그의 수요는 그의 공급에 비하여 더 적어진다. 로동력에 대한, 따라서 간접으로는 필요생활수단에 대한 자본가의 수요는 생산의 발전에 따라 생산수단에 대한 그의 수요보다 점점 적어지지만 한편 잊어서는 안될것은 Pm에 대한 그의 수요는 매일 계산하여보면 그의 자본보다 언제나 더 적다는것이다. 따라서 생산수단에 대한 그의 수요는 같은 액수의 자본으로써 같은 조건하에서 작업하면서 그에게 이 생산수단을 공급하는 자본가의 상품생산물보다는 언제나 그 가치가 더 적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자본가가 다수

이고 한사람이 아니라는것은 사태를 조금도 변동시키지 못한다. 그의 자본은 1,000파운드이며 그 불변부분은 800파운드라고 하자. 그러면 자본가전체에 대한 그의 수요는 800파운드이다. 그들은 1,000파운드에 대하여(그중에서 얼마가 그들 각 개인의것이고 또 각 개인에게 속하는 량이 그의 총자본의 얼마만한 부분을 이루는가에 관계없이) 리윤률이 같다면 도합 1,200파운드라는 가치의 생산수단들을 제공한다. 따라서 가치량으로 보면 그의 수요는 그의 공급의 $\frac{2}{3}$에 불과하며 한편 그자신의 총수요는 그자신의 공급의 $\frac{4}{5}$에 불과하다.

부대적으로 여기서 미리 자본의 회전을 고찰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본가의 총자본은 5,000파운드이며 그중 4,000파운드는 고정자본이고 1,000파운드는 류동자본이라고 하자. 우에서 한 가정에 의하면 이 1,000파운드는 800c+200v이다. 그의 총자본이 1년에 1회전하가 위하여서는 그의 류동자본은 1년에 5회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 그의 상품생산물은 6,000파운드이며 따라서 그의 선대자본보다 1,000파운드 더 크며 잉여가치의 비률은 우에서와 동일하다.

즉 5,000C:1,000m = 100(c+v):20m이다. 따라서 이 회전은 그 자본가의 총공급에 대한 그의 총수요의 비률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으며 총수요는 총공급보다 의연히 $\frac{1}{5}$이 더 적다.

그의 고정자본은 10년에 갱신된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매년 $\frac{1}{10}$=400파운드를 상각하게 된다. 이에 의하여 그는 고

정자본으로 3,600파운드의 가치를 가지고있으며 그밖에 화폐로 400파운드의 가치를 가지고있다. 수리가 필요한 한에서는, 그리고 그것이 평균정도를 넘지 않는 한 그것은 자본가가 다만 후에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자본투하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사태를 다음과 같이 볼수 있다. 즉 자본가는 년간상품생산물에 들어가는 한에 있어서의 그의 투하자본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시에 수리비를 계산에 넣고있으며 따라서 수리비는 $\frac{1}{10}$의 감가상각속에 포함되여있다(만약 그가 필요로 하는 수리가 실제는 평균보다 적다면 그것은 그에게 리득이며 마찬가지로 만약 그것이 평균보다 많다면 그의 손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동일한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자본가전체에게 대하여서는 상쇄된다.). 여하튼 그의 총자본의 회전이 년 1회전이라면 자본가의 년간수요는 언제나 5,000파운드이며 그의 최초의 선대자본가치와 같지만 이 수요는 자본의 류동부분에 관하여서는 증대되며 자본의 고정부분에 관하여서는 부단히 감소된다.

이제는 재생산으로 넘어가자. 자본가는 잉여가치 g를 전부 소비하고 최초의 자본량 C만을 다시 생산자본으로 전화시킨다고 하자. 이제는 자본가의 수요는 그의 공급과 가치에 있어서 동등하다. 그러나 그의 자본의 운동에 관하여서는 그렇지 않다. 자본가로서는 그는 자기 공급의 $\frac{4}{5}$(가치량으로 보아)밖에 수요하지 않는다. $\frac{1}{5}$을 그는 비자본가로서 소비하며 자본가로서의 그의 기능에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필요 또는 향락을 위하여 소비한다.

그러면 그의 계산은 백분비로는 다음과 같이 된다.

자본가로서의	수요=100	공급=120
향락가로서의	수요= 20	공급= —
합계	수요=120	공급=120

이 전제는 자본주의적생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따라서 또 산업자본가자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와 같다. 왜냐하면 치부 그 자체가 아니라 향락이 추진적동기로서 작용한다는 전제에 의하여서는 자본주의는 이미 그 기초에 있어서 폐지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자본가는 가격의 변동에 대비하고 또 매매를 위하여 가장 유리한 시세를 기다릴수 있기 위하여 준비자본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생산을 확대하고 기술적진보를 그의 생산유기체에 합체시키기 위하여 자본을 축적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본을 축적하기 위하여서는 자본가는 우선 류통으로부터 그의 수중에 흘러온 화폐형태에 있는 잉여가치의 일부분을 류통으로부터 끌어내여 그것을 구기업의 확대나 또는 부속기업의 개설에 필요한 크기에 달할 때까지 축장화폐로서 증대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화폐축장이 계속되는 동안은 그것은 자본가의 수요를 증대시키지 않는다. 화폐는 부동화되여있다. 이 화폐는 공급된 상품과 교환하여 화폐등가를 상품시장으로부터 끌어냈지만 이 화폐등가 대신으로 상품으로서의 등가를 상품시장으로부터 끌어내지는 않는다.

신용은 여기서는 고려되지 않는다. 그리고 례컨대 자본가가 화폐가 축적됨에 따라 그것을 리자를 위하여 은행에 리자부예금을 한다면 그것은 신용의 령역에 속한다.

제 5 장

류 통 기 간[8]

생산분야와 류통분야의 두 단계를 통과하는 자본의 운동은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시간상으로 순서있게 진행된다. 자본이 생산분야에 머물러있는 기간은 자본의 생산기간이며 류통분야에 머물러있는 기간은 자본의 류통기간이다. 그러므로 자본이 그 순환을 수행하는 총기간은 생산기간과 류통기간의 합계와 같다.

생산기간은 물론 로동과정의 기간을 포괄하지만 그러나 로동과정의 기간은 생산기간전체를 포괄하지는 않는다. 우선 상기되는것은 불변자본의 일부분은 기계, 건물 등과 같은 로동수단으로 존재하며 그것들은 수명을 다 마칠 때까지 부단히 반복되는 동일한 로동과정에서 복무한다는것이다. 로동과정의 주기적인 중단, 례컨대 야간의 중단은 이 로동수단들의 기능을 중단시키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생산장소에 머물러있는것을 중단시키지는 않는다. 이러한 로동수단은 기능하는 동안뿐만아니라 기능하지 않을 때에도 생산장소에 있는것이다. 한편 생산과정이 시장으로부터의 매일의 공급의 우연에 의존하지 않고 길거나 짧은 기간동안 예정된 규모로 진행되기 위하여서는 자본가는 원료와 보조재료의 일정한 재고를 준비해두

---

(8) 이하는 제4고에서.

지 않으면 안된다. 원료 등의 재고는 점차적으로만 생산적으로 소비될따름이다. 이리하여 그 생산기간(9)과 그 기능기간의 차이가 생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생산수단의 생산키간은 1) 그것이 생산수단으로서 기능하는, 즉 생산과정에서 복무하는 기간, 2) 생산과정이 중단되고 따라서 생산과정에 합체된 생산수단의 기능이 중단되여있는 휴지기간, 3) 생산수단이 과정의 조건들로서 준비되여있으며 따라서 이미 생산자본을 표시하나 아직 생산과정에 들어가있지 않은 기간을 포괄한다.

이상에서 고찰된 차이는 어느 경우나 생산자본이 생산분야에 머물러있는 기간과 생산과정에 머물러있는 기간사이의 차이이다. 그러나 생산과정자체가 로동과정의, 따라서 또 로동기간의 중단을 필요조건으로 할수 있다. 즉 로동대상이 그 이상 인간로동을 가함이 없이 자연적과정의 작용에 맡겨지는 어떤 중간기간이 그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로동과정 따라서 또 로동수단으로서의 생산수단의 기능은 중단되여있지만 생산과정 따라서 또 생산수단의 기능은 계속된다. 례컨대 파종된 곡물, 움속에서 발효하고있는 포도주, 많은 제조공업, 례컨대 제혁업 등의 로동재료로서 화학적과정에 맡겨져있는 것들이 그러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생산기간은 로동기간보다 길다. 두 기간의 차이는 로동기간을 넘는 생산기간의 초과분이다. 이 초과분은 언제나 생산자본이 생산과정자체에서는 기능함이 없이 **잠재적으로** 생산분야에 있다는것, 또는 로동과정에는 존재함이 없이 생산과정에서 기능한다는것에 기초

---

(9) 여기서 생산기간이라는것은 능동적인 의미에서 쓰이고있다. 즉 생산수단의 생산기간이란 여기에서는 그것이 생산되는 기간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상품생산물의 생산과정에 참가하고있는 기간이다. —F. 엥겔스

하고있다.

잠재적생산자본중에서 다만 생산과정의 조건으로서 준비되여있을따름인 부분중 레컨대 방적업에서의 면화, 석탄 등은 생산물형성자로서도 가치형성자로서도 작용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유휴자본이다.—비록 그 유휴가 생산과정의 부단한 흐름을 위한 하나의 조건을 이루고는 있지만. 생산용재고(잠재적자본)의 저장장소로서 복무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이나 장치 등은 생산과정의 조건이며 따라서 선대생산자본의 구성부분을 이룬다. 그것들은 준비단계에서의 생산적구성부분의 보관소로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이 단계에서 로동과정이 필요한 한에서는 이 로동과정은 원료 등의 가격을 비싸게 만들지만 그것은 생산적로동이며 잉여가치를 형성한다. 왜냐하면 이 로동의 일부분은 다른 모든 임금로동의 일부분이 그러한것처럼 지불되지 않는 로동이기때문이다. 생산과정전체의 정상적인 중단, 즉 생산자본이 기능하지 않는 중간휴식기간은 가치도 잉여가치도 생산하지 않는다. 이로부터 야간에도 작업시키려는 지향이 나온다.(제1권 제8장 제4절)—로동대상이 생산과정자체내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안되는 로동기간의 중간휴식기간은 가치도 잉여가치도 형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들은 생산물의 완성을 촉진하며 생산물의 생애의 일부분을 이루며 생산물이 통과하지 않으면 안되는 하나의 과정을 이룬다. 장치 등의 가치는 그것들이 기능하는 전체시간에 비례하여 생산물로 이전된다. 생산물은 로동자체에 의하여 이 단계에 놓이게 되며 이 장치들의 사용이 생산의 조건이라는것은 레컨대 면화의 일부분이 날아나 솜먼지로 되는것과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부분은 생산물에는 들어가지 않으나 그 가치를 생산물로 이전시킨다. 잠재적인 자본의 다른

부분, 례컨대 건물, 기계 등, 즉 생산과정의 규칙적인 휴지에 의하여서만 기능이 중단될따름인—생산의 축소, 공황 등등에 의한 불규칙적인 중단은 순수한 손실이다.—로동수단은 생산물형성에는 들어감이 없이 가치를 첨가한다. 이 부분이 생산물에 첨가하는 총가치는 그 평균적내구기간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 부분이 그 가치를 상실하는것은 사용가치를 상실하기때문이며 그것이 기능하는 기간에나 기능하지 않는 기간에나 다 그러하다.

마지막으로 로동과정이 중단되여도 계속 생산과정에 있는 불변자본부분의 가치는 생산과정의 결과중에 다시 나타난다. 이 경우에 생산수단은 로동자체에 의하여 그것이 스스로 일정한 자연과정을 통과하는 제 조건하에 놓이며 이 자연과정의 결과가 일정한 유용효과 또는 생산수단들의 사용가치의 형태변화로 된다. 로동은 생산수단을 현실적으로 생산수단으로서 합목적적으로 소비하는 한 언제나 생산수단의 가치를 생산물로 이전시킨다. 이러한 효과를 가져오기 위하여서는 로동이 로동수단을 매개로 하여 계속적으로 로동대상에 작용하지 않으면 안되거나 또는 로동은 다만 최초의 자극만을 줄뿐 그 이상은 로동의 협력없이 생산수단이 스스로 자연과정의 결과로서 소기의 변화를 받는 그러한 제 조건속에 생산수단을 놓기만 하면 되는데 그 어느쪽으로 하든 지금 서술한것에는 변동이 없다.

생산기간이 로동기간을 넘는 원인이 무엇이든간에—생산수단이 다만 잠재적인 생산자본으로 되고있을따름이고 아직 현실적생산과정의 앞단계에 놓여있기때문이든 생산과정내에서 이 과정의 휴지에 의하여 생산수단자체의 기능이 중단되기때문이든 또는 마지막으로 생산과정자체가 로동과정의 중

단을 필요조건으로 하기때문이든—그 어느 한 경우에도 생산수단은 로동흡수자로서는 기능하지 않는다. 로동을 흡수하지 않는다면 잉여로동도 흡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생산자본이 그 생산기간중의 로동기간을 넘는 부분에 있는 동안은 가치증식과정의 수행이 이러한 그 휴지와 아무리 불가분적이라 하더라도 생산자본의 가치증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생산기간과 로동기간이 일치하면 할수록 주어진 기간에 있어서의 주어진 생산자본의 생산성과 가치증식은 그만큼 더 크다는것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생산에서는 로동기간을 넘는 생산기간의 초과를 될수록 단축시키려는 경향이 있는것이다. 그러나 자본의 생산기간이 자본의 로동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일이 있기는 하나 전자는 언제나 후자를 포함하며 그 초과는 자체가 생산과정의 조건인것이다. 따라서 생산기간은 비록 그속에 자본이 잠재적인 기간이나 또는 자기 증식을 함이 없이 생산하는 기간이 포함되여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자본이 사용가치를 생산하면서 자기자신을 증식시키는, 따라서 생산자본으로서 기능하는 기간인것이다.

류통분야에서 자본은 상품자본 및 화폐자본으로서 존재한다. 자본의 두 류통과정은 자본이 상품형태로부터 화폐형태로 전화하는것과 화폐형태로부터 상품형태로 전화하는것이다. 상품의 화폐로의 전화가 여기서는 동시에 상품에 합체되여있는 잉여가치의 실현이며 또 화폐의 상품으로의 전화가 동시에 자본가치의 자기의 생산요소의 모습으로의 전화 또는 재전화라는 사정은 이러한 과정이 류통과정으로서는 단순한 상품변태의 과정이라는것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류통기간과 생산기간은 서로 배제한다. 자본은 그 류통기간에는 생산자본으로서 기능하지 않으며 따라서 상품도 잉

여가치도 생산하지 않는다. 총자본가치가 한 단계로부터 다른 단계로 매번 단번에 넘어가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순환을 고찰한다면 생산과정, 따라서 또 자본의 자기 증식은 자본의 류통과정이 계속되는 동안은 중단되며 또 자본의 류통기간의 길이에 따라 생산과정이 보다 더 급속히 또는 보다 더 완만히 갱신될것이라는것은 명백하다. 이와는 반대로 자본의 각이한 부분들이 서로 뒤를 이어 순환을 통과하며 그리하여 총자본가치의 순환이 그의 각이한 부분들의 순환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면 자본의 각 구성부분들이 부단히 류통분야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생산분야에서 부단히 기능하는 자본부분이 그만큼 적어지지 않을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류통기간의 연장과 단축은 생산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에 대하여 또는 주어진 크기의 자본이 생산자본으로서 기능하는 규모의 축소 또는 확대에 대하여 소극적인 제한으로서 작용한다. 자본의 류통중에서의 변태가 다만 관념적인 현상으로 되면 될수록, 즉 류통기간이 령으로 되거나 령에 접근하면 할수록 자본의 기능은 그만큼 더 클것이며 자본의 생산성과 자기 증식은 그만큼 더 증대될것이다. 례컨대 어떤 자본가가 주문에 응하여 작업하고 그리하여 생산물을 인도함과 동시에 지불을 받으며 또 그 지불이 그자신의 생산수단으로 실현된다면 류통기간은 령에 접근할것이다.

이리하여 자본의 류통기간은 일반적으로 자본의 생산기간을 제한하며 따라서 자본의 가치증식과정을 제한한다. 그것도 류통기간의 지속시간의 길이에 비례하여 제한한다. 그런데 류통기간의 지속시간은 극히 각이한 정도로 증감될수 있으며 따라서 극히 각이한 정도로 자본의 생산기간을 제한할수 있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이 보고있는것은 **표면에 나타**

나는것, 즉 류통기간이 자본의 가치증식과정일반에 미치는 영향이다. 정치경제학은 이 소극적인 영향을 그 결과가 적극적인것이라는 리유에서 적극적인것으로 생각한다. 정치경제학이 더구나 이러한 외관에 매달리는것은 그것이 다음과 같은것의 증명을 제공하는듯이 보이기때문이다. 즉 자본은 자기 증식의 신비로운 원천을 가지고있으며 이 원천은 자본의 생산과정과는 관계없이 따라서 로동의 착취와는 관계없이 류통분야로부터 자본에로 흘러온다는것의 증명을 제공하는듯이 보이기때문이다. 이 외관에는 과학적경제학까지도 속히우게 된다는것은 나중에 보게 될것이다. 이 외관은 역시 나중에 표명되는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현상들에 의하여 확고하게 된다. 1) 자본주의적리윤계산방식. 거기서는 소극적인 원인이 적극적인 원인으로서 나타난다. 왜냐 하면 류통기간만 다를뿐인 여러가지 투하분야들에 있는 각이한 자본에 있어서 보다 더 긴 류통기간은 가격이상의 원인으로서, 간단히 말하여 리윤평균화의 원인의 하나로서 작용하기때문이다. 2) 류통기간은 회전기간의 한 계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회전기간은 생산기간 또는 재생산기간을 포함하고있다. 순환기간때문인것이 류통기간때문인것처럼 보인다. 3) 가변자본(로임)으로의 상품의 전환은 상품이 먼저 화폐로 전화되는것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그러므로 자본축적에 있어서는 추가적가변자본으로의 전환은 류통분야에서 또는 류통기간중에 진행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진행되는 축적은 이 류통기간때문인것처럼 보인다.

류통분야에서 자본은 어떤 순서로든간에 두개의 대립되는 단계 W—G와 G—W를 통과한다. 따라서 자본의 류통기간도 두 부분으로, 즉 자본이 상품으로부터 화폐로 전화되는데 필

요한 시간과 화폐로부터 상품으로 전화되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나뉘여진다. 단순상품류통의 분석(제1권 제3장)으로부터 이미 알고있듯이 W—G, 즉 판매가 자본의 변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며 따라서 보통의 사정하에서는 류통기간중의 보다 더 큰 부분을 이룬다. 화폐로서는 가치는 언제나 전화될수 있는 형태에 있다. 상품으로서는 가치는 우선 화폐로의 전화에 의하여 직접적인 교환가능성의 모습을, 따라서 또 언제나 전투준비를 갖춘 활동성의 모습을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자본의 류통과정중 G—W단계에서 수행되는것은 주어진 기업에서 생산자본의 일정한 요소를 이루고있는 상품들로 자본이 전화되는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생산수단이 시장에 없어서 이제부터 생산되지 않으면 안되든가 또는 멀리 떨어진 시장으로부터 가져오지 않으면 안되든가 또는 그 평소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든가, 가격의 변동이 일어나든가 요컨대 단순한 형태변환 G—W에서는 볼수 없으나 류통단계의 이 부분을 위하여 많든적든 시간을 요하는 많은 사정들이 있다. W—G와 G—W는 시간적으로 분리되는 일이 있을수 있는것처럼 공간적으로도 분리되는 일이 있을수 있다. 즉 구매시장과 판매시장은 공간적으로 각이한 시장일수 있다. 례컨대 공장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다른 인원인 경우가 많다. 상품생산에서는 류통은 생산자체와 마찬가지로 필요하며 따라서 류통담당자도 생산담당자와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재생산과정은 자본의 두 기능을 포함하고있으며 따라서 자본가자신에 의하여서나 또는 그의 대리자인 임금로동자에 의하여서나 이 두 기능이 담당되여야 할 필요성도 포함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류통담당자와 생산담당자를 혼동할 리유로도 되지 않고 상품자본이나 화폐자본의 기능을 생사자본의 기능과 혼동할

리유로도 되지 않는다. 류통담당자는 생산담당자로부터 지불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서로 사고팔고하는 자본가들이 이 매매행위에 의하여 생산물도 가치도 창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들의 기업의 규모가 이 기능을 다른 사람에게로의 전가를 가능하게 하든가 또는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변동되는것은 아니다. 일부 기업들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리윤배당에 의하여 지불을 받는다. 그들이 소비자로부터 지불을 받는다고 하는 판에 박힌 말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지불할수 있는것은 다만 그들자신이 생산담당자로서 상품으로의 등가를 생산하는 경우거나 또는 그것을 권리(생산담당자의 공동출자자 등등으로서)에 의하여서나 또는 자기의 근로에 의하여 생산담당자로부터 이러한 등가를 취득하는 경우뿐이다.

W—G와 G—W간에는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상품과 화폐의 형태상 차이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것이며 생산의 자본주의적성격으로부터 생기는것이다. 그 자체로서는 W—G나 G—W나 다만 주어진 가치를 한 형태로부터 다른 형태로 이행시키는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W′—G′는 동시에 W′에 포함되여있는 잉여가치의 실현이기도 하다. G—W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판매는 구매보다 더 중요하다. G—W는 정상적 조건하에서는 G로 표현되여있는 가치의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이기는 하나 잉여가치의 실현은 아니다. 그것은 잉여가치생산의 서론이며 그 부록인것은 아니다.

상품자본의 류통 W′—G′는 상품자체의 존재형태에 의하여, 사용가치로서의 상품의 존재에 의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상품은 본래 사멸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상품은 일정한 기간내에 그것들의 사명에 따라 생산적 또는 개인적 소비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바꾸어말하면 그것들이 일정한 기간내에 판매되지 않는다면 못쓰게 되여 그 사용가치를 상실하는 동시에 교환가치의 담당자이라는 성질도 상실한다. 상품에 포함되여있는 자본가치도 이 자본가치에 유착된 잉여가치도 상실되고만다. 사용가치가 여러해동안 자기를 종식하는 자본가치의 담당자로 되는것은 다만 그것이 부단히 갱신되고 재생산되여 동일한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새로운 사용가치와 교체되는 한에서이다. 그리고 사용가치가 그 완성된 상품형태로 판매된다는것, 따라서 이 판매를 통하여 생산적 또는 개인적 소비로 들어간다는것은 그 재생산을 위하여 부단히 갱신되는 조건이다. 사용가치들은 새로운 사용형태로 계속 존재하기 위하여서는 일정한 시간내에 그 낡은 사용형태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교환가치는 다만 그 물체의 이러한 부단한 갱신에 의하여서만 보존된다. 각이한 상품들의 사용가치의 손상은 어떤것은 더 빠르며 어떤것은 더 늦다. 따라서 사용가치의 생산과 소비간에 경과하는 중간기간은 보다 길수도 있고 보다 짧을수도 있다. 따라서 여러가지 상품의 사용가치의 어떤것은 보다 짧게 어떤것은 보다 길게 손상없이 류통단계 W—G에서 상품자본으로서 머무를수 있으며 어떤것은 보다 짧고 어떤것은 보다 긴 류통기간에 상품으로서 견딜수 있다. 상품체자체의 손상에 의한 상품자본의 류통기간의 한계는 류통기간의 이 부분의, 즉 상품자본이 상품자본으로서 경과할수 있는 류통기간의 절대적인 한계이다. 그러므로 어떤 상품이 손상되기 쉬우면 쉬울수록, 따라서 생산된 직후에 즉시 소비되지 않으면 안되고 또 판매되지 않으면 안되는것일수록 그만큼 그 상품은 생산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질수가 더욱 없게 되며 따라서 그것의 공간적류통분야는 더욱 좁게

되며 그것의 판매시장은 더욱 지방적성격을 띠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상품이 손상되기 쉬우면 쉬울수록, 그것의 자연적 속성들에 의하여 상품으로서의 류통기간의 절대적제한이 크면 클수록 그것은 자본주의적생산의 대상으로 되기에 더욱 적당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상품은 다만 인구가 많은 지방에서만 또는 운수수단의 발전에 의하여 지역적거리가 단축되는 정도에 따라 자본주의적생산의 대상으로 될수 있을뿐이다. 그러나 어떤 물품의 생산이 소수의 수중에, 그리고 인구가 많은 지방에 집중되면 이러한 물품을 위하여서도 상대적으로 큰 시장이 형성될수 있다. 례컨대 대규모의 맥주양조장이나 젖생산가공업 등등의 생산물의 경우에 그러하다.

제 6 장

류 통 비

1. 순수한 류통비

A. 매매기간

상품으로부터 화폐로의 또 화폐로부터 상품으로의 자본의 형태전화는 동시에 자본가의 거래이며 매매행위이다. 자본의 이러한 형태전화가 수행되는 기간은 주관적으로는, 즉 자본가의 립장에서는 판매 및 구매 기간이며 자본가가 시장에서 판매자 및 구매자로서 기능하는 기간이다. 자본의 류통기간이 자본의 재생산기간의 필요한 일부분을 이루듯이 자본가가 매매를 하며 시장을 돌아다니는 기간은 그가 자본가로서, 즉 인격화된 자본으로서 기능하는 기간의 필요한 일부분을 이룬다. 이 기간은 자본가의 영업기간의 일부분을 이룬다.

〔상품은 그 가치대로 매매된다고 가정되였으므로 이러한 과정에 진행되는것은 다만 동일한 가치의 한 형태로부터 다른 형태로의 전화, 상품형태로부터 화폐형태로의 그리고 화폐형태로부터 상품형태로의 전화—즉 하나의 상태변화뿐이다. 상품이 그 가치대로 판매된다면 가치의 크기는 구매자의

수중에서나 판매자의 수중에서나 그대로 변하지 않으며 다만 그 존재형태가 변화되였을따름이다. 상품이 그 가치대로 판매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환되는 가치의 총액은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 일방에 있어서의 플루스는 타방에 있어서의 미누스이다.

그런데 형태변화 W—G와 G—W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서 진행되는 거래이다. 이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더우기 여기에서는 쌍방이 다 서로 상대방을 꾀여넘기려는 투쟁이 벌어지며 《희랍인과 희랍인이 만나면 결투가 벌어진다.》[32]는 식으로 장사군들이 서로 대립하는만큼 더욱 그러하다. 상태의 변화에는 시간과 로동력이 드는데 그것은 가치를 창조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한 형태로부터 다른 형태로의 가치의 전화를 가져오기 위하여서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서로 이 기회를 타서 여분의 가치량을 취득하려고 시도한다 하더라도 사태는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로동은 쌍방의 나쁜 의도로 하여 증대되지만 그것이 가치를 창조하지 않는것은 소송사건에서 지출되는 로동이 분쟁목적물의 가치량을 증대시키지 않는것과 마찬가지이다. 전체로서의 자본주의적생산과정—류통도 포함하며 또는 류통에 포함되는 자본주의적생산과정—에 있어서는 하나의 필연적계기인 이 로동은 례컨대 열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를 연소시키는 로동과 같은것이다. 이러한 연소로동은 연소과정의 하나의 필연적계기이기는 하지만 열을 발생시키는것은 아니다. 례컨대 석탄을 연료로서 소비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산소와 화합시켜야 하며 또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석탄을 고체상태로부터 가스상태로 전화시켜야 한다. (왜냐 하면 연소의 결과인 탄산가스에서는 석탄은 가스상태로 있기때문이다.) 즉 하나의 물

리적인 존재형태의 변화 또는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안된다. 새로운 화합이 진행되기전에 결합된 하나의 고체로 되여있는 탄소분자들의 분리와 개별적원자로의 탄소분자자체의 분렬이 진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에네르기 지출이 필요되는데 이것은 열로 전화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로부터 나가버린다. 그러므로 만일 상품소유자가 자본가가 아니라 독립적인 직접적생산자라면 매매에 소비되는 시간은 그들의 로동시간에서의 삭감이며 바로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언제나(고대에 있어서나 중세기에 있어서나) 이러한 일을 명절날에 하려고 하였던것이다.

상품매매가 자본가들의 수중에서 차지하는 규모의 크기는 물론 가치를 창조하는것이 아니라 다만 가치의 형태변환을 매개할뿐인 로동을 가치를 창조하는 로동으로 전화시킬수는 없다. 또 이러한 실체적변화의 기적은 위치전환에 의하여 일어날수는 없다. 즉 산업자본가들이 그 《연소로동》을 자기로 수행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지불을 받는 제3자들의 전업으로 만드는데 의하여서도 일어날수 없다. 물론 이 제3자들은 자본가들의 아름다운 눈을 사랑하기때문에 자기들의 로동력을 그들의 처리에 맡기는것은 아닐것이다. 또 지주의 지대징수자나 은행의 심부름군에게 있어서도 자기들의 로동이 지대의 가치량이나 또는 자루에 넣어서 다른 은행으로 가져가는 금화의 가치량을 한푼도 증대시키지 않는다는것은 아무래도 좋은 일이다.) (10)

자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로동시키는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매매가 하나의 주요한 기능으로 된다. 그는 많은 사

---

(10) 중괄호안의것은 제8고의 끝에 있는 주로부터 취한것이다.

람들의 생산물을 큰 사회적규모에서 취득하기때문에 그는 또한 역시 똥일한 규모에서 이 생산물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후에 다시 화폐로부터 생산요소들로 재전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매매기간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가치를 창조하지 않는다. 상인자본의 기능에 의하여 하나의 환상이 생긴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환상에 더 자세히 들어가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은 처음부터 극히 명백한것이다. 즉 그 자체로서는 비생산적이지만 그러나 재생산의 하나의 필연적계기인 어떤 기능이 분업으로 말미암아 다수사람들의 부업으로부터 소수사람들의 전업으로, 그들의 특수한 영업으로 전화되더라도 이 기능자체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것이다. **한** 상인(여기에서는 상품의 형태전화의 단순한 담당자로서, 단순한 구매자 및 판매자로서 간주된다.)은 그의 활동에 의하여 **많은** 생산자들의 매매기간을 단축시킬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는 무익한 에네르기지출을 감소시키거나 생산기간의 해방을 돕거나 하는 하나의 기계라고 간주될수 있다.(11)

문제를 간단히 하기 위하여(자본가로서의 상인과 상인자본은 나중에야 비로소 고찰할것이므로) 이 매매담당자를 자기의 로동을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하자. 그는 자기의 로동

(11) 《상업비용은 필요한것이지만 부담으로 되는 지출로 보아야 한다.》(께내 《경제표의 분석》, 대르 편찬 《중농주의자》 1864년 빠리판, 제1부, 71페지)—께내에 의하면 상인들간의 경쟁에 의하여 생기는 《리익》, 즉 경쟁이 상인들에게 《그들의 보수 또는 리득의 감소를》 강요한다는것은 《…엄밀히 말하면 제일 첫 판매자 및 소비자인 구매자에게 있어서의 **손실의 경감**일따름이다. 그러나 상업비용에 의한 손실이 경감된다는것은 상업을 수송비와 관계가 없이 그자체로서 단순히 교환으로 고찰하든 수송비와 결부시켜 고찰하든간에 **현실적생산물** 또는 증가된 부가상업에 의하여 얻어지는것은 아니다.》(145~146페지) 《상업비용은 언제나 생산물의 판매자가 부담하는데 그들은 만일 중개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면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전체를 받게 되는것이다.》(께내 《상업 및 수공업자들의 로동에 관한 대화》, 대르 편찬 《중농주의자》, (163페지) 《토지소유자들과 생산자들은 보수지불자이며 상인들은 보수수령자이다.》 1846년 빠리판, 제1부, 164페지.)[33]

력과 로동시간을 이 W—G와 G—W라는 이 조작에 지출한다. 따라서 그는 이 조작에 의하여 살아나가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이, 례컨대 방적 또는 환약제조에 의하여 살아나가는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도 하나의 필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왜냐하면 재생산과정자체가 비생산적기능들을 포함하고있기때문이다. 그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로동하나 그의 로동의 내용은 가치도 생산물도 창조하지 않는다. 그자신이 생산의 비생산적비용에 속한다. 그의 효용은 그가 비생산적기능을 생산적기능으로 하는가 또는 비생산적로동을 생산적로동으로 하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다. 만일 그와 같이 기능의 이전에 의하여 이러한 전화가 실현될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기적일것이다. 오히려 그의 효용은 사회의 로동력과 로동시간중에서 이러한 비생산적기능에 구속되는 부분이 보다 적게 된다는데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받는 급료는 높은 편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임금로동자라고 가정하자. 그의 급료가 얼마이든간에 임금로동자로서의 그는 그의 시간의 일부분은 무상으로 로동한다. 그는 하루에 8로동시간의 가치생산물을 받고 10시간동안 일할지도 모른다. 그가 수행하는 2시간의 잉여로동이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것은 그의 8시간분의 필요로동과 마찬가지이다. 비록 이 필요로동에 의하여 사회적생산물의 일부분이 그의 수중으로 넘어온다 하더라도. 첫째로, 사회적으로 보면 의연히 한 로동력이 10시간동안 이 단순한 류통기능에 소비된다. 이 로동력을 다른데 사용할수 없으며 생산적로동을 위하여 사용할수 없다. 그러나 둘째로, 이 2시간의 잉여로동은 그것을 수행하는 개인에 의하여 지출되나 사회는 그것에 대하여 지불하지 않는다. 그것으로써는 사회는 아무런 여분의 생산물이나 가치도 취득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대표하는 류통비는 10시간으로부터 8시간으로, 즉 5분의 1만큼 감소된다. 그를 담당자로 하는 이 현실적류통기간의 5분의 1에 대하여서는 사회는 아무런 등가도 지불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자본가가 이 담당자를 사용한다면 이 2시간분의 부지불에 의하여 **그의** 자본의 류통비, 즉 그의 수입으로부터의 공제분으로 되는 류통비는 감소된다. 그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적극적인 리득이다. 왜냐 하면 그의 자본의 가치증식에 대한 소극적인 제한이 적어지기때문이다. 독립적인 소상품생산자들이 자기 시간의 일부분을 매매에 지출한다면 이 시간은 다만 그들의 생산적기능의 중간에 지출되는 시간으로 나타나든가 또는 그들의 생산기간의 중단으로서 나타날뿐이다.

여하튼 이에 지출되는 시간은 전환되는 가치에도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는 류통비이다. 이것은 가치를 상품형태로부터 화폐형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다. 자본주의적상품생산자가 류통담당자로서 나타나는 한에서는 그를 직접적인 상품생산자로부터 구별하는것은 다만 그가 보다 더 큰 규모로 매매한다는것, 따라서 또 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류통담당자로서 기능한다는것뿐이다. 그러나 그의 기업의 규모가 그로 하여금 자기의 류통담당자를 임금로동자로서 구매(고용)하지 않을수 없게 한다 하더라도 또는 그렇게 할수 있게 한다 하더라도 이 현상에는 사실상 변동이 없다. 로동력과 로동시간은 어느 정도까지는 류통과정(단순한 형태전화인 한에서의)에 지출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 지출이 추가적자본투하로서 나타난다. 가변자본의 일부분은 다만 류통에서만 기능할뿐인 이러한 로동력의 구입에 투하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자본선대는 생산물도 가치도 창조하지 않는다. 그것은 선대자본이 생산적으로 기능하는 범위를 그

만큼 축소시킨다. 이것은 마치 생산물의 일부분인 생산물의 나머지 부분을 매매하는 기계로 전화된것과 같은것이다. 이 기계는 생산물로부터의 얼마간의 공제분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류통에 지출되는 로동력 등등을 감소시킬수는 있다 하더라도 생산과정에 같이 작용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다만 류통비의 일부분을 이룰뿐이다.

B. 부 기

현실적매매외에 로동시간은 부기에서도 지출되며 이 부기에는 또 그밖에 철필, 잉크, 종이, 책상, 사무소비 같은 대상화된 로동도 지출된다. 따라서 이 기능에는 한편으로는 로동력이 지출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로동수단이 지출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사태는 매매기간의 경우와 꼭 마찬가지이다.

자본은 그것의 순환중에 있어서의 통일체로서는, 과정중에 있는 가치로서는 그것이 생산분야에 있든 또는 류통분야의 두 단계에 있든간에 다만 관념적으로만, 계산화폐의 모습으로서만 우선 상품생산자 또는 자본주의적상품생산자의 머리속에 존재한다. 이 운동은 가격결정이나 또는 상품가격의 계산(가격계산)도 포함하는 부기에 의하여 확정되며 조정된다. 그리하여 생산의 운동, 특히는 가치증식의 운동—이 경우에는 상품이 다만 가치의 담당자로서만, 그 관념적인 가치존재가 계산화폐로 확정되여있는 물품들의 명칭으로서만 나타난다.—은 관념속에 상징적인 형상을 준다. 개별적인 상품생산자가 다만 자기의 머리속에서만 기장하거나(례컨대 농민이 그러하다. 자본주의적농업만이 비로소 부기를 하는 차지

농업가를 낳는다.) 또는 생산하지 않는 시간에 다만 짬짬이 자기의 지출이나 수입, 지불기한 등등을 기장하는 동안에는 그의 이 기능과 이 경우에 그가 소비할수 있는 종이 등등과 같은 로동수단은 로동시간과 로동수단의 추가적소비를 표시하며 이러한 로동시간과 로동수단은 필요하기는 하나 그가 생산적으로 소비할수 있는 시간과 로동수단—현실적생산과정에서 기능하고 생산물형성과 가치형성에 들어가는 로동수단—으로부터 그만큼한 공제가 진행된다는것은 아주 분명하다.(12) 이 기능이 자본주의적상품생산자의 수중에 집중되여 수많은 소상품생산자들의 기능으로서가 아니라 **한** 자본가의 기능으로서, 한 대규모적생산과정내부의 기능으로서 나타남으로 하여 이 기능의 규모가 확대되든 또는 이 기능을 부속물로 하고있던 생산적기능으로부터 이 기능이 분리되여 이 기능만을 위임받은 특별한 담당자의 기능으로서 독립화되든 이 기능자체의 성격은 변경되는것이 아니다.

분업, 즉 어떤 한 기능의 독립화는 만일 그 기능이 그 자체로서 생산물 및 가치를 형성하는것이 아니라면, 즉 독립화 되기전에 그러한것이 아니라면 그 기능을 그러한것으로 만드는것이 아니다. 어떤 자본가가 자기의 자본을 새로 투하한다면 그는 일부분을 부기원 등의 고용이나 부기용품의 구입에 투하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그의 자본이 이미 기능하

---

(12) 중세기에는 농업을 위한 부기가 수도원에서만 볼수 있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제1권, 343페지[34]) 이미 태고 인도의 공동체에서도 농업에 관한 기장원이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기장은 공동체의 한 공무원의 전문적인 기능으로 독립화되여있다. 이 분업에 의하여 시간, 로고, 비용이 절약되나 생산과 생산부기는 선하와 선하증권이 서로 다른것처럼 다른것이다. 기장원이란 형태로 공동체의 로동력의 일부분이 생산으로부터 분리되였으며 그의 기능과 관련된 비용은 그자신의 로동에 의하여 보상되는것이 아니라 공동체생산물로부터의 공제분에 의하여 보상된다. 자본가의 부기원의 경우도 필요한 변경을 가하면 인도공동체의 기장원의 경우와 사정이 마찬가지이다.(제2고에서)

고있으며 그 부단한 재생산과정에 있다면 그는 상품생산물의 일부분을, 화폐로의 전화를 통하여 부단히 부기원, 사무원 등에 재전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자본부분은 생산과정으로부터 분리되여 류통비에 속하며 총수익으로부터의 공제분을 이룬다(전문적으로 이 기능을 위하여서만 사용되는 로동력 그 자체를 포함하여).

그러나 한편으로 부기에 수반되는 비용 또는 로동시간의 비생산적지출과 다른 한편으로 단순한 매매기간의 비용과의 사이에는 다소의 구별이 나타난다. 단순한 매매기간의 비용은 다만 생산과정의 일정한 사회적형태로부터, 즉 그것이 상품의 생산과정이라는데로부터 생길뿐이다. 부기는 과정의 조정 및 관념적총괄로서는 과정이 사회적규모에서 수행되여 순전히 개인적인 성격을 상실하면 할수록 더욱더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부기는 수공업경영 및 농민경영의 분산적생산에 있어서보다 자본주의적생산에서 더 필요하며 자본주의적생산에서보다 공동생산에서는 더 필요하다. 그러나 부기의 비용은 생산의 집적에 따라 감소되며 부기가 사회적부기로 전화되면 될수록 더욱 감소된다.

여기에서 문제로 하는것은 단순한 형식상의 형태변화로부터 생기는 류통비의 일반적성격뿐이다. 그 모든 세부형태들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고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가치의 순전한 형태전화에 속하며 따라서 생산과정의 일정한 사회적 형태로부터 생기는 형태들 그리고 개별적인 상품생산자에 있어서는 다만 일시적이며 거의 눈에 띄우지 않는 계기들이며 그의 생산적기능에 붙어있거나 또는 그것들과 엉켜있는 형태들—이러한 형태들이 거액의 류통비로서 사람들을 얼마나 놀라게 할수 있는가 하는것은 단순한 화폐수지가 은행 등이나

개별적기업의 현금출납원의 전문적기능으로서 독립화되여 대규모로 집중되여있는것을 보면 알수 있다. 잊어서는 안될것은 이러한 류통비는 그 모습이 변하는데 의하여는 그 성격을 변경시키는것이 아니라는것이다.

C. 화 폐

생산물이 상품으로서 생산되든 또는 상품이 아닌것으로서 생산되든간에 그것은 항상 부의 소재적모습이고 사용가치이며 개인적인 또는 생산적인 소비에 들어가게 되여있다. 상품으로서의 생산물의 가치는 관념적으로 가격에 존재하며 이 가격은 생산물의 현실적인 사용자태를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금은과 같은 일정한 상품들이 화폐로서 기능하며 또 화폐로서는 다만 류통과정에만 머무른다는(그것들은 축장화폐, 준비금 등으로서도 비록 잠재적이지만 류통분야에 머무른다.)것은 상품의 생산과정으로서의 생산과정의 일정한 사회적형태의 순수한 산물이다. 자본주의적생산의 기초우에서는 상품이 생산물의 일반적모습으로 되며 생산물의 대부분은 상품으로서 생산되고 따라서 화폐형태를 취하지 않을수 없기때문에, 따라서 상품량, 즉 사회적부중에서 상품으로서 기능하는 부분이 부단히 장성하기때문에 여기에서는 류통수단, 지불수단, 준비금 등으로서 기능하는 금은의 량도 증가한다. 화폐로서 기능하는 이 상품들은 개인적소비에도 생산적소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화폐는 사회적로동이 단순한 류통기계로서 복무하는 형태로 고정된것이다. 사회적부의 일부분이 이 비생산적인 형태로 구속되는외에도 화폐의 마멸은

그것의 부단한 보상을, 또는 보다 더 많은 사회적로동—생산물형태로서의—이 보다 더 많은 금과 은으로 전화될것을 필요로 한다. 이 보상의 비용은 자본주의적으로 발전된 국가들에서는 상당히 크다. 왜냐 하면 일반적으로 부중에서 화폐형태로 구속되여있는 부분이 크기때문이다. 금과 은은 화폐상품으로서는 사회에 대하여서는 다만 생산의 사회적형태로부터 생길뿐인 류통비를 이룬다. 그것은 상품생산일반의 비생산적비용이며 이 비용은 상품생산 특히는 자본주의적생산의 발전에 따라 증대된다. 그것은 사회적부중에서 류통과정을 위해 희생하지 않을수 없는 일부분이다.(13)

2. 보 관 비

가치의 단순한 형태변환으로부터, 즉 관념적으로 고찰한 류통으로부터 생기는 류통비는 상품의 가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러한 류통비에 지출되는 자본부분은 우리가 자본가를 념두에 두는 한 생산적으로 지출되는 자본으로부터의 단순한 공제분을 이룬다. 우리가 지금부터 고찰하는 류통비는 이것과는 성격이 다른것이다. 이 류통비는 생산과정에서 생기는것이며 다만 이 생산과정이 류통에서만 지속되며 따라서 그 생산적성격이 류통형태에 의하여 은폐되여있을따름이다. 다른 한편 그것은 사회적으로 보면 단순한 비용이며 산로동이나 대상화된 로동의 비생산적인 지출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13) 《한 나라에서 류통하고있는 화폐는 그 나라의 자본의 일정한 부분으로서 그 나머지부분의 생산성을 돕든가 또는 높이기 위하여 생산적목적으로부터는 완전히 유리된 부분이다. 그러므로 금을 류통수단으로서 채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량의 부가 필요한것은 마치 다른 모든 생산을 쉽게 하기 위한 기계를 만들기 위하여 그러한 부가 필요한것과 같다.》(《경제학자》, 제5권, 520페지)

바로 그때문에 그것은 개별적자본가에게 있어서는 가치형성적작용을 할수 있으며 그의 상품의 판매가격에 대한 부가분을 이룰수 있다. 이러한것은 이 비용이 생산분야가 다름에 따라 다르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생산분야에서도 개별적자본에 따라 다르다는데로부터 나온다. 이 비용은 상품가격에 첨가됨으로써 개별자본가들의 부담이 되는 정도에 비례하여 분배된다. 그러나 가치를 첨가하는 모든 로동은 잉여가치도 첨가할수 있으며 또 자본주의적기초우에서는 항상 잉여가치를 첨가할것이다. 왜냐 하면 로동에 의하여 창조되는 가치는 그 로동자체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로동에 의하여 창조되는 잉여가치는 자본가가 로동에 지불하는 정도에 의하여 결정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상품에 사용가치를 첨가함이 없이 상품의 가격을 높이는 비용, 따라서 사회에 대하여서는 생산상의 비생산적지출에 속하는 비용들이 개별적자본가들에 있어서는 치부의 원천으로 될수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류통비에 의하여 상품가격에 첨가되는 그 부가분이 다만 이 류통비를 균등하게 분배할따름이라는 한에서는 류통비의 비생산적인 성격이 그로 말미암아 없어지는것은 아니다. 례컨대 보험회사들은 개별적자본가들의 손해를 전체 자본가계급들사이에 분배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와 같이 평균화된 손해도 사회총자본에 대하여 보면 의연히 손해라는것을 방해하는것은 아니다.

A. 재고형성 일반

생산물이 상품자본으로서 존재하는 동안 또는 그것이 시

장에 머물러있는 동안은, 즉 그것이 나오는 생산과정과 그것이 들어가는 소비과정간의 중간에 있는 동안은 생산물은 상품재고를 형성한다. 시장에 있는 상품, 따라서 재고의 모습을 취하고있는 상품으로서는 상품자본은 매개 순환에서 두번 나타난다. 즉 한번은 그 순환이 고찰되고있는, 과정중에 있는 자본자체의 상품생산물로서 나타나며 다른 한번은 이와는 반대로 구매되여 생산자본으로 전화되기 위하여 시장에 있지 않으면 안되는 다른 자본의 상품생산물로서 나타난다. 물론 이 후자의 상품자본은 주문에 의하여서만 비로소 생산될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것이 생산될 때까지는 중단이 생긴다. 그러나 생산과정 및 재생산과정의 흐름은 다량의 상품(생산수단)이 부단히 시장에 있을것을, 즉 재고를 형성할것을 요구한다. 마찬가지로 생산자본은 로동력의 구입을 포함하고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화폐형태는 로동자가 그 대부분을 시장에서 발견하지 않으면 안되는 생활수단들의 가치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절의 서술이 진전됨에 따라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자세히 설명할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미 다음과 같은 점이 명백하다. 과정중에 있는 자본가치, 즉 이미 상품생산물로 전화되여 이제는 판매되여야, 즉 화폐로 재전화되여야 하며 따라서 또 이제는 그것이 시장에서 상품자본으로서 기능하는 그런 자본가치의 립장에 서서 본다면 상품자본이 재고를 형성하는 상태는 목적에 어그러지며 자발적이 아닌 시장체류이다. 판매가 빨리 될수록 재생산과정은 더 원활하게 된다. 형태전화 W′—G′에서의 체류는 자본의 순환에서 진행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적인 물질변환을 방해하며 자본이 더 생산자본으로서 기능하는것을 방해한다. 다른 한편 G—W에 있어서는 시장에 언제나 상품이 현존하는것, 즉 상품

재고는 재생산과정의 진행의 조건으로서, 또 새로운 자본 또는 추가적자본의 투하의 조건으로서 나타나는것이다.

상품자본이 상품재고로서 시장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건물, 창고, 상품저장소, 상품창고 등이 필요하며 따라서 불변자본의 투하가 필요하다. 또한 상품들을 저장소에 날라들이기 위한 로동력에 대한 지불도 필요하다. 그밖에 상품들은 손상되며 해로운 자연적영향을 받는다.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추가적인 자본이 일부분은 로동수단, 즉 대상적 형태로, 일부분은 로동력으로 투하되여야 한다.(14)

이와 같이 자본이 상품자본형태로, 따라서 또 상품재고형태로 존재하는것은 여러가지 비용의 원인으로 되는데 이러한 비용은 생산분야에 속하는것이 아니므로 류통비로 인정되는것이다. 이 류통비는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상품가치에 들어가며 그만큼 상품가격을 높인다는 점에서 제1절에서 서술한 류통비와 구별된다. 어떤 형편에서나 상품재고의 유지와 보관에 소용되는 자본과 로동력은 언제나 직접적인 생산과정으로부터 떨어져나온다. 다른 한편 여기에 사용되는 자본은 자본의 구성부분으로서의 로동력도 포함하여 사회생산물로부터 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본의 투하는 로동생산력의 감소와 마찬가지로 작용하며 따라서 일정한 유용효과를 얻기 위하여 보다 많은 량의 자본과 로동이 필요하게 되는것이다. 이것이 바로 **비생산적비용**이다.

---

(14) 1841년에 코비트는 9개월기간의 밀저장비를 량의 손실 $\frac{1}{2}$%, 밀가격에 대한 리자 3%, 창고임차료 2%, 선별 및 운반료금 1%, 인도작업비 $\frac{1}{2}$%, 도합 7%, 즉 밀 1쿼터의 가격 50실링에 대하여 3실링 6펜스로 계산하고있다.(T. 코비트 《개인의 부의 원인과 그 취득방식에 관한 연구》, 1841년 런던판, (140페지))[35] 철도위원회의에서 리버풀상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1865년의 곡물저장의 (순)비용은 매달 쿼터당 2펜스 또는 톤당 9~10펜스였다.(《칙명철도위원회》, 1867년, 증언, 19페지, 제331호)

그런데 상품재고의 형성으로 하여 필요하게 되는 류통비가 다만 현존하는 가치가 상품형태로부터 화폐형태로 전화되는 시간으로부터만, 따라서 다만 생산과정의 일정한 사회적형태로부터만(다만 생산물이 상품으로서 생산되며 따라서 또 화폐로의 전화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데로부터만) 생기는 한 그것은 제1절에서 든 류통비와 완전히 같은 성격을 가지는것이다. 다른 한편 상품의 가치가 여기서 보존 또는 증식되는것은 사용가치인 생산물자체가 자본투하가 필요한 일정한 대상적조건하에 옮겨지며 또 사용가치에 추가적로동을 작용시키는 작업하에 놓이게 되기때문임에 불과하다. 이와 반대로 상품가치의 계산이나 이 과정에 관한 부기나 매매거래는 상품가치가 존재하는 사용가치에는 작용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다만 상품가치의 형태와 관계가 있을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한 경우에는 *재고형성*(이것은 여기서는 자발적이 아닌것이다.)에 동반되는 이 비생산적비용들이 다만 형태전화의 정체와 필요성으로부터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제1절에서 말한 비생산적비용들과 구별되는것은 그 목적자체가 가치의 형태전화가 아니라 가치의 보존이라는 점에 의한것인데 이 가치는 생산물, 즉 사용가치로서 상품속에 존재하며 따라서 다만 생산물, 즉 사용가치자체의 보존에 의하여서만 보전될수 있는것이다. 사용가치는 여기서는 제고되지도 않고 증대되지도 않으며 오히려 감소된다. 그러나 그 감소는 제한되며 사용가치는 보존되는것이다. 선대되여 상품속에 존재하는 가치도 여기서는 제고되지 않는다. 그러나 새로운 로동—대상화된 로동과 산로동이 첨가된다.

그런데 더 연구하여야 할것은 이러한 비생산비용은 어느 정도까지 상품생산일반의, 또 그 일반적이며 절대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상품생산, 즉 자본주의적상품생산의 독특한 성

격에서 생기는가 하는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비생산적비용은 어느 정도까지 모든 사회적생산에 공통한가, 또 어느 정도까지 여기에서는 그것이 다만 자본주의적생산내부에서 하나의 특수한 형태, 하나의 특수한 표현형태를 취할 뿐인가 하는것이다.

A. 스미스는 재고형성은 자본주의적생산에 독특한 현상이라는 황당한 관점을 세우고있다.(15) 최근의 경제학자들 례컨대 레일러는 그와 반대로 재고형성은 자본주의적생산의 발전에 따라 감소된다고 주장한다.[37] 씨스몽디는 이것을 자본주의적생산의 어두운 측면이라고까지 보고있다.[38]

사실에 있어서 재고는 세 형태로 존재한다. 즉 생산자본의 형태, 개인적소비기금의 형태 및 상품재고 또는 상품자본의 형태로 존재한다. 재고는 그 절대적량으로 보면 세 형태에서 모두 동시적으로 증대할수는 있지만 한 형태에서 증대되면 다른 형태에서는 상대적으로 감소된다.

처음부터 명백한 일이지만 생산이 직접 자기 수요의 충족을 목적으로 하고 비교적 적은 부분만이 교환 또는 판매를 위하여 생산되며 따라서 사회적생산물이 전혀 상품의 형태를 취하지 않거나 또는 비교적 적은 부분만이 상품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는 상품형태로 있는 재고, 즉 상품재고는 부의 극히 적은 부분만을 이루는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소비기금, 특히 본래의 생활수단의 소비기금은 상대적으로 크다. 옛날의 농민경제를 보기만 하여도 알수 있다. 거기에서는 생산물의 압도적부분이 상품재고를 형성함이 없이—그것은 그 소유자의 수중에 남아있기때문에—직접 재고의 생산수단 또는

---

(15) 제2권 서론[36]

생활수단으로 전화된다. 그것은 상품재고의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 바로 그때문에 그러한 생산방식을 기초로 하는 사회에는 A.스미스에 의하면 재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이다. A.스미스는 재고의 형태를 재고 그 자체와 혼동하고있으며 사회는 지금까지 그날 벌어 그날 살았으며 래일의 일은 래일에 맡기였다고 생각한다.(16) 이것은 유치한 오해이다.

생산자본의 형태로 있는 재고는 생산수단의 형태로 존재하며 이 생산수단은 이미 생산과정에 있거나 또는 적어도 생산자의 수중에 있는것이며 따라서 잠재적으로는 이미 생산과정에 있는것이다. 앞에서도 본바와 같이 로동생산성의 발전에 따라, 따라서 또 자본주의적생산방식—그것은 이전의 어떤 생산방식보다도 로동의 사회적생산력을 더 발전시킨다—의 발전에 따라 로동수단의 형태로서 단번에 생산과정에 합체되여 길거나 짧은 기간 부단히 반복적으로 생산과정에서 기능하는 생산수단(건물, 기계 등등)의 량은 부단히 증대되며 이 증대는 로동의 사회적생산력의 발전의 전제인 동시에 그 결과이기도 하다. 이 형태로 있는 부가 절대적으로뿐만아니라 상대적으로도 증대하는것이(제1권 제23장 제2절 참조[40])

---

(16) A.스미스가 망상하고있는것처럼 재고형성은 생산물의 상품으로의 전화나 소비용재고의 상품재고로의 전화에서 비로소 생기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형태변환은 자기 수요를 위한 생산으로부터 상품생산으로의 이행에 있어서 생산자들의 경제에 매우 심한 공황을 일으킨다. 례컨대 인도에서는 극히 최근까지 《풍년에는 적은 량과만 교환할수 있던 곡물을 대량적으로 저장하는 습관》이 보존되여있었다(《보고. 벵갈 및 오리싸의 기근 하원, 1867년》, 제1부, 230~231페지, 제74호). 미국의 남북전쟁[39]에 의하여 돌연히 증대된 면화, 황마 등에 대한 수요는 인도의 많은 지방들에서의 알곡생산의 대대적인 축소, 쌀값의 등귀 및 생산자들의 저장량곡의 판매를 일으켰다. 설상가상으로 1864~1866년간에는 오스트랄리아, 마다가스까르 등지로의 미증유의 량곡수출이 진행되였다. 이리하여 1866년의 심한 기근이 일어났다. 이 기근은 오리싸주에서만도 100만명의 인명을 빼앗아갔다.(우와 같은 보고, 174~175, 213~214페지 및 제3부 《비하르에서의 기근에 관한 기록》 32~33페지. 여기에서는 기근의 원인중에 낡은 재고의 류출이 강조되여있다.) (제2고에서)

무엇보다도먼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을 특징짓는것이다. 그런데 불변자본의 소재적존재형태인 생산수단은 어러한 종류의 로동수단들로만 되여있는것이 아니라 또한 극히 각이한 가공단계에 있는 로동재료들과 보조재료들로도 구성되여있다. 생산규모의 확대에 따라 그리고 협업, 분업, 기계 등에 의한 로동생산력의 제고에 따라 매일매일의 재생산과정에 들어가는 원료, 보조재료 등의 량도 증가된다. 이 요소들은 생산장소에 준비되여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생산자본의 형태로 존재하는 이러한 재고의 량은 절대적으로 증가한다. 생산과정이 거침없이 진행되기 위하여서는—이 재고가 매일 갱신되는가 일정한 기간을 두고서만 갱신되는가 하는것은 별도로 하고—례컨대 매일 또는 매주일 소비되는것보다는 더 많은 원료 등의 집적이 언제나 생산장소에 준비되여있지 않으면 안된다. 과정의 련속을 위하여 필요한것은 과정의 제 조건의 존재가 매일매일의 구입에 있어서 일어날수 있는 중단에 의하여서도 좌우되지 않으며 또 상품생산물의 판매가 매일 진행되거나 매주일마다 진행되기 위하여 생산물이 불규칙적으로밖에는 그 생산요소로 재전화될수 없다는데 의하여서도 좌우되지 않는다는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생산자본은 극히 각이한 크기에서 잠재적으로 있을수 있으며 재고를 형성할수 있다. 례컨대 방적업자가 준비해두지 않으면 안되는 면화나 석탄이 3개월분인가 1개월분인가 하는것은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재고는 비록 그것이 절대적으로는 증가되지만 상대적으로는 감소될수 있다는것은 명백한것이다.

이것은 여러가지 조건들에 의존하지만 모든 조건들이 귀착하는것은 중단이 발생되지 않게 원료의 필요한 량이 부단히 공급될수 있는 속도, 규칙성 및 확실성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적게 충족되면 될수록, 즉 공급의 확실성, 규칙성 및 속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생산자본의 잠재적부분, 즉 아직 생산자의 수중에서 가공을 기다리고있는 원료 등의 재고는 크지 않을수 없다. 이 조건들은 자본주의적생산의 발전수준에 반비례하며 따라서 사회적로동의 생산력의 발전수준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이 형태에 있는 재고도 역시 그러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재고의 감소로서 나타나는것은(레컨대 레일러의 견해로) 일부분은 다만 상품자본의 형태에 있는 재고, 즉 본래의 상품재고의 감소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동일한 재고의 형태변환에 지나지 않는다. 례컨대 매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탄의 량, 따라서 석탄생산의 규모와 능력이 크다면 방적업자는 자기 생산의 련속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량의 석탄저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석탄공급의 부단하고 확실한 갱신이 그러한 저장을 불필요하게 한다. 둘째로, 한 과정의 생산물이 생산수단으로서 다른 과정으로 넘어갈수 있는 속도는 운수 및 교통수단의 발전에 의존한다. 운수비가 저렴한것이 이 경우에 큰 역할을 한다. 례컨대 탄광으로부터 방적공장으로 석탄을 부단히 반복하여 수송하는것은 비교적 저렴한 수송에 의하여 보다 긴 기간을 위하여 보다 많은 석탄을 준비해 두는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것이다. 지금까지 고찰해온 이 두 사정은 생산과정자체에서 생기는것이다. 셋째로, 신용제도의 발전이 영향을 준다. 방적업자가 자기의 면화, 석탄 등의 재고의 갱신을 위하여 자기의 면사의 직접적인 판매에 의존함이 적으면 적을수록—그리고 신용제도가 발전할수록 이 직접적인 의존은 더 적어진다—면사판매의 우연에 의존하지 않는 련속적인 면사생산을 주어진 규모에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러한 재고의 상대적크기는 더욱더 적어질수 있다. 그러나 넷

째로, 많은 원료, 반제품 등은 그 생산에 보다 긴 기간이 필요하며 특히 농업에 의하여 공급되는 원료는 모두 다 그렇다고 할수 있다. 그러므로 생산과정의 중단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새로운 생산물이 낡은 생산물을 대체할수 없는 기간전체에 걸쳐 그러한 원료, 반제품 등의 일정한 재고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산업자본가의 수중에서 이 재고가 감소된다면 이것은 다만 그 재고가 상인의 수중에서 상품재고의 형태로 증대된것을 보여줄뿐이다. 례컨대 운수수단의 발전은 수입항에 있는 면화를 리버풀로부터 만체스터로 급속히 운송할수 있게 하며 그리하여 공장주는 필요에 따라 비교적 적은 비률로 자기의 면화재고를 갱신할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 동일한 면화가 그만큼 더 대량으로 상품재고로서 리버풀의 상인들의 수중에 있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재고의 단순한 형태변환이며 이것을 레일러나 기타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자본을 본다면 이 경우에도 여전히 동일한 량의 생산물이 재고의 형태를 취하고있는것이다. 한 나라에 대하여 말한다면 례컨대 1년간의 필요량을 위하여 준비해두지 않으면 안되는 크기는 운수수단의 발전에 따라 감소된다. 많은 기선이나 범선이 미국과 영국사이를 왕래하게 된다면 영국에 있어서는 면화재고를 갱신할수 있는 기회가 증가되며 따라서 영국국내에 평균적으로 쌓여있지 않으면 안되는 면화재고의 량은 감소된다. 세계시장의 발전도, 따라서 또 같은 물품의 구입원천이 몇배로 늘어나는것도 동일하게 작용한다. 동일한 물품이 각이한 나라들로부터 각이한 시기에 조금씩 공급되는것이다.

B. 본래의 상품재고

이미 본바와 같이 자본주의적생산의 기초우에서는 상품은 생산물의 일반적형태로 되며 또 자본주의적생산이 넓이와 깊이에 있어서 발전하면 할수록 더욱 그렇게 된다. 그렇기때문에 생산의 범위가 같다 하더라도 이전의 여러가지 생산방식들에 비교하든 또는 발전정도가 보다 낮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에 비교하든 생산물중 비할수 없으리만큼 큰 부분이 상품으로서 존재한다. 그런데 모든 상품, 따라서 또 모든 상품자본—그것은 상품에 지나지 않지만 자본가치의 존재형태로서의 상품인것이다—은 그것이 생산분야로부터 직접 생산적소비 또는 개인적소비로 들어가지 않고 따라서 생산과 소비의 중간에서 시장에 있는 한 상품재고의 요소를 이룬다. 그러므로 생산의 범위가 변함없더라도 자본주의적생산의 발전에 따라 상품재고자체(즉 이렇게 생산물의 상품형태가 독립화되고 고정화된것)는 증대한다. 이미 본바와 같이 이것은 재고의 형태변환에 지나지 않는다. 즉 한편에 있어서 상품형태에 있는 재고가 증가하는것은 다만 다른편에 있어서 재고가 직접적인 생산용재고 또는 소비용재고의 형태로 감소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재고의 사회적형태의 변화에 불과하다. 만약 사회적총생산물에 비한 상품재고의 상대적크기뿐만아니라 그 절대적크기도 동시에 증대한다면 그것은 자본주의적생산의 발전에 따라 총생산물의 량이 증대하기때문이다.

자본주의적생산의 발전에 따라 생산의 규모는 생산물에 대한 직접적수요에 의하여서는 점점 더 적은 정도로 결정되

며 개별적자본가가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는 자본의 크기에 의하여, 그의 자본의 가치증식충동과 그의 생산과정의 련속 및 확대의 필요성에 의하여 점점 더 큰 정도로 결정된다. 그와 함께 어느 특수한 생산분야에서나 상품으로서 시장에 있는 생산물 또는 판로를 찾고있는 생산물의 량은 필연적으로 증대한다. 상품자본의 형태로 다소간 오랜 기간 고정되는 자본의 량도 증대한다. 그러므로 상품재고도 증대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의 최대부분이 임금로동자로 전화된다. 즉 그날 벌어 그날 살아가며 자기의 임금을 매주 받아 매일 지출하는 사람들로, 따라서 생활수단을 재고형태로 발견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람들로 전화된다. 이 재고의 개개의 요소들이 아무리 류동적이라 하더라도 재고가 끊임없이 류동을 계속하기 위하여서는 그 요소들의 일부분은 부단히 정체되여있지 않으면 안된다.

이 모든 계기들은 생산의 형태로부터 나오며 또 그 형태에 포함되여있는 생산물이 류통과정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안되는 형태전화로부터 나온다.

생산물재고의 사회적형태가 어떠하든간에 그 보관에는 비용이 필요하다. 즉 생산물의 저장소인 건물, 용기 등등이 필요하며 또한 해로운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되지 않으면 안되는 생산수단과 로동도 생산물의 성격에 따라 많게나 적게 필요하다. 재고가 사회적으로 집중되면 될수록 그만큼 이러한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이러한 비용은 대상화된 형태나 또는 산형태의 사회적로동의 일부분을 이루며—따라서 자본주의적형태에 있어서는 자본투하를 이룬다.—그것은 생산물의 형성자체에는 들어가지 않으며 따라서 생산물로부터의 공제분을 이룬다. 이 지출들은 필요하며 사회적부

의 비생산적비용이다. 그것들은 사회적생산물의 보관비이다. 그것은 상품재고의 요소로서의 사회적생산물의 존재가 단순히 생산의 사회적형태로부터, 즉 상품형태 및 그의 필연적인 형태전화로부터 발생하든 또는 우리가 상품재고를 다만 생산물재고의 하나의 특수한 형태—비록 **상품**재고의 형태, 류통과정에 속하는 생산물재고의 이 형태로서는 아니더라도 모든 사회에 공통적인 상품재고—로서 고찰하든간에 사정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러한 비용들이 어느 정도로 상품가치에 들어가는가 하는 문제가 나선다.

자본가는 생산수단 및 로동력에 선대한 그의 자본을 생산물로, 판매되여야 할 일정한 량의 기성상품으로 전화시켰는데 이것이 판매되지 않고 창고에 쌓여있다면 이 기간에 그의 자본의 가치증식과정이 정체될뿐만아니라 이 재고를 보관하기 위하여 건물이나 추가적로동 등에 필요한 지출은 직접적인 손실을 이룬다. 만약 그 자본가가 자기의 상품은 6개월간 팔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 6개월간 이만저만한 액수의 자본이 그저 놀고있었을뿐만아니라 그것을 보관하는데 x액의 비생산적비용이 들었다고 말한다면 최후에 나타난 구매자는 그를 비웃을것이다. 구매자는 이렇게 말할것이다. 그것은 참 안되였다! 당신이외에 또 다른 판매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상품은 바로 그저께 만든것이다, 당신의 상품은 묵은것이고 오래된것이여서 다소 손상되였을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의 경쟁자보다 더 싸게 팔지 않으면 안될것이다라고. 상품생산자가 자기 상품의 현실적생산자인가 또는 상품의 자본주의적생산자, 즉 사실상 상품의 현실적생산자들의 대표자에 불과한가 하는것은 상품의 생존조건을 조금도 변동시키지 않

는다. 그는 자기 물품을 화폐로 전화시켜야 한다. 그 물품이 상품형태로 고정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비생산적비용들은 그의 개인적인 모험으로서 이것은 상품의 구매자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구매자는 그에게 그의 상품의 류통기간의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다. 현실적인 또는 예측되는 가치혁명의 시기에 자본가가 자기 상품을 고의로 시장에 내놓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가 추가적인 비생산적비용을 실현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다만 그 가치혁명이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의 투기가 성공하는가 안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나 가치혁명은 그의 비생산적비용의 결과가 아니다. 그러므로 재고형성이 류통의 정체인 한 그때문에 필요되는 비용은 상품에 어떠한 가치도 첨가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 류통분야에서의 체류가 없이는, 자본이 얼마동안 상품형태로 머물러있지 않고서는 재고가 존재할수 없다. 즉 류통의 정체 없이는 재고가 있을수 없다. 이것은 마치도 화폐준비의 형성이 없이는 화폐류통이 있을수 없는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상품재고가 없이는 상품류통이 있을수 없다. 자본가는 W′—G′에서는 이 필연성에 봉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G—W에서는 봉착하며 그의 상품자본에 대하여서는 봉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를 위한 생산수단들과 그의 로동자들을 위한 생활수단들을 생산하는 다른 자본가들의 상품자본에 대하여서는 봉착한다.

재고형성이 자유의사에서 나오는것인가 또는 자유의사에서 나오지 않는것인가, 즉 상품생산자가 고의로 재고를 보유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류통과정자체의 사정이 그의 상품의 판매를 방해한 결과로서 그의 상품이 재고를 형성하는가 하는것은 사태의 본질을 변경시키지 않는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자유의사에서 나오는 재고형성과

자유의사에서 나오지 않는 재고형성이 무엇에 의하여 구별되는가를 아는것이 유익하다. 자유의사에서 나오지 않는 재고형성은 상품생산자가 알수 없으며 그의 의사에 어긋나는 류통정체에서 생기든가 또는 이 정체와 동일한것이다. 자유의사에서 나오는 재고형성을 특징짓는것은 무엇인가? 여전히 판매자는 자기의 상품을 될수 있는대로 빨리 팔아버리려고 한다. 그는 부단히 생산물을 상품으로서 팔려고 내놓는다. 만약 그가 생산물을 팔지 않고 남겨둔다면 이 생산물은 다만 상품재고의 가능적인 요소를 이룰뿐이고 그 현실적인 요소를 이루는것은 아닐것이다. 상품 그자체는 그에게 대하여서는 여전히 다만 그 교환가치의 담당자일따름이며 또 상품은 다만 그 상품형태를 버리고 화폐형태를 취하는데 의해서만 또 그후에라야만 비로소 교환가치로서 작용할수 있는것이다.

상품재고는 주어진 기간중 수요의 크기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 경우에 구매자의 범위의 부단한 확대가 고려된다. 례컨대 하루동안의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시장에 있는 상품의 일부분은 다른 부분이 류동하여 화폐로 전화되는 동안 부단히 상품형태로 머물러있지 않으면 안된다. 다른 부분이 류동하고있는 동안에 정체하는 부분도 재고자체의 크기가 감소하는데 따라 부단히 감소되여 결국에는 전부 판매되고만다. 따라서 이 경우에 상품의 정체는 상품판매의 필요조건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또 재고의 크기는 판매의 평균적크기 또는 수요의 평균적크기보다 더 크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평균적크기를 넘는 수요를 충족시킬수 없을것이다. 다른 한편 재고는 부단히 해소되기때문에 부단히 갱신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갱신은 결국은 다만 생산에 의하여, 상품의 공급에 의하여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 공급이 외국으로부터 오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것은 사태를 조금도 변경시키지 못한다. 이 갱신은 상품의 재생산에 필요한 기간에 의하여 좌우된다. 상품재고는 이 기간중에 충분하지 않으면 안된다. 상품재고가 최초의 생산자의 수중에 남아있지 않고 도매상인으로부터 소매상인에 이르는 각이한 저장소를 통과한다는 사정은 현상을 변경시킬뿐이고 사태자체를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사회적으로 보면 상품이 생산적소비 또는 개인적소비로 들어가버리지 않은 한 자본의 일부는 여전히 상품재고의 형태로 있는것이다. 생산자자신이 생산에 의하여 직접 좌우되지 않고 고정적인 범위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기에 대한 평균적인 수요에 상응하는 재고를 유지하려고 한다. 생산기간에 상응하여 구매기간이 형성되며 상품은 그것이 같은 종류의 새 상품으로 교체될수 있을때까지 다소간의 기간에 재고를 형성한다. 이러한 재고형성에 의하여서만 류통과정, 따라서 또 류통과정을 포괄하는 재생산과정의 부단성과 련속성이 보장된다.

상기해야 할것은 W는 아직 시장에 있더라도 W의 생산자에 대하여서는 W′—G′가 이미 완수되여있을수가 있다는것이다. 만약 생산자가 자기의 상품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될 때까지 그것을 재고로 두려고 한다면 생산자는 이중의 자본을 움직이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즉 하나는 상품생산자로서이며 다른 하나는 상인으로서이다. 상품자체에 대하여서는—개개의 상품으로서 보든 또는 사회적자본의 구성부분으로서 보든간에—재고형성의 비용이 상품생산자자신의 부담으로 되든지 또는 A로부터 Z까지의 일련의 상인들의 부담으로 되든지 사태는 조금도 변경되지 않는다.

상품재고가 재고의 상품형태에 지나지 않으며 이 재고는

만일 그것이 상품재고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회적생산의 주어진 규모에서 생산용재고(잠재적생산기금) 또는 소비기금(소비수단의 예비)으로서 존재하는 한 재고의 보관에 필요한 비용, 따라서 재고형성의 비용, 즉 이 목적에 소비되는 대상화된 로동 또는 산 로동은 사회적생산기금이든 또는 사회적소비기금이든간에 그 보관비용이 전화한데 지나지 않는다. 이 비용에 의하여 일어나는 상품가치의 제고는 이 비용을 각이한 상품들간에 비례적으로만 분배한다. 왜냐 하면 이 비용들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때문이다. 재고형성의 비용은 그것이 사회적부의 존재조건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부로부터의 공제분이다.

상품재고가 상품류통의 조건이며 그리고 상품류통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형태인 한에서만, 따라서 화폐준비의 형성이 화폐류통의 조건인것과 마찬가지로 이 외관상의 정체가 류동자체의 형태인 한에서만—오직 이 한에서만 이 정체는 정상적이다. 이와는 반대로 류통의 저수지에 머무르고있는 상품들이 뒤이어 밀려오는 생산의 파도에 자리를 내주지 않으며 그리하여 저수지가 가득차게 되는 경우에는 상품재고는 마치도 화폐류통이 정체할 때 축장화폐가 증대되는것과 마찬가지로 류통의 정체의 결과로 확대된다. 이 경우에 이 정체가 산업자본가의 창고에서 생기는가 또는 상인의 창고에서 생기는가 하는것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 그 경우에는 상품재고는 끊임없는 판매의 조건인것이 아니라 상품이 판매되지 않는 결과이다. 비용이 드는것은 변함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비용이 순전히 형태로부터, 즉 상품을 화폐로 전화시킬 필요성으로부터 그리고 이 형태변화의 곤난으로부터 발생하기때문에 그것은 상품의 가치에 들어가지 않고 가치실현

에 있어서의 공제분을, 즉 가치손실을 이룬다. 재고의 정상적형태와 비정상적형태는 형태상으로는 구별되지 않고 량자가 다 류통의 정체이기때문에 이 현상들은 혼동될수 있으며 더구나 생산자들에 대하여서는 이미 상인들의 수중으로 넘어간 그의 상품들의 류통과정이 정체한다 하더라도 그의 자본의 류통과정은 원활이 진행될수 있기때문에 생산당사자자신을 더 쉽게 속일수 있다. 생산과 소비의 규모가 증대되면 기타 조건들이 변하지 않는 형편에서는 상품재고의 규모도 증대된다. 상품재고는 종전의 속도로써 갱신되며 흡수되나 그 규모는 더 커진다. 그러므로 류통의 정체로 말미암아 확대되고있는 상품재고의 규모는 재생산과정이 확대되는 징후로 오인될수 있으며 특히 신용제도의 발전에 따라 현실적운동이 신비화될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재고형성의 비용은 1) 생산물량의 량적인 감소(레컨대 밀가루재고에서와 같이) 2) 품질의 손상 3) 재고를 보관하는데 필요한 대상화된 로동과 산로동으로써 이루어진다.

3. 운 수 비

여기에서 류통비의 모든 세목들 레컨대 포장, 품별 등등과 같은것들을 고찰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인 법칙은 **다만 상품의 형태전화로부터만 생기는 모든 류통비는 상품에 가치를 첨가하지 않는다**는것이다. 그것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또는 가치를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시키기 위한 비용에 지나지 않는다. 이 비용에 투하되는 자본(자본에 의하여 지휘되는 로동도 포함하여)은 자본주의생산의 비생산적비용에 속한다. 이 비용의 보상은 잉여생산물로부터 실시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 보상은 전체 자본가계급에 대하여 말하면 잉여가치 또는 잉여생산물로부터의 공제분을 이루는데 그것은 마치도 로동자가 생활수단을 구입하는데 드는 시간이 그에게는 상실되는 시간인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운수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노는것이기때문에 여기에서 간단히나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자본의 순환에서 그리고 이 순환의 한 단계를 이루는 상품형태변화의 내부에서는 사회적로동의 물질적변환이 진행된다. 이 물질적변환을 생산물들의 장소변환, 즉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의 생산물들의 현실적인 운동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상품의 류통은 상품의 물리적운동이 없이도 진행될수 있으며 생산물의 운수는 상품의 류통이 없이도, 지어는 생산물의 직접적인 교환이 없이도 진행될수 있다. A가 B에게 파는 가옥은 상품으로서는 류통하지만 그것은 이동하지는 않는다. 면화나 선철같은 가동적인 상품가치들도 같은 상품창고에 앉아있으면서 그동안에 여러개의 류통과정을 통과하며 투기자들에 의하여 구매되고 다시 판매된다.(17) 이 경우에 현실적으로 운동하는것은 물품자체가 아니라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다. 다른 한편 레컨대 잉카국[31]에서는 사회적생산물이 상품으로서 류통하지도 않았으며 또 물물교환을 통하여 분배되지도 않았으나 운수업이 거대한 역할을 놀았다.

그러므로 운수업은 자본주의적생산의 기초우에서는 류통비의 원인으로서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러한 특수한 표현형태는 사태의 본질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생산물의 량은 그의 운수에 의하여서는 증가되지 않는다. 또 운수로 말미암아 일어날수 있는 생산물의 자연적속성

---

(17) 슈또르호는 이런 류통을 꾸며낸 류통이라고 부르고있다.

의 변화는 약간의 례외를 제하면 예기되는 유용효과가 아니라 불가피한 재화이다. 그러나 물품의 사용가치는 다만 그 소비에 있어서만 실현되며 그 소비를 위해서는 물품의 장소변환 따라서 운수업의 추가적인 생산과정이 필요하게 될수도 있다. 따라서 운수업에 투하된 생산자본은 일부는 운수수단으로부터의 가치이전에 의하여, 일부는 운수로동에 의한 가치첨가에 의하여 수송되는 생산물에 가치를 첨가하는것이다. 후자의 가치첨가는 모든 자본주의적생산에서처럼 로임의 보상과 잉여가치로 분할된다.

매개 생산과정내부에서는 로동대상의 장소변경과 이에 필요한 로동수단과 로동력—례컨대 면화가 소면실로부터 방적실로 이동되고, 석탄이 수직갱으로부터 지상으로 올라가는 경우—은 큰 역할을 한다. 완성생산물이 완성상품으로서 하나의 독립적인 생산장소로부터 이 장소와 다른 멀리 떨어진 생산장소로 이동되는것도 동일한 현상을, 다만 더 큰 규모에서 보여줄따름이다. 한 생산장소로부터 다른 생산장소로의 생산물의 운수에는 또한 생산분야로부터 소비분야로의 완성생산물의 운수가 뒤를 잇는다. 생산물은 이 운동을 완성하였을 때 비로소 소비를 위하여 완성되는것이다.

앞에서 보여준바와 같이 로동의 생산성과 로동의 가치창조가 반비례한다는것은 상품생산의 일반적법칙이다. 이 법칙은 다른 어떤 산업에나 적용되듯이 운수업에도 적용된다. 주어진 거리의 상품수송에 필요한 로동량, 즉은 로동과 산 로동을 포함한 이 로동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로동생산력은 더 크며 또 반대의 경우에는 그 반대이다.(18)

---

(18) 리카도는 쎄를 인용하고있는데 쎄는 상업이 운수비에 의하여 생산물을 비싸게 만들거나 또는 그 가치를 높이는것을 상업의 혜택이라고 생각하고있다. 쎄는 다음과 같

운수에 의하여 상품에 첨가되는 절대적인 가치량은 기타의 조건들이 변함없다면 운수업의 생산력에 반비례하고 수송거리에 정비례한다.

기타의 조건들이 변함없다면 운수비가 상품의 가격에 첨가하는 상대적인 가치부분은 상품의 용적과 중량에 정비례한다. 그러나 이것을 수정하는 사정들도 많이 있다. 례컨대 물품이 비교적 파손되기 쉽거나 썩기 쉽거나 폭발하기 쉽거나 하는데 따라 운수에 많게나 적게나 예방책이 필요하며 따라서 많게나 적게나 로동과 로동수단의 지출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는 철도왕들은 공상적인 종류의 발명에서는 식물학자나 동물학자들보다도 더 큰 독창력을 발휘한다. 례컨대 영국의 철도에서는 화물의 분류가 몇권의 책으로 되여있으며 일반적원칙으로 보면 그것은 화물의 여러가지 잡다한 자연적성질을 그만큼 많은 수의 운수상 결함들로 쳐서 사취를 위한 상례적인 구실들로 삼으려는 의향에 기초하고있다.

《이전에는 1크레이트 〈일정한 용적의 상자, 바구니〉 당 11파운드였던 유리가 지금은 산업의 진보와 유리세페지의 결과 2파운드밖에 안하지만 그러나 운송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높으며 수로운송에서는 이전보다도 높다. 이전에는 연세공을 위한 유리나 유리제품은 버밍감으로부터 50마일 이내에서는 1톤당 10실링으로 운송되였다. 지금은 물품이

이 말하고있다. 《상업은 우리가 상품을 원산지에서 입수하여 다른 소비지로 수송할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제1장소에서의 상품의 가격과 제2장소에서의 그 가격과의 전체 차액만큼 상품의 가치를 증대시킬수 있게 한다.》[41] 리카도는 이에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그렇다. 그러나 어찌하여 그것에 추가적가치가 부여되는가? 생산비에 첫째로는 운수비를 첨가하는데 의하여서이며 둘째로는 상인이 수행한 자본선대에 대한 리윤을 첨가하는데 의하여서이다. 그 상품의 가치가 증대되는것은 다른 모든 상품의 가치가 증대되는것과 동일한 리유에 의한것인데 그 상품이 소비자에 의하여 구매되기전에 그 생산과 운수에 보다 많은 로동이 지출되기때문일따름이다. 이것을 상업의 리익의 하나라고 말하여서는 안된다.》(리카도 《정치경제학원리》, 1821년 런던 제3판, 309~310페지)

깨지기 쉬운것으로 인한 위험을 구실로 운임이 3배로 인상되였다. 그러나 철도당국은 실지 깨진것을 배상하지 않는다.》(19)

그리고 운수비가 물품에 첨가하는 상대적가치부분이 그 물품의 가치에 반비례한다는것은 철도왕들에게 있어서는 물품의 가치에 비례하여 운임을 부과하기 위한 특수한 리유로 된다. 이 점에 대한 산업가들과 상인들의 하소연은 여기에서 인용한 보고서의 증언의 어느 페지에서나 다 되풀이되고있다.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은 운수 및 교통수단들의 발전에 의하여 또 운수의 집중—규모의 증대—에 의하여 개개의 상품의 운수비를 감소시킨다. 이 생산방식은 첫째로는 모든 생산물들의 대다수를 상품으로 전화시키는데 의하여, 그다음에는 지방적시장들을 원거리의 시장들로써 대체하는데 의하여 산로동과 대상화된 로동을 포함한 사회적로동중에서 상품의 운수에 지출되는 부분을 증가시킨다.

공간에서의 상품의 류통, 즉 실제적이동은 상품들의 운수에 귀착된다. 운수업은 한편으로는 독립적인 생산부문을 이루며 따라서 생산자본의 하나의 특수한 투하분야를 이룬다. 다른 한편 그것은 류통과정**내부에서의** 그리고 류통과정을 **위한** 생산과정의 계속으로서 나타난다는것으로써 특징지어진다.

---

(19) 《최명철도위원회》, 31페지, 제630호.

제 2 편

자본의 회전

제 7 장

회전기간과 회전수

이미 본바와 같이 주어진 자본의 총류통기간은 그 자본의 류통기간과 생산기간의 합계와 같다. 그것은 자본가치가 일정한 형태로 선대된 순간으로부터 과정중에 있는 자본가치가 동일한 형태로 되돌아올 때까지의 기간이다.

자본주의적생산의 규정적목적은 언제나 선대가치의 증식이며 이 가치가 독립적형태 즉 화폐형태로 선대되여있든 또는 그것이 상품으로서 선대되여 그 가치형태가 선대되는 상품의 가격에서 다만 관념적인 독립성만을 가지게 되든간에 거기에는 변함이 없다. 어느 경우에나 이 자본가치는 그 순환중에 여러가지 존재형태를 경과한다. 이 자본가치의 자기 자신과의 동일성은 자본가의 장부에서 또는 계산화폐의 형태에서 확인된다.

G…G′라는 형태를 보든 P…P라는 형태를 보든간에 어느 형태나 다 1) 선대된 가치가 자본가치로서 기능하여 자기를

증식시켰다는것, 2) 이 가치는 그 과정을 통과한 후에는 과정을 개시하였던 때의 형태로 돌아갔다는것을 포함하고있다. 선대된 가치 G의 증식과 동시에 또 이 형태(화폐형태)에로의 자본의 복귀는 형태 G…G′에서는 아주 명백하다. 그러나 동일한것은 제2의 형태에서도 일어난다. 왜냐 하면 P라는 출발점은 생산요소의 존재이며 주어진 가치의 제 상품의 존재이기때문이다. 이 형태는 이 가치의 증식을 포함하고있으며(W′와 G′) 또 원래의 형태에로의 복귀를 포함하고있다. 왜냐하면 제2의 P에서는 선대된 가치는 처음 선대되였던 때의 생산요소의 형태를 다시 취하고있기때문이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만약 생산이 자본주의적형태의것이라면 재생산도 그러하다. 자본주의적생산방식에서는 로동과정은 다만 가치증식과정의 한 수단으로서 나타날따름이지만 마찬가지로 재생산도 다만 선대가치를 자본으로서, 즉 자기를 증식하는 가치로서 재생산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서 나타날따름이다.》(제1권 제21장 588페지[42])

Ⅰ) G…G′ Ⅱ) P…P Ⅲ) W′…′W라는 세 형태는 형태 Ⅱ(P…P)에서는 과정의 갱신 즉 재생산과정이 현실적인것으로서 표현되고있으나 형태 Ⅰ에서는 가능성으로서만 표현되고있다는것에 의하여 구별된다. 그러나 또 이 두 형태는 선대된 자본가치—화폐적형태로서이든 소재적생산요소의 모습으로서이든간에—가 출발점으로 되며 따라서 또 복귀점으로 된다는것에 의하여 형태 Ⅲ과 구별된다. G…G′에서는 복귀점은 G′=C+g이다. 과정이 동일한 규모로 갱신된다면 G가 다시 출발점으로 되며 g는 과정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g가 우리에게 보여주는것은 다만 G는 자본으로서 증식되였으며 따라서 잉여가치 g를 낳았으나 그것을 자기로부터 밀어내던졌

다는것을 보여줄따름이다. P…P라는 형태에서도 생산요소 P의 형태로 선대된 자본가치가 역시 출발점으로 되여있다. 이 형태는 이 자본가치의 증식을 포함하고있다. 단순재생산이 진행된다면 동일한 자본가치가 동일한 형태 P로 다시 그 과정을 개시한다. 축적이 진행된다면 P′(이것은 가치량으로 보면 =G′=W′)가 이번에는 증대된 자본가치로서 과정을 개시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이전보다 큰 자본가치로 개시된다 하더라도 다시 최초의 형태에 있는 선대자본가치로 개시된다. 이와는 반대로 형태 Ⅲ에서는 자본가치는 선대자본가치로서 과정을 개시하는것이 아니라 이미 증식된 자본가치로서, 선대자본가치가 그 일부분에 불과한 상품형태로 있는 부의 총체로서 과정을 개시한다. 이 형태 Ⅲ은 개별적자본의 운동이 사회적총자본의 운동과의 련관속에서 파악되는 제3편에 대하여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것은 자본의 회전의 고찰에는 리용될수 없다. 자본의 회전은 언제나 화폐형태이든 상품형태이든 그 어느 형태에 있는 자본가치의 선대로써 개시되고 또 언제나 순환하는 자본가치가 선대되던 그때의 형태로 복귀하는것을 조건으로 하는것이다. 순환 Ⅰ과 Ⅱ에서는 잉여가치 형성에 대한 회전의 영향이 주로 주목되는 한에서는 전자가 견지되여야 하며 생산물형성에 대한 회전의 영향이 주로 주목되는 한에서는 후자가 견지되여야 한다.

경제학자들은 여러가지 순환형태들을 구별하지도 않았으며 이 형태들을 자본의 회전에 관련시켜 따로따로 고찰하지도 않았다. 보통은 G…G′의 형태가 취하여진다. 왜냐 하면 이 형태가 개별적자본가를 지배하기때문이며 또 지어 자본가의 계산에는 화폐가 다만 계산화폐의 모습으로서만 출발점을 이루는 경우에도 이 형태가 그에게 소용되기때문이다. 또 다

른 경제학자들은 생산요소의 형태로서의 지출로부터 출발하여 환류가 진행되기까지를 고찰하고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상품으로서 환류하는가 화폐로서 환류하는가 하는 그 환류의 형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례컨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경제순환…즉 지출될 때부터 회수될 때까지의 생산의 전체 경로. 농업에서는 파종기가 그 시작이며 수확이 그 종결이다.》(S. Ph. 뉴먼 《정치경제학원리》 앤도버 및 뉴욕판, 81페지)[43]

다른 사람들은 W′(형태 Ⅲ)로부터 시작한다.

《생산교역의 세계는 우리가 경제순환이라고 부르려 하는 하나의 원형을 이루어 회전하는것으로 볼수 있다. 그리고 이 순환은 기업이 련속적인 거래들을 수행한후에 다시 그 출발점에 도달할 때마다 한 회전을 끝낸다. 출발점으로서는 자본가가 얻은 수입에 의하여 그의 자본이 그의 수중에 환류하는 점을 취할수 있다. 자본가는 이 점으로부터 출발하여 다시 그의 로동자들을 고용하고 그들의 생활수단을, 또는 오히려 이 생활수단을 얻는 힘을 로임으로서 그들에게 나누어주며 자기가 거래하는 물품을 그들로 하여금 만들게 하고 이 물품을 시장에 가지고 가서 팔고 그 판매액에서 이 기간의 그의 전 투자를 회수하는데 의하여 이 일련의 운동의 순환을 끝마친다.》(T. 챠머즈 《정치경제학에 관하여》, 1832년 글라스고 제2판, 85페지)[44]

한 개별적자본가가 임의의 생산부문에 투하한 총자본가치가 자체의 운동의 순환을 완수하면 그것은 다시 자체의 최초의 형태로 있으며 이제는 다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할수 있다. 이 가치가 자본가치로서 영구화되고 증식되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1회의 순환은 자본의 생애에서 부단히 반복되는 한 절, 즉 한 주기를 이룰

따름이다. G…G′라는 주기의 종말에는 자본은 다시 화폐자본의 형태로 되돌아가며 이 화폐자본은 자본의 재생산과정 또는 가치증식과정을 포함하는 일련의 형태전화렬을 새로 통과한다. P…P라는 주기의 종말에는 자본은 다시 생산요소의 형태로 되돌아가며 이러한 생산요소는 자본의 갱신된 순환의 전제로 된다. 자본의 순환이 개개의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주기적인 과정으로 규정될 때에는 그것은 자본의 회전이라고 불리운다. 이 회전의 기간은 자본의 생산기간과 자본의 류통기간의 합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총기간은 자본의 회전기간을 이룬다. 따라서 그것은 총자본가치의 한 순환주기로부터 그다음 순환주기에 이르는 그 사이의 기간을 표시한다. 그것은 자본의 생활과정에서의 주기성을 표시하며 또는 동일한 자본가치의 증식과정 또는 생산과정의 갱신, 반복의 시간을 표시한다.

하나의 개별적자본을 위하여 회전기간을 촉진하거나 단축하거나 할지도 모를 개인적모험을 도외시한다면 제 자본의 회전기간은 그것들의 투자분야가 각이함에 따라 각이하다.

1로동일이 로동력의 기능의 자연적인 도량단위로 되여있는것과 마찬가지로 1년은 과정을 진행하고있는 자본의 회전의 자연적인 도량단위로 되여있다. 이 도량단위의 자연적기초는 자본주의적생산의 모국인 온대의 가장 중요한 토지 과실이 해마다의 생산물들이라는데 있다.

회전기간의 도량단위로서의 1년을 U로, 어떤 일정한 자본의 회전기간을 u로, 그 자본의 회전수를 n으로 표시한다면 $n=\frac{U}{u}$ 이다. 례컨대 회전기간 u가 3개월이라면 $n=\frac{12}{3}=4$이다. 이 자본은 1년간에 4번 회전하며 또는 4회전한다. u가 18개

월이라면 $n=\frac{12}{18}=\frac{2}{3}$ 로 된다. 바꾸어말하면 그 자본은 1년간에 그 회전기간의 $\frac{2}{3}$ 만을 경과한다. 만약 자본의 회전기간이 몇년에 걸친다면 그것은 1년의 배수에 의하여 계산된다.

자본가에 있어서 그의 자본의 회전기간은 그가 자기의 자본을 증식하고 최초의 모습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자기 자본을 선대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간이다.

회전이 생산과정 및 가치증식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한층 더 상세히 연구하기전에 우리는 류통과정으로부터 자본에 부착하여 그 회전형태에 영향을 주는 두개의 새로운 형태를 고찰하여야 한다.

제 8 장

고정자본과 류동자본

1. 형태상의 차이

제1권 제6장[45]에서 본바와 같이 불변자본의 일부분은 그것이 생산과정에 들어갈 때의 일정한 사용형태를, 그 불변자본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생산물에 대립하여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그것은 장기간 또는 단기간 부단히 반복되는 로동과정에서 부단히 반복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례컨대 작업용건물, 기계 등등 간단히 말하여 우리가 **로동수단**이라는 명칭으로 총괄하는 모든것은 다 그러하다. 불변자본의 이 부분은 그자체의 사용가치와 함께 그자체의 교환가치를 상실하는데 비례하여 생산물에 가치를 넘겨준다. 이러한 가치의 인도, 또는 이와 같은 생산수단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되는 생산물로의 그 가치의 이전은 평균계산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 이전은 생산수단이 생산과정에 들어가는 순간으로부터, 그것이 완전히 소모되여 못쓰게 되며 동종의 신품에 의하여 교체 또는 재생산되지 않으면 안되는 순간까지의 그 생산수단의 기능의 평균지속기간에 의하여 측정된다.

따라서 불변자본의 이 부분—고유한 의미에서의 로동수단—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자본의 일부분은 불변자본의 형태, 즉 생산수단의 형태로 선대되여있다. 이 생산수단은 그것이 로동과정에 들어갈 때의 독립적인 사용형태를 보존하는 동안 로동과정의 요인으로서 기능한다. 완성생산물 따라서 또 생산물로 전화된 한에 있어서의 생산물형성요소도 생산과정으로부터 나와 상품으로서 생산분야로부터 류통분야로 넘어간다. 이와는 반대로 로동수단은 일단 생산분야로 들어간 다음에는 결코 여기를 떠나지 않는다. 그 기능이 그것을 생산분야에 결박하여둔다. 선대된 자본가치의 일부분은 생산과정에서의 로동수단의 기능에 의하여 규정되는 이 형태에 **고정**된다. 로동수단이 기능함에 따라, 따라서 또 그것이 소모됨에 따라 그 가치의 일부분은 생산물로 넘어가나 다른 일부분은 그대로 로동수단에 따라서 또 생산과정에 고정된다. 이와 같이 고정된 가치는 로동수단이 다 사용될 때까지, 따라서 또 그 가치가 장기간 또는 단기간에 걸쳐 부단히 반복되는 일련의 로동과정으로부터 나오는 생산물들에 분배될 때까지 부단히 감소된다. 그러나 로동수단이 아직도 로동수단으로서 작용하며 따라서 아직도 동종의 신품에 의하여 교체되지 않아도 좋은 동안에는 불변자본가치는 언제나 로동수단에 고정되는데 최초에 로동수단에 고정된 가치의 다른 부분은 생산물로 넘어가고 따라서 상품재고의 구성부분으로서 류통한다. 로동수단의 수명이 길면 길수록, 그 마멸이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불변자본가치는 더 오래 이 사용형태에 고정된다. 그러나 로동수단의 수명정도가 어떠하든간에 로동수단이 가치를 넘겨주는 비률은 언제나 그 로동수단이 기능하는 총기간에 반비례한다. 만약 같은 가치를 가진 두개의 기계중에서 하나는 5년간에 마멸되고 다른 하나는 10년간에 마멸된다면 동일한 기간에 전자는 후자

보다 2배의 가치를 인도한다.

자본가치중 로동수단에 고정된 이 부분도 다른 모든 부분과 마찬가지로 역시 류통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바와 같이 자본가치전체가 부단한 류통중에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는 모든 자본은 류통하고있는 자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고찰되는 이 자본부분의 류통은 독특하다. 첫째로, 이 자본부분은 자체의 사용형태로 류통하는것이 아니라 가치만이 류통하는것이며 그것도 그 자본부분으로부터 상품으로서 류통하는 생산물로 이행하는 정도에 따라 점차적으로 조금씩 류통하는것이다. 로동수단이 기능하는 전 기간에 그 가치의 일부분은 이 로동수단의 협력으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하여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항상 이 로동수단에 고정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불변자본의 이 부분은 **고정자본**의 형태를 얻는다. 그와는 반대로 생산과정에 선대된 자본의 기타 모든 소재적구성부분은 이에 대립하여 **류동자본**을 형성한다.

생산수단의 일부분, 즉 증기기관에 의하여 소비되는 석탄과 같이 로동수단이 기능하는 동안에 로동수단자체에 의하여 소비되는 보조재료와 또는 조명용가스 등등과 같이 과정을 협조할따름인 보조재료는 소재로서는 생산물로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그것들의 가치는 생산물가치의 일부분을 이룰 뿐이다. 생산물은 자기자신의 류통으로 이러한 보조재료의 가치를 류통시킨다. 이것은 보조재료에도 고정자본에도 공통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재료가 들어가는 모든 로동과정에서 이것들은 전부 소비되며 따라서 새로운 로동과정마다 동종의 신품에 의하여 전부 대체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들은 기능하는 동안 자체의 독립적인 사용모습을 보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또 그것들이 기능하는 동안 자본가치의 어떠한

부분도 그것들의 종전의 사용형태, 즉 그것들의 현물형태에 고정되지 않는다. 이 보조재료부분이 소재로서는 생산물에 들어가지 않고 다만 그 가치로만 가치부분으로서 생산물가치에 들어가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이 보조재료의 기능이 생산분야에 결박되여있다는 사정이 램지와 같은 경제학자로 하여금 그릇되게도(고정자본과 불변자본을 혼동함과 동시에) 이 보조재료를 고정자본의 범주에 적용시키게 하였던것이다.[46]

생산수단중 소재로서 생산물에 들어가는 부분, 즉 원료 등등은 그렇게 됨으로써 부분적으로는 후에 소비수단으로서 개인적소비에 들어갈수 있는 형태를 얻는다. 본래의 로동수단, 즉 고정자본의 소재적담당자는 생산적으로 소비될뿐 개인적소비에는 들어갈수 없다. 왜냐 하면 그것은 그 도움으로 형성되는 생산물 또는 사용가치에는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이 완전히 마멸될 때까지 생산물에 대립하여 자기의 독립적모습을 보존하기때문이다. 운수수단은 례외이다. 운수수단이 그 생산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 따라서 생산분야에 머물러있는 동안에 가져오는 유용효과인 장소변환은 동시에 개인적소비에도, 례컨대 려객의 개인적소비에도 들어간다. 이 경우에 려객은 다른 소비수단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운수수단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이미 본바와 같이 례컨대 화학공업에서 원료와 보조재료는 서로 구별이 잘 안된다.[47] 로동수단, 보조재료 및 원료도 그와 같이 구별이 잘 안된다. 례컨대 농업에서는 토양개량을 위하여 추가되는 소재는 부분적으로 생산물형성요소로서 식물생산물에 들어간다, 다른 한편 이런 소재의 작용은 장기간 례컨대 4~5년에 걸쳐 분산된다. 그러므로 그 일부분은 소재로서 생산물에 들어가며 동시에 그 가치를 생산

물에 이전하는데 다른 일부분은 종래의 사용형태대로 있으면서 그 가치를 고정시킨다. 이 부분은 생산수단으로서 존속하며 따라서 고정자본의 형태를 얻는다. 황소는 역축으로서는 고정자본이다. 그러나 그것이 식용으로 된다면 로동수단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으며 따라서 고정자본으로서도 기능하지 않는다.

생산수단에 투하된 자본가치의 일부분에 고정자본의 성격을 부여하는 규정은 오직 이 가치가 류통하는 독특한 방식에 있을뿐이다. 이러한 독특한 류통방식은 로동수단이 그 가치를 생산물에 넘겨줄 때의 또는 로동수단이 생산과정에서 가치형성자로서 작용할 때의 독특한 방식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런 방식자체는 또한 로동과정에서 로동수단이 기능하는 독특한 방식에서 나온다.

다 아는바와 같이 어떤 한 로동과정으로부터 생산물로서 나오는 동일한 사용가치가 다른 로동과정에서는 생산수단으로서 들어간다.[48] 오직 생산물이 생산과정에서 로동수단으로서 수행하는 그 기능만이 그 생산물을 고정자본으로 만든다. 이와는 반대로 생산물자체가 생산과정에서 갓 나온 때에는 결코 고정자본이 아니다. 례컨대 기계는 기계제조업자의 생산물 또는 상품으로서는 그의 상품자본에 속한다. 기계는 오직 그 구매자의 수중에, 즉 그것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자본가의 수중에 있어야만 비로소 고정자본으로 되는것이다.

다른 모든 사정이 같다면 로동수단의 고정정도는 그 내구성에 따라 증대한다. 즉 로동수단에 고정된 자본가치와 이 가치량중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로동과정에서 로동수단이 생산물에 이전하는 부분간의 차이의 크기는 이 내구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와 같은 가치의 인도가 늦으면 늦을수록—가

치는 동일한 로동과정이 반복될 때마다 로동수단으로부터 이전되므로—고정된 자본은 더욱 크게 되며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자본과 거기에서 소비되는 자본간의 차이도 더욱 크게 된다. 이 차이가 없어지면 로동수단은 그 수명을 마치고 그 사용가치와 함께 그 가치를 상실한것이다. 그것은 가치의 담당자가 아니게 된것이다. 로동수단은 불변자본의 다른 모든 소재적담당자와 마찬가지로 다만 자기의 사용가치와 함께 자기의 가치를 상실하는 정도에 따라서 가치를 생산물에 이전할뿐이므로 분명히 그 사용가치가 상실되는것이 늦으면 늦을수록, 즉 그것이 생산과정에서 오래 견디여내면 낼수록 불변자본가치가 로동수단에 고정되는 기간은 그만큼 더 길어지는 것이다.

본래의 의미에서의 로동수단이 아닌 생산수단 례컨대 보조재료, 원료, 반제품 등도 가치의 이전이라는 점에서 따라서 또 그 가치의 류통방식이라는 점에서 로동수단과 같은 처지에 있다면 그 생산수단도 역시 고정자본의 소재적담당자이며 존재형태이다. 우에서 말한 토양개량의 경우가 그러한데 이것에 의하여 토양에 추가되는 화학적성분은 몇개의 생산기간에 걸쳐 또는 몇해에 걸쳐 작용하는것이다. 이 경우에는 가치의 한부분은 아직 계속 생산물과 나란히 그 독립적모습으로, 즉 고정자본의 모습으로 존속하고 다른 가치부분은 이미 생산물에 이전되고 따라서 생산물과 함께 류통한다. 이 경우에는 고정자본의 가치의 한부분이 이 생산물로 들어갈뿐만아니라 이 가치부분을 존재하게 하는 사용가치, 즉 그것을 담당하는 실체도 생산물로 들어간다.

고정자본과 류동자본의 범주를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범주와 혼동한 기본적인 오유는 도외시하더라도 경제학자들

에 있어서의 종래의 개념규정상의 혼란은 우선 다음과 같은 점들에 기인한다.

사람들은 로동수단이 소재로서 가지는 일정한 속성들, 례컨대 가옥의 물체적부동성 같은것을 고정자본의 직접적인 속성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자체로서 역시 고정자본인 다른 로동수단이 반대의 속성을 가진다는것(례컨대 선박의 물체적 가동성 같은것)은 언제나 쉽게 증명할수 있다.

또는 사람들은 가치의 류통에서 나오는 경제상의 형태규정성을 물리적속성과 혼동한다. 마치도 그자체로서는 결코 자본이 아니고 일정한 사회적관계에서만 자본으로 되는 물건이 **그자체로서** 천성적으로 고정자본이든가 류동자본이든가 하는 일정한 형태의 자본인것처럼 혼동한다. 우리가 제1권 제5장에서 본바와 같이[49] 생산수단은 로동과정이 어떠한 사회적조건하에서 진행되든간에 어떤 로동과정에서나 로동수단과 로동대상으로 나뉘여진다. 그러나 이 량자는 오직 자본주의적생산방식내부에서만 비로소 자본으로 되며 그것도 전편에서 규정된바와 같은 《생산자본》으로 된다: 그와 동시에 로동과정의 성격에 기초한 로동수단과 로동대상과의 차이가 고정자본과 류동자본과의 차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반영된다. 이것에 의하여 비로소 로동수단으로서 기능하는 물건이 고정자본으로 된다. 만약 그 물건이 그 소재적속성들에 의하여 로동수단의 기능이외의 제 기능으로도 복무할수 있다면 그것은 그 기능의 차이에 따라서 고정자본으로 되거나 고정자본이 아니게 된다. 가축은 역축으로서는 고정자본이며 비육가축으로서는 나중에 생산물로서 류통에 들어가는 원료이며 따라서 고정자본이 아니라 류동자본이다.

어떤 생산수단이 반복되는 로동과정, 그러나 서로 관련

되고 련속되며 따라서 하나의 생산기간—즉 생산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생산시간—을 형성하는 로동과정에 비교적 장기간 고정되여있는것만으로써도 고정자본과 마찬가지로 자본가로 하여금 길거나 짧은 기간의 선대를 필요로 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써는 그의 자본을 고정자본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례컨대 종자는 고정자본이 아니라 약 1년간 생산과정에 고정되여있는 원료일따름이다. 모든 자본은 생산자본으로서 기능하는 동안은 생산과정에 고정되여있으며 따라서 생산자본의 모든 요소는 그 소재적모습, 그 기능, 그 가치의 류통방식이 어떠하든간에 역시 생산과정에 고정되여있다. 이렇게 고정되여있는것은 생산과정의 종류나 소기의 유용효과가 다름에 따라 시간적으로는 길수도 있고 짧을수도 있는데 그 길고 짧은데 의하여 고정자본과 류동자본간의 차이는 생기지 않는다.(20)

일반적인 로동조건을 포함하는 로동수단의 일부분은 로동수단으로서 생산과정에 들어갈 때나 또는 생산적기능을 위하여 준비될 때에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다. 례컨대 기계가 그러하다. 혹은 또 처음부터 이렇게 고정적인 그 장소에 얽매인 형태로 생산되기도 한다. 례컨대 토지개량, 공장건물, 용광로, 운하, 철도 등이 그러하다. 로동수단이 그 기능하여야 할 생산과정에 지속적으로 얽매여있는것은 이 경우에는 동시에 그 감각적인 존재방식에 의하여 필연적인것으로 된다. 다른 한편 어떤 로동수단은 물체적으로 부단히 장소를 변경하고 운동하면서 부단히 생산과정에 존재할수도 있다. 기관차, 선박, 역축 등이 그러하다. 전자의 경우에 부동성이

---

(20) 고정자본과 류동자본을 규정하는것이 곤난하기때문에 로렌쯔 슈타인씨는 이 구별은 다만 설명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한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로동수단에 고정자본의 성격을 부여하는것도 아니며 후자의 경우에 가동성이 로동수단으로부터 이 성격을 박탈하는것도 아니다. 그러나 로동수단들이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고 그 뿌리를 땅속에 튼튼히 박고있다는 사실은 고정자본이 이 부분으로 하여금 국민경제에서 독특한 역할을 하게 한다. 그것은 외국으로 운송될수도 없으며 상품으로서 세계시장에서 류통할수도 없다. 이 고정자본의 소유권은 명의를 바꿀수 있으며 이 고정자본은 매매될수 있으며 그런 한에 있어서는 그것은 관념적으로 류통할수 있다. 그리고 이 소유권은 례컨대 주식이라는 형태로 지어 외국시장에서 류통할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고정자본의 소유자인 사람들이 교체되는데 의하여서는 일정한 나라에 있는 부의 부동적이고 물질적으로 고정된 부분과 가동적인 부분과의 비률은 변경되지 않는다.(21)

고정자본의 독특한 류통으로부터 독특한 회전이 나온다. 현물형태로서의 고정자본의 소모로 말미암아 상실하는 가치부분은 생산물의 가치부분으로서 류통한다. 생산물은 그 류통에 의하여 상품으로부터 화폐로 전화되며 따라서 생산물에 의하여 류통되는 로동수단의 가치부분도 화폐로 전화되는데 그것도 이 로동수단이 생산과정에서의 가치의 담당자가 아니게 되는것과 같은 비률로 그 가치는 류통과정에서 화폐로서 한방울씩 떨어진다. 따라서 로동수단의 가치는 이제는 이중적존재를 얻게 된다. 그 일부분은 생산과정에 속하고있는 로동수단의 사용형태 또는 현물형태에 구속된채로 남으며 다른 부분은 화폐로 되여 이 형태로부터 분리된다. 로동수단이 이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그 가치중 현물형태로 존재하는 부분은

(21) 이상은 제4고에서. 이하는 제2고에서.

부단히 감소되는데 화폐형태로 전환되는 부분은 부단히 증가되며 나중에 이 로동수단이 그 생애를 마치고 그 전체 가치가 그 시체로부터 분리되여 화폐로 전화되고만다. 이 점에서 생산자본의 이 요소의 회전상의 특징이 나타난다. 이 요소의 가치의 화폐로의 전화는 그 가치의 담당자인 상품의 화폐화와 동시에 진행된다. 그러나 화폐형태로부터 사용형태로의 이 요소의 재전화는 기타의 생산요소로의 상품의 재전화로부터 분리되며 오히려 로동수단자체의 재생산주기, 즉 로동수단이 소모되여 같은 종류의 신품에 의하여 교체되지 않으면 안되는 시간에 의하여 규정되여있다. 가령 10,000파운드라는 가치의 어떤 기계의 기능기간이 례컨대 10년이라면 이 기계를 위하여 처음에 선대된 가치의 회전기간은 10년이다. 이 기간이 경과하기전에는 이 기계는 갱신될 필요가 없으며 그 현물형태로서 작용을 계속한다. 이 기간에 이 기계의 가치는 계속 그 기계에 의하여 생산되는 상품의 가치부분으로서 일부분씩 류통하며 이리하여 점차 화폐로 전환되여가며 나중에 10년이 경과하면 그 가치가 전부 화폐로 전화하여 다시 화폐로부터 기계로 재전화하며 이리하여 그 회전을 끝마친다. 이 재생산기간이 시작될 때까지 기계의 가치는 우선 점차 화폐준비금의 형태로 축적되여간다.

생산자본의 다른 요소들은 일부분은 보조재료 및 원료의 형태로 존재하는 불변자본요소들로써 이루어지고 일부분은 로동력에 투하된 가변자본으로써 이루어진다.

로동과정과 가치증식과정의 분석(제1권 제5장)이 보여준 바와 같이 이러한 각이한 구성부분들은 생산물형성자 및 가치형성자로서 전혀 다른 관계에 있다. 불변자본중 보조재료와 원료로 이루어지는 부분의 가치는 로동수단으로 이루어지

는 부분의 가치와 꼭 마찬가지로 순전히 이전된 가치로서 생산물의 가치로 다시 나타나는데 로동력은 로동과정을 통하여 그 가치의 등가를 생산물에 첨가한다. 바꾸어말하면 자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재생산한다. 그리고 보조재료의 일부분 례컨대 연료용석탄, 조명용가스 등등은 소재로서 생산물에 들어가지 않고 로동과정에서 소비되는데 그의 다른 부분은 물체로서 생산물에 들어가며 생산물실체의 재료로 된다. 그러나 이 모든 차이는 류통에는, 따라서 또 회전방식에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 다만 보조재료와 원료가 그 생산물형성에 있어서 전부 소비되는 한에 있어서는 그것들은 그의 전체 가치를 생산물로 이전한다. 그렇기때문에 그 가치는 생산물에 의하여 전부 류통되며 화폐로 전화되고 화폐로부터 상품의 생산요소들로 재전화된다. 그의 회전은 고정자본의 회전과 같이 중단되지 않고 부단히 그의 여러가지 형태의 전체 순환을 통과하며 따라서 생산자본의 이 요소들은 부단히 현물로 갱신된다.

생산자본중 로동력에 투하되는 가변적구성부분에 관하여 말한다면 로동력은 일정한 시간에 한하여 구매된다. 자본가가 로동력을 구매하여 생산과정에 합체시키면 그것은 그의 자본의 한 구성부분을 이루며 자본의 가변적구성부분을 이룬다. 로동력은 매일 일정한 시간동안 작용하며 그 동안에 그것은 그 일가치 전부뿐만아니라 또한 그것을 넘는 잉여가치—이것은 여기에서는 당분간 무시한다.—를 생산물에 첨가한다. 로동력이 례컨대 1주일간에 한하여 구매되여 작용한 다음에는 그 구매는 관습적인 기간을 두고 부단히 갱신되지 않으면 안된다. 련속적인 생산의 순환이 중단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는 로동력이 기능하는 동안에 생산물에 첨가되여 생

산물의 류통과 함께 화폐로 전화되는 로동력의 가치의 등가는 부단히 화폐로부터 로동력으로 재전화되지 않으면 안되며 또는 부단히 그 제 형태의 완전한 순환을 그리지 않으면 안된다. 즉 회전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생산자본의 가치중 로동력에 선대된 부분은 그 전체가 생산물로 넘어가며(여기에서는 계속 잉여가치는 무시한다.) 류통분야에 속하는 두개의 형태변화를 생산물과 함께 경과하며 이 부단한 갱신에 의하여 언제나 생산과정에 합체된다. 그렇기때문에 로동력이 다른 점에서는, 즉 가치형성에 관하여서는 **고정**자본을 형성하지 **않는** 불변자본구성부분들과 아무리 다르다 하더라도 로동력가치의 이러한 회전방식은 이러한 구성부분들과 공통하며 고정자본과 대립한다. 생산자본의 이러한 구성부분들—생산자본가치중 로동력에 투하된 부분과 고정자본을 이루지 않는 생산수단에 투하된 부분—은 그것들에 공통한 회전의 성격에 의하여 **류동**자본으로서 고정자본과 대립한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50] 자본가가 로동력의 사용의 대가로 로동자에게 지불하는 화폐는 실제는 다만 로동자의 필요생활수단의 일반적등가형태에 불과하다. 이러한 한에 있어서는 가변자본은 소재적으로는 생활수단으로서 구성된다. 그러나 회전이 고찰되는 여기에서는 문제는 형태에 있다. 자본가가 구매하는것은 로동자의 생활수단이 아니라 로동자의 로동력 자체이다. 그의 자본의 가변부분을 이루는것은 로동자의 생활수단이 아니라 로동자가 역할을 발휘하는 로동력이다. 자본가가 로동과정에서 생산적으로 소비하는것은 로동력자체이고 로동자의 생활수단은 아니다. 로동자자신이 자기 로동력의 대가로 받은 화폐를 생활수단으로 전환시키고 다시 그것

을 로동력으로 재전화시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이것은 례컨대 자본가가 화폐와 교환하기 위하여 파는 상품의 잉여가치의 일부분을 자기자신의 생활수단으로 전화한다고 하여 사람들이 그의 상품의 구매자가 그에게 생활수단으로써 지불한다고 말할수 없는것과 같은것이다. 로동자의 임금의 일부분이 로동자에게 생활수단으로써, 즉 현물로써 지불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은 오늘날의 제2의 거래이다. 로동자는 자기의 로동력을 일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것이며 이 경우에는 그는 이 가격의 일부분을 생활수단으로써 받는다는것이 협정되는것이다. 이것은 다만 지불형태를 변경시킬따름이며 로동자가 현실적으로 판매하는것이 그의 로동력이라는것을 변경하는것은 아니다. 이것은 제2의 거래이며 이 거래는 이미 로동자와 자본가간에 진행되는것이 아니라 상품구매자로서의 로동자와 상품판매자로서의 자본가간에 진행되는것이다. 그런데 제1의 거래에서는 로동자가 상품(자기의 로동력)의 판매자이고 자본가가 그 구매자이다. 제2거래는 자본가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례컨대 자기가 제철소에 파는 기계를 철로 보상받는것과 같은것이다. 따라서 고정자본에 대립하는 류동자본이라는 규정성을 받는것은 로동자의 생활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로동자의 로동력도 아니다. 그런것이 아니라 생산자본의 가치중 로동력에 투하된 부분이 그 회전형태에 의하여 불변자본부분중 일부 구성부분과는 공통적으로 그리고 다른 부분들과는 대립하여 이 성격을 얻는다.

류동자본—로동력과 생산수단의 형태에서의—의 가치가 선대되는것은 다만 고정자본의 크기에 의하여 규정되는 생산규모에 대응하여 생산물이 완성되는 기간에 있어서만이다. 이 가치는 전부 생산물로 들어가며 따라서 생산물의 판매에

의하여 전부가 다시 류통으로부터 돌아오며 또다시 선대될수 있다. 자본의 류동적구성부분의 존재형태인 로동력과 생산수단은 완성생산물의 형성과 판매에 필요한 범위에서 류통으로부터 끌려나오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부단히 재구매에 의하여, 즉 화폐형태로부터 생산요소에로의 재전화에 의하여 보충되며 갱신되여야 한다. 그것들이 한번에 시장으로부터 끌려나오는 량은 고정자본의 제 요소보다는 적지만 그러나 그만큼 더 빈번히 시장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끌려나오지 않으면 안되며 그것들에 투하되는 자본의 선대는 보다 짧은 기간에 갱신되는것이다. 이 부단한 갱신은 류동자본의 제 요소의 전체 가치를 류통시키는 생산물의 부단한 매매에 의하여 매개된다. 끝으로 그 요소들은 그것들의 가치에서뿐만아니라 그것들의 소재적형태에서도 부단히 형태변화의 전체 순환을 진행하고있다. 그것들은 부단히 상품으로부터 동일한 상품의 생산요소로 재전화된다.

로동력은 그자체의 가치와 함께 부지불로동의 화신인 잉여가치를 부단히 생산물에 첨가한다. 따라서 이 잉여가치도 완성생산물의 기타의 가치요소들과 마찬가지로 부단히 완성생산물에 의하여 류통되고 화폐로 전화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선 문제로 되는것은 자본가치의 회전이고 자본가치와 동시에 회전하는 잉여가치의 회전이 아니므로 이 후자는 당분간 제쳐놓기로 한다.

이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1) 고정자본과 류동자본이라는 형태의 규정성은 다만 생산과정에서 기능하는 자본가치 또는 **생산자본**의 회전상 차이에서만 나온다. 이 회전상 차이는 이번에는 생산자본의 각이한 구성부분들이 생산물에 자기의 가치를 이전하는 각이한

방식에서 나오는것이고 그 구성부분들이 생산물가치의 생산에 참여하는 방식의 차이 또는 가치증식과정에서의 그것들의 역할의 특성에서 나오는것은 아니다. 끝으로 생산물에 가치를 넘겨주는 방식의 차이는—따라서 또 이 가치가 생산물에 의하여 류통되며 생산물의 형태변화에 의하여 그의 최초의 현물형태로 갱신되는 방식의 차이도—생산자본이 취하는 여러가지 소재적형태의 차이에서, 즉 그 소재적모습의 일부분은 개개의 생산물의 형성중에 전부 소비되며 다른 부분은 점차적으로만 소비된다는 차이에서 나온다. 따라서 생산자본만이 고정자본과 류동자본으로 나뉘울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이러한 대립은 산업자본의 다른 두 존재방식에 있어서는, 따라서 상품자본에 있어서도 화폐자본에 있어서도 존재하지 않으며 또 생산자본에 대한 이 두 자본의 대립으로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대립은 다만 **생산자본에 있어서 그리고 오직 생산자본내에서** 존재할뿐이다. 화폐자본과 상품자본은 자본으로서 얼마나 잘 기능하며 얼마나 류동적으로 류통한다 하더라도 오직 그것들이 생산자본의 류동적인 구성부분으로 전화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것들이 고정자본에 대립하는 류동자본으로 될수 있다. 그런데 이 두 자본형태가 류통분야에 존재하기때문에 우리가 후에 보게 되는바와 같이 A. 스미스이래의 경제학은 이에 유혹되여 이 두 자본형태를 류동자본이라는 범주하에 생산자본의 류동적부분과 한데 뒤섞어놓았다. 사실상 이 두 자본형태는 생산자본에 대립하는 류통자본이지만 그러나 고정자본에 대립하는 류동자본은 아니다.

2) 자본의 고정적구성부분의 회전, 따라서 또 그에 필요한 회전기간은 자본의 류동적구성부분의 몇개 회전을 포괄한다. 고정자본이 회전하는 시간에 류동자본은 여러번 회전한

다. 생산자본의 가치구성부분의 하나가 고정자본이라는 형태규정을 얻는것은 그 가치구성부분이 존재하는 생산수단이, 생산물이 완성되여 상품으로서 생산과정으로부터 나가기까지의 기간에 전적으로 소모되지 않는 한에서이다. 이러한 자본구성부분의 가치의 일부분은 다른 일부분이 완성생산물에 의하여 류통되고있을 때에도 종래의 사용형태에 구속된채로 남아있어야 하는데 이와 반대로 이 완성생산물의 류통은 동시에 자본의 류동적구성부분의 총가치를 류통시킨다.

3) 생산자본의 가치중 고정자본에 투하된 부분은 생산수단중 고정자본을 구성하는 부분이 기능하는 전 기간을 위하여 전부 한꺼번에 선대된다. 따라서 이 가치는 자본가에 의하여 한꺼번에 류통에 투입된다. 그러나 그것은 고정자본에 의하여 상품에 일부분씩 첨가되는 가치부분의 실현을 통하여 일부분씩 그리고 점차적으로만 류통으로부터 다시 끌려나온다. 다른 한편 생산자본의 한 구성부분이 고정되여있는 생산수단자체는 류통으로부터 한꺼번에 끌려나와 그것이 기능하는 전 기간에 걸쳐서 생산과정에 합체되지만 그러나 이 기간내에는 동종의 신품에 의한 보상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재생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류통에 투입되는 상품의 형성을 위하여 길거나 짧은 기간 계속 복무하지만 그자신은 자기의 갱신을 위한 제 요소를 류통으로부터 끌어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기간내에는 그것들은 자본가측으로부터의 선대의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끝으로 고정자본에 투하된 자본가치는 그 가치를 존재하게 하는 생산수단의 기능이 계속되는 동안 그의 제 형태의 순환을 통과하는데 소재적으로가 아니라 그 가치에 있어서만이며 또한 일부분씩 점차적으로만 통과할뿐이다. 즉 고정자본의 가치의 일부분은 상품

의 가치부분으로서 부단히 류통하여 화폐로 전화되지만 화폐로부터 그의 최초의 현물형태로 재전화함이 없이 그것을 계속한다. 생산수단의 현물형태로의 화폐의 이 재전화는 생산수단의 기능기간의 종말에, 즉 생산수단이 완전히 소모되였을 때에 비로소 일어난다.

4) 류동자본의 제 요소도 고정자본의 제 요소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생산과정에—이것이 련속적으로 되기 위하여—고정되여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고정된 류동자본의 제 요소는 부단히 현물형태로 갱신된다(생산수단은 동종의 신품에 의하여, 로동력은 부단히 갱신되는 구매에 의하여.). 그런데 고정자본의 제 요소는 그것이 존재하는 전체 기간에는 그자체가 갱신되지도 않으며 그 구매가 갱신될 필요도 없다. 생산과정에는 부단히 원료와 보조재료가 있으나 그러나 낡은것이 완성생산물의 형성에 소비된 다음에 항상 동종의 신품이 있다. 로동력도 역시 생산과정에는 부단히 존재하나 그러나 로동력의 구매의 부단한 갱신에 의하여서만 또 종종 인원의 교체를 수반하면서 존재한다. 이와는 반대로 동일한 건물, 기계 등등은 류동자본의 회전이 몇번이고 반복되는 동안 동일한 생산과정에서 기능을 계속한다.

2. 고정자본의 구성부분, 보상, 수리, 축적

동일한 자본투하에 있어서도 고정자본의 개개의 요소들의 수명은 각이하며 따라서 또 회전기간도 각이하다. 례컨대 철도에서는 레루, 침목, 토목공사, 정거장건물, 교량, 턴넬, 기관차와 차량의 기능기간과 재생산기간은 각이하며 따라서

또 그것들에 선대된 자본의 회전기간도 각이하다. 건물, 플랫폼, 급수탑, 구름다리, 턴넬, 파서 뚫은 길, 둑 등 요컨대 영국의 철도에서 기술시설이라고 부르는것은 모두 다년간에 걸쳐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일 마멸되기 쉬운것은 궤도와 차량이다.

현대적철도가 부설되던 시초에는 가장 우수한 기사들이 가지고있던 지배적의견에는 철도의 수명은 1세기이며 레루의 마멸은 재정적 및 실제적 측면에서는 무시하여도 좋으리만치 눈에 뜨이지 않는것이라는것이였다. 좋은 레루의 수명은 100년 내지 150년이라고 간주되였다. 그러나 얼마 안가서 레루의 수명—이것은 물론 기관차의 속도, 렬차의 중량과 차수, 레루 자체의 두께 및 기타 많은 부차적사정에 의존한다—은 평균 20년을 넘지 못한다는것이 알려졌다. 개별적정거장과 큰 교통 중심에서는 레루가 지어 매년 마멸되기도 하였다. 1867년경부터 강제레루가 채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철제레루보다 비용이 거의 두배나 들었으나 그대신 수명이 2배이상 길었다. 침목의 수명은 12~15년이였다. 차량에 있어서는 객차의 마멸보다 화차의 마멸이 훨씬 더 크다는것이 알려졌다. 기관차의 수명은 1867년에는 10~12년으로 계산되였다.

마멸은 첫째로, 사용 그자체에 의하여 생긴다. 일반적으로 레루는 렬차수에 비례하여 마멸한다(R. C. 제17645호).(22) 속도가 높아지면 마멸은 속도의 증가률의 자승보다도 높은 비률로 증대하였다. 즉 렬차의 속도가 2배로 되면 마멸은 4배 이상 커졌다(R. C 제17046호).

---

(22) R. C라는 기호가 붙은 인용문은 《칙명철도위원회. 위원회에서의 증언기록. 량원에 제출》(1867년 런던판)에서 취한것이다.—문답에는 번호가 붙어있으며 여기에서 쓰고있는것은 그 번호이다.

그 다음, 마멸은 자연력의 영향에 의하여 생긴다. 례컨대 침목은 현실적인 마멸에 의하여서뿐만아니라 부식에 의하여서도 상한다.

《철도의 유지비는 철도교통에 수반하는 마멸보다도 오히려 대기속에 로출되여있는 목재, 철, 벽돌, 석대 등의 질에 의하여 좌우된다. 단 1개월동안의 엄동이 온 1년동안의 철도교통보다 더 많은 손해를 로반에 줄것이다.》(R. P. 윌리엄즈 《철도로반의 유지에 관하여 토목기사협회에서의 보고》 1867년 가을.)[51]

끝으로 대공업에서는 어디서나 그러하듯이 여기에서도 무형적마멸이 역시 그 역할을 논다. 종전에는 40,000파운드가 들었던 동일한 수의 차량과 기관차가 10년이 지나서는 보통 30,000파운드로 살수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재료에 대하여 비록 사용가치는 조금도 감소되지 않더라도 시장가격의 25%의 감가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드너 《철도경제》 [120페지])

《관형교량은 오늘의 형태로는 갱신되지 않을것이다.》

(그것은 오늘에는 이러한 종류의 교량에 더 좋은 형태가 있기때문이다.)

《일상적인 수리, 개개의 부분의 제거와 교체는 실용적이 아닐것이다.》(W. P. 애덤즈 《도로와 레루》 런던, 1862년 [136페지])

로동수단은 대부분 산업의 진보에 의하여 부단히 변혁한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원래의 형태대로 보상되지 않고 변혁된 형태로 보상된다. 한편으로는 대량의 고정자본이 일정한 현물형태로 투하되여있어서 그 형태대로 일정한 평균수명을 지속해내야만 한다는 사정은 새로운 기계 등등이 점차적으로

밖에 채용되지 않는 원인으로 되며 따라서 개량된 로동수단의 급속하고 일반적인 채용을 방해하는 하나의 장애로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전이 특히 결정적인 변혁의 시기에 낡은 로동수단을 자연사의 시기에 도달하기전에 새로운 로동수단으로써 교체하지 않을수 없게 한다. 이와 같이 기업설비를 큰 사회적규모에서 조기갱신할것을 강요하는것은 주로 재해와 공황이다.

마멸(무형적마멸은 도외시하고)이란 고정자본이 그의 소모에 의하여 그 사용가치를 상실하는 평균정도에 비례하여 점차적으로 생산물에 넘겨주는 가치부분이다.

이 마멸은 부분적으로는 고정자본이 일정한 평균수명을 가지게끔 진행된다. 고정자본은 이 기간을 위하여 전부 선대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전부 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산 로동수단, 례컨대 말에 있어서는 재생산기간은 자연자체에 의하여 규정되여있다. 로동수단으로서의 그것들의 평균수명은 자연법칙에 의하여 규정되여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마멸된것이 새것에 의하여 교체되지 않으면 안된다. 한필의 말은 조금씩 교체할수 없으며 다른 한필의 말과 교체될수밖에 없다.

고정자본의 다른 요소들은 주기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갱신될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부분적 또는 주기적 보상과 기업경영의 점차적확대와를 구별하여야 한다.

고정자본의 일부분은 동종의 구성부분들로써 구성된다. 그러나 이 구성부분의 존속기간은 동등하지 않으며 각이한 기간을 두고 일부분씩 갱신된다. 례컨대 정거장의 레루는 다른 로반의 레루보다 더 자주 갱신되지 않으면 안된다. 침목도 마찬가지이다. 50년대의 벨지끄의 철도에서는 라드너에 의하면 매년 침목의 8%가 갱신되였으며 따라서 12년동안에

전부 갱신되였다.[52]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태는 다음과 같이 된다. 즉 어떤 금액이 례컨대 10년간 일정한 종류의 고정자본으로서 선대된다. 이 투자는 한번에 실시된다. 그러나 이 고정자본의 일정한 부분, 즉 그 가치가 생산물의 가치속에 들어가서 생산물과 함께 화폐로 전환되여있는 부분은 매년 현물로 보상되는데 다른 부분은 그 최초의 현물형태대로 존재한다. 이 자본을 고정자본으로서 류동자본과 구별되게 하는것은 그것이 한번에 투하된다는것과 일부분씩으로만 현물형태로 재생산된다는것이다.

고정자본의 다른 부분은 같지 않은 구성부분들로 구성되는데 그것들은 부동한 기간에 소모되며 따라서 부동한 기간에 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기계의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고정자본의 각이한 구성부분의 각이한 수명에 관하여 우에서 말한것은 이 경우에 이 고정자본의 부분으로서 나타나는 동일한 기계의 부동한 구성부분들의 수명에 대하여서도 적용된다.

부분적인 갱신의 진행중에 기업이 점차적으로 확장되는 경우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것을 지적한다. 우리가 본바와 같이 고정자본은 현물형태로 생산과정에서 계속 작용한다 하더라도 그 가치의 일부분은 평균적마멸도에 따라 생산물과 함께 류통하며 화폐로 전화되여있으며 그것이 현물형태로 재생산될 때까지의 기간에는 자본을 보상하기 위한 화폐준비금의 요소를 이룬다. 고정자본의 가치중 이와 같이 화폐로 전화된 부분은 기업을 확장하거나 기계를 개량하여 그 효력을 증가시키는데 복무할수 있다. 그리하여 장기간 또는 단기간에 재생산이 진행되는데 그것도 사회적관점에서 보면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이 진행된다. 그것은 생산장소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외연적으로 되고 생산수단의 효과가 높아지는 경우

에는 내포적으로 된다. 확대된 규모에서의 이 재생산은 축적—잉여가치의 자본으로의 전화—에서 생기는것이 아니라 고정자본의 본체로부터 갈라져서 화폐형태로 분리된 가치가 새로운 추가적인 또는 적어도 더욱 효과적인 동종의 고정자본으로 재전화하는데서 생긴다. 어느 정도로 또 어떠한 범위에서 기업경영이 이러한 점차적인 추가를 할수 있는가, 따라서 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재투자하기 위하여 어떠한 규모에서 준비금이 축적되지 않으면 안되는가 또 어떠한 기간에 이 투자가 진행될수 있느냐 하는것은 물론 부분적으로는 그 기업경영의 독특한 성격에 의존한다. 다른 한편 어느 정도로 현존 기계의 세부적인 개량이 진행될수 있는가 하는것은 물론 개량의 성질과 기계자체의 구조에 의존한다. 그런데 레컨대 철도부설에 있어서 이 점에 대해 처음부터 얼마나 고려하였는가 하는것은 애덤즈에 의해 다음과 같이 증명되고있다.

《전체 구조는 벌집구조의 원리—무한한 확장의 가능성—에 좇아야 한다. 너무나 견고하고 처음부터 균형이 잡힌 구조는 좋지 않으므로 확장의 경우에 마스지 않으면 안된다.》(123페지)

이것은 대부분은 리용할수 있는 공간에 의존한다. 어떤 건물은 우에다 몇층 더 증축할수 있으며 다른 건물은 측면확장이 필요하며 따라서 더 넓은 지면이 필요하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부에서는 한편으로는 많은 자재가 랑비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을 점차적으로 확장하는 경우에 이러한 종류의 많은 비합목적적인 측면확장(일부는 로동력에 대하여 유해하게)이 실시된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는 무슨 일이나 다 사회적계획에 의하여 진행되는것이 아니라 개개의 자본가의 기업활동에 있어서의 천차만별한 환경과 자재 등등에 의존하

기때문이다. 이로부터 생산력의 거대한 랑비가 생긴다.

이와 같이 준비금(즉 고정자본중 화폐로 재전화된 부분)을 조금씩 재투하하는것은 농업에서 가장 하기 쉽다. 공간적으로 주어진 생산장소가 여기에서는 최대의 점차적인 자본흡수력을 가지고있는것이다. 축산에서와 같이 자연적재생산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고정자본은 특수한 유지비를 필요로 한다. 고정자본의 유지는 부분적으로는 로동과정자체에 의거한다. 고정자본은 로동과정에서 기능하지 않으면 손상을 입게 된다(제1권 제6장 196페지 및 제13장 423페지[53] 기계의 불사용에 의하여 생기는 마멸을 보라.). 그러므로 영국의 법률도 임대한 토지가 나라의 관습대로 경작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문으로 이것을 토지훼손으로 간주하고있다(법정변호사 W. A. 호울즈워스 《지주 및 차지인법》 런던, 1857년, 96페지.). 이와 같이 로동과정에서의 사용에 의하여 생기는 보존은 산로동의 무보수의 천연적선물이다. 더구나 로동의 보존력은 이중적성격을 띤다. 한편으로는 로동은 로동재료의 가치를 생산물에 이전하는데 의하여 이 가치를 보존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로동은 로동수단의 가치를 생산물에 이전하지 않는 한에서, 생산과정에서의 로동수단의 작용을 통하여 그 사용가치를 보존함으로써 그것들의 가치를 보존하는것이다.

그러나 고정자본은 그 유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로동투하도 요구한다. 기계는 수시로 소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 말하는것은 그것이 없이는 기계가 사용될수 없게 되는 추가로동이며 생산과정과 분리될수 없는 자연력의 유해로운 영향을 단순히 방지하기 위한것이며 따라서 기계를 문자그대로의 의미에서 작업할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것이다.

고정자본의 표준수명은 두말할것도 없이 그 고정자본이 이 기간내에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제 조건이 충족된다는것을 전제로 하여 계산되는데 그것은 마치도 안간이 평균 30년 산다고 할 경우에는 그가 목욕도 한다는것을 고려하는것과 전혀 마찬가지이다. 또 여기에서 말하는것은 기계에 포함되여있는 로동의 보상이 아니라 기계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게 되는 부단한 추가로동이다. 그것은 기계가 수행하는 로동이 아니라 기계에 가해지는 로동이며 이 로동에서는 기계는 생산당사자가 아니라 원료이다. 이 로동에 투하되는 자본은 생산물의 원천으로 되는 본래의 로동과정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류동자본에 속한다. 이 로동은 생산이 진행되는 동안 부단히 지출되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그 가치도 부단히 생산물의 가치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로동에 투하되는 자본은 류동자본중 일반적인 잡비의 지불에 돌려지고 년간의 평균계산에 따라 가치생산물에 분배되여야 하는 부분에 속한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54] 고유한 의미에서의 공업에서는 이러한 청소로동은 로동자들에 의하여 휴식시간에 무상으로 진행되며 또 바로 그렇기때문에 흔히 생산과정자체의 시간내에 수행되며 거기서는 이 로동이 대부분 재해의 근원으로 되는것이다. 이 로동은 생산물의 가격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비자는 이 로동을 무상으로 얻는다. 한편 자본가는 이리하여 자기 기계의 유지비를 절약하게 된다. 이러한 비용은 로동자 자신이 스스로 지불하는데 이것은 자본의 자기 유지의 비밀의 하나로 되며 이러한 자기 유지의 비밀은 사실상 기계에 대한 로동자의 법률적요구권을 형성하며 심지어 로동자를 자산계급의 법적견지에서도 기계의 공동소유자로 되게 한다. 그러나 례컨대 기관차의 경우와 같이

기계를 청소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생산과정에서 떼내는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청소가 남몰래 진행될수 없는 여러가지 생산부문들에서는 이 유지로동은 경상비로 계산되며 따라서 류동자본의 요소로서 계산된다. 기관차는 기껏해야 3일만 작업하면 차고에 넣어서 청소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관이 손상되지 않게 청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을 랭각시키지 않으면 안된다(R. C. 제17823호).

본래의 수리 또는 보수작업은 자본과 로동의 투하를 필요로 한다. 이런 자본과 로동은 최초의 선대자본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또 고정자본의 점차적인 가치보상에 의하여서는 언제든지 반드시 보상되거나 변상될수 있는것은 아니다. 례컨대 고정자본의 가치가 10,000파운드이고 그 전체의 수명이 10년이라면 10년후에 전부 화폐로 전화된 이 10,000파운드는 최초의 투하자본의 가치만은 보상하나 그동안에 수리에 새로 추가된 자본이나 로동은 보상하지 않는다. 이 추가자본은 한꺼번에 선대되는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선대되는 추가적가치구성부분이며 그 각이한 선대기간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연적이다. 이렇게 사후에 로동수단과 로동력에 대하여 추가적자본을 조금씩 투하하는것은 모든 고정자본에 필요한것이다.

기계 등등의 개개의 부분들이 입는 손상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연적이며 따라서 그때문에 필요하게 되는 수리도 우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가지 수리중에서 다소간 고정적인 성격을 가지며 고정자본의 생애의 각이한 시기에 진행되는 두 종류의 수리로동이 갈라져나온다. 즉 유년기의 고장과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중년기를 넘어서의 고장이 그것이다. 례컨대 어떤 기계가 아무리 완전한 구조를 가진것이라도

생산과정에 들어가서는 실지 사용에서 결함이 나타나는데 이 결함은 그후의 로동에 의하여 시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다른 한편 기계가 그 중년기를 넘어서면 설수록, 따라서 그 정상적인 마멸이 루적되여 그 구성재료가 소모되고 로쇠하여지면 질수록 기계를 그 평균수명이 끝날 때까지 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수리로동은 더욱 빈번해지며 더욱 중요하게 된다. 이것은 마치도 로인이 이른 죽음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혈기왕성한 청년보다 더 많은 의약비를 필요로 하는것과 같을것이다. 따라서 수리로동은 그 우연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고정자본의 생애의 여러 시기에 불균등하게 분배된다.

이 점에서도, 또한 기계수리로동의 기타 방면의 우연적인 성격에서도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한편으로는 수리로동을 위한 로동력과 로동수단의 현실적지출은 이 수리를 필요하게 한 사정자체와 마찬가지로 우연적이다. 필요한 수리의 규모는 고정자본의 생애의 여러 시기에 불균등하게 분배된다. 다른 한편 고정자본의 평균수명을 어림잡는데 있어서는 일부는 청소(여기에는 장소의 청소도 포함된다.)에 의하여, 일부는 필요할 때마다의 수리에 의하여 언제나 고정자본이 활동할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것이 가정된다. 고정자본의 마멸에 의한 가치이전은 그 평균수명에 기초하여 계산되고있지만 이 평균수명자체는 정비에 필요한 추가자본이 부단히 선대된다는것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다른 한편 자본과 로동의 이 추가지출로 말미암아 첨가되는 가치는 그 현실적인 지출과 동시에 상품가격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것도 마찬가지로 분명하다. 례컨대 방적업자는 이번 주에 치륜이 마사졌다든가 피대가 끊어졌다는 리유로 자기의 방사를 전번주보다 비싸게 팔수는 없다. 이와 같은

개별적공장에서의 사고에 의해서는 방적업의 일반적비용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모든 가치규정이 그러한것처럼 여기서도 평균이 규정하는것이다. 어떤 일정한 생산부문에 투하된 고정자본의 평균수명중에 일어나는 이러한 사고와 필요한 보수작업의 평균적크기는 경험에 의하여 알수 있다. 이 평균지출은 평균수명의 전 기간에 분배되며 그에 해당한 부분에 분할되여 생산물가격에 첨가되며 따라서 생산물의 판매에 의하여 보상된다.

이와 같이 보상되는 추가자본은 투하의 방식은 불규칙적이지만 류동자본에 속한다. 기계의 고장을 그때그때 즉시 수리하는것이 극히 중요하기때문에 비교적 큰 공장마다 그 본래의 공장로동자들외에 기사, 목공, 기계공, 철물공 등등의 인원들을 고용한다. 그들의 임금은 가변자본의 일부분을 이루며 그들의 로동의 가치는 생산물에 분배된다. 다른 한편 생산수단을 위하여 필요한 지출은 실제로 불규칙적인 기간에 선대되며 따라서 또 불규칙적인 기간에 생산물 또는 고정자본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평균계산에 의하여 규정되며 이 계산에 따라 부단히 생산물의 가치부분에 들어간다. 본래의 수리에 투하되는 이 자본은 많은 점에서 독특한 종류에 자본을 이루는데 그것은 류동자본에도 넣을수 없고 고정자본에도 넣을수 없지만 그러나 경상지출에 속하는것으로서 류동자본에 넣는것이 더 적절할것이다.

부기의 방식은 물론 기장되는 사물의 현실적관련을 조금도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수리비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고정자본의 현실적마멸과 합쳐서 계산하는것이 많은 생산부문들에서의 습관으로 되여있다는것을 말하여두는것은 중요하다. 선대고정자본을 10,000파운드라 하고 수명을 15년이라고

하면 매년의 마멸은 $666\frac{2}{3}$ 파운드이다. 그런데 마멸은 10년에 대하여만 계산된다. 즉 생산되는 상품의 가격에 고정자본의 마멸분으로서 매년 첨가되는것은 $666\frac{2}{3}$ 가 아니라 1,000 파운드이다. 즉 $333\frac{1}{3}$ 파운드가 수리로동 등을 위하여 보류되는것이다(10이나 15라는 수자는 모두 례로서 든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고정자본이 15년 존속하기 위하여서는 평균 그만큼한 금액이 수리에 지출되는것이다. 물론 이 계산은 고정자본과 수리에 투하되는 추가자본이 다른 부류를 형성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계산방식에 기초하여 례컨대 기선의 유지와 보상을 위한 비용의 최저예산은 매년 15%이며 따라서 재생산기간은 $6\frac{2}{3}$ 년이라고 보았다. 60년대에 영국정부는 이 비용으로서 페닌슐라앤드오리엔탈회사에 매년 16%를 보상하였는데 이것은 $6\frac{1}{4}$ 년의 재생산기간에 해당한다. 철도에서는 기관차 한대의 평균수명은 10년이지만 수리비를 가산하여 마멸은 $12\frac{1}{2}$ %로 보며 이에 따라 수명은 8년으로 저하된다. 객차와 화차에서는 마멸을 9%로 계산하며 따라서 수명은 $11\frac{1}{9}$ 년으로 본다.

그 소유자에게 있어서는 고정자본이며 고장자본으로서 임대되는 가옥이나 기타 물건의 임대계약에서는 어디서나 립법은 시간, 자연력의 영향과 정상적사용자체에 의하여 초래되는 정상적마멸과 가옥의 표준적수명 및 표준적리용기간중의 정비를 위하여 수시로 필요하게 되는 림시적수리간의 구별을 인정하여왔다. 통례로 전자는 소유자가 부담하며 후자

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수리는 또 보통수리와 근본적수리로 구별된다. 후자는 현물형태에서의 고정자본의 부분적인 갱신이며 계약에 반대의 규정이 명시되여있지 않은 한에는 역시 소유자가 부담한다. 례컨대 영국의 법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되여있다.

《임차인은 매년 근본적수리를 하지 않아도 될수 있는 한에서 건물을 비바람에 견디도록 보존하며 또 일반적으로 보통수리라고 부를수 있는 수리만을 할 의무를 지니기만 하면 된다. 또 이 점에서도 임차인이 인수한 당시의 그 건물의 해당 부분의 년령과 일반적상태가 고려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 하면 낡은 마멸된 재료를 새로운 재료로 교체하는것이나 시간의 경과 및 정상적인 사용에서 생기는 불가피한 감가를 보상하는것은 임차인의 의무가 아니기때문이다.》(호울즈워스 《지주 및 차지인법》, 90~91페지)

마멸의 보상이나 유지 및 수리로동과 전혀 다른것은 비정상적인 자연현상이나 화재나 홍수 등에 의한 파괴와 관련된 **보험**이다. 보험은 잉여가치로 보상되지 않으면 안되며 잉여가치로부터의 공제를 이룬다. 혹은 또 사회전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연이나 자연력에 의하여 야기되는 비정상적인 파괴를 보상하기 위한 생산수단을 준비해두기 위하여서는 부단한 과잉생산, 즉 현존하는 부의 단순한 보상과 재생산에 필요한것보다 더 큰 규모에서의 생산이—인구의 증가는 전혀 도외시하더라도—일어나지 않으면 안된다.

사실상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자본의 극소부분만이 화폐준비금으로 되여있을뿐이다.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산규모자체의 확대에 있으며 이 확대는 일부는 현실적인 확장이며 일부는 고정자본생산부문의 정상적인 범위에 속하는것이다. 례컨대 기계제조공장은 그 고객들의 공장이 해마다 확장된다

는것과 또한 언제나 이 공장들의 일부분이 전체적 또는 부분적인 재생산을 필요로 한다는것을 고려하여 준비되여있다.

마멸과 수리비가 사회적평균에 의하여 규정된다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큰 불균등이 생기며 동일한 생산부문에서 동등한 크기를 가지고 다른 점에서도 같은 사정하에 있는 투자들사이에서조차 그렇게 된다. 실제에 있어서 기계 등은 어떤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평균수명이상으로 오래 견디지만 다른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오래 견디지 않는다. 한 자본가의 수리비는 평균보다 높고 다른 자본가의 수리비는 평균보다 낮다, 등등. 그런데 마멸에 의하여 또 수리비에 의하여 규정되는 상품의 가격추가는 동일하며 평균에 의하여 규정된다. 따라서 이 가격추가에 의하여 한 자본가는 자기가 현실적으로 추가한것보다 더 많이 받으며 다른 한 자본가는 더 적게 받는다. 이 사정은 로동력의 착취도가 같아도 같은 생산부문에서의 각이한 자본가의 리득을 각이하게 만드는 다른 모든 사정들과 마찬가지로 잉여가치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곤난하게 만든다.

고유한 의미에서의 수리와 보상간의 한계, 유지비와 갱신비간의 한계는 다소간 류동적이다. 그렇기때문에 례컨대 철도에서는 어떤 종류의 지출이 수리에 속하는가 또는 보상에 속하는가, 그것은 경상비에서 지불되여야 할것인가 또는 원 자본에서 지출되여야 할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론쟁이 끊임없다. 수리비를 수입계산에가 아니라 자본계산에 기입하는것은 철도경영자들이 그들의 배당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데 사용하는 주지의 수단이다. 그러나 이 점에서도 경험은 이미 가장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였다. 례컨대 철도의 유년기의 추가로동은

《수리가 아니라 철도건설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으로 간주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그것은 자본계시에 기입되여야 한다. 왜냐 하면 그것은 마멸이나 교통의 정상적작용에서 생기는것이 아니라 철도건설의 시초의 불가피한 불완전성에 기인하는것이기때문이다.》(라드너《철도경제》, 40페지)

《이와는 반대로 매년의 수익을 내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생긴 가치감소를 매년의 수익에 부담시키는것은 그 금액이 실제로 지출되는가 안되는가에 관계없이 유일하게 옳은 방법이다.》(피츠모리스 대좌《캘리도우니어 철도조사위원회》, 1868년《화폐시장론평》에 게재.)[55]

농업에서는 적어도 아직 증기로 작업을 하지 않은 동안은 고정자본의 보상과 유지와의 분리는 실제에는 불가능하게 되며 쓸데없게 된다.

《기구의 현재량(경작과 기타 각종 작업 및 경영에 필요한 기구)이 충분히 있으나 너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적인 평균으로 그 기구의 매년의 마멸 및 유지는 당면의 사정들이 다름에 따라 시초자본의 15~25%로 보는것이 보통이다.》(키르흐호프《농업경영학 편람》1852년 데싸우판, 137페지)

철도의 차량의 경우에는 수리와 보상은 전적으로 불가분적인것이다.

《우리는 차량을 그 총수대로 유지한다. 우리가 가지고있는 기관차가 얼마나 되든간에 우리는 그 총수를 그대로 유지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한대의 기관차가 못쓰게 되여 새것을 만드는편이 더 유리하다면 우리는 수익을 희생하여 그것을 만드는데 이에 있어서 낡은 기관차에서 남는 재료의 가치는 물론 수익에 올린다.…언제나 상당히 많이 남는다.…차륜, 차축, 기관 등 요컨대 낡은 기관차의 상당한 부분이 남는다.》(그레이트 웨스턴 철도회사 사장, D. 구치, R. C, 제17327호, 제17329호)—《수리는 갱신을 의미한다. 나에게 있어서는

<교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철도회사는 차량이나 기관차를 일단 구입한 이상은 그것들이 영구히 달릴수 있도록 수리하여야 한다.》(제17784호)《우리는 기관차의 비용을 마일당 $8\frac{1}{2}$펜스로 계산하고있다. 이 $8\frac{1}{2}$펜스로써 우리는 기관차를 영구히 유지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관차를 갱신한다. 당신이 만약 새 기관차를 한대 사려고 한다면 그것은 필요이상의 화폐를 지출하는것이다.…낡은 기관차에는 언제나 몇개의 차륜이나 차축 또는 기타 쓸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그것을 사용하면 새것과 똑같은 훌륭한 기관차를 싼값으로 만들수 있다.》(제17790호)《나는 지금 매주 새 기관차를, 즉 새것과 다름없는 기관차를 한대씩 생산한다. 새것과 다름없다고 하는것은 기관, 실린더, 차체가 새것이기때문이다.》(그레이트노선 철도회사 철도기관차 공장장 아치벌드 스터로크, R. C, 1867년 제17823호)

객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현유의 기관차와 차량은 부단히 갱신된다. 어떤 때는 새 차륜을 바꾸어넣고 어떤 때는 새 차대를 만든다. 운동의 기초로 되여 가장 많이 마멸되는 부분들이 점차로 갱신된다. 그리하여 기관차와 차량에는 몇번이고 수리가 가해져서 그중 많은것은 낡은 재료의 흔적도 남기지 않게 된다.…그것들이 전혀 수리할수 없게 되여도 낡은 차량이나 기관차에서 떼여온 부분이 가공리용되므로 그것들이 결코 궤도에서 완전히 모습을 감추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가동자본은 부단히 재생산되는것이다. 로반은 궤도전체가 새로 부설될 때에 일정한 시기에 한꺼번에 진행되지 않으면 안되는것이 차량의 경우에는 매년 점차적으로 진행된다. 차량은 다년생의것이여서 도리여 부단히 젊어지고있다.》(라드너, 《철도경제》, 115~116페지)

여기서 라드너가 철도에 관하여 서술하고있는 이러한 과정은 개개의 공장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한 산업부문전체의 내부에서 또는 일반적으로 사회적규모에서 본 총생산의 내부

에서의 수리와 교차되여 진행되는 고정자본의 부단한 부분적인 재생산의 모습으로서는 적합하다.

로련한 경영자들이 배당금을 얻으려고 수리나 보상의 개념을 얼마나 넓은 한계내에서 롱간할수 있는가 하는데 대하여서는 여기에 하나의 증거가 있다. 우에서 인용한 R. P. 윌리엄즈의 강연에 의하면 영국의 몇몇 철도회사들은 몇해동안을 평균하여 로반과 건물의 수리비 및 유지비로서 다음과 같은 금액을 수익계시에서 공제하였다(선로 1마일당의 년액).

런던—노쓰웨스턴철도	370파운드
미들랜드철도	225파운드
런던—싸우스웨스턴철도	257파운드
그레이트노던철도	360파운드
랭카샤—요크시철도	377파운드
싸우스이스턴철도	263파운드
브라이튼철도	266파운드
만체스터—셉필드철도	200파운드

이와 같은 금액의 차는 그 극히 적은 부분만이 실제의 투하가 다르기때문에 생긴것이다. 이 차이는 거의 전적으로 계산방식의 차이에서 생기는데 여러가지 비용이 자본계시에 기입되는가, 수익계시에 기입되는가 하는데 따라 생긴다. 윌리엄즈는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말하고있다.

《비교적 적은 액수의 비용이 기입되는것은 좋은 배당을 얻기 위하여서이며 비교적 많은 액수의 비용이 기입되는것은 이를 감당할수 있는 비교적 많은 액수의 수익이 있기때문이다.》[51]

어떤 경우에는 마멸, 따라서 그 보상도 실제상으로는 거의 없는것과 같은 크기로 되며 따라서 수리비만이 계산에 들

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라드너가 철도의 기술시설에 관하여 말하고있는것은 일반적으로 운하, 도크, 철교 및 석교 등과 같은 모든 내구구축물에 대하여서도 적용된다.—

《비교적 견고한 구축물에서도 시간의 완만한 작용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마멸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는 거의 눈에 뜨이지 않는 작용을 한다. 그러나 오랜 기간 례컨대 수백년이 경과하면 아무리 견고한 구축물이라도 마멸로 말미암아 그 전체 또는 일부분이 갱신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눈에 뜨이지 않는 마멸을 철도의 다른 부분들의 눈에 뜨이는 마멸과 비교해본다면 그것은 천체운동에서 나타나는 장기적편차와 주기적편차와 같은것이다. 교량, 턴넬, 구름다리 등과 같은 철도의 비교적 큰 구축물들에 미치는 시간의 작용은 장기적마멸이라고 부를수 있는 실례를 제공한다. 보다 짧은 기간에 수리와 교체에 의하여 메꾸어지는 보다 신속하고 눈에 뜨이는 감가는 주기적편차와 류사한것이다. 매년의 수리비에는 비교적 내구력이 큰 구축물이라도 때로는 그 외면이 받는 우연적인 손상의 보상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리비는 제쳐놓더라도 이 구축물에는 년령이 작용하지 않을수 없는바 아무리 먼 장래의 일이라 하더라도 구축물의 상태가 새로운 건설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반드시 닥쳐오는것이다. 확실히 재정상 및 경제상 관계에서는 이러한 시기는 너무나 먼 장래의 일이여서 실제상의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드너 《철도경제》, 38~39페지)

이것은 내용기간이 긴 모든 구축물들에 적용된다. 즉 그러한 구축물의 경우에는 그것들에 선대된 자본이 그것들의 마멸에 따라 점차적으로 보상할 필요는 없으며 오직 유지와 수리를 위한 매년의 평균비용이 생산물의 가격에 이전되기만 하면 되는것이다.

우리가 본바와 같이 고정자본의 마멸의 보상을 위해서 환류하는 화폐의 보다 많은 부분은 매년 또는 지어는 그보다 더 짧은 기간에 고정자본의 현물형태로 재전화한다. 그러나

매 개별적자본가에게 있어서는 고정자본중 수년후에야만 한꺼번에 재생산기간에 달하여 그때에 전부 보상하여야 할 부분을 위하여 감가상각기금이 필요하다. 고정자본의 상당히 큰 구성부분은 그 성격상 일부분씩의 재생산을 배제한다. 그밖에도 감가된 현품에 비교적 짧은 기간을 두고 신품이 첨가되는 방식으로 재생산이 일부분씩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보상이 진행될수 있기전에 생산부문의 특수한 성격에 따라 많든적든 화폐축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어떤 임의의 화폐액으로는 충분한것이 아니며 일정한 크기의 화폐액이 필요한것이다.

우리가 다만 단순한 화폐류통만을 전제로 하고 후에야 비로소 전개하게 될 신용제도[56]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상의것을 고찰한다면 운동의 기구는 다음과 같이 된다. 제1권 (제3장 제3절a)에서 분명히 된바와 같이 어떤 사회에 현존하는 화폐의 일부분은 언제나 축장화폐로서 놀고있으며 다른 부분은 류통수단으로서 또는 직접 류통하고있는 화폐의 직접적인 준비금으로서 기능한다고 하여도 화폐총량이 축장화폐와 류통수단으로 분할되는 비률은 부단히 변동된다. 우리의 실례에서는 큰 자본가의 수중에서 축장화폐로서 대량으로 적립되여있지 않을수 없는 화폐가 이제는 고정자본의 구입에 있어서 한꺼번에 류통에 투입된다. 이 화폐자체는 또 사회에서 류통수단과 축장화폐로 갈라진다. 고정자본의 가치는 그 마멸정도에 따라 감가상각금이라는 형태로 출발점에 환류한다. 이 상각금에 의하여 류통화폐의 일부분은 이전에 고정자본을 구입할 때에 자기의 축장화폐를 류통수단으로 전화시켜서 내준 바로 그 동일한 자본가의 수중에서 다시—길거나 짧은 기간내에—축장화폐를 형성한다. 그것은 사회에 존재하는

축장화폐의 부단히 변동하는 분배인데 이 축장화폐는 번갈아 류통수단으로서 기능하는가 하면 다음에는 또다시 축장화폐로서 류통화폐총량으로부터 분리된다. 대공업과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과 필연적으로 병행하는 신용제도의 발전에 따라 이 화폐는 축장화폐로서가 아니라 자본으로서 기능하나 그 소유자의 수중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리용할수 있는 다른 자본가들의 수중에서 기능한다.

제 9 장

선대자본의 총회전. 회전의 순환

우리가 본바와 같이 생산자본의 고정적구성부분과 류동적구성부분은 회전방식과 회전기간이 각각 다르며 또 동일한 기업에서의 고정자본의 각이한 구성부분들도 역시 그 수명, 따라서 재생산기간이 다름에 따라 회전기간이 각각 다르다. (동일한 기업에서의 류동자본의 각이한 구성부분들의 회전의 현실적 또는 외관적 차이에 관하여서는 본장 마지막의 제6항을 보라.)

1) 선대자본의 총회전은 이 자본의 각이한 구성부분들의 평균회전이다. 계산방법에 관해서는 후에 서술할것이다. 기간의 차이만이 문제로 되는 한 물론 그 기간의 평균을 내는 것보다 더 간단한것은 없다. 그러나

2) 여기에는 량적차이뿐만아니라 질적차이도 있다.

생산과정으로 들어가는 류동자본은 그 전체 가치를 생산물에 이전하며 따라서 그것은 생산과정을 중단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생산물의 판매에 의하여 현물로 부단히 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생산과정으로 들어가는 고정자본은 그 가치의 일부분(마멸분)만을 생산물에 이전하며 마멸에도 불구하고 생산과정에서 기능을 계속한다. 따라서 고정자본은 장기간 또는 단기간의 기간을 두고 현물로 보상되여야 하나 어쨌든

류동자본처럼 빈번히 보상될 필요는 없다. 이 보상의 필요성, 재생산기간은 고정자본의 각이한 구성부분들에 대하여 량적차이만을 가지는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미 본바와 같이 수명이 보다 오랜 다년생고정자본의 일부분은 1년 또는 그보다도 짧은 기간을 두고 보상되여 최초의 고정자본에 현물형태로 첨가될수 있는데 다른 성격을 가진 고정자본에 있어서는 오직 그 수명이 끝난후에 한꺼번에 보상될수밖에 없다.

그렇기때문에 고정자본의 각이한 부분의 특수한 회전들을 동종의 회전형태로 환산하여 그것들이 량적으로만, 즉 회전기간의 길이로 보아서만 차이가 있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질적동일성은 우리가 련속적생산과정의 형태인 P…P를 출발점으로 할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 하면 P의 일정한 제 요소는 부단히 현물로 보상되여야 하는데 다른 제 요소는 그렇지 않기때문이다. 그러나 G…G′의 형태는 확실히 회전의 이러한 동일성을 준다. 례컨대 10,000파운드의 가치를 가진 한대의 기계가 그 수명이 10년이고 따라서 그 $\frac{1}{10}$=1,000파운드가 매년 화폐로 재전화된다고 가정하자. 이 1,000파운드는 1년동안에 화폐자본으로부터 생산자본 및 상품자본으로 재전화하며 또 이 상품자본으로부터 화폐자본으로 재전화한다. 그것은 우리가 이 형태에서 고찰하는 경우의 류동자본과 마찬가지로 그 최초의 화폐형태로 돌아온것인데 이 경우에 1,000파운드의 화폐자본이 년말에 다시 기계의 현물형태로 재전화되는가 안되는가 하는것은 아무래도 좋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대된 생산자본의 총회전을 계산할 경우에는 이 자본의 모든 요소들을 화폐형태로 고정시키고

화폐형태로의 복귀가 회전의 종결로 되도록 한다. 우리는 가치를 언제나 화폐로 선대된것으로 간주하며 가치의 이 화폐형태가 계산화폐의 형태에 불과한 련속적생산과정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렇게 간주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평균을 얻어낼수 있다.

3) 이리하여 다음과 같이 된다. 선대된 생산자본의 압도적부분을 이루고있는 고정자본의 재생산기간 따라서 또 그 회전기간이 다년간에 걸치는 1순환을 형성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1년간에 회전한 자본가치는 그 1년간에 류동자본의 회전이 몇번 반복한 결과로 선대자본의 총가치보다 더 클수 있다.

고정자본은 80,000파운드이고 그 재생산기간은 10년, 따라서 매년 그중 8,000파운드가 화폐형태로 복귀한다고 하자. 바꾸어말하면 고정자본이 매년 그 회전의 10분의 1을 수행한다고 하자. 류동자본은 20,000파운드이며 1년에 5회전한다고 하자. 그 경우에는 총자본은 100,000파운드이고 회전한 고정자본은 8,000파운드, 회전한 류동자본은 5×20,000=100,000파운드이다. 따라서 1년간에 회전한 자본은 108,000파운드이며 선대자본보다 8,000파운드가 더 많다. 이 자본의 $1+\frac{2}{25}$가 회전한것이다.

4) 따라서 선대자본의 **가치회전**은 이 자본의 현실적인 재생산기간 또는 그 구성부분들의 현실적인 회전기간으로부터 분리된다. 례컨대 4,000파운드의 자본이 1년에 5회전한다고 하자. 그러면 회전한 자본은 5×4,000=20,000파운드이다. 그러나 1회전이 끝날 때마다 복귀하여 다시 선대되는것은 최초에 선대된 4,000파운드의 자본이다. 이 자본의 크기는 그

것이 자본으로서 다시 기능하는 회전기간의 수에 의하여 변동되는것은 아니다(잉여가치는 도외시한다.).

그리하여 (3)의 례에서는 전제에 의하면 년말에 자본가의 수중으로 되돌아온것은 (a) 그가 다시 자본의 류동적구성부분들로서 투하하는 20,000파운드의 가치액과 (b) 마멸로 인하여 선대고정자본의 가치로부터 분리된 8,000파운드의 가치액이다. 그밖에 의연히 동일한 고정자본이 생산과정에 존재하나 그 가치는 80,000파운드가 아니라 72,000파운드로 감소되였다. 따라서 선대된 고정자본이 자기 수명을 다 살고 생산물형성자로서도, 가치형성자로서도 기능을 다하고 보상되지 않으면 안될 때까지는 아직도 9년간의 생산과정이 계속되는것이 필요할것이다. 그러므로 선대자본가치는 몇회의 회전을 포함한 1순환을 수행하게 된다. 례컨대 상술한 경우에는 10회의 년회전으로 되여있는 1순환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이 순환은 사용된 고정자본의 수명에 의하여 따라서 재생산기간 또는 회전기간에 의하여 규정되여있다.

그리하여 사용되는 고정자본의 가치량과 수명이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발전과 함께 증대하는데 적응하여 특수한 각 투자부문에서의 산업의 수명과 산업자본의 수명도 다년간 지속되는것으로, 례컨대 평균하여 10년이란 수명으로 연장하여간다. 한편으로 고정자본의 발전이 이 수명을 연장한다면 다른 편으로는 역시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발전과 함께 부단히 진전되는 생산수단의 부단한 변혁으로 말미암아 이 수명이 단축된다. 따라서 또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발전과 함께 생산수단의 변화도, 그것이 유형적으로 수명을 다 살기 오래전에 무형의 마멸로 하여 부단히 보상되여야 할 필요성도 증대

된다. 대공업의 가장 결정적인 부문들에서는 오늘날 이 생명 순환이 평균하여 10년의 주기를 가지는것으로 추정할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러한 일정한 년수가 문제로 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것만은 명백하다. 이러한 련관된 몇개의 회전들을 포함하는 수년간에 걸치는 순환에 자본은 그 고정적구성부분에 의하여 구속되여있는데 이 순환에 의하여 주기적공황의 물질적기초가 생긴다. 이 순환에서 기업은 부진, 중등정도의 활기, 과도한 번망, 공황이란 련속되는 시기들을 통과한다. 물론 자본이 투하되는 시기는 극히 각이하며 서로 일치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황은 언제나 새로운 대규모의 투자의 출발점을 이룬다. 따라서 또 사회전체를 놓고본다면 공황은 혹은 적게 혹은 많게 다음에 올 회전순환을 위한 새로운 물질적기초를 이룬다.[22[a]]

5) 회전의 계산방식에 관해서는 미국의 한 경제학자더러 말하게 하자.[58]

《약간의 생산부문들에서는 선대자본전체가 1년동안에 여러번 회전 또는 류통한다. 또 다른 약간의 부문에서는 선대자본의 일부분은 1년에 1회이상 회전하는데 다른 일부분은 그렇게 빈번히는 회전하지 않는다. 자본가가 리윤계산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안되는것은 그의 전체 자본이 그의 수중을 통과하기 위하여 또는 1회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균기간이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정한 기업에 자기의 자본의 절반은 10년에 한번씩 갱신되는 건물과 기계에 투하하고 그 4분의 1은 2년에 한번씩 갱신되는 도구 등에 투하하며 나머지 4분의 1은 로임과 원료에 투하하여 1년에 2회전한다고 가정하자. 그의 전체 자본을 50,000딸라라고 하자. 그러면 그의 년간투자는 다음과 같이 될것이다.

(22[a]) 《도시의 생산은 하루하루의 회전에 얽매여있으나 농촌의 생산은 매년의 회전에 얽매여있다.》(아담 H. 뮐레르 《정치의 기본》 1809년 베를린판, 제3권, 178페지)[57] 이것은 공업과 농업에 관한 랑만파의 소박한 견해이다.

10년간에 $\frac{50,000}{2}$ 딸라=25,000딸라=1년간에 2,500딸라

2년간에 $\frac{50,000}{4}$ 딸라=12,500딸라=1년간에 6,250딸라

$\frac{1}{2}$ 년간에 $\frac{50,000}{4}$ 딸라=12,500딸라=1년간에 25,000딸라

1년간에 33,750딸라

따라서 그의 전체 자본이 1회전하는 평균기간은 16개월이다.[59]…또 하나의 경우를 들어보자. 50,000딸라의 총자본의 4분의 1은 10년에 1순환하며 4분의 1은 1년에 1순환하며 나머지 2분의 1은 1년에 2순환한다고 하자. 그러면 년간투자는 다음과 같이 될것이다—

$\frac{12,500}{10}$ = 1,250딸라

12,500 = 12,500딸라

25,000×2 = 50,000딸라

1년간의 회전액 = 63,750딸라

(스크루프 《정치경제학》 얼론조우 포터 편찬, 뉴욕 1841년, 142~143페지).

6) 자본의 각이한 부분들의 회전에의 현실적차이와 외관적차이—같은 스크루프는 같은 개소[제141페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공장주나 농장경영주나 상인이 로임의 지불에 투하하는 자본은 가장 급속히 류통한다. 왜냐 하면 아마도 그것은 만일 그의 로동자가 매주 지불을 받는다면 그의 판매 또는 지불계산서로부터의 매주의 수입에 의하여 매주 1회 회전하게 될것이기때문이다. 원료나 완성재고품에 투하된 자본은 그렇게 급속하게 류통하지는 않는다. 그 회전은 자본가가 사거나 파는것과 같은 신용기간에 진행한다고 전제한다면 원료의 구입과 재고품의 판매사이에 소비되는 시간의 길이에 따라서 1년에 2회 또는 4회 진행될것이다. 도구와 기계에 포함되여있는 자본은 더

완만하게 류통한다. 왜냐 하면 그것은 아마 평균하여 5년이나 10년에 1회만 회전할것이기때문이다. 즉 소비되고 갱신될것이기때문이다. 비록 일련의 작업만으로 소모되여버리는 도구들도 있지만 건물 레컨대 공장, 점포, 창고, 곡창 또는 도로, 관개시설 등에 투하된 자본은 거의 전혀 류통하지 않는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이러한 설비들도 상술한것들과 마찬가지로 생산에 복무하는 동안에 완전히 소모되여버리며 생산자가 작업을 계속할수 있기 위하여서는 재생산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그것들은 다른것들보다 완만하게 소비되며 재생산된다는 차이가 있을뿐이다.…그것들에 투하된 자본은 아마도 20년이나 50년만에야 1회전할것이다.》

스크루프는 여기에서 개별적자본가에게 있어서 지불기한과 신용관계에 의하여 생기는 류동자본의 일정한 제 부분의 운동상의 차이를 자본의 성격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회전과 혼동하고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로임은 지불된 판매나 계산서로부터 오는 매주 수입에 의하여 매주 지불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첫째로, 여기에서 말해두어야 할것은 지불주기의 길이 즉 로동자가 자본가에게 신용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간의 길이에 따라서, 즉 임금의 지불주기가 1주인가, 1개월인가, 3개월인가, 반년인가 하는 등에 따라서 로임자체에도 여러가지 차이가 생긴다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지불수단(즉 단번에 선대되여야 할 화폐자본)의 필요량은 지불주기의 길이에 정비례한다①.》는 이전에 이미 전개된 법칙이 적용된다. (제1권 제3장 제3절 b, 124페지[60])

둘째로, 매주의 생산물에는 그 생산에서 1주간의 로동에 의하여 첨가되는 새 가치의 총량뿐만아니라 그 1주간의 생산물에 소비된 원료나 보조재료의 가치도 들어간다. 생산물에

① 제1판과 제2판에는 반비례로 되여있다.—편집자

포함된 이 가치도 생산물과 함께 류통한다. 이 생산물의 판매에 의하여 이 가치는 화폐형태를 취한다. 그리고 새로 동일한 생산요소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로동력에 대해서나 원료 및 보조재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나 이미 본바와 같이(제6장 제2절 A) 생산의 련속을 위해서는 생산수단의 재고가 필요한데 이 재고는 생산부문이 다름에 따라 다르며 또 동일한 생산부문에서도 류동자본의 이 요소의 구성부분들이 다름에 따라 다르다. 례컨대 석탄과 면화에서 다르다. 따라서 이러한 재료는 부단히 현물로 보상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부단히 새로 구매할 필요는 없는것이다. 구매가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가 하는것은 준비된 재고의 크기에 의존하며 재고가 떨어질 때까지 얼마나 오래 지속하는가에 의존한다. 로동력의 경우에는 이러한 재고를 하지 않는다. 로동에 투하된 자본부분에 있어서는 화폐로의 재전화는 보조재료와 원료에 투하된 자본부분의 재전화와 병행하여 진행된다. 그러나 일방으로는 로동력에로의, 타방으로는 원료에로의 화폐의 재전화는 서로 분리되여 진행된다. 왜냐 하면 이러한 두 구성부분은 구입 및 지불기한이 각각 다르기때문이다. 그중의 일방은 생산용재고로서 비교적 오랜 기한을 두고 구매되는데 타방의 로동력은 비교적 짧은 기한, 례컨대 매주마다 구매되는것이다. 다른 한편 자본가는 생산용재고이외에 완성상품의 재고도 가지고있지 않으면 안된다. 판매난 등은 도외시하더라도 례컨대 일정한 량은 주문으로 생산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최후의 부분이 생산되는 동안 이미 완성된 부분은 주문이 완전히 실행될수 있을 때까지 창고에서 기다리게 된다. 그밖에 류동자본의 회전의 차이는 류동자본의 개별적요소들이 다른 제 요소보다

더 오래동안 생산과정의 준비단계(목재의 건조 등)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에도 생긴다.

스크루프가 여기에서 언급하고있는 신용제도도 상업자본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자본가에게 있어서의 회전을 변화시킨다. 신용제도가 사회적규모에서 회전을 변화시키는것은 다만 그것이 생산뿐만아니라 소비까지도 촉진시키는 한에 있어서만이다.

제 10 장

고정자본과 류동자본에 관한 제 학설.
중농학파와 애담 스미스

께내에게 있어서는 고정자본과 류동자본간의 구별은 《시초의 선대》와 《년년의 선대》로서 나타난다. 그는 이 구별을 정당하게도 생산자본, 즉 직접적생산과정에 합체된 자본내부에서의 구별로서 표시하고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는 농업에 사용되는 자본, 즉 차지농업가의 자본이 유일한 현실적생산자본이므로 이 구별도 다만 차지농업가의 자본에 있어서만 나타날뿐이다. 자본의 일부분의 회전기간은 1년이고 다른 부분의 회전기간은 1년이상(10년)이라는것도 또한 이것으로부터 나온다. 겸하여 말한다면 중농학파는 그 발전도상에 이 구별을 다른 종류의 자본에도, 산업자본일반에도 적용하고있다. 년년의 선대와 다년성 선대간의 구별은 사회에 대하여 극히 중요한것으로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A. 스미스이후에 있어서도 이 규정에 되돌아오고있다.

두 종류의 선대간의 구별은 선대된 화폐가 생산자본의 제 요소로 전화하였을 때에야 비로소 생긴다. 그 구별은 다만 생산자본의 내부에만 존재하는것이다. 그러므로 화폐를 시초의 선대로나 년년의 선대로 본다는것은 께내로서는 생각도 할수 없는 일이다. 생산을 위한 선대—즉 생산자본으로서

는—이 두 종류의 선대는 화폐에도 대립하고 시장에 있는 상품에도 대립한다. 그리고 또 생산자본의 이 두 요소간의 구별은 께내에게 있어서는 정당하게도, 그것들이 완성생산물의 가치속에 들어가는 방식의 차이로 환원되며 따라서 그것들의 가치가 생산물가치와 함께 류통하는 방식의 차이로, 따라서 또 일방의 가치는 해마다 전부 보상되는데 타방의 가치는 보다 장기간에 걸쳐 일부분씩 보상되여가는 그것들의 보상 또는 재생산의 방식의 차이로 환원된다.(23)

A. 스미스에 의하여 이룩된 유일한 진보는 이러한 범주의 일반화이다. 이 범주들은 스미스에게 있어서는 이미 자본의 특수한 한 형태인 차지농업가의 자본에만 관련되는것이 아니라 생산자본의 모든 형태에도 관련되는것이다. 그 당연한 귀결로서 농업으로부터 얻은 1년간의 회전과 다년간의 회전간의 구별 대신에 각이한 시간을 가진 제 회전의 일반적구별이 나타나며 따라서 고정자본의 1회전은 류동자본의 1회전보다도 많은 회전을 포괄하게 되며 이 경우에 류동자본의 이러한 회전기간은 1년이건, 1년이상이건 또는 1년이하이건 관계없다. 그리하여 스미스에게 있어서는 년년의 선대는 류동자본으로

---

(23) 께내 《경제표의 분석》(《중농학파》 대르 편찬, 1846년 빠리판, 제1부) 참조. 거기에서는 레컨대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년년의 선대는 매년 경작로동을 위하여 실시되는 제 지출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선대는 농업창설기금을 나타내는 시초의 선대와 구별되지 않으면 안된다.》(59페지)—보다 후기의 중농학파들에게 있어서는 선대는 왕왕 직접 자본으로 불리우고있다. 《자본 또는 선대》, 뒤뽕드 느무르 《께내 의사의 준칙 또는 그의 사회경제학원리 적요》(대르 편찬, 제1부, 391페지)를 보라. 또르 뜨론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로동생산물의 내구성에 따라 한 나라는 그 매년의 재생산과는 독립한 큰 부의 저장을 가지고있다. 이 저장은 오래동안에 축적된 자본을 나타내며 원래는 생산물로써 지불된것이며 또 부단히 유지되며 증대된다.》(대르 편찬, 제2부, 928~929페지)—뛰르고는 벌써 《자본》이라는 말을 더 규칙적으로 《선대》대신에 사용하고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제조업자의 선대를 차지농업가의 선대와 동일시하고있다. 뛰르고《부의 형성과 분배에 관한 고찰》, 1766년판)[61]

전화하고 시초의 선대는 고정자본으로 전화된다. 그러나 그의 진보는 제 범주의 이러한 일반화에만 국한되여있다. 상세한 론술은 께내보다 훨씬 뒤떨어지고있다.

스미스가 그 연구에 착수하자 곧 그 천박한 경험적수법이 불명확성을 끌어들이고있다.

《자본은 그 사용자에게 수입 또는 리윤을 가져오도록 사용될수 있는 두가지 각이한 방식이 있다.》(《제 국민의 부》, 제2권 제1장, 189페지, 1848년 애버딘판.)

가치가 자본으로서 기능하도록, 즉 소유자에게 잉여가치를 가져오도록 투하될수 있는 방식은 자본의 투하분야와 마찬가지로 각이하고 다양하다. 그것은 자본이 투하될수 있는 각이한 생산부문에 관한 문제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되면 문제는 더 광범하여진다. 그것은 가치가 생산자본으로서 투하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것이 어떻게 그 소유자를 위하여 자본으로서 기능할수 있는가, 례컨대 리자부자본, 상인자본 등으로서 기능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포함한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이미 우리는 분석의 현실적대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된다. 즉 **생산**자본의 각이한 요소에로의 분할은 그 자본의 각이한 투하분야는 제쳐놓고 그 요소들의 회전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것이다.

A. 스미스는 그뒤에 곧 이렇게 말하고있다.

《첫째로, 자본은 재화를 생산하고 제조하든가 또는 그것을 사고 다시 팔아서 리윤을 내는데 리용될수 있다.》

A. 스미스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있는것은 자본은

농업, 제조업 및 상업에 사용될수 있다는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는 자본의 각이한 투하분야에 관하여 말하고있을따름이며 상업에 있어서와 같이 자본이 직접적생산과정에 합체되지 않고 따라서 생산자본으로서 기능하지 않는 그러한 분야에 관하여 말하고있을따름이다. 따라서 그는 중농학파가 생산자본의 여러가지 구별과 그것들이 회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기초를 이미 포기하고있다. 그리고 그는 생산물 및 가치의 형성과정에 있어서의 **생산**자본의 여러가지 구별, 즉 그 구별자체가 다시 생산자본의 회전과 재생산에 있어서의 구별을 낳는다는 구별만이 문제로 되고있는 경우에는 즉시 상인자본을 실례로서 들기까지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여 말하고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자본은 그 사용자의 수중에 남아있거나 또는 동일한 모습으로 존속하는 동안은 그 사용자에게 수입도 리윤도 가져다주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자본!》 그러나 스미스는 농업이나 공업에 투하된 자본에 관하여 말하고있는것이다. 그리고 그는 후에는 이렇게 투하된 자본이 고정자본과 류동자본으로 분할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의 자본의 투하는 자본을 고정자본으로도 류동자본으로도 만들수 없는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말하려고 한것은 상품을 생산하고 그것을 팔아서 리윤을 내기 위하여 사용된 자본은 상품으로 전화된후 판매되며 이 판매에 의하여 첫째로는 판매자의 소유로부터 구매자의 소유로 넘어가야 하며 둘째로는 상품으로서의 그 현물형태로부터 그 화폐형태로 전화되지 않으면 안

되며 따라서 그것이 소유자의 수중에 남아있거나 또는—그에게 있어서—동일한 형태로 남아있는 동안은 그에게는 아무쓸데도 없다는것이겠는가?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사태는 다음과 같이 된다. 이전에는 생산자본의 형태 즉 생산과정에 속하는 형태로 기능하였던 그 동일한 자본가치가 이제는 상품자본 및 화폐자본으로서 류통과정에 속하는 형태로서 기능하며 따라서 이제는 고정자본도 아니고 류동자본도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료나 보조재료, 즉 류동자본에 의하여 첨가되는 가치요소에 대해서도, 로동수단의 소모에 의하여, 즉 고정자본에 의하여 첨가되는 가치요소에 대해서도 꼭같이 적용된다. 이리하여 우리는 고정자본과 류동자본과의 구별에는 한걸음도 접근하지 못하였다.

또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상인의 재화는 그가 재화를 판매하여 화폐와 바꿀 때까지는 그에게 수입이나 리윤을 가져다주지 않으며 또 이 화폐도 역시 그것이 다시 재화와 교환될 때까지는 그에게 아무것도 가져다주지 않는다. 그의 자본은 부단히 한 모습으로 그로부터 떠나서 다른 한 모습으로 그에게로 되돌아오는것이며 다만 이러한 류통 또는 련속적인 교환에 의하여서만 그의 자본은 그에게 리윤을 가져다줄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자본은 매우 적절하게 류동자본이라고 불리울수 있다.》

A. 스미스가 여기에서 류동자본이라고 규정하고있는것은 내가 **류동자본**이라고 부르려고 하는것, 류통과정, 즉 교환에 의하여 매개되는 형태변환(물질변환 및 소유자변환)에 속하는 형태로서의 자본이다. 즉 생산과정에 속하는 자본형태, 즉 생산자본과 대립되는 상품자본과 화폐자본이다. 이러한 자본형태는 산업자본가가 자기의 자본을 분할하는 특수한 종류가 아니라 동일한 선대자본가치가 그 생애에 있어서 서로

뒤따라 반복적으로 취하였다가 포기하는 각이한 형태들이다. 이것을 A. 스미스는(그리고 그것은 중농학파들에 비하여 하나의 큰 퇴보이지만) 자본가치의 류통의 내부에서, 즉 그것이 서로 뒤따라 취하는 제 형태를 통하여서의 그 순환속에서 자본가치가 **생산**자본의 형태로 있는 동안에 생기는 형태적구별과 혼동하는것이다. 그리고 이 형태적구별은 생산자본의 각이한 요소들이 가치형성과정에 참가하여 자기의 가치를 생산물에 이전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생기는것이다. 우리는 일방으로는 생산자본과 류통분야에 있는 자본(상품자본 및 화폐자본)과의, 타방으로는 고정자본과 류동자본과의 이러한 근본적인 혼동의 결과를 후에 고찰할것이다. 고정자본으로서 선대된 자본가치도 류동자본으로서 선대된 자본가치와 마찬가지로 생산물을 통하여 류통되며 또 전자나 후자나 할것없이 상품자본의 류통에 의하여 화폐자본으로 전화된다. 구별은 다만 고정자본의 가치는 일부분씩 류통하며 따라서 길거나 짧은 기간에 걸쳐 일부분씩 보상되며 현물형태로 재생산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서 생긴다는것뿐이다.

A. 스미스가 여기에서 류동자본이라고 하는것은 류통자본, 즉 류통과정에 속하는 형태에 있는 자본가치(상품자본과 화폐자본)에 불과하다는것은 그가 특히 서투르게 선택한 례에 의하여 증명된다. 그가 례로서 들고있는 자본종류는 전혀 생산과정에 속하지 않고 오로지 류통분야에만 존재하며 다만 류통자본으로만 구성되는 자본, 즉 상인자본이다.

자본이 결코 생산자본의 역할을 하지 않는것을 들어서 그것으로써 설명을 시작하는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것은 그 자신이 바로 그다음에 계속하여 말하고있다.

《상인의 자본은 그 전체가 류동자본이다.》

그러나 류동자본과 고정자본간의 구별은 바로 나중에 우리에게 말하고있는것과 같이 생산자본 그 자체내부의 본질적 구별로부터 생기는것이여야 할것이다. A. 스미스의 념두에 있는것은 한편으로는 중농학파적인 구별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가치가 그 순환에서 겪게 되는 형태적구별이다. 그리하여 이 량자가 서로 뒤섞여있다.

그러나 리윤이 어떻게 화폐와 상품의 형태변환에 의하여 생기는가, 즉 가치가 이 두 형태중의 하나로부터 다른 하나로 전화하는데 의하여 생기는가 하는것은 도무지 알수 없다. 또한 여기에서 그는 다만 류통분야에서만 운동하는 상인자본으로부터 설명을 시작하고있기때문에 그 설명은 전혀 불가능하게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말하기로 하고 우선 그가 고정자본에 관하여 말하고있는것을 들어보자.

《둘째로, 그것(자본)은 토지의 개량에, 유용한 기계나 로동도구의 구입에, 또는 소유자의 변경이나 그 이상의 류통이 없이 수입 또는 리윤을 가져다주는것과 류사한 물건들의 구입에 사용될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본은 매우 정당하게도 고정자본이라고 불리울수 있다. 업종이 다르면 거기에 사용되는 고정자본과 류동자본간의 비례도 달라져야 한다.…매개 수공업장주나 공장주의 자본의 일정한 부분은 그의 로동도구에 고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 부분은 어떤 업종에 있어서는 극히 작으며 어떤 업종에 있어서는 극히 크다.…그러나 그러한 모든 수공업장주들(례컨대 재봉사, 구두쟁이, 직포공과 같은)의 자본의 큰 부분은 그들의 장공들의 로임으로든가 또는 그들의 재료의 가격으로서 류통하며 제품의 가격에 의하여 리윤을 붙여서 상환되게 되여있다.》

리윤의 원천에 관한 유치한 규정은 제쳐놓고라도 약점과

혼란은 곧 다음과 같은 점에서 나타나고있다. 례컨대 기계제 조업자에게 있어서는 기계는 상품자본으로서 류통하는 생산물이며 따라서 A. 스미스의 말로 하면

《수중에서 떠나며 소유주를 변경하며 다시 류통하는 생산물이다.》

그렇다면 기계는 그자신의 규정에 의하면 고정자본이 아니라 류동자본일것이다. 이러한 혼란은 또 스미스가 생산자본의 여러가지 요소들의 류통방식의 차이로부터 생기는 고정자본과 류동자본간의 구별을, 동일한 자본이 생산과정에서는 **생산**자본으로서 기능하나 류통분야에서는 류통자본, 즉 상품자본 또는 화폐자본으로서 기능하는 한에 있어서 그것이 련이어 통과하는 형태적구별과 혼동하고있는데로부터 생긴다. 그러므로 A. 스미스에게 있어서는 동일한 물건이 자본의 생활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의 차이에 따라 고정자본으로서(로동수단, 생산자본의 제 요소로서) 기능할수도 있고 《류동》자본, 상품자본으로서(생산분야로부터 류통분야로 밀려나오는 생산물로서) 기능할수도 있다.

그러나 A. 스미스는 갑자기 자본구분의 기초를 완전히 변경하여 자기가 몇줄앞에서 전체 연구의 출발점으로 하고있은것과 모순되는것을 말하고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명제에서 이 모순이 나타나고있다.

《자본은 그 사용자에게 수입 또는 리윤을 가져다줄수 있게 사용될수 있는 두가지 각이한 방식이 있다.》

즉 류동자본으로서이든가 또는 고정자본으로서이다. 따라서 이 명제에 의하면 그 방식이라는것은 서로 독립한 각이한 자본의 각이한 사용방식, 례컨대 공업이나 농업에 사용될수 있

는 방식이였다.—그런데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업종이 다름에 따라 거기에 사용되는 고정자본과 류동자본간의 비률도 극히 다를것을 요한다.》

고정자본과 류동자본은 이제는 벌써 각이한 독립적인 자본투하가 아니라 동일한 생산자본의 각이한 부분이며 이러한 부분은 각이한 투하분야에서 이 자본의 총가치의 각이한 몫을 이루고있는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생산**자본자체의 적당한 분할로부터 생기는 구별이며 따라서 이 생산자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구별이다. 그러나 또다시 이와 모순되게 상업자본이 단순한 류동자본으로서 고정자본에 대립되게 된다. 왜냐하면 스미스자신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기때문이다.

《상인의 자본은 그 전체가 류동자본이다.》

사실상 상인의 자본은 류통분야의 내부에서만 기능하는 자본이며 그러한 자본으로서 생산자본, 즉 생산과정에 합체된 자본일반에 대립되지만 그러나 바로 그렇기때문에 생산자본의 류동적구성부분으로서 생산자본의 고정적구성부분에 대립할수는 없는것이다.

스미스가 든 례에서 로동도구를 고정자본으로 규정하고 로임과 보조재료를 포함한 원료에 투하된 자본부분(제품의 가격에 의하여 리윤을 붙여서 상환하는것)을 류동자본으로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지금은 다만 로동과정의 각이한 구성부분, 즉 일방으로는 로동력(로동)과 원료, 타방으로는 로동도구가 출발점으로 되여있을뿐이다. 그러나 이러한것들이 자본의 구성부분인것은 자본으로서 기능해야 할 가치액이 그것들에 투하되

여있기때문이다. 그러한 한에 있어서는 그것들은 **생산**자본, 즉 생산과정에서 기능하는 자본의 소재적요소이며 존재방식이다. 그러면 왜 한부분은 고정적이라고 불리우는가? 그것은

《자본의 어떤 부분은 로동도구에 고정되여있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부분도 로임이나 원료에 고정되여있다. 그러나 기계나

《로동도구…소유자의 변경이나 그 이상의 류통이 없이 수입 또는 리윤을 가져다주는 류사한 물건들…. 그러므로 이러한 자본은 매우 정당하게도 고정자본이라고 불리울수 있다.》

례컨대 광산업을 들어보자. 여기에서는 원료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왜냐 하면 로동대상 례컨대 동은 로동에 의하여 처음으로 취득되여야 할 천연산물이기때문이다. 앞으로 취득되여야 할 동, 즉 이 과정의 생산물로서 후에 상품 또는 상품자본으로서 류통하는것은 생산자본의 요소를 이루지는 않는다. 생산자본의 가치의 어떠한 부분도 동에는 지출되여있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과정의 다른 요소들인 로동력과 석탄, 물 등과 같은 보조재료도 역시 소재로서는 생산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석탄은 전부 소비되고 그 가치만이 생산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기계 등의 가치의 일부가 생산물에 들어가는것과 같은것이다. 마지막으로 로동자도 기계와 마찬가지로 역시 생산물인 동으로부터 독립되여있다. 다만 그가 자기의 로동에 의하여 생산하는 가치가 이제는 동의 가치의 구성부분으로 되여있을따름이다. 따라서 이 례에서는 생산자본의 구성부분으로서 소유자를 변경하는것은 하나도

없다. 바꾸어말하면 더 류통되는것은 하나도 없다. 왜냐 하면 소재로서 생산물에 들어가는것은 하나도 없기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류동자본은 어디에 남는가? A. 스미스자신의 정의에 의하면 동광산에 사용되는 자본은 전부 고정자본으로써만 구성된다는것으로 될것이다.

이와 반대로 또 하나의 다른 산업을 례로 들어보자. 이 산업이 사용하는 원료는 생산물의 실체를 이루며 또 그 보조재료도 연료용석탄처럼 가치로 보아 생산물에 들어갈뿐만아니라 물체적으로 생산물에 들어간다고 하자. 생산물, 례컨대 방사와 함께 그것의 원료인 면화도 소유자를 변경하며 생산과정으로부터 소비과정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면화가 생산자본의 요소로서 기능하는 동안은 소유자는 그것을 파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공하며 그것으로 방사를 만들어내는것이다. 그는 면화를 자기 수중에서 내놓는것이 아니다. 또는 스미스의 대단히 그릇되고 범속한 표현을 빌어 말한다면 그 소유자는 《그것을 내놓는데 의하여, 그것이 소유자를 변경하는데 의하여, 또는 그것을 류통시키는데 의하여》 리윤을 얻는것은 아니다. 그가 자기의 재료를 류통시키지 않는것은 그가 자기의 기계를 류통시키지 않는것과 마찬가지이다. 그의 재료는 방적기계나 공장건물과 마찬가지로 생산과정에 고정되여있다. 물론 생산자본의 일부분은 로동수단의 형태에 고정되지 않으면 안되는것과 마찬가지로 석탄이나 면화 등의 형태에 고정되여있지 않으면 안된다. 구별은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 있을뿐이다. 즉 례컨대 매 주의 방사의 생산에 필요한 면화, 석탄 등은 부단히 주생산물의 생산에서 전부 소비되며 따라서 면화, 석탄 등의 신품에 의하여 부단히 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이 생산자본의 이러한 요소들은 그 종

류로 보아서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부단히 동종의 신품들로써 구성되는데 한편 동일한 한대의 방적기계나 동일한 하나의 공장건물은 동종의 신품에 의하여 보상됨이 없이 주생산을 위하여 몇번이고 계속 협력한다. 생산자본의 요소로서는 생산자본의 모든 구성부분들이 부단히 생산과정에 고정되여있다. 왜냐 하면 생산과정은 이 요소들이 없이는 진행될수 없기때문이다. 그리고 생산자본의 모든 요소는 고정적인것이거나 류동적인것이거나 할것없이 동등하게 생산자본으로서 모두 류통자본, 즉 상품자본과 화폐자본에 대립된다.

로동력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생산자본의 일부분은 부단히 로동력에 고정되여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동일한 로동력이 동일한 기계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자본가에 의하여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사용된다. 여기에서는 로동력과 기계와의 구별은 기계는 단번에 구매되는데 (기계가 례컨대 분할지불로 구매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로동력은 그렇지 않다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로동자가 지출하는 로동은 전부 생산물의 가치에 들어가는데 기계의 가치는 일부분씩만 들어간다는데 있다.

스미스는 고정자본과 대립되는 류동자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 때 그는 각이한 규정들을 혼동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자본은 그 사용자의 수중에 남아있거나 또는 동일한 모습으로 존속하는 동안은 그 사용자에게 수입도 리윤도 가져다주지 않는다.》

그는 생산물, 즉 상품자본이 류통분야에서 통과하는, 또 상품의 소유자 변경을 매개하는 상품의 단순한 형태변화를 생산자본의 각이한 요소들이 생산과정에서 통과하는 물체적

인 형태변화와 동등시하고있다. 상품의 화폐로의 전화와 화폐의 상품으로의 전화, 즉 구매와 판매를 그는 여기에서는 분별함이 없이 생산요소의 생산물로의 전화와 혼동하고있다. 그가 류동자본의 례로서 들고있는 례는 상품으로부터 화폐로, 화폐로부터 상품으로 전화하는 상인자본—상품류통에 속하는 형태변환 W—G—W이다. 그러나 기능하고있는 산업자본에 대하여 류통과정내부에서의 이러한 형태변환이 가지는 의의는 화폐가 재전화되는 상품이 생산요소(로동수단 및 로동력)이라는것이며 따라서 이 형태변환이 산업자본의 기능의 련속을 매개하며 련속적인 생산과정, 즉 재생산과정으로서의 생산과정을 매개한다는것이다. 이 형태변환은 그 전체가 **류통**내에서 진행된다. 그것은 한 사람의 수중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수중으로의 상품의 현실적이행을 매개하는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생산자본이 그 생산과정의 내부에서 통과하는 형태변화는 **로동과정**에 속하는 형태변화이며 생산요소를 목적하는 생산물로 전화하는데 필요한 형태변화이다. A. 스미스가 매달리고있는것은 생산수단의 일부분(고유한 의미에서의 로동수단)은 그 현물형태를 변화시킴이 없이 점차적으로만 마멸됨으로써 로동과정에서 복무하는데(이것을 그는 그릇되게도 《그 소유자에게 리윤을 가져다준다.》고 표현하고있다.) 다른 한 부분인 재료는 그자체가 변화하며 또 바로 그것이 변화하는데 의하여 생산수단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로동과정에서 생산자본의 제 요소가 수행하는 각이한 역할은 고정자본과 비고정자본간의 구별의 출발점을 이룰뿐이고 이 구별자체를 이루는것은 아니다. 이것은 이와 같은 각이한 역할은 생산방식이 자본주의적이든 비자본주의적이든간에 모든 생산방식에 동등하

게 존재하고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이미 알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재로서의 각이한 역할과 일치되는것은 생산물에로의 **가치이전**이며 이 가치이전과 일치되는것은 또 생산물의 판매에 의하여 진행되는 가치보상이다. 그리고 이 점이 비로소 앞에서 서술한 구별을 이루는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이 고정자본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로동수단에 고정되여있기때문이 아니라 로동수단에 투하된 그 가치의 일부분은 생산물의 가치구성부분으로서 류통하는데 그 가치의 다른 부분은 의연히 로동수단에 고정되여있기때문이다.

《만약 그것(자본)이 장래의 리윤을 획득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면 그것은 그(사용자)의 수중에 머물러있는데 의하여서든가 또는 그의 수중으로부터 떠나는데 의하여 이 리윤을 획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전자의 경우에는 고정자본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류동자본이다.》 (189페지)

여기에서 우선 눈에 뜨이는것은 보통자본가들의 견해로부터 얻어온 천박한 경험적인 리윤관념으로서 이것은 A. 스미스의 더 심오한 견해와 완전히 모순되는것이다. 생산물의 가격에는 재료의 가격과 로동력의 가격이 보상되고있으나 또한 로동도구로부터 마멸에 의하여 생산물에 이전된 가치부분도 역시 보상되고있다. 이러한 보상으로부터는 결코 리윤이 샘솟아나지 않는다. 생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선대된 가치가 생산물의 판매에 의하여 보상되는데 전부 함께 보상되는가 또는 일부분씩 보상되는가, 한꺼번에 보상되는가 점차적으로 보상되는가 하는것은 다만 보상의 방식과 시간을 변경시킬수 있을따름이지 결코 이 두 경우에 있어서의 공통적인것—가치보상—을 잉여가치의 창조로 전화시킬수는 없는것이다. 여기

에서 기초에 놓여있는것은 잉여가치는 생산물의 판매, 생산물의 류통에 의하여 비로소 실현되기때문에 그것은 오직 판매에서, 류통에서 발생한다고 하는 보통의 견해이다. 사실상 리윤발생의 각이한 방식이라는것은, 여기에서는 다만 생산자본의 각이한 요소들은 각이한 역할을 하며 생산요소로서 로동과정에서 각이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그릇된 문구에 불과하다. 결국 구별은 로동과정 또는 가치증식과정에서, 생산자본자체의 기능에서 도출되는것이 아니고 다만 개별적자본가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인정될뿐이며 이 자본가에 있어서는 자본의 한 부분은 이 방식으로, 다른 한 부분은 저 방식으로 유용한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께내는 이미 이 구별을 재생산과정과 그 필연성자체로부터 도출하였다. 이 과정이 련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년간생산물의 가치에서 년간선대의 가치가 해마다 전부 보상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와 반대로 원 투하자본의 가치는 다만 일부분씩 보상되기만 하면 되며 따라서 이 가치는 수년후에 례컨대 10년후에 비로소 전부 보상되며 따라서 또 전부 재생산(동종의 신품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리하여 A. 스미스는 께내보다 훨씬 뒤떨어져있다.

그리하여 A. 스미스에게 있어서는 고정자본의 규정으로서는 그것이 로동수단이며 그 협력에 의하여 형성되는 생산물에 대립하여 생산과정에서 그 모습을 바꾸지 않고 마멸되고말 때까지 계속 생산에 복무하는 이외에는 전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것이다. 그런데 그가 망각하고있는것은 생산자본의 모든 요소들은 부단히 그 현물형태에 있어서(로동수단이나 재료나 로동력으로서) 생산물에, 그것도 상품으로서 류통하는 생산물에 대립한다는것이며 또한 재료나 로동력으로 구성되여있

는 부분과 로동수단으로 구성되여있는 부분간의 구별은 로동력에 관하여 말한다면 다만 그것이 부단히 새로 구매된다(로동수단처럼 그 내용기간전체에 걸쳐 구매되는것이 아니라)는 점뿐이며 재료에 관하여 말한다면 같은 물품인것이 아니라 부단히 동종의 신품이 로동과정에서 기능한다는 점뿐이다. 그와 동시에 마치도 고정자본의 가치는 류통하지 않는듯한 외관이 조성되고있다. 비록 A. 스미스는 물론 고정자본의 마멸분을 이전에는 생산물가격의 일부분으로서 설명하였지만.

고정자본에 대립하는 류동자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강조되여있지 않다. 즉 그것이 이와 같은 대립을 이루는것은 다만 이 생산자본중 고정자본과는 달리 생산물의 가치에서 **전부** 보상되며 따라서 또 생산물의 형태변화에 전부 함께 참가하지 않으면 안되는 구성부분이기때문인것이다. 류동자본은 도리여 자본이 생산분야로부터 류통분야로 이행할 때에 상품자본 및 화폐자본으로서 취하는 모습과 혼동된다. 그러나 이 두 형태, 즉 상품자본과 화폐자본은 생산자본의 고정적구성부분과 류동적구성부분과의 쌍방의 가치의 담당자이다. 이 두 형태는 생산자본에 대립하는 류통자본인것이고 고정자본에 대립하는 류통자본인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자본에서 리윤이 생기는것은 고정자본이 생산과정에 머물러있기때문이며 류동자본에서 리윤이 생기는 것은 류동자본이 생산과정을 떠나서 류통되기때문이라는 전혀 그릇된 설명에 의하여—가변자본과 불변자본의 류동적구성부분이 **회전**에서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있기때문에 **가치증식과정** 및 잉여가치형성에서의 량자간의 본질적구별이 은폐되며 따라서 자본주의적생산의 전체 비밀이 더욱 더 불명확하게 된다. 류동자본이라는 공통한 명칭에 의하여 이 본질적

구별이 없어지고만다. 이것은 그후의 경제학에 의하여 한걸음 더 나아갔다. 즉 그들은 가변자본과 불변자본의 대립이 아니라 고정자본과 류동자본의 대립이 본질적이고 유일한 구별이라고 인정하였다.

A.스미스는 고정자본과 류동자본을 자본투하의 두가지 특수한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이들 각자가 리윤을 가져온다고 말하고나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고정자본은 류동자본의 협력없이는 수입을 가져올수 없다. 아무리 유용한 기계나 로동도구라 하더라도 그것들에 의하여 가공될 재료와 그것들을 사용하는 로동자의 생활수단을 공급하는 류동자본이 없이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할것이다.》(188페지)

여기에서 《수입을 가져온다》든가 《리윤을 얻는다》든가 하는 상술한 표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명백하여진다. 즉 이 두 자본부분은 다같이 생산물형성자로서 복무한다는것이다.

그런데 A. 스미스는 다음과 같은 례를 들고있다.

《농장주의 자본중 농구에 사용되는 부분은 고정자본이고 그의 고용인의 로임과 생활수단에 사용되는 부분은 류동자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고정자본과 류동자본간의 구별은 정당하게도 생산자본의 각이한 구성부분들의 류통의 차이, 회전의 차이에만 관련되는것으로 되여있다.

《그는 고정자본으로부터는 그것을 그자신의 소유물로 보유하는데 의하여 리윤을 얻으며 류동자본으로부터는 그것을 내놓는데 의하여 리윤을 얻는다. 그의 역축의 가격 또는 가치도 고정자본이다.》

여기에서도 구별은 가치에 관련되는것이고 소재적요소에 관

련되는것은 아니라고 정당하게 말하고있다.

《그것은 농구의 가격 또는 가치가 그러한것과 마찬가지이다. 그(역축)의 생활수단은 로동자의 류동자본이다. 그것은 그 고용인의 생활수단이 그러한것과 마찬가지이다. 농장주는 역축을 보유하는데 의하여 그리고 역축의 생활수단을 내놓는데 의하여 리윤을 얻는다.》

농장주는 가축의 사료를 보유하는것이며 그것을 판매하는것은 아니다. 그는 그것을 가축의 사료로서 소비하는 동시에 가축자체를 로동도구로서 소비한다. 구별은 다만 다음과 같은 점뿐이다. 역축의 유지에 사용되는 사료는 전부 소비되여버리며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판매에 의하여 얻는 새로운 사료에 의하여 부단히 보상되지 않으면 안되는데 가축자체는 한마리 한마리씩 순차로 로동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에 따라서만 보상될따름이다.

《부리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팔기 위하여 사다가 살찌운 가축의 가격과 그 사료는 류동자본이다. 농장주는 그 가축을 파는것에 의하여 리윤을 얻는다.》

어떠한 상품생산자도, 따라서 자본주의적상품생산자도 자기의 생산물, 자기의 생산과정의 결과를 판매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의 생산물이 그의 **생산**자본의 고정적구성부분을 이루는것도 아니며 류동적구성부분을 이루는것도 아니다. 생산물은 이제는 도리여 생산과정에서 밀려나와 상품자본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안되는 형태에 있는것이다. 비육가축은 생산과정에서 원료로서 기능하며 역축과 같은 로동도구로서 기능하는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실체로서 생산물에 들어가며 그 전체 가치가 보조재료[사료]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생산물에 들어간다. 비육가축이 생산자본의 류동부분인것은

바로 이때문이고 결코 판매되는 생산물—비육가축—이 여기서 완료, 즉 아직 비육되지 않은 가축과 동일한 현물형태를 가지고있기때문인것은 아니다. 이 생산물이 이러한 현물형태를 가지고있는것은 우연이다. 그러나 동시에 스미스는 이 례에서 생산요소에 포함되여있는 가치에 고정적이라거나 류동적이라는 규정을 부여하는것은 생산요소의 물적모습이 아니라 생산과정내부에서의 생산요소가 수행하는 기능이라는것을 알수 있었을것이다.

《종자의 전체 가치도 역시 고정자본이다. 종자는 토지와 곡물창고사이를 왕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소유자를 변경하지 않으며 따라서 고유한 의미에서는 류통하지 않는다, 농장주가 그의 리윤을 얻는것은 판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중식에 의하여서이다.》

여기에서 스미스가 한 구별이 아주 경솔하다는것이 특히 명백하게 발로되고있다. 그에 의하면 종자는 소유주가 변경되지 않으면, 즉 종자가 직접 년간 생산물에서 보상되며 년간 생산에서 공제되면 고정자본일것이다. 이와 반대로 만약 전체 생산물을 팔아서 그 가치의 일부분으로 타인의 종자를 구매한다면 종자는 류동자본일것이다. 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변경이 생기고 다른 한 경우에는 그것이 생기지 않는다. 스미스는 여기에서 또 류동자본과 상품자본을 혼동하고있다. 생산물은 상품자본의 소재적담당자이다. 그러나 물론 생산물중 현실적으로 류통에 들어가고 자기가 생산물로서 나온 그 생산과정에 다시 직접 들어가지 않는 부분만이 그러한것이다.

종자가 직접 생산물의 일부분으로서 공제되든 또는 생산물전체가 판매되여 그 가치의 일부분이 타인의 종자의 구입에 소비되든 두 경우에 다 가치의 보상이 실시될뿐이고 이러

한 보상에 의해서는 아무런 리윤도 얻어지지 않는다. 한 경우에는 종자는 생산물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상품으로서 류통에 들어가며 한 경우에는 그것은 부기상으로만 선대자본가치의 구성부분으로서 나타날뿐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나 그것이 생산자본의 류동적구성부분이라는데는 변함이 없다. 종자는 생산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전부 소비된다. 그리하여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 전부가 생산물중에서 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원료와 보조재료는 그것들이 사용가치로서 로동과정에 들어갈 때의 독립적인 모습을 잃게 된다. 고유한 의미에서의 로동수단은 이렇지 않다. 도구, 기계, 공장건물, 용기 등이 로동과정에서 복무하는것은 오직 그것들이 자기의 최초의 모습을 유지하여 이튿날도 어제와 꼭 같은 형태로 다시 로동과정에 들어가는 한에서이다. 그것들은 살아있는 동안, 로동과정에 있는 동안 생산물에 대하여 자기의 독립적인 모습을 유지하는데 그것들이 죽은후에도 역시 그 모습을 유지한다. 기계, 도구, 작업용건물 등등의 시체는 의연히 독립적으로 그것들의 방조밑에 형성된 생산물과는 따로 존재한다.》(제1권 제6장, 192페지[62])

생산수단이 생산물의 형성을 위하여 소비되는 방식의 이러한 차이, 즉 일방의 생산수단은 생산물에 대하여 그 독립적인 모습을 유지하는데 타방의 생산수단은 그 모습을 변경하거나 또는 전혀 상실한다는 이러한 차이—로동과정자체에 속하는 이러한 구별, 따라서 어떠한 교환도 없고 상품생산도 없는 단순한 자기수요, 례컨대 가부장적가족의 자기수요를 위하여 진행되는 로동과정에도 적합한 이러한 구별—이 구별을 A. 스미스는 외곡하고있다. 그것은 (1) 일방의 생산수단

은 그 모습을 유지하는데 의하여, 타방의 생산수단은 그 모습을 상실하는데 의하여 소유자에게 리윤을 가져온다고 하는, 여기에는 전혀 부당한 리윤규정을 끌어들이기때문이며 (2) 그는 로동과정에서 생산요소의 일부분에 일어나는 변화를 생산물의 교환, 즉 상품류통에 속하는 형태변환(매매) 즉 동시에 류통상품의 소유의 변환을 포함하는 형태변환과 혼동하고있기때문이다.

회전은 류통을 매개로 하는 재생산을 의미한다. 즉 생산물의 판매, 생산물의 화폐로의 전화와 화폐로부터 생산물의 생산요소로의 재전화를 매개로 하는 재생산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적생산자자신에게 있어서 그 자신의 생산물의 일부분이 직접 다시 생산수단으로서 복무하는 한 그 생산자는 자기자신에 대한 그 부분의 판매자로서 나타나며 또 그의 부기에도 사태는 그렇게 표현된다. 이 경우에는 재생산의 이 부분은 류통에 의하여 매개되는것이 아니라 직접 실시되는것이다. 그러나 생산물중 이와 같이 다시 생산수단으로서 복무하는 부분은 (1) 그 가치가 전부 생산물에 들어가는 한에서 또 (2) 그자신이 새로운 생산물중에서 동일한 신품에 의하여 현물로 전부 보상되고있는 한 류동자본을 보상하는것이며 고정자본을 보상하는것은 아니다.

그런데 A.스미스는 류동자본과 고정자본이 무엇으로써 구성되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있다. 그는 고정자본을 형성하는 물건, 즉 소재적요소들을 렬거하고 또 류동자본을 형성하는 소재적요소들을 렬거하고있다. 마치도 이러한 규정이 이러한 물건들에 소재적으로, 천연적으로 붙어있기라도 하는것처럼,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오히려 이러한 물건이 자본주의적생산과정내부에서 수행하는 그 일정한 기능에서 나오는것

이 아니기라도 한것처럼 렬거하고있다. 그러나 그는 같은 장(제2편 제1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어떤 종류의 물건, 례컨대 직접적소비를 위하여 보유하는 주택과 같은것은

《그 소유자에게 수입을 가져올수 있으며 따라서 그에 대하여서는 **자본의 기능**으로써 그에게 복무할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공중에 대하여서는 결코 수입을 가져올수도 없고 자본의 기능으로써 복무할수도 없으며 그것에 의하여서는 인민전체의 수입이 조금도 증가될수 없다》(186페지).

이리하여 A. 스미스는 여기에서 자본의 속성은 물건 자체가 어떠한 사정하에서도 고유하고있는것이 아니라 그러한 물건이 사정여하에 따라서 수행하기도 하고 수행하지 않기도 하는 한 기능이라는것을 아주 명백하게 표명하고있다. 그러나 자본 일반에 대해서 말할수 있는것은 그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말할수 있는것이다.

동일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로동과정에 수행하는 기능이 다름에 따라 류동자본의 구성부분으로도 되고 고정자본의 구성부분으로도 된다. 례컨대 가축은 어떤 역축(로동수단)으로서는 차지농업가의 고정자본의 소재적존재방식을 이루지만 비육가축(원료)으로서는 그의 류동자본의 구성부분을 이룬다. 다른 한편으로 동일한 물건이 때로는 생산자본의 구성부분으로서 기능하고 때로는 직접적소비기금에 속할수도 있다. 례컨대 가옥은 로동장소로서 기능할 경우에는 생산자본의 고정부분이지만 주택으로서 기능할 경우에는 결코 자본형태가 아니며 주택이다. 동일한 로동수단이 때로는 생산수단으로서 기능할수 있고 때로는 소비수단으로서 기능할수 있는 경우는 많이 있다.

고정자본 및 류동자본의 성격을 물건에 갖추어져있는 성격으로 생각하는것은 스미스의 리해로부터 나오는 오유의 하나였다. 이미 로동과정의 분석(제1권 제5장[63])은 동일한 하나의 물건이 이 과정에서 노는 역할이 다름에 따라 로동수단, 로동재료, 생산물이라는 규정들이 어떻게 변경되는가 하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런데 고정자본과 비고정자본이라는 규정도 또한 이러한 요소들이 로동과정에서, 따라서 또 가치형성과정에서 노는 일정한 역할에 기초하고있는것이다.

그런데 둘째로, 고정자본과 류동자본을 형성하는 물건들을 렬거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것도 명백해지게 된다. 즉 스미스는 다만 생산자본(생산적형태로 있는 자본)에 관하여서만 적용되고 의의를 가지는 생산자본의 고정적구성부분과 류동적구성부분간의 구별을, 생산자본과 류통과정에 있는 자본에 속하는 형태, 즉 상품자본 및 화폐자본간의 구별을 혼동하고있다는것이 그것이다. 그는 같은 개소에서(188페지)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류동자본은…개개의 상인의 수중에 있는 각종 생활수단, 재료 및 완성품과 그것들을 류통시키고 분배하기 위하여 필요한 화폐로써 구성된다….》

사실상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우에서 말한것과는 반대로 또다시 류동자본이 상품자본 및 화폐자본과 동등시되여있다. 즉 결코 생산과정에 속하는것이 아니고 고정자본에 대립하는 류동자본을 이루는것이 아니라 생산자본에 대립하는 류통자본을 이루는 두 자본형태와 동등시되고있다. 다만 이러한 자본형태들과 **함께** 다음에는 또 재료(원료 또는 반제품)에 선대되여 현실적으로 생산과정에 합체된 생산자본

의 구성부분들이 나타나고있을따름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회의 총자본이 자연적으로 분할되는 세 부분중의 제3부분, 즉 최후의 부분은 류동자본인데 그 특징은 그것이 오직 류통 또는 소유자 변경에 의하여만 수입을 가져온다는것이다. 이 자본도 또한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화폐로서이다.…》

그러나 화폐는 결코 생산자본, 즉 생산과정에서 기능하는 자본의 한 형태는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다만 자본이 그 류통과정에서 취하는 형태의 하나에 불과하다.

《둘째는 도살업자, 축산업자, 농장주의…수중에 있고 그들이 그것을 판매하여 리윤을 획득하려고 하는 식량의 재고로서이다.…넷째, 즉 마지막으로는 이미 만들어졌지만 아직 상인이나 제조업자의 수중에 있는 제품으로서이다.》—그리고 《셋째는 전혀 가공되지 않았거나 또는 다소간 가공된 재료로서이다. 즉 의류, 가구, 건물의 재료로서 아직 이러한 세 형태의 어느것으로도 완성되지 않고 농업가, 제조업자, 견직물상, 포목상, 목재상, 목공, 가구사, 벽돌제조업자 등의 수중에 남아 있는것으로서이다.》

둘째와 넷째는 생산물로서 생산과정에서 밀려나와 판매되지 않으면 안되는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포함하고있지 않다. 요컨대 이러한 생산물은 이제는 상품으로서 따라서 또 상품자본으로서 기능하며 따라서 그것들의 마지막 용도가 어떠한것이든간에, 즉 그것들의 목적(사용가치)으로 보아 결국은 개인적소비에 들어가야 할것이든, 생산적소비에 들어가야 할것이든간에 이제는 생산자본의 어떠한 요소도 이루지 않는 형태를 취하며 또 과정에서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는것이다. 이러한 생산물은 둘째에서는 식료품이며 넷째에서는 기타의

모든 완성생산물, 즉 그자신이 또 다만 완성로동수단 또는 완성기호품(둘째 조항에 포함되여있는 식료품이외의)으로써 구성되여있는 생산물이다.

스미스가 여기에서 상인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있는것은 그의 혼란을 보여준다. 생산자가 자기의 생산물을 상인에게 판매한 한에서는 그 생산물은 이제는 그의 자본의 어떠한 형태도 이루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보면 그것은 생산자 이외의 다른 사람의 수중에 있다 하더라도 물론 의연히 상품자본이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상품자본이기때문에 그것은 고정자본도 아니며 류동자본도 아니다.

대체로 생산자의 직접적인 자가수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생산에서는 어느 생산에서나 생산물은 상품으로서 류통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팔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리윤을 얻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여하튼 생산자가 그것에 의하여 살아갈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이다. 자본주의적생산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 첨가되는것은 상품이 판매되면 상품에 포함되여있는 잉여가치도 실현된다는 사정이다. 생산물은 상품으로서 생산과정에서 나오며 따라서 그것은 생산과정의 고정적요소도 아니며 류동적요소도 아니다.

그밖에 스미스는 여기에서 자기가 말한것을 자기로 취소하였다. 완성된 생산물은 그 소재적모습 또는 그 사용가치, 그 효용이 어떠하든간에 여기에서는 모두 상품자본이며, 즉 류통과정에 속하는 형태에 있는 자본이다. 이러한 형태에 있는것으로서는 완성생산물은 그 소유자의 수중에 있을수도 있는 생산자본의 어떠한 구성부분도 이루지 않는다. 이것은 그것이 팔리면 그 구매자의 수중에서 생산자본의 류동적구성부분이거나 고정적구성부분으로 되는것을 조금도 방해하지 않

는다. 여기에서 명백한바와 같이 어떤 때에는 생산자본에 대립되는 상품자본으로서 시장에 나타나는 그 동일한 물건이 일단 시장에서 끌려나오면 생산자본의 류동적구성부분 또는 고정적구성부분으로서 기능할수도 있고 기능하지 않을수도 있다는것이다.

면방적업자의 생산물—방사—은 그의 자본의 상품형태이며 그에게 있어서는 상품자본이다. 그것은 이제는 그의 생산자본의 구성부분으로서 기능할수 없다. 로동재료로서도 로동수단으로서도 기능할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구매하는 직조업자의 수중에서는 그것은 그의 생산자본에 그 류동적구성부분의 하나로서 합체된다. 그런데 면방적업자에게 있어서는 방사는 그의 고정자본 및 류동자본의 일부분의 가치의 담당자이다(잉여가치는 별도로 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기계는 기계제조업자의 생산물로서는 그의 자본의 상품형태이며 그에게 있어서는 상품자본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 형태에 머물러있는 한 그것은 류동자본도 아니고 고정자본도 아니다. 이 기계를 사용하는 어떤 공장주에게 판매하면 '그것은 생산자본의 고정적구성부분으로 된다. 그 사용형태로 보아 생산물의 일부분이 그것이 나온 과정에 다시 생산수단으로서 들어갈수 있는 경우 례컨대 석탄이 석탄생산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석탄생산물중 판매에 돌려진 바로 그 부분이 대표하는것은 류동자본도 고정자본도 아니며 상품자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생산물이 그 사용형태로 보아 로동재료로서이든 로동수단으로서이든 결코 생산자본의 요소를 이룰수 없는 경우도 있을수 있다. 례컨대 일부 생활수단이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생산자에게 있어서는 상품자본이며 고정자본 및 류동자본의 가치의 담당자이다.

그리고 그것의 생산에 사용된 자본이 전부 한꺼번에 보상되지 않으면 안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일부분씩 보상되지 않으면 안되는가에 따라서, 즉 그 자본이 자기의 가치를 전부 생산물에 이전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이전하는가에 따라서 이 생산물은 혹은 고정자본의, 혹은 류동자본의 가치의 담당자로 되는것이다.

스미스에게 있어서는 제3항에서는 재료(원료, 반제품, 보조재료)가 일방적으로는 이미 생산자본에 합체된 구성부분으로서 나타나는것이 아니라 실제상 다만 사회적생산물일반을 구성하는 제사용가치의 특수한 한 종류로서, 제2항과 제4항에서 렬거된 다른 소재적구성부분, 즉 생활수단 등과 함께 병존하는 상품량의 특수한 한 종류로서 나타나고있을뿐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재료는 확실히 생산자본에 합체된것으로서, 따라서 또 생산자의 수중에 있는 생산자본의 요소로서 렬거되고있다. 혼란이 생기는것은 재료가 한편으로는 생산자의 수중에서(《농업가, 제조업자》 등의 수중에서) 기능하는것으로서 파악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인의 수중에서, 즉 재료가 단순한 상품자본이고 생산자본의 구성부분이 아닌 상인(《견직물상, 포목상, 목재상》)의 수중에서 기능하는것으로서 파악되고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A. 스미스는 여기에서 류동자본의 제 요소를 렬거할 때 생산자본에 관해서만 적용되는 고정자본과 류동자본간의 구별을 전혀 망각하고있다. 오히려 그는 상품자본과 화폐자본, 즉 류통과정에 속하는 두 자본형태를 생산자본에 대립시키고있으나 그것도 다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있을 따름이다.

마지막으로 주목되는것은 A. 스미스가 류동자본의 구성

부분을 렬거할 때 로동력을 망각하고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중의 리유에서이다.

바로 우에서 본바와 같이 화폐자본을 별도로 한다면 스미스에게 있어서는 류동자본이란 상품자본의 별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로동력이 시장에서 류통하는 한 그것은 자본이 아니며 상품자본의 형태가 아니다. 로동력은 대체로 자본이 아니다. 로동자는 하나의 상품을, 즉 자기자신의 가죽을 시장에 내놓기는 하지만 결코 자본가는 아니다. 로동력이 판매되여 생산과정에 합체될 때에—즉 그것이 상품으로서 류통하지 않게 된후에야 비로소 생산자본의 구성부분으로 된다. 즉 잉여가치의 원천으로서 가변자본으로 되며 로동력에 투하된 자본가치의 회전에 관하여서는 생산자본의 류동적구성부분으로 된다. 스미스는 여기에서 류동자본을 상품자본과 혼동하고있기때문에 로동력을 그가 말하는 류동자본의 항목에 넣을수가 없었다. 그렇기때문에 가변자본은 여기서는 로동자가 자기의 임금으로써 구매하는 상품의 형태, 즉 생활수단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형태에서는 로임에 투하된 자본가치는 류동자본에 속한다는것으로 된다. 그러나 생산과정에 합체되는것은 로동력이고 로동자자신이며 로동자의 생존을 유지하는 생활수단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본바와 같이(제1권 제21장) 사회적으로 보면 로동자의 개인적소비에 의한 로동자 그 자체의 재생산도 사회적자본의 재생산과정에 속하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고찰하고있는, 개개의, 고립적인 생산과정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스미스가 고정자본의 부류에 넣고있는 《습득된 유용한 제 능력》(187페지)이란 그것이 임금로동자의 《제 능력》이며 임금로동자가 자기의 로동을 그의 《제 능력》과 함께 판매하였다면 반

대로 류동자본의 구성부분을 이루는것이다.

스미스가 전체 사회적부를 (1) 직접적소비기금, (2) 고정자본, (3) 류동자본으로 분류하고있는것은 그의 큰 오유이다. 이에 의하면 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여야 할것이다. (1) 소비기금. 이것은 그 어떤 부분은 언제나 자본으로서 기능**할수 있다** 하더라도 기능하고있는 사회적자본의 어떠한 부분도 이루지 않는다. 그리고 (2) 자본. 이 분류에 의하면 부의 일부분은 자본으로서 기능하고 다른 부분은 비자본 또는 소비기금으로서 기능한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응의 어느 하나로 되는것이 포유동물에 있어서 자연적필연인것처럼 고정자본 또는 류동자본의 그 어느 하나로 되는것이 어느 자본에서나 피할수 없는 필연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본바와 같이 고정자본과 류동자본간의 대립은 오직 **생산**자본의 제 요소에 대해서만 적용될수 있는것이며 따라서 이밖에도 또 고정자본이나 류동자본**일수 없는** 형태로 있는 매우 많은 자본—상품자본이나 화폐자본—이 존재하는것이다.

생산물중 개별적인 자본주의적생산자자신에 의해 매매를 거치지 않고 직접 현물형태대로 다시 생산수단으로서 소비하는 부분을 제외한다면 사회적생산물의 총량이—자본주의적기초우에서는—상품자본으로서 시장에서 류통하기때문에 생산자본의 고정적요소와 류동적요소뿐만아니라 소비기금의 모든 요소까지도 상품자본중에서 끌어내게 된다는것은 명백하다. 사실상 이것이 의미하는것은 자본주의적생산의 기초우에서는 생산수단과 소비수단이 비록 그것이 후에 가서는 소비수단 또는 생산수단으로서 복무할 사명을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우선 상품자본으로서 나타난다는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로동력자체도 비록 상품자본으로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품으로서 시장에 나타나는것이다.

그때문에 A.스미스에게 있어서는 또 다음과 같은 새로운 혼란이 나타난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있다.

《이 네 부분》

즉 《류동자본》의 제 부분, 말하자면 상품자본과 화폐자본이라는 류통과정에 속하는 형태로 있는 자본의 네 부분을 의미한다. —이 두 부분이 네 부분으로 되는것은 스미스가 상품자본의 구성부분들을 다시 소재적으로 구별하고있기때문이다.—

《중 세 부분—식표품과 재료와 완성품—은 년년이 또는 더 오랜 기간 또는 더 짧은 기간을 두고 규칙적으로 류동자본으로부터 끌려나와 고정자본이나 또는 직접적소비를 위한 재고로 들어간다. 어느 고정자본이나 처음에는 다 류동자본에서 나온것이며 또 부단히 류동자본에 의하여 유지되지 않으면 안된다. 모든 유용한 기계와 로동도구는 처음에는 그것들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재료와 그것들을 만드는 로동자들의 생활수단을 공급하는 류동자본에서 나온것이다. 그것들은 또 언제나 잘 수리해두기 위하여서도 동종의 자본을 필요로 한다.》(188페지)

생산물중 직접 그 생산자에 의하여 다시 생산수단으로서 소비되는 부분을 제외한다면 자본주의적생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명제가 적용된다. 즉 모든 생산물은 상품으로서 시장에 오며 따라서 자본가에 대해서는 자기 자본의 상품형태로서, 즉 상품자본으로서 류통하는것이며 이에 있어서 그 생산물이 그 현물형태, 그 사용가치로 보아 생산자본의 (생산과정의) 요소로서, 생산수단으로서, 따라서 또 생산자본의 고정적요소 또는 류동적요소로서 기능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또는 기능할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생산적소

비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소비의 수단으로서만 복무할수 있는가 하는것은 관계없다. 모든 생산물은 상품으로서 시장에 투입된다. 따라서 모든 생산수단 및 소비수단, 생산적소비 및 개인적소비의 모든 요소는 상품으로서 구매되는데 의하여 다시 시장으로부터 끌어나오지 않으면 안된다. 이 자명한 리치는 물론 정당한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생산자본의 고정적요소에도 류동적요소에도, 모든 형태의 로동수단이나 로동재료에도 다 적용된다(이밖에도 생산자본의 요소들중에는 천연적으로 존재하고있어 생산물이 아닌것도 있다는것이 망각되고있다.). 기계도 면화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구매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떤 고정자본이나 처음에 류동자본으로부터 생긴다고 하는 결론은 결코 나오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결론이 나오게 되는것은 오직 스미스가 류통자본과 류동자본, 즉 비고정자본과를 혼동하고있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스미스는 자기가 말한것을 자기가 부인하고있다. 그자신의 말에 의한다면 기계는 상품으로서는 류동자본의 넷째 조항의 일부를 이룬다. 그러므로 기계가 류동자본에서 나온다는것은 기계는 그것이 기계로서 기능하기전에 상품자본으로서 기능하였다는것, 그러나 기계는 소재적으로는 그 자체에서 나온다는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마치도 방적업자의 자본의 류동적요소로서의 면화가 시장의 면화에서 나오는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스미스는 더 설명을 계속하여 기계를 만드는데는 로동과 원료가 필요하다는 리유로 고정자본을 류동자본에서 이끌어내고있는데 이 경우에 첫째로, 기계를 만드는데는 또 로동수단, 따라서 고정자본도 필요하며 둘째로는 원료를 만드는데도 역시 기계나 기타 고정자본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생산자본은 언제나 로동수단을 포함하나 반드시

로동재료를 포함하고있는것은 아니기때문이다. 스미스자신도 곧 그뒤를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토지나 광산이나 어장은 모두 그것을 개발하기 위하여 고정자본과 류동자본의 두가지를 필요로 한다.》

즉 그는 원료의 생산에는 류동자본뿐만아니라 고정자본도 필요하다는것을 인정하고있는것이다.

《그리고》(여기에 또 새로운 오유가 있다.)《그것들의 생산물은 그 자본들뿐만아니라 **사회에 있는 모든 다른 자본**도 리윤을 붙여서 보상한다.》(188페지)

이것은 전적으로 그릇된것이다. 그것들의 생산물은 모든 다른 산업부문을 위한 원료나 보조재료 등을 공급한다. 그러나 그것들의 가치는 모든 다른 사회적자본의 가치를 보상하는것이 아니다. 이 가치는 다만 그것들자체의 자본가치(+잉여가치)를 보상할따름이다. 여기에서 A. 스미스는 또다시 중농학파에 대한 회상에 잠겨있다.

상품자본중 로동수단으로서만 복무할수 있는 생산물로써 구성되여있는 부분은 조만간에—그것이 결코 쓸모없이 생산되지 않고 팔리지 않는것이 아니라면—역시 로동수단으로서 기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 즉 자본주의적생산의 기초우에서는 그것들이 상품이 아니게 되자마자 사회적생산자본의 고정부분의 미리 예측될수 있는 현실적인 요소를 형성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은 사회적으로 보면 옳다.

여기에서 생산물의 현물형태로부터 생기는 하나의 구별이 나타난다.

례컨대 방적기계는 방적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즉 생산

요소로서, 따라서 자본주의적관점에서는 생산자본의 고정적 구성부분으로서 기능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사용가치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방적기계는 이동시킬수 있다. 그것은 그것이 생산된 나라에서 수출되여 외국에서 원료 등이나 또는 쌈팡주와의 교환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판매될수 있다. 그 경우에 그것이 생산된 나라에서는 그것은 상품자본으로서만 기능할뿐이며 그것이 판매된후이라 해도 결코 고정자본으로서는 기능하지 않는다.

이와는 반대로 토지와 합체되는데 의하여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고 따라서 또 그 장소에서밖에는 소비될수 없는 생산물 례컨대 공장건물, 철도, 교량, 턴넬, 도크, 개량된 토지 등등은 물체로서의 그 모습대로는 수출될수 없다. 이러한것들은 이동시킬수 없다. 그것들은 쓸모없게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판매된다면 그것들이 생산된 나라에서 고정자본으로서 기능하지 않으면 안되든가 할것이다. 판매하기 위하여 투기적으로 공장을 세우거나 또는 토지를 개량하려고 하는 자본주의적생산자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물건들은 그의 상품자본의 형태이며 따라서 A. 스미스에 의하면 류동자본의 형태인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보면 이러한 물건들은—쓸모없는 것으로 되지 않기 위하여는—결국 그 국내에서, 그것들자신의 소재지에 고정된 생산과정에서 고정자본으로서 기능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동시킬수 없는 물건들은 그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고정자본인것은 결코 아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주택 등으로서는 소비기금에 속하고 결코 사회적 자본에는 속하지 않을수도 있다. 비록 이러한 물건은 사회적 부의 한 요소를 이루었으며 자본은 이 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는 하지만. 스미스식으로 말하면 이러한 물건들의 생산

자는 그것들을 파는데 의하여 리윤을 얻는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류동자본이다! 이러한 물건들의 리용자, 그 최종적구매자는 다만 그것들을 생산과정에서 사용하는데 의해서만 그것들을 리용할수 있다. 따라서 그것들은 고정자본이다!

소유권 례컨대 철도의 소유권은 매일같이 그 소유자를 바꿀수 있는것이고 그 소유자는 이 권리를 심지어 외국에 파는데 의하여서도—그리하여 철도자체는 수출될수 없으나 그 소유권은 수출될수 있는 경우에도—리윤을 얻을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물건들은 그것들의 소재지인 그 나라 안에서는 놀고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생산자본의 고정적구성부분으로서 기능하든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장주 A는 자기의 공장을 공장주 B에게 판매하는데 의하여 리윤을 얻을수 있지만 이것은 그 공장이 종전과 같이 고정자본으로서 기능하는것을 조금도 방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장소적으로 고정되여있어 토지에서 분리될수 없는 로동수단은 그 생산자에게 있어서는 상품자본으로서 기능할수 있고 **그의** 고정자본의 요소를 형성하는것이 아니지만 (고정자본은 그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건물이나 철도 등의 건설에 사용하는 로동수단으로써 구성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자국내에서 고정자본으로서 기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이 미리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부터 반대로 고정자본은 꼭 이동할수 없는 물건들로써 구성된다고 말할수는 없다. 선박이나 기관차는 그 운동에 의하여서만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물건들은 그 생산자에게 있어서는 아니지만 그 사용자에게 있어서는 고정자본으로서 기능한다. 다른 한편 가장 현실적으로 생산과정에 고정되여 거기에서 살고 거기에서 죽으며 또 일단 거기에 들어간 다음에는 거기

를 다시 떠나지 않는 물건들중에도 생산자본의 류동적구성부분으로 되는것이 있다. 례컨대 기계의 운전을 위하여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석탄, 공장건물의 조명을 위하여 소비되는 가스 등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물건들이 류동적인것은 그것들이 생산물과 함께 물체적으로 생산과정을 떠나 상품으로서 류통하기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의 가치가 그것들의 협력에 의하여 생산되는 상품의 가치로 전부 들어가며 따라서 또 상품의 판매에 의하여 전부 보상되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이다.

바로 앞에서 A. 스미스에게서 인용한 개소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에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다.

《그것들을》(기계 등등을) 《만드는 로동자들의 생활수단을 공급하는 류동자본.》

중농학파들에게 있어서는 로임으로서 선대되는 자본부분은 정당하게도 시초의 선대에 대립하는 년년의 선대에 들어가고있다. 다른 한편 중농학파에게 있어서는 차지농업가가 사용하는 생산자본의 구성부분으로서 나타나는것은 로동력자체가 아니라 농업로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수단(스미스가 말하는 《로동자의 생활필수품》)이다. 이것은 마침 그들의 독특한 학설과 련관되여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는 로동이 생산물에 첨가하는 가치부분은(원료, 로동도구 등, 요컨대 불변자본의 소재적구성부분이 생산물에 첨가하는 가치부분과 꼭 마찬가지로) 다만 로동자들에게 지불되는 로동력으로서의 그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소비되여야 할 생활수단의 가치와 같을따름이다.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구별을 발견한다는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학설자체에 의하

여 불가능하게 되여있다. 로동이 잉여가치를 생산한다면(로동 그자체의 가격을 재생산하는 이외에) 그것은 공업에서도 농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잉여가치를 생산한다. 그러나 이 학설에 의하면 오직 농업이라는 한 생산부문에서만 로동은 잉여가치를 생산하므로 잉여가치는 로동으로부터 생기는것이 아니라 이 부문에 있어서의 자연의 특수한 활동(협조)으로부터 생긴다. 그리고 오직 이 리유로서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농업로동이 다른 종류의 로동과는 달라서 생산적로동이라는 것이다.

A. 스미스는 로동자들의 생활수단을 고정자본과 대립되는 류동자본으로서 규정하고있는데 그것은

1) 그가 고정자본과 대립되는 류동자본을 류통분야에 속하는 자본의 형태, 즉 류통자본과 혼동하고있기때문이다. 이 혼동은 스미스 이후의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무비판적으로 계승되여온것이다. 그렇기때문에 그는 상품자본을 생산자본의 류동적구성부분과 혼동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 사회적생산물이 상품형태를 취하는 곳에서는 로동자의 생활수단이나 비로동자의 생활수단이나, 로동재료나 로동수단 그자체는 모두 상품자본에서 제공되지 않을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2) 그러나 스미스에게 있어서는 중농학파의 견해도 혼입되고있다. 비록 이 견해는 스미스자신이 전개한 심오한—실제로 과학적인—부분과 모순되는것이지만,

선대된 자본은 일반적으로 생산자본으로 전환된다. 즉 그것은 생산요소의 모습을 취하며 이러한 생산요소 자체가 또 이전의 로동의 생산물이다(생산요소중에는 로동력도 포함된다.). 오직 이 형태로서만 선대자본은 생산과정에서 기

능할수 있다. 그런데 만약 자본의 가변부분이 전환된것인 로동력 그자체 대신에 로동자의 생활수단을 놓는다면 이 생활수단자체가 가치형성에 관련하여서는 생산자본의 다른 요소들, 즉 원료나 역축의 생활수단과 구별되지 않는다는것은 명백하며 그때문에 스미스는 중농학파들을 본받아 우에서 인용한 개소에서도 역축의 생활수단과 로동자의 생활수단을 동렬에 놓고있는것이다. 생활수단은 자기로서 자기의 가치를 증식시킬수는 없다. 즉 자기의 가치에 잉여가치를 첨가할수는 없다. 생활수단의 가치는 생산자본의 다른 요소들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다만 생산물의 가치에서 다시 나타날수 있을따름이다. 생활수단은 그자체가 가지고있는것보다 더 큰 가치를 생산물의 가치에 첨가할수는 없다. 생활수단은 원료나 반제품 등과 마찬가지로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만 로동수단으로써 구성되여있는 고정자본과 구별된다. 즉 생활수단은(적어도 그 대가를 지불하는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그것의 참여에 의하여 형성되는 생산물에 있어서 전부 소비되며 따라서 그 가치도 전부 보상되지 않으면 안되는데 고정자본의 경우에는 그것들이 점차적으로 일부분씩만 진행된다는 점에서이다. 따라서 생산자본중 로동력(또는 로동자의 생활수단)에 선대된 부분은 생산자본중 다른 소재적요소들로부터 이제는 다만 소재적으로만 구별될뿐이며 로동과정 및 가치증식과정에 관련되여 구별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 객체적인 생산물형성자의 한 부분(스미스가 일반적으로 《제 재료》라고 부르고있는것)과 함께 류동자본의 범주에 들어가는것으로서만 객체적인 생산물형성자중 고정자본 범주에 들어가는 다른 부분에 대립하는것으로서 이것과 구별되는것이다.

자본중 로임으로 투하되는 부분이 생산자본의 류동부분에 속하며 이 류동성을 생산자본의 고정적구성부분과 대립하여 원료 등과 같은 대상적인 생산물형성자의 일부분과 공통으로 가지고있다는것은 자본중의 이 가변부분이 불변부분에 대립하여 가치증식과정에서 노는 역할과는 절대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것이다. 그것은 다만 선대자본가치의 이 부분이 어떻게 류통을 매개로 하여 생산물의 가치중에서 보상되고 갱신되며 따라서 재생산되지 않으면 안되는가 하는것에만 관계가 있을따름이다. 로동력의 반복적구매는 류통과정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로동력에 투하된 가치는 생산과정에서 비로소 (로동자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자본가에게 있어서) 일정한 불변량으로부터 어떤 가변량으로 전화되며 또 이 전화에 의하여 전반적으로 선대가치는 비로소 자본가치로, 자본으로, 자기를 증식하는 가치로 전화된다. 그러나 스미스에게 있어서처럼 로동력에 투하된 가치가 생산자본의 류동적구성부분으로서 규정되는것이 아니라 로동자의 생활수단에 투하된 가치가 생산자본의 류동적구성부분으로서 규정된다면 가변자본과 불변자본간의 구별에 대한 리해는 불가능하게 되며 따라서 또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일반에 대한 리해도 불가능하게 된다. 대상적인 생산물형성자에 투하된 불변자본과 대립하여 가변자본이라고 하는 이 자본부분의 규정은 로동력에 투하된 자본부분은 회전에 관련하여서는 생산자본의 류동부분에 속한다고 하는 규정하에 매몰된다. 이 매몰은 로동력 대신에 로동자의 생활수단이 생산자본의 요소로서 드는데 의하여 완성된다, 로동력의 가치가 화폐로 선대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직접 생활수단으로 선대되는가 하는것은 아무래도 좋다. 물론 이 후자의 경우는 자본주의적생산의 기초우에서는 오직

례외일따름이지만.(24)

이와 같이 A. 스미스에 의하여 류동자본이라는 규정이 로동력에 투하된 자본가치에 대해서 결정적인것으로서 고정되였는데 이것—중농학파적전제가 없는 중농학파적규정—에 의하여 스미스는 드디여 그의 후계자들이 로동력에 투하된 자본부분을 가변자본으로서 인식하는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스미스자신이 다른 개소에서 한 보다 심오하고 정확한 전개는 승리하지 못하였는데 그의 이 오유는 승리하였다. 그 후의 저술가들은 더 전진하였다. 그들은 고정자본에 대립하는 류동자본을 로동력에 투하된 자본부분의 결정적규정으로 삼았을뿐만아니라 로동자를 위한 생활수단에 투하된다는것을 류동자본의 본질적규정으로 삼았다. 여기에서 자연히 다음과 같은 학설이 나왔다. 그 학설에 의하면 필요한 생활수단으로서 구성되여있는 로동기금은 하나의 주어진 크기이며[64] 이 크기는 일방으로는 사회적생산물에 대한 로동자의 몫의 한계를 물리적으로 제한하지만 타방으로는 로동력의 구입을 위하여 그 전체가 지출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이다.

---

(24) A. 스미스가 가치증식과정에서 로동력이 노는 역할의 리해에 도달하는 길을 자기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폐쇄하였는가 하는것은 그가 중농학파적방식에 따라 로동자의 로동을 역축의 로동과 동등시하고있는, 다음과 같은 문장에 의하여 증명된다. 《그(차지농업가)의 고용로동자뿐만아니라 그의 역축도 생산적로동자이다.》(제2편 제5장, 243페지)

제 11 장

고정자본과 류동자본에 관한 제 학설.
리 카 도

리카도가 고정자본과 류동자본간의 구별을 내놓는것은 다만 가치법칙의 례외, 즉 로임률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서만이다. 이에 관하여는 제3권에 가서 서술하기로 하자.[65]

그러나 원래의 불명확성은 벌써 다음과 같은 병렬에서 처음부터 나타나고있다.

《고정자본의 내구정도의 이러한 차이, 그리고 두 자본종류가 배합될수 있는 비률의 이러한 다양성》(25)

그런데 이 두 자본종류란 무엇인가 하고 물으면 다음과 같은 대답이 나온다.

《또 로동을 유지하여야 할 자본과 도구나 기계나 건물에 투하되여있는 자본이 여러가지로 배합될수 있는 비률.》(26)

---

(25) 《This difference in the degree of durability of fixed capital, and this variety in the proportions in which the two sorts of capital may be combined.》—리카도《경제학원리》, 25페지

(26) 《The proportions, too, in which the capital that is to support labour, and the capital that is invested in tools, machinery, and buildings, may be variously combined.》—우와 같음.

따라서 고정자본=로동수단이며 류동자본=로동에 투하되여있는 자본인것이다. 로동을 유지하여야 할 자본, 이것이 벌써 A. 스미스로부터 물려받은 어리석은 표현이다. 여기서는 류동자본은 한편으로는 가변자본과 혼동되고있다. 즉 생산자본중 로동에 투하된 부분과 혼동되고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대립이 가치증식과정으로부터—불변자본과 가변자본으로서—끌어낸것이 아니라 류통과정으로부터 끌어낸것(케케묵은 스미스적혼란)이기때문에 이중으로 그릇된 규정이 나온다.

첫째로, 고정자본의 내구정도의 차이와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으로써 이루어지는 자본구성의 차이가 동등한것으로서 인정되고있다. 그러나 후자의 차이는 잉여가치의 생산에 있어서의 차이를 규정한다. 이와 반대로 전자의 차이는 가치증식과정이 고찰되는 한에서는 다만 어떤 주어진 가치가 생산수단으로부터 생산물에 이전되는 방식에 대해서만 관계될뿐이며 류통과정이 고찰되는 한에서는 다만 투하자본의 갱신주기에 또는 다른 립장에서 고찰하면 자본이 선대되여있는 기간에만 관계될뿐이다. 만약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의 내적기구를 통찰하지 않고 기성의 현상의 립장에 선다면 이러한 구별은 사실상 일치한다. 각이한 생산부문에 투하된 제 자본간에서의 사회적잉여가치의 분배에서는 자본의 선대되는 각이한 기간의 차이(례컨대 고정자본에서는 수명의 차이)와 자본의 유기적구성의 차이(따라서 또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류통의 차이)는 일반적리윤률의 균등화와 가치의 생산가격으로의 전화에 있어서 다같이 작용한다.

둘째로, 류통과정의 관점에서 보면 한편에는 로동수단,

즉 고정자본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로동재료와 로임, 즉 류동자본이 있다. 이와 반대로 로동과정 및 가치증식과정의 관점에서 보면 한편에는 생산수단(로동수단과 로동재료) 즉 불변자본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로동력, 즉 가변자본이 있다. 자본의 유기적구성(제1권 제23장 제2절, 647페지[66])에 있어서는 동일한 가치량의 불변자본이 많은 로동수단과 적은 로동재료로 구성되고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많은 로동재료와 적은 로동수단으로 구성되고있는가 하는것은 아무래도 좋은것이며 모든것은 생산수단에 투하된 자본과 로동력에 투하된 자본간의 비률에 의존한다. 반대로 류통과정의 관점, 즉 고정자본과 류동자본간의 구별의 관점에서 보면 주어진 가치량의 류동자본이 어떠한 비률로 로동재료와 로임으로 분할되는가 하는것은 역시 아무래도 좋은것이다. 일방의 관점에서 보면 로동재료는 로동수단과 같은 범주에 속하여 로동력에 투하된 자본가치에 대립한다. 타방의 관점에서 보면 로동력에 투하된 자본부분은 로동재료에 투하된 자본부분과 같은 부류로 되여 로동수단에 투하된 자본부분에 대립한다.

그렇기때문에 리카도에게 있어서는 자본가치중 로동재료(원료와 보조재료)에 투하된 부분은 어느 편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아주 사라진다. 즉 그것은 고정자본의 편에는 적합하지 않다. 왜냐 하면 그것은 류통방식에서는 로동력에 투하된 자본부분과 완전히 일치하기때문이다. 다른 한편 그것은 또 류동자본의 편에 둘수도 없는것이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한다면 A. 스미스로부터 물려받았으며 암암리에 일관하고있는 고정자본과 류동자본의 대립과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대립의 동일시가 그자신을 폐기할것이기때문이다. 리카도는 강한 론리적감각을 가지고있으므로 이 사실을 감득하지

않을수 없으며 그렇기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이 자본부분이 완전히 사라진다.

여기서 말해두고싶은것은 자본가는 로임에 투하한 자본을 각이한 기한으로 경제학적용어로 말하면 선대하는것이며 이 기한은 그가 임금을 례컨대 매주 지불하는가, 매월 지불하는가 또는 매 3개월에 지불하는가에 따라서 각이하다는 점이다. 실제상으로는 사태는 반대이다. 로동자는 그가 지불을 받는것이 매주인가, 매월인가, 매 3개월인가에 따라서 자본가에게 자기의 로동을 1주간, 1개월간 또는 3개월간 선대하는것이다. 만약 자본가가 로동력의 대가를 후에 지불하지 않고 로동력을 **구매**한다고 하면, 즉 그가 1일분, 1주간분, 1개월분 또는 3개월분의 로임을 로동자에게 선불한다고 하면 이러한 기간에 대한 선대를 운운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자본가는 로동이 **이미** 수일간, 수주간 또는 수개월간 계속된후에 지불하고 로동을 구매하고 로동이 이제부터 계속**되어야 할** 기간에 대하여 지불하지 않기때문에 모든것은 자본주의적전도인것이다. 그리고 로동자가 로동으로 자본가에게 제공하는 선대는 자본가가 화폐로 로동자에게 제공하는 선대로 전화된다. 자본가가 생산물자체나 또는 그 가치를—그 생산에 필요한 각이한 기간 또는 그 류통에 필요한 각이한 기간에 따라—길거나 짧은 기간이 경과한후에야 비로소(그것에 합체되여 있는 잉여가치와 함께) 류통으로부터 회수하거나 실현한다는 것은 조금도 사태를 변동시키지 않는다. 어떤 상품의 구매자가 그 상품을 어떻게 처분하려 하는가 하는것은 판매자에게는 아무래도 좋은 일이다. 자본가는 기계의 전체 가치를 한꺼번에 선대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 가치는 다만 점차적으로 또 일부분씩 류통으로부터 환류한다고 하여 그가 그 기계

를 보다 더 값싸게 사들이는것은 아니다. 또 면화의 가치는 면화로써 체조되는 생산물의 가치에 전부 들어가며 따라서 생산물의 판매에 의하여 전부 한꺼번에 보상된다고 하여 자본가가 면화의 값을 더 비싸게 지불하는것은 아니다.

리카도에게로 돌아가자.

1) 가변자본의 특징은 일정한 주어진(따라서 그자체로서 불변적인) 자본부분, 즉 주어진 가치액(로동력의 가치와 같다고 가정된 가치액, 비록 로임이 로동력의 가치와 같은가, 그보다 더 큰가 작은가 하는것은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좋은것이지만)이 자기를 증식하며 가치를 창조하는 힘—자본가로부터 지불받은 자기의 가치를 재생산할뿐만아니라 동시에 잉여가치, 즉 이전부터 존재하는것이 아니며 어떤 등가에 의하여 사들이는것도 아닌 가치를 생산하는 로동력—과 교환된다는것이다. 로임에 투하되는 자본부분의 이러한 특징적인 속성은 이 자본부분을 가변자본으로서 불변자본과 완전히 구별되게 하는데 이 속성도 로임에 투하되는 자본부분이 단순히 류통과정의 관점에서 고찰되여 로동수단에 투하된 고정자본에 대하여 류동자본으로서 나타난다면 이 속성은 사라지고마는것이다. 이러한것은 벌써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나온다. 즉 이 경우에는 이 자본부분이 불변자본의 한 구성부분, 즉 로동재료에 투하된 구성부분과 함께 한 부류—류동자본이라는 부류—에 들어 불변자본의 다른 구성부분, 즉 로동수단에 투하된 구성부분에 대립된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그 경우에 잉여가치, 따라서 투하되는 가치액을 자본으로 전화시키는 사정자체는 전혀 무시된다.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것도 무시된다. 즉 로임에 투하된 자본이 생산물에 첨가하는 가치부분은 새로 생산되는것(따라서 또 현실적으로 재생산되는것)

인데 원료가 생산물에 첨가하는 가치부분은 새로 생산되는 것, 현실적으로 재생산되는것이 아니라 다만 생산물의 가치 가운데 유지되고 보존될따름이며 따라서 생산물의 가치구성 부분으로서 재현할따름이라는 사실도 무시된다. 그때 류동자본과 고정자본간의 대립의 관점에서 나타나는 구별은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 있을뿐이다.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로동수단의 가치는 다만 일부분씩 상품의 가치에 들어가며 따라서 또 그 상품의 판매에 의하여 역시 다만 일부분씩 보상되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다만 조금씩 점차적으로 보상될뿐이다. 다른 한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로동력과 로동대상(원료 등)의 가치는 전부 그 상품에 들어가며 따라서 그 상품의 판매에 의하여 전부 보상된다. 그러한 한에 있어서는 류통과정에 관하여는 자본의 한 부분은 고정자본으로서 나타나며 다른 부분은 류동자본으로서 나타난다. 어느 경우에나 문제로 되는것은 주어진 선대가치의 생산물로의 이전이며 생산물의 판매에 의한 선대가치의 재보상이다. 구별은 이제는 다만 가치이천이, 따라서 또 가치보상이 조금씩 점차적으로 완성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한꺼번에 완성되는가 하는 점에만 있을뿐어다. 이리하여 모든것을 결정하는 가변자본과 불변자본간의 구별은 말살되며 따라서 잉여가치의 형성과 자본주의적생산의 전체 비밀, 즉 일정한 가치와 그것을 표시하는 물건을 자본으로 전화시키는 사정이 말살된다. 자본의 모든 구성부분은 이제는 다만 그 류통방식에 의해서만 구별될따름이다(그리고 상품의 류통은 물론 주어진 기존 가치와만 관계가 있을뿐이다.). 그리고 로임으로 투하된 자본과 원료나 반제품이나 보조재료에 투하된 자본부분에는 하나의 특수한 류통방식이 공통한것인데 이것에 의하여 로동수단에 투하된 자본

부분에 대립하는것이다.

이로부터 무엇때문에 자산계급적정치경제학이 A. 스미스의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범주와 《고정자본과 류동자본》의 범주와의 혼동을 본능적으로 고집하고 한세기동안이나 대대로 무비판적으로 되풀이하여왔는가 하는것을 리해할 수 있을것이다. 자산계급적정치경제학에서는 로임에 투하된 자본부분은 원료에 투하된 자본부분과는 별써 전혀 구별되지 않으며 다만 형식적으로—그것이 생산물에 의하여 조금씩 류통되는가 또는 전부 류통되는가 하는데 의하여—불변자본과 구별될뿐이다. 이리하여 자본주의적생산의, 따라서 또 자본주의적착취의 현실적운동을 리해하기 위한 기초는 대번에 허물어지고만다. 다만 선대가치의 재현이 문제로 될뿐이다.

스미스의 이러한 혼동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것은 리카도에게 있어서는 그후의 변호론자들—이들에게 있어서는 개념혼동이 오히려 비교란적인것으로 되여있다.—의 경우에 비하여 더 교란적일뿐만아니라 A. 스미소자신의 경우에 비하여서도 더 교란적인것으로 되여있다. 왜냐 하면 리카도는 A. 스미스에 비하여 더 철저하게 또 보다 더 명확하게 가치와 잉여가치를 전개하고있으며 사실상 천박한 A. 스미스에 대하여 심오한 A. 스미스를 고수하고있기때문이다.

중농학파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혼동은 조금도 없다. 년년의 선대와 시초의 선대간의 구별은 다만 자본 특히 농업자본의 각이한 구성부분의 각이한 재생산기간에만 관련되고 있다. 그런데 한편 잉여가치의 생산에 관한 그들의 견해는 그들의 학설중 이와 같은 구별에는 의존하지 않는 한 부분을 이루고있으며 그것도 그들이 학설의 요점으로서 내놓는 부분을 이룬다. 잉여가치의 형성이 자본 그자체로부터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일정한 한 생산분야인 농업에서만 있는 것으로 되고있다.

2) 가변자본의 규정에서—따라서 또 임의의 가치액의 자본으로의 전화에서—본질적인것은 자본가가 일정한 주어진 (그리고 이 의미에서 불변적인) 가치량을, 가치를 창조하는 힘과 교환한다는것이다. 어떤 가치량을 가치생산, 가치의 자기증식과 교환한다는것이다. 자본가가 로동자에게 화폐로써 지불하는가 또는 생활수단으로써 지불하는가 하는것은 이 본질적인 규정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것은 다만 자본가에 의하여 선대되는 가치의 존재방식을 변화시킬뿐이며 이 가치가 한 경우에는 화폐의 형태로 존재하여 그 화폐로써 로동자는 자기자신을 위하여 시장에서 자기의 생활수단을 구매하며 다른 경우에는 이 가치가 생활수단의 형태로 존재하여 그것을 로동자는 직접 소비한다. 발전된 자본주의적생산은 로동자가 화폐로써 지불을 받는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것은 마치도 일반적으로 자본주의가 류통과정에 의하여 매개되는 생산과정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화폐경제를 전제로 하는것과 같은것이다. 그러나 잉여가치의 창조—따라서 선대가치액의 자본화—는 로임, 즉 로동력의 구입에 투하된 자본의 화폐형태에서도 현물형태에서도 생기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치와 가치창조력과의 교환에서, 불변량의 가변량으로의 전환에서 생긴다.—

로동수단의 고정성의 크고작음은 그 내구정도에 의하여, 즉 물리적속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다른 사정이 변함없다면 로동수단은 그 내구정도에 따라서 보다 급속히 또는 보다 완만히 마멸하며 따라서 보다 길거나 보다 짧은 기간에 고정자본으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로동수단이 고정자본으로 기능하

는것은 결코 단순히 이 내구성이라는 물리적속성에만 의존하는것은 아니다. 금속공장에서 사용되는 원료는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와 마찬가지로 내구적이며 또 이 기계의 일부 구성부분들인 피혁, 목재 등에 비하면 그 이상으로 내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료로서 복무하는 금속은 류동자본의 일부분을 이루며 또 동일한 금속으로 만들어졌을수 있는, 기능하는 로동수단은 고정자본의 일부분을 이룬다. 따라서 동일한 금속이 한 경우에는 고정자본의 부류에 속하고 다른 한 경우에는 류동자본의 부류에 속하는것은 소재적인 물리적성질때문이 아니며 그 마멸성의 대소에 의한것도 아니다. 이 구별은 오히려 그 금속이 생산과정에서 한 경우에는 로동대상으로서, 다른 경우에는 로동수단으로서 노는 역할에서 생기는것이다.

로동수단이 생산과정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평균적으로 보면 반복되는 로동과정에서 로동수단이 길거나 짧은 기간에 부단히 반복적으로 복무할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로동수단의 기능에 의하여 그 소재의 내구성의 대소가 예정되여있다. 그러나 로동수단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소재의 내구성이 그자체로서 로동수단을 고정자본으로 되게 하는것은 아니다. 동일한 소재도 원료로서는 류동자본으로 된다. 그리고 상품자본과 생산자본의 구별을 류동자본과 고정자본의 구별과 혼동하고있는 경제학자들에게 있어서는 동일한 소재, 동일한 기계가 생산물로서는 류동자본이며 로동수단으로서는 고정자본이다.

그런데 로동수단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내구적인 소재가 그 로동수단을 고정자본으로 되게 하는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로동수단으로서 노는 역할은 그것이 비교적 내구적인 재료로써 구성될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로동수단의 소재의

내구성은 로동수단으로서의 그 기능의 한 조건이며 따라서 또 로동수단을 고정자본으로 되게 하는 류통방식의 물질적기초이다. 다른 사정들이 변함없다면 로동수단의 소재의 마멸성의 대소는 로동수단에 락인찍히우는 고정성을 적게 하거나 많게 하며 따라서 로동수단의 고정자본으로서의 자격과 아주 근본적으로 유착되여있다.

그런데 로동력에 투하된 자본부분이 오직 류동자본의 관점에서만, 즉 고정자본에 대립하는것으로서 고찰된다면 따라서 또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구별이 고정자본과 류동자본의 구별과 혼동된다면 마치 로동수단의 소재적현실성이 고정자본으로서의 성격의 본질적기초를 이루고있는것처럼 이번에는 그것에 대립하는것으로서 로동력에 투하된 자본의 소재적현실성으로부터 류동자본으로서의 성격을 도출하고 그다음에 또 가변자본의 소재적현실성에 의하여 류동자본을 규정하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로임에 투하된 자본의 현실적소재는 로동 그자체이며 활동하고있는, 가치를 창조하는 로동력이며, 산 로동인데 이것을 자본가는 죽은, 대상화된 로동과 교환하여 자기의 자본에 합체시켰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그의 수중에 있는 가치는 자기자신을 증식하는 가치로 전화한다. 그러나 자본가는 이 자기 증식력을 판매하는것이 아니다. 이 증식력은 그의 로동수단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그의 생산자본의 구성부분을 이룰따름이며 결코 그가 판매하는 완성생산물과 같이 그의 상품자본의 구성부분을 이루는것은 아니다. 생산과정에서는 생산자본의 구성부분으로서는 로동수단은 고정자본으로서 로동력에 대립하는것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또 로동재료나 보조재료도 류동자본으로서 로동력과 일치하는것이 아니다. 이

량자는 물적요인들인데 로동력은 인적요인으로서 이 량자에 대립한다.—이것은 로동과정의 관점에서 본것이다. 이 량자는 또 로동력, 즉 가변자본에 대하여 불변자본으로서 대립한다.—이것은 가치증식과정의 관점에서 본것이다. 여기에서 류통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한에 있어서의 소재적차이를 문제로 한다면 다만 다음과 같이 말할수 있을따름이다. 즉 대상화된 로동에 불과한 가치의 성질로부터 또 자기를 대상화하고있는 로동에 불과한 활동하고있는 로동력의 성질로부터 말할수 있는것은 로동력은 그 기능이 계속되는 기간에 부단히 가치를 창조하며 잉여가치를 창조한다는것이다. 그리고 로동력측에서는 운동으로서 나타나고 가치창조로서 나타나는것이 그 생산물측에서는 정지된 형태로 나타나고 창조된 가치로서 나타난다는것이다. 로동력이 작용을 끝마친다면 자본은 벌써 일방으로는 로동력으로 타방으로는 생산수단으로 구성되는것은 아니다. 로동력에 투하된 자본가치는 이제는(잉여가치와 함께) 생산물에 첨가된 가치이다. 과정을 반복하기 위해서는 생산물을 팔아서 그 대금으로 부단히 새로 로동력을 사서 생산자본에 합체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리하여 이것이 로동력에 투하된 자본부분으로 하여금 로동재료 등에 투하된 자본부분과 마찬가지로 로동수단에 고정된대로 있는 자본에 대립하여 류동자본의 성격을 가지게 한다.

이와 반대로 류동자본이라는 제2차적인, 그리고 로동력에 투하된 자본부분과 불변자본의 일부분(원료와 보조재료)에 공통되는 규정이—즉 류동자본에 투하된 가치는 이 자본의 소비에 의하여 생산된 생산물에 전부 이전하는것이고 고정자본의 경우처럼 점차적으로 조금씩 이전하는것이 아니라는것, 따라서 또 생산물의 판매에 의하여 전부 보상되지 않

으면 안된다는것이 로동력에 투하된 자본부분의 본질적규정으로 된다면, 로임에 투하된 자본부분도 소재적으로는 활동하고있는 로동력으로써 구성되는것이 아니라 로동자가 자기의 임금으로 구매하는 소재적요소들로써, 따라서 사회적상품자본중 로동자의 소비에 들어가는 부분으로써—생활수단으로써—구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리하여 고정자본은 비교적 완만히 마멸되며 따라서 비교적 완만히 보상되는 로동수단으로써 구성되며 로동력에 투하된 자본은 보다 급속히 보상되는 생활수단으로써 구성된다.

그러나 마멸의 보다 급속하다거나 보다 완만하다는 그 한계는 사라지고만다.

《로동자가 소비하는 식료품이나 의복, 그가 그속에서 작업하는 건물, 그의 로동을 돕는 도구는 모두 마멸하는 성질의것들이다. 그러나 이 각이한 자본들이 견디는 시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증기기관은 선박보다 오래 견디며 선박은 로동자의 의복보다, 로동자의 의복은 또 그가 소비하는 식료품보다 오래 견디는것이다.》(27)

여기에서 리카도가 망각하고있는것은 로동자가 거주하는 가옥, 그의 가구, 나이프, 포크, 기명 등등과 같은 그의 소비용기구류이며 이러한것들은 모두 로동수단과 동일한 내구성을 가지고있다는것이다. 동일한 물건들, 동일한 종류의 물건들이 여기서 소비수단으로서 나타나고 저기서는 로동수단으로서 나타난다.

---

(27) 《The food and clothing consumed by the labourer, the buildings in which he works, the implements with which his labour is assisted, are all of a perishable nature. There is, however, a vast difference in the time for which these different capitals will endure: a steam-engine will last longer than a ship, a ship than the clothing of the labourer, and the clothing of the labourer longer than the food which he consumes.》 리카도 《경제학원리》, 26페지.

구별은 리카도가 말하는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자본이 급속히 마멸되는것이여서 빈번히 재생산되여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완만하게 소비되여야 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류동자본의 항목으로나 고정자본의 항목으로 분류된다.》(28)

그는 여기에 다음과 같은 주를 달고있다.

《이것은 본질적이 아닌 구분이며 거기에는 정확한 분계선을 그을 수 없다.》(29)

그리하여 우리는 다행히도 중농학파들에게로 다시 도달하였다. 즉 이 학파에게 있어서는 《년년의 선대》와 《시초의 선대》간의 구별은 사용자본의 소비기간상의 구별, 따라서 또 각이한 재생산기간상의 구별이였던것이다. 다만 중농학파에게 있어서는 사회적생산에 대하여 중요한 현상을 표현하며 《경제표》에서도 류통과정과의 관련하에서 표시되고있는것이 여기에서는 주관적인 그리고 리카도 자신의 말하는바에 의하면 쓸데없는 구별로 될따름이다.

로동에 투하된 자본부분이 다만 그 재생산기간, 따라서 또 그 류통기간에 의해서만 로동수단에 투하된 자본부분과 구별된다면, 즉 그 한 부분은 생활수단으로써 구성되고 다른 부분은 로동수단으로써 구성되여 전자는 다만 마멸이 보다 급속하다는데 의해서만 후자와 구별되며 거기에다 이 전자자체가 또 각이한 마멸정도를 가지고있다면—물론 로동력에 투

---

(28) 《According as capital is rapidly perishable and requires to be frequently reprducced, or is of slow consumption, it is classed under the heads of circulating, orfixed capital.》

(29) 《A division not essential, and in which the line of demarcation cannot beaccurately drawn》

하된 자본과 생산수단에 투하된 자본간의 모든 특징적인 구별은 말살되여 없어지는것이다.

이것은 리카도의 가치론과도, 사실상 잉여가치론인 그의 리윤론과도 완전히 모순된다. 그는 일반적으로 고정자본과 류동자본의 구별을 다만 자본의 크기가 같아도 생산부문이 다르면 이 두 자본의 비률이 각이한것이 가치법칙에 영향을 미치는 한에서만 고찰하고있을뿐이며 그것도 이러한 사정의 결과로서의 로임의 등락이 생산물의 가격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는가를 고찰하고있을뿐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국한된 연구범위내에서조차 고정자본과 류동자본을 불변자본과 가변자본과 혼동함으로써 극히 큰 오유를 범하고있으며 또 사실상 그 연구에 있어서 전혀 그릇된 기초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즉 1) 자본가치중 로동력에 투하된 부분이 류동자본의 부류에 넣게 되는 한에서는 류동자본자체의 규정이 그릇되게 전개되고있으며 특히 로동에 투하된 자본부분을 이 부류에 넣는 제 사정이 그릇되게 전개되고있다. 2) 로동에 투하된 자본부분을 가변자본이라고 하는 규정과 그것을 고정자본에 대립되는 류동자본이라고 하는 규정과를 혼동하고있다.

처음부터 명백한 일이지만 로동력에 투하된 자본을 류동자본이라고 하는 규정은 제2차적인 규정이며 이 규정에서는 생산과정에서의 이 자본의 특징적인 구별은 말살되고있다. 왜냐 하면 이 규정에서는 한편으로는 로동에 투하된 자본과 원료 등에 투하된 자본이 동등한 의의를 가지기때문이다. 불변자본의 일부분을 가변자본과 동일시하는 항목은 불변자본에 대립하는 가변자본의 특징적구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로동에 투하된 자본부분과 로동수단에 투하된 자본부분이 호상 대립되기는 하나 결코 이 두

자본부분이 전혀 각이한 방식으로 가치의 생산에 참가한다는 것에 관련하여서가 아니라 이 두 자본부분으로부터 그것들의 주어진 가치가 오직 각이한 기간에만 생산물에 이전된다는것에 관련하여서이다.

이 모든 경우에는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주어진 로임으로나 원료의 가격으로나 로동수단의 가격으로 투하되는 주어진 가치가 **어떻게** 생산물에 이전되는가, 따라서 또 **어떻게** 생산물을 통하여 류통되고, 생산물의 판매에 의하여 출발점으로 복귀하는가 또는 보상되는가 하는것이 문제로 된다. 여기에서 유일한 구별은 이 《**어떻게**》라는것이며 이 가치의 이전의, 따라서 또 그 류통의 특수한 방식에 있는것이다.

모든 경우에 미리 계약에 의하여 규정된 로동력의 가격이 화폐로써 지불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생활수단으로써 지불되는가 하는것은 그것이 일정한 주어진 가격이라는 성격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화폐로써 지불되는 로임의 경우에는 생산수단의 경우에 그 가치뿐만아니라 그 소재도 생산과정에 들어가는것과는 달라서 화폐자체가 생산과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로동자가 자기의 임금으로써 구매하는 생활수단이 직접 류동자본의 소재적 모습으로서 원료 등과 함께 동일한 부류에 들어가 로동수단에 대립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태에 다른 외관을 주게 된다. 어떤 물건의 가치, 생산수단의 가치가 로동과정에서 생산물에 이전된다면 다른 물건의 가치, 생활수단의 가치는 그것을 소비하는 로동력에 재현되여 로동력의 활동에 의하여 역시 생산물에 이전된다. 이 두 경우에 동등하게 문제로 되는것은 생산중에 선대된 가치가 생산물중에 단순히 재현된다는것이다(중농학파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였으므로 공업로동이 잉

여가치를 창조한다는것을 부인하였다.). 우에서 웨일런드로부터 인용한 개소[67]에서도 그러하다.

《어떤 형태로 자본이 재현하는가 하는것은 문제가 아니다.…인간의 생존과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식료품이나 의복이나 거주도 또한 변화된다. 그것들은 무시로 소비되며 그것들의 가치는…재현한다.》(《정치경제학원리》, 31~32페지)

생산에 생산수단의 모습으로 선대된 자본가치나 생활수단의 모습으로 선대된 자본가치나 여기서는 동등하게 생산물의 가치에 재현된다. 이리하여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의 완전한 신비화가 성공적으로 완성되고 생산물중에 있는 잉여가치의 기원은 완전히 감추어진다.

그리고 또 이리하여 사회적생산과정에서 락인되는 사회적인 경제적성격을 이 물건들의 소재적성질에서 나오는 자연적성격으로 전화시키는 자산계급정치경제학에 고유한 물신숭배가 완성된다. 례컨대 《로동수단은 고정자본이다.》라고 하는것—이 모순과 혼란을 초래하는 스콜라학적규정. 로동과정의 연구에 있어서(제1권 제5장) 대상적구성부분들이 로동수단으로서 기능하는가, 로동재료로서 기능하는가 또는 생산물로서 기능하는가 하는것은 그것들이 일정한 로동과정에서 노는 그때그때의 역할에 의하여, 그것들의 기능에 의하여 결정된다는것이 지적되였는데 그것과 꼭 마찬가지로 로동수단이 고정자본인것은 다만 생산과정이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인 경우, 따라서 생산수단이 일반적으로 자본이고 자본이라는 경제적규정, 자본이라는 사회적성격을 가지는 경우만이다. 또 둘째로, 로동수단이 고정자본인것은 다만 그것이 자기의 가치를 어떤 특수한 방식으로 생산물로 이전하는 경우만이다. 그

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은 로동수단이고 고정자본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례컨대 비료와 같은 보조재료는 만약 그것이 로동수단의 대부분과 동일한 특수한 방식으로 가치를 인도한다면 로동수단이 아니라 해도 고정자본으로 된다. 이 경우에 물건들이 자체에 포섭하는 정의가 문제로 되는것은 아니다. 문제는 일정한 범주로 표현되는 일정한 기능이다.

로임에 투하되는 자본이라는것은 생활수단자체에 어떠한 사정하에서도 갖추어지는 속성이라고 말할수 있다면 《로동을 유지한다.》《to support labour》〔리카도, 25페지〕는 것은 또 이 《류동》자본의 성격으로 된다. 따라서 생활수단이 《자본》이 아니라면 그것은 로동력을 유지할수 없을것이다. 그런데 생활수단의 자본성격은 생활수단에다가 바로 타인의 로동에 의하여 **자본**을 유지한다는 속성을 부여하는것이다.

만일 생활수단 그자체가—자본이 로임으로 전화된후에는—류동자본이라고 한다면 로임의 크기는 주어진 류동자본량에 대한 로동자수의 비률에 의하여 결정된다.—이것은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명제이지만—는것으로 되나 실제상 로동자가 시장에서 끌어내는 생활수단량과 자본가가 자기의 소비를 위하여 처분할수 있는 생활수단량은 로동의 가격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률에 의하여 결정된다.

리카도는 바튼[29[a]]과 마찬가지로 도처에서 불변자본에 대한 가변자본의 비률을 고정자본에 대한 류동자본의 비률과 혼동하고있다. 그것이 어떻게 리윤률에 관한 그의 연구를 그르치게 하는가 하는것은 후에 보게 될것이다.[69]

리카도는 또 고정자본과 류동자본간의 구별과는 다른 원

(29[a]) 《사회의 로동자계급의 형편에 영향을 주는 제 사정의 고찰》 1817년 런던판. 이에 해당한 개소는 제1권, 655페지, 주[79]에 인용되였다.[68]

인에서 생기는 회전상의 구별을 고정자본과 류동자본의 구별과 동등시하고있다.

《류동자본이 류통하는 시간 또는 그 사용자에게로 복귀하는 시간은 매우 부동하다는것도 또한 지적해야 할것이다. 농장주가 파종하기 위하여 구매한 밀은 빵제조업자가 빵을 만들기 위하여 구매한 밀에 비하면 고정자본이다. 전자는 밀을 땅속에 묻어두고 1년전에는 그것을 회수할수 없는데 후자는 그것을 가루를 내여 빵을 만들어 고객에게 팔수 있으며 그리하여 1주일동안에 그의 자본을 해방시켜 같은 사업을 갱신하거나 다른 어떤 사업을 개시할수 있다.》(30)

이 경우에 특징적인것은 밀은 파종용으로서는 생활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원료로서 복무한다 하더라도 첫째로, 그자체로서 생활수단이기때문에 류동자본이며 둘째로는 그것의 환류가 1년이나 걸리기때문에 고정자본이라는것이다. 그러나 생산수단을 고정자본으로 되게 하는것은 그 환류의 완급일뿐만아니라 그것이 생산물에 가치를 인도하는 일정한 방식이다.

A. 스미스가 일으킨 혼란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1) 고정자본과 류동자본간의 구별이 생산자본과 상품자본간의 구별과 혼동되고있다. 례컨대 동일한 기계라 하더라도 그것이 상품으로서 시장에 있을 경우에는 류동자본이며 생산과정에 합체되여있는 경우에는 고정자본이다. 그렇다면 일정한 종류의 자본이 다른 모든 종류의 자본에 비하여 왜 더 고

(30) 《It is also to be observed that the circulating capital may circulate, or be returned to its employer, in very unequal times. The wheat bought by a farmer to sow is comparatively a fixed capital to the wheat purchased by a baker to make into loaves. The one leaves it in the ground, and can obtain no return for a year; the othean get it ground into flour, sell it as bread to his customers, and have his capital free, to renew the same, or commence any other employment in a week.》(26~27페지)

정적인가 또는 류동적인가 하는것은 전혀 알수 없다.

2) 모든 류동자본은 로임에 투하되였거나 또는 로임에 투하되지 않으면 안될 자본과 동일시되고있다. 례컨대 J. S. 밀[70] 등에 있어서 그러하다.

3) 이 가변자본과 불변자본간의 구별은 이미 바튼, 리카도 등에 있어서는 류동자본과 고정자본간의 구별과 혼동되고 있는데 그것이 마지막에는 전적으로 류동자본과 고정자본의 구별에 환원되고만다. 례컨대 램지[71]에 있어서 그러하였는데 그에 있어서는 원료 등에서나 로동수단에서나 모든 생산수단이 고정자본이고 다만 로임으로 투하된 자본만이 류동자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에서의 환원이 진행되기때문에 불변자본과 가변자본간의 현실적인 구별은 리해되지 않는다.

4) 모든 문제를 말할수 없이 협애한 은행사무원의 관점에서 보고있는 최근의 잉글랜드의, 특히 스코틀랜드의 경제학자들은 례컨대 머클라우드[72], 패터슨[73] 등에 있어서는 고정자본과 류동자본간의 구별이 《요구불예금》과 《통지예금》간의 구별로 되여버린다.

제 12 장

로 동 기 간

두 생산부문, 례컨대 면방적업과 기관차제조업을 들고 거기에서는 로동일은 길이가 같다고 례컨대 10시간의 로동과정이라고 하자. 한 부문에서는 매일, 매주 일정한 량의 완성생산물인 면방사가 제공되는데 다른 한 부문에서는 하나의 완성생산물, 한대의 기관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로동과정이 아마도 3개월동안 반복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한 경우에는 생산물은 분해될수 있는 성질의것이며 매일 또는 매주 동일한 작업이 반복적으로 개시된다. 다른 경우에는 로동과정은 련속적인것이며 상당한 수의 일로동과정을 포괄하고있으며 이러한 로동과정들이 결합되고 그 작업들의 련속성에 의하여 비교적 장기간이 경과한후에야 비로소 하나의 완성생산물을 제공한다. 이 경우에 1일의 로동과정에 길이는 같다 하더라도 생산행위의 길이에는, 즉 생산물을 완성하고 그것을 상품으로서 시장에 보내는데 필요한, 따라서 그것을 생산자본으로부터 상품자본으로 전화시키는데 필요한 반복되는 로동과정들의 길이에는 극히 큰 차이가 생긴다. 고정자본과 류동자본간의 구별은 이 차이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상술한 차이는 이 두 생산부문에 사용되는 고정자본과 류동자본의 비률이 바로 같은 경우에도 역시 존재할것이다.

생산행위의 지속시간의 차이는 분명히 각이한 생산분야들간에서 생길뿐만아니라 동일한 생산분야내에서도 제공되는 생산물의 크기에 의하여 생긴다. 보통의 주택은 큰 공장보다는 짧은 기간에 건축될수 있으며 따라서 보다 적은 련속적인 로동과정을 필요로 한다. 한대의 기관차를 만드는데 3개월이 필요하다면 한척의 장갑함을 건조하는데는 1년 또는 수년이 필요하다. 곡물의 생산에는 거의 1년이 필요하며 유각가축의 생산에는 수년이 필요하며 목재생산에는 12년 내지 100년이 필요할수도 있다. 농촌길은 몇개월이면 될수도 있지만 철도는 몇년이 걸려야 부설할수 있다. 보통의 주단은 1주일이면 짤수도 있지만 고블랑은 몇년이 걸린다, 등등. 요컨대 생산행위의 지속시간의 차이는 무한히 다양한것이다.

생산행위의 지속되는 길이의 차이는 분명히 자본투하가 같은 크기라도 회전속도의 차이, 즉 주어진 자본이 선대된 기간의 차이를 산생하지 않을수 없다. 가령 기계방적업과 기관차제조업이 같은 크기의 자본을 사용하고 불변자본과 가변자본과의 분할이 같고 자본의 고정적구성부분과 류동적구성부분으로의 분할도 같고 마지막으로 로동일의 길이도 동등하고 또 그 필요로동과 잉여로동으로의 분할도 같다고 하자. 그리고 류통과정으로부터 생기며 지금의 경우와는 관계가 없는 모든 사정을 배제하기 위하여 방사도 기관차도 다 주문에 의하여 제조되며 완성생산물의 인도와 동시에 그 대가가 지불된다고 가정하자. 1주일후에 방적업자는 완성된 방사의 인도와 동시에 투하한 류동자본을 회수하고 방사의 가치에 포함되여있는 고정자본의 마멸분도 또한 회수한다(여기서는 잉여가치는 도외시한다.). 따라서 그는 같은 자본을 가지고 같은 순환을 다시 반복할수 있다. 그의 자본은 회전을 완수한

것이다. 그런데 기관차제조업자는 3개월동안 매주 부단히 새로운 자본을 로임과 원료에 투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 기간에 같은 하나의 생산행위로 같은 하나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점차적으로 투하된 류동자본이 3개월후에 기관차를 인도한후에야 비로소 그 순환을 다시 개시할수 있는 형태로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그에게 있어서는 이 3개월간의 기계의 마멸분도 이때에야 비로소 보상된다. 그러므로 전자의 투자는 1주일분이고 후자의 투자는 1주일간 투자의 12배이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전제한다면 후자는 전자보다 12배나 많은 류동자본을 움직일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매주 선대되는 자본들이 동등하다는것은 여기서는 아무런 의의도 없다. 선대자본의 크기가 어떠하든간에 그 자본을 가지고 새로 작업을 하게 되기까지, 즉 그 자본으로 같은 작업을 반복하든가 또는 다른 작업을 시작하게 되기까지 전자의 경우에는 자본은 다만 1주간만 선대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12주간 선대된다.

회전속도의 차이 또는 동일한 자본가치가 다시 새로운 로동과정이나 새로운 가치증식과정에 소용될수 있기전에 개개의 자본이 선대되여야 할 시간의 길이의 차이는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부터 생긴다.

기관차 또는 어떤 다른 기계를 제작하는데 100로동일이 든다고 가정하자. 방적이나 기계제조에 종사하는 로동자에 대하여는 이 100로동일은 동등하게 하나의 비련속적인(분리할수 있는) 량을 이루며, 가정에 의하면 계기적이며, 개별적인 100개의 10시간로동과정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생산물인 기계에 대하여는 이 100로동일은 련속적인 량을, 즉 1,000로동시간으로 이루어지는 1로동일을, 단일한 련관된 생

산행위를 이룬다. 다수의 서로 련관된 로동일의 련속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로동일을 나는 **로동기간**이라고 칭한다. 우리가 로동일이라고 말할 때에는 로동자가 매일 차기의 로동력을 지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즉 매일 로동하지 않으면 안되는 로동시간의 길이를 의미한다. 그런데 로동기간이라고 말할 때에는 일정한 생산부문에서 하나의 완성생산물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서로 련관된 로동일의 수를 의미한다. 이 경우에 매개 로동일의 생산물은 하나의 부분생산물에 불과한것이며 이 부분생산물이 매일매일 가공되여 길거나 짧은 하나의 로동기간이 끝날 때에야 비로소 완성된 모습을 취하며 하나의 완성된 사용가치로 된다.

그렇기때문에 례컨대 공황에 의한 사회적생산과정의 중단, 교란이 분리성의 로동생산물에 미치는 영향과 그 생산에 비교적 긴, 서로 련관된 기간을 요하는 로동생산물에 미치는 영향과는 극히 다른것이다. 한 경우에는 일정한 량의 방사, 석탄 등등의 오늘의 생산에 래일의 방사, 석탄 등등의 새로운 생산이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선박, 건물, 철도 등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태가 다르다. 이 경우에는 로동이 중단될뿐만아니라 하나의 서로 련관된, 생산행위가 중단된다. 작업이 계속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 생산에 이미 소비된 생산수단과 로동은 헛되이 지출된다. 작업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중단기간에는 부단히 질의 악화가 발생한다.

생산물이 완성될 때까지 고정자본이 매일 생산물에 이전하는 가치부분은 전체 로동기간에 부단히 층층이 루적된다. 그리고 동시에 이 점에 고정자본과 류동자본간의 구별의 실제상의 중요성이 나타난다. 고정자본은 비교적 장기간 생산과정에 선대되여있고 아마도 수년의 시간이 경과하기전에는 갱신

될 필요가 없다. 증기기관이 그의 가치를 매일 일부분씩 비련속적인 로동과정의 생산물인 방사에 이전시키는가 또는 3개월 동안에 걸쳐 하나의 련속적인 생산행위의 생산물인 한대의 기관차에다 이전시키는가 하는 사정은 증기기관의 구입에 필요한 자본의 투하를 조금도 변동시키지 않는다. 증기기관의 가치는 한 경우에는 소량으로 레컨대 매주 한번씩 환류하는데 다른 한 경우에는 보다 대량으로 레컨대 3개월만에 한번씩 환류한다. 그러나 증기기관의 갱신은 두 경우에 다 아마도 20년 후에야 비로소 있게 될것이다. 증기기관의 가치가 생산물의 판매에 의하여 조금씩 환류하는 매 개별적기간이 증기기관자체의 생존기간보다 짧은 한에 있어서는 동일한 증기기관이 일련의 로동기간에 걸쳐 생산과정에서 계속 기능한다.

그런데 선대자본의 류동적구성부분에 있어서는 사태가 다르다. 이 주일분을 위하여 구매된 로동력은 이 주일내에 지출되여 생산물에 대상화된다. 이 로동력에는 이 주일말에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 로동력에 대한 자본투하는 3개월동안 매주 반복되는데 이에 있어서 이 주일의 이 자본부분의 지출에 의하여 이 자본가는 다음주의 로동을 구입할수 있게 되는것은 아니다. 로동력에 대한 지불에는 매주 새로운 추가자본이 지출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모든 신용관계를 도외시한다면 자본가는 로임을 1주일분씩 갈라서 지불하더라도 3개월동안 로임을 투하할 능력을 가지고있지 않으면 안된다. 류동자본의 다른 한 부분인 원료와 보조재료에 대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로동의 층은 련이어 생산물우에 겹겹이 쌓인다. 자출된 로동력의 가치뿐만아니라 잉여가치도 로동과정이 계속되는 동안 부단히 생산물에—그러나 아직 완성상품의 모습을 갖추지 않았으므

로 류통능력이 없는 미완성생산물에—이전된다. 원료나 보조재료로부터 점차 생산물에 이전되여가는 자본가치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하게 말할수 있다.

생산물의 특수한 성격 또는 생산물이 유용효과에 도달해야 할 특수한 성격에 의하여 로동기간의 장단이 규정된다. 로동기간의 장단에 근거하여 류동자본(로임, 원료 및 보조재료)의 지속적인 추가지출이 필요한데 이러한 류동자본은 그 어느 한 부분도 류통할수 있는 형태를 취하지 않으므로 그 어느 한 부분도 동일한 작업의 갱신에 사용될수 없는것이다. 반대로 그 각 부분은 형성되고있는 생산물의 구성부분으로서 생산분야내에 축차적으로 고정되며 생산자본의 형태로 구속된다. 그런데 회전기간은 자본의 생산기간과 류동기간의 합계와 같다. 그러므로 생산기간의 연장은 류통기간의 연장과 마찬가지로 회전속도를 감소시킨다. 그러나 당면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점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로, 생산분야에서 머무르는 기간의 연장. 례컨대 제1주에 로동이나 원료 등에 선대된 자본은 고정자본으로부터 생산물에 넘어간 가치부분과 마찬가지로 3개월이라는 전 기간에 걸쳐 생산분야에 구속되여있다. 그리고 아직 형성되고 있는 미완성생산물에 합체되여있으므로 상품으로서 류통에 들어갈수 없다.

둘째로, 생산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로동기간은 3개월간 지속되고 실제는 다만 하나의 관련된 로동과정을 이루고있을뿐이기때문에 부단히 1주일마다 새로운 1회분의 류동자본이 전번에 투하된 부분에 첨가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련이어 선대되는 추가자본의 량은 로동기간의 길이에 따라 증대한다.

우리가 가정한것은 방적과 기계제조에 같은 크기의 자본

이 투하되였다는것, 이러한 자본이 동등한 비률로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으로, 고정자본과 류동자본으로 분할되여있다는것, 로동일의 길이가 동등하다는것, 요컨대 로동기간의 지속시간이외의 모든 사정이 동일하다는것이다. 제1주에는 투하액은 량자에 있어서 다같은 크기이나 방적업자의 생산물은 팔수 있으며 그것을 팔아얻은 돈으로 새로운 로동력과 새로운 원료 등등을 구매할수 있다. 요컨대 생산을 동일한 규모로 계속할수 있다. 그런데 기계제조업자는 제1주에 지출한 류동자본을 3개월후에 자기의 생산물을 완성한후에야 비로소 화폐로 재전화시킬수 있으며 그리하여 새로 작업을 할수 있다. 따라서 첫째로는 투하자본량이 동일하여도 환류가 다르다. 둘째로는 3개월동안에 방적과 기계제조에 같은 크기의 생산자본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자본투하의 크기는 방적업자와 기계제조업자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다. 왜냐 하면 한 경우에는 동일한 자본이 급속히 갱신되며 따라서 또 동일한 작업을 새로 반복할수 있는데 다른 경우에는 자본이 비교적 완만하게밖에 갱신되지 않으므로 그 갱신기가 될 때까지는 부단히 새로운 자본량이 원래의 자본량에 추가되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의 일정한 부분이 갱신되는 시간의 길이, 즉 선대기간의 길이도 각이하며 로동과정의 길이에 따라서 선대되지 않으면 안되는 자본량도(매일 또는 매주 사용되는 자본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각이하다. 이 사정에 주의를 돌려야 하는것은 다음 장에서 고찰되는 경우들에서와 같이 선대기간이 길어져도 선대되는 자본의 량이 이 기간의 길이에 비례하여 증대함이 없이 증대할수도 있기때문이다. 자본은 보다 더 오랜 기간 선대되지 않으면 안되며 보다 많은 량의 자본이 생산자본의 형태로 구속되여있는것이다.

자본주의적생산이 덜 발전한 단계에서는 긴 로동기간을 요하기때문에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대량의 자본투하를 요하는 기업들은 특히 이러한 기업들이 거대한 규모로서가 아니면 수행될수 없는 경우에는 결코 자본주의적으로는 경영되지 않는다. 례컨대 공동체 또는 국가의 비용으로써(로동력에 대하여 말하면 옛날에는 대개 강제로동에 의하여) 되는 도로, 운하 등등이 그러하였다. 또는 그 생산에 비교적 긴 로동기간을 요하는 생산물은 극히 적은 부분만이 자본가자신의 자력에 의하여 생산된다. 례컨대 가옥건축에 있어서는 그 가옥을 짓게 하는 개인은 건축업자에게 선대금을 일부분씩 지불한다. 그러므로 사실상 그는 가옥의 생산과정이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가옥의 대가를 일부분씩 지불하는셈이다. 그런데 발전된 자본주의시대에는 한 방면으로는 대량의 자본이 개개의 자본가의 수중에 집적되며 다른 방면으로는 개개의 자본가들외에 또 결합자본가(주식회사)가 출현하며 동시에 신용제도가 발달하였는데 이러한 시대에는 자본주의적건축업자가 개개의 사인의 주문에 의하여 건축한다는것은 벌써 례외에 불과하다. 그는 시장을 목표로, 줄을 지은 다수의 가옥들과 도시의 전 구역들을 건축하는것을 업으로 삼는다. 그것은 바로 개개의 자본가가 청부업자로서 철도부설을 업으로 삼는것과 마찬가지이다.

자본주의적생산이 어떻게 런던의 가옥건축을 변혁시켰는가 하는데 대하여서는 1857년의 은행위원회에서 어떤 한 건축업가가 한 증언이 우리에게 사태를 말하여주고있다. 그가 말한바에 의하면 그가 젊었을 때에는 가옥은 대개 주문에 의하여 건축되였고 그 금액은 건축중에 몇개의 건축단계들이 끝날 때마다 분할하여 기업주에게 지불되였다. 투기를 하려

고 건축하는 일은 드물었다. 기업주가 이런 일을 한것은 주로 자기의 로동자들을 규칙적으로 취업시키며 자기의 수중에 보유하기 위한것에 불과하였다. 최근 40년래 모든것이 변하였다. 주문에 의한 건축은 극히 적다. 새 가옥이 필요한 사람은 투기적으로 건축된것이나 아직 건축중에 있는것들중에서 그것을 구한다. 기업주는 이제는 주문객을 위해서 일하는것이 아니라 시장을 위해서 일한다. 다른 모든 산업가와 꼭 마찬가지로 그도 시장에서 완성상품을 가지고있지 않으면 안된다. 이전에는 한 건축업자가 투기적으로 동시에 건축한것이 3～4채였는데 이제는 그는 광대한 지면을 구매하고(즉 대륙적표현방식대로 한다면 대개 99년 기한으로 임차하고) 거기에다 100～200채의 가옥을 건축하지 않으면 안되며 자기의 자력의 20배 내지 50배나 되는 일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된다. 자금은 저당차입에 의하여 조달되며 개개의 가옥의 건축이 진척되는 정도에 따라 돈이 건축업자에게 지급된다. 거기에다 공황이 닥쳐와서 선대금의 지불이 정지되면 전체 기업이 좌절당하는것이 보통이다. 최선의 경우라도 가옥은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미완성으로 남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경매에 붙여져 반가로 방매된다. 투기건축, 그것도 대규모적인 투기건축이 아니고서는 오늘날에는 어떠한 건축업자도 해나갈수 없다. 건축 그자체로부터의 리윤은 극히 적다. 그의 주요한 리득은 지대의 등귀에 있으며 대지의 교묘한 선택과 리용에 있는것이다. 벨그라비아나 타이버니아의 거의 전체 가옥과 런던주변의 무수한 교외주택은 가옥에 대한 수요를 예상한 이와 같은 투기에 의하여 건축되였다.(《은행법 특별위원회의 보고》 제1부, 1857년, 증언, 질문 제5413—5418호, 제5435—5436호로부터의 요약.)

로동기간이 퍽 긴 대규모적인 사업의 수행이 처음으로 완전히 자본주의적생산에 속하게 되는것은 자본의 집적이 이미 매우 현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용제도의 발전이 자본가에게 제공하는 편리한 수단에 의하여 자기의 자본 대신에 타인의 자본을 선대하고 따라서 또 타인의 자본을 걸고 모험해볼수 있는 때의 일이다. 그러나 두말할것도 없이 생산에 선대되는 자본이 그 사용자자신의것인가 아닌가 하는 사정은 회전속도나 회전기간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개개의 로동일의 생산물을 증대시키는 제 조건들, 례컨대 협업, 분업, 기계사용 등은 동시에 또 련관된 생산행위하에서의 로동기간을 단축시킨다. 례컨대 기계는 가옥, 교량 등등의 건설기간을 단축시키며 수확기, 탈곡기 등등은 성숙한 곡물을 완성상품으로 전화시키는데 필요한 로동기간을 단축시킨다. 조선기술의 개량은 선박의 속도를 증대시킴으로써 항해업에 투하된 자본의 회전기간을 단축시킨다. 그러나 로동기간을 단축시키며 따라서 류동자본이 선대되지 않으면 안되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이러한 개량들은 대개 고정자본의 투하의 증대와 결부되여있다. 다른 한편 일정한 부문들에 있어서의 로동기간은 단지 협업을 확장하는것만으로도 단축될 수 있다. 철도부설의 완성은 방대한 로동자대군을 동원하여 여러 방면에서 공사에 착수하는데 의하여 단축된다. 이 경우에 회전기간은 선대자본의 증대에 의하여 단축된다. 이 모든 경우에 보다 많은 생산수단과 보다 많은 로동력이 자본가의 지휘하에 결합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로동기간의 단축은 대개 이 단축된 기간에 선대되는 자본의 증대와 결부되여있으며 그리하여 자본의 선대기간이 단축되는 정도에 따라 선대되는 자본의 량은 증대되

는데—그렇다면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하여야 할것이다. 즉 사회적자본의 현존량을 별도로 한다면 문제는 생산수단과 생활수단 또는 그것들에 대한 처분력이 어느 정도로 분산되여있는가 또는 어느 정도로 개별적자본가의 수중에 결합되여있는가, 따라서 자본의 집적이 이미 어떠한 규모에 달하였는가 하는데 귀착된다는것이다. 신용이 한사람의 수중에서의 자본의 집적을 매개하며, 촉진시키며 증진시키는 한에서 그것은 로동기간의 단축을 촉진하며 따라서 또 회전기간의 단축을 촉진한다.

로동기간이 련속적인것이든 단속적인것이든간에 그것이 일정한 자연적조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생산부문에서는 상술한 방법에 의한 단축이 진행될수 없다.

《보다 빠른 회전이라는 말은 곡물수확에 적용할수는 없다. 왜냐하면 곡물수확에서는 1년에 1회전밖에 할수 없기때문이다. 가축에 관하여 말한다면 간단히 다음과 같이 묻고싶다. 2~3년생의 양이나 또는 4~5년생의 소의 회전은 어떻게 하면 촉진시킬수 있는가?》(W. 월터 구드 《정치, 농업 및 상업에 관한 이론》 1866년 런던판, 325페지)

일찌 현금을 마련해두어야 할 필요성(레컨대 조세, 지대 등과 같은 고정지불을 위한)은 레컨대 가축이 경제적표준년령에 달하기전에 팔리거나 도살당하여 농업이 큰 손해를 받는다는데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것은 또 결국은 육류가격의 등귀를 초래한다.

《이전에는 주로 가축을 사양하고 여름에는 중부 제 주의 목장에, 겨울에는 동부 제 주의 축사에 가축을 공급하던 사람들은…곡물가격의 변동과 저락으로 말미암아 몹시 령락되였으므로 빠다와 치즈의 높은 가격에서 리득을 얻을수 있는것을 기뻐한다. 빠다는 일상적인 지출을 장만하기 위하여 매주 시장에 가지고 간다. 치즈에 대해서는 중매인으

로부터 선불금을 받으며 중매인은 치즈가 운반될수 있게 되는대로 그것을 가지러 가며 가격은 물론 중매인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 이러한 리유에서 그리고 또 농업은 정치경제학의 제 원칙에 의하여 규제되므로 이전에는 락농지방으로부터 사육을 위하여 남으로 이송되였던 송아지는 지금은 버밍감이나 만체스터나 리버풀이나 기타 린근 대도시의 도살장에서 대량적으로 도살되는데 그중에는 생후 8일 내지 10일밖에 안되는 송아지도 왕왕 있다. 그런데 만약 맥아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더라면 차지농업가들은 더 많은 리윤을 얻고 자기들의 유축이 더욱 나이를 먹고 체중이 증대될 때까지 그것을 계속 보유할수 있었을것이다. 뿐만아니라 암소를 가지고있지 않는 사람들은 송아지를 기르는데 젖 대신에 맥아를 사용할수 있었을것이며 그리하여 현재와 같은 놀랄만한 유축결핍은 거의 피면할수 있었을것이다. 지금 만일 이러한 소차지농업가에게 송아지를 기를것을 권고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것이다. 우유로 송아지를 기르면 수지가 맞는다는것을 우리는 매우 잘 알고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자면 첫째로, 현금을 지출해야 할터인데 우리는 그렇게 할 처지가 못된다. 둘째로, 현금을 회수할 때까지 오래동안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는데 락농업에 있어서는 그것이 곧 회수된다.》(우와 같은 책, 11~12페지)

회전이 지연되는것이 영국의 소차지농업가들에게서 이와 같은 후과를 발생한다고 하면 그것이 대륙의 소농민들속에서 얼마나 큰 혼란을 일으킬것인가 하는것은 쉽게 리해될것이다.

로동기간의 길이의 증가, 따라서 또 류통이 가능한 상품의 완성까지의 기간의 길이에 상응하여 고정자본으로부터 층층이 생산물에 이전되는 가치부분이 루적되며 이 가치부분의 환류가 지연된다. 그러나 이 지연은 고정자본의 투하의 갱신을 초래하는 원인으로는 되지 않는다. 기계는 그 마멸의 보상분이 화폐형태로 환류하는것이 완만하든 급속하든간에 계속 생산과정에서 작용한다. 류동자본은 그렇지 않다. 자본이 로동기간의 연장에 의해 보다 장기간 고정되지 않으면 안될

뿐만아니라 또한 새로운 자본이 로임이나 원료나 보조재료로서 부단히 선대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환류가 지연되는것은 고정자본과 류동자본에 대하여 각이하게 작용한다. 환류가 완만하든 급속하든간에 고정자본은 계속 작용한다. 이와 반대로 류동자본은 아직 판매되지 않은 생산물 또는 완성되지 않아 아직 판매할수 없는 생산물의 형태로 고착되여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현물로 갱신하기 위한 추가자본도 없다면 환류의 지연에 의하여 기능할수 없게 된다.—

《농민은 굶주리고있는데 그의 가축은 살찌고있다. 비가 많이 와서 목초는 무성하게 자랐다. 인도의 농민은 자기의 살찐 소곁에서 굶어죽을것이다. 미신의 규정은 개인에 대해서는 잔혹한것으로 보이나 사회에 대하여서는 그 유지를 돕는다. 역축의 유지는 농경의 진행을 보장하며 따라서 또 장래의 생계와 부의 원천을 보증한다. 잔혹하고 비참하게 들릴지도 모르나 사실 인도에서는 인간은 소보다 보충하기가 더 쉽다.》(《보고, 동인도. 마드라스 및 오리싸의 기근》 제4호, 44페지)

이것을 《마누법전》[74] 제10장, 제62절의 다음과 같은 한 구절과 비교해보라.——

《승려나 암소를 유지하기 위한 무보수의 헌신은…천하게 태여난 이 종족의 명복을 보증할수 있다.》

물론 5년생 동물을 5년이 지나기전에 공급한다는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정한 한계내에서는 취급방법을 변경하는데 의하여 동물을 더 짧은 기간에 그 용도에 공급할수 있게 성숙시킬수 있다. 이것은 특히 베이크 월에 의하여 달성되였다. 그때까지 영국의 양은 프랑스의 양이 1855년에도 아직 그러하였던것처럼 4~5살이 될 때까지는 아직 도살할수 있을만큼 성숙되지 않았다. 베이크 월의 방법에 의하면 1살의 양

도 비육할수 있고 여하튼 2년안에는 완전히 성숙한다. 디쉴리 그레인쥐의 차지농업가 베이크 웰은 세심한 도태에 의하여 양의 골격을 그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작아지게 하였다. 그의 양은 뉴 리스터즈라고 불리였다.

《지금은 사양자는 이전에 한마리의 양을 길러낸것과 같은 시간에 세마리를 시장에 공급할수 있다. 그리고 그 양은 살이 가장 많이 붙는 부분이 더 퍼지고 더 둥글고 더 크게 발달하였다. 그 중량의 거의 전부가 고기뿐이다.》(라배른뉴《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농촌경제》, 1855년, 20페지)

로동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들은 산업부문이 다르면 극히 각이한 정도로밖에 응용할수 없으며 결코 각이한 로동기간의 길이의 차이를 균등화하지 못한다. 상술한 례로써 말하면 새로운 공작기계의 사용에 의하여 1대의 기관차의 제조에 필요한 로동기간은 절대적으로는 단축될수 있다. 그러나 방적에서의 과정들의 개량에 의하여 매일 또는 매주 제공되는 완성생산물이 비할수없이 급속히 증대된다면 기계제조에서의 로동기간의 길이는 방적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는 역시 증대된셈이다.

제 13 장

생 산 기 간

로동기간은 언제나 생산기간이다. 즉 자본이 생산분야에 구속되여있는 기간이다. 그러나 반대로 자본이 생산과정에 있는 모든 기간이 반드시 로동기간인것은 아니다.

여기서 문제로 하는것은 로동력자체의 자연적제한에 의하여 초래되는 로동과정의 중단인것이 아니다. 하기는 공장건물이나 기계 등과 같은 고정자본이 로동과정의 휴지중에 놀고있다는 사정만으로도 그것이 얼마나 로동과정의 인위적인 연장이나 주야로동의[75] 동기의 하나로 되였는가 하는것은 이미 본바이다. 여기에서 말하는것은 로동과정의 길이와는 관계없는, 생산물의 성질과 그 생산방식자체에 의하여 생기는 중단이다. 이 중단기간에 로동대상은 길거나 짧은 기간에 자연과정의 지배에 내맡겨져서 물리적, 화학적, 생리적 제 변화를 거치지 않으면 안되며 이 동안에 로동과정은 전부 또는 일부분이 정지된다.

례컨대 짜낸 포도즙은 일정한 완성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선 얼마동안 발효상태를 거친 다음에 다시 얼마동안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면 안된다. 도자기 제조업에서와 같이 생산물이 건조를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생산부문이나 또는 표백업에서와 같이 생산물이 그 화학적성질을 변경시키기 위하

여 일정한 상태에 놓여지지 않으면 안되는 생산부문도 많다. 겨울작물은 성숙하기까지는 아마도 9개월이나 걸린다. 파종기와 수확기사이의 중간시기에는 로동과정은 거의 완전히 중단된다. 조림에서는 파종과 그에 필요한 준비작업이 끝난후 종자가 완성생산물로 되기까지에는 아마도 100년은 걸릴것이다. 이 전체 기간을 통하여 종자는 로동의 작용을 상대적으로 조금밖에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경우에 생산기간의 대부분을 통하여 다만 이따금 추가로동이 첨가될뿐이다. 앞장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이미 생산과정에 고정되여있는 자본에 추가자본이나 추가로동이 첨가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정은 여기서는 다만 길거나 짧은 중단을 통해서만 실현된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선대자본의 생산기간은 두 기간으로 구성된다. 그 하나는 자본이 로동과정에 있는 기간이다. 제2의 기간은 자본의 존재형태—미완성생산물의 형태—가 로동과정에는 있지 않고 자연과정의 지배에 내맡겨져있는 기간이다. 이 두 기간이 때때로 교차되여 서로 사이에 끼우든말든 그것은 사태를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이 경우에 로동기간과 생산기간은 일치하지 않는다. 생산기간은 로동기간보다 길다. 그러나 생산기간이 끝난후에야 비로소 생산물은 완성되고 성숙되며 따라서 생산자본의 형태로부터 상품자본의 형태로 전화될수 있다. 그러므로 로동기간으로 되여있지 않는 생산기간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자본의 회전기간도 길어진다. 로동기간을 초과하는 생산기간이 곡물의 성숙, 참나무의 성장 등등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영구적으로 주어진 자연법칙에 의하여 규정되여있는것이 아닌 한 자본의 회전기간은 흔히 생산기간의 인위적단축에 의하여 많게

나 적게나 단축될수 있다. 레컨대 풀밭표백 대신에 화학적표백의 채용에 의하여, 또는 건조과정에 있어서의 보다 효과적인 건조장치에 의해서이다. 또 제혁업에서는 가죽에 탄닌산을 침투시키는데 낡은 방법으로는 6개월 내지 18개월이 걸렸지만 공기뽐프를 사용하는 새로운 방법으로는 1개월 반 내지 2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쟝귀스따브 꾸르쎌 스뇌이 《공업, 상업, 농업 기업의 리론과 실천 개론》, 1857년 빠리 제2판 [제49페지])[76]. 자연과정으로 충만된 단순한 생산기간을 인위적으로 단축한 가장 적절한 실례를 제공하는것은 철생산의 력사이며 특히 1780년경에 발명된 교반제련법으로부터 현대의 베쎄마제련법과 그후에 채용된 최신식처리방법에 이르기까지의 최근 100년간에 있어서의 선철로부터 강철로의 전화이다. 생산기간은 매우 단축되였지만 그와 동일한 정도로 고정자본의 투하액도 증대하였다.

생산기간과 로동기간의 불일치에 관하여 독특한 실례를 보여주는것은 미국의 구두골제조이다. 여기에서는 비생산적 비용의 상당한 부분은 완성된 구두골이 후에 수축되여 변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를 18개월이나 건조하지 않으면 안되는데서 생긴다. 이 기간중 목재는 다른 로동과정은 거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투하자본의 회전기간은 구두골자체에 필요한 시간에 의하여 규정될뿐만아니라 건조중에 있는 목재로서 자본이 놀고있는 시간에 의하여서도 규정된다. 그것은 본래의 로동과정에 들어갈수 있기전에 18개월동안 생산과정에 있다. 그와 동시에 이 실례는 총류동자본의 각이한 부분의 회전기간이 류통분야내부에서가 아니라 생산과정에서 일어나는 제 사정에 의하여 얼마나 달라지게 되는가 하는것을 보여준다.

생산기간과 로동기간간의 차이는 농업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우리가 살고있는 온대지방에서는 토지는 곡물을 1년에 1회 낸다. 생산기간(월동작물에 있어서는 평균 9개월)의 단축 또는 연장은 그자체가 또한 그해의 흉풍의 변화에 따라 결정되며 따라서 본래의 공업에서처럼 정확히 예정되고 제어될수는 없다. 다만 우유나 치즈 등과 같은 부산물만이 비교적 단기간에 련속적으로 생산되여 판매될수 있다. 그런데 로동기간은 다음과 같이 된다.

《로동일의 수는 독일의 각 지방에서는 기후나 기타 영향력이 있는 제사정을 고려하여 세개의 주요한 작업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볼수 있을것이다. 3월중순 또는 4월상순부터 5월중순까지의 춘기에는 50~60로동일. 6월상순부터 8월하순까지의 하기에는 65~80로동일. 9월상순부터 10월하순 또는 11월 중순 또는 하순까지의 추기에는 55~75로동일. 동기에는 비료, 목재, 시장상품, 건축재료 등의 운반과 같은 이 기간에 수행되여야 할 로동뿐일것이다.》(F. 키르흐호프 《농업경영학 편람》 데싸우, 1852년, 160페지)

그렇기때문에 기후가 나쁘면 나쁠수록 농업의 로동기간, 따라서 또 자본과 로동의 투하는 짧은 기간내에 압축된다. 례컨대 로씨야에서 그러하다. 이 나라의 일부 북부지방들에서는 경작로동을 할수 있는 기간은 1년에 130일 내지 150일밖에 안된다. 만약 로씨야의 구라파부분의 인구 6,500만중 5,000만명이 모든 경작로동을 할수 없는 6개월 내지 8개월의 겨울동안에 일을 하지 않고있다면 로씨야가 당하는 손실이 얼마나 클것인가 하는것은 누구나 알수 있을것이다. 로씨야의 10,500개의 공장에서 20만명의 농민이 로동하고있는외에 농촌에서는 도처에 그자신의 가내공업이 발전되였다. 어떤 농촌에서는 전체 농민이 몇대를 내려오면서 직포공, 제혁공,

제화공, 철물공, 칼단야공 등등이다. 특히 모스크바, 울라지미르, 깔루가, 꼬스또로마 및 뻬쩨르부르그 등 제 주들에서 그러하다. 부대적으로 말하거니와 이런 가내공업은 벌써 점점 더 자본주의적생산에 봉사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례컨대 직포공이 사용하는 날실과 씨실은 상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중개업자의 매개를 통하여 제공된다(《주재국의 상공업 등에 관한 영국대사관 및 공사관 서기관 보고》 제8호, 1865년, 86~87페지의 요약). 여기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생산기간과 로동기간과의 불일치는(후자는 전자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농업과 농촌부업을 결합시키는 자연적기초를 이루며 다른 한편 이 농촌부업은 또 처음에는 상인으로서 농촌에 침입하는 자본가들의 거점으로 된다. 그후 자본주의적생산이 공업과 농업의 분리를 완성할 때 농업로동자는 점점 더 다만 우연적인 부업에 의존하게 되며 또 이로 말미암아 농촌로동자의 처지는 더욱더 악화된다. 우리가 후에 보게 되겠지만 자본에 대해서는 회전의 모든 차이가 같게 된다. 로동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고유한 의미에서의 공업부문, 광업, 운수업 등등에서는 경영은 균일한것이며 로동기간도 매년 동일하며 또 —가격의 변동, 생산의 장해 등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중단을 도외시한다면— 매일의 류통과정에 들어가는 자본의 투하도 균등하게 분배된다. 마찬가지로 기타의 시장관계가 변함없다면 류동자본의 환류 또는 그 갱신도 1년동안에 균등한 각 시기에 분배된다. 그런데 로동기간이 생산기간의 일부분에 불과한 그러한 투자에서는 1년동안의 각 시기에 류동자본이 극히 불균등하게 투하되는데 환류는 자연조건에 의하여 고정된 시기에 한꺼번에 수행될따름이다. 그러므로 생산의 규모가

같더라도, 즉 선대되는 류동자본의 크기가 같더라도 이런 생산부문들에서는 로동기간이 련속적인 생산부문에 비하여 류동자본이 보다 긴 기간에 한꺼번에 대량적으로 선대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정자본의 수명과 고정자본이 생산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기능하는 시간과의 차이도 보다 더 크다. 로동기간과 생산기간과의 차이에 따라 물론 사용된 고정자본의 사용기간도 길거나 짧은 기간에 부단히 중단된다. 레컨대 농업에서는 역축, 농구 및 기계의 사용기간이 그러하다. 이 고정자본이 역축으로써 이루어져있는 한 역축이 작업하는 기간이나 작업하지 않는 기간이나 사료 등에 대하여 동일한 또는 거의 동일한 지출이 부단히 요구된다. 살아있지 않는 로동수단의 경우에도 사용하지 않는것은 어느 정도의 감가를 초래한다. 따라서 생산물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비싸진다. 왜냐 하면 생산물에의 가치이전은 고정자본이 기능하는 시간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고정자본이 가치를 상실하는 시간에 의하여 계산되기때문이다. 이러한 생산부문에서는 고정자본의 유휴상태는 그것이 경상적인 비용을 요하든 않든간에 그 고정자본의 정상적사용의 한 조건을 이루는데 이것은 례컨대 방적에서 일정한 량의 면화의 손실이 그러한 조건을 이루는것과 같은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느 로동과정에서나 정상적인 기술적조건하에서 비생산적이기는 하지만 불가피하게 지출된 로동력은 생산적인 로동력과 마찬가지로 계산된다. 로동수단, 원료 및 로동력의 비생산적지출을 감소시키는 개량들은 모두다 생산물의 가치도 감소시킨다.

농업에서는 로동기간이 비교적 길다는것과 로동기간과 생산기간과의 차이가 크다는것이 한데 결합되고있다. 호지스킨은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옳게 말하고있다.

《농업생산물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기간》[하기는 여기서 그는 로동기간과 생산기간을 구별하지 않고있지만]《과 다른 로동 제 부문에서 필요한 기간과의 차이는 농민의 심한 예속상태를 초래하는 주요원인이다. 그들은 1년이내의 짧은 기간에는 그의 상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없다. 이 전체 기간에 걸쳐 그들은 제화업자, 재봉업자, 대장쟁이, 마차제조업자 및 기타 생산자들로부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생산물을 생산하고 그 생산물을 며칠이나 몇주일이면 만들수 있는 생산물을 외상으로 사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자연적사정의 결과로서 그리고 다른 로동부문들에서의 보다 급속한 부의 증가의 결과로서 전국의 토지를 독점하고있는 토지소유자들은 게다가 또 립법권을 독점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자신과 그들의 노복인 차지농민들이 국내에서 가장 예속적인 사람들로 될 운명으로부터 구원할수가 없는것이다.》(토머스 호지스킨 《통속정치경제학》 런던, 1827년, 147페지, 주)[77]

여러가지 종류의 생산물이 생산되고 따라서 1년중에 각이한 시기의 각종 수확이 가능하게 되는데 의하여 한편으로는 농업에서의 로임이나 로동수단에 대한 지출이 1년중에 걸쳐 보다 더 균등하게 분배되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회전이 단축되게 하는 일체 방법은 생산에 선대되는 류동자본 즉 로임, 비료, 종자 등에 투하되는 류동자본의 증가를 필요로 한다. 례컨대 휴경지가 필요한 3포식 농업으로부터 휴경지가 필요없는 륜작식 농업으로의 이행의 경우가 그러하다. 플란드지방에서의 간작의 경우도 그러하다.

《간작에 있어서는 근채류가 재배된다. 동일한 밭에 처음에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곡물, 아마, 유채를 심고 그것을 수확한 후에는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근채류를 심는다. 유각가축을 계속 축사에 가두어둘수 있게 하는 이 방법은 대량의 비료를 모으게 하므로 륜작농법의 중추로 된다. 사토지방들에서는 경작면적의 $\frac{1}{3}$이상이 이 간작에

적용된다. 그것은 마치도 경지면적을 $\frac{1}{3}$이나 확대한것과 같은것이다.》

이것을 위하여서는 근채류이외에도 토끼풀이나 기타 사료식물도 리용된다.

《이와 같이 원예로 이행할 정도로 추진된 농경은 물론 비교적 많은 액수의 투자를 필요로 하게 된다. 잉글랜드에서는 1헥타르당 투하자본을 250프랑으로 계산하고있다. 플란드에서는 우리 농민들은 1헥타르당 500프랑의 투하자본도 아마 매우 적다고 생각할것이다.》(에밀 드라블래 《벨지끄 농촌경제론》 브류쎌, 1863년, 59~60페지, 63페지)

마지막으로 조림을 들어보자.

《목재생산이 다른 대다수의 생산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점은 목재생산에서는 자연력이 독립적으로 작용하며 또 자연적갱신이 진행되므로 인력이나 자본력이 필요되지 않는다는것이다. 또 삼림이 인공적으로 갱신되는 경우에도 인력이나 자본력의 소비는 자연력의 작용에 비하면 극히 적다. 그밖에 곡식이 되지 않든가 또는 되여도 그 생산이 이제는 수지가 맞지 않는 그러한 토질과 지형에서도 삼림은 무성할수 있다. 그러나 조림은 그 규칙적인 경영을 위하여서는 곡물재배보다도 더 큰 면적을 필요로 한다. 왜냐 하면 령세한 면적에서는 림업에 알맞는 벌목을 진행할수 없으며 부차적인 리용은 거의 할수 없게 되며 삼림의 보호가 더 곤난하게 된다는 등의 사정이 있기때문이다. 또 생산과정은 장기간을 필요로 하며 한 사적경영의 계획을 넘으며 인간의 일생을 넘는 경우까지도 있다. 즉 림산지를 얻기 위하여 투하되는 자본은》

〔공동체적생산에 있어서는 이 자본은 불필요하며 문제는 다만 공동체가 조림을 위하여 농경지나 목축지로부터 얼마만큼 토지를 떼낼수 있는가 하는것뿐이다.〕

《장시간이 경과한후에야 비로소 이렇다 할만한 수익을 가져오고 일부

분씩 회전할따름이며 완전히 회전하는데는 수종에 따라서는 150년이라는 기간을 필요로 한다. 그밖에 영속적인 목재생산은 그자체가 매년 리용하는 목재의 10배 내지 40배에 달하는 선나무의 보유를 필요로 한다. 그렇기때문에 따로 다른 수입이 없고 또 광대한 면적의 삼림을 가지고있지 않은 사람은 규칙적인 림업을 경영할수가 없다.》(키르흐호프, 58페지)

긴 생산기간(그것은 상대적으로 작은 범위의 로동기간밖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또 긴 회전기간은 조림을 불리한 사적경영부문으로 만들며 따라서 불리한 자본주의적경영부문으로 만든다. 설사 개별적자본가 대신에 결합자본가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자본주의적경영은 본질적으로 사적경영이다. 문명 및 산업일반의 발전은 오래전부터 삼림의 파괴에 대하여 큰 작용을 하여왔는데 이에 비하면 문명과 산업이 반대로 삼림의 유지나 생산을 위하여 한 모든것은 아주 보잘것없는것이다.

키르호호프로부터의 인용문에서 특히 주목할만한것은 다음과 같은 구절이다.

《그밖에 영속적인 목재생산은 그자체가 매년 리용하는 목재의 10배 내지 40배에 달하는 선나무의 보유를 필요로 한다.》

즉 10년 내지 40년이상의 기간에 1회의 회전이 진행된다.

목축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가축무리(보유가축)의 일부분은 다른 부분이 년간생산물로서 판매되는 때에도 생산과정에 남는다. 여기서는 자본의 일부분만이 매년 회전하는데 그것은 기계나 역축 등과 같은 고정자본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이 자본은 비교적 장기간 생산과정에 고정되여있는 자본이기는 하지만, 따라서 또 총자본의 회전을 지연시키기는 하

지만 범주적의미에서의 고정자본인것은 아니다.

여기서 보유분이라고 부르는것—일정한 량의 립목 또는 가축—은 상대적으로는 생산과정에 존재한다(로동수단으로서, 동시에 로동재료로서). 그 재생산의 자연적조건에 따라 조정된 경영에서는 언제나 상당히 큰 부분이 이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회전에 대하여 이와 류사한 영향을 주는 다른 종류의 보유분이 있다. 그것은 다만 잠세적인 생산자본을 이루고있을 따름이지만 경영의 성질상 현실적인 생산과정에 점차적으로 들어갈뿐이라 하더라도 많게나 적게 집적되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생산에 선대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속하는것은 례컨대 아직 밭에 실어가지 않은 비료이며 곡물이며 건초 등이며 가축의 생산에 들어가는 생활수단 보유분이다.

《경영자본의 상당한 부분은 그 경영의 재고에 포함되여있다. 그러나 이 재고는 만일 훌륭한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책이 적당히 실시되지 않는다면 다소간에 그 가치를 상실할수가 있다. 심지어 관리가 부족하기때문에 경영을 위한 생산물재고의 일부분이 완전히 없어질수도 있다. 그렇기때문에 이 점에서는 특히 곡창, 사료와 곡물을 두는 고미다락이나 움에 대한 주도한 관리가 특히 필요하게 되며 또 저장장소는 언제나 적당히 닫아두어야 하며 동시에 청소나 환기를 잘해야 한다. 곡물이나 기타 저장되여있는 작물들은 때때로 적당히 뒤집어놓아야 하며 감자나 근채류는 서리나 물이나 부패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지 않으면 안된다.》(우와 같은 책, 292페지)《생산물과 목적에 따라 분배가 실시되여야 할 자가수요 특히 가축사양을 위한 자가수요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만 수요를 충족시키는것만을 고려하는것이 아니라 또한 불의의 경우를 위하여 적당한 재고를 남겨둘것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에 만약 자기자신의 생산물로써는 수요

를 완전히 충족시킬수 없다는것을 알게 되였다면 우선 다른 생산물(대용품)로써 이 부족되는것을 메꿀수 없겠는가 또는 적어도 이 부족되는것 대신에 다른 생산물을 더 눅은 값으로 구입할수 없겠는가 하는것을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된다. 례컨대 건초가 부족하게 되였을 경우에는 그 부족은 근채류에다 짚을 섞은것으로써 메꿀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각종 생산물의 실물가치와 시장가격을 항상 념두에 두고 거기에 맞추어 소비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례컨대 귀밀은 비싼데 원두와 호밀이 비교적 싸다면 말의 여물로 하는 귀밀의 일부 대신에 원두 또는 호밀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여 남는 귀밀을 파는것이 유리할 것이다.》(우와 같은 책, 300페지)

우에서 재고형성을 고찰할① 때 이미 서술한바와 같이 크거나 작은 일정한 량의 잠세적생산자본, 즉 생산용으로 예정된 생산수단이 필요한데 이것이 크거나 작은 량으로 저장되여 점차적으로 생산과정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동시에 역시 그때 서술한바와 같이 소여의 한 기업 또는 일정한 규모의 자본경영에 있어서는 이 생산용재고의 크기는 그 갱신의 곤난의 대소, 구입시장의 상대적원근, 교통운수수단의 발달정도 등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모든 사정은 생산용재고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되는 자본의 최소한에 대하여 영향을 주며 따라서 또 자본이 선대되여야 할 기간의 길이에 대하여 그리고 한꺼번에 선대되여야 할 자본량의 크기에 대하여 영향을 준다. 이 자본량의 크기는 따라서 또 회전에도 영향을 주지만 그것은 류동자본이 생산용재고의 형태로 단순히 잠세적생산자본으로서 고착되여있는 시간의 장단에 의하여 제약된다. 다른 한편 이러한 정체가 급속한 보상의 가능성의 대소, 시장관계 등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한 이 정체자

① 본권 155~161페지를 보라. —편집자

체는 또한 류통기간에서, 즉 류통분야에 속하는 제 사정에서 생긴다.

《다음으로 수공도구, 채, 바구니, 바줄, 차기름, 못 등등과 같은 모든 비품 또는 부속품들은 가까운 곳에서 신속히 구입할수 있는 기회가 적을수록 필요한 경우에 즉시 보상할수 있도록 그만큼 더 재고로서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마지막으로 매년 겨울에는 모든 도구 비품을 자세히 검사하고 그 보충과 수리가 필요하면 즉시 손질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비품의 수요에 대하여 보유하여야 할 재고의 대소는 주로 지방적사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수공업자나 상점이 부근에 없는 곳에서는 그러한 수공업자나 상점이 같은 장소에 있거나 또는 아주 부근에 있는 그러한 곳에 비하여 더 많은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타의 조건이 동등한 경우에 적당한 시기를 선택하기만 하면 필요한 재고를 한꺼번에 비교적 대량으로 구입하는 편이 통례로 눅게 구입한다는 리득을 본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물론 기업의 류동적경영자본중에서 그만큼 큰, 경영상 흔히 없어서는 안되는 금액이 한번에 끌려나가게 되는것이다.》(키르호호프, 301페지)

생산기간과 로동기간의 차이는 우리가 본바와 같이 극히 각이할수 있다. 류동자본은 그것이 본래의 로동과정에 들어가기전에 생산기간에 들어갈수 있다(구두골 제조). 또는 그것이 본래의 로동과정을 통과한후에도 생산기간에 있을수 있다(포도주, 곡물의 종자). 또는 생산기간의 여기저기에 로동기간에 끼일수 있다(경작, 조림). 류통할수 있는 생산물의 큰 한부분은 현실적인 생산과정에 합체되여있고 그보다 훨씬 적은 부분이 매년 류통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조림, 목축). 류동자본이 잠세적인 생산자본의 형태로 투하되지 않으면 안되는 기간의 장단, 따라서 또 이 자본이 한꺼번에 투하되지 않으면 안되는 량의 다소는 생산과정의 종류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고(농업) 부분적으로는 시장의 원근 등, 요컨대

류통분야에 속하는 제 사정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로동기간과는 일치하지 않는 생산기간을 로동기간과 동일시하려는 시도, 즉 그자체가 또한 가치리론의 그릇된 적용으로부터 나온 이러한 시도가 매칼러크, 제임즈 밀 등에게 있어서 얼마나 불합리한 리론[78]을 낳게 하였는가 하는것은 후에(제3권) 보게 될것이다.

이전에 고찰한 회전순환은 생산과정에 선대된 고정자본의 지속시간에 의하여 주어진다. 그런데 이 회전순환은 많게나 적게나 몇해를 거치는것이므로 그것은 또 고정자본의 몇개의 년회전을 또는 1년간에 반복되는 몇개의 회전들을 포괄한다.

농업에서는 이러한 회전순환이 륜작식경작방법에서 생긴다.

《여하튼 임차기간의 지속시간은 채용된 륜작의 순환기간이 표시하는것보다 짧아서는 안된다. 따라서 3포식경영의 경우에는 언제나 3년, 6년, 9년 등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순수휴경을 수반하는 3포식경영을 가정한다면 경지는 6년동안에 다만 4회만 경작되며 경작년도에는 겨울작물과 여름작물이 륜작되고 또 토질이 그것을 필요로 하거나 그것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밀과 호밀, 보리와 귀밀이 륜작된다. 그런데 동일한 토지에서도 곡물의 종류에 따라 다소간 수확이 각각 다르고 가치도 각각 다르며 따라서 각이한 가격으로 판매된다. 그렇기때문에 경지의 수익은 경작년도에 따라 다르며 또 회전의 전반》(최초의 3년)《에서와 후반에서 다르다. 1순환기간중의 평균수익까지도 한 순환기간과 다른 순환기간에 같은 크기가 아니다. 왜냐 하면 생산성은 토질에 의하여 좌우될뿐만아니라 그해의 기후에 의하여서도 좌우되며 또 가격도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기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6년에 걸치는 전 순환기간의 년평균수확고와 그 평균가격에 따라 경지의 수익을 계산하면 제1순환기

간에 대하여서나 제2순환기간에 대하여 그 1년당 총수익이 얻어진다. 그러나 순환기간의 절반의 수익만을, 즉 3개년간의 수익만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이 경우에는 총수익이 달라질것이기때문이다. 이때문에 3포식경영의 경우에는 임차기간의 지속시간이 적어도 6개년으로 규정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에 대하여서나 지주에 대하여서나 훨씬 더 요망되는것은 역시 임차기간이 임차기간의 수배로 (원문대로이다!) 되게 하는것, 즉 3포식경영의 경우에는 6년이 아니고 12년, 18년 또는 그 이상으로 정하는것, 즉 7포식 경영의 경우에는 7년이 아니라 14년, 28년으로 정하는것이다.》(키르호호프, 117~118페지)

(원고에는 여기에 《영국의 륜작경영. 여기에 주를 달것.》이라고 씌여져있다.)

제 14 장

류 통 기 간

지금까지 고찰하여온 모든 사정은 각이한 생산부문에 투하된 각이한 자본들의 회전기간의 차이, 따라서 또 자본이 선대되지 않으면 안되는 기간의 차이를 낳게 한다. 이 모든 사정은 고정자본과 류동자본과의 구별, 로동기간의 차이 등과 마찬가지로 생산과정자체내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자본의 회전기간은 그의 생산기간과 류통기간의 합계와 같다. 그렇기때문에 류통기간의 길이가 다르면 회전기간, 따라서 또 회전주기의 길이가 다르게 된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 사실이 제일 명백히 드러나는것은 회전에 변화를 일으키는 사정들중 류통기간외에는 모두 동일하고 다만 류통기간만이 다른 두개의 각이한 투자를 비교하는 경우나 또는 주어진 한 자본에 대하여 고정자본과 류동자본으로써 이루어지는 구성과 로동기간 등이 주어진것으로 하고 다만 류통기간만을 변화시켜보는 경우이다.

류통기간의 한 부분—상대적으로 가장 결정적인 일부분—은 판매기간, 즉 자본이 상품자본의 상태로 있는 기간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기간의 상대적길이에 의하여 류통기간, 따라서 또 회전기간일반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한다. 보관비 등등으로 인하여 자본의 추가적투하가 필요하게

될수도 있다. 처음부터 명백한것이지만 완성된 상품을 파는 .데 필요한 시간은 동일한 생산부문의 개개의 자본가들에게 있어서 극히 각이할수 있다. 따라서 각이한 생산부문에 투하된 자본량들에 있어서뿐만아니라 사실상 동일한 생산분야에 투하된 총자본의 독립화된 부분을 이루고있는데 불과한 각이한 독립자본들에 있어서도 극히 각이할수 있다. 다른 사정들이 변함없다면 동일한 개별적자본에 있어서의 판매기간은 시장관계의 일반적변동에 따라서 또는 특수한 생산부문에 있어서의 시장관계의 변동에 따라서 변동할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서는 이 이상 머무르지 않기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간단한 사실을 확인하는데 그치기로 한다. 즉 일반적으로 각이한 생산부문에 투하된 자본들의 회전기간에 차이를 낳게 하는 모든 사정은 그것들이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례컨대 어떤 자본가가 그의 경쟁자보다 더 빨리 판매할 기회를 가진 경우이거나 또는 어떤 자본가가 로동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을 다른 자본가보다 더 많이 응용하는 경우 등등)에는 동일한 생산부문에 존재하는 각이한 개별적자본들의 회전상의 차이도 초래한다.

판매기간, 따라서 또 회전기간일반에 차이를 낳게 하는데 경상적으로 작용하는 한 원인은 상품이 판매되는 시장이 상품의 생산지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그것이다. 자본은 상품이 시장에로의 려행을 계속하는 전 기간을 통하여 상품자본의 상태에 구속되여있다. 상품이 주문에 의하여 생산되는 경우에는 인도되는 순간까지 그러하며 주문에 의하지 않고 생산되는 경우에는 시장까지 려행하는 기간이외에 상품이 판매될 때까지 시장에 있는 기간이 더 첨가된다. 교통운수수단의 개량은 상품의 이동기간을 절대적으로 단축시키지만 그러나

이 이동으로부터 생기는 각이한 상품자본의 류통기간 또는 각이한 시장으로 이동하는 동일한 상품자본의 각이한 부분의 류통기간의 상대적차이를 없애지는 못한다. 례컨대 범선이거나 기선의 개량이 상품의 이동기간을 단축시키는데 그것은 항구가 멀든 가깝든 마찬가지로 단축시킨다. 상대적차이는 흔히 감소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의연히 남는다. 그러나 교통운수수단의 발전에 의하여 이 상대적차이는 자연적거리에는 상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화할수 있다. 례컨대 생산지로부터 국내의 주요인구집중지로 통하는 철도는 그보다 가까이에 있으나 철도가 통하지 않는 국내의 지점까지의 거리를 자연적으로는 더 먼 지점까지의 거리에 비하여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멀어지게 할것이다. 또 같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비교적 큰 판매시장으로부터 생산지까지의 상대적거리도 변화될 수 있다. 교통운수수단의 변화에 따라 낡은 생산중심지가 몰락하고 새 생산중심지가 흥성하는것은 이것으로써 설명된다 (이밖에도 단거리운수보다도 장거리운수가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든다는것도 첨가된다.). 운수수단의 발전과 함께 공간운동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그에 따라 공간적거리가 시간적으로 단축될뿐만이 아니다. 교통운수수단의 량이 증가하고 그리하여 례컨대 많은 배가 동시에 동일한 항구를 향하여 출발하게 되며 또는 몇개의 렬차가 동시에 동일한 두 지점간의 각이한 선로를 달리게 될뿐만아니라 또한 례컨대 1주일중에 며칠 계속하여 화물선이 리버풀로부터 뉴욕을 향하여 항행하며 또는 동일한 날의 각이한 시각에 몇개의 화물렬차가 만체스터로부터 런던을 향하여 달리게 된다. 물론 운수수단의 효률이 주어진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에 의하여 절대적속도—따라서 류통기간의 이 부분—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련이어

많은 상품량이 실제로 발송될 때까지 잠세적상품자본으로서 대량으로 퇴적되지 않고 보다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련속적으로 발송되며 그리하여 시장에 련속적으로 나타날수 있다. 따라서 환류도 또한 보다 짧은 련속적인 기간들에 분배되며 그리하여 한 부분이 상품자본으로서 류통하고있을 때에 다른 부분은 부단히 화폐자본으로 전화된다. 환류가 몇개의 련속적인 기간내에 분배되는것에 의하여 총류통기간, 따라서 또 회전이 단축된다. 한편으로는 어떤 생산지가 생산을 더 많이 하고 보다 더 큰 생산중심지로 되는 정도에 따라서 우선 운수수단의 기능하는 빈도, 례컨대 철도의 렬차수가 증대되며 이 증가는 기존판매시장의 방향으로, 따라서 또 큰 생산중심지 및 인구집중지, 수출항 등등을 향해서 진행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과는 반대로 교통이 이와 같이 특별히 편리하게 되고 또 그것에 의하여 자본의 회전(이것이 류통기간에 의하여 제약되는 한에 있어서)이 촉진되는 결과 한편으로는 생산중심지의 집적이 촉진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판매지의 집적이 촉진된다. 이와 같이 어떤 일정한 지점들의 인구와 자본량의 집적이 촉진됨에 따라 이 자본량도 소수자의 수중에 집적된다. 동시에 교통수단의 변화에 따라 생산지와 판매지의 상대적위치가 변화하는데 의하여 이 량자의 이동 및 위치변환이 다시 일어난다. 과거에는 그 위치가 국도나 운하의 연선에 있어서 특별히 유리한 지위를 가지고있었던 생산지가 이제는 비교적 긴 시간 간격을 두고 렬차가 한번씩 통할따름인 하나의 철도지선의 연변에 있게 되는데 한편 이전에는 주요교통로로부터 완전히 떨어져있던 다른 지점이 이제는 여러개의 철도의 교차점에 놓이게 된다. 둘째 지방은 륭성하고 첫째 지방은 쇠퇴한다. 이리하여 운수수단의

변화에 의하여 상품의 류통기간, 매매의 기회 등등에 있어서 장소적차이가 생기며 또는 기존의 장소적차이가 다시 변하게 된다. 자본의 회전에 대한 이 사정의 중요성은 각 지방의 상공업 대표들과 철도경영자들간의 론쟁에서 나타나고있다. (레컨대 우에서① 인용한 철도위원회의 청서를 보라.)

그러므로 그 생산물의 성질상 주로 지방적판로에 의거하는 모든 생산부문 레컨대 맥주양조업과 같은 부문은 인구의 주요중심지에서 가장 대규모적으로 발전한다. 자본의 회전이 빨라진다는것이 여기서는 건축용지나 기타 많은 생산조건의 등귀를 어느 정도 상쇄한다.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생산의 진보에 따라 교통운수수단의 발전이 주어진 량의 상품의 류통기간을 단축시킨다면 이 동일한 진보와 교통운수수단의 발전과 함께 주어진 가능성은 반대로 점점 더 먼 시장,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시장을 개척할 필요성을 야기한다. 운수중에 있는 상품, 원거리의 지점을 향하여 가지고있는 상품의 량은 대대적으로 증가하며 그렇기때문에 사회적자본중 장기간 부단히 상품자본의 단계에, 류통기간내에 있는 부분은 절대적 및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이와 동시에 사회적부중 직접적인 생산수단으로서 복무하는것이 아니라 교통운수수단에 투하되는 부분, 그리고 교통운수수단의 경영에 필요한 고정자본과 류동자본에 투하되는 부분도 또한 증대한다.

생산지로부터 판매지에로의 상품의 려행의 상대적인 길이에 의하여서만도 류통기간의 제1부분인 판매기간의 차이를 일으킬뿐만아니라 제2부분, 즉 화폐가 생산자본의 제 요소로 재전화하는 기간인 구매기간의 차이도 일으킨다. 레컨대 상

① 본권 169페지를 보라. —편집자

품이 인도로 운송된다고 하자. 이 운송에 레컨대 4개월이 걸린다고 하자. 판매기간은 령이라고 하자. 즉 상품은 주문에 의하여 발송되고 인도됨과 동시에 생산자의 대리인에게 지불된다고 하자. 화폐의 송환에도(그 형식은 여기서는 아무래도 좋다.) 역시 4개월이 걸린다고 하자. 그러면 동일한 자본이 다시 생산자본으로서 기능할수 있게 되며 그에 따라서 동일한 작업을 갱신할수 있게 되기까지에는 모두 8개월이 걸리게 된다. 이렇게 초래된 회전의 차이는 신용기간의 차이의 물질적기초의 하나를 이룬다. 례컨대 베네찌야와 제노바에서의 해외무역이 일반적으로 본래의 신용제도의 기원의 하나로 되고있는것이다.

《1847의 공황은 당시의 은행업이나 상업이 인도나 중국의 수형기한(그곳들과 구라파간의 수형의 유효기간)을 일부후 10개월로부터 일람후 6개월로 단축시킬수 있게 하였으나 그후 20년동안 항행이 가일층 빨라지고 전신도 설치되여 오늘에는 일람후 6개월로부터 일부후 4개월로의 가일층의 단축이 일람후 4개월로 이행하기 위한 제1보로서 필요하게 되였다. 희망봉을 돌아 칼커타로부터 런던으로 가는 돛배의 려정은 평균 90일 미만이다. 일람후 4개월이라는 수형기한은 우선 150일의 유효기간에 해당할것이다. 일람후 6개월이라는 현재의 수형기한은 대략 210일의 유효기간에 해당한다.》(《런던경제학자》1866년 6월 16일호)—

그런데

《브라질의 수형기한은 지금도 일람후 2개월이나 3개월로 되여있다. 안트웨르펜으로부터의(런던으로의) 수형은 일부후 3개월불로 발행되며 만체스터와 브래드퍼드에서까지도 런던으로는 3개월 또는 더 긴 기간으로 발행된다. 그리하여 상인에게는 암암리의 합의에 의하여 자기의 상품에 대하여 발행된 수형이 만기가 되기 이전에는 아니지만 만기가 될 때까지는 자기의 상품을 실현할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진

다. 그러므로 인도의 수형의 기한은 과도한것이 아니다. 런던에서는 대개 3개월의 지불기한으로 판매되는 인도의 산물은 판매를 위한 약간의 시간을 계산에 넣는다면 5개월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실현될수는 없으나 한편 인도에서의 구입과 영국의 창고에서의 인도사이에는 평균하여 또 5개월이 더 걸린다. 그래서 10개월이라는 기간이 되는데 상품에 대하여 발행되는 수형의 기한은 7개월을 넘지 않는다.》(우와 같은 잡지, 1866년 6월 30일) 《1866년 7월 2일에 주로 인도나 중국과 거래를 하고있는 런던의 5대은행과 빠리의 수형할인은행은 1867년 1월 1일 이후에는 동양에 있는 자기들의 지점이나 대리점이 매매하는 수형은 일람후 4개월을 넘지 않는것에 한한다고 통지하였다.》(우와 같은 잡지, 1866년 7월 7일)

그러나 이 단축은 실패로 끝났으며 다시 단념하지 않으면 안되였다.(그후 수에즈운하는 이러한것을 죄다 변혁시켰다.)

두말할것도 없이 상품의 류통기간이 연장되면 판매시장에서의 가격변동의 위험은 증대된다. 왜냐 하면 가격변동이 일어날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기때문이다.

현금으로 즉시에 지불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형기한의 차이에 따라 혹은 개별적으로 동일한 생산부문의 각이한 개별적자본간에서 혹은 각이한 생산부문간에서 류통기간 차이가 구입이나 판매에 있어서의 지불기한의 차이로부터 생긴다. 이 점은 신용제도에 있어서 중요한것이지만 여기서는 이상 더 운운하지 않기로 한다.

상품인도계약의 규모는 자본주의적생산의 규모와 수준에 따라 증대하는데 이 인도계약의 규모에서도 회전기간상의 차이가 생긴다.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거래로서의 상품인도계약은 시장, 즉 류통분야에 속하는 한 활동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생기는 회전기간의 차이는 류통분야로부터 생기는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직접 생산분야에 반작용한다. 그리고 모든 지불기한

이나 신용관계를 무시하더라도, 따라서 현금지불의 경우에도 역시 그러하다. 례컨대 석탄, 면화, 방사 등은 분리될수 있는 생산물이다. 매일 생산되는 량이 그대로 완성생산물이다. 그런데 만약 방적업자나 탄광주가 례컨대 4주간이나 6주간 련속되는 로동일을 필요로 하는 생산물량의 인도를 맡았다고 하면 그것은 자본이 선대되여야 할 기간에 관하여서는 마치 4주거나 6주에 걸치는 련속적인 로동기간이 이 로동과정에 채용된 것과 같은것이다. 이 경우에는 물론 생산물의 전체 주문량이 한꺼번에 인도된다는것, 또는 그것이 전부 인도된후에야 지불이 진행된다는것이 전제된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고찰하면 매일 일정한 량의 완성생산물이 생산된셈이다. 그러나 이 매일 완성되는 량은 언제나 다만 계약에 의하여 인도되여야 할 량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 경우에는 주문받은 상품중 이미 완성된 부분은 이제는 생산과정에 있는것이 아니지만 다만 잠세적인 자본으로서 창고안에 잠자고있는것이다.

이제는 류통기간의 제2시기인 구매기간 또는 자본이 화폐형태로부터 생산자본의 제 요소로 재전화되는 기간을 고찰하여보자. 이 기간에는 자본은 길거나 짧은 시간 화폐자본의 상태에 머물러있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선대총자본중의 어떤 부분이 비록 그것이 부단히 변화되는 요소들로써 구성되기는 하지만 부단히 화폐자본의 상태에 있지 않으면 안된다. 례컨대 어떤 일정한 기업에서는 선대총자본중 n×100파운드는 화폐자본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 이 n×100파운드의 모든 구성부분이 부단히 생산자본으로 전화되여가지만 그만큼한 금액은 류통으로부터의 류입에 의하여, 즉 실현된 상품자본으로부터의 류입에 의하여 마찬가지로 부단히 다시 보충되여가는것이다. 이리하여 선대자본의 일정한

가치부분은 부단히 화폐자본의 상태에, 즉 그 생산분야에가 아니라 류통분야에 속하는 형태로 있는것이다.

이미 본바와 같이 자본이 상품자본형태에 구속되여있는 기간이 시장이 멀기때문에 연장된다는것은 직접 화폐환류의 지연을 초래하며 따라서 또 화폐자본으로부터 생산자본으로의 자본의 전화도 지연시킨다.

다음으로 이미 본바와 같이(제6장) 상품의 구입에 관하여 말한다면 구매기간이 있기때문에, 또 원료의 주요공급지로부터 다소간 멀리 떨어져있기때문에 비교적 장기간분의 원료를 구입하여 생산용재고의 형태로, 즉 잠재적 또는 잠세적 생산자본의 형태로 준비해둘 필요가 있게 된다. 그때문에 생산의 규모가 변하지 않는 사정하에서 한꺼번에 선대되지 않으면 안되는 자본량이 증대되며 자본이 선대되지 않으면 안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비교적 대량의 원료가 시장에 방출되는 주기—길거나 짧은—도 각이한 기업부문들에서 동일하게 작용한다. 례컨대 런던에서는 3개월마다 양털의 대 경매가 진행되여 그것이 양털시장을 지배한다. 그런데 면화시장은 언제나 균등하지는 않지만 한 수확기로부터 다음 수확기까지 대체로 련속적으로 갱신된다. 이러한 주기는 이 원료들의 주요구입시기를 결정하며 또 특히 이러한 생산요소에 대한 길거나 짧은 기간의 선대를 수반하는 투기적인 구입에도 영향을 준다. 그것은 마치도 생산된 상품의 성질이 생산물을 길거나 짧은 기간 투기적으로 고의로 잠세적인 상품자본의 형태로 억류하는데 대하여 영향주는것과 같은것이다.

《그러므로 농업가도 역시 어느 정도까지는 투기업자가 되지 않으

면 안되며 따라서 또 그 시기의 사정에 따라서는 자기의 생산물의 판매를 억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계속하여 약간의 일반적원칙이 서술된다.

《그러나 생산물의 판매에서는 주로 사람과 생산물자체와 장소에 달린다. 수완과 행운(!)에 의하여(!) 충분한 경영자본을 가지고있는 사람은 가격이 몹시 낮은 경우에는 자기가 거둔 수확을 1년동안이나 팔지 않고 두어도 비난받지는 않을것이다. 그러나 경영자본이 없거나 또는 대체로(!) 투기심이 없는 사람은 평균시가를 얻으려고 애쓸것이며 따라서 기회가 있는대로, 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팔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양털을 1년이상 팔지 않고 둔다면 거의 언제나 손실을 볼따름이지만 곡물과 유채씨는 몇해동안은 속성과 품질을 손상시킴이 없이 저장해둘수 있다. 보통 그 가격이 단기간내에 심한 등락을 면할수 없는 생산물, 례컨대 유채씨, 호프, 산토끼꽃 등은 그 가격이 생산가격보다 훨씬 낮다면 몇해라도 팔지 않고 두는것도 당연할것이다. 비육가축과 같이 매일 유지비가 드는것들, 또는 과실이나 감자 등과 같이 썩기 쉬운것의 판매는 절대로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지방에 따라서는 어떤 생산물의 가격이 평균하여 어떤 계절에는 가장 낮고 다른 계절에는 가장 높은것이다. 례컨대 곡물의 가격은 많은 지방들에서 평균하여 크리스마스와 부활제사이에 있어서 보다 성마르틴제경에 저렴하다. 또한 생산물에 따라서는 많은 지방들에서 어떤 시기에 한해서만 잘 팔리는것이다. 례컨대 보통은 양털거래가 없는 지방에서 양털시장이 설 때에는 그것이 잘팔린다….》(키르호호프, 302페지)

화폐가 생산자본의 제 요소로 재전화되는 류통기간의 후반의 고찰에 있어서 문제인것은 그자체로서 고찰된 이 전화자체만이 아니다. 즉 생산물이 팔리는 시장의 거리에 따라서 화폐가 환류하는 필요한 시간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먼저 고찰되는것은 선대자본의 일부분이 부단히 화폐형태로, 즉 화폐자본의 상태에 있지 않으면 안되는 그 크기이다.

모든 투기를 별도로 한다면 언제나 생산용재고로서 존재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품의 구입량은 이 재고의 갱신기간에 의존하며 따라서 그자체가 또한 시장관계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원료 등등이 다름에 따라 각이한 제 사정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때때로 비교적 대량의 화폐가 한꺼번에 선대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화폐는 자본의 회전에 따라 급속하거나 완만하기는 하지만 여하튼 부단히 조금씩 환류한다. 그 일부분은 마찬가지로 다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지출된다. 즉 로임으로 재전화되는 부분이 그러하다. 그러나 다른 하나의 부분, 즉 원료 등으로 재전화하는 부분은 구매를 위해서나 지불을 위해서나 준비금으로서 비교적 장기간 적립되여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화폐자본의 형태로 존재한다. 비록 그것이 화폐자본으로서 존재하는 크기는 변동하더라도.

우리는 다음 장에서 이밖에도 다른 제 사정들이 생산과정으로부터 나오는것이든 또는 류통과정으로부터 나오는것이든간에 이와 같이 선대자본의 일정한 부분이 언제나 화폐형태로 존재하는것을 필요로 한다는것을 보게 될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일반적으로 지적해두어야 할것은 기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본의 일부분이 부단히 화폐자본, 생산자본, 상품자본의 세 형태를 련이어 통과할뿐만아니라 동일한 자본의 각이한 부분들이 그 상대적크기는 부단히 변동한다 하더라도 부단히 서로 나란히 이 형태들을 취한다는 사실을 경제학자들은 자주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경제학자들이 망각하고있는것은 부단히 화폐자본으로서 존재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바로 이 사정이야말로 자산계급경제의 리해를 위하여 극히 필요한것이며 따라서 실제상에서도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것이다.

제 15 장

회전기간이 선대자본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

이 장과 다음의 제16장에서는 회전기간이 자본의 가치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취급한다.

례컨대 9주간으로써 이루어지는 1로동기간의 생산물인 상품자본을 보기로 하자. 고정자본의 평균적마멸에 의하여 생산물에 첨가되는 가치부분과 생산과정에 생산물에 첨가되는 잉여가치를 당분간 도외시한다면 이 생산물의 가치는 그 생산을 위하여 선대된 류동자본의 가치와 같다. 즉 로임의 가치와 그 생산물의 생산에 소비된 원료 및 보조재료의 가치와 같다. 이 가치는 900파운드이며 따라서 1주의 투하는 100파운드라고 하자. 이 경우에 주기적생산기간은 로동기간과 일치하며 따라서 9주간이다. 이 경우에 여기에서 말하는 로동기간은 하나의 련속적인 생산물을 위한 1로동기간이라고 가정하든 그렇지 않으면 분리될수 있는 생산물을 위한 하나의 련속적인 로동기간이라고 가정하든 그것은 이 분리될수 있는 생산물이 한꺼번에 시장에 공급되는 량이 9주간의 로동을 필요로 하는것이기만 하면 아무래도 좋다. 그리고 류통기간은 3주간이라고 하자. 그러면 전 회전기간은 12주간이 된다. 9주간이 경과하면 선대된 생산자본은 상품자본으로 전화

되여있으나 그것은 이제부터 3주간동안은 류통기간내에 있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생산기간은 제13주의 초에 가서야 비로소 다시 개시될수 있으며 생산은 3주간, 즉 전 회전기간의 $\frac{1}{4}$동안 정지하게 될것이다. 상품이 판매될 때까지 평균 3주간이 걸린다고 가정하든, 그렇지 않으면 이 3주간이 시장과의 거리에 의해서나 또는 판매된 상품의 지불기한에 의하여 그만큼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든 이것도 역시 아무래도 좋다. 생산은 매 3개월에 3주간, 따라서 1년에는 4×3=12주간=3개월=년회전기간의 $\frac{1}{4}$이 정지될것이다. 그러므로 생산이 련속적이고 또 매주 동일한 규모로 진행되려면 오직 다음의 두가지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 하나는 생산의 규모가 축소되여 제1회전의 로동기간 및 류통기간중에 작업을 계속하는데 900파운드로써 충분하게 되도록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에는 제10주부터, 즉 제1회전기간이 끝나기전에 제2로동기간, 따라서 제2회전기간이 개시된다. 왜냐 하면 회전기간은 12주간이고 로동기간은 9주간이기때문이다. 900파운드를 12주간에 분배한다면 매주 75파운드가 된다. 첫째로, 명백한것은 이와 같은 기업규모의 축소는 고정자본의 크기의 변화를 전제로 하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업설비의 축소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둘째로, 대체로 이와 같은 축소가 일어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이 문제로 된다. 왜냐 하면 각이한 기업에서의 생산의 발전정도에 따라 투자의 표준적최저한도가 있어서 그 이하에서는 개개의 기업은 경쟁을 할수 없게 되기때문이다. 이 표준적최저한도 자체도 자본주의적생산의 발전과 함께 부단히 증대되는

것이며 따라서 결코 고정적인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때그때에 주어지는 표준적최저한도와 부단히 확대되여가는 표준적최대한도사이에는 많은 중간단계—극히 각이한 정도의 자본투하를 허용하는 중간—가 나타난다. 그때문에 이 중간단계의 한계내에서도 역시 축소가 일어날수 있으며 이 축소의 한계가 그때그때의 표준적최저한도 자체이다.—생산의 장애나 시장의 공급과잉, 원료의 등귀 등이 생기면 로동시간을 제한하는데 의하여, 례컨대 반날밖에 작업하지 않는데 의하여 주어진 고정자본의 기초우에서 류동자본의 정상적투하의 제한이 일어난다. 마찬가지로 번영기에는 혹은 로동시간의 연장에 의하여, 혹은 로동강도의 강화에 의하여 주어진 고정자본의 기초우에서 류동자본의 비상한 확대가 일어난다. 이와 같은 변동을 처음부터 타산하고있는 기업들에서는 혹은 상술한 수단에 의하여 혹은 보다 많은 수의 로동자의 사용에 의하여 곤경에서 벗어나는데 이 후자의 경우에는 예비고정자본, 례컨대 철도에서는 예비기관차 등의 사용과 결합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정상적인 변동은 정상적인 제 관계를 전제로 하는 여기서는 고찰하지 않기로 한다.

그리하여 이 경우에 생산을 련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동일한 류동자본의 지출이 보다 장기간에, 즉 9주간이 아니라 12주간에 분배되여있다. 따라서 소여의 매 기간에는 축소된 생산자본이 기능한다. 생산자본의 류동부분은 100으로부터 75로 축소되였다. 즉 $\frac{1}{4}$이 축소되였다. 9주간이라는 로동기간중에 기능하는 생산자본이 축소되는 총액은 9×25=225파운드, 즉 900파운드의 4분의 1이다. 그러나 류통기간과 회전

기간사이의 비률은 여전히 $\frac{3}{12}=\frac{1}{4}$이다. 그러므로 상품자본으로 전화된 생산자본의 류통기간중에 생산이 중단되지 않으려면, 생산이 동시에 련속적으로 매주 계속되려면 그리고 이를 위하여 특별한 류동자본이 주어져있지 않다면 이것은 오직 생산경영의 축소에 의해서만, 즉 기능하는 생산자본의 류동적구성부분의 축소에 의해서만 달성할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와 같이 류통기간중의 생산을 위하여 유리된 류동자본부분과 선대총류동자본과의 비률은 류통기간과 회전기간의 비률과 같다. 우에서 이미 지적된바와 같이 이것이 적용되는것은 다만 로동과정이 매주 동일한 규모로 진행되는 생산부문뿐이다. 즉 농업에서와 같이 각이한 로동기간에 각이한 액을 투하할 필요가 없는 생산부문뿐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기업의 성격상 생산규모의 축소, 따라서 또 매주 선대되는 류동자본의 축소를 용허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생산의 련속은 오직 추가적류동자본—우의 례에서는 300파운드—에 의해서만 달성될수 있다. 12주간이라는 회전기간중에는 1,200파운드가 순차로 선대될것인데 300파운드가 그의 $\frac{1}{4}$인것은 3주간이 12주간의 $\frac{1}{4}$인것과 마찬가지이다. 9주간이라는 로동기간이 끝난후에는 900파운드의 자본가치는 생산자본의 형태로부터 상품자본의 형태로 전화되여있다. 이 자본가치의 로동기간은 끝났으나 그것은 동일한 자본으로써는 갱신될수 없다. 이 자본이 류통분야에 체류하여 상품자본으로서 기능하는 3주간은 그 자본은 생산과정에 대해서는 마치도 그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것과 같은 상태에 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신용관계를 도외시한다.

따라서 자본가는 다만 자기의 자본만을 가지고 경영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제1로동기간을 위하여 선대된 자본이 생산과정이 끝나서부터 3주동안 류통과정에 머물러있는 동안은 추가적으로 투하된 300파운드의 자본이 기능하기때문에 생산의 련속은 중단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에 관해 아래와 같이 지적해둘 필요가 있다.

첫째로, 최초에 선대된 자본 900파운드의 로동기간은 9주간후이면 끝나고있다. 그리고 이 자본은 3주간이 더 경과하기전에는, 즉 제13주초가 되기전에는 환류하지 않는다. 그러나 새로운 로동기간은 300파운드의 추가자본으로 즉시 새로 개시된다. 바로 이때문에 생산의 련속성은 유지된다.

둘째로, 최초의 자본 900파운드의 기능과 9주간의 제1로동기간의 종말에 새로 추가되여 제1로동기간이 종말된후에 중단없이 제2로동기간을 개시하는 자본의 기능과는 제1회전기간에는 호상 명확히 구분되여있든가 또는 적어도 구분될수 있는데 이에 반하여 제2회전기간의 경과중에는 이러한 기능들은 호상 교착된다.

사태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보자.

12주간의 제1회전기간. 9주간의 제1로동기간. 이 기간에 선대된 자본의 회전은 제13주의 초에 끝난다. 최후 3주간에는 300파운드의 추가자본이 기능하여 9주간의 제2의 로동기간을 개시한다.

제2회전기간. 제13주초에는 900파운드가 환류하며 새로운 회전을 개시할수 있다. 그러나 제2로동기간은 추가된 300파운드에 의하여 이미 제10주에 개시된다. 제13주의 초에는 이 300파운드에 의하여 이미 로동기간의 $\frac{1}{3}$이 끝났고 300파운드

는 생산자본으로부터 생산물로 전화되였다. 제2로동기간을 끝내는데는 6주간밖에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 로동기간의 생산과정에 들어갈수 있는것은 환류한 자본 900파운드의 $\frac{2}{3}$, 즉 600파운드뿐이다. 300파운드가 원래의 900파운드중에서 유리되여 제1로동기간중에 300파운드의 추가자본이 논것과 동일한 역할을 놀게 된다. 제2회전기간의 제6주말에는 제2로동기간이 끝나고있다. 이 로동기간에 투하된 900파운드의 자본은 3주간후에, 즉 제2의 12주간의 회전기간의 제9주말에 환류한다. 이 류통기간의 3주간동안에는 유리되였던 300파운드의 자본이 들어온다. 그리하여 900파운드의 자본의 제3로동기간은 제2회전기간의 제7주에, 즉 그해의 제19주에 개시된다.

제3회전기간. 제2회전기간의 제9주말에는 새로 900파운드가 환류한다. 그러나 제3로동기간은 선행회전기간의 제7주에 개시되였으며 이미 6주간이 경과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지속될 기간은 3주간뿐이다. 따라서 환류한 900파운드중에서 300파운드밖에 생산과정에 들어가지 않는다. 제4로동기간은 이 회전기간의 나머지 9주간을 차지한다. 그리하여 그해의 제37주부터 제4회전기간과 제5로동기간이 동시에 개시된다.

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하여 로동기간을 5주간, 류통기간을 5주간, 따라서 회전기간을 10주간으로 가정하고 1년을 50주로 계산하고 매주의 자본투하를 100파운드라고 하자. 그러면 1로동기간은 500파운드의 류동자본을 필요로 하며 1류통기간은 새로 500파운드의 추가자본을 필요로 한다. 그리하여 로동기간과 회전기간은 다음과 같이 된다.

로동기간	주	상품(파운드)	환류시간
1	1—5	500	제10주말
2	6—10	500	제15주말
3	11—15	500	제20주말
4	16—20	500	제25주말
5	21—25	500	제30주말
			등등

만약 류통기간=0이면, 따라서 회전기간이 로동기간과 같다면 1년간의 회전수는 로동기간수와 같다. 따라서 로동기간이 5주간이면 1년간의 회전수는 $\frac{50}{5}$=10일것이며 회전한 자본의 가치는 500×10=5,000일것이다. 류통기간을 5주간이라고 가정한 웃표에서도 매년 생산되는 상품의 가치는 역시 5,000파운드이나 그중 $\frac{1}{10}$=500파운드는 언제나 상품자본의 형태로 있으며 5주간후에야 비로소 환류한다. 그러므로 년말에는 제10로동기간(제46~50로동주간)의 생산물은 그 회전기간을 절반밖에 끝마치지 않는다. 왜냐 하면 그 류통기간은 다음해의 최초의 5주간에 해당하기때문이다.

이제 제3의 례로서 로동기간이 6주간, 류통기간이 3주간, 로동과정에서의 매주의 선대액이 100파운드인 경우를 들어보자.

제1로동기간: 제1~6주. 제6주말에는 600파운드의 상품자본이 있으며 제9주말에 환류한다.

제2로동기간: 제7~12주. 제7~9주에 300파운드의 추가자본

이 선대된다. 제9주말에는 600파운드가 환류한다. 그중 제10~12주에 300파운드가 선대된다. 따라서 제12주말에는 현금으로서 300파운드, 상품자본으로서 600파운드가 있으며 이것은 제15주말에 환류한다.

제3로동기간: 제13~18주. 제13~15주간에 상기 300파운드가 선대되며 그다음에 600파운드가 환류하는데 그중 300파운드는 제16~18주를 위하여 선대된다. 제18주말에는 현금으로서 300파운드, 상품자본으로서 600파운드가 있으며 이것은 제21주말에 환류한다(이 경우의 보다 상세한 설명은 아래의 제Ⅱ절을 보라).

이리하여 9개의 로동기간(=54주간)에는 600×9=5,400파운드의 상품이 생산된다. 제9로동기간말에는 이 자본가는 현금으로서 300파운드를 가지며 또 류통기간을 끝내지 않은 상품으로 600파운드를 가지게 된다.

이상의 세 례를 비교하여보면 첫째로 알수 있는것은, 오직 제2례에서만 500파운드의 자본 Ⅰ과 역시 500파운드의 추가자본 Ⅱ의 순차적인 교체가 수행되며 이 두 자본부분이 서로 따로따로 운동한다는것, 그리고 그것은 다만 이 경우에는 로동기간과 류통기간이 각각 회전기간의 동등한 절반을 이루고있다는 완전히 례외적인 가정을 하고있기때문임에 불과하다는것이다. 다른 모든 경우에는 회전기간의 두 기간의 차이가 얼마나 되든 그것에는 관계없이 제1의 례나 제3의 례에 있어서와 같이 두 자본의 운동이 이미 제2회전기간으로부터 호상 교차된다. 이 경우에 추가자본 Ⅱ는 자본 Ⅰ의 일부분과 결합되여 제2회전기간에 기능하는 자본을 형성하고 한편 자본 Ⅰ의 나머지 부분은 자본 Ⅱ의 최초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리된다. 상품자본의 류통기간중에 작용하는 자본은

여기서는 최초에 이 목적을 위하여 선대된 자본 Ⅱ와 동일한 것은 아니나 그 가치는 같은것이며 선대총자본의 동일한 부분을 이룬다.

둘째로, 로동기간에 기능한 자본은 류통기간에는 놀게 된다. 제2의 례에서 자본은 5주간의 로동기간중에는 기능하고 5주간의 류통기간중에는 놀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자본 Ⅰ이 1년간 놀고있는 시간의 총계는 반년이다. 그리하여 이 시간중에 추가자본 Ⅱ가 등장하는데 이 자본도 또 이 경우에는 반년동안은 놀게 된다. 그러나 류통기간중의 생산의 련속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본은 1년동안의 류통기간들의 총량 또는 합계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다만 회전기간에 대한 류통기간의 비률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여기서는 물론 모든 회전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진행된다는 것이 전제되여있다.). 따라서 제2의 례에서는 500파운드의 추가자본이 필요하며 2,500파운드가 필요한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추가자본도 최초의 선대자본과 마찬가지로 회전을 개시하며 따라서 또 이 후자와 완전히 마찬가지로 그 회전수에 의하여 그 량을 보충한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셋째로, 생산기간이 로동기간보다 길다 하더라도 이것은 여기에서 고찰한 사정을 조금도 변동시키는것이 아니다. 물론 그때문에 총회전기간은 연장되지만 그 연장된 회전때문에 로동과정을 위한 추가자본이 필요하게 되는것은 아니다. 추가자본의 목적은 류통기간이 있기때문에 로동과정에 생기는 빈틈을 메꾼다는것뿐이다. 따라서 이 추가자본은 류통기간에 발생하는 교란들로부터 생산을 보호하기만 하면 된다. 생산자체의 제 조건으로부터 생기는 교란은 여기서는 고찰되지 않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조정되여야 할것이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기업에서는 다만 단속적으로 주문에 의해서만 작업이 진행될뿐이며 따라서 로동기간과 로동기간사이에 중단이 생길수 있다. 이러한 기업에서는 그만큼 추가자본의 필요가 없어진다. 한편 계절로동에서는 대다수의 경우에 환류의 시기도 어떤 한계가 주어져있다. 동일한 작업이 동일한 자본으로써 다음해에 갱신된다는것은 그사이에 이 자본의 류통기간이 끝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와는 반대로 류통기간은 한 생산기간으로부터 그다음 생산기간까지의 간격보다 더 짧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자본은 이 중간시기에 다른 방면에 사용되지 않으면 놀게 되는것이다.

넷째로, 1로동기간을 위하여 선대되는 자본 레컨대 제3의 례에서의 600파운드는 일부분은 원료나 보조재료에, 이 로동기간을 위한 생산용재고에, 즉 불변적류동자본에 투하되며 일부분은 가변적류동자본에, 즉 로동자체에 대한 지불에 투하된다. 불변적류동자본에 투하되는 부분이 생산용재고의 형태로 존재하는 기간은 동일하지 않을수 있다. 레컨대 원료는 1로동기간용의 전체 량이 재고되여있지 않을수도 있으며 석탄은 2주일에 한번씩 사들일수도 있다. 그렇지만—여기서 신용은 아직 제외되여있으므로—자본의 이 부분은 생산용재고의 형태로 마음대로 사용할수 있는것이 아닌 한 화폐형태로 마음대로 사용할수 있는 상태에 머물러있어서 필요에 따라 생산용재고로 전화될수 있게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6주일동안에 선대되는 불변적류동자본의 가치의 크기를 조금도 변화시키지 않는다. 이와는 반대로—예측할수 없는 지출을 위한 화폐준비나 교란조정을 위한 본래의 준비금은 별도로 하고—로임은 보다 짧은 기간에, 대개는 매주 지불된다. 따라서 자본가가 로동자에게 자기의 로동을 보다 긴 기간 자

기에게 선대하도록 강제하지 않는 한 로임을 위하여 필요한 자본은 화폐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자본이 환류될 때 다른 부분은 생산용재고로 전화될수 있어도 일부분은 로동에 대한 지불을 위하여 화폐형태로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

추가자본은 원 자본과 완전히 마찬가지로 분할된다. 그러나 추가자본을 자본 Ⅰ과 구별하는것은 그것이(신용관계를 도외시하면) 그자체의 로동기간을 위하여 마음대로 사용할수 있는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들어가지 않는 자본 Ⅰ의 제1로동기간의 전 기간중에 이미 선대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추가자본은 이미 이 기간중에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전 회전기간을 위하여 선대되여있는 불변적류동자본으로 전화될수 있다. 추가자본이 어느 정도로 이 불변적류동자본의 형태를 취하는가 또는 그것이 이 전화가 필요하게 되는 순간까지 어느 정도로 추가적화폐자본의 형태로 머무르는가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일정한 생산부문의 특수한 생산 제 조건에 의존하며 부분적으로는 지방적사정이나 또는 원료 등의 가격변동에 의존한다. 사회적총자본을 보면 이러한 추가자본의 상당한 한 부분은 언제나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화폐자본의 상태에 있을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자본 Ⅱ중에서 로임으로 선대되는 부분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 부분은 언제나 비교적 짧은 로동기간이 경과하여 지불이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비로소 점차적으로 로동력으로 전화되여간다. 그러므로 자본 Ⅱ의 이 부분은 로동력으로의 전화에 의하여 생산자본의 기능을 시작할 때까지 로동기간의 전 기간에 걸쳐 화폐자본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리하여 자본 Ⅰ의 류통기간을 생산기간으로 전화시키

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본이 인입된다는것은 단지 선대자본의 크기와 그리고 총자본이 선대되지 않으면 안되는 기간의 길이를 증대시킬뿐만아니라 또한 특히는 선대자본중 화폐준비로서 존재하는 부분, 따라서 화폐자본의 상태에 있으며 잠세적인 화폐자본의 형태를 가지고있는 부분을 증대시킨다.

그리고 이러한것이 일어나는것은—생산용재고라는 형태로서의 선대에 관해서도, 화폐준비의 형태로서의 선대에 관하여서도—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즉 류통기간이 있기때문에 자본을 제1로동기간을 위한 자본과 류통기간을 위한 보충자본이라는 두 부분으로 분할하는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분할이 투하자본의 증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산규모의 축소에 의해서 초래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생산규모에 대한 비률로 보아 화폐형태로 구속되여있는 자본의 증가가 더 크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자본이 원래의 생산자본과 추가자본으로 분할되는데 의하여 달성되는것은 로동기간들이 중단없이 련속된다는것이며 선대자본중의 같은 크기의 일부분이 생산자본으로서 부단히 기능한다는것이다.

이제 제2의 례를 고찰하여보자. 부단히 생산과정에 있는 자본은 500파운드이다. 로동기간은 5주간이므로 이 자본은 50주간(이것을 1년으로 가정한다.)에는 10회 기능한다. 따라서 또 그 생산물은 잉여가치를 도외시한다면 10×500=5,000파운드이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중단없이 생산과정에서 작용하는 자본—500파운드라는 자본가치—의 관점에서 보면 류통기간은 완전히 소멸되여버린것 같이 보인다. 회전기간은 로동기간과 일치한다. 류통기간은 령으로 가정되여있다.

이와는 반대로 만약 500파운드의 자본이 규칙적으로 5주간이라는 류통기간때문에 그 생산적활동을 중단하며 그리하여 10주간의 전 회전기간이 끝난후에야 비로소 다시 생산이 진행될수 있게 된다면 1년의 50주간에는 5회의 10주간 회전을 하게 될것이다. 그중에는 5주간의 생산기간이 5회, 즉 도합 25생산주간이 있으며 그 총생산물은 5×500=2,500파운드일것이다. 또 5주간의 류통기간이 5회, 따라서 총류통기간도 역시 25주간일것이다. 이 경우에 우리가 500파운드의 자본이 1년에 5회전하였다고 말한다면 각 회전기간의 절반에는 이 500파운드의 자본은 생산자본으로서는 전혀 기능하지 않았다는것, 따라서 전부 합계하면 이 자본은 반년동안만 기능하고 나머지 반년동안은 전혀 기능하지 않았다는것은 아주 명백하다.

우리의 례에서는 이 5회의 류통기간에는 500파운드의 보충자본이 들어오며 그때문에 회전되는것은 2,500파운드로부터 5,000파운드로 증대된다. 그러나 선대자본도 이제는 500파운드가 아니라 1,000파운드이다. 5,000을 1,000으로 제하면 5이다. 따라서 10회전이 아니라 5회전이다. 실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계산된다. 그러나 그 경우에 1,000파운드의 자본이 1년에 5회전하였다고 말하면 자본가의 공허한 머리속에서는 류통기간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고 마치도 이 자본이 련속 5회전하는 동안에 부단히 생산과정에서 기능하였다는듯한 혼란된 관념이 형성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 1,000파운드의 자본이 5회전하였다고 말한다면 거기에는 생산기간도 류통기간도 포함되여있는것이다. 사실상 만약 현실적으로 1,000파운드가 생산과정에서 부단히 작용하였다고 하면 생산물은 우리의 전제하에서는 5,000파운드가 아니라 10,000파운드로 되

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그러나 1,000파운드가 생산과정에 부단히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하튼 2,000파운드가 선대되여있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회전의 기구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경제학자들은 언제나 이 중요한 점을 홀시한다. 즉 생산이 중단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생산과정에서 작용하는 것은 언제나 산업자본의 일부분뿐이라는 점을 홀시한다. 한 부분이 생산기간중에 있을 때 다른 부분은 항상 류통기간중에 있지 않으면 안된다. 바꾸어말하면 자본의 한 부분은 다른 부분이 상품자본 또는 화폐자본의 형태로 고유한 의미에서의 생산으로부터 리탈되여있는 조건하에서만 생산자본으로서 기능할수 있다. 이 점이 홀시되면 일반적으로 화폐자본의 의의와 역할도 홀시된다.

다음 우리가 연구하지 않으면 안될것은 회전기간의 두 부분—로동기간과 류통기간—이 동등한가 또는 로동기간이 류통기간보다 긴가 짧은가 하는데 따라서 회전상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그리고 또 이것이 화폐자본형태에서의 자본의 구속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것이다.

우리는 매주 선대되여야 할 자본은 어느 경우에나 100파운드이며 회전기간은 9주간이며 따라서 매개 회전기간을 위하여 선대되여야 할 자본은 900파운드라고 가정하자.

1. 로동기간이 류통기간과 같은 경우

이러한 경우는 현실에 있어서는 우연적인 례외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러나 고찰의 출발점으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 하면 이 경우에는 제 관계가 가장 단순하고 가장 명료하

게 나타나기때문이다.

두 자본(제1로동기간을 위하여 선대되는 자본 Ⅰ과 자본 Ⅰ의 류통기간중에 기능하는 추가자본 Ⅱ)은 서로 교차되여 운동하는것이 아니라 서로 교체하면서 운동한다. 따라서 제1기간을 제외한다면 이 두 자본은 어느것이나 다만 그자신의 회전기간을 위해서만 선대된다. 회전기간은 다음의 례들에서와 같이 9주간이며 따라서 로동기간과 류통기간은 각각 $4\frac{1}{2}$주간이라고 하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년간도표가 얻어진다.

제 Ⅰ 표

자 본 Ⅰ

회전기간(주)	로동기간(주)	선대(파운드)	류통기간(주)
Ⅰ. 1—9	$1-4\frac{1}{2}$	450	$4\frac{1}{2}-9$
Ⅱ. 10—18	$10-13\frac{1}{2}$	450	$13\frac{1}{2}-18$
Ⅲ. 19—27	$19-22\frac{1}{2}$	450	$22\frac{1}{2}-27$
Ⅳ. 28—36	$28-31\frac{1}{2}$	450	$31\frac{1}{2}-36$
Ⅴ. 37—45	$37-40\frac{1}{2}$	450	$40\frac{1}{2}-45$
Ⅵ. 46—(54)	$46-49\frac{1}{2}$	450	$49\frac{1}{2}-(54)$ [31]

(31) 제2회전년도에 속하는 주는 괄호안에 넣었다.

자 본 Ⅱ

회전기간(주)	로동기간(주)	선대(파운드)	류통기간(주)
Ⅰ. $4\frac{1}{2}-13\frac{1}{2}$	$4\frac{1}{2}-9$	450	$10-13\frac{1}{2}$
Ⅱ. $13\frac{1}{2}-22\frac{1}{2}$	$13\frac{1}{2}-18$	450	$19-22\frac{1}{2}$
Ⅲ. $22\frac{1}{2}-31\frac{1}{2}$	$22\frac{1}{2}-27$	450	$28-31\frac{1}{2}$
Ⅳ. $31\frac{1}{2}-40\frac{1}{2}$	$31\frac{1}{2}-36$	450	$37-40\frac{1}{2}$
Ⅴ. $40\frac{1}{2}-49\frac{1}{2}$	$40\frac{1}{2}-45$	450	$46-49\frac{1}{2}$
Ⅵ. $49\frac{1}{2}-(58\frac{1}{2})$	$49\frac{1}{2}-(54)$	450	$(55-58\frac{1}{2})$

여기서 우리가 1년으로 가정하는 51주간중에서 자본 Ⅰ은 옹근 6로동기간을 끝내고 6×450=2,700파운드의 상품을 생산하며 자본 Ⅱ는 옹근 5로동기간에 5×450=2,250파운드의 상품을 생산하였다. 그밖에 자본 Ⅱ는 년말의 $1\frac{1}{2}$주간(제50주의 절반으로부터 제51주의 마지막까지)에 150파운드의 상품을 더 생산하였다. 그리하여 51주간의 총생산물은 5,100파운드이다. 따라서 다만 로동기간중에만 생산되는 잉여가치의 직접적생산에 관하여 말한다면 900파운드의 총자본이 $5\frac{2}{3}$회전한것으로 될것이다($5\frac{2}{3}\times900=5,100$파운드). 그러나 현실적

회전을 보면 자본 I 은 $5\frac{2}{3}$ 회전하였다. 왜냐 하면 그것은 51주말에 아직 제6회전기간중의 3주간을 남기고있기때문이다. $5\frac{2}{3}\times450=2,550$파운드. 또 자본 II는 $5\frac{1}{6}$ 회전하였다. 왜냐 하면 그것은 제6회전기간중 겨우 $1\frac{1}{2}$주간을 끝냈을따름이며 나머지 $7\frac{1}{2}$주간은 다음해에 속하기때문이다. $5\frac{1}{6}\times450=2,325$파운드. 그리하여 현실적인 총회전액은 4,875파운드이다.

자본 I과 자본 II를 호상 완전히 독립적인 두 자본으로서 고찰하기로 하자. 이 두 자본은 그것들의 운동에 있어서 완전히 독립적이다. 그것들의 운동이 서로 보충하는것은 다만 그것들의 로동기간과 류통기간이 서로 직접 교체되기때문이다. 이 두 자본은 각이한 자본가들에 속하는 완전히 독립한 두 자본으로서 고찰될수 있다.

자본 I은 옹근 5회의 회전기간과 제6회전기간의 $\frac{2}{3}$를 경과하였다. 그것은 년말에는 상품자본형태로 있으며 그 정상적인 실현을 위하여서는 아직 3주간이 필요하다. 이 3주간중에는 그것은 생산과정에 들어갈수 없다. 그것은 상품자본으로서 기능한다. 즉 그것은 류통한다. 그것은 그 마지막 회전기간을 아직 $\frac{2}{3}$밖에 경과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자본 I은 $\frac{2}{3}$ 회전하였을뿐이며 그 총가치의 $\frac{2}{3}$만이 옹근 1회전을 경과하였을뿐이라고. 450파운드는 9주일동안에 1회전을 하며 따라서 300파운드는 6주일동안에 1회전을 한다고 우리는 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표현방식으로는 회전기간의 두 특수한 구성부분간의 유기적관계는 무시되는것이다.

450파운드의 선대자본이 $5\frac{2}{3}$ 회전하였다고 하는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 이 자본이 옹근 5회전을 경과하였고 제6회전의 $\frac{2}{3}$ 만을 경과하였다고 하는것에 불과하다. 이와는 반대로 회전한 자본이 선대자본의 $5\frac{2}{3}$배이고 따라서 우의 례에서는 $5\frac{2}{3}\times450$ 파운드=2,550파운드라고 하는 표현은 만약 이 450파운드의 자본이 다른 450파운드의 자본에 의하여 보충되지 않았다면 실제에는 그 일부분은 생산과정에 있지 않으면 안되고 다른 일부분은 류통과정에 있지 않으면 안될것이라는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있다. 회전기간이 회전한 자본의 량으로써 표현되기 위하여서는 그것은 언제나 현존가치(실제는 완성생산물)의 량으로써 표현될수밖에 없다. 선대자본이 생산과정을 새로 시작할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다는 사정은 선대자본의 일부만이 생산할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것에 의하여 표현된다. 바꾸어말하면 련속적생산의 상태에 있기 위하여서는 자본은 생산기간과 류통기간의 비률에 따라서 부단히 생산기간중에 있는 한 부분과 부단히 류통기간중에 있는 다른 부분으로 분할되지 않으면 안될것이라는것에 의하여 표현된다. 이것은 부단히 기능하는 생산자본의 량을 회전기간에 대한 류통기간의 비률에 의하여 규정하는것과 동일한 법칙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년말이라고 가정하는 제51주말에는 자본 Ⅱ중의 150파운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생산물의 생산에 선대되여있다. 또 다른 일부분은 류동적불변자본—원료 등—의 형태로 있다. 즉 생산자본으로서 생산과정에서 기능할수 있는 형태로 있다. 그러나 제3부분은 화폐형태로 있다. 즉 적어도 나머지의 로동기간(3주간)을 위한 로임액만

은 화폐형태로 있다. 비록 이것은 각 주말에 가서야 비로소 지불되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자본부분은 새 년도, 즉 새로운 회전순환의 처음에는 생산자본의 형태로 있지 않고 생산과정에 그대로 들어갈수 없는 화폐자본의 형태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회전이 시작될 때에는 류동적가변자본, 즉 산 로동력이 생산과정에서 작용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것은 로동력은 로동기간의 처음에, 례컨대 1주간마다 구매되고 소비되는데 로동력에 대한 지불은 주말에 가서야 비로소 수행되기때문이다. 화폐는 여기서 지불수단으로서 작용한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그것이 화폐로서 아직 자본가의 수중에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로동력이, 즉 그 화폐가 전화되는 상품이 이미 생산과정에서 작용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동일한 자본가치가 2중으로 나타난다.

다만 로동기간만을 고찰한다면

자본 Ⅰ은 6 ×450=2,700파운드를 생산하고

자본 Ⅱ는 $5\frac{1}{3}$ ×450=2,400파운드를 생산한다.

합계는 $5\frac{2}{3}$ ×900=5,100파운드이다.

따라서 900파운드의 선대총자본이 1년간에 $5\frac{2}{3}$회 생산자본으로서 기능한것이다. 서로 번갈아 450파운드는 생산과정에서, 450파운드는 류통과정에서 기능하든 900파운드가 $4\frac{1}{2}$주간에는 생산과정에서 기능하고 다음 $4\frac{1}{2}$주간에는 류통과정에서 기능하든 잉여가치의 생산에 있어서는 매한가지이다.

그런데 회전기간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자본 Ⅰ의 회전액은 $5\frac{2}{3}\times450=2,550$파운드

자본 Ⅱ의 회전액은 $5\frac{1}{6}\times450=2,325$파운드

따라서 총자본의 회전액은 $5\frac{5}{12}\times900=4,875$파운드이다.

이것은 총자본의 회전수는 자본 Ⅰ과 자본 Ⅱ의 회전액의 합계를 자본 Ⅰ과 자본 Ⅱ의 합계로 제한것과 동등하기때문이다.

여기에서 지적해야 할것은 가령 자본 Ⅰ과 자본 Ⅱ가 호상 독립적이라 하더라도 이 두 자본은 동일한 생산분야에 선대된 사회적자본의 각이한 독립적인 부분에 불과할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가령 이 생산분야내의 사회적자본이 **오직** 자본 Ⅰ과 자본 Ⅱ로써만 구성된다고 한다면 이 분야의 사회적 자본의 회전에 대하여서는 여기에서 동일한 사적자본의 두 구성부분인 Ⅰ과 Ⅱ에 대하여 적용되는것과 같은 계산이 적용될것이다. 더 나아가서 말한다면 사회적총자본중 한 특수한 생산분야에 투하된 부분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나 다 이와 같이 계산될수 있다. 그러나 결국 사회적총자본의 회전수는 각이한 생산분야에서 회전한 자본의 총액을 이러한 생산분야에 선대된 자본의 총액으로 제한것과 같다.

다음으로 또 지적해야 할것은 여기서는 동일한 개인기업에서 자본 Ⅰ과 Ⅱ가 엄밀하게 말하면 각이한 회전년도를 가지고있는데(왜냐 하면 자본 Ⅱ의 회전순환은 자본 Ⅰ의 회전순환보다 $4\frac{1}{2}$주간 더 늦게 시작되며 따라서 자본 Ⅰ의 회전년도는 자본 Ⅱ의 회전년도보다 $4\frac{1}{2}$주간 더 일찍 끝나기때문이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생산분야의 각이한 개인자본들도 역시 전혀 각이한 시기에 사업을 개시하며 따라서 또

1년내의 각이한 시기에 그 년회전을 끝마친다는것이다. 우리가 우에서 자본 Ⅰ과 Ⅱ에 적용한 평균계산은 여기서도 사회적자본의 각이한 독립적부분들의 회전년도를 하나의 통일적 회전년도에 환원시키는데 복무한다.

2. 로동기간이 류통기간보다 큰 경우

자본 Ⅰ과 Ⅱ의 로동기간과 회전기간은 서로 교체되는것이 아니라 교차된다. 동시에 여기서는 자본의 유리가 생기는데 이것은 이상에서 고찰된 경우에는 생기지 않았던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다음과 같은것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1) 선대총자본의 로동기간수는 선대자본의 두 부분의 년간생산물의 가치총액을 선대총자본으로 제한것과 같다는것. 그리고 2) 총자본의 회전수는 두 회전액의 합계를 두 선대자본의 합계로 제한것과 같다는것. 이 경우에도 역시 우리는 두 자본부분은 서로 완전히 독립한 회전운동을 수행하는것으로 고찰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다시 매주 100파운드가 로동과정에 선대된다고 가정하자. 로동기간은 6주간이며 따라서 매번 600파운드의 선대(자본 Ⅰ)가 필요하다고 하자. 류통기간은 3주간이며 따라서 회전기간은 앞경우와 마찬가지로 9주간이라고 하자. 자본 Ⅰ의 3주간의 류통기간중에는 300파운드의 자본 Ⅱ가 들어온다고 하자. 이 두 자본을 서로 독립한 자본으로서 고찰한다면 년 회전의 도표는 다음과 같이 된다.

제 II 표

자본 I 600파운드

회전기간(주)	로동기간(주)	선대(파운드)	류통기간(주)
I. 1—9	1—6	600	7—9
II. 10—18	10—15	600	16—18
III. 19—27	19—24	600	25—27
IV. 28—36	28—33	600	34—36
V. 37—45	37—42	600	43—45
VI. 46—(54)	46—51	600	(52—54)

추가자본 II 300파운드

회전기간(주)	로동기간(주)	선대(파운드)	류통기간(주)
I. 7—15	7—9	300	10—15
II. 16—24	16—18	300	19—24
III. 25—33	25—27	300	28—33
IV. 34—42	34—36	300	37—42
V. 43—51	43—45	300	46—51

생산과정은 1년동안에 중단없이 동일한 규모로 진행된다. 두 자본 Ⅰ과 Ⅱ는 완전히 분리된대로 있다. 그러나 이 두 자본을 이렇게 분리되여있는것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의 현실적인 교차와 뒤엉킴을 갈기갈기 찢고 그렇게 하는데 의하여 회전수도 변경시키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즉 앞도표에 의하면

자본 Ⅰ의 회전액 $5\frac{2}{3}\times600=3,400$파운드

자본 Ⅱ의 회전액 $5\times300=1,500$파운드

총자본의 회전액은 $5\frac{4}{9}\times900=4,900$파운드로 될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맞지 않는다. 왜냐 하면 다음에 보게 되는바와 같이 현실적인 생산기간과 류통기간은 두 자본 Ⅰ과 Ⅱ를 서로 독립한것으로서 보여주는것을 주요한 목표로 한 앞도표의 각 기간들과는 절대적으로는 일치하지 않기때문이다.

즉 실제에 있어서는 자본 Ⅱ는 자본 Ⅰ의 로동기간 및 류통기간으로부터 분리된 어떠한 특수한 로동기간 및 류통기간도 가지고있는것이 아니다. 로동기간은 6주간이고 류통기간은 3주간이다. 자본 Ⅱ는 단지 300파운드이기때문에 1로동기간의 일부분만을 충족시킬수 있을따름이다. 지금의 경우는 바로 이러하다. 제6주말에 600파운드의 생산물가치가 류통에 들어가서 제9주말에 화폐로 되여 환류한다. 그리하여 제7주초에는 자본 Ⅱ가 작용하기 시작하여 다음의 제7~9주간의 로동기간의 수요를 충족시킨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에 의하면 제9주말에는 로동기간은 절반밖에 끝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제10주초에는 방금 환류한 600파운드의 자본 Ⅰ이 다시 활동을 개시하여 300파운드로써 제10~12주간을 위하여 필요한 선대에 충당된다. 이것으로 제2로동기간은 끝난다. 600파

운드의 생산물가치가 류통에 있는데 그것은 제15주말에 환류할것이다. 그러나 그밖에 또 원래의 자본 Ⅱ의 금액 300파운드가 유리되여있으며 다음 로동기간의 절반, 즉 제13~15주에 기능할수 있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600파운드가 환류한다. 그중 300파운드이면 이 로동기간이 끝날 때까지 충분할것이며 나머지 300파운드는 다음 로동기간을 위하여 유리된다.

이리하여 사태의 경과는 다음과 같이 된다.

제1회전기간: 제1~9주.

제1로동기간: 제1~6주. 자본 Ⅰ 600파운드가 기능한다.

제1류통기간: 제7~9주. 제9주말에는 600파운드가 환류한다.

제2회전기간: 제7~15주.

제2로동기간: 제7~12주.

전반: 제7~9주. 자본 Ⅱ 300파운드가 기능한다. 제9주말에는 600파운드가 화폐로 되여 환류한다(자본 Ⅰ).

후반: 제10~12주. 자본 Ⅰ중의 300파운드가 기능한다. 자본 Ⅰ의 나머지 300파운드는 유리된다.

제2류통기간: 제13~15주.

제15주말에 600파운드(절반은 자본 Ⅰ로 형성되고 절반은 자본 Ⅱ로 형성된다.)가 화폐로 되여 환류한다.

제3회전기간: 제13~21주.

제3로동기간: 제13~18주.

전반: 제13~15주. 유리된 300파운드가 기능하기 시작한다. 제15주말에 600파운드가 화폐로 되여 환류한다.

후반: 제16~18주. 환류한 600파운드중 300파운드가

기능하고 나머지 300파운드는 다시 유리된다.

제3류통기간: 제19~21주. 제21주말에 다시 600파운드가 화폐로 되여 환류한다. 이 600파운드에서는 자본 Ⅰ과 Ⅱ가 이제는 구별할수 없게 융합되여있다.

이리하여 제51주말까지 600파운드라는 자본의 8개의 완전한 회전기간이 이루어진다(Ⅰ: 제1~9주. Ⅱ: 제7~15주. Ⅲ: 제13~21주. Ⅳ:제19~27주. Ⅴ:제25~33주. Ⅵ: 제31~39주. Ⅶ: 제37~45주. Ⅷ: 제43~51주). 그러나 제49~51주는 제8류통기간에 해당하므로 이 기간에는 300파운드의 유리된 자본이 들어와서 생산의 진행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년말에는 회전은 다음과 같이 된다. 즉 600파운드가 이미 그 순환을 8회 끝내여 4,800파운드로 된다. 그밖에 마지막 3주간(제49~51주)의 생산물이 있으나 이것은 또 그 9주간이라는 순환의 $\frac{1}{3}$을 끝냈을따름이며 따라서 회전액에는 그 금액의 $\frac{1}{3}$에 해당하는 100파운드만이 계산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51주간의 년간생산물이 5,100파운드라 하여도 회전한 자본은 4,800+100=4,900파운드밖에 안된다. 이리하여 900파운드의 선대총자본은 $5\frac{4}{9}$회, 즉 제Ⅰ절의 경우보다 좀 더 많이 회전하였다.

이 례에서는 로동기간이 회전기간의 $\frac{2}{3}$이고 류통기간이 회전기간의 $\frac{1}{3}$인 경우, 즉 로동기간이 류통기간의 단순한 배수인 경우가 가정되였다. 그런데 문제로 되는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 례에서 확인된바와 같은 자본의 유리가 생기겠는가 어떤가 하는것이다.

로동기간을 5주간, 류통기간을 4주간, 매주의 자본선대를 .100파운드라고 가정하자.

제1회전기간: 제1～9주.

제1로동기간: 제1～5주. 자본 Ⅰ=500파운드가 기능한다.

제1류통기간: 제6～9주. 제9주말에 500파운드가 화폐로 되여 환류한다.

제2회전기간: 제6～14주.

제2로동기간: 제6～10주.

제1기: 제6～9주. 자본 Ⅱ=400파운드가 기능한다. 제9주말에 자본 Ⅰ=500파운드가 화폐형태로 환류한다.

제2기: 제10주. 환류한 500파운드중에서 100파운드가 기능한다. 나머지 400파운드는 다음 로동기간을 위하여 유리된대로 있다.

제2류통기간: 제11～14주. 제14주말에 500파운드가 화폐로 되여 환류한다.

제14주말까지(제11～14주) 앞서 유리된 400파운드가 기능한다. 다음에는 환류한 500파운드중 100파운드는 제3로동기간(제11～15주)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그리하여 다시금 400파운드가 제4로동기간을 위하여 유리된다. 동일한 현상은 어느 로동기간에나 반복된다. 매개 로동기간이 개시될 때에 거기에 400파운드가 존재하여 최초의 4주간을 위하여 복무한다. 제4주말에는 500파운드가 화폐로 되여 환류하는데 그중 100파운드만이 최후 1주간을 위하여 필요하며 나머지 400파운드는 그다음 로동기간을 위하여 유리된대로 있다.

다음에 700파운드의 자본 Ⅰ이 작용하는 7주간의 로동기간과 200파운드의 자본 Ⅱ가 작용하는 2주간의 류통기간을

가정하자.

이 경우에는 제1회전기간은 제1~9주이며 그중 제1로동기간은 제1~7주이고·700파운드의 선대가 실시되며 제1류통기간은 제8~9주이다. 제9주말에는 700파운드가 화폐로 되여 환류한다.

제2회전기간인 제8~16주는 제2로동기간인 제8~14주를 포함한다. 그중 제8주와 제9주를 위한 수요는 자본 Ⅱ에 의하여 충족된다. 제9주말에는 상술한 700파운드가 환류한다. 그중 500파운드는 이 로동기간의 말까지(제10~14주) 소비된다. 200파운드는 다음 로동기간을 위하여 유리된대로 있다. 제2류통기간은 제15~16주이다. 제16주말에 다시 700파운드가 환류한다. 그 이후는 매개 로동기간에 동일한 현상이 반복된다. 첫 두주일동안의 필요자본은 그전의 로동기간말에 유리된 200파운드에 의하여 충족된다. 제2주말에는 또 700파운드가 환류한다. 그러나 로동기간의 나머지는 5주간밖에 없으므로 500파운드밖에 소비할수 없다. 따라서 항상 200파운드는 다음 로동기간을 위하여 유리되여있다.

따라서 로동기간이 류통기간보다 크다고 가정한 우리의 례에서는 어떠한 사정하에서도 1로동기간이 끝날 때마다 화폐자본이 유리되며 이 화폐자본은 류통기간을 위하여 선대된 자본 Ⅱ와 같은 크기라는것이 명백하여진다. 우리의 세 례에서는, 자본 Ⅱ는 제1례에서는 300파운드, 제2례에서는 400파운드, 제3례에서는 200파운드였다. 이에 상응하여 로동기간의 종말에 유리된 자본은 각각 300파운드, 400파운드, 200파운드였다.

3. 로동기간이 류통기간보다 작은 경우

여기서도 우선 9주간의 회전기간을 가정하자. 그중 로동기간은 3주간, 이 기간에 리용될수 있는 자본 Ⅰ은 300파운드라고 하자. 류통기간을 6주간이라고 하자. 이 6주간을 위해서는 600파운드의 추가자본이 필요한데 이 자본은 또 각각 1로동기간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300파운드씩인 두 자본으로 분할될수 있다. 그러면 각각 300파운드씩 되는 자본이 3개 있게 되는데 그중 300파운드는 언제나 생산에 사용되며 600파운드는 류통하고있다.

제 Ⅲ 표

자 본 Ⅰ

회전기간(주)	로동기간(주)	류통기간(주)
Ⅰ. 1—9	1—3	4—9
Ⅱ. 10—18	10—12	13—18
Ⅲ. 19—27	19—21	22—27
Ⅳ. 28—36	28—30	31—36
Ⅴ. 37—45	37—39	40—45
Ⅵ. 46—(54)	46—48	49—(54)

자 본 II

회전기간(주)	로동기간(주)	류통기간(주)
I. 4—12	4—6	7—12
II. 13—21	13—15	16—21
III. 22—30	22—24	25—30
IV. 31—39	31—33	34—39
V. 40—48	40—42	43—48
VI. 49—(57)	49—51	(52—57)

자 본 III

회전기간(주)	로동기간(주)	류통기간(주)
I. 7—15	7—9	10—15
II. 16—24	16—18	19—24
III. 25—33	25—27	28—33
IV. 34—42	34—36	37—42
V. 43—51	43—45	46—51

여기서는 제1절의 경우와 매우 류사한것을 볼수 있는데, 이번에는 다만 두개의 자본이 아니라 세개의 자본이 서로 교

체된다는 점이 다를뿐이다. 제 자본들의 교차 또는 뒤엉킴은 생기지 않는다. 매개 자본을 년말까지 따로따로 추적할수 있다. 따라서 제1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1로동기간의 종말에 자본의 유리는 생기지 않는다. 자본 Ⅰ은 제3주말에는 전부 투하되며 제9주말에는 전부 환류하고 제10주초에는 다시 기능을 개시한다. 자본 Ⅱ와 Ⅲ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규칙적이며 완전한 교체가 진행되기 위하여 유리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총회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자본 Ⅰ 300파운드×$5\frac{2}{3}$=1,700파운드

자본 Ⅱ 300파운드×$5\frac{1}{3}$=1,600파운드

자본 Ⅲ 300파운드×5 =1,500파운드

총자본 900파운드×$5\frac{1}{3}$=4,800파운드

다음에는 또 류통기간이 로동기간의 정확한 배수가 아닌 례를 들어보자. 례컨대 로동기간을 4주간이라 하고 류통기간을 5주간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에 상응한 자본액은 자본 Ⅰ=400파운드, 자본 Ⅱ=400파운드, 자본 Ⅲ=100파운드가 될것이다. 최초의 3회전만을 보여주기로 한다.

제 Ⅳ 표

자본 Ⅰ

회전기간(주)	로동기간(주)	류통기간(주)
Ⅰ. 1—9	1—4	5—9
Ⅱ. 9—17	9, 10—12	13—17
Ⅲ. 17—25	17, 18—20	21—25

자본 II

회전기간(주)	로동기간(주)	류통기간(주)
I. 5—13	5—8	9—13
II. 13—21	13, 14—16	17—21
III. 21—29	21, 22—24	25—29

자본 III

회전기간(주)	로동기간(주)	류통기간(주)
I. 9—17	9	10—17
II. 17—25	17	18—25
III. 25—33	25	26—33

이 경우에 자본 III은 1주간분의 크기밖에 안되므로 독립적인 로동기간을 가지지 않지만 이 자본 III의 로동기간이 자본 I의 제1로동주간과 일치하는 한에 있어서는 제 자본의 뒤엉킴이 생긴다. 그러나 그대신 자본 I의 경우에도 자본 II의 경우에도 로동기간의 종말에는 자본 III과 같은 100파운드라는 금액이 유리된다. 즉 자본 III이 자본 I의 제2로동기간 및 그 이후의 모든 로동기간의 제1주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또 이 제1주말에 자본 I의 전액 400파운드가 환류한다면 자본 I의 로동기간의 나머지 부분을 위하여서는 3주간이라는 기간과 이에 상응하는 300파운드의 자본투하가 남을따름이다. 이렇게 유리된 100파운드는 곧 뒤에 계속되는 자본 II의 로동기간의 제1주의 수요를 충족시킨다. 이 주간의 종말에는 자본 II의 전액 400파운드가 환류한다. 그러나 이미 개

시된 로동기간은 300파운드밖에 더 흡수할수 없기때문에 이 기간의 종말에는 역시 100파운드가 유리되여있다. 이후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류통기간이 로동기간의 단순한 배수가 아니게 되면 로동기간의 종말에는 자본의 유리가 생긴다. 그리고 이 유리된 자본은 1로동기간 또는 그 배수의 로동기간을 넘는 류통기간의 초과분을 충당할 자본부분과 같은것이다.

지금까지 연구한 모든 경우에 로동기간과 류통기간은 여기에서 고찰한 임의의 기업에서는 전년을 통하여 변하지 않는것으로 가정하였다. 류통기간이 회전과 자본선대에 미치는 영향을 해명하려고 하는 한 이 전제는 필요한것이였다. 이 전제가 현실에 있어서는 이처럼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것은 아니며 또 혼히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것은 사태를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본절 전체를 통하여 우리는 류동자본의 회전만을 고찰하고 고정자본의 회전은 고찰하지 않았다. 그것은 취급되는 문제가 고정자본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는 간단한 리유에서이다.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로동수단 등이 고정자본을 형성하는것은 다만 그 사용기간이 류동자본의 회전기간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한에 있어서만이다. 또 이러한 로동수단이 부단히 반복되는 로동과정에서 계속 복무하는 기간이 류동자본의 회전기간보다 더 길고 류동자본의 회전기간의 n배인 한에 있어서만이다. 이 류동자본의 회전기간의 n배에 의하여 형성되는 총기간이 길든 짧든간에 생산자본중 이 기간을 위하여 고정자본으로 선대된 부분은 이 기간중에는 새로 선대되지 않는다. 그것은 원래의 그 사용형태대로 기능을 계속한다. 차이는 다만 다음과 같은 점뿐이다. 즉 류동자본의 각 회전기간중의 개개의 **로동기간**의 길이가 다름에 따라서 고정자본

이 그 원 가치중에서 이 로동기간의 생산물에 이전되는 부분은 보다 클수도 있고 보다 작을수도 있으며 또 각 회전기간중의 류통기간의 길이에 따라서 고정자본으로부터 생산물에 이전된 이 가치부분의 화폐형태로서의 환류가 빨라지거나 늦어지거나 한다는 그것이다. 우리가 이 절에서 취급하고있는 대상의 성격—생산자본의 류동부분의 회전—은 이 자본부분 자체의 성격에서 나오는것이다. 한 로동기간에 사용된 류동자본은 그 회전을 끝내기까지는, 즉 상품자본으로 전화하고 상품자본으로부터 화폐자본으로, 또 화폐자본으로부터 다시 생산자본으로 전화하기까지는 새로운 로동기간에 사용될수 없다. 그러므로 제1로동기간에 곧 제2로동기간을 련속시키기 위하여는 또 새로 자본이 선대되여 생산자본의 류동적요소들로 전화되지 않으면 안되며 그것도 제1로동기간을 위하여 선대된 류동자본의 류통기간에 의하여 생기는 간격을 채우기에 충분한 량으로 그것이 진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기때문에 류동자본의 로동기간의 길이가 로동과정의 경영규모에 영향을 주며 또 선대자본의 분할이나 새로운 자본부분의 추가에 영향을 주는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야말로 우리가 본절에서 고찰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점이다.

4. 결 론

이상의 연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A. 자본의 일부분이, 다른 일부분이 류통기간에 있는 동안에도 부단히 로동기간에 있을수 있기 위하여서는 자본은 각이한 부분들로 분할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 각이한 부분

들이 각이한 독립적인 개인자본들과 마찬가지로 서로 교체되는것은 다음과 같은 두 경우이다. 1) 로동기간이 류통기간과 같고 따라서 회전기간이 같은 두 부분으로 분할되여있는 경우. 2) 류통기간은 로동기간보다 길지만 동시에 로동기간의 단순한 배수를 이루고있으며 따라서 1류통기간=n로동기간인 경우. 그러나 이 n은 정수가 아니면 안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순차로 선대되는 자본의 어느 부분도 유리되지 않는다.

B. 이와는 반대로 1) 류통기간이 로동기간보다 길지만 그 단순한 배수가 아닌 경우와 2) 로동기간이 류통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총류동자본의 일부분이 제2회전이후에는 부단히 주기적으로 각 로동기간의 종말에 유리된다. 그리고 이 유리된 자본은 로동기간이 류통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총자본중 류통기간을 위해서 선대된 부분과 같다. 또 그것은 류통기간이 로동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1로동기간 또는 그 배수의 로동기간을 넘는 류통기간의 초과분을 충당하여야 할 자본부분과 같다.

C. 그리하여 결론은 다음과 같이 된다. 사회적총자본에 있어서는 그 류동적부분에 대하여 보면 자본의 유리가 통례로 되고 순차로 생산과정에서 기능하는 자본부분들의 단순한 교체는 례외가 아니면 안된다. 왜냐 하면 로동기간과 류통기간이 같다는것, 또는 류통기간이 로동기간의 단순한 배수와 같다는것, 즉 이와 같이 회전기간의 두 구성부분이 규칙적인 비률을 이루고있다는것은 사태의 성격과는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는것이며 따라서 대체로 례외적으로만 나타날수 있을따름이기때문이다.

요컨대 1년동안에 몇번 회전하는 사회적류동자본의 극히 큰 부분은 1년간의 회전순환중에서 주기적으로 유리자본의

형태로 있을것이다.

그리고 또 기타의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유리된 자본의 크기는 로동과정의 범위 또는 생산의 규모와 함께 증대하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적생산의 발전과 함께 증대한다는것이 명백하다. 왜냐 하면 상기 B의 (2)의 경우에는 선대총자본이 증대하기때문이며 B의 (1)의 경우에는 자본주의적생산의 발전과 함께 류통기간의 길이가 증대하기때문이며 따라서 또 두 기간간에 규칙적인 관계가 없이 로동기간이 류통기간보다 작은 경우의 회전기간도 길어지기때문이다.①

제1의 경우에는 레컨대 100파운드를 매주 투하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6주간의 로동기간을 위하여 600파운드, 3주간의 류통기간을 위하여 300파운드, 합계 900파운드이다. 이 경우에는 부단히 300파운드가 유리된다. 이와는 달리 만약 매주 300파운드가 투하된다면 로동기간을 위하여 1,800파운드, 류통기간을 위하여 900파운드가 투하될것이며 따라서 300파운드가 아니라 900파운드가 주기적으로 유리되는것이다.

D. 레컨대 900파운드의 총자본은 두 부분으로, 즉 앞에서 든 경우와 같이 로동기간을 위한 600파운드와 류통기간을 위한 300파운드로 분할되지 않으면 안된다. 현실적으로 로동과정에 투하되는 부분은 이로 말미암아 $\frac{1}{3}$이 감소되여 900파운드로부터 600파운드로 되며 따라서 생산규모는 $\frac{1}{3}$이 축소된다. 다른 한편 300파운드가 로동기간을 련속적인것으로 하기 위하여 기능하고 그리하여 년중 매주 100파운드를 로동과

① 제2판에는 《류통기간보다 작은》 이라는 말이 루락되여있다. 맑스의 원고와 엥겔스의 원고에 근거하여 정정하였다. —편집자

정에 투하할수 있게 된다.

600파운드가 6×8=48주간 작용하든(생산물=4,800파운드) 그렇지 않으면 900파운드의 전체 자본이 6주간 로동과정에 투하되고 다음 3주간의 류통기간중에는 놀고있든 그것은 추상적으로 보면 동일한것이다. 후자의 경우에 이 자본은 48주간중 $5\frac{1}{3}$×6=32주간 작용하고(생산물=$5\frac{1}{3}$×900=4,800파운드) 16주간은 놀게 될것이다. 그러나 16주간의 유휴중 고정자본의 비교적 큰 손상이나 1년중의 일부분밖에 작용하지 않지만 온 1년간에 걸쳐 지불되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에 로동이 더 비싸진것을 도외시하더라도 이러한 생산과정의 규칙적인 중단은 현대적대공업의 경영과는 전혀 조화될수 없는것이다. 이 련속성은 그자체가 하나의 로동생산력이다.

이제 유리된 자본, 즉 사실상 그 활동이 일시적으로 중지되고있는 자본을 좀 더 자세히 고찰한다면 그 상당한 부분은 부단히 화폐자본의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알게 된다. 우에서 든 례대로 로동기간을 6주간, 류통기간을 3주간, 매주의 투자를 100파운드라고 하자. 제2로동기간의 중기인 제9주말에는 600파운드가 환류하는데 그중 이 로동기간의 나머지 부분에는 300파운드만 투하되면 된다. 따라서 제2로동기간의 종말에는 그중 300파운드가 유리된다. 이 300파운드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제 $\frac{1}{3}$은 로임으로, $\frac{2}{3}$는 원료나 보조재료에 투하되여야 한다고 하자. 따라서 환류한 600파운드중에서 로임을 위한 200파운드는 화폐형태로 있고 400파운드는 생산용재고의 형태로, 즉 불변류동생산자본요소의 형태로 있다. 그러나 제2로동기간의 후반을 위하여서는

이 생산용재고의 절반밖에 필요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절반은 3주일간은 과잉된 생산용재고, 즉 1로동기간의 수요를 넘은 생산용재고의 형태로 있다. 그러나 자본가도 알고있는바와 같이 환류하는 자본의 이 부분(=400파운드)중 그가 당면한 로동기간을 위하여 필요한것은 그 절반=200파운드뿐이다. 따라서 그가 이 200파운드를 또 즉시로 전부 또는 일부분만 과잉된 생산용재고로 전화시키는가 그렇지 않으면 보다 유리한 시장상황을 기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분을 화폐자본으로서 보유하는가 하는것은 시장상황에 달릴것이다. 다른 한편 로임으로 투하되여야 할 부분=200파운드가 화폐형태로 보유된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자본가는 로동력을 구매한 다음에 그것을 원료처럼 창고에 넣어둘수는 없다. 그는 이 로동력을 생산과정에 합체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주말에는 그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따라서 유리된 300파운드의 자본중에서 여하튼 이 100파운드는 유리된 화폐자본, 즉 그 로동기간에는 필요하지 않은 화폐자본의 형태를 취할것이다. 따라서 화폐자본의 형태로 유리되는 자본은 적어도 가변자본부분, 즉 로임으로 투하되는 자본부분과 같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최대한으로는 유리된 자본의 전액을 포함할수도 있다. 현실에 있어서는 그것은 이 최소한과 최대한과의 사이에서 부단히 변동한다.

이와 같이 단순한 회전운동의 기구에 의하여 유리되는 화폐자본은(고정자본의 순차적환류에 의하여 유리되는 화폐자본이나 각 로동과정에서 가변자본으로서 필요한 화폐자본과 함께) 신용제도가 발전하면 중요한 역할을 놀지 않으면 안되며 동시에 또 신용제도의 기초의 하나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의 례에서 류통기간이 3주간으로부터 2주간으로 단

축된다고 가정하자. 이것은 정상적인 현상은 아니고 례컨대 호경기나 지불기한의 단축 등의 결과라고 하자. 로동기간중에 투하된 600파운드의 자본은 필요한것보다 1주간 더 일찍 환류하며 따라서 그것은 이 1주간은 유리되여있다. 그리고 또 이전과 마찬가지로 로동기간의 중기에는 300파운드가(600파운드의 일부분) 유리되는데 그러나 3주간이 아니라 4주간이다. 따라서 화폐시장에는 1주간은 600파운드가 있으며 또 3주간이 아니라 4주간은 300파운드가 있다. 이것은 한 자본가에게만 있는것이 아니라 많은 자본가들에게 있는것이며 또 각이한 시기에 각이한 생산부문에서 생기는것이므로 시장에는 보다 많은, 마음대로 리용할수 있는 화폐자본이 출현한다. 이러한 상태가 비교적 장기간 지속된다면 생산은 사정이 허락하는 곳에서는 확대될것이다. 또 차용한 자본으로 사업하는 자본가는 화폐시장에서 이전보다 적은 수요를 나타낼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 공급의 증가와 마찬가지로 화폐시장을 완화시킨다. 또는 마지막으로 류통의 기구상 과잉으로 되여있는 금액은 결정적으로 화폐시장에 방출될것이다.

류통기간이 3주간으로부터 2주간으로 단축되고 따라서 또 회전기간이 9주간으로부터 8주간으로 단축된 결과 선대총자본의 $\frac{1}{9}$이 과잉으로 된다. 이제는 6주간의 로동기간을 이전에 900파운드로 진행하던것과 마찬가지로 800파운드로 중단없이 진행할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상품자본가치의 일부분=100파운드는 일단 화폐로 전화되면 그대로 화폐자본의 상태에 머물러있고 더는 생산과정을 위하여 선대되는 자본의 일부분으로서 기능하지 않는다. 생산은 종전대로의 규모로 계속되고 또 물가나 기타의 조건도 종전대로 변하지 않으나 선

대자본의 가치총액은 900파운드로부터 800파운드로 감소된다. 최초에 선대된 가치의 나머지 100파운드는 화폐자본의 형태로 분리된다. 그것은 화폐자본으로서 화폐시장에 들어가며 거기에서 기능하는 제 자본의 추가분을 이룬다.

이로부터 화폐자본의 과잉이라는것이 어떻게 생길수 있는가를 알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다만 화폐자본의 공급이 수요보다도 크다는 의미에서만의 과잉이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과잉은 언제나 상대적인 과잉에 불과하며 그것은 례컨대 공황이 끝난후에 새로운 순환을 시작하는 《우울기》에 나타나는것이다. 여기서 말하는것은 그러한 과잉이 아니라 사회적총재생산과정(그것은 류통과정을 포함하고있다.)의 운행에 있어서 선대자본가치의 일정한 부분이 과잉으로 되며 따라서 화폐자본의 형태로 분리되여있다는 의미에서의 과잉이다. 즉 생산규모도 물가도 변하지 않았는데 다만 회전기간의 단축에만 의하여 생긴 과잉이다. 류통에 있는 화폐의 량은—많든적든—여기에는 조금도 영향이 없었다.

반대로 류통기간이 레컨대 3주간으로부터 5주간으로 연장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는 벌써 다음 회전에서 선대자본의 환류는 2주간 늦게 진행된다. 이 로동기간의 생산과정의 마지막 부분은 이 선대자본자체의 회전의 기구에 의해서는 계속 진행될수 없다. 이러한 상태가 비교적 장기간 지속된다면 상술한 경우에는 생산과정의—그것이 경영되는 범위의—확대가 생긴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그 축소가 생길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과정을 동일한 규모로 지속하기 위하여서는 류통기간의 이 연장부분의 전체를 위하여 선대자본을 $\frac{2}{9}$=200파운드만큼 늘이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이 추가자본은

화폐시장에서만 꺼낼수 있다. 그러므로 만일 류통기간의 연장이 1개 또는 수개의 대기업부문에서 생긴다면, 그것은 그 작용이 다른 측면으로부터의 반대작용에 의하여 상쇄되지 않는 한 화폐시장에 압박을 가할수 있다. 이 경우에도 역시 이 압박은 우에서 과잉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상품가격의 변동에도, 현존 류통수단의 량의 변동에도 조금도 관계가 없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 장을 인쇄에 회부할수 있도록 준비하는데는 적지 않은 곤난이 있었다. 맑스는 대수(代数)에는 매우 능숙하였지만 수자계산, 특히 상업상의 계산에는 익숙하지 못하였다. 하기는 그가 남긴 한뭉텅이의 잡지장에서 그는 각종 상업상의 계산방식을 많은 계산례로써 자기로서 해보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개개의 계산방법을 안다는것과 상인들의 일상적인 실제계산에 숙련된다는것은 결코 동일한것이 아니다. 회전의 계산에서 그는 혼란에 빠졌고 그때문에 끝내지 못한 계산외에도 결국 틀린 계산이나 모순된 계산이 나왔다. 이상의 인쇄된 도표들에서는 나는 제일 간단한것과 산수적으로 정확한것만을 보존하였다. 그리고 주로 다음과 같은 리유에서 그렇게 하였다.

이러한 곤난한 계산의 믿음성없는 결과때문에 맑스는 하나의—내가 보기에는—사실상 그리 중요하지 않은 사정을 부당하게 중요시하게 되였던것이다. 내가 말하는것은 그가 화폐자본의 《유리》라고 부르는 그것이다. 현실의 사태는 우에서 가정한 전제하에서는 다음과 같이 된다.

로동기간과 류통기간과의 길이의 비률, 따라서 또 자본 I과 자본 II의 크기의 비률이 어떠하든간에 제1회전이 끝난 후에는 로동기간의 길이만큼한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각 1로

동기간을 위하여 필요한 자본—즉 자본 Ⅰ과 같은 자본액—이 화폐형태로 자본가에게 환류한다.

로동기간=5주간, 류통기간=4주간, 자본 Ⅰ=500파운드라고 한다면 제9주, 제14주, 제19주, 제24주, 제29주 등등의 종말에는 매번 500파운드라는 화폐액이 환류한다.

로동기간=6주간, 류통기간=3주간, 자본 Ⅰ=600파운드라면 제9주, 제15주, 제21주, 제27주, 제33주 등등의 종말에는 600파운드씩 환류한다.

마지막으로 로동기간=4주간, 류통기간=5주간, 자본 Ⅰ=400파운드라면 제9주, 제13주, 제17주, 제21주, 제25주 등등의 종말에는 400파운드씩의 환류가 일어난다.

이 환류한 화폐가 당면한 로동기간에 대해서 여분으로 되고 따라서 유리되여있는가 어떤가, 또 그중의 어느만큼한 것이 그렇게 되여있는것에 의하여서는 아무런 차이도 생기지 않는다. 생산은 현재의 규모에서 중단없이 진행된다는것이 전제되여있으며 그렇게 되려면 화폐가 현존하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유리》되든 안되든간에 환류하지 않으면 안된다. 생산이 중단되면 유리도 진행되지 않는다.

바꾸어말하면 확실히 화폐의 유리가, 따라서 화폐형태로 있는 잠재적인, 오직 잠세적인 자본의 형성이 생기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떤 사정하에서도 생기는것이며 본문중에서 상세히 론술한 특수한 제 조건하에서만 생기는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문중에서 가정한 규모보다 더 큰 규모로 생긴다. 류동자본 Ⅰ에 관하여서는 산업자본가는 각 회전의 종말에 사업개시당시와 전적으로 동일한 상태에 있다. 즉 그는 다시 이 자본을 전부 한꺼번에 수중에 가지고있으나 한편 그는 그것을 다만 조금씩 다시 생산자본으로 전화시키면

되는것이다.

본문중에서 주요한 점은 한편으로는 산업자본의 상당히 큰 한부분이 부단히 화폐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보다 더 큰 부분이 일시적으로 화폐형태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의 론증이다. 이 론증은 나의 이 추기에 의해서는 기껏해야 그저 보강이나 될따름이다. — F. 엥겔스)

5. 가격변동의 영향

지금까지 우리는 한편으로는 변하지 않는 가격, 변하지 않는 생산규모를 가정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류통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가정하였다. 이와 반대로 이번에는 회전기간의 변하지 않는 길이, 변하지 않는 생산규모를 가정하는데 한편 가격변동, 즉 원료와 보조재료와 로동의 가격의 등락 또는 이러한 요소들중의 첫 두 요소의 가격의 등락을 가정한다. 원료나 보조재료의 가격과 로임이 절반 내린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우리의 례에서는 매주 100파운드가 아니라 50파운드의 선대자본이 필요하며 9주간의 회전기간에는 900파운드가 아니라 450파운드의 선대자본이 필요할것이다. 선대자본가치중에서 450파운드는 우선 화폐자본으로서 분리되지만 그러나 생산과정은 동일한 규모에서 동일한 회전기간과 이 회전기간의 종전대로의 분할에 의하여 지속될것이다. 년간생산물량도 종전과 동일할것이지만 그러나 그 가치는 절반이 하락하였다. 이러한 변동은 화폐자본의 수요공급의 변동도 수반하는데 그것을 일으킨것은 류통중에 있는 화폐의 류통속

도의 증대도 아니고 그 량의 변화도 아니다. 그와 반대이다. 생산자본의 제 요소의 가치 또는 가격이 절반 하락한것이 우선 일으키는 결과는 종전대로의 규모로 계속되는 기업 X를 위해서는 절반 감소된 자본가치가 선대되고 따라서 또 기업 X측으로부터 절반만큼한 화폐가 시장에 투입될것이다. 왜냐하면 기업 X는 이 자본가치를 우선 화폐의 형태로, 즉 화폐자본으로서 선대하기때문이다. 류통에 방출된 화폐량이 감소되였다면 그것은 생산요소의 가격이 하락하였기때문일것이다. 이것이 첫째 결과일것이다.

그러나 둘째로, 최초의 선대자본가치 900파운드의 절반=450파운드는 (a) 차례로 화폐자본, 생산자본, 상품자본의 형태를 통과하였으며 (b) 동시에 부단히 서로 나란히 일부분은 화폐자본의 형태로, 일부분은 생산자본의 형태로, 일부분은 상품자본의 형태로 있었던것인데 이 450파운드는 기업 X의 순환으로부터 분리될것이며 따라서 추가적화폐자본으로서 화폐시장에 들어가 추가적구성부분으로서 이 화폐시장에서 작용할것이다. 이 유리된 450파운드의 화폐가 화폐자본으로서 작용하는것은 그것이 기업 X의 경영을 위하여 여분으로 된 화폐이기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원 자본가치의 구성부분이며 따라서 자본으로서 계속 작용하여야 할것이고 단순한 류통수단으로서 지출되여야 할것은 아니기때문이다. 그것을 자본으로서 작용하게 하는 가장 가까운 형태는 그것을 화폐자본으로서 화폐시장에 방출하는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의 규모가(고정자본은 별도로 하고) 2배로 될수도 있을것이다. 그 경우에는 동일한 900파운드의 선대자본으로 생산과정이 2배의 규모로 운영될수 있을것이다.

다른 한편 만약 생산자본의 류동적 제 요소의 가격이 절

반만큼 등귀한다면 매주 100파운드가 아니라 150파운드가 필요할것이며 따라서 900파운드가 아니라 1,350파운드가 필요할것이다. 기업을 종전과 동일한 규모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450파운드의 추가자본이 필요할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에 비례하여 화폐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크거나 작은 압박을 화폐시장에 가할것이다. 시장에 있는, 리용할수 있는 자본이 이미 모두다 요구되고있다면 리용할수 있는 자본을 획득하기 위하여 가일층 격렬한 경쟁이 일어날것이다. 만약 이러한 자본의 일부분이 놀고있었다면 그 부분은 그만큼 활동을 촉진받게 될것이다.

그러나 셋째로, 생산의 규모가 주어지고 회전속도도, 류동적생산자본의 제 요소의 가격도 변하지 않는 경우에 기업 X의 생산물의 가격이 하락 또는 등귀할수 있다. 기업 X가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이 하락한다면 이 기업이 부단히 류통에 투입한 600파운드의 상품자본의 가격은 례컨대 500파운드로 하락할것이다. 따라서 선대자본가치의 $\frac{1}{6}$은 류통과정으로서부터 환류하지 않는다.(상품자본에 포함되여있는 잉여가치는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것은 류통과정에서 사라지고만다. 그러나 생산요소의 가치 또는 가격은 원래대로이므로 이 500파운드의 환류는 다만 부단히 생산과정에서 종사하고있는 600파운드라는 자본의 $\frac{5}{6}$를 보상하는데 충분할따름이다. 따라서 생산을 동일한 규모로 계속하기 위하여서는 100파운드의 추가적화폐자본이 지출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반대로 기업 X의 생산물의 가격이 등귀한다면 600파운드의 상품자본의 가격은 례컨대 700파운드로 등귀할것이다. 이 가격

의 7분의 1=100파운드는 생산과정으로부터 나오는것도 아니며 생산과정에 선대된것도 아니며 류통과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요소를 보상하기 위하여서는 600파운드 밖에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100파운드의 유리가 생긴다.

어째서 첫째 경우에는 회전기간이 단축 또는 연장되며 둘째 경우에는 원료 및 로동의 가격이 등귀 또는 하락하며 셋째 경우에는 공급된 생산물의 가격이 등귀 또는 하락하는가 하는 원인의 연구는 이때까지의 연구의 범위에는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첫번째 경우: 생산규모도 변하지 않고 생산요소의 가격과 생산물의 가격도 변하지 않으나 류통기간이 변하며 따라서 또 회전기간이 변동하는 경우.

우리의 례의 전제에 의하면 류통기간의 단축에 의하여 $\frac{1}{9}$만큼 적어진 선대총자본이 필요하며 따라서 선대총자본은 900파운드로부터 800파운드로 감소되여 100파운드의 화폐자본이 분리된다.

기업 X는 여전히 동일한 600파운드의 가치를 가진 동일한 6주간의 생산물을 공급한다. 그리고 년중 중단없이 작업이 진행되므로 이 기업은 51주간에는 5,100파운드의 가치를 가진 동일한 량의 생산물을 공급한다. 따라서 이 기업이 류통에 투입하는 생산물의 량과 가격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으며 이 기업이 생산물을 시장에 방출하는 기한에 관하여도 역시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도 100파운드가 분리되여있는것은 류통기간의 단축에 의하여 이전처럼 900파운드로써가 아니라 800파운드의 선대자본으로써 이

파정의 수요가 충족되기때문이다. 분리된 100파운드의 자본은 화폐자본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이 100파운드는 결코 선대자본중 부단히 화폐자본의 형태로 기능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을 대표하는것은 아니다. 선대류동자본 I=600파운드중 $\frac{4}{5}$=480파운드는 부단히 생산재료에 투하되며 $\frac{1}{5}$=120파운드는 로임으로 투하된다고 가정하자. 따라서 매주 80파운드는 생산재료에 투하되고 20파운드는 로임에 투하된다. 그러므로 자본 II=300파운드도 역시 생산재료를 위한 $\frac{4}{5}$=240파운드와 로임을 위한 $\frac{1}{5}$=60파운드로 분할되지 않으면 안된다. 로임에 투하되는 자본은 항상 화폐형태로 선대되지 않으면 안된다. 600파운드라는 가치액의 상품생산물이 화폐형태로 재전화되면, 즉 그것이 판매되면 그중 480파운드는 생산재료(생산용재고)로 전화될수 있으나 120파운드는 6주간분의 로임지불에 복무하기 위하여 화폐형태를 보존한다. 이 120파운드는 환류하는 600파운드의 자본중 항상 화폐자본의 형태로 갱신되며 보상되지 않으면 안되는, 따라서 또 항상 선대자본중 화폐형태로 기능하는 부분으로서 존재하지 않으면 안되는 최소한이다.

이제 주기적으로 3주간은 유리되고 역시 240파운드의 생산용재고와 60파운드의 로임으로 분할될수 있는 300파운드중에서 류통기간의 단축으로 말미암아 100파운드는 화폐자본의 형태로 분리되여 회전의 기구로부터 완전히 떨어져나온다고 하면—이 100파운드의 화폐자본을 위한 화폐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 $\frac{1}{5}$만은 회전의 내부에서 주기적으로 유리되는 화폐

자본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러나 $\frac{4}{5}$=80파운드는 이미 동일한 가치의 추가적생산용재고에 의하여 보상되고있다. 이 추가적 생산용재고는 어떠한 방식으로 화폐로 전화되는가? 또 이 전환을 위한 화폐는 어디에서 오는가?

일단 류통기간의 단축이 생긴다면 상술한 600파운드중 480파운드가 아니라 다만 400파운드만이 생산용재고로 재전화된다. 나머지 80파운드는 화폐형태로 유지되여 상술한 로임용 20파운드와 함께 100파운드의 분리자본을 형성한다. 이 100파운드는 600파운드의 상품자본의 매매에 의하여 류통으로부터 나오며 그것은 다시 로임에나 생산요소에 투하되지 않기때문에 이제는 류통으로부터 끌려나오기는 하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것은 화폐형태로 있는 이 100파운드는 다시 그것이 최초에 류통에 투입된 때와 동일한 형태로 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900파운드의 화폐가 생산용재고와 로임에 투하되였다. 동일한 생산과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제는 800파운드밖에 필요하지 않다. 이리하여 화폐형태로 분리된 100파운드는 이제는 투하처를 찾고있는 새로운 화폐자본으로 되고있으며 화폐시장의 새로운 구성부분으로 되여있다. 이 100파운드는 주기적으로 이미 이전부터 유리화폐자본의 형태와 추가적생산자본의 형태로 있었으나 이 잠재적상태자체가 생산과정의 수행을 위한 조건이였다. 왜냐 하면 그것은 생산과정의 련속을 위한 조건이였기때문이다. 이제는 이 100파운드는 이 목적을 위하여 더는 필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새로운 화폐자본으로 되며 화폐시장의 한 구성부분으로 된다. 비록 그것이 결코 사회의 현존화폐저장의 추가적요소를 이루는것도 아니며(왜냐 하면 그것은 이미 기업개시 당시에 존재하였

으며 그 기업에 의하여 류통에 투입되였기때문이다.) 새로 축적된 축장화폐를 이루고있는것도 아니지만.

이 100파운드는 그것이 선대화폐자본중 더는 동일한 기업에서 사용되지 않는 일부분인 한 이제는 사실상 류통으로부터 물러났다. 그러나 이렇게 물러날수 있는것은 다만 상품자본의 화폐로의 전화와 이 화폐의 생산자본으로의 전화, 즉 W′—G—W가 1주간만큼 빨라지고 따라서 또 이 과정에 종사하는 화폐의 류통이 빨라지고있기때문이다. 이 100파운드가 류통으로부터 물러나는것은 그것이 자본 X의 회전을 위하여 더는 필요하지 않기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선대자본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것이라고 가정되고있다. 이 자본이 차용된것이라 하더라도 사태는 조금도 변화되지 않을것이다. 류통기간이 단축되면 그 사용자는 900파운드가 아니라 800파운드의 차용자본밖에 필요로 하지 않을것이다. 그리하여 100파운드가 대부자에게 반환되면 그것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100파운드의 새로운 화폐자본으로 되는데 다만 X의 수중에가 아니라 Y의 수중에 있을뿐이다. 또 자본가 X가 480파운드의 가치가 있는 생산재료를 외상으로 얻고 따라서 그자신은 로임을 위하여 120파운드만을 화폐로 선대하면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는 80파운드만큼 적은 생산재료를 외상으로 구입하면 될것이다. 따라서 이 80파운드의 생산재료는 외상을 주는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여분의 상품자본을 이루게 되며 한편 자본가 X는 20파운드를 화폐로 분리시키게 될것이다.

추가적생산용재고는 이제는 $\frac{1}{3}$만큼 감소되였다. 그것은

이전에는 300파운드의 추가자본 II의 $\frac{4}{5}$=240파운드였는데 지금은 160파운드에 불과하다. 즉 3주간분이 아니라 2주간분의 추가적재고이다. 그것은 이제는 3주간마다 갱신되는것이 아니라 2주간마다 갱신되지만 그러나 3주간분이 아니라 다만 2주간분이면 된다. 따라서 구입은 례컨대 면화시장에서 보다 빈번히 또 보다 소량으로 반복된다. 생산물의 량은 종전과 같으므로 동일한 량의 면화가 시장에서 끌려나간다. 그러나 끌려나가는 기간적분배는 다르게 되며 보다 많은 시기에 끌려나가게 분배된다. 례컨대 3개월의 경우와 2개월의 경우를 가정하고 면화의 년간소비를 1,200퉁구리라고 가정하자. 제1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된다.

1월 1일 판매량 300퉁구리, 재고량 900퉁구리
4월 1일 판매량 300퉁구리, 재고량 600퉁구리
7월 1일 판매량 300퉁구리, 재고량 300퉁구리
10월 1일 판매량 300퉁구리, 재고량 0퉁구리

그런데 제2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된다.

1월 1일 판매량 200퉁구리, 재고량 1,000퉁구리
3월 1일 판매량 200퉁구리, 재고량 800퉁구리
5월 1일 판매량 200퉁구리, 재고량 600퉁구리
7월 1일 판매량 200퉁구리, 재고량 400퉁구리
9월 1일 판매량 200퉁구리, 재고량 200퉁구리
11월 1일 판매량 200퉁구리, 재고량 0퉁구리

따라서 면화에 투하된 화폐는 한달 늦게, 10월이 아니라 11월에야 비로소 완전히 환류한다. 그리하여 류통기간의 단축에 의하여, 따라서 또 회전기간의 단축에 의하여 선대자본의

$\frac{1}{9}$=100파운드가 화폐자본의 형태로 분리된다고 하면 또 이 100파운드는 주임금지불용의 화폐자본중 주기적으로 여분으로 되는 20파운드와 주기적으로 여분으로 되는 1주간분의 생산용재고로서 존재하였던 80파운드로써 구성되였다면 이 80파운드에 관하여서는 공장주측에서의 여분의 생산용재고의 감소에 면화상인측에서의 상품재고의 증가가 상응한다. 동일한 면화가 공장주의 창고에서 생산용재고로서 놓여있는 기간이 단축되는 그만큼 그것이 상품으로서 면화상인의 창고에 놓여있는 기간이 길어진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업 X에서의 류통기간의 단축은 X가 자기의 상품을 보다 빨리 판매하거나 또는 보다 빨리 그 지불을 받는데 의하여 또는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지불기한이 단축되는데 의하여 생기는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이 단축은 상품판매의 단축, 상품자본으로부터 화폐자본으로의 전화 W′—G′, 즉 류통과정의 제1단계의 단축에서 생긴다. 이 단축은 또 류통과정의 제2단계 G—W에서도, 따라서 또 자본가 X에게 그의 류동자본의 생산요소를 공급하는 자본 Y나 Z 등의 로동기간이나 류통기간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에서도 생길수 있을것이다.

례컨대 만약 면화나 석탄 등이 그 생산지 또는 집산지로부터 자본가 X의 생산장소 소재지에 도착하기까지 종래의 운수방법으로는 3주간이 걸린다고 하면 새로운 재고가 도착할 때까지의 X의 생산용재고의 최소한은 적어도 3주간분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면화나 석탄이 그것들이 려행중에 있는 동안은 생산수단으로서 복무할수 없다. 그동안은 그것들은 오히려 운수업과 이 운수업에 사용되고있는 자본의 로동대상으로

되며 또 석탄생산자나 면화판매업자에 있어서는 류통중에 있는 상품자본으로 된다. 개량된 운수에서는 이 려행이 2주간으로 단축된다고 하자. 그러면 생산용재고는 3주간분으로부터 2주간분으로 될수'있다. 따라서 이 재고를 위하여 선대된 80파운드의 추가자본이 유리되며 또 로임을 위한 20파운드의 추가자본도 유리된다. 왜냐 하면 회전한 600파운드의 자본이 1주간 더 일찍 환류하기때문이다.

다른 한편 레컨대 원료를 공급하는 자본의 로동기간이 단축된다면(그 례는 앞의 장들에서 들었다), 따라서 또 원료를 빨리 갱신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면 생산용재고를 감소시킬수 있으며 한 갱신기로부터 다른 갱신기까지의 간격을 단축할수 있다.

반대로 만약 류통기간이 연장되고 따라서 또 회전기간이 연장된다면 추가자본의 선대가 필요하게 된다. 만약 자본가가 자신이 추가자본을 가지고있다면 그것을 자기의 주머니로부터 내놓으면 된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이 추가자본은 어떤 형태로 화폐시장의 일부분으로서 투하되여있을것이다. 그것을 리용할수 있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종래의 형태로부터 해방하지 않으면 안된다. 레컨대 주권을 판매하든가 예금을 꺼내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이 경우에도 화폐시장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이 생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본가는 추가자본을 차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추가자본중 로임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 부분은 정상적인 사정하에서는 부단히 화폐자본으로서 선대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그때문에 자본가 X는 화폐시장에 대하여 그 부분만큼 직접적인 압박을 가한다. 생산재료에 투하되여야 할 부분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상과 같은것이 불가피한것은 다만 그가

생산재료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뿐이다. 그가 생산재료를 외상으로 얻을수 있다면 그것은 화폐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추가자본은 직접 생산용재고로서 선대되는것이고 처음부터 화폐자본으로서 선대되는것은 아니기때문이다. 그에게 외상을 준 사람이 X에게서 받은 수형을 직접 화폐시장에 다시 투입하여 그것을 할인하게 하든가 한다면 그것은 간접적으로 둘째번 사람의 손을 통해서 화폐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할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 수형을 례컨대 후일에 상환하게 되여 있는 채무를 지불하기 위하여 리용한다면 이 추가적선대자본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화폐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두번째 경우: 생산재료의 가격은 변동하나 다른 사정은 모두 변동하지 않는 경우.

지금까지는 900파운드의 총자본중 $\frac{4}{5}$=720파운드는 생산재료에 투하되고 $\frac{1}{5}$=180파운드는 로임에 투하된다고 가정하였다.

만약 생산재료의 가격이 절반이 하락한다면 생산재료는 6주간의 로동기간을 위하여 480파운드가 아니라 240파운드밖에 필요되지 않으며 추가자본 Ⅱ로서는 240파운드가 아니라 120파운드밖에 필요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 Ⅰ은 600파운드로부터 240+120=360파운드로 감소되며 자본 Ⅱ는 300파운드로부터 120+60=180파운드로 감소된다. 총자본은 900파운드로부터 360+180=540파운드로 된다. 따라서 360파운드가 분리된다.

이렇게 분리되여 지금은 놀고있으며 따라서 화폐시장에

서 투자처를 구하고있는 자본인 화폐자본은 최초에 화폐자본으로서 선대된 900파운드의 자본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 부분은 그것이 주기적으로 재전화되는 생산요소의 가격하락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확대하지 않고 원래의 규모로 계속하기 위하여 여분으로 되고있는것이다. 이 가격하락이 우연한 사정들(특히 풍작이나 과잉공급 등)에 기인하는것이 아니라 원료를 공급하는 부분에서의 생산력의 제고에 기인하는것이라면 이 화폐자본은 화폐시장에 대한 일반적으로 화폐자본의 형태로 리용될수 있는 자본에 대한 절대적인 추가분으로 될것이다. 왜냐 하면 이 화폐자본은 이제는 리용되고있는 자본의 없어서는 안될 구성부분으로 되지 않는것이기때문이다.

세번째 경우: 생산물자체의 시장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생산물의 가격의 하락에 의하여 자본의 일부분이 상실되며 그때문에 자본의 일부분이 화폐자본의 새로운 선대에 의하여 보충되지 않으면 안된다. 판매자가 받는 이 손해는 구매자를 통하여 되돌려받을수 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되돌려받게 되는것은 생산물의 시장가격이 다만 우연한 경기변동에 의하여 하락하였을뿐이고 그후 다시 정상적인 가격으로 등귀하는 경우이다. 간접적으로 되돌려받게 되는것은 가격변동이 가치변동에 의하여 초래되고 이 가치변동이 이전의 생산물에도 반작용하는 경우이며 또 이 생산물이 다시 생산요소로서 다른 생산분야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만큼 자본을 유리시키는 경우이다. 두 경우에 다 X에게 있어서 상실된 자본, 따라서 그 보충을 위하여 X가 화폐시장을 압박하는 자본은 그의 거래상대자에 의하여 새로운 추가자본으로서 공급될수 있다. 그 경우에는 다만 자본이전이 일어날따름이다.

반대로 만약 생산물의 가격이 등귀한다면 선대된것이 아닌 자본부분이 류통으로부터 취득된다. 이 자본부분은 생산과정에 선대된 자본의 유기적부분이 아니며 따라서 만약 생산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분리된 화폐자본을 형성한다. 여기에서는 생산물의 제 요소의 가격은 생산물이 상품자본으로서 시장에 나타나기전부터 이미 주어져있었다고 가정하였으므로 이 경우에는 현실적인 가치변동이 소급적으로 작용하여, 례컨대 원료가 추후에 등귀한 경우에는 이 가치변동이 가격등귀를 일으킬수도 있을것이다. 이 경우에는 자본가 X는 상품자본으로서 류통하고있는 자기의 생산물에 의하여서도 또 자기가 보유하고있는 생산용재고에 의하여서도 리득을 보게 될것이다. 이 리득은 생산요소의 가격이 새로 등귀하였기때문에 이제는 그의 기업을 계속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되는 추가자본을 그에게 공급할것이다.

혹은 또 가격등귀가 일시적인것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자본가 X측에서 추가자본으로서 필요하게 되는것은 그의 생산물이 다른 기업부문을 위한 생산요소를 이루는 한 다른 자본가측에서는 유리된 자본으로서 떨어져나간다. 일방이 잃은것을 타방이 얻고있는것이다.

제 16 장

가변자본의 회전

1. 잉여가치의 년률

2,500파운드를 류동자본이라 하고 그 $\frac{4}{5}$=2,000파운드를 불변자본(생산재료), $\frac{1}{5}$=500파운드를 로임에 투하되는 가변자본이라고 하자.

회전기간은 5주간, 그중 로동기간은 4주간, 류통기간은 1주간이라고 하자. 그러면 자본 Ⅰ은 2,000파운드로서 1,600파운드의 불변자본과 400파운드의 가변자본으로써 구성되며 자본 Ⅱ는 500파운드이며 그중 400파운드는 불변자본이고 100파운드는 가변자본이다. 각 로동주간에는 500파운드의 자본이 투하된다. 50주간으로 구성되는 1년동안에는 50×500=25,000파운드의 년간생산물이 생산된다. 따라서 1로동기간에 부단히 사용되는 2,000파운드의 자본 Ⅰ은 $12\frac{1}{2}$회 회전한다. $12\frac{1}{2}\times 2,000=25,000$파운드이다. 이 25,000파운드중 $\frac{4}{5}$=20,000파운드는 생산수단에 투하되는 불변자본이고 $\frac{1}{5}$=5,000파운드는 로임에 투하되는 가변자본이다. 그와는 반대로 2,500파운

드의 총자본은 $\frac{25,000}{2,500}$=10회의 회전을 한다.

생산중에 지출된 가변적류동자본은 오직 그것의 가치가 재생산되여있는 생산물이 판매되고 상품자본으로부터 화폐자본으로 전화되여 새로 로동력에 대한 지불에 투하되는 한에 있어서만 또 새로 류통과정에 복무할수 있다. 그러나 생산중에 투하되여 그 가치가 생산물의 가치부분으로서 재현하는 불변적류동자본(생산자료)에 대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이 두 부분—류동자본의 가변부분과 불변부분—에 공통하며 그것들을 고정자본으로부터 구별하는것은 생산물에 이전된 그것들의 가치가 상품자본에 의하여 류통한다는것이 아니다. 즉 생산물이 상품으로서 류통하는데 의하여 류통한다는것은 아니다. 생산물의 가치의 일부분, 따라서 또 상품으로서 류통하는 생산물, 즉 상품자본의 가치의 일부분은 언제나 고정자본의 마멸분으로써 구성된다. 즉 고정자본의 가치중 생산중에 생산물에 이전된 부분으로써 구성된다. 그러나 차이는 다음과 같은데 있다. 즉 고정자본은 류동자본(=류동적불변자본+류동적가변자본)의 약간의 회전기간의 길거나 짧은 1순환중에 원래의 사용자태대로 생산과정에서 기능을 계속한다. 그런데 각 회전은 생산분야로부터—상품자본의 모습으로—류통분야로 들어간 모든 류동자본이 보상되는것을 조건으로 한다. 류통의 제1단계 W′—G′는 류동적불변자본과 류동적가변자본에 공통한것이다. 제2단계에서는 그것들은 분리된다. 상품이 재전화한 화폐는 일부분은 생산용재고로 전환된다(류동적불변자본). 생산용재고의 구성부분들의 구매기가 다름에 따라 어떤 부분은 보다 일찍, 다른 부분은 보다 늦게 화폐로부터 생산재료로 전화될수 있으나 결국은 그 부분전체가 생

산재료로 되여버린다. 상품의 판매에 의하여 취득된 화폐의 다른 한 부분은 화폐저장으로서 남게 되고 생산과정에 합체되는 로동력에 대한 지불에 점차 지출된다. 이 부분은 류동적가변자본을 형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부분의 완전한 보상도 언제나 자본의 회전에서 나온다. 즉 자본의 생산물로의, 생산물로부터 상품으로의, 상품으로부터 화폐에로의 전화에서 나온다. 바로 이러한 리유로 앞장에서 고정자본을 고려하지 않고 류동자본—불변적 및 가변적—의 회전을 특별히 또 공통으로 취급하였던것이다.

우리가 이제부터 취급하여야 할 문제를 위하여서는 우리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류동자본의 가변부분을 마치도 그것만이 류동자본을 이루고있는것처럼 취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우리는 류동자본의 가변부분과 함께 회전하는 불변적류동자본을 도외시한다.

2,500파운드가 선대되여있고 년간생산물의 가치는 25,000파운드이다. 그런데 류동자본의 가변부분은 500파운드이다. 따라서 25,000파운드중에 포함되여있는 가변자본은 $\frac{25,000}{5}$ =5,000파운드이다. 5,000파운드를 500파운드로 제하면 10이라는 회전수가 나오는데 이것은 2,500파운드의 총자본의 경우와 완전히 동일하다.

이 평균계산에 의하면 년간생산물의 가치를 선대자본중 부단히 1로동기간에 사용되는 부분의 가치로써 제하는것이 아니라 선대자본의 가치로써(따라서 이 경우에는 400파운드로써가 아니라 500파운드로써, 즉 자본 Ⅰ로써가 아니라 자본 Ⅰ+자본 Ⅱ로써) 제하는데 이 평균계산은 잉여가치의 생산만을 문제로 하고있는 여기서는 절대로 정확한것이다. 그

러나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 계산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정확한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평균계산은 완전히 정확한것은 아니다. 즉 그것은 자본가의 실제적목적을 위하여서는 충분한것이지만 회전의 모든 현실적사정을 정확히 또는 적절히 표현하는것은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상품자본의 가치의 일부분을 전혀 도외시하여왔다. 즉 생산과정중에서 생산되여 생산물에 합체되며 상품자본에 포함되여있는 잉여가치를 전혀 도외시하여왔다. 이제는 바로 이에 주의를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

매주 투하되는 가변자본 100파운드가 100%의 잉여가치=100파운드를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5주간의 회전기간에 투하되는 500파운드의 가변자본은 500파운드의 잉여가치를 생산한다. 즉 로동일의 절반은 잉여로동으로써 이루어지고있다.

그런데 500파운드의 가변자본이 500파운드의 잉여가치를 생산한다고 하면 5,000파운드는 10×500=5,000파운드의 잉여가치를 생산한다. 그런데 선대된 가변자본은 500파운드이다. 선대된 가변자본의 가치총액에 대한 1년간에 생산된 잉여가치총액의 비률을 우리는 잉여가치의 년률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이 년률은 $\frac{5,000}{500}$=1,000%이다. 이 년률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여보면 그것은 선대된 가변자본이 1회전기간중에 생산하는 잉여가치률에 가변자본의 회전수(이것은 전체 류동자본의 회전수와 일치한다.)를 승한것과 같다는것을 알게 된다.

이 경우에는 1회전기간중에 선대된 가변자본은 500파운드이며 이 기간중에 생산된 잉여가치도 역시 500파운드이다. 따라서 1회전기간의 잉여가치률은 $\frac{500m}{500v}$=100%이다. 이 100%

에 1년간의 회전수 10을 승하면 $\frac{5,000\text{m}}{500\text{v}}$ =1,000%로 된다.

이것은 잉여가치의 년률에 대한것이다. 그런데 일정한 회전기간중에 획득되는 잉여가치의 량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 량은 이 기간중에 선대된 가변자본의 가치—이 경우에는 500파운드—에 잉여가치률을 승한것과 같으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500\times\frac{100}{100}$ =500×1=500파운드이다. 만약 선대자본이 1,500파운드이고 잉여가치률이 변함없다면 잉여가치의 총량은 $1,500\times\frac{100}{100}$ =1,500파운드로 될것이다.

1년에 10회 회전하여 1년동안에 5,000파운드의 잉여가치를 생산하며 따라서 잉여가치의 년률이 1,000%인 500파운드의 가변자본을 자본 A라고 칭하기로 하자.

그런데 또 하나의 5,000파운드의 가변자본 B는 1년간(즉 이 경우에는 50주간)에 걸쳐서 선대되며 따라서 1년에 1회밖에 회전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또 년말에는 생산물은 그것이 완성되는 그 같은날에 대가가 지불되며 따라서 생산물이 전화한 화폐자본도 그 같은날에 환류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류통기간=0, 회전기간=로동기간 즉 1년이다. 우에서 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로동과정에는 매주 100파운드의 가변자본이 있으며 따라서 50주간에는 5,000파운드의 가변자본이 거기에 있다. 그리고 또 잉여가치률도 우에서 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100%, 즉 로동일의 길이가 같아서 그 절반이 잉여로동으로써 이루어져있다고 하자. 5주간을 두고 본다면 투하된 가변자본은 500파운드, 잉여가치률은 100%, 따라서 5주간에 생산된 잉여자치총량은 500파운드이다. 이 경우에 착취를 받는 로동력의 량과 로동력의 착취도는 이상의

전제에 의하면 자본 A의 경우와 꼭같다.

100파운드의 투하된 가변자본이 매주 100파운드의 잉여가치를 생산하며 따라서 50주간에는 50×100=5,000파운드의 투하된 자본이 5,000파운드의 잉여가치를 생산한다. 1년간에 생산되는 잉여가치의 량은 우에서 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5,000파운드이나 잉여가치의 년률은 전혀 다르다. 이 년률은 1년간에 생산된 잉여가치를 선대된 가변자본으로 제한것과 같아서 $\frac{5,000m}{5,000v}$=100%인데 상술한 자본 A의 경우에는 1,000%였다.

자본 A의 경우에도 자본 B의 경우에도 우리는 매주 100파운드의 가변자본을 지출하였다. 그리고 가치증식 또는 잉여가치률도 역시 동일한 100%, 가변자본의 크기도 동일한 100파운드이다. 같은 량의 로동력이 착취당하며 착취의 크기나 정도도 두 경우에 다 동일하며 로동일의 길이는 같고 그것이 필요로동과 잉여로동으로 등분된다. 1년간에 사용된 가변자본총액이 같은 크기인 5,000파운드이며 동일한 량의 로동을 진행하게 하고 같은 액수의 두 자본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로동력으로부터 동일한 량의 잉여가치 5,000파운드를 끌어낸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A와 B의 잉여가치의 년률에 있어서는 900%라는 차가 있다.

이 현상으로 보면 확실히 잉여가치률은 다만 가변자본에 의하여 움직이는 로동력의 량과 그 착취도에 의하여 결정될 뿐만아니라 그밖에도 류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설명하기 어려운 영향들에 의하여서도 좌우되는것처럼 보인다. 또 사실상 이 현상은 바로 그렇게 설명되여왔으며 또 이와 같은 순수한 형태로서가 아니라 보다 복잡하고 은폐된 형태(년리윤률의

형태)로서이기는 하지만 20년대초이래 리카도학파에 완전한 혼란을 일으켰던것이다.

이 현상의 기이함은 외관상으로뿐만아니라 현실적으로 자본 A와 자본 B를 완전히 동일한 사정하에 놓고보면 즉시 사라진다. 이러한 동일한 사정이 생기는것은 다만 가변자본 B가 자본 A와 동일한 기간중에 로동력에 대한 지불을 위하여 전부 지출되는 경우뿐이다.

그 경우에는 5,000파운드의 자본 B가 5주간에 투하된다. 매주 1,000파운드씩 투하되면 1년간에는 50,000파운드가 투하된다. 잉여가치도 그 경우에는 역시 우리의 전제하에서는 50,000파운드이다. 회전한 자본=50,000파운드를 선대자본=5,000으로 제하면 회전수=10이 나온다. 잉여가치률=$\frac{5,000m}{5,000v}$=100%에 회전수=10을 승하면 잉여가치의 년률=$\frac{50,000m}{5,000v}=\frac{10}{1}$=1,000%가 나온다. 그리하여 이제는 잉여가치의 년률은 A에 있어서나 B에 있어서나 다같이 1,000%이지만 잉여가치의 량은 B에 있어서는 50,000파운드이고 A에 있어서는 5,000파운드이다. 생산된 잉여가치량의 비례는 이제는 선대자본가치 B와 A의 비례와 같다. 즉 5,000:500=10:1이다. 그러나 그것을 위하여 자본 B는 동일한 시간에 자본 A의 10배의 로동력을 움직였다.

오직 로동과정에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자본만이 잉여가치를 낳으며 오직 이러한 자본만이 잉여가치에 관하여 주어진 모든 법칙이 적용되며 따라서 또 잉여가치률이 주어진 경우에는 잉여가치총량은 가변자본의 상대적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는 법칙도 적용되는것이다.[79]

로동과정자체는 시간으로 측정된다. 로동일의 길이가

주어진 경우에는(잉여가치의 년률의 차이를 명백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자본 A와 자본 B간의 모든 조건이 동등하다고 보고있는 여기서와 같이) 1로동주는 일정한 수의 로동일로써 구성된다. 혹은 또 어떤 로동기간, 례컨대 여기서는 5주간의 로동기간을 하나의 단일한 로동일로서 볼수도 있다. 례컨대 1로동일은 10시간이고 1주간은 6로동일이라고 하면 그것을 300시간의 단일한 로동일로서 볼수 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 수에 매일 동시에 동일한 로동과정에 공동적으로 사용되는 로동자의 수를 승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수가 례컨대 10이라고 하면 1주간의 로동시간은 60×10=600시간이며 5주간의 1로동기간은 600×5=3,000시간이다. 따라서 같은 량의 로동력(같은 가격의 로동력에 같은 수를 승한것)이 동일한 기간내에 움직여지는 경우에는 같은 크기의 가변자본이 같은 크기의 잉여가치률과 같은 길이의 로동일로 사용되고있는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최초의 례로 돌아가자. A와 B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같은 크기의 가변자본, 매주 100파운드가 1년간 매주 사용된다. 따라서 사용되여 로동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기능하는 가변자본은 동등하나 선대된 가변자본은 전혀 동등하지 않다. A의 경우에는 5주간마다 500파운드가 선대되고 그중에서 매주 .100파운드씩 사용된다. B의 경우에는 최초의 5주간을 위하여 5,000파운드가 선대되여야 하나 그중에서 매주 사용되는것은 100파운드에 불과하며 따라서 5주간에 사용되는것은 500파운드, 즉 선대자본의 $\frac{1}{10}$ 에 불과하다. 제2의 5주간에는 4,500파운드가 선대되여야 하나 그중 사용되는것은 500파운드에 불과하다, 등등. 일정한 기간분으로 선대

된 가변자본은 다만 그것이 이 기간중 로동과정이 차지하는 부분에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즉 로동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기능하는 정도에 따라서만 사용된 가변자본, 즉 현실적으로 기능하며 작용하는 가변자본으로 전화된다. 가변자본의 일부분이 차후의 어떤 기간에 비로소 사용되기 위하여 선대되여 있는 중간기간에는 이 가변자본부분은 로동과정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않는것이나 다름없으며 따라서 가치형성에도 잉여가치형성에도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례컨대 500파운드의 자본 A의 경우에는 그 자본은 5주간 선대되여있으나 그중 매주 100파운드씩 순차로 로동과정에 들어갈뿐이다. 제1주에는 그 $\frac{1}{5}$이 사용된다. $\frac{4}{5}$는 선대되여있으나 사용되지 않는다. 하기는 이 $\frac{4}{5}$는 다음에 오는 4주간의 로동과정을 위하여 준비되여있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선대되여있지 않으면 안된다.

선대된 가변자본과 사용된 가변자본간의 비률에 차이를 낳게 하는 사정이 잉여가치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것은—잉여가치률이 주어진 경우에는—다만 그러한 사정이 일정한 기간, 례컨대 1주간, 5주간 등등에 현실적으로 사용될수 있는 가변자본의 량에 차이를 낳게 하는 한에 있어서만이며 또 차이를 낳게 하는데 의해서만이다. 선대된 가변자본이 가변자본으로서 기능하는것은 오직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한에 있어서만이며 또 그 기간중에 있어서만이며 그것이 준비적으로 선대되여있고 사용되지 않는 기간중에는 기능하지 않는다. 그러나 선대된 가변자본과 사용된 가변자본간의 비률에 차이를 낳게 하는 모든 사정은 회전기간의 차이(그것은 로동기간

의 차이 또는 류통기간의 차이 또는 이 량자의 차이에 의하여 규정된다.)로 총괄된다. 잉여가치생산의 법칙은 잉여가치률이 같다면 기능하는 같은 량의 가변자본은 같은 량의 잉여가치를 생산한다는것이다. 따라서 자본 A와 B에 의하여 같은 기간에 같은 잉여가치률로 같은 량의 가변자본이 사용된다면 이러한 가변자본은 같은 기간에는 같은 량의 잉여가치를 낳지 않으면 안되며 이 기간중에 사용되는 가변자본과 같은 기간에 선대된 가변자본의 비률이 아무리 각이하다 하더라도, 따라서 또 생산된 잉여가치량과 사용되는 가변자본에 대하여서가 아니라 선대된 가변자본전체에 대한 비률이 아무리 각이하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변동이 없다. 이러한 비률이 각이한것은 잉여가치생산에 관하여 전개된 제 법칙에 모순되는것이 아니라 도리여 그 법칙을 확증하는것이며 그 법칙들의 불가피한 하나의 귀결인것이다.

자본 B의 최초의 5주간의 생산기간을 보기로 하자. 제5주말에는 500파운드가 사용되였으며 소비되였다. 가치생산물은 1,000파운드이며 따라서 잉여가치률은 $\frac{500m}{500v}$=100%이다. 자본 A의 경우와 완전히 마찬가지이다. 자본 A의 경우에는 잉여가치가 선대자본과 함께 실현되였으나 B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것은 여기서는 아직 우리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것은 여기서 문제로 되는것은 다만 잉여가치의 생산뿐이며 잉여가치와 생산기간중에 선대된 가변자본과의 비률뿐이기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B의 잉여가치와 그 생산중에 선대자본 5,000파운드중에서 사용되였고 따라서 또 소비된 부분과의 비률에 대하여서가 아니라 이 선대총자본자체와의 비률을 계산해본다면 그것은 $\frac{500m}{5,000v}=\frac{1}{10}$=10%로 된다. 따라서 자본 B에

있어서는 10%이지만 자본 A에 있어서는 100% 즉 10배이다. 그리하여 같은 량의 로동을 움직였고 그것도 같은 비례로 지불로동과 부지불로동으로 분할되는 로동을 움직인 같은 크기의 두 자본에 대하여 잉여가치률이 이와 같이 다르다는것은 잉여가치생산에 관한 법칙들에 모순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답은 간단히 다음과 같은 사실적관계를 보기만 하여도 알게 될것이다. 즉 A의 경우에 표현되여있는것은 현실적인 잉여가치률, 즉 500파운드라는 가변자본에 의하여 5주간에 생산된 잉여가치와 이 500파운드의 가변자본과의 비률이다. 그런데 B의 경우에는 잉여가치의 생산에도, 그에 상응하는 잉여가치률의 규정에도 아무 관계없는 방식으로 계산이 진행된다. 즉 500파운드의 가변자본에 의하여 생산된 500파운드의 잉여가치가 그 생산중에 선대되는 500파운드의 가변자본에 대하여 계산되는것이 아니라 5,000파운드라는 자본에 대하여 계산되고있는데 이 5,000파운드의 $\frac{9}{10}$인 4,500파운드는 이 500파운드의 잉여가치의 생산과는 조금도 관계가 없는것이고 오히려 그다음 45주간의 사이에 점차적으로 기능하여야 할것이며 따라서 여기에서 단 하나 문제로 되고있는 최초의 5주간의 생산에 대하여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자본 A와 B의 잉여가치률의 차이는 전혀 문제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번에는 자본 B와 자본 A에 대하여 잉여가치의 년률을 비교하여보자. 자본 B에 있어서는 $\frac{5,000m}{5,000v}$=100%이며 자본 A에 있어서는 $\frac{5,000m}{500v}$=1,000%이다. 그러나 두 잉여가치률의 상호비률은 이전과 동일하다. 이전에는 $\frac{\text{자본 B의 잉여가치률}}{\text{자본 A의 잉여가치률}}$

$=\frac{10\%}{100\%}$ 였는데 이번에는 $\frac{\text{자본 B의 잉여가치률}}{\text{자본 A의 잉여가치률}}=\frac{100\%}{1,000\%}$ 이다. $\frac{10\%}{100\%}=\frac{100\%}{1,000\%}$ 이며 따라서 이전의 경우와 동일한 비률이다.

그러나 이제는 문제가 거꾸로 되였다. 자본 B의 년률 $\frac{5,000\text{m}}{5,000\text{v}}$ =100%는 잉여가치의 생산과 그에 상응한 잉여가치률에 관한 우리가 알고있는 법칙들로부터의 어떠한 배리도—배리의 외관조차도—전혀 나타내지 않는다. 1년동안에 5,000v가 선대되여 생산적으로 소비되고있으며 그것이 5,000m을 생산하였다. 따라서 잉여가치률은 상술한 분수 $\frac{5,000\text{m}}{5,000\text{v}}$ =100%이다. 잉여가치의 년률은 현실적인 잉여가치률과 일치한다. 따라서 이번에는 우에서와는 달리 설명이 필요한 변칙을 나타내는것은 자본 B가 아니라 자본 A이다.

이 경우에는 잉여가치률은 $\frac{5,000\text{m}}{500\text{v}}$ =1,000%이다. 그러나 제1의 경우에는 5주간의 생산물인 500m이 $\frac{9}{10}$ 까지 그 생산에 사용되지 않았던 5,000파운드의 선대자본에 대하여 계산되였으나 이번에는 5,000m이 500v에 대하여, 즉 현실적으로 5,000m의 생산에 사용된 가변자본의 $\frac{1}{10}$ 에 대하여서만 계산된다. 왜냐 하면 이 5,000m은 50주간에 걸쳐 생산적으로 소비된 5,000파운드의 가변자본의 생산물이고, 다만 하나의 5주간 기간중에 소비된 500파운드의 자본의 생산물은 아니기때문이다. 제1의 경우에는 5주간에 생산된 잉여가치가 50주간을 위하여 선대되여있는 자본에 대하여, 따라서 5주간에 소비된 자본의 10배에 해당하는 자본에 대하여 계산되였다. 이번에는 50주간에 생산된 잉여가치가 5주간분으로서 선대된 자본에 대하여, 따라서 50주간동안에 소

비된 자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에 대하여 계산된다.

500파운드의 자본 A는 결코 5주간이상의 기간으로 선대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5주간말에는 환류하며 1년동안에 10회의 회전에 의하여 이 동일한 과정을 10회 갱신할수 있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결론이 나온다.

첫째로, A의 경우에 선대되는 자본은 1주간의 생산과정에 부단히 사용되는 자본부분의 5배에 불과하다. 그런데 자본 B는 50주간에 1회전밖에 하지 않으며 그때문에 50주간분으로서 선대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 자본 B는 부단히 1주간에 사용될수 있는 자본부분의 50배이다. 그때문에 회전이 1년간의 생산과정을 위하여 선대되는 자본과 일정한 생산기간 례컨대 1주간에 부단히 사용될수 있는 자본간의 비률을 변경시킨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제1의 경우를 주는데 거기에서는 5주간의 잉여가치가 이 5주간중에 사용되는 자본에 대하여 계산되는것이 아니라 50주간에 사용되는 10배의 자본에 대하여 계산되는것이다.

둘째로, 5주간이라는 자본 A의 회전기간은 1년의 $\frac{1}{10}$에 불과하며 따라서 1년은 500파운드의 자본 A가 부단히 반복하여 사용되는 회전기간의 10회를 포함하고있다. 이 경우에 사용되는 자본은 5주간을 위하여 선대되는 자본에 1년간의 회전기간수를 승한것과 같다. 1년간에 사용되는 자본은 500×10=5,000파운드이다. 1년간에 선대되는 자본은 $\frac{5,000}{10}$=500파운드이다. 사실상 500파운드가 부단히 새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결코 이 500파운드이상이 5주간마다 선대되는것은 아니다. 다른 한편 자본 B의 경우에는 확실히 5주간에는 다만 500파운드가 사용될뿐이며 또 이 5주간분으로서는 다만 500파운드가 선대될뿐이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회전기간이 50주간이기때문에 1년동안에 사용되는 자본

은 매 5주간분으로서가 아니라 50주간분으로서 선대되는 자본과 같다. 그러나 1년간에 생산되는 잉여가치의 량은 잉여가치률이 주어진 경우에는 1년간에 사용되는 자본에 따라 결정되는것이고 1년간에 선대되는 자본에 따라 결정되는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이 1회전하는 500파운드의 자본에 있어서보다 큰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 크기로 되는것은 1년에 1회전하는 자본자체의 크기가 1년에 10회전하는 자본의 크기의 10배이기때문일따름이다.

1년간에 회전한 가변자본—따라서 년간생산물 또는 년간 지출중 이 자본부분과 같은 부분—은 1년간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생산적으로 소비된 가변자본이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만약 1년간에 회전한 가변자본 A와 1년간에 회전한 가변자본 B가 같은 크기이고 그것들이 같은 가치증식조건하에서 사용되며 따라서 두 자본의 잉여가치률이 동일하다고 하면 1년간에 생산되는 두 자본의 잉여가치량도 역시 동일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또 사용된 자본량이 동일하기때문에 1년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잉여가치률도 그것이 $\frac{\text{1년간에 생산된 잉여가치 총량}}{\text{1년간에 회전한 가변자본}}$에 의하여 표시되는 한, 동일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는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회전한 두 가변자본의 상대적크기가 어떠하든간에 두 자본의 1년간에 생산된 잉여가치의 률은 각개 자본이 평균기간(례컨대 평균하여 1주 또는 1일)에 그에 의하여 운용되여온 잉여가치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것은 잉여가치의 생산과 잉여가치률의 규정에 관한 법칙으로부터 나오는 유일한 귀결이다.

그러면 다음에 $\frac{\text{1년간에 회전한 자본}}{\text{선대자본}}$ (여기서는 앞에서 말

한바와 같이 가변자본만이 고찰된다.)이라는 비률이 무엇을 나타내는가를 더 상세히 보기로 하자. 이 분수에 의하여 1년간에 선대된 자본의 회전수를 얻게 된다.

자본 A에서는 $\frac{\text{1년간에 회전한 자본 5,000파운드}}{\text{선대자본 500파운드}}$ 이며

자본 B에서는 $\frac{\text{1년간에 회전한 자본 5,000파운드}}{\text{선대자본 5,000파운드}}$ 이다.

이 두 비률에 있어서 분자는 선대자본에 회전수를 승한 것을 표시한다. 즉 A에서는 500×10이며 B에서는 5,000×1이다. 또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회전기간의 역수를 승한것을 표시한다. A의 회전기간은 $\frac{1}{10}$년이다. 역수는 $\frac{10}{1}$이며 따라서 $500\times\frac{10}{1}=5,000$이다. B에서는 $5,000\times\frac{1}{1}=5,000$이다. 그리고 분모는 회전한 자본에 회전수의 역수를 승한것을 표시한다. 즉 A에서는 $5,000\times\frac{1}{10}$ 이며 B에서는 $5,000\times\frac{1}{1}$ 이다.

1년동안에 회전한 두 가변자본에 의하여 움직여진 각개 로동량(지불로동과 부지불로동과의 합계)은 이 경우에 동일하다. 왜냐 하면 회전한 두 자본들자체의 크기가 동일하며 또 그것들의 가치증식률도 동일하기때문이다.

1년간에 회전한 가변자본의 선대가변자본에 대한 비률은 1) 선대되여야 할 자본과 일정한 로동기간에 사용되는 가변자본과의 비률을 보여준다. 회전수를 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0으로 하고 1년을 50주라고 가정한다면 회전기간은 5주간이다. 가변자본은 이 5주간분으로서 선대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 5주간분으로서 선대되는 자본은 1주간에 사용되는 가변자본의 5배가 아니면 안된다. 즉 선대자본(여기서는 500

파운드)의 $\frac{1}{5}$만이 1주간동안에 사용될수 있다. 그런데 회전수가 $\frac{1}{1}$인 자본 B에서는 회전기간=1년=50주간이다. 따라서 선대된 자본과 매주 사용되는 자본과의 비률은 50:1이다. 만약 이 비률이 B에서나 A에서나 동일하다면 B는 매주 100파운드가 아니라 1,000파운드를 투하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2) B는 A와 동일한 량의 가변자본을 움직이기 위하여서는, 따라서 또 잉여가치률이 주어져있다면 동일한 량의 로동(지불로동과 부지불로동)을 움직이기 위하여, 따라서 또 1년동안에 동일한 량의 잉여가치를 생산하기 위하여 A의 10배되는 자본(5,000파운드)을 사용하였다는것으로 된다. 현실적인 잉여가치률이 표시하는것은 일정한 기간에 사용된 가변자본과 동일한 기간에 생산되는 잉여가치와의 비률, 또는 이 기간에 사용된 가변자본에 의하여 움직이는 부지불로동의 량에 불과하다. 이 현실적인 잉여가치률은 가변자본중 사용되지 않는 기간에도 선대되여있는 부분과는 절대로 아무 관계도 없으며 따라서 또 일정한 기간에 선대된 자본부분과 동일한 기간에 사용되는 자본부분간의 비률—각이한 자본들의 회전기간의 차이에 따라 변화되며 차이가 생기는—과도 역시 아무 관계가 없다.

오히려 이미 전개한것으로부터 말할수 있는것은 잉여가치의 년률과 로동의 착취도를 표현하는 현실적인 잉여가치률이 일치하는것은 단 하나의 경우뿐이라는것이다. 즉 그 경우에는 선대자본이 1년에 1회만 회전하며, 따라서 선대자본과 1년간에 회전한 자본의 크기가 동일하며, 따라서 1년간에 생산된 잉여가치량과 그 생산을 위하여 1년간에 사용된 자본과

의 비률이 1년간에 생산된 잉여가치량과 1년간에 선대된 자본과의 비률과 일치하며 그와 동일한 경우이다.

A. 잉여가치의 년률은 $\frac{\text{1년간에 생산되는 잉여가치 총량}}{\text{선대가변자본}}$ 과 같다. 그런데 1년간에 생산된 잉여가치의 량은 현실적인 잉여가치률에 그 잉여가치의 생산에 사용된 가변자본을 승한것과 같다. 년간 잉여가치량의 생산에 사용된 자본은 선대자본에 회전수를 승한것과 같다. 이 회전수를 n이라고 하자. 그러면 공식 A는 다음과 같은것으로 전화된다.

B. 잉여가치의 년률은 $\frac{\text{현실적인 잉여가치률}\times\text{선대가변자본}\times n}{\text{선대가변자본}}$

과 같다. 례컨대 자본 B의 경우에는 $\frac{100\%\times5,000\times1}{5,000}$ 즉 100%이다. 다만 n=1인 경우에만, 즉 선대가변자본이 1년에 1회만 회전하며 따라서 1년간에 사용된 자본 또는 회전한 자본과 같은 경우에만 잉여가치의 년률은 현실적인 잉여가치률과 같다.

잉여가치의 년률을 M', 현실적인 잉여가치률을 m', 선대가변자본을 v, 회전수를 n이라고 한다면 $M'=\frac{m'vn}{v}=m'n'$이며 따라서 $M'=m'n$이다. 그리고 n=1인 경우에만 $M'=m'$가 된다. 즉 $M'=m'\times1=m'$가 된다.

이로부터 또 다음과 같이 된다. 잉여가치의 년률은 언제나 $m'n$과 같다. 즉 1회전기간에 소비된 가변자본에 의하여 그 기간중에 생산된 잉여가치의 현실적인 비률에 이 가변자본의 년간회전수를 승한것과 같다. 또는(같은 말이지만) 1년을 단위로 하여 계산한 그 회전**기간**의 역수를 승한 적과 같다(가변자본이 1년에 10회전한다고 하면 그 회전기간은 $\frac{1}{10}$ 년이다. 따라서 그 회전기간의 역수는 $\frac{10}{1}=10$이다.).

다음으로는 또 다음과 같이 된다. M′=m′로 되는것은 n=1의 경우이다. 또 M′가 m′보다 큰것은 n이 1보다 큰 경우이다. 즉 선대자본이 1년에 1회이상 회전하는 경우이다. 바꾸어말하면 회전한 자본이 선대자본보다 큰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M′가 m′보다 작은것은 n이 1보다 작은 경우이다. 즉 1년간에 회전한 자본은 다만 선대자본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회전기간이 1년이상이 되는 경우이다.

이 마지막 경우를 잠간 고찰하여보자.

지금까지의 례에서 전제로 한것을 모두 그대로 두고 다만 회전기간만이 55주간으로 연장된다고 하자. 로동과정은 매주 100파운드의 가변자본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이 회전기간에는 5,500파운드를 필요로 하며 매주 100m을 생산한다. 따라서 m′는 우에서와 마찬가지로 100%이다. 여기서는 회전수 $n=\frac{50}{55}=\frac{10}{11}$ 이다. 왜냐 하면 회전기간은 $1+\frac{1}{10}$ 년(1년=50주간이라고 하고)=$\frac{11}{10}$ 년이기때문이다.

$$M'=\frac{100\%\times 5,500\times\frac{10}{11}}{5,500}=100\times\frac{10}{11}=\frac{1,000}{11}\%=90\frac{10}{11}\%$$

이며 따라서 100%보다 작다. 실제로 만일 잉여가치의 년률이 100%라면 5,500v는 1년간에 5,500m을 생산하지 않으면 안될것인데 그것을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frac{11}{10}$ 년이 필요하다. 5,500v가 1년간에 5,000m밖에 생산하지 못하므로 잉여가치의 년률은 $\frac{5,000m}{5,500v}=\frac{10}{11}=90\frac{10}{11}\%$이다.

그러므로 잉여가치의 년률, 즉 1년간에 생산된 잉여가치와 **선대**총가변자본(1년간에 **회전**한 가변자본과 구별되는)

과의 비교는 결코 단순히 주관적인 비교가 아니고 자본의 현실적운동자체가 이러한 대비를 낳게 하는것이다. 자본 A의 소유자에게 있어서는 1년말에 그의 선대가변자본=500파운드가 환류하였고 그외에 5,000파운드의 잉여가치가 있다. 그가 1년간에 사용한 자본량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그의 수중으로 환류하는 자본량이 그의 선대자본의 크기를 표시한다. 자본이 1년말에 일부분은 생산용재고로서, 일부분은 상품자본 또는 화폐자본으로서 존재하는가 안하는가 또 이 자본이 어떤 비률로써 이 각이한 부분들로 분할되는가 하는것은 당면한 문제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 자본 B의 소유자에게 있어서는 그의 선대자본 5,000파운드가 환류하였고 그밖에 또 5,000파운드의 잉여가치가 있다. 자본 C(마지막에 고찰한 5,500파운드의 자본)의 소유자에게 있어서는 5,000파운드의 잉여가치가 1년간에 생산되였으나(5,000파운드가 투하되고 잉여가치률은 100%이다.) 그의 선대자본은 아직 환류하지 않았으며 생산된 그의 잉여가치도 아직 환류하지 않았다.

$M' = m' n$에 의하여 표시되는것은 1회전기간에 사용된 가변자본에 적용되는 잉여가치률, 즉 $\frac{\text{1회전기간에 생산된 잉여가치총량}}{\text{1회전기간에 사용된 가변자본}}$에 선대가변자본의 회전기간 또는 재생산기간의 수, 즉 선대가변자본이 그 순환을 갱신하는 기간의 수를 승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이미 제1권 제4장(화폐의 자본으로의 전화)에서 또 다음에는 제1권 제21장(단순재생산)에서 본바와 같이 자본가치는 일반적으로 선대되는것이고 지출되여버리는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는 그 순환의 각이한 단계들을 통과한후에는 다시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기때문이며 그것도 잉여가치만큼 증식되

여 돌아가기때문이다. 이것이 자본가치를 선대된것으로서 특징짓는다. 그 출발점으로부터 귀착점까지 경과하는 시간은 그것이 선대되여있는 시간이다. 자본가치가 통과하는 전체 순환은 그 선대로부터 환류에 이르는 시간에 의하여 측정되는데 그것은 자본가치의 회전을 이루며 이 회전의 지속시간은 한 회전기간이다. 이 기간이 경과하고 순환이 종결되면 동일한 자본가치는 동일한 순환을 새로 개시할수 있으며 따라서 또 새로 자기를 증식하고 잉여가치를 낳을수 있다. A의 경우와 같이 가변자본이 1년에 10회전한다면 1년간에는 동일한 선대자본에 의하여 1회전기간에 해당하는 잉여가치량이 10회 생산된다.

선대의 성격은 자본주의사회의 관점에서 해명되지 않으면 안된다.

1년동안에 10회전하는 자본 A는 1년동안에 10회 선대된다. 그것은 새로운 회전기간마다 새로 선대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A는 1년을 통하여 결코 500파운드라는 동일한 자본가치보다 많게는 선대하지 않으며 또 사실상 우리가 고찰하는 생산과정을 위하여서는 결코 500파운드보다 많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 500파운드가 1회의 순환을 끝내면 즉시로 A는 이 500파운드로 하여금 다시 동일한 순환을 개시하게 한다. 이것은 바로 자본이 그 본성으로 보아 다만 반복되는 생산과정에서 부단히 자본으로서 기능하는데 의하여서만 자본의 성격을 보존하기때문이다. 또 이 자본은 결코 5주간보다 길게는 선대되지 않는다. 만일 회전이 그보다 오래 지속되면 이 자본으로써는 부족하다. 만일 회전이 단축되면 자본의 일부분은 과잉으로 된다. 500파운드의 자본이 10개 선대되는것이 아니라 1**개의** 500파운드의 자본이 순차적인 기간들에 10회 선대되는것이다. 그러므로 잉여가치의 년률은 10회 선대되는

500파운드의 자본, 즉 5,000파운드에 대하여 계산되는것이 아니라 1회 선대되는 500파운드의 자본에 대하여 계산된다. 그것은 마치도 1탈레르가 10회 류통하면 그것이 10탈레르의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언제나 다만 1개의 류통중에 있는 탈레르를 표시함에 불과한것과 완전히 마찬가지이다. 사람의 손을 바꿀 때마다 1탈레르를 가지고있는 사람의 수중에서는 그것은 여전히 1탈레르라는 동일한 가치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본 A의 매차의 환류에 있어서 그리고 1년말에 환류할 때에도 그 소유자가 언제나 500파운드라는 동일한 자본가치를 리용하고있을따름이라는것을 표시한다. 그러므로 그의 수중에도 매번 500파운드가 환류할뿐이다. 따라서 그의 선대자본은 결코 500파운드보다 많지는 않다. 그러므로 500파운드라는 선대자본이 잉여가치의 년률을 표시하는 분수의 분모로 된다. 잉여가치의 년률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앞에서 공식 $M' = \frac{m'vn}{v} = m'n$을 얻었다. 현실적인 잉여가치률 $m' = \frac{m}{v}$ 즉 잉여가치량을 그것을 생산한 가변자본으로써 제한것과 같기때문에 $m'n$에서는 m'의 치를 $\frac{m}{v}$ 으로 놓을수 있으며 그렇게 하면 다른 공식 $M' = \frac{mn}{v}$ 을 얻는다.

그러나 500파운드의 자본은 그 10회의 회전에 의하여 따라서 그 선대의 10회의 갱신에 의하여 10배나 큰 자본, 즉 5,000파운드의 자본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것은 마치도 1년에 10회 류통하는 500개의 탈레르주화가 1년에 1회밖에 류통하지 않는 5,000개의 탈레르주화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것과 같은것이다.

2. 개별적가변자본의 회전

《생산과정은 그 사회적형태여하를 불문하고 련속적이여야 한다. 바꾸어말하면 주기적으로 같은 단계를 계속 부단히 통과하지 않으면 안된다.…그렇기때문에 어떠한 사회적생산과정도 그것을 부단한 련관에서 또 갱신의 끊임없는 흐름에서 고찰할 때에는 그것은 동시에 재생산과정이다.…자본가치의 주기적증가분, 즉 기능자본의 주기적열매로서는 잉여가치는 자본에서 생기는 **수입**이라는 형태를 취한다.》(제1권 제21장, 588~589페지[80])

자본 A에는 5주간의 회전기간이 10회 있다. 제1회전기간에는 500파운드의 가변자본이 선대된다. 즉 매주 100파운드가 로동력으로 전환되며 따라서 제1회전기간의 종말에는 500파운드가 로동력에 지출되여있다. 이 500파운드는 본래는 선대총자본의 일부분이였는데 이제는 자본이 아니게 되였다. 그것은 로임으로 지불되고말았다. 로동자들은 또 그것을 자기들의 생활수단의 구입에 지불하며 따라서 500파운드의 가치가 있는 생활수단을 소비한다. 이리하여 이 가치액만큼한 상품량은 없어진다(로동자가 화폐 등으로서 저축하는것도 역시 자본이 아니다.). 이 상품량은 로동자에게 있어서 비생산적으로 소비된다. 비록 그것이 로동자의 로동력, 즉 자본가에게 불가결한 도구의 활동능력을 유지한다는 점을 제외하지만.—그러나 다음으로 500파운드는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동일한 가치(또는 가격)의 로동력으로 전환된다. 로동력은 자본가에 의하여 로동과정에서 생산적으로 소비된다.. 5주간의

말에는 1,000파운드의 가치생산물이 거기에 있게 된다. 그 절반인 500파운드는 로동력에 대한 지불에 지출된 가변자본의 가치가 재생산된것이다. 다른 절반인 500파운드는 새로 생산된 잉여가치이다. 그러나 5주간분의 로동력, 즉 그것으로의 전환에 의하여 자본의 일부분이 가변자본으로 전화된 그 로동력도 역시 지출되며 비록 생산적으로이기는 하지만 소비되고있다. 어제 작용한 로동은 오늘 작용한것과 동일한 로동이 아니다. 그 가치는 그 로동에 의하여 창조된 잉여가치가 가해져서 지금은 로동력자체와는 다른 어떤 물건, 즉 생산물의 가치로서 존재한다. 그러나 생산물이 화폐로 전화되는데 의하여 생산물의 가치중 선대가변자본의 가치와 같은 부분은 새로 로동력으로 전환될수 있으며 따라서 또 새로 가변자본으로서 기능할수 있다. 재생산되였을뿐만아니라 화폐형태로 재전화된 자본가치에 의하여 동일한 로동자, 즉 로동력의 동일한 담당자가 고용된다고 하는 사정은 아무래도 좋은것이다. 자본가는 제2회전기간에는 이전의 로동자들 대신에 새로운 로동자를 사용할수도 있다.

이리하여 사실상 500파운드가 아니라 5,000파운드의 자본이 10개의 5주간 회전기간에 순차로 로임에 지출되여가며 이 로임은 다시 로동자들에 의하여 생활수단에 지출된다. 이렇게 선대된 5,000파운드의 자본은 소비된다. 그것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 또 500파운드가 아니라 5,000파운드의 가치가 있는 로동력은 순차로 생산과정에 합체되여가며 그자신의 가치=5,000파운드를 재생산할뿐만아니라 또한 여분으로 5,000파운드의 잉여가치도 생산한다. 제2회전기간에 선대되는 500파운드의 가변자본은 제1회전기간에 선대된것과 같은 500파운드의 자본이 아니다. 이것은 소비되였으며

로임에 지출되였다. 그러나 그것은 제1회전기간에 상품형태로 생산되고 화폐형태로 재전화된 새로운 500파운드의 가변자본에 의하여 **보상**되고있다. 따라서 이 새로운 500파운드의 화폐자본은 제1회전기간에 새로 생산된 상품량의 화폐형태이다. 자본가의 수중에 다시 동일한 500파운드의 화폐액이 있다는 사정, 즉 잉여가치를 도외시한다면 그가 최초에 선대한 것과 바로 같은 액수의 화폐자본이 있다는 사정은 그가 리용하는것이 새로 생산된 자본이라는 사정을 은폐한다(상품자본의 다른 가치구성부분, 즉 불변자본부분들을 보상하는 가치구성부분에 관하여 말한다면 가치는 새로 생산되는것이 아니고 단지 그 가치가 존재하는 형태가 변화할따름이다.).—제3회전을 들어보자. 여기서는 세번째 선대된 500파운드의 자본은 이전의 자본이 아니라 새로 생산된 자본이라는것은 얼핏 보아도 명백하다. 왜냐 하면 이 자본은 제1회전기간이 아니라 제2회전기간에 생산된 상품량의 화폐형태, 즉 이 상품량중 선대가변자본의 가치와 같은 가치를 가진 부분의 화폐형태이기때문이다. 제1회전기간에 생산된 상품량은 이미 판매되였다. 이 상품량의 가치중 선대자본의 가변가치부분과 같은 부분은 제2회전기간의 새로운 로동력으로 전환되여 새로운 상품량을 생산하였으며 이 상품량이 다시 판매되였고 그것의 가치의 일부분이 제3회전기간에 선대되는 500파운드의 자본이 되는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10회의 회전기간을 통하여 진행된다. 이러한 기간을 통하여 5주간마다 새로 생산된 상품량(그 가치는 그것이 가변자본을 보상하는 한에서는 새로 생산되는 것이고 불변적류동자본부분에 있어서와 같이 다만 재현될따름인것이 아니다.)이 시장에 투입되여 부단히 새로운 로동력

을 생산과정에 합체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500파운드의 선대가변자본의 10회의 회전에 의하여 달성되는것은 이 500파운드의 자본이 10회에 걸쳐 생산적으로 소비될수 있다는것이 아니다. 즉 5주간분의 가변자본이 50주간에 사용될수 있다는것이 아니다. 그런것이 아니라 500파운드의 가변자본의 10배가 50주간에 사용되며 500파운드의 자본은 언제나 5주간분에 불과하며 5주간이 경과한후에는 새로 생산된 500파운드의 자본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은 일은 자본 A의 경우에도 자본 B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난다. 그러나 여기에서 구별이 시작된다.

제1의 5주간이 끝날 때에는 B에 의하여서나 A에 의하여서나 500파운드의 가변자본이 선대되여있으며 지출되여있다. B에 의하여서나 A에 의하여서나 그 가치는 로동력으로 전환되였으며 또 이 로동력에 의하여 새로 생산된 생산물가치중 500파운드의 선대가변자본의 가치와 같은 부분에 의하여 보상되고있다. B에 있어서나 A에 있어서나 로동력은 지출된 500파운드의 가변자본의 가치를 같은 액수의 새로운 가치로써 보상하였을뿐만아니라 잉여가치를—그리고 전제에 의하면 같은 크기의 잉여가치를—첨가하였다.

그러나 B의 경우에는 선대가변자본을 보상하며 또 그 가치에 잉여가치를 첨가하는 가치생산물은 새로 생산자본 또는 가변자본으로서 기능할수 있는 형태를 취하지는 않는다. A에 있어서는 가치생산물은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있다. 그리고 1년의 종말에는 B는 최초의 5주간과 그리고 그후 순차로 5주간마다 지출된 가변자본을—그리고 비록 새로 생산된 가치 플루수 잉여가치에 의하여 보상되기는 하나—새로 생산자본 또는 가변자본으로서 기능할수 있는 형태에 있는것

으로는 가지고있지 않다. 그 **가치**는 확실히 새로운 가치에 의하여 보상되며 따라서 갱신되고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가치**형태**(여기서는 절대적인 가치형태, 그 화폐형태)는 갱신되고있지 않다.

그러므로 제2의 5주간기간분으로서도(그리고 1년중 순차로 각 5주간분으로서도) 제1기간분과 마찬가지로 다른 500파운드가 준비되여있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신용관계를 도외시한다면 년초에 5,000파운드가 잠재적인 선대화폐자본으로서 준비되여있지 않으면 안된다.—비록 이 5,000파운드가 그후 1년동안 점차 현실적으로 지출되여 로동력으로 전환되여가는것이지만.

이와는 반대로 A의 경우에는 선대자본의 순환, 즉 그 회전이 끝났기때문에 가치보상은 제1의 5주간이 경과한후에는 이미 새로운 로동력을 5주간 움직일수 있는 형태, 즉 그 원래의 화폐형태를 취하고있다.

A에서나 B에서나 제2의 5주간기간에는 새로운 로동력이 소비되며 새로운 500파운드의 자본이 이 로동력에 대한 지불에 지출된다. 제1의 500파운드로써 지불된 로동자의 생활수단은 이미 없어졌으며 어쨌든 그만큼한 가치는 자본가의 수중으로부터 사라져버렸다. 제2의 500파운드로써 새로운 로동력이 구매되며 새로운 생활수단이 시장으로부터 끌려나온다. 요컨대 새로운 500파운드의 자본이 지출되는것이며 원래부터 있던 자본이 지출되는것이 아니다. 그러나 A의 경우에는 이 새로운 500파운드의 자본은 이전에 지출된 500파운드를 보상하는 새로 생산된 가치의 화폐형태이다. B의 경우에는 이 가치보상은 가변자본으로서 기능할수 없는 형태를 취하고있다. 그것은 거기에 존재하지만 가변자본의 형태를 취하고있는것

이 아니다. 그러기때문에 그다음 5주간의 생산과정을 계속하기 위하여서는 500파운드의 추가자본이 이 경우에 불가피한 화폐형태로서 존재하여야 하며 또 선대되여야 한다. 이리하여 A에 의하여도 B에 의하여도 50주간에는 같은 크기의 가변자본이 지출되며 같은 량의 로동력이 지불되고 소비된다. 그러나 B는 이 로동력의 대가를 그 총가치=5,000파운드와 같은 선대자본으로써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A는 이 로동력의 대가를 5주간분씩 선대되는 500파운드의 자본을 보상하는 매 5주간마다 생산되는 가치의 부단히 갱신되는 화폐형태에 의하여 순차로 지불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5주간분보다 큰 화폐자본, 즉 최초의 5주간분으로서 선대된 500파운드의 자본보다 큰 화폐자본은 결코 선대되지 않는다. 이 500파운드면 온 1년동안 충분하다. 그러므로 로동의 착취도가 같다면, 즉 현실적인 잉여가치률이 같다면 분명히 A의 년률과 B의 년률은 1년동안 같은 량의 로동력을 움직이기 위하여 선대되지 않으면 안되는 가변화폐자본의 크기에 반비례하지 않으면 안된다. A의 년률은 $\frac{5,000m}{500v}$=1,000%이고 B의 년률은 $\frac{5,000m}{5,000v}$=100%이다. 그리고 500v:5,000v=1:10=100%:1,000%이다.

이 구별은 회전기간의 차이에서 생긴다. 즉 일정한 기간에 사용된 가변자본의 가치보상이 새로 자본으로서, 따라서 새로운 자본으로서 기능할수 있는 기간의 차이에서 생긴다. B의 경우에나 A의 경우에나 동일한 기간에 사용된 가변자본을 위한 동일한 가치보상이 일어난다. 또 동일한 기간에 잉여가치의 동일한 증식이 일어난다. 그러나 B에서는 비록 5주간마다 500파운드의 가치보상 플루스 500파운드의 잉여가치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가치보상은 아직 새로운 자본으로

는 되지 않는다. 왜냐 하면 그것은 화폐형태를 취하고있지 않기때문이다. A에서는 낡은 자본가치가 새로운 자본가치에 의하여 보상되고있을뿐만아니라 그것이 그 화폐형태로 갱신되고있으며 따라서 새로 기능할수 있는 자본으로서 보상되고 있다.

가치보상의 화폐에로의 전화, 따라서 또 가변자본이 선대될 때의 형태에로의 전화가 이른가 늦은가 하는것은 분명히 잉여가치의 생산자체에 대하여는 전혀 아무래도 좋은 사정이다. 잉여가치의 생산은 사용되는 가변자본의 크기와 로동의 착취도에 의존한다. 그러나 상술한 사정은 1년간에 일정한 량의 로동력을 움직이기 위하여 선대되지 않으면 안되는 화폐자본의 크기를 변화시키며 따라서 잉여가치의 년률을 규정하는것이다.

3. 사회적으로 본 가변자본의 회전

이제 문제를 사회적관점에서 보기로 하자. 1명의 로동자에게 매주 1파운드의 비용이 들며 1로동일은 10시간이라고 하자. A에나 B에나 다 1년간에 100명의 로동자가 사용되며 (로동자 100명에 1주간에 100파운드가 들면 5주간에는 500파운드, 50주간에는 5,000파운드가 든다.) 이러한 로동자는 1주 6일간에 각기 60시간씩 로동한다. 따라서 100명의 로동자는 매주 6,000시간, 50주간에는 300,000시간 로동한다. 이 로동력은 A와 B에 압류되여있으며 따라서 사회는 그것을 다른 일에 지출할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한에 있어서는 A의 경우나 B의 경우나 사회적으로는 동일하다. 그리고 또 A의

경우에도 B의 경우에도 각각 100명의 로동자가 1년에 5,000파운드(따라서 200명의 로동자는 도합 10,000파운드)의 임금을 받으며 이 금액만큼 사회로부터 생활수단을 가져간다. 이러한 한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는 역시 A의 경우나 B의 경우나 동일하다. 어느 경우에나 로동자는 매주 지불을 받으므로 그들은 역시 사회로부터 매주 생활수단을 가져가며 그대신에 그들은 역시 어느 경우에나 화폐등가를 매주 류통에 투입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구별이 시작된다.

첫째로, A의 로동자가 류통에 투입하는 화폐는 B의 로동자에 있어서처럼 그의 로동력의 가치에 대한 화폐형태(사실상으로는 이미 수행된 로동에 대한 지불수단)일뿐만이 아니다. 그것은 기업개시후의 제2회전기간으로부터 벌써 제1회전기간의 **그자신의 가치생산물**(=로동력의 가격+잉여가치)의 화폐형태이며 이 가치생산물에 의하여 제2회전기간에 있어서의 로동자의 보수가 지불되는것이다. B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경우에도 로동자에게 있어서는 화폐는 물론 그가 이미 수행한 로동에 대한 지불수단이기는 하나 이 수행된 로동은 그자신에 의하여 새로 창조되여 화폐화된 가치생산물(이 로동자체에 의하여 생산된 가치의 화폐형태)로써 지불되는것은 아니다. 이러한 일은 제2년도에 가서야 비로소 발생하며 그때에 B의 로동자는 지난해에 그에 의하여 생산되여 화폐로 전화된 가치생산물에 의하여 지불을 받는다.

자본은 회전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따라서 1년내에 자본의 재생산기간이 갱신되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자본가에 의하여 최초에 화폐형태로 선대된 그의 자본의 가변부분은 로동자에 의하여 이 가변자본의 보상을 위하여 창조된 가치생산물(그것은 그밖에 잉여가치를 포함한다.)의 화폐형

태로 더욱 신속히 전화한다. 따라서 자본가가 그자신의 기금에서 화폐를 선대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간은 더욱 단축되며 대체로 그가 선대하는 자본은 생산규모의 주어진 크기에 비하여 더욱 적어진다. 그러나 그것에 비례하여 잉여가치률이 주어진 경우에는 그가 1년간에 짜내는 잉여가치량은 더욱 커진다. 왜냐 하면 자본가는 그만큼 더욱 빈번히 로동자를 로동자자신에 의하여 새로 창조된 가치생산물의 화폐형태를 가지고 부단히 반복하여 구매할수 있으며 로동자의 로동을 움직일수 있기때문이다.

주어진 생산규모하에서는 회전기간이 단축되는데 비례하여 선대가변화폐자본(또는 류동자본일반)의 절대량은 감소되며 잉여가치의 년률은 증대된다. 재생산기간의 단축에 의하여 잉여가치의 년률의 증대가 일어나는 동시에 선대자본량이 주어진 경우에는 생산규모가 확대되며 따라서 잉여가치률이 주어진 경우에는 1회전기간내에 생산되는 잉여가치의 절대량이 증대된다. 요컨대 이상의 연구로부터 다음과 같은것이 명백해졌다. 즉 회전기간의 길이가 다름에 따라 로동착취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량의 생산적류동자본과 동일한 량의 로동을 위하여 극히 각이한 량의 화폐자본이 선대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이다.

둘째로, —이것은 첫째 구별과 관련된것이다.—로동자는 B의 경우나 A의 경우나 자기가 구매하는 생활수단의 대가를 그의 수중에서 류통수단으로 전화된 가변자본으로써 지불한다. 례컨대 그는 시장으로부터 밀을 가져갈뿐만아니라 그것을 화폐형태의 등가로써 보상한다. 그러나 B의 로동자가 자기의 생활수단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시장에서 가져가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폐는 A의 로동자의 경우와는 달리 그 1년

간에 그가 시장에 투입한 가치생산물의 화폐형태가 아니므로 그는 그의 생활수단의 판매자에게 화폐를 제공하는것은 틀림없으나 그 판매자가 그 대가로 얻은 화폐를 가지고 구매할수 있는 상품—생산수단이든 생활수단이든간에—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A의 경우에는 그러한 상품을 제공한다. 그렇기때문에 B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장으로부터 로동력이라든가, 이 로동력을 위한 생활수단이라든가, B가 사용하는 로동수단이라는 형태의 고정자본이나 생산재료를 가져가고 그 보상으로서 화폐형태의 등가를 시장에 투입한다. 그러나 그 1년동안에 시장으로부터 가져간 생산자본의 소재적요소를 보상하기 위한 어떠한 생산물도 시장에 투입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사회가 아니라 공산주의사회를 생각해본다면 우선 화폐자본이 완전히 없어지며 따라서 화폐자본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거래상의 가장들도 없어진다. 그리하여 사태는 간단히 다음과 같은것에 귀착된다. 즉 사회는 례컨대 철도건설과 같이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생산수단도 생활수단도 그밖에 어떠한 유용효과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년간총생산중에서 로동과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을 가져가는 기업부문에 대하여 아무러한 손해도 없이 얼마마한 로동과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을 돌릴수 있는가를 미리 계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적리성이 사후에야 비로소 발현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부단히 대교란이 일어날수 있으며 또 일어나지 않을수 없다. 한편으로는 화폐시장에 대한 압박이 생기고 반대로 화폐시장의 완화는 또 이러한 기업을 대량으로 만들어낸다. 따라서 후에 가서 화폐시장의 압박을 일으킬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낸다. 화폐시장이 압박을 받게 되는것은 이 경우에는 대규모적인 화폐자본의 선대가 장기간에 걸쳐

부단히 필요하기때문이다. 산업자본가와 상인들이 그들 자신의 기업경영에 필요한 화폐자본을 철도투기 등등에 투입하고 이것을 화폐시장에서의 차입에 의하여 메꾼다는 사실은 여기서는 전혀 도외시한다.—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에 있는, 리용할수 있는 생산자본에 대한 압박이 생긴다. 생산자본의 제요소가 부단히 시장으로부터 끌려나오며 그대신 화폐등가만이 시장에 투입되므로 지불능력있는 수요가 그자체로부터는 어떠한 공급요소도 제공함이 없이 증대한다. 따라서 생활수단의 가격과 생산재료의 가격이 오른다. 그밖에 그러한 시기에는 정해놓고 투기가 성행하며 자본의 대이동이 생긴다. 한무리의 투기군, 청부업자, 기사, 변호사 등등이 크게 치부한다. 그들은 시장에서 큰 소비적수요를 일으키며 그와 동시에 로임도 오른다. 식료품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러한것으로 하여 농업도 물론 자극을 받는다. 그러나 이 식료품은 1년내에 갑자기 증가될수 없는것이기때문에 그 수입이 일반적으로 외국식료품(커피, 사탕, 포도주 등)과 사치품의 수입과 함께 증가한다. 그리하여 수입업의 이 부분에서 과잉수입과 투기가 생긴다. 다른 한편 생산을 급속히 증가시킬수 있는 산업부문(고유한 의미에서의 제조업, 광산업 등)에서는 가격의 등귀로 인하여 돌연적인 확대가 일어나며 그후에는 곧 붕괴가 닥쳐온다. 동일한 영향은 로동시장에서도 생기며 그에 의하여 대량의 잠재적인 상대적과잉인구와 지어는 대량의 취업로동자들까지도 새로운 기업부문으로 끌리여가게 된다. 일반적으로 철도와 같은 대규모적인 기업은 로동시장으로부터 일정한 량의 로동력을 끌어내는데 이 로동력은 힘센 젊은이들만이 사용되는 농업과 같은 약간의 부문에서만 나올수 있다. 이러한것은 새로운 기업들이 이미 상설적인 경영부문으로 되

여있고 따라서 이 기업들에 필요한 이동적로동자계급이 이미 형성된후에도 일어난다. 례컨대 철도부설이 일시적으로 평균 규모보다 큰 규모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그 압박에 의하여 임금을 저하시켜온 로동자예비군의 일부분은 흡수된다. 임금은 일반적으로 오르며 이제까지 취업상태가 좋았던 로동시장부분에 있어서까지도 오른다. 이러한것은 불가피한 파국으로 인하여 로동자예비군이 다시 유리되여 임금이 다시 최저한으로 또 그 이하로 인하될 때까지 계속된다.(32)

회전기간의 장단이 고유한 의미에서의 로동기간, 즉 시장에 내놓을 생산물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한에서는 이 장단은 각종 자본투하의 그때마다 주어진 물적생산조건에 기초하고있으며 이러한 조건은 농업에서는 자연적생산 제 조건의 성격을 보다 더 가지며 제조업과 대부분의 채취공업에서는 생산과정자체의 사회적발전에 따라 변화하는것이다.

로동기간의 길이가 제공되는 량의 크기(생산물이 상품으로서 보통 시장에 투입되는 량적규모)에 립각하는 한에서는 그것은 관습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이 관습자체는 생산규모를 물질적기초로 하고있으며 따라서 다만 개별적으로 고찰되는 경우에 있어서만 우연적인것이다.

---

(32) 원고에는 여기에 추후의 론술을 위한 다음과 같은 주가 삽입되여있다. 《자본주의적생산방식에 있어서의 모순. 로동자는 상품의 구매자로서 시장에 대하여 중요하다. 그러나 그들의 상품—로동력—의 판매자로서는 자본주의사회는 그 가격을 최저한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또 하나의 모순. 자본주의적생산이 그 모든 잠세력을 발휘하는 시기는 정해놓고 과잉생산의 시대로 되여 나타난다. 왜냐 하면 생산의 잠세력은 그에 의하여 보다 많은 가치가 생산될수 있을뿐만아니라 실현될수 있게까지는 결코 사용될수 없기때문이다. 그런데 상품의 판매, 상품자본의 실현, 따라서 또 잉여가치의 실현은 사회일반의 소비욕망에 의하여 제한되고있는것이 아니라 그 대다수의 성원이 항상 빈궁하고 또 항상 빈궁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회의 소비욕망에 의하여 제한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 편에서 비로소 취급 될것이다》.

끝으로 회전기간의 길이가 류통기간의 길이에 좌우되는 한에서는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시장상황의 부단한 변동, 판매의 난이 그리고 그때문에 생산물을 보다 가까운 시장에 투입하거나 보다 먼 시장에 투입하는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의하여 제약된다. 수요일반의 크기를 도외시하면 여기서는 가격의 운동이 하나의 주요한 역할을 논다. 왜냐 하면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생산은 진행되여도 판매는 고의로 제한되며 또 가격이 등귀하는 경우에는 그와 반대로 생산과 판매는 같은 보조로 진행되거나 판매가 생산보다 앞설수도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고유한 의미에서의 물질적기초로 간주해야 할것은 판매시장으로부터의 생산지의 현실적인 거리이다.

례컨대 영국의 면직물이나 방사가 인도로 판매된다. 수출상인이 영국의 면방적공장주에게 지불을 한다고 하자(수출상인은 화폐시장의 상황이 좋은 경우에만 이렇게 하려 한다. 그러나 공장주자신이 신용활동에 의하여 그의 화폐자본을 보상하게 되면 사태는 이미 틀려진다.). 이 수출업자는 자기의 면방적상품을 나중에 인도시장에서 팔며 거기로부터 그의 선대자본이 그의 수중으로 돌아온다. 이 환류가 있을 때까지는 사태는 로동기간이 길기때문에 주어진 규모에서 생산과정을 진행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화폐자본의 선대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공장주가 그의 로동자들에게 지불하거나 그의 다른 류동자본요소들을 갱신하는데 사용하는 화폐자본은 그가 생산한 면사의 화폐형태가 아니다. 그렇게 될수 있는것은 이 면사의 가치가 화폐 또는 생산물로서 영국으로 환류한후의 일이다. 그것은 상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추가적화폐자본이다. 다른것은 다만 그것을 선대하는 사람이 공장주가 아니라 아마도 역시 신용활동에 의하여 이 추가적화폐자본을 얻었을 상인이라는 점

뿐이다. 마찬가지로 또 이 화폐가 시장에 투입되기 이전이나 또는 그와 때를 같이 하여 이 화폐로써 구매되여 생산적 또는 개인적 소비로 들어갈수 있는 추가생산물이 영국시장에 투입된 것도 아니다. 이러한 상태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비교적 큰 규모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에서 로동기간의 연장이 초래한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수 없다.

그런데 인도자체에서도 면사가 다시 외상으로 팔릴수도 있다. 이 외상으로써 인도에서 생산물이 구매되여 반송품으로서 영국으로 보내여지거나 또는 그 금액만큼한 수형이 반송된다. 이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인도의 화폐시장에 대한 압박이 나타나게 되며 그것이 영국에 반작용하여 영국에서 공황을 일으킬수 있다. 이 공황은 또 인도에로의 귀금속 수출과 결부되여있는 경우에까지도 인도은행에서 신용을 받고있은 영국의 상점이나 그 인도지점들의 파산에 의하여 인도에서 새로운 공황을 일으킨다. 이리하여 무역수지가 **역조**인 시장에서도, **순조**인 시장에서도 동시에 공황이 일어난다. 이 현상은 더한층 복잡할수 있다. 례컨대 영국이 인도에 은괴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인도의 영국인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인도에서 독촉한다면 인도는 그후 얼마 안가서 그 은괴를 영국으로 반송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인도에로의 수출무역과 인도로부터의 수입무역이 거의 균형을 유지할수도 있다. 비록 후자는(면화등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을 별도로 한다면) 그 범위로 보아 전자에 의하여 결정되며 자극되는것이지만. 인도와 영국과의 사이의 무역수지가 균형을 유지하는것같이 보일수도 있고 혹은 또 어느 한편으로의 극히 미소한 변동밖에 나타내지 않을수도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 공황이 일어나면 곧 분명해지는것은 팔

리지 않는 면제품이 인도에 쌓이게 되며(말하자면 상품자본이 화폐자본으로 전화되지 않은것—이 면에서 보면 과잉생산이다.) 또 다른 한편 영국에서는 인도생산물의 팔리지 않는 재고가 쌓여있을뿐만아니라 이미 판매되여 소비된 재고의 큰 부분의 대금이 아직 전혀 지불되지 않고있다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화폐시장에서의 공황으로서 나타나는것은 실지는 생산과정 및 재생산과정자체내의 정상적이 아닌 사태를 표현하고있는것이다.

셋째로, 사용된 류동자본자체(가변적 및 불변적 류동자본)에 대하여 말한다면 회전기간의 길이는 그것이 로동기간의 길이에서 생기는 한 다음과 같은 구별을 낳는다. 즉 1년간에 수차 회전하는 경우에는 가변적 또는 불변적 류동자본의 어떤 요소는 석탄생산, 의복제조 등등에 있어서와 같이 이 자본자체의 생산물에 의하여 제공될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으며 적어도 1년내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제 17 장

잉여가치의 류통

지금까지 본바와 같이 회전기간의 차이는 1년간에 생산되는 잉여가치량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도 잉여가치의 년률의 차이를 낳는다.

그러나 또 잉여가치의 자본화, 즉 **축적**에도 필연적으로 차이가 생기며 또 그러한 한에 있어서는 잉여가치률이 변하지 않아도 1년간에 생산되는 잉여가치량에도 차이가 생긴다.

그런데 우선 다음과 같은것을 말해두자. 자본 A(전장의 례에서의)는 경상적인 주기적수입을 가지고있으며 따라서 기업개시 당시의 회전기간을 제외한다면 1년중의 그자신의 소비를 자기의 잉여가치의 생산으로 충당하는것이고 자기의 기금으로부터 선대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B의 경우에는 이러한 선대가 실시된다. B는 A와 동일한 기간에 같은 량의 잉여가치를 생산하는것이지만 그 잉여가치는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그것은 개인적으로 소비될수도 없고 생산적으로 소비될수도 없다. 개인적소비가 문제로 되는 한에서는 잉여가치는 앞당겨 치르게 된다. 그러기 위한 기금은 선대되지 않으면 안된다.

생산자본중 분류하기 어려운 일부분, 즉 고정자본의 수리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본도 이제는 새로운 해명을 할수있게 되였다.

A의 경우에는 이 자본부분은—전부 또는 대부분이—생산개시당시에는 선대되지 않는다. 그것은 자본가가 리용할수 있는것일 필요도 없으며 현존할 필요도 없다. 그것은 잉여가치의 자본으로의 직접적전화에 의하여, 즉 잉여가치의 자본으로서의 직접적사용에 의하여 기업자체로부터 나온다. 1년중에 주기적으로 생산될뿐만아니라 실현되기도 하는 잉여가치의 일부분에 의하여 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출을 충당할수 있다. 이리하여 기업을 원래의 규모에서 경영해나가는데 필요한 자본의 일부분은 사업의 진행중에 기업자체에서 잉여가치의 일부분의 자본화에 의하여 생긴다. 이러한것은 자본가 B에 있어서는 불가능하다. 문제로 되고있는 자본부분은 B의 경우에는 최초에 선대되는 자본의 일부분을 이루지 않으면 안된다. A와 B의 두 경우에 다 이 자본부분은 자본가의 장부에서는 선대자본으로서 나타날것이며 또 실지로 선대자본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우리의 가정에 의한다면 주어진 규모에서의 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생산자본의 일부분을 이루는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기금으로부터 선대되는가 하는데 있어서는 거대한 차이가 있다. B의 경우에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최초에 선대되지 않으면 안되는, 즉 마음대로 리용할수 있도록 되여있어야 할 자본의 일부분이다. 그런데 A의 경우에는 그것은 잉여가치중의 자본으로서 사용되는 부분이다. 이 후자의 경우는 축적된 자본뿐만아니라 최초에 선대되는 자본의 일부분도 다만 자본화된 잉여가치일수 있다는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신용의 발전이 개입하게 되면 최초에 선대된 자본과 자본화된 잉여가치간의 관계는 더욱더 복잡하게 된다. 례컨대 A는 기업을 개시하거나 기업을 1년간 계속하기 위한 생산자

본의 일부분을 은행가 C로부터 차용한다. 그는 기업을 경영해나가기에 충분한 자기의 자본을 처음부터 가지고있는것이 아니다. 은행가 C는 A에게 어떤 금액을 대부하는데 그것은 자기에게 예금한 산업가 D, E, F 등등의 잉여가치로 이루어진것에 불과하다. A의 립장에서는 아직도 축적된 자본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실상 D, E, F 등등에 대하여서는 이 A는 그들에 의하여 취득된 잉여가치를 자본화하는 대리인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이미 제1권 제22장에서 본바와 같이 축적, 즉 잉여가치의 자본으로의 전화는 그 현실적내용으로 보면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과정이며 이 확대가 새로운 공장들이 낡은 공장들에 부설되는 모습으로 외연적으로 표현되든 또는 종래의 경영규모의 내포적인 확대로서 표현되든 아무래도 좋다.

생산규모의 확대는 잉여가치의 일부분이 개량에 사용되는데 의하여 조금씩 수행될수 있으며 이러한 개량은 혹은 사용되는 로동의 생산력을 제고시킬따름일수도 있고 혹은 동시에 이 로동의 보다 강화된 착취를 가능하게 할수도 있다. 혹은 또 로동일이 법적으로 제한되여있지 않은 경우는 고정자본의 확대없이 류동자본의 추가지출(생산재료나 로임으로)만으로도 생산규모를 확대하기에 충분하며 고정자본은 다만 그 하루의 사용시간이 연장될뿐이고 그에 따라 그 회전기간이 단축된다. 혹은 시장상황이 좋으면 자본화된 잉여가치에 의하여 원료에 대한 투기나 최초의 선대자본만으로서는 할수 없는 조작들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회전기간의 회수가 증가하는데 따라 1년내에 잉여가치가 실현되는 회수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로동일을 연장할수도 없고 개별적인 개량을 할수도 없는 기간이 나타나게

될것이라는것은 명백하다. 다른 한편 균형적인 규모에서의 기업전체의 확대는 부분적으로는 기업의 전체 설비 레컨대 건물에 의하여, 부분적으로는 농업에서와 같이 로동재원의 확대에 의하여 넓고 좁은 차이는 있어도 여하튼 어떤 한계내에서만 가능하며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는 다년간에 걸친 잉여가치의 축적에 의하여서만 제공될수 있는 크기의 추가자본이 필요하다.

이리하여 현실적축적, 즉 잉여가치의 생산자본으로의 전화(또 그에 대응하는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와 병행하여 화폐축적, 즉 잉여가치의 일부분의 잠재적화폐자본으로서의 축적이 진행되는데 이 화폐자본은 나중에 어떤 정도의 크기에 달할 때에야 비로소 능동적인 추가자본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개별적자본가의 립장에서 보면 사태가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나 자본주의적생산의 발전에 따라 동시에 신용제도가 발전한다. 한 자본가가 아직 자기 자신의 기업에서 사용할수 없는 화폐자본이 다른 자본가에 의하여 사용되며 그대신에 전자는 후자에게서 리자를 받는다. 이 자본은 전자에 있어서는 특수한 의미에서의 화폐자본으로서, 생산자본과 구별되는 종류의 자본으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자본가의 수중에서는 자본으로서 기능한다. 두말할것도 없이 명백한 일이지만 잉여가치의 실현이 더욱 빈번해지고 잉여가치의 생산되는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서 새로운 화폐자본 또는 자본으로서의 화폐가 화폐시장에 투입되여 거기에서 적어도 큰 부분이 다시 확대생산을 위하여 흡수되여가는 비률은 증대한다.

이러한 추가적인 잠재적화폐자본이 취할수 있는 가장 간단한 형태는 축장화폐의 형태이다. 이 축장화폐가 귀금속생

산국들과의 직접 또는 간접적 교환에서 획득한 추가적인 금 또는 은일수 있다. 그리고 다만 그러한 방식으로서만 일국내의 축장화폐는 절대적으로 증대한다. 다른 한편으로 있을수 있는것은—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지만—이 축장화폐는 국내의 류통으로부터 끌려나온 화폐가 개별적자본가들의 수중에서 축장화폐의 형태를 취한 화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경우이다. 또한 있을수 있는것은 이 잠재적화폐자본이 가치기호에 지나지 않든가—우리는 여기에서는 아직 신용화폐를 도외시한다.—또는 자본가들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있는 청구권이 적법적증서에 의하여 확인된것(권리증서)으로 되여있는것이든가 하는 경우이다. 이 모든 경우들에 이 추가적화폐자본의 존재형태가 어떠하든간에, 그것이 앞으로의 자본인한에 있어서 그것이 나타내는것은 사회의 장래의 추가적년간생산에 대하여 자본가가 가지고있는 추가적인, 보류된 청구권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현실적으로 축적된 부의 총량은 크기로 보면…그 부가 속하는 사회의 문명단계가 어떠하든간에 그 사회의 생산력에 비하면 전혀 보잘것 없는것이다. 혹은 또 이 동일한 사회의 불과 수년간의 현실적소비에 비하더라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립법자나 경제학자들의 주요한 주의력은 생산력과 그것들의 장래의 자유로운 발전에 돌려져야 하며 종래와 같이 사람의 이목을 끄는 단순한 축적된 부에 돌려져서는 안된다. 소위 축적된 부의 매우 큰 부분은 다만 명목적인것이며 선박, 가옥, 면제품, 토지개량시설과 같은 현실적인 대상물로써 이루어지고있는것이 아니라 사회의 장래에 있어서의 매년의 생산력에 대한 단순한 청구권, 즉 안정성이 없는 방책이나 제도에 의하여 생겨났고 영구화된 청구권으로써 이루어지고있다.…이러한 물품(유체물의 축적 또는 현실적부)을 그 소유자를 위하여 사회의 장래 생산력이 처음으로 창조하여야 할 부를 취득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서 사용하는것, 이러한 사

용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분배의 자연법칙들에 의하여 점차 그들로부터 박탈될것이다. 협동조합적로동의 도움으로 이러한 사용은 그들로부터 몇해 안가서 박탈될것이다.》(윌리엄 톰프슨《부의 분배원리의 연구》 런던, 1850년, 453페지—이 책은 1824년에 처음 나왔다.)

《사회의 실제적인 축적이 량으로 보나 영향력으로 보나 인간의 생산력에 비하여, 심지어는 불과 수년간의 단 한세대 사람들의 보통의 소비에 비하더라도 극히 작은것이라는것은 거의 고려가 돌려지고있지 않으며 대다수 사람들이 상상조차 하지 않는것이다. 그 리유는 명백하지만 결과는 대단히 해롭다. 매년 소비되는 부는 그 사용과 동시에 소멸된다. 그것이 눈앞에 있는것은 일순간의 일이며 그것이 인상을 주는것은 다만 인간이 그것을 향수 또는 소비하고있는 동안뿐이다. 그러나 부중에서 서서히 소비될따름인 부분인 가구, 기계, 건물은 우리의 유년기로부터 만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눈앞에 있으며 인간의 노력의 영구적인 기념비이다. 공공의 부중에서 이러한 고정적이며 오래 견디는 그리고 서서히 소비될따름인 부분—토지와 가공되는 원료, 가공을 위한 도구, 작업중에 비바람을 피하게 하는 가옥,—이러한 부분을 소유함으로써 이러한 대상물의 소유자는 사회의 모든 참으로 생산적인 로동자들의 매년의 생산력을 자기들자신의 리익으로 될수 있도록 지배하고있다. 비록 그러한 대상물이 이 로동의 부단히 반복하여 나타나는 생산물에 비하여 아무리 보잘것 없는것이라 할지라도. 브리텐과 아일랜드의 인구는 2,000만이다. 남자, 녀자, 아동을 포함하여 매인당 평균소비는 아마도 약 20파운드이므로 도합 약 4억파운드의 부이며 이것이 매년 소비되는 로동생산물이다. 이 나라들에서의 축적된 자본의 총액은 어림하여 12억파운드, 즉 년간로동생산물의 3배를 넘지 않는다. 등분하면 1인당 60파운드의 자본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로 하는것은 이 어림한 액수의 다소간에 정확한 절대액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비률이다. 이 총자본의 리자는 1년중 약 2개월간 총인구의 현재의 생계를 유지할만할것이며 또 축적된 총자본 자체는(이것의 구매자가 발견될수 있다고 하면) 로동없이 총인구를 웅근 3년간 유지할것이다! 이 기간의 종말에는 총인구는 가옥도 의복도 먹을것도 없이 굶어죽든가 또는 이 3년동안 그들을 살려온 사람들의 노예로 되지 않을수 없을것

이다. 3년과 건강한 한세대의 생애와의, 례컨대 40년과의 비례는 동일한 현실적부의 크기와 중요성, 실로 이 가장 부유한 나라의 축적된 자본과 단 한세대의 생산력과의 비례이다. 그리고 그 비례는 평등한, 안정성있는 합리적인 질서하에서 또 특히 협동조합적로동하에서 이 생산력이 생산할수 있는것과의 비례가 아니라 결함이 많고 풀이 죽게 하는 안정성없는 고식수단하에서 실지 절대적으로 생산하고있는것과의 비례이다!…그리고 이 일견 거대한 량의 현존자본을, 또는 오히려 이 자본량에 의하여 획득되는 매년의 로동생산물에 대한 지배와 독점을, 그 현재의 강제적 분할상태대로 유지하고 영구화하기 위하여서는 이 무서운 전체 기구가, 즉 불안으로부터 생기는 악덕이나 범죄나 고통이 영구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필요한 욕망이 우선 충족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축적될수 없다. 그리고 인간의 성향의 큰 흐름은 향락을 향하여 흐르고있다. 그러므로 주어진 각 순간에 있어서의 사회의 현실적 부의 량은 비교적 보잘것 없는것이다. 그것은 생산과 소비의 영구한 순환이다. 이 거대한 량의 매년의 생산과 소비중에서는 한줌밖에 안되는 현실적축적이 없어도 거의 곤난하지 않을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주의력은 그 거대한 생산력에 돌려진것이 아니라 이 한줌밖에 안되는 축적에 돌려져온것이다. 그러나 이 한줌밖에 안되는 축적은 얼마 안되는 사람들에 의하여 억류되고 대다수 사람들의 로동에 의하여 해마다 부단히 반복하여 생산되는 생산물을 취득하기 위한 도구로 전화되고있다. 바로 이때문에 이 얼마 안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도구는 결정적으로 중요한것이다.…국민로동의 년간생산물의 약 $\frac{1}{3}$은

지금은 공과라는 명목으로 생산자들로부터 탈취되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등가도 주지 않는 사람들, 즉 생산자에 대하여 등가로 인정되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사람들에 의하여 비생산적으로 소비된다.…대중은 이 대량의 축적을, 특히 그것이 얼마 안되는 사람들의 수중에 집중되여있는 경우에는 놀란눈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매년 생산되는 대량의 생산물은 대하의 영원한 무수한 파도와 같이 흘러버려 소비라는 망각의 대해속에 사라진다. 그리고 이 영원한 소비는 모든 향락의 조건일 뿐만아니라 전 인류의 생존의 조건이다. 이 년간생산물의 량과 분배가

무엇보다도 먼저 연구의 대상으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 현실적축적은 전적으로 2차적인 의의밖에 없으며 이러한 의의조차 거의 전적으로 오직 그것이 년간생산물의 분배에 미치는 영향때문에 가지게 되는것이다.…현실적인 축적과 분배는 여기서는》(톰프슨의 저작에서는) 《언제나 생산력과의 관련과 그에 대한 종속에서 고찰된다. 그밖의 거의 모든 학문체계에서는 생산력이 축적과 현재의 분배방식의 영구화와의 관련과 그에 대한 종속에서 고찰되여왔다. 이 현재의 분배방식의 유지에 비한다면 부단히 반복되는 전 인류의 빈궁이나 행복같은것은 뒤돌아볼 가치도 없는것으로 생각된다. 폭력과 기만이나 우연의 결과를 영원화하는것, 이것을 사람들은 안정이라고 불러왔다. 그리고 이 허위적인 안정의 유지를 위하여 인류의 모든 생산력이 용서없이 희생되여왔다.》(우와 같은 책, 440~443페지)

주어진 규모에서의 재생산조차 방해하는 교란들을 도외시한다면 재생산에는 다만 두개의 정상적경우만 있을수 있다.

한 경우에는 단순한 규모에서의 재생산이 진행된다.

다른 한 경우에는 잉여가치의 자본화, 즉 축적이 진행된다.

1. 단순재생산

단순재생산의 경우에는 매년 또는 1년중에 몇회의 회전으로써 주기적으로 생산되고 실현되는 잉여가치가 그 소유자인 자본가에 의하여 개인적으로, 즉 비생산적으로 소비된다.

생산물가치가 일부분은 잉여가치로 이루어지고 다른 일부분은 생산물에 재생산된 가변자본 풀루스 생산물에 소비된 불변자본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치부분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사정은 상품자본으로서 부단히 류통에 들어가며 마찬가지로 부단히 류통으로부터 끌려나와 생산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소비되게 되는 총생산물, 즉 생산수단 또는 소비수단으로써 복무하게 되는 총생산물의 량에도 가치에도 절대로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불변자본을 도외시한다면 다만 로동자와 자본가사이에서의 년간생산물의 분배가 그것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뿐이다.

그러므로 단순재생산을 가정하더라도 잉여가치의 일부분은 생산물로서가 아니라 부단히 화폐형태로서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 하면 만일 화폐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잉여가치는 소비를 위하여 화폐로부터 생산물로 전화될수 없기 때문이다. 최초의 상품형태로부터 화폐로의 잉여가치의 이러한 전화는 여기에서 더 상세히 연구되여야 한다. 사태를 간단히 하기 위하여 문제의 가장 단순한 형태가 가정된다. 즉 오직 금속화폐만이, 즉 현실적인 등가물인 화폐만이 류통한다고 가정한다.

단순한 상품류통에 관하여 전개된 제 법칙(제1권 제3장[81])에 의하면 국내에 존재하는 금속화폐의 량은 상품을 류통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것만으로 되는것이 아니다. 그 량은 또 화폐류통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도 충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변동은 일부는 류통속도의 변동에서, 일부는 상품가격의 변동에서, 또 일부는 화폐가 지불수단으로서 기능하든가 또는 본래의 류통수단으로서 기능하는 비률의 차이와 변동에서 생긴다. 현존하는 화폐량이 축장화폐와 류통화폐로 분할되는 비률은 부단히 변동하지만 그러나 화폐의 량은 언제나 축장화폐로서 현존하는 화폐와 류통화폐로서 현존하는 화폐의 합계와 같다. 이 화폐량(귀금속량)은 사회의 점차 축적된 축장화폐이다. 이 축장화폐의 일부분이 마멸에 의하여 없어지는 한, 그것은 다른 어느 생산물에서나

그러한것처럼 매년 새로 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보상은 실제로는 매년의 국내생산물의 일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 또는 은 생산국의 생산물과 교환하는데 의하여 진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의 국제적성격은 거래의 단순한 과정을 은폐한다. 그러므로 문제를 그 가장 단순하고 가장 투명한 표현으로 환원하기 위하여서는 금 또는 은 생산이 자국내에서 진행된다는것, 따라서 금 또는 은 생산이 각국의 내부에서 사회적총생산의 일부분을 이룬다는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치품용으로서 생산되는 금 또는 은을 도외시한다면 금 또는 은의 년간생산의 최소한은 년간화폐류통으로 하여 생기는 화폐금속의 마멸분과 같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만약 매년 생산되여 류통하는 상품량의 가치총액이 증대한다면 매년의 금 또는 은 생산도 증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류통하는 상품의 가치총액의 증가분과 그 류통(및 그것에 상응하는 화폐축장)을 위하여 필요한 화폐량이 화폐의 류통속도의 증대나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의 확대에 의하여, 즉 현실적인 화폐의 개입이 없는 매매의 호상 결제의 증대에 의하여 상쇄되지 않는 한에서 매년의 금 또는 은 생산이 증가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사회적로동력의 일부분과 사회적생산수단의 일부분은 매년 금 또는 은의 생산에 지출되지 않으면 안된다.

금 또는 은의 생산을 경영하는 자본가—그리고 단순재생산을 전제로 하는 여기에서 가정되는바와 같이—다만 금 또는 은의 년평균마멸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년평균소비의 범위내에서 그것을 경영하는 자본가는 가정에 의하면 그들이 조금도 자본화하지 않고 매년 소비하는 그들의 잉여가치를 '직

접 화폐형태로 류통에 투입하는데 이 화폐형태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산물의 현물형태이고 다른 생산부문들에서와 같이 생산물의 전화된 형태가 아니다.

그리고 로임—가변자본이 선대될 때의 화폐형태—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것도 여기서는 생산물의 판매, 즉 그 화폐에로의 전화에 의하여 보상되는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현물형태가 그대로 화폐형태로 되여있는 생산물에 의하여 보상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보상은 귀금속생산물중에서 주기적으로 소비되는 불변자본의 가치와 같은 부분에 대하여도 실시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변자본에는 불변적류동자본과 1년간에 소비되는 불변적고정자본이 포함된다.

귀금속생산에 투하된 자본의 순환 또는 회전을 우선 G—W…P…G′의 형태에서 고찰하자. G—W에서 W가 로동력과 생산수단들로써 이루어지고있을뿐만아니라 또한 그 가치의 일부만이 P에서 소비되는 고정자본으로써도 이루어지고있는 한에서는 분명히 생산물 G′는 로임에 투하된 가변자본 플루스 생산수단에 투하된 류동적불변자본 플루스 마멸된 고정자본의 가치부분 플루스 잉여가치와 같은 화폐액이다. 금의 일반적 가치는 변함없는 경우에 만약 G′가 이 화폐액보다 적다면 이 광산투자는 비생산적이였을것이다. 혹은 또 이런 사태가 일반적이라면 장래에는 금의 가치는 가치가 변하지 않는 상품에 비하여 오를것이다. 즉 제 상품의 가격은 내릴것이며 따라서 장래에는 G—W에 투하되는 화폐액이 더 적어질것이다.

우선 G—W…P…G′의 출발점인 G로서 선대되는 자본의 류통부분만을 고찰한다면 로동력에 대한 지불과 생산재료의 구매를 위하여 일정한 화폐액이 선대되여 류통에 투입된다. 그러나 이 화폐액은 이 자본의 순환에 의하여는 류통으로부터

다시 끌려나와 류통에 새로 투입되는것은 아니다. 생산물은 그 현물형태에서 이미 화폐이며 따라서 교환을 통하여, 즉 류통과정을 통하여 새로 화폐로 전화될 필요는 없다. 생산물이 상품자본의 형태로서 생산분야로부터 나와 류통분야로 들어가고 다음에 이 상품자본이 화폐자본으로 재전화하는것이 아니라 생산물이 화폐자본으로서 류통분야에 들어가고 이 화폐자본이 생산자본으로 재전화하게 된다. 즉 새로 로동력과 생산재료를 구매하게 된다. 로동력이나 생산수단에 소비된 류동자본의 화폐형태는 생산물의 판매에 의하여 보상되는것이 아니라 생산물자체의 현물형태에 의하여 보상되며 따라서 생산물의 가치를 다시 화폐형태로 류통으로부터 끌어냄으로써 보상되는것이 아니라 새로 생산된 추가적화폐에 의하여 보상된다.

이 류동자본을 500파운드, 회전기간을 5주간, 로동기간을 4주간, 류통기간을 다만 1주간이라고 가정하자. 처음부터 5주간분의 화폐가 일부분은 생산용재고로서 선대되지 않으면 안되며 일부분은 로임으로서 점차 지불되기 위하여 준비되여 있지 않으면 안된다. 제6주초에는 400파운드가 환류하고 100파운드가 유리된다. 이것이 부단히 반복된다. 이 경우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1회전중의 어떤 기간에는 100파운드가 부단히 유리된 형태로 있게 될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나머지 400파운드와 꼭 마찬가지로 새로 생산된 추가적화폐로써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는 1년의 회전을 10회라고 하였으므로 생산된 년간생산물은 5,000파운드의 금이다(여기서 류통기간은 상품의 화폐로의 전화에 드는 시간으로써가 아니라 화폐로부터 생산요소에로의 전화에 드는 시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동일한 조건하에서 회전하는 기타의 500파운드의 자본의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나 부단히 갱신되는 화폐형태는 생산된 상품자본의 전화형태이며 이 상품자본은 4주간마다 류통에 투입되고 그 판매에 의하여—따라서 최초에 과정에 들어간 때의 화폐량을 주기적으로 끌어내는데 의하여—이 화폐형태를 부단히 새로 다시 취한다. 이와 반대로 이 경우에는 1회전기간마다 500파운드의 새로운 추가화폐량이 생산과정자체로부터 류통에 투입되고 류통으로부터 생산재료와 로동력을 부단히 끌어낸다. 류통에 투입되는 이 화폐는 이 자본의 순환에 의하여 다시 류통으로부터 끌려나오는것이 아니라 부단히 새로 생산된 금량에 의하여 다시 증대된다.

이 류동자본의 가변부분을 고찰하고 이 부분을 우에서와 같이 100파운드라고 한다면 보통의 상품생산에서는 이 100파운드가 10회전하면 부단히 로동력의 대가를 지불하는데 충분할것이다. 이 화폐생산의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5주간마다 로동력에 대하여 지불되는데 사용되는 100파운드의 환류는 이 로동력의 생산물의 전화형태가 아니라 그것의 부단히 갱신되는 생산물자체의 일부분인것이다. 금생산자는 자기의 로동자들에게 직접 로동자들자신에 의하여 생산된 금의 일부분으로써 지불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1년간에 로동력에 투하되여 로동자들에 의하여 류통에 투입되는 1,000파운드는 류통에 의하여 그 출발점으로 되돌아오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고정자본에 관하여 말한다면 기업을 개시할 때에는 비교적 많은 액수의 화폐자본의 지출이 필요하며 따라서 그것이 류통에 투입된다. 모든 고정자본이 그러하듯이 그것은 수년동안에 걸쳐 다만 일부분씩 환류할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생산물인 금의 직접적인 단편으로서 환류하는것이고 생산물의 판매와 이 판매에 의하여 수행되는 생산물의 화폐화에 의하여 환류하는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화폐가 류통으로부터 끌려나오는데 의하여서가 아니라 생산물중의 그에 해당한 부분의 퇴적에 의하여 점차 그 화폐형태를 취한다. 이와 같이 회수된 화폐자본은 최초에 고정자본을 위하여 류통에 투입된 화폐액을 보상하기 위하여 점차 류통으로부터 끌려나온 화폐액이 아니다. 그것은 추가화폐량이다.

마지막으로 잉여가치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것 역시 새로운 회전기간마다 류통에 투입되는 새로운 금생산물의 일부분과 같으며 이 부분은 우리의 가정에 의하면 비생산적으로 지출되여 생활수단이나 사치품에 지불된다.

그러나 전제에 의한다면 이 년간금생산전체—그것에 의하여 부단히 로동력과 생산재료는 시장으로부터 끌려나오나 화폐는 조금도 끌려나오지 않으며 부단히 추가적화폐가 시장에 공급된다.—는 다만 1년동안에 마멸된 화폐를 보상할따름이며 따라서 비록 축장화폐와 류통중에 있는 화폐라는 두 형태의 비률은 변동한다 하더라도 언제나 이 두 형태로 존재하는 사회적화폐량을 부족되지 않도록 유지할따름이다.

상품류통의 법칙에 의한다면 화폐량은 류통에 필요한 화폐량 플루스 축장화폐형태로 있는 화폐량과 같지 않으면 안된다. 이 후자의 화폐량은 류통의 수축팽창에 따라 증감하며 또 특히 필요한 지불수단의 준비금의 형성에도 복무한다. 지불이 호상 상쇄되지 않는 한 상품가치는 화폐로써 지불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가치의 일부분이 잉여가치로써 이루어진다는것, 즉 상품의 판매자에게 있어서 아무 비용도 들지 않았다는것은 결코 사태를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가령 생

산자들이 모두 자기의 생산수단의 독립적소유자들이며 따라서 직접적생산자들사이에서 류통이 진행된다고 하자. 그들의 자본의 불변부분을 도외시한다면 그들의 년간생산물은 자본주의적상태와 류사하게 두 부분으로 나눌수 있을것이다. 즉 한부분 a는 다만 그들의 필요한 생활수단들을 보상할따름이며 다른 부분 b는 그들이 그 일부분을 사치품에 소비하며 일부분을 생산의 확대를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하면 a는 가변자본을 대표하며 b는 잉여가치를 대표한다. 그러나 이 구분은 그들의 총생산물의 류통에 필요한 화폐량의 크기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을것이다. 다른 사정들이 변함없다면 류통상품량의 가치는 동일할것이며 따라서 이에 필요한 화폐량도 동일할것이다. 또 회전기간의 분할방법이 같다면 그들은 동일한 화폐준비금을 가지고있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즉 그들의 자본의 동일한 일부분을 부단히 화폐형태로 가지고있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왜냐 하면 가정에 의하면 그들의 생산은 여전히 상품생산이기때문이다. 따라서 상품가치의 일부분이 잉여가치로써 이루어진다는 사정은 기업경영에 필요한 화폐의 량을 절대로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투크의 반대자로서 G—W—G′라는 형태를 고집하는 한 론자는 투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즉 대체 어떻게 자본가는 자기가 류통에 투입하는것보다 더 많은 화폐를 부단히 류통으로부터 끌어내는가 하고 질문한다. 잘 리해하라. 여기에서는 잉여가치의 **형성**이 문제로 되고있는것이 아니다. 잉여가치의 형성이 유일한 비밀이기는 하지만 자본주의적관점에서는 그것은 자명한것이다. 만약 사용된 가치액은 그것이 잉여가치에 의하여 증식되지 않는다면 자본이 아닐것이다. 그런데 전제에 의하면 이 가치액은 자본이므로 잉여가치는

자명한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잉여가치가 어디서 오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다. 그런것이 아니라 잉여가치를 화폐화하기 위한 화폐가 어디서 오는가 하는데 있다.

그러나 자산계급적경제학에 있어서는 잉여가치의 존재는 자명한것이다. 따라서 잉여가치의 존재가 전제되고있을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또한 다음과 같은것도 전제되고있다. 즉 류통에 투입되는 상품량의 일부분은 잉여생산물로써 이루어지고있으며 따라서 자본가가 자기의 자본과 함께 류통에 투입하지 않은 가치를 표시한다는것, 따라서 또 자본가는 자기의 생산물과 함께 자기의 자본을 넘는 초과분을 류통에 투입하며 이 초과분을 다시 류통으로부터 끌어낸다는것도 전제되고있다.

자본가가 류통에 투입하는 상품자본은 그가 로동력 플루스생산수단으로서 류통으로부터 끌어낸 생산자본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있다(왜 그렇게 되는가 하는것은 설명도 리해도 되지 않지만 그것은 자산계급적경제학의 관점에서는 하나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제하에서는 왜 자본가 A 뿐만아니라 B, C, D 등등도 자기 상품의 교환에 의하여 자기가 최초에 선대하였으며 또 부단히 선대하는 자본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류통으로부터 부단히 끌어낼수 있는가 하는것도 명백하다. A, B, C, D 등등은 그들이 생산자본의 형태로 류통으로부터 끌어내는것보다 더 큰 상품가치를 부단히 상품자본의 형태로 류통에 투입한다.—이 활동은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자본들만큼이나 다면적이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 각자가 선대된 생산자본의 가치총액과 같은 가치액을 부단히 그들사이에서 분배하지 않으면 안되며(즉 각자가 제각기 류

통으로부터 생산자본을 끌어내지 않으면 안되며) 또 그들은 상품가치중 그 생산요소의 가치를 넘는 각자의 초과분으로서 그들이 각 방면으로 상품형태로 류통에 투입하는 가치총액도 마찬가지로 부단히 그들사이에서 분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상품자본은 그것이 생산자본으로 재전화되기전에 또 그속에 포함되여있는 잉여가치가 지출되기전에 화폐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을 위한 화폐는 어디서 오는가? 이 문제는 일견 어려운것으로 보이며 투크도 또 그외의 누구도 지금까지 이에 대답을 주지 않았다.

화폐자본의 형태로 선대된 500파운드의 류동자본이 그 회전기간은 어떻든간에 사회의, 즉 자본가계급의 총류동자본이라고 하자. 잉여가치는 100파운드라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자본가계급전체는 부단히 500파운드만을 류통에 투입하고서 부단히 600파운드를 류통으로부터 끌어낼수 있는가?

500파운드의 화폐자본이 생산자본으로 전화된후 이 생산자본은 생산과정내에서 600파운드의 상품가치로 전화된다. 그리고 류통중에는 최초에 선대된 화폐자본과 같은 500파운드의 상품가치가 있을뿐만아니라 새로 생산된 100파운드의 잉여가치가 있는것이다.

이 100파운드의 추가적잉여가치는 상품형태로 류통에 투입되여있다. 이에 관하여는 아무런 의문도 없다. 그러나 그러한 활동에 의하여서는 이 추가적상품가치의 류통을 위한 추가적화폐는 주어져있지 않다.

그런데 이 난점을 그럴듯한 둔사로 회피하려고 하여서는 안된다.

례컨대 불변적류동자본에 관하여 말한다면 분명히 모두가 그것을 동시에 투하하는것은 아니다. 자본가 A가 자기의 상품

을 판매하고 따라서 그에 있어서는 선대자본이 화폐형태를 취할 때에 구매자 B에 있어서는 반대로 화폐형태로 현존하는 그의 자본이 바로 A에 의하여 생산되는 그의 생산수단의 형태를 취한다. A가 자신이 생산한 상품자본에 다시 화폐형태를 부여하는 그같은 행위에 의하여 B는 자기 자본에 다시 생산적형태를 부여하고 그것을 화폐형태로부터 생산수단과 로동력으로 전화시킨다. 동일한 화폐액이 이 량면적인 과정에서 기능하는 것은 모든 단순한 구매 W—G에서와 마찬가지이다. 다른 한편 A가 화폐를 다시 생산수단으로 전화시킬 때에는 그는 C에게서 구매하며 또 C는 그것을 가지고 B에게 지불한다, 등등. 경과는 이와 같이 설명될것이다. 그러나—

류통화폐의 량에 관하여 상품류통에서(제1권 제3장) 세워진 모든 법칙은 결코 생산과정의 자본주의적성격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따라서 화폐형태로 선대되는 사회의 류동자본이 500파운드라고 할 때에는 이것은 한편으로는 그것이 동시에 선대된 금액이라는것,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금액은 번갈아 각이한 생산자본의 화폐준비금으로서 복무하기때문에 500파운드보다 더 많은 생산자본을 움직인다는것은 이미 계산에 들어있다. 따라서 이 설명방식은 이제부터 그 존재를 설명하여야 할 화폐를 거기에 있는것으로서 이미 전제하고있다.

다음에 또 이렇게도 말할수 있을것이다. 자본가 A는 자본가 B가 개인적으로, 비생산적으로 소비하는 물품을 생산한다. 따라서 B의 화폐는 A의 상품자본을 화폐화하며 그리하여 동일한 화폐액이 B의 잉여가치의 자본화에도, A의 류동적불변자본의 화폐화에도 복무한다고, 그러나 이 경우에는 대답을 주어야 할 문제의 해결이 더 직접적으로 전제되고있다.

즉 B는 자기의 수입을 담당하기 위한 이 화폐를 어디로부터 얻는가? 그 자신은 어떻게 자기 생산물의 이 잉여가치부분을 화폐화하였는가?

그다음으로 또 이렇게 말할수도 있을것이다. 류동적가변자본중 A가 부단히 자기 로동자들에게 선대하는 부분은 부단히 류통으로부터 그의 수중에로 환류한다. 그리고 다만 그중의 일부분만이 번갈아 로임지불을 위하여 부단히 그자신에게 머물러있게 된다. 그러나 지출과 환류사이에는 어떤 시간이 존재하며 그 기간중에는 로임으로 지불된 화폐는 특히 잉여가치의 화폐화를 위하여도 복무할수 있다고.—그러나 우리가 알고있는바와 같이 첫째로,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자본가 A가 부단히 준비하여두지 않으면 안되는 화폐저장의 량도 더 크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로, 로동자는 화폐를 지출하고 그것으로써 상품을 구매하므로 그 몫만큼 이 상품에 포함되여 있는 잉여가치를 화폐화한다. 따라서 가변자본의 형태로 선대되는 동일한 화폐는 그 몫만큼 잉여가치를 화폐화하는데 복무한다. 여기서는 이 이상 깊이 문제에 들어가지 않고 다만 다음과 같은것만을 말하여둔다. 자본가계급전체와 이 계급에 의존하고있는 비생산적인 사람들의 소비는 로동자계급의 소비와 동시에 병행하여 진행한다. 따라서 로동자들에 의하여 화폐가 류통에 투입되는것과 동시에 자본가들에 의하여도 그들의 잉여가치를 수입으로서 지출하기 위하여 화폐가 류통에 투입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그 잉여가치의 몫만큼 류통으로부터 화폐가 끌려나오지 않으면 안된다. 우에서 한 설명은 이러한 필요량을 감소시킬뿐 그 필요성을 제거하지는 않을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도 말할수 있을것이다. 여하튼

고정자본이 처음으로 투하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대량의 화폐가 류통에 투입되는데 그 화폐는 그것을 류통에 투입한 사람에 의하여 몇해동안에 류통으로부터 점차로 일부분씩 다시 끌려나온다. 이 화폐액으로도 잉여가치를 화폐화하기에 충분하지 않겠는가라고.—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수 있다. 아마도 500파운드라는 금액(여기에는 필요한 준비금을 위한 화폐축장도 포함된다.)중에는 그것을 투하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이든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도 이 금액이 고정자본으로서 사용된다는것이 이미 포함되여있다. 그밖에 고정자본으로서 복무하는 생산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금액에 있어서는 이 상품에 들어있는 잉여가치도 지불되여있다는것이 이미 전제되여있다. 그리고 이 화폐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것이 바로 문제로 된다.

일반적대답은 이미 주어져있다. x×1,000파운드의 상품량을 류통시키는 경우에 이 상품량의 가치가 잉여가치를 포함하고있는가 어떤가, 즉 이 상품량이 자본주의적으로 생산된것인가 어떤가 하는것이 류통을 위하여 필요한 화폐액의 량을 조금도 변경시키는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문제자체가 존재하지 않는것이다.** 화폐의 류통속도 등등 기타 조건들이 주어져있다면 x×1,000파운드의 상품가치를 류통시키기 위하여서는 어떤 일정한 화폐액이 필요한데 그것은 이러한 상품의 직접적생산자의 수중에 이 가치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가 또 얼마나 적게 들어오는가 하는 사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여기에 문제가 존재하는 한에서는 그것은 일국내의 상품류통을 위하여 필요한 화폐액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일반적인 문제와 일치한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생산의 관점에서 보면 확실히 특수한

문제처럼 보이는 **외관**도 존재한다. 즉 여기에서는 자본가가 출발점으로서 나타나고 거기에서 화폐가 류통에 투입되는것이다. 로동자가 자기의 생활수단에 대한 지불을 위하여 지출하는 화폐는 미리 가변자본의 화폐형태로서 존재하며 따라서 최초에는 자본가에 의하여 로동력의 구매수단 또는 지불수단으로서 류통에 투입된다. 그밖에도 자본가는 화폐를 류통에 투입하는데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최초에는 그의 불변적고정자본과 불변적류동자본의 화폐형태를 이룬다. 그는 그것을 로동수단이나 생산재료에 대한 구매수단 또는 지불수단으로서 지출한다. 그러나 그다음부터는 자본가는 더는 류통에 있는 화폐량의 출발점으로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출발점은 다만 두개뿐이다. 자본가와 로동자이다. 제3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모두다 이 두 계급을 위해 봉사하고 보수로 화폐를 받거나 또는 그들이 화폐를 보상없이 받는 한에서는 지대나 리자 등의 형태로서의 잉여가치의 공동소유자이거나 할것이다. 잉여가치는 죄다 산업자본가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것은 아니며 산업자본가와 다른 사람들사이에서 분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정은 당면한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문제는 산업자본가가 어떻게 그의 잉여가치를 화폐화하는가 하는것이고 그로 하여 얻은 화폐가 그후에 어떻게 분배되는가 하는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는 자본가는 아직 잉여가치의 유일한 소유자로 간주되여야 한다. 그러나 로동자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미 말한바와 같이 로동자는 그가 류통에 투입하는 화폐의 제2의 출발점에 불과하고 자본가는 그 제1의 출발점이다. 최초에 가변자본으로서 선대된 화폐는 로동자가 그것을 생활수단에 대한 지불을 위하여 지출할 때에는 이미 그 제2의 류통을 수행하는것이다.

이리하여 자본가계급은 여전히 화폐류통의 유일한 출발점이다. 만약 자본가계급이 생산수단에 대한 지불에 400파운드를 필요로 하고 로동력에 대한 지불에 100파운드를 필요로 한다면 이 계급은 500파운드를 류통에 투입한다. 그런데 생산물에 들어있는 잉여가치는 잉여가치률이 100%이라면 100파운드의 가치와 같다. 자본가계급은 부단히 류통에 500파운드밖에 투입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단히 류통으로부터 600파운드를 끌어낼수 있는가? 우로부터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 자본가계급전체는 미리 류통에 투입되지 않은것을 류통으로부터 끌어낼수는 없다.

400파운드라는 화폐액은 아마도 10회전에서는 4,000파운드라는 가치의 생산수단과 1,000파운드라는 가치의 로동을 류통시키는데 충분하며 마찬가지로 나머지 100파운드는 1,000파운드의 잉여가치를 류통시키는데 충분하리라는것은 여기서는 도외시한다. 화폐액과 그것에 의하여 류통되는 상품가치와의 이러한 비률은 사태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문제는 여전히 마찬가지이다. 만약 동일한 화폐조각들이 여러번 류통하지 않는다면 5,000파운드가 자본으로서 류통에 투입되여야 할것이며 또 잉여가치를 화폐화하기 위하여서는 1,000파운드가 필요한것이다. 문제는 이 후자의 화폐가 1,000파운드이든 100파운드이든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것이다. 여하튼 그것은 류통에 투입된 화폐자본을 넘는 초과분이다.

사실상 일견하여 역설로 보이지만 자본가계급자신이 상품에 포함되여있는 잉여가치의 실현에 복무하는 화폐를 류통에 투입하는것이다. 그러나 주의하라. 자본가계급은 그것을 선대화폐로서 투입하는것이 아니다. 즉 자본으로서 투입하는것이 아니다. 자본가계급은 그것을 자기의 개인적소비를 위

한 구매수단으로서 지출하는것이다. 따라서 이 화폐는 그 류통의 출발점이 자본가계급이기는 하지만 자본가계급에 의하여 선대되는것은 아니다.

이제부터 자기의 기업을 개시하는 한 자본가, 례컨대 한 차지농업가를 들어보자. 최초의 1년간에 그는 례컨대 5,000파운드의 화폐자본을 생산수단(4,000파운드)과 로동력(1,000파운드)에 대한 지불에 선대한다. 잉여가치률은 100%, 그가 취득하는 잉여가치는 1,000파운드라고 하자. 상술한 5,000파운드에는 그가 화폐자본으로서 선대하는 모든 화폐가 포함되여있다. 그러나 이 사람도 살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그의 수중에는 이해의 말까지는 화폐가 조금도 들어오지 않는다. 그의 소비는 1,000파운드라고 하자. 그는 이 금액을 가지고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는 틀림없이 이렇게 말할것이다. 자기는 최초의 1년간에 이 1,000파운드를 자기에게 선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그러나 이 선대한다는것—그것은 여기서는 다만 주관적인 의미밖에 가지지 않는다.—은 그가 최초의 1년동안은 자기의 개인적소비를 그의 로동자들의 무상생산으로부터가 아니라 자기의 호주머니로부터 치르지 않으면 안된다는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그는 이 화폐를 자본으로서 선대하는것이 아니다. 그는 이것을 지출하는것이며 자기가 소비하는 생활수단에 대한 등가물과의 교환으로 그것을 지불하는것이다. 이 가치는 그에 의하여 화폐로서 지출되고 류통에 투입되며 여러가지 상품가치로서 류통으로부터 끌려나온것이다. 이러한 상품가치를 그는 소비하였다. 따라서 그와 이러한 상품가치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게 되였다. 그가 이 가치에 지불하는데 사용한 화폐는 류통화폐의 요소로서 존재한다. 그러나 그는 이 화폐의 가치를

생산물로서 류통으로부터 끌어냈다. 그리고 이 가치가 존재하고있었던 생산물과 함께 그러한 생산물의 가치도 없어졌다. 이 가치는 다 없어졌다. 그런데 그 년말에는 그는 6,000파운드의 상품가치를 류통에 투입하고 그것을 판매한다. 그리하여 그의 수중에는 1) 그의 5,000파운드의 선대화폐자본과 2) 화폐화된 1,000파운드의 잉여가치가 환류한다. 그는 5,000파운드를 자본으로서 선대하고 류통에 투입하였다. 그리고 지금 그는 류통으로부터 6,000파운드를, 즉 자본으로서 5,000파운드를 그리고 잉여가치로서 1,000파운드를 끌어낸다. 이 후자의 1,000파운드를 화폐화한것은 그 자신이 자본가로서가 아니라 소비자로서 류통에 투입한 화폐이며 그가 선대한것이 아니라 지출한 화폐이다. 이 1,000파운드는 지금 그의 수중에 그가 생산한 잉여가치의 화폐형태로서 환류한다. 그리고 그후에는 이 조작이 매년 반복된다. 그러나 제2년도부터는 그가 지출하는 1,000파운드는 언제나 그가 생산한 잉여가치의 전화형태이며 그 화폐형태이다. 그는 매년 그것을 지출하며 그리고 그것은 마찬가지로 매년 그의 수중에 환류한다.

그의 자본이 1년간에 몇번 더 회전하더라도 그것으로 하여 사태는 조금도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그의 선대화폐자본과는 다른 금액을 그의 개인적소비를 위하여 류통에 투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간의 길이가 달라지며 따라서 그 금액의 크기도 달라진다.

이 화폐는 자본가에 의하여 자본으로서 류통에 투입되는것이 아니다. 그러나 잉여가치가 환류할 때까지 자기가 가지고있는 자산으로써 살아갈수 있다는것은 자본가의 특징에 속하는것이다.

이 경우에 가정한것은 자본이 처음으로 환류할 때까지 자본가가 자기의 개인적소비를 치르기 위하여 류통에 투입하는 화폐액은 그에 의하여 생산된 잉여가치, 따라서 화폐화되여야 할 잉여가치와 꼭 같은 액수이다. 이것은 분명히 개별적자본가에 관하여서는 자의적인 가정이다. 그러나 단순재생산의 전제하에서는 이 가정은 전체 자본가계급에 대하여서는 정당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가정은 이 전제가 의미하는것과 동일한것을 표현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즉 잉여가치전체가, 따라서 오직 이것만이 비생산적으로 소비되며 따라서 최초의 자본의 어떠한 단편도 비생산적으로 소비되지 않는다는것을 표현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우에서 가정한바에 의하면 귀금속의 총생산(=500파운드라고 가정하였다.)은 화폐의 마멸을 보상하기에 충분할따름이다.

금을 생산하는 자본가들은 그들의 전체 생산물을 금으로 가지고있다. 그중의 불변자본을 보상하는 부분이나 가변자본을 보상하는 부분이나 잉여가치로 이루어진 부분이나 다 금으로 가지고있다. 따라서 사회적잉여가치의 일부분은 금으로 이루어진것이며 류통과정내에서 비로소 금으로 전화된 생산물로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금으로 이루어지고있으며 류통으로부터 생산물을 끌어내기 위하여 류통에 투입된다. 동일한것을 이 경우에는 로임 즉 가변자본에도, 선대불변자본의 보상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자본가계급의 일부분은 자기들이 선대한 화폐자본보다 더 큰(잉여가치만큼 더 큰) 상품가치를 류통에 투입한다면 자본가들의 다른 부분은 자기들이 금생산을 위하여 류통으로부터 부단히 끌어내는 상품가치보다 더 큰(잉여가치만큼 더 큰) 화폐가치를 류통에

투입한다. 자본가의 일부분은 자기가 류통에 넣는것보다 더 많은 화폐를 부단히 류통으로부터 끌어낸다면 자본가들중 금을 생산하는 부분은 자기가 류통으로부터 생산수단으로서 끌어내는것보다 더 많은 화폐를 부단히 류통에 넣는다.

그런데 이 500파운드의 금이라는 생산물의 일부분은 금생산자들의 잉여가치이기는 하지만 그 전액은 다만 상품류통에 필요한 화폐의 보상을 위하여서만 예정되여있는것이다. 그중에서 얼마가 상품의 잉여가치를 화폐화하고, 얼마가 상품의 다른 가치구성부분을 화폐화하는가 하는것은 여기서는 아무래도 좋다.

금생산을 이 나라로부터 다른 나라로 옮겨놓아도 사태는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A국의 사회적로동력과 사회적생산수단의 일부분은 례컨대 500파운드라는 가치가 있는 아마포같은 생산물로 전화되며 그것이 B국에서 금을 사기 위하여 B국으로 수출된다. 이와 같이 A국에서 사용된 생산자본이 화폐와는 다른 상품을 A국의 시장에 투입하지 않는다는것은 바로 그 자본이 직접 금생산에 사용되는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A국의 이 생산물은 500파운드의 금으로 나타나며 다만 화폐로서 A국의 류통에 들어갈뿐이다. 사회적잉여가치중 이 생산물에 포함되여있는 부분은 직접 화폐로서 존재하며 A국에 있어서는 결코 화폐이외의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금을 생산하는 자본가들에 있어서는 생산물의 일부분만이 잉여가치를 표시하며 다른 부분은 자본보상분을 표시하는것이지만 그러나 이 금중에서 얼마가 류동적불변자본외에 가변자본을 보상하며 얼마가 잉여가치를 표시하는가 하는 문제는 오직 로임과 잉여가치가 각기 류통상품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률에 의하여서만 결정된다. 잉여가치를 이루는 부분은 자본가계급의 각이한 성원들

간에 분배된다. 이 부분은 그들에 의하여 부단히 개인적소비를 위하여 지출되며 새로운 생산물의 판매에 의하여 다시 취득되기는 하지만—바로 이 구매와 판매만이 일반적으로 다만 잉여가치의 화폐화를 위하여 필요한 화폐만을 그들자신들사이에서 류통시키기는 하지만—사회적잉여가치의 일부분은 그 비률은 변동한다 하더라도 화폐형태로 자본가의 주머니속에 있는데 그것은 마치도 로임의 일부분이 1주간중의 적어도 어떤 기간은 화폐형태로 로동자의 주머니속에 남아있는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금생산물①중 원래 금생산자본가들의 잉여가치를 이루는 부분에 의하여 제한되여있는것이 아니라 이미 말한바와 같이 상술한 500파운드의 생산물이 일반적으로 자본가와 로동자간에 분배되는 비률에 의하여 그리고 류통될 상품가치②가 잉여가치와 기타의 가치구성부분들로써 구성되는 비률에 의하여 제한되여있다.

그러나 잉여가치중 다른 상품에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이러한 다른 상품들과 나란히 화폐로서 존재하는 부분이 그 1년간에 생산된 금의 일부분으로써 구성되고있는것은 다만 년간금생산의 일부분이 잉여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류통하는 한에서만이다. 화폐중의 다른 부분, 즉 그 비률은 변동한다 하더라도 부단히 잉여가치의 화폐형태로서 자본가계급의 수중에 있는 어떤 부분은 그해에 생산된 금의 요소가 아니라 이전부터 국내에 축적되여있은 화폐량의 요소이다.

우리의 가정에 의하면 500파운드라는 년간금생산은 바로 그해에 마멸된 화폐를 보상하기에 충분할뿐이다. 그러므로

---

① 제1판 및 제2판에는 화폐생산물로 되여있다. 엥겔스의 교정지에 의하여 개정하였다. —편집자

② 제1판 및 제2판에는 상품재고로 되여있다. 엥겔스의 교정지에 의하여 개정하였다. —편집자

다만 이 500파운드만을 주목하고 1년간에 생산된 상품량중에서 이전부터 축적된 화폐에 의하여 류통되는 부분을 도외시한다면 상품형태로 생산된 잉여가치는 다른 한편으로 잉여가치가 매년 금의 형태로 생산된다는 리유만으로도 그 화폐화를 위한 화폐를 류통에서 발견한다. 동일한것은 500파운드의 금생산물중의 다른 부분, 즉 선대화폐자본을 보상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도 적용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가지 말해두어야 할것이 있다.

첫째로, 다음과 같이 말할수 있다. 자본가들에 의하여 화폐형태로 지출되는 잉여가치도, 그들에 의하여 화폐형태로 선대되는 가변자본이나 기타의 생산자본도 사실은 로동자들의 생산물, 즉 금생산에 종사하는 로동자들의 생산물이다. 로동자들은 금생산물중 자기들에게 로임으로서 《선대되는》 부분과 함께 금생산물중 자본주의적금생산자들의 잉여가치를 직접 표시하는 부분도 새로 생산한다. 마지막으로 금생산물중 다만 금생산을 위하여 선대된 불변자본가치를 보상할따름인 부분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 부분은 로동자들의 년간로동에 의하여 다만 금형태①로(일반적으로 생산물속에) 재현할따름이다. 이 부분은 기업개시 당시에 최초에 자본가에 의하여 화폐의 형태로 제공된것인데 이 화폐는 새로 생산된것이 아니라 류통중에 있는 사회적화폐량의 일부분을 이루고있은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그 부분이 새로운 생산물로서의 추가적금에 의하여 보상되는 한에서는 그것은 로동자의 년간생산물이다. 자본가측으로부터의 선대는 이 경우에도 다만 로동자가 자기자신의 생산수단의 소유자도 아니며 생산의 진행중에

① 제1판 및 제2판에는 화폐형태로 되여있다. 엥겔스의 교정지에 의하여 개정하였다. —편집자

다른 로동자가 생산한 생활수단을 마음대로 처분할수도 없다는데로부터 나오는 형태로서 나타날뿐이다.

둘째로, 이 500파운드의 년간보상과는 독립하여 존재하며 일부분은 축장화폐의 형태로 있고 일부분은 류통화폐의 형태로 있는 어떤 화폐량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것도 바로 이 500파운드에 있어서 매년 그러하였던 사정과 바로 동일한 사정에 있지 않으면 안된다. 즉 원래 동일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 점에 대하여서는 이 절의 마지막에서① 다시 취급하기로 하자. 그전에 다른 몇가지 점들을 더 말하여두기로 한다.

회전의 고찰에서 이미 본바와 같이 다른 사정들이 변함없다면 회전기간의 길이가 변동하는데 따라 동일한 규모로 생산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화폐자본량도 변동한다. 따라서 화폐류통의 신축성은 회전기간의 팽창과 수축의 변동에 적응하기에 충분한 크기가 아니면 안된다.

그리고 다른 사정은—로동일의 길이도, 강도도, 생산성도—변함없으나 로임과 잉여가치로의 **가치생산물의 분할이 변동하여** 전자가 증가되고 후자가 감소되거나 또는 그 반대로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으로 하여 류통화폐량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변동은 류통하고있는 화폐량이 팽창 또는 수축함이 없이 일어날수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찰하여보자, 즉 로임은 일반적으로 제고되고 따라서—가정의 조건하에서는—잉여가치률은 일반적으로 하락하며 그밖에 역시 가정한바에 의하여 류통상품량의 가치에 아무런 변동도

---

① 본권 제380페지를 보라. —편집자

생기지 않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변자본으로서 선대되지 않으면 안되는 화폐자본, 따라서 이 기능에 복무하는 화폐량은 확실히 증대한다. 그러나 가변자본의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화폐량이 증대되는 바로 그만큼 잉여가치가 감소되며 따라서 또 잉여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화폐량도 감소된다. 상품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화폐량의 총액은 이 상품가치자체와 마찬가지로 상술한것으로 하여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상품의 비용가격은 개별적자본가에 있어서는 제고되나 상품의 사회적생산가격은 의연히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것은 불변가치부분을 도외시한다면 상품의 생산가격이 로임과 리윤으로 나뉘여지는 비률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가변적화폐자본의 투하가 증대된다는것은(화폐의 가치는 물론 변함없다고 전제되여 있다.) 로동자들의 수중에 있는 화폐수단의 량이 그만큼 증대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로동자측으로부터의 상품수요가 증가한다. 또 그 결과로서 상품들의 가격이 오른다.—또는 이렇게도 말한다. 로임이 제고되면 자본가들은 자기들의 상품가격을 높인다.—이 두 경우에 다 로임의 일반적상승이 상품가격의 상승의 원인으로 된다. 그렇기때문에 가격이 상승을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하든간에 상품을 류통시키기 위하여서는 더 많은 화폐량이 필요하지 않을수 없다.

첫째 표현방식에 대한 대답. 로임이 오르면 특히 필요생활수단에 대한 로동자들의 수요가 증대될것이다. 그보다 적은 정도로이지만 사치품에 대한 그들의 수요도 증대될것이다. 혹은 이전에는 그들의 소비권내에 들어가지 않았던 물품에 대한 수요가 나타날것이다. 돌연적인, 비교적 큰 규모에서의 필요생활수단에 대한 수요의 증대는 반드시 한동안은

필요생활수단의 가격을 오르게 할것이다. 그 결과로 사회적 자본의 보다 큰 부분이 필요생활수단의 생산에 사용되고 보다 적은 부분이 사치품의 생산에 사용된다. 왜냐 하면 잉여가치가 감소되고 따라서 자본가들의 사치품수요가 감소되므로 사치품의 가격이 내리기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로동자자신이 사치품을 사는 한에서는 그의 임금의 상승은—그 범위내에서는—필요생활수단의 가격상승에는 작용하지 않고 다만 사치품의 구매자들을 바꿀따름이다. 종래보다 많은 사치품들이 로동자들의 소비로 들어가며 비교적 적은 사치품이 자본가들의 소비에 들어간다. 그저 그뿐이다. 약간의 동요가 있은후에는 이전과 동일한 가치의 상품량이 류통한다.—일시적인 동요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 결과는 그때까지 거래소에서의 투기나 외국에 투하처를 찾고있던 유휴화폐자본을 국내의 류통에 투입한다는외에는 아무것도 아닐것이다.

둘째 표현방식에 대한 대답. 만약 자본주의적생산자들이 자기들의 상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릴수 있다면 그들은 로임의 제고가 없이도 그렇게 할수 있을것이며 또 그렇게 할것이다. 로임은 상품가격이 내릴 때에는 결코 오르지 않을것이다. 지금 자본가계급이 례외적으로 일정한, 특수한, 말하자면 국부적인 사정하에서 실제로 하고있는것을 항상 그리고 어떠한 사정하에서도 할수 있다면 즉 로임이 오를 때마다 그것을 리용하여 상품가격을 그보다 훨씬 높은 정도로 올리고 따라서 더 큰 리윤을 거두어들이기를 할수 있다면 자본가계급은 결코 로동조합을 반대하지 않을것이다.

자본가가 사치품의 가격을 올릴수 있는것은 사치품수요가 감소되기(자본가의 사치품구매수단이 감소하여 자본가들의 수요가 감소한 결과로)때문이라는 주장은 수요공급의 법

칙의 전혀 기발한 응용일것이다. 단순히 자본가대신에 로동자가 등장하는 사치품의 구매자의 치환이 일어날따름이 아닌 한—그리고 이 변환이 일어나는 한에서는 로동자는 임금 추가액중 사치품에 지출하는 부분을 필요생활수단에 지출할 수 없으므로 로동자의 수요는 필요생활수단의 가격상승에는 작용하지 않는다.—수요감소의 결과로서 사치품의 가격은 내린다. 그 결과 자본은 사치품생산으로부터 떨어져나오는데 나중에는 사치품공급이 사회적생산과정에서의 사치품의 역할의 변화에 적합한 정도까지 축소된다. 이 생산감소에 따라 사치품은 그외에 가치의 변동이 없다면 다시 그 정상적가격으로까지 오른다. 이러한 수축 또는 평균화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은 생활수단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생산부문으로부터 끌려나오는 만큼의 자본이 마찬가지로 부단히 생활수단의 생산에 공급되며 수요가 충족될 때까지 그것이 계속된다. 그리하여 다시 균형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 전체 과정의 결과는 사회적자본 따라서 또 화폐자본이 필요생활수단의 생산과 사치품의 생산사이에 분배되는 비률이 변화하였다는것이다.

반대의견전체가 자본가들과 그들에게 아첨대는 경제학자들의 허세이다.

이러한 허세에 구실을 주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세 종류가 있다.

1) 화폐류통의 일반적법칙은 류통상품의 가격총액이 증대하면—이 가격총액의 증대가 동일한 상품량에 대하여 발생하든 또는 증대된 상품량에 대하여 발생하든간에—다른 사정들이 변하지 않는 한 류통화폐량이 증대한다는것이다. 그러므로 결과가 원인과 뒤바뀌운다. 로임은 필요생활수단의 가

격이 오르는데 따라 오른다(그것에 비례하여 오르는 일은 드물며 례외에 불과하지만). 로임의 상승은 상품가격상승의 결과이고 그 원인이 아니다.

2) 로임이 부분적으로 또는 국부적으로 오르는 경우—즉 개별적생산부문들에서만 오르는 경우—에는 그때문에 이러한 부문의 생산물의 국부적인 가격등귀가 일어날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많은 사정에 달린다. 례컨대 여기서는 로임이 몹시 낮지 않았으며 따라서 리윤률도 몹시 높지 않았다든가, 이러한 상품의 시장이 가격등귀로 말미암아 협착하게 되지 않았다든가(따라서 그 가격을 인상시키기 위하여 그 공급을 미리 감소시킬 필요가 없다든가) 하는 등등의 사정이다.

3) 로임이 일반적으로 오르는 경우에는 생산된 상품의 가격은 가변자본의 비중이 큰 산업부문에서는 오르지만 그대신 불변자본 또는 고정자본의 비중이 큰 산업부문에서는 내린다.

단순한 상품류통에서(제1권, 제3장, 제2절) 보여준바와 같이 비록 매개의 일정한 상품량의 류통과정내부에서는 그 상품량의 화폐형태는 다만 일시적인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상품의 변태에 있어서 한사람의 수중에서 사라진 화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수중에서 나타나는것이며 따라서 우선 제 상품이 전면적으로 교환되고 서로 대체될뿐만아니라 이러한 대체는 또한 화폐의 모든 방면에서의 침전에 의하여 매개되며 그것에 수반된다. 《상품에 의한 상품의 대체는 동시에 제3자의 수중에 화폐상품을 머물러있게 한다. 류통은 부단히 화폐를 땀처럼 뿜는다.》(제1권, 제192페지[82]) 이 동일한 사실이 자본주의적상품생산의 기초우에서는 자본의 일

부분은 부단히 화폐자본의 형태로 존재하며 또 잉여가치의 일부분은 역시 부단히 화폐형태로 그 **소유자의 수중**에 있다는것으로 표현된다.

이 점은 제쳐놓고 **화폐의 순환**—즉 그 출발점으로의 화폐의 **환류**—은 그것이 자본의 회전의 한 계기를 이루는 한에서는 **화폐의 류통**과는 전혀 다른, 지어는 정반대되는 현상이다.(33) 화폐의 류통은 화폐가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출발점으로부터 부단히 **멀어져간다**는것을 표시한다(제1권, 제94페지)[63]. 그러나 회전이 빨라진다는것은 그자체가 류통이 빨라진다는것을 포함하고있다.

우선 가변자본에 관하여 말한다면 례컨대 500파운드의 화폐자본이 가변자본의 형태로 1년에 10회전한다면 분명히 류통화폐량의 이 부분은 그 10배의 가치액=5,000파운드를 류통시킨다. 그것은 자본가와 로동자사이에서 1년에 10회 류통한다. 로동자는 류통화폐량의 이 동일한 부분으로써 1년에 10회 지불을 받으며 또 지불을 한다. 만약 동일한 생산규모에서 이 가변자본이 1년에 1회전한다면 5,000파운드의 단 1회의 류통만이 진행될것이다.

---

(33) 중농학파들은 아직 이 두 현상을 혼동하고있기는 하지만 화폐의 출발점으로의 환류를 자본류통의 본질적형태로서, 재생산을 매개하는 류통의 형태로서 강조하고있는 최초의 사람들이다. 《<경제표>를 보면 알수 있겠지만 생산적계급은 다른 계급들이 생산적계급으로부터 생산물을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화폐를 제공하며 또 다른 계급들은 다음 해에 생산적계급으로부터 동일한 구매를 하여 이 화폐를 생산적계급에게 반환한다.…따라서 여기에서 보게 되는 순환은 재생산이 그것에 수반되는 지출과 지출이 그것에 수반되는 재생산의 순환에 지나지 않는다. 즉 지출과 재생산을 측정하는 화폐의 류통에 의하여 관통되는 순환이다.》(께내 《상업 및 수공업자의 로동에 관한 대화》, 대르 편찬 《중농학파》 제1부, 208~209페지) 《이와 같은 자본의 부단한 선대와 환류는 화폐류통이라고 불러야 할것을 이루고있으며 이 유용하고 다산적인 류통이야말로 사회의 모든 로동에 활기를 부여하고 정치유기체에 있어서의 운동과 생명을 유지하는것이며 극히 당연하게도 동물체내의 혈액순환과 비교될만한것이다.》(뛰르고 《부의 형성과 분배에 관한 고찰》 대르 편찬, 《저작집》 제1권, 45페지)

다음으로 류동자본의 불변부분을 1,000파운드라고 하자. 이 자본이 10회전한다면 자본가는 1년에 10회 자기의 상품을 판매하게 되며 따라서 또 그 상품가치의 불변적류동부분도 1년에 10회 판매하게 된다. 류통화폐량의 이 동일한 부분(=1,000파운드)은 1년에 10회 그 소유자의 수중으로부터 자본가의 수중으로 넘어간다. 이것은 어떤 한사람의 수중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수중으로의 이 화폐의 10회의 장소변경이다. 셋째로, 자본가는 1년에 10회 생산수단을 구매한다. 이것도 역시 한사람의 수중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수중으로의 화폐의 10회의 류통이다. 1,000파운드라는 액수의 화폐로 10,000파운드분의 상품이 산업자본가에 의하여 판매되고 또다시 10,000파운드분의 상품이 구입된다. 1,000파운드의 화폐의 20회의 류통에 의하여 20,000파운드의 상품저장이 류통된다.

마지막으로 회전이 더 빨라지면 잉여가치를 실현하는 화폐부분도 더 급속히 류통한다.

그런데 반대로 보다 급속한 화폐류통은 반드시 보다 급속한 자본회전을 포함하는것은 아니며 따라서 또 보다 급속한 화폐회전을 포함하는것은 아니다. 즉 재생산과정의 단축과 보다 급속한 갱신을 꼭 내포하는것은 아니다.

동일한 화폐량으로써 보다 많은 량의 거래가 진행된다면 언제나 보다 급속한 화폐류통이 나타난다. 이러한것은 자본의 재생산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도 화폐류통을 위한 기술적시설들의 변화의 결과로 일어날수 있다. 다음에 또 현실적상품거래를 표현하지 않고 화폐가 류통하는 거래들(거래소에서의 차액거래 등등)의 량이 증가할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화폐류통이 전혀 없어지는수도 있다. 례컨대 농장경영주자신이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는 차지농업가와 토지소유자간에 화폐류

통은 일어나지 않는다. 또 산업자본가자신이 자본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와 신용대부자간에 화폐류통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 나라에서의 축장화폐의 시초적형성에 관하여서는 또 소수자들에 의한 그 점유에 관하여는 여기에서 이 이상 론할 필요가 없다.

자본주의적생산방식—그 기초는 임금로동이며 따라서 또 로동자에 대한 화폐로써의 지불이며 일반적으로 현물지불로부터 화폐지불로의 전화이다.—은 류통과 그것을 위하여 필요한 화폐축장(준비금 등)을 위하여 충분한 화폐량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보다 큰 범위로 보다 깊은 완성으로 발전할수 있다. 이것은 력사적전제이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에 충분한 축장화폐량이 형성되고 그다음에 자본주의적생산이 시작되는것으로 리해되여서는 안된다. 그런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생산은 그 제조건의 발전과 동시에 발전하며 이 제 조건의 하나가 귀금속의 충분한 공급이다. 그렇기때문에 16세기이래의 귀금속공급의 증가가 자본주의적생산의 발전사에서 하나의 본질적인 계기로 된다. 그러나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기초우에서의 화폐재료의 보다 많은 공급의 필요가 문제로 되는 한에서는 한편으로는 생산물로서의 잉여가치가 그 화폐화를 위하여 필요한 화폐없이 류통에 투입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금으로 존재하는 잉여가치가 미리 생산물이 화폐로 전화됨이 없이 류통에 투입되는것이다.

화폐로 전화되여야 할 추가적상품이 필요한 화폐량을 발견하는것은 다른 한편으로 상품으로 전화되여야 할 추가적인 금(및 은)이 교환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생산자체에 의하여 류통에·투입되기때문이다.

2. 축적과 확대재생산

축적이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이라는 형태로 진행되는 한에서는 분명히 축적은 화폐류통에 관하여서 아무런 새로운 문제도 제출하지 않는다.

우선 증대되는 생산자본의 기능에 필요한 추가적화폐자본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실현된 잉여가치중 자본가가 수입의 화폐형태로서가 아니라 화폐자본으로서 류통에 투입되는 부분에 의하여 제공한다. 화폐는 이미 자본가의 수중에 있다. 다만 그 사용이 다를뿐이다.

그런데 이제는 생산자본이 추가되기 위하여 그 생산물로서 추가상품량이 류통에 투입된다. 이 추가상품량과 동시에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화폐의 일부분은 이미 류통에 투입되였다. 즉 이 상품량의 가치가 그 생산에 소비된 생산자본의 가치와 같은 한에서는 그러하다. 이 추가화폐량은 바로 추가화폐자본으로서 선대된것이며 따라서 그의 자본의 회전에 의하여 자본가의 수중에로 환류하는것이다. 여기에서 다시 우에서와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 이제 상품형태로 존재하는 추가잉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추가화폐는 대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일반적대답은 역시 동일하다. 류통하는 상품량의 가격총액은 증가되였는데 그것은 주어진 상품량의 가격이 올랐기때문이 아니라 지금 류통하고있는 상품의 량이 이전에 류통하던 상품의 량보다 더 크게 되였으며 그리고 그것이 가격의 저락에 의하여 상쇄되지 않기때문이다. 이보다 큰 가치를 가

진 보다 큰 상품량의 류통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화폐는 류통화폐량의 가일층의 절약—제 지불의 상쇄든가 동일한 화폐조각들의 류통을 신속하게 하는 수단 등에 의한 절약—에 의하여서나 또는 축장형태로부터 류통형태로의 화폐의 전화에 의하여 취득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후자에 포함되여있는것은 유휴화폐자본이 구매수단 또는 지불수단으로서 기능을 시작한다는것뿐이 아니다. 혹은 또 이미 준비금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화폐자본이 그 소유자를 위하여는 준비금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사회를 위하여는 현실적으로 류통하며(은행예금이 부단히 대출되는것과 같이) 따라서 2중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다. 그것뿐만아니라 정체되고있는 주화준비금이 절약된다는것도 포함하고있다.

《화폐가 주화로서 부단히 류통하기 위하여서는 주화가 부단히 화폐로 옹고되지 않으면 안된다. 주화의 부단한 류통은 류통내부에서 전면적으로 발생하는 동시에 또 류통의 조건으로도 되여있는 주화준비금으로서 주화의 크거나 작은 부분이 부단히 정체하는것을 조건으로 하며 그리고 이 주화준비금의 형성, 분배, 해소, 재형성은 부단히 교체되며 그 존재는 부단히 소멸되며 그 소멸은 부단히 존재한다. A. 스미스는 주화로부터 화폐로의, 또 화폐로부터 주화로의 이러한 끊임없는 전화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있다. 어떤 상품소유자나 자기가 파는 특수한 상품외에 자기가 사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반적상품의 일정한 액수를 언제나 준비하고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이미 본바와 같이 류통 W—G—W에서는 제2고리 G—W는 언제나 여러개의 구매들로 분렬되며 이러한 구매는 한꺼번에 수행되는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순차로 수행되므로 G의 어떤 부분이 주화로서 류통할 때 다른 부분은 화폐로

서 놀고있다. 화폐는 여기서는 사실상 다만 잠시 정지된 주화에 불과하며 류통하고있는 주화량의 개개의 구성부분들은 부단히 교체되면서 때로는 이 형태, 때로는 저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류통수단의 화폐로의 제1전화는 화폐류통자체의 단순히 기술적인 한 계기를 표시하고있을뿐이다.》(칼 맑스《정치경제학비판》1859년, 105~106페지[84]—화폐와 대립되는 《주화》라는 말은 여기에서는 그 이외의 기능들과 대립하여 단순한 류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화폐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고있다.)

만약 이 모든 수단들을 다 써도 부족하다면 추가적인 금생산이 수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혹은 결국 동일한것으로 되지만 추가생산물의 일부분이 금—귀금속생산국의 생산물—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교환된다.

류통도구로서의 금과 은의 년간생산에 지출되는 로동력과 사회적생산수단의 총액은 자본주의적생산방식, 일반적으로 상품생산을 기초로 하는 생산방식의 비생산적지출의 중요항목을 이룬다. 그것은 그에 해당한 액의 가능한 추가생산수단과 추가소비수단, 즉 현실적부를 사회적리용으로부터 끌어낸다. 주어진 생산규모가 변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생산의 확대정도가 주어진 경우에 이 비싼 류통기구의 비용이 감소된다면 그러한 한에서는 그것으로 하여 사회적로동의 생산력이 제고된다. 따라서 신용제도와 함께 발전하는 립시 대책들이 이러한 효과를 가지는 한 그것은 직접 자본주의적부를 증가시킨다. 즉 그것에 의하여 사회적생산과정 및 사회적로동과정의 큰 부분이 현실적화폐의 일체 개입이 없이 수행되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기능하는 화폐량의 기능능력이 제고되거나 한다.

이것으로 다음과 같은 어리석은 질문도 해결된다. 그것

은, 즉 오늘의 규모에서의 자본주의적생산은 신용제도가 없이(다만 이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즉 다만 금속류통만으로써 가능할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그것은 분명히 불가능하다. 오히려 신용제도가 없으면 자본주의적생산은 귀금속생산의 규모에서 그 한계를 발견할것이다. 다른 한편 화폐자본을 제공하거나 류동시키거나 하는 한에서의 신용제도의 생산력에 대한 신비적인 관념을 가져서는 안된다. 이 점에 대한 이 이상의 설명은 여기에서 불필요하다.

다음에 고찰하여야 할것은 현실적축적, 즉 생산규모의 직접적인 확대가 진행되지 않고 실현된 잉여가치의 일부분이 후에 생산자본으로 전화되기 위하여 길거나 짧은 기간에 화폐준비금으로서 적립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축적되는 화폐가 추가화폐인 한에서는 사태는 자명하다. 이 화폐는 다만 금생산국으로부터 공급되는 남아도는 금의 일부분일수 있다. 이 경우에 주의할 점은 이 금의 수입과 교환되는 국민적생산물은 이제는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이다. 그것은 금과 교환되여 외국에 수출되였다.

이와 반대로 이전과 동일한 량의 화폐가 국내에 있다고 가정하면 이미 적립된 화폐나 적립되고있는 화폐는 류통으로부터 흘러나온것이며 다만 그 기능이 전화되였을따름이다. 그것은 류통하고있는 화폐로부터 점차 형성되는 잠재적인 화폐자본으로 전화되였다.

이 경우에 적립되는 화폐는 판매된 상품의 화폐형태이며 이 상품의 가치중 그 소유자에게 대하여 잉여가치를 표시하는 부분의 화폐형태이다(여기서는 신용제도는 존재하지 않는것으로 전제한다.). 이 화폐를 적립한 자본가는 그만큼 구매

함이 없이 판매한것이다.

이 과정을 부분적인것으로 본다면 거기에는 설명을 필요로 하는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본가의 일부분은 자기들의 생산물을 판매하여 얻은 화폐의 일부분을 그것과 교환으로 생산물을 시장에서 끌어내지 않고 보유한다. 이와는 반대로 자본가의 다른 일부분은 자기들의 생산경영에 필요한 부단히 환류하는 화폐자본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화폐를 전부 생산물로 전화시킨다. 잉여가치의 담당자로서 시장에 투입되는 생산물의 일부분은 생산수단으로써 되여있거나 또는 가변자본의 현실적요소들인 필요생활수단으로써 되여있다. 따라서 그것은 즉시 생산의 확대에 복무할수 있다. 왜냐 하면 결코 자본가의 일부분이 화폐자본을 적립하는데 다른 일부분은 자기의 잉여가치를 전부 소비한다고 가정되고있는것이 아니라 다만 자본가의 일부분이 자기들의 축적을 화폐형태로서 진행하고 잠재적화폐자본을 형성하는데 다른 일부분은 현실적으로 축적한다고, 즉 생산규모를 확대하며 자기의 생산자본을 현실적으로 확대한다고만 가정되여있기때문이다. 자본가들이 번갈아 일부분은 화폐를 적립하고 다른 일부분은 생산규모를 확대하는 경우에나 그 반대의 경우에나 류통의 필요를 위하여는 의연히 현존하는 화폐량으로 충분하다. 그뿐만아니라 일방에서의 화폐적립은 현금이 없이 단지 채권의 적립만에 의하여 진행되여도 되는것이다.

그러나 자본가계급사이에서의 화폐자본의 부분적인 축적이 아니라 일반적인 축적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곤난이 나타난다. 자본가계급외에는 우리의 가정—자본주의적생산의 일반적이며 유일적인 지배—에 의하면 대체로 로동자계급밖에는 어떤 계급도 존재하지 않는다. 로동자계급이 구매하는 모든것

은 이 계급의 로임의 총액과 같으며 자본가계급전체에 의하여 선대된 가변자본의 총액과 같다. 이 화폐는 자본가계급의 생산물을 로동자계급에게 판매하는데 의하여 자본가계급에게로 환류한다. 그리하여 자본가계급의 가변자본은 다시 그 화폐형태를 취한다. 가변자본의 총액은 x×100파운드라고 하자. 즉 1년간에 선대된 가변자본이 아니라 사용된 가변자본의 총액이라고 하자. 회전속도의 크기에 따라 얼마나 많은 화폐로, 또는 얼마나 적은 화폐로 이 가변자본가치가 1년간 선대되는가 하는것은 지금 고찰하는 문제를 조금도 변화시키지 않는다. 이 x×100파운드의 자본으로써 자본가계급은 일정한 량의 로동력을 구매한다. 즉 일정한 수의 로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한다. 이것이 제1거래이다. 로동자들은 동일한 금액으로써 어떤 분량의 상품을 자본가들로부터 구매하며 이리하여 x×100파운드라는 금액은 자본가들의 수중으로 환류한다. 이것이 제2거래이다. 그리고 이러한것이 부단히 반복된다. 따라서 x×100파운드라는 금액은 결코 로동자계급이 생산물중 불변자본을 표시하는 부분을 구매하는것을, 더구나 자본가계급의 잉여가치를 표시하는 부분을 구매하는것을 가능하게 할수 없다. 로동자가 x×100파운드로 구매할수 있는것은 언제나 다만 사회적생산물의 가치의 일부분뿐이다. 즉 선대가변자본의 가치를 표시하는 가치부분과 같은 일부분뿐이다.

이 전면적인 화폐축적에 의하여 표시되는것이 그 비률은 어떠하든간에 각이한 개별적자본가들사이에서의 추가수입귀금속의 분배에 불과한 경우를 도외시한다면—대체 어떻게 자본가계급전체가 화폐를 축적하는가?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생산물의 일부분을 판매하고 다시 구매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그들은 모두 일정한 화폐기금을

가지고있으며 그것을 자기들의 소비를 위한 류통수단으로서 류통에 투입하며 그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류통으로부터 각자에게 다시 환류한다는것은 조금도 신비한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폐기금은 그 경우에 바로 잉여가치의 화폐화에 의한 류통기금으로서 존재하는것이고 결코 잠재적인 화폐자본으로서 존재하는것은 아니다.

사태를 현실에서 발생하는 그대로 고찰한다면 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되는 잠재적화폐자본은 다음과 같은것으로써 구성된다.

1) 은행예금. 그런데 은행이 현실적으로 움직일수 있는것은 비교적 적은 화폐액이다. 여기서는 다만 명목상으로만 화폐자본이 적립될뿐이다. 현실적으로 적립되는것은 화폐청구권이며 그것이 화폐화될수 있는것은(그것이 언제이든 화폐화되는 한에서) 오직 찾아가는 화폐와 예금하는 화폐간에 균형이 이루어지기때문일따름이다. 화폐로서 은행의 수중에 있는것은 상대적으로는 적은 금액에 불과하다.

2) 공채증권. 이것은 결코 자본이 아니라 국민의 년간생산물에 대한 단순한 채권이다.

3) 주식. 사기적인것이 아닌 한, 그것은 한 회사에 속하는 현실적자본에 대한 소유증서이며 또 이 자본으로부터 매년 흘러나오는 잉여가치에 대한 지도증권이다.

이 모든 경우에는 화폐의 적립이 진행되는것이 아니며 한편에서 화폐자본의 적립으로서 나타나는것이 다른 한편에서는 화폐의 부단한 현실적인 지출로서 나타난다. 화폐가 그 소유자에 의하여 지출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의 채무자인 다른 사람에 의하여 지출되는가 하는것은 조금도 사태를 변경시키지 않는다.

자본주의적생산의 기초우에서는 화폐축장 그자체는 결코 목적이 아니며 오히려 류통의 정체의 결과이든가—보통때보다 큰 화폐량이 축장화폐형태를 취하기때문에—또는 회전을 위하여 필요하게 되는 적립의 결과이든가 혹은 또 마지막으로 축장화폐는 다만 일시적으로 잠재적형태에 있으며 이제 곧 생산자본으로서 기능할 화폐자본의 형성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한편에서는 화폐로 실현된 잉여가치의 일부분이 류통으로부터 끌려나와 축장화폐로서 적립된다면 그와 동시에 부단히 잉여가치의 다른 부분은 생산자본으로 전화된다. 자본가계급사이에서의 추가귀금속의 분배를 제외하면 화폐형태로서의 적립이 모든 지점들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일은 결코 없다.

년간생산물중 상품형태로서의 잉여가치를 표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년간생산물중 다른 부분에 대하여 말한것과 같은것을 말할수 있다. 그 류통을 위하여는 일정한 화폐액이 필요하다. 이 화폐액이 자본가계급의것이라는것은 잉여가치를 표시하는 년간생산상품량이 그러한것과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최초에는 자본가계급자신에 의하여 류통에 투입된다. 그것은 류통자체에 의하여 부단히 반복하여 자본가들사이에 분배된다. 주화류통일반에 있어서 그러한것처럼 이 화폐량의 일부분은 부단히 장소를 변경하여 정체하는데 다른 부분은 부단히 류통한다. 이 적립의 일부분이 화폐자본을 형성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수행되는가 어떤가 하는것은 사태를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여기서는 도외시되여온것이지만 류통상의 여러가지 모험에 의하여 한 자본가가 다른 자본가의 잉여가치의 일부분을, 지어는 자본의 일부분까지도 탈취하며 따라서 화폐자본이나

생산자본의 일방적인 축적 및 집중이 일어날수 있다. 례컨대 략탈한 잉여가치중 A가 화폐자본으로서 적립하는 부분이 B의 잉여가치의 일부분이며 그것이 B에게 환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수 있다.

제 3 편

사회적총자본의 재생산과 류통

제 18 장(34)

서 론

1. 연구의 대상

자본의 직접적생산과정은 자본의 로동과정이며 가치증식과정이며 이 과정의 결과는 상품생산물이며 그 결정적동기는 잉여가치의 생산이다.

자본의 재생산과정은 이 직접적생산과정과 함께 본래의 류통과정의 두 단계도 포괄한다. 즉 주기적과정—즉 일정한 주기로 부단히 새로 반복되는 과정—으로서 자본의 회전을 형성하는 총순환을 포괄한다.

이제 이 순환을 G…G′형태로 고찰하든 P…P형태로 고찰하든 직접적생산과정 P 그자체는 언제나 이 순환의 하나의 고리를 이루고있을뿐이다. 전자의 형태에서는 직접적생산과정이 류통과정의 매개로서 나타나며 후자의 형태에서는 류통과

---

(34) 제2고에서.

정이 직접적생산과정의 매개로서 나타난다. 직접적생산과정의 부단한 갱신, 즉 생산자본으로서의 자본의 부단한 재현은 두 경우에 다 류통과정에서의 자본의 전화를 조건으로 한다. 다른 한편 부단히 갱신되는 생산과정은 자본이 류통분야에서 부단히 반복하여 수행하는 전화들의 조건이며 자본이 화폐자본 및 상품자본으로서 번갈아 나타나는 조건이다.

그렇지만 매개 자본은 사회적총자본의 독립화된, 말하자면 개별적생명이 부여된 한 부분에 불과한데 이것은 매개 자본가가 자본가계급의 개별적인 한 요소에 불과한것과 마찬가지이다. 사회적자본의 운동은 이 자본의 독립화된 부분들의 운동의 총체, 즉 개별적자본들의 회전의 총체로 이루어진다. 개개의 상품의 형태변화가 상품세계의 형태변화의 계렬—상품류통—의 하나의 고리인것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자본의 형태변화, 그 회전은 사회적자본의 순환중의 하나의 고리이다.

이 총과정은 생산적소비(직접적생산과정)와 그것을 매개하는 형태전화(소재적으로 보면 교환)를 포함하며 또한 개인적소비와 그것을 매개하는 형태전화 또는 교환을 포함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로동력으로의 가변자본의 전화를 포함하며 따라서 자본주의적생산과정에의 로동력의 합체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로동자는 자기의 상품인 로동력의 판매자로서 나타나며 자본가는 그 상품의 구매자로서 나타난다. 그런데 다른 한편 상품의 판매속에는 로동계급에 의한 상품의 구매, 즉 이 계급의 개인적소비가 포함되여있다. 여기에서는 로동계급은 구매자로서 나타나며 자본가는 로동자에 대한 상품판매자로서 나타난다.

상품자본의 류통은 잉여가치의 류통도 포함하며 따라서 자본가가 그것에 의하여 자기의 개인적 소비, 즉 잉여가치의

소비를 매개하는 매매도 포함한다.

따라서 사회적자본으로서 총괄된 개별적자본들의 순환, 즉 사회적자본의 총체로서 본 이 순환은 자본의 류통을 포괄할뿐만아니라 일반적상품류통도 포괄한다. 일반적인 상품류통은 원래 두 구성부분으로써만 이루어질수 있다. 즉 1) 자본자체의 순환과 2) 개인적소비에 들어가는 상품의 순환, 즉 로동자가 자기의 로임을 지출하여 얻고 자본가가 자기의 잉여가치(또는 잉여가치의 일부분)를 지출하여 얻는 상품의 순환으로 이루어질수 있다. 물론 자본의 순환은 잉여가치가 상품자본의 일부분을 이루고있는 한 잉여가치의 류통도 포괄하며 또한 로동력으로의 가변자본의 전화, 즉 로임의 지불도 포괄한다. 그러나 이 잉여가치와 로임이 상품에 지출되는것은 비록 적어도 로임의 지출이 자본류통의 조건으로 되기는 하지만 자본류통의 한 고리를 이루지는 않는다.

제1권에서는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이 개별적과정으로서도, 재생산과정으로서도 분석되였다. 즉 잉여가치의 생산과 자본자체의 생산이 분석되였다. 자본이 류통분야내부에서 수행하는 형태변환과 물질변환은 그저 전제하는데 그치고 그 이상 서술하지 않았다. 즉 자본가는 한편으로는 생산물을 그 가치대로 판매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과정을 새로 시작하거나 또는 련속하는데 필요한 물질적생산수단들을 류통분야내부에서 발견한다는것을 전제로 하였다. 우리가 제1권에서 상세히 고찰하여야 하였던 류통분야에서의 유일한 행위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근본조건으로서의 로동력의 매매였다.

이 제2권의 제1편에서는 자본이 그 순환에서 취하는 여러가지 형태들과 이 순환자체의 여러가지 형태들이 고찰되였다. 제1권에서 고찰된 로동기간에 이제는 류통기간이 첨가되

였다.

제2편에서는 순환이 주기적인 순환으로서, 즉 회전으로서 고찰되였다. 한편으로는 자본의 구성부분들(고정자본과 류동자본)이 다름에 따라 각이한 구성부분들이 제 형태의 순환을 수행하는 시간이 다르고 그 방식이 다르다는것이 해명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로동기간과 류통기간의 각이한 길이의 조건들로 되는 사정들이 연구되였다. 순환기간과 또 그 구성부분의 각이한 비률이 생산과정자체의 규모와 잉여가치의 년률에 주는 영향이 해명되였다. 사실상 제1편에서는 자본이 그 순환중에서 부단히 취하고 버리는 련속적인 형태들이 고찰되였다면 제2편에서는 제형태의 이 흐름과 련속중에서 주어진 크기의 한 자본이 동시에(비록 그 비률은 변한다 하더라도) 생산자본, 화폐자본 및 상품자본 등의 각이한 형태들로 분할되며 그리하여 이러한 형태들이 서로 교체될뿐만 아니라 총자본가치의 각이한 부분들이 이 각이한 상태로 부단히 병존하며 기능한다는것이 고찰되였다. 특히 화폐자본은 제1권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나타났다. 여기에서 일정한 법칙들이 발견되였는데 그 법칙들에 의하면 주어진 크기의 생산자본을 부단히 기능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주어진 한 자본의 크기가 각이한 구성부분들이 회전의 조건에 따라 부단히 화폐자본의 형태로 선대되고 갱신되여야 하는것이다.

그러나 제1편에서나 제2편에서 문제로 한것은 언제나 다만 하나의 개별적자본이였으며 사회적자본의 독립화된 한 부분의 운동뿐이였다.

그런데 개별적자본의 순환들은 서로 엉키며 서로 전제가 되고 조건으로 되는것이며 그리하여 바로 이렇게 엉킴으로써 사회적총자본의 운동을 형성한다. 단순상품류통에서 한 상품

의 전체 형태변화가 상품세계의 형태변화의 계렬의 한 고리로서 나타난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개별적자본의 형태변화가 사회적자본의 형태변화계렬의 한 고리로서 나타난다. 그런데 단순상품류통이 자본의 류통을 꼭 포함하는것은 아니지만—왜냐 하면 그것은 비자본주의적생산의 기초우에서도 진행될수 있으므로—사회적총자본의 순환은 이미 지적한바와 같이 개별적자본의 순환에 속하지 않는 상품류통, 즉 자본을 형성하지 않는 상품들의 류통도 포함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사회적총자본의 구성부분으로서의 개별적자본들의 류통과정(그 총체에 있어서 재생산과정의 형태를 이루는것)이, 즉 이 사회적총자본의 류통과정이 고찰되여야 한다.

2. 화폐자본의 역할

〔다음것은 이 편의 뒤부분에서 취급될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선 이 자리에서 연구하고저 한다. 즉 화폐자본을 사회적총자본의 구성부분으로서 고찰하는것이다.〕

개별적자본의 회전을 고찰하였을 때 화폐자본은 두 측면을 보여주었다.

첫째로, 화폐자본은 개개의 개별적자본이 무대에 등장하여 자본으로서 그 과정을 개시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화폐자본은 전 과정에 충격을 가하는 제1동력으로서 나타난다.

둘째로, 회전기간의 길이가 다르면 또 그 두 구성부분—로동기간과 류통기간—의 비률이 다르면 선대자본가치중 화폐형태로 부단히 선대되며 갱신되지 않으면 안되는 구성부분

과 그것에 의하여 움직이게 되는 생산자본, 즉 련속적인 생산규모와의 비률도 다르게 된다. 그러나 이 비률이 어떠하든간에 어떠한 사정하에서도 과정중에 있는 자본가치중 생산자본으로서 부단히 기능할수 있는 부분은 선대자본가치중 부단히 생산자본과 함께 화폐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에 의하여 제한된다. 여기에서 문제로 되고있는것은 다만 정상적인 회전, 즉 추상적인 평균뿐이다. 이 경우에 류통의 정체를 조정하기 위한 추가적화폐자본은 도외시된다.

첫째 점에 대하여. 상품생산은 상품류통을 전제로 하며 상품류통은 상품이 화폐로서 나타나는것, 즉 화폐류통을 전제로 한다. 상품과 화폐로의 상품의 이중화는 생산물이 상품으로서 나타나는 법칙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적상품생산은—사회적으로 보나 개별적으로 보나—화폐형태로 있는 자본 또는 화폐자본을 새로 개시되는 매개 기업에 대한 제1동력으로서 또 지속적인 동력으로서 전제한다. 특히 류동자본은 화폐자본이 비교적 짧은 간격으로 부단히 반복하여 동력으로서 나타나는것을 전제로 한다. 전체 선대자본가치, 즉 여러가지 상품들로써 구성되고있는 모든 자본의 구성부분—로동력, 로동수단 및 생산재료—은 부단히 화폐로 구매되지 않으면 안되며 또 반복적으로 구매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 개별적자본에 대하여 말한것은 다만 다수의 개별적자본의 형태로서 기능하는데 불과한 사회적자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러나 제1권에서 이미 밝혀진바와 같이 그렇다고 하여 자본의 기능범위 즉 생산의 규모가 자본주의적기초우에서도 그 **절대적**한계로 보아 지금 기능하고있는 화폐자본의 크기에 의존한다고는 결코 말할수 없다.

자본에는 여러가지 생산요소들이 합체되여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의 확대는 어떤 한계내에서는 선대화폐자본의 크기에 의존하는것이 아니다. 로동력에 대한 지불이 같은 경우에도 로동력은 외연적으로나 내포적으로 더욱 큰 강도로 착취를 당할수있다. 이와 같은 착취의 강화에 따라 화폐자본이 증대한다(즉 로임이 제고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착취가 강화되는데 비례하여 증대하는것은 아니며 따라서 결코 상응하게 증대하는것은 아니다.

생산적으로 리용되는 자연소재—그것은 자본의 가치요소를 이루지 않는다.—즉 토지, 해양, 광석, 삼림 등등은 화폐자본의 선대를 증가하지 않고도 같은 수의 로동력의 긴장도를 강화하는데 의하여 외연적으로나 내포적으로 더 고도로 리용될수 있다. 그리하여 생산자본의 물적요소들은 화폐자본의 추가가 없이 증가된다. 이 추가가 추가적보조재료를 위하여 필요하게 되는 한 이것으로 자본가치가 선대되는 형태로서의 화폐자본은 생산자본의 효과의 확대에 비례하여 증대하는것은 아니며 따라서 결코 상응하게 증대하는것은 아니다.

동일한 로동수단, 따라서 동일한 고정자본은 그 1일의 사용시간을 연장하는데 의하여서도, 그 사용의 집약성을 강화하는데 의하여서도 고정자본을 위한 추가적화폐투하가 없이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될수 있다. 그 경우에는 다만 고정자본의 회전이 빨라질따름이나 고정자본의 재생산의 요소들도 보다 급속히 제공될것이다.

자연소재는 도외시하더라도 아무 비용도 들지 않는 자연력이 크거나 작은 효능이 있는 요인으로서 생산과정에 합체될수 있다. 그 효능의 정도는 자본가가 아무 비용도 들이지 않는 여러가지 방법들과 과학의 진보에 의하여 결정된다.

생산과정에서의 로동력의 사회적결합이나 개별적로동자

의 축적된 기능에 대하여서도 그와 동일하게 말할수 있다. 케어리의 계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결코 지불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있다. 그것은 토지에 오늘의 생산능력을 주기 위하여 유사이래 토지에 투하된 모든 자본 또는 로동이 토지소유자에게 지불되지 못하고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토지로부터 빼앗아가는 생산능력에 관하여서는 물론 언급하지 않고있다.). 이러한 계산법에 의하면 개개의 로동자는 한 미개인을 현대적기계공으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전 인류가 들인 로동에 따라 지불을 받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그와는 정반대로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할것이다. 즉 토지에 투하된 모든 부지불로동—그러나 토지소유자와 자본가에 의하여 화폐로 전화된—을 계산하여본다면 토지에 투하된 모든 자본은 몇차례나 그것도 높은 리자가 붙어서 상환되였고 따라서 사회는 토지소유권을 훨씬 오래전에 몇차례나 되사고있다고.

로동력생산력의 제고는 그것이 자본가치의 추가적지출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물론 첫번째로는 생산물의 량을 증대시킬뿐이고 생산물의 가치는 증대시키지 않는다. 로동생산력의 제고가 같은 량의 로동으로써 보다 많은 불변자본을 재생산할수 있게 하며 따라서 보다 많은 불변자본의 가치를 보존할수 있게 하는것은 도외시한다. 그러나 로동생산력의 제고는 동시에 새로운 자본소재를 형성하며 따라서 자본축적의 증대의 기초를 형성한다.

사회적로동의 조직자체가, 따라서 사회적로동생산력의 제고가 생산이 대규모로 진행될것을 요구하고 따라서 개별적 자본가들에 의하여 대량의 화폐자본이 선대될것을 요구하는 한 이러한것은 이미 제1권에서 밝혀진바와 같이[85] 부분적으로는 소수사람들의 수중으로의 제 자본의 집중에 의하여 일어

나는것이며 이에 있어서는 기능하는 자본가치의 크기, 따라서 또 그 자본가치가 선대되는 형태로서의 화폐자본의 크기가 절대적으로 증대할 필요는 없다. 개별적자본들의 크기는 그 사회적총액이 증가하지 않아도 소수사람들의 수중으로의 집중에 의하여 증대할수 있다. 이것은 다만 개별적자본들의 분할의 변화에 불과한것이다.

끝으로 전편에서 밝혀진바와 같이 회전기간의 단축은 보다 적은 화폐자본으로써 동일한 액수의 생산자본을 움직이든가 또는 동일한 액수의 화폐자본으로써 보다 많은 생산자본을 움직일수 있게 한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 모든것은 화폐자본의 본래의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것은 다만 다음과 같은것을 보여주고있을뿐이다. 즉 선대자본—어떤 주어진 가치액으로서 그 자유로운 형태에서는, 즉 그 가치형태에서는 어떤 화폐액으로써 이루어진다.—은 생산자본으로 전화한후에는 생산적인 잠세력을 포함하는데 그 잠세력의 한계는 선대자본의 가치한도에 의하여 주어지는것이 아니라 그 잠세력은 어느 범위내에서는 외연적 또는 내포적으로 각이하게 작용할수 있다는것이다. 생산요소—생산수단과 로동력—의 가격이 주어진것이라면 상품으로서 존재하는 이 생산요소들의 일정한 량을 구매하기에 필요한 화폐자본의 크기는 일정하다. 바꾸어말하면 선대되여야 할 자본의 가치의 크기는 일정하다. 그러나 이 자본이 가치형성자 및 생산물형성자로서 작용하는 범위는 탄력적이며 가변적이다.

둘째 점에 대하여. 사회적로동과 생산수단중 마멸된 주화를 보상하기 위하여 해마다 화폐의 생산 또는 구입에 지불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이 그만큼 사회적생산의 범위를 삭

감하게 된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일부는 류통수단으로서, 일부는 축장화폐로서 기능하는 화폐가치는 일단 존재하자마자, 즉 취득되자마자 로동력, 생산된 생산수단 및 부의 자연적원천들과 나란히 존재하고있는것이다. 화폐가치가 이러한것들을 제한한다고 볼수는 없다. 이 화폐가치가 생산요소들로 전화되며 다른 나라들과 교환됨으로써 생산규모는 확대될수 있을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화폐가 이 경우에도 여전히 세계화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것을 전제로 한다.

회전기간의 길이에 따라 생산자본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화폐자본의 량은 클수도 있고 작을수도 있다. 역시 우리가 이미 본바와 같이 회전기간이 로동기간과 류통기간으로 분할되는것은 화폐형태로 잠복하는 또는 유휴상태에 있는 자본의 증가를 필요로 한다.

회전기간이 로동기간의 길이에 의하여 규정되는 한 그것은 기타의 조건들이 변함없다면 생산과정의 물질적성격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고 따라서 이 생산과정의 특수한 사회적성격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적생산의 기초우에서는 비교적 오래동안 계속되는 대규모적인 작업들은 보다 오랜 기간에 걸친, 보다 많은 량의 화폐자본의 선대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야에서의 생산은 개별적자본가가 화폐자본을 마음대로 사용할수 있는 한도에 의하여 좌우된다. 이 제한은 신용제도와 그와 관련된 결합체, 레컨대 주식회사에 의하여 타파된다. 그렇기때문에 화폐시장에서의 교란은 그러한 기업들을 정지시키는데 이 기업들자체는 이번에는 화폐시장의 교란을 일으킨다.

사회적생산의 기초우에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유용효과로서의 생산물은 전혀 제공하지 않으면서 그동안 로동력과 생

산수단을 가져가는 작업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년간에 련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로동력과 생산수단을 가져갈뿐만아니라 또한 생활수단과 생산수단을 제공하기도 하는 생산부문에 손해를 주지 않고 수행될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생산에 있어서도 자본주의적생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로동기간이 비교적 짧은 생산부문들의 로동자들이 생산물을 제공하지 않고 생산물을 가져가는 기간은 역시 짧을것이지만 한편 로동기간이 긴 생산부문들은 생산물을 제공하기전에 장기간 계속하여 생산물을 가져갈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은 그 로동과정의 물질적조건들에서 발생하는것이고 그 로동과정의 사회적형태에서 발생하는것이 아니다. 화폐자본은 사회적생산에서는 없어진다. 사회는 로동력과 생산수단을 각이한 생산부문들에 분배한다. 생산자들은 례컨대 지도증권을 받고 그것으로 사회의 소비용재고중에서 자기들의 로동시간에 해당한 분량을 가져갈수도 있을것이다. 이런 증권은 화폐가 아니다. 그것은 류통하지 않는다.

요컨대 화폐자본에 대한 필요가 로동기간의 길이에서 발생하는 한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사정에 의하여 초래되는것이다. **첫째로**, 일반적으로 화폐는 각 개별적자본이(신용은 도외시하고) 생산자본으로 전화되기 위하여 우선 취하지 않을수 없는 형태라는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자본주의적생산, 일반적으로 상품생산의 본질로부터 나오는것이다. — **둘째로**, 필요한 화폐선대의 크기는 비교적 긴 기간에 걸쳐 로동력과 생산수단이 부단히 사회에서 나가는데 이 기간에는 화폐로 재전화될수 있는 생산물이 사회에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정에 의하여 생긴다. 선대되여야 할 자본이 화폐형태로서 선대되지 않을수 없다는 첫째사정은 이 화폐자체의 형태가

어떻든간에, 즉 그것이 금속화폐이든, 신용화폐이든, 가치기호 또는 기타 무엇이든간에 다 제거되지 않는다. 둘째 사정은, 어떠한 화폐매개물에 의하여 또는 어떠한 생산형태하에서 아무런 등가물도 류통에 다시 투입되지 않고 로동, 생활수단 및 생산수단이 끌려나가는가 하는것에 의하여서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

제 19 장(35)

대상에 관한 이전의 제 서술

1. 중농학파

께내의 《경제표》[86]는 다음과 같은것을 얼마 안되는 큰 선으로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즉 가치로 보아 일정한 국민적생산의 년간생산성과가 다른 사정들에 변화가 없는 한 어떻게 그 단순재생산, 즉 동일한 규모에서의 재생산이 진행될 수 있도록 류통을 통하여 분배되는가 하는것이다. 생산기간의 출발점으로 되고있는것은 적절하게도 전해의 수확이다. 무수한 개별적류통행위가 즉시로 그것들의 특징적인 사회적 대량운동—기능적으로 규정된 큰 경제적인 사회계급간의 류통—으로서 총괄되여있다. 여기에서 우리의 흥미를 끄는것은 총생산물의 일부분—그것은 같은 총생산물의 다른 각 부분과 마찬가지로 사용대상으로서는 과거의 년간로동의 새로운 성과인데—이 동시에 같은 현물형태로 재현하는 원 자본가치의 담당자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이다. 이 부분은 류통하지 않고 그대로 그 생산자인 차지농업가계급의 수중에 남아서 거기에서 다시 자본으로서의 복무를 수행한다. 께내는 년간생산물의 이 불변자본부분중에 적절하지 못한 요소들도 포함시키고있지

(35) 여기에서 제8고가 시작되고있다.

만 그러나 그는 인간로동의 투하분야중에서 오직 농업만이 잉여가치를 생산하며 따라서 자본주의적관점에서는 오직 농업만이 실제로 생산적인 투하분야라는 그의 제한된 식견의 덕택으로 도리여 요점을 파악하고있다. 경제적재생산과정은 그 특수한 사회적성격이 어떠하든간에 이 령역(농업)에서는 언제나 자연적재생산과정과 뒤엉켜있다. 자연적재생산과정의 얼핏 보아도 분명한 제 조건은 경제적재생산과정의 제 조건을 명백하게 하여주며 다만 류통의 요술때문에 발생하는데 불과한 사고의 혼란을 제거한다.

어떤 학문체계의 딱지가 다른 물품의 딱지와 다른 점은 특히 그것이 구매자뿐만아니라 흔히 판매자까지도 속인다는 것이다. 께내자신과 그의 직접적제자들은 자기들의 봉건적간판을 그대로 믿고있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학자선생들도 그러하다. 그러나 사실상 중농주의적체계는 자본주의적생산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파악이다. 산업자본의 대표자—차지농업가계급—는 경제운동의 전체를 지도한다. 농사는 자본주의적방식으로, 즉 대규모적인 자본주의적차지농업가의 기업으로서 경영된다. 토지의 직접적경작자는 임금로동자이다. 생산은 소비품을 낳을뿐만아니라 그 가치도 낳는다. 그러나 생산의 추진적동기는 잉여가치의 획득이며 이 잉여가치가 태여나는 장소는 생산분야이고 류통분야가 아니다. 류통에 의하여 매개되는 사회적재생산과정의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세 계급중에서 《생산적》로동의 직접적착취자이며 잉여가치의 생산자인 자본주의적차지농업가는 잉여가치의 단순한 취득자와 구별된다.

중농주의적체계의 자본주의적성격은 이미 그 전성기에도 일방으로는 랭개[87]와 마블리의 반대론과 타방으로는 자유로

운 소토지소유의 옹호자들의 반대론을 불러일으켰다.

재생산과정의 분석에 있어서 A. 스미스의 퇴보가(36) 더욱 눈에 뜨이는것은 그가 께내의 옳은 분석에 가일층의 가공을 가하여 례컨대 께내의 《시초의 선대》와 《년년의 선대》를 《고정》자본과 《류동》자본(37)으로 일반화하였을뿐만아니라 때로는 완전히 중농학파적오유에로 되돌아갔기때문이다. 례컨대 차지농업가가 다른 어떤 종류의 자본가보다도 큰 가치를 생산한다는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같은 량의 자본으로, 차지농업가의 자본보다 더 많은 량의 생산적로동을 움직이는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의 로동종복뿐만아니라 그의 역축도 또한 생산적로동자이다.》(로동종복에게는 기분좋은 인사이다!) 《농사에서는 자연도》 인간과 함께 **로동한다**. 그리고 **자연의 로동에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지만** 그 생산물은 **비용이 제일 드는 로동자의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그 가치를** 가진다.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들은 자연의 비옥도를 높이기 위한것이라기보다는—그것도 있기는 하지만—오히려 자연이 인간에게 가장 유용한 식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것같이 보인다. 찔레나무나 가시나무가 무성한 들판이 가장 잘 경작된 포도원이나 곡식밭보다 못지 않게 많은 식물을 제공한다는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재배와 경작은 자연의 능동적비옥도를 북돋운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조절하기 위하여 작용하는 일이 많다. 그리고 농사의 모든 로동이 다 수행된후에도 자연이 해야 할 일의 많은

---

(36) 《자본론》 제2판 제1권, 612페지, 주 32[88]

(37) 여기에서도 몇몇 중농주의자들, 특히 뛰르고가 스미스를 위하여 길을 열어주었다. 뛰르고는 이미 께내나 기타 중농주의자들보다도 더 빈번히 《선대》라는 말 대신에 《자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있으며 게다가 또 제조업자의 선대 또는 자본을 차지농업가의 선대 또는 자본과 동일시하고있다. 례컨대, 《그 사람들(제조업기업가)과 마찬가지로 그들(차지농업가, 즉 자본주의적차지농업가들)도 또한 자기의 자본을 회수하는 이상으로 얻는것이 있어야 한다. …》(《뛰르고저작집》 대르편찬, 1844년 빠리판, 제1권, 40페지)

부분이 남아있는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농사에 종사하는 로동자나 역축(!)은 제조업의 로동자와 마찬가지로 그들자신의 소비와 동일한 가치, 또는 그들을 사용하는 자본과 동일한 가치를 자본가의 리윤과 함께 재생산할뿐만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가치의 재생산을 진행하는것이다. 그들은 차지농업가의 자본과 그의 전체 리윤이상으로 더 토지소유자의 지대의 재생산도 진행하는것이 보통이다. 지대는 토지소유자가 차지농업가에게 사용하도록 임대한 자연력의 산물이라고 볼수 있다. 지대는 이 자연력의 추정된 크기에 따라, 바꾸어말하면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추정되는 토지비옥도에 따라 크기도 하고 적기도 하다. 지대는 인간의 일이라고 볼수 있는 모든것을 공제 또는 보상한후에 남는 자연의 일이다. 그것은 총생산물의 4분의 1보다 작은 일은 드물고 그 3분의 1보다 큰 일이 많다. 동일한 량의 생산적로동이 제조업에 사용되여도 결코 이렇게 큰 재생산을 진행할수는 없다. 제조업에서는 자연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것을 인간이 한다. 그리고 재생산은 언제나 그것을 수행하는 능동적요인들의 힘에 비례하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 농사에 투하되는 자본은 제조업에 사용되는 동일한 량의 어떤 자본보다도 더 많은 생산적로동을 움직일뿐만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그것에 의하여 사용되는 생산적로동의 량에 비하여 한 나라의 토지와 로동의 년간생산물에, 그 나라 주민의 현실적부와 수입에, 제조업에 사용되는 자본이 첨가하는것보다도 훨씬 더 큰 가치를 첨가한다.》(제2편 제5장, 242~243페지)

A, 스미스는 제2편 제1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종자의 전체 가치도 역시 고유한 의미에서는 고정자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자본=자본가치이며 자본가치는 《고정》형태로 존재한다.

《종자는 토지와 곡창사이를 왔다갔다하지만 결코 소유자를 변경하지 않으며 따라서 현실적으로 류통하지 않는다. 차지농업가는 종자

를 판매하는데 의하여 그의 리윤을 얻는것이 아니라 종자를 증식시키는데 의하여 그것을 얻는다.》(186페지)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의 견해의 협애성이 나타나고있다. 즉 스미스는 불변자본의 가치가 갱신된 형태로서 재현하는것을 이미 께내가 한것처럼 재생산과정의 중요한 계기로 보려고 하지 않고 다만 류동자본과 고정자본에 대하여 자기가 하고있는 구별을 위한 하나의 례증을, 그것도 그릇된 례증을 보고있을따름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시초의 선대》와 《년년의 선대》를 스미스가 《고정자본》과 《류동자본》으로 번역한 그 그가운데 있는 진보는 《자본》이라는 용어의 개념이 《농업적》적용범위에 대한 중농학파의 특별한 고려에 구애되지 않고 일반화되여있다는것이며 거기에 있는 퇴보는 《고정》과 《류동》이 결정적인 구별로서 리해되고 견지되고있다는것이다.

2. 애담 스미스

A. 스미스의 일반적관점

A. 스미스는 제1편 제6장 42페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어떤 사회에서나 매개 상품의 가격은 결국 이 세 부분(로임, 리윤, 지대)중의 어느 하나로 또는 세개 전체로 분해된다. 그리고 진보한 어떤 사회에서나 이 세 부분은 모두 다소간에 대다수의 상품의 가격에 구성부분으로서 들어간다.》(38) 또 43페지에서 말하는바에 의하

(38) 《대다수의 상품의 가격》이라는 말을 독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면 《로임과 리윤과 지대는 모든 수입의, 또 **모든 교환가치의 세 근원**이다.》

A. 스미스의 《상품들의 가격의》 또는 《모든 교환가치의 구성부분》에 관한 이와 같은 학설을 우리는 후에 더 상세히 연구할것이다.—그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이러한것은 개별적으로 본 매개 특수한 상품에 대하여 말할수 있으므로 매개 나라의 토지와 로동의 **년간생산물전체**를 이루는 총체로서의 모든 상품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수 없다. 이 년간생산물의 **총가격 또는 총교환가치**는 그와 같은 세 부분으로 **분해**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그 나라의 각이한 주민들간에서 그들의 로동의 **임금**으로서 또는 그들의 자본의 **리윤**으로서 또는 그들의 토지소유의 **지대**로서 **분배**되지 않으면 안된다.》(제2편 제2장, 190페지)

A. 스미스는 그와 같이 개별적으로 본 모든 상품들의 가격과 《매개 나라의 토지와 로동의 년간생산물의…총가격 또는 총교환가치》를 임금로동자와 자본가와 토지소유자의 수입의 세 원천으로, 즉 로임과 리윤과 지대로 분해하고나서 그는 부득불 두름길을 걸어 제4요소, 즉 자본이란 요소를 밀수입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것은 총수입과 순수입을 구별하는데 의하여 수행된다.

《한 큰 나라의 전체 주민의 **총수입**은 그들의 토지와 그들의 로동의 **년간생산물전체**를 포함한다. **순수입**은 첫째로, 그들의 **고정자본의 유**

한마디 한다면 다음것은 A. 스미스자신이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하고있는가를 보여준다. 례컨대 바다고기의 가격에는 지대는 들어가지 않고 로임과 리윤만이 들어간다. 스코틀랜드의 마노가격에는 로임만 들어간다. 즉 《스코틀랜드의 일부 지방들에서는 빈민들이 해변에서 스코틀랜드마노라는 이름으로 알려져있는 얼룩덜룩한 자갈을 모으는것을 업으로 삼고있다. 돌세공인이 이 대가로 그들에게 지불하는 가격은 그들의 로임만으로써 이루어지고있다. 왜냐 하면 지대와 리윤은 그 가격의 어느 부분도 구성하지 않기때문이다.》

지비률, 둘째로, 그들의 **류동자본의 유지비률 공제한후에** 그들이 처분할수 있는것으로 남는 **부분**을 포함한다. 바꾸어말하면 그들이 자기들의 자본에 손을 대지 않고 자기 소비저장에 넣을수 있는 부분, 즉 그들의 생계와 편의와 오락에 지출될수 있는 부분을 포함한다. 그들의 실질적부도 역시 그들의 총수입에가 아니라 그들의 순소득에 비례한다.》(우와 같은 책, 190페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것을 말하여두자.

1) A. 스미스는 여기에서 분명히 단순재생산만을 론하고 있을뿐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 또는 축적은 론하고있지 않다. 그는 기능하고있는 자본의 유지를 위한 지출에 관하여서만 론하고있다. 《순》 수입은 사회나 개별적자본가의 년간 생산물중 《소비기금》에로 들어갈수 있는 부분과 같으나 이 기금의 규모는 기능하고있는 자본을 침식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개인적생산물에서나 사회적생산물에서나 그 가치의 일부분은 로임으로나 리윤 또는 지대로나 분해되지 않고 자본으로 분해된다.

2) A. 스미스는 《총수입》과 《순수입》과의 구별이라는 말의 유희에 의하여 그자신의 리론으로부터 도피하고있다. 개별적자본가나 자본가계급전체 또는 소위 국민은 생산에서 소비된 자본 대신에 상품생산물을 얻는데 그 가치—이 생산물자체의 비례적부분들로 표시될수 있는—는 한편으로는 소비된 자본가치를 보상하고 따라서 수입을 형성한다. 그리고 더욱 글자그대로 《Revenue》(《revenue》는 동사 《revenir》의 분사인데 《다시온다》는 뜻이다.)를, 그러나 주의하라, 자본수입 또는 자본소득을 형성한다. 다른 한편 그 가치는 《그 나라의 각이한 주민들간에 그들의 로동의 임금으로서 또는 그들의 자본의 리윤으로서 또는 그들의 토지

소유의 지대로서 분배되는》 가치구성부분들—일상생활에서 수입이라고 리해되고있는것—을 형성한다. 따라서 전체 생산물의 가치는 개별적자본가를 위한것이든 전체 나라를 위한것이든간에 그 누구를 위한 수입을 형성한다.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는 자본수입을,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과는 다른 《수입》을 형성한다. 이리하여 상품의 가치를 그 구성부분으로 분석할 때에는 멀어져갔던것이 뒤문을 통하여—《수입》이라는 용어의 이중성에 의하여—다시 도입되고있다. 그러나 《소득으로서 취득》될수 있는것은 이미 생산물중에 있는 그 가치구성부분들뿐이다. 만일 **자본**이 수입으로서 들어와야 한다면 자본은 미리 지출되여있지 않으면 안된다.

A. 스미스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통의 최저리윤률은 어느 자본사용에서도 피할수 없는 우연한 손실들을 보상하기에 충분한것보다 언제나 얼마간 크지 않으면 안된다. 순수한 리윤 또는 순리윤을 표시하는것은 오직 이 초과분뿐이다.》

〔어느 자본가가 리윤을 필요한 자본지출로 리해하는가?〕

《총리윤이라고 불리우는것은 흔히 이 초과분뿐만아니라 이와 같은 이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보류되는 부분도 포함한다.》(제1편 제9장, 72페지)

그러나 이것은 총리윤의 일부분으로서 본 잉여가치의 일부분은 생산을 위한 보험기금을 이루지 않을수 없다는것에 불과하다. 이 보험기금을 조성하는것은 잉여로동의 일부분이며 그 잉여로동은 그러한 한에 있어서는 직접 자본을 생산한다. 즉 재생산을 위하여 예정된 기금을 생산한다. 고정자본 등등의 《유지》를 위한 지출에 관하여 말한다면(우에서 인

용한 개소를 보라) 소비된 고정자본을 새로운 고정자본에 의하여 보상하는것은 새로운 자본투하를 이루는것이 아니라 낡은 자본가치를 새로운 형태로 갱신하는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A. 스미스가 역시 유지비에 넣고있는 고정자본의 수리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 비용은 선대자본의 가격의 일부분을 이룬다. 자본가는 이것을 한꺼번에 투하할 필요는 없으며 자본이 기능하고있는 동안에 점차적으로 필요에 따라 투하하며 또 이미 획득한 리윤중에서 투하할수 있다는것은 이 리윤의 원천을 조금도 변경시키는것이 아니다. 이 리윤을 낳는 가치구성부분이 보여주는것은 다만 로동자는 보험기금을 위하여 잉여로동을 제공하는것과 마찬가지로 보수기금을 위하여서도 잉여로동을 제공한다는것뿐이다.

다음에 A. 스미스가 우리에게 말하고있는것은 순수입, 즉 특수한 의미에서의 수입에서 고정자본은 전부 제외되여야 하지만 또 류동자본중 고정자본의 유지나 보수나 그리고 그 갱신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도 전부 제외되여야 하며 사실상 소비기금으로서 예정된 현물형태로 가지고있지 않은 전체 자본이 제외되여야 한다는것이다.[89]

《고정자본의 유지를 위한 전체 지출은 분명히 사회의 순수입에서 제외되지 않으면 안된다. 유용한 기계와 공구…를 정비해두는데 필요한 원료나 이러한 원료를 필요한 모습으로 전화시키는데 필요한 로동의 생산물이나 다 결코 이 수입의 일부분을 이룰수 없다. 이 로동의 **가격**은 확실히 그 수입의 일부분을 이룰수 있다. 왜냐 하면 그 로동에 사용되는 로동자들은 그들의 임금의 전체 가치를 그들의 직접적소비저장에 투하할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로동에 있어서는 그 **가격**이나》 (즉 이 로동에 지불되는 임금이나) 《**생산물**이나》 (이 로동이 구현되여있는 생산물이나) 《다 이 소비저장에 들어간다. 가격은

로동자들의 소비저장으로 들어가고 생산물은 이 로동자들의 로동에 의하여 생계와 편의나 오락이 중대되는 다른 사람들의 소비저장으로 들어간다.》(제2편 제2장, 190~191페지)

A. 스미스는 여기에서 **생산수단**의 생산에 종사하는 로동자와 **소비수단**의 직접적생산에 종사하는 로동자간의 극히 중요한 구별에 봉착한다. 전자의 상품생산물의 가치는 로임의 총액과 같은 한 구성부분, 즉 로동력의 구매에 투하된 자본부분의 가치와 같은 한 구성부분을 포함한다. 이 가치부분은 물체로서는 이 로동자들에 의하여 생산된 생산수단의 일정한 부분으로서 존재한다. 그들이 로임으로서 받은 화폐는 그들에게는 수입으로 되지만 그러나 그들의 로동은 그들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나 소비될수 있는 생산물을 생산한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산물자체는 년간생산물중 《순수입》이 다만 거기에서만 실현될수 있는 사회적소비기금을 제공하기로 예정된 부분의 어떤 요소도 이루지 않는다. A. 스미스가 여기에서 로임에 대하여 타당한것은 생산수단의 가치중 잉여가치로서 리윤이나 지대라는 범주하에서(우선 첫째로) 산업자본가의 수입을 이루는 구성부분에 대하여도 타당하다는것을 부언할것을 잊고있다. 이러한 가치구성부분들도 생산수단의 형태로, 즉 소비될수 없는 형태로 존재한다. 그것들은 그것들이 화폐화된 후에라야 비로소 제2종류의 로동자들에 의하여 생산된 소비수단중에서 그 가격에 해당한 분량을 끌어내여 이것을 그러한 가치구성부분의 소유자들의 개인적소비기금에 옮길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면 더구나 A. 스미스는 다음과 같은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을것이다. 즉 1년간에 생산되는 생산수단의 가치중 이 생산분야내에서 기능하는 생산수단—생산수단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

수단—의 가치와 같은 부분, 따라서 이 분야에서 사용되는 불변자본의 가치와 같은 부분은 그것이 취하고있는 현물형태에 의해서뿐만아니라 그 자본기능에 의해서도 수입을 형성하는 어떤 가치구성부분에서도 절대로 제외된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제2종류의 로동자—직접소비수단을 생산하는 로동자—에 관하여서는 A. 스미스의 규정은 완전히 정확한것은 아니다. 즉 그는 이 종류의 로동에서는 로동의 가격도 생산물도 량자가 다 직접적소비기금으로 들어간다고 말한다.

《가격(즉 로임으로서 받는 화폐)은 **로동자**들의 소비저장으로 들어가고 생산물은 이 로동자들의 로동에 의하여 생계나 편의나 오락이 증대되는 **다른 사람들**의 소비저장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로동자는 자기의 로동의 《**가격**》, 즉 자기의 로임으로 지불되는 화폐를 먹고 살수는 없다. 그가 이 화폐를 실현하는것은 그것으로써 소비수단을 구매하는데 의하여서이다. 이 소비수단의 일부분은 그자신이 생산한 상품종류일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자신의 생산물이 로동착취자의 소비로만 들어가는것일수도 있다.

A. 스미스는 고정자본을 이와 같이 한 나라의 《순수입》에서 완전히 제외하고나서 다음과 같이 계속한다.

《이와 같이 고정자본의 유지를 위한 전체 지출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순수입에서 제외되는것이지만 류동자본의 유지를 위한 지출은 그렇지 않다. 이 류동자본을 구성하는 네부분 즉 화폐, 생활수단, 원료, 완성생산물중 뒤의 세 부분은 이미 말한바와 같이 규칙적으로 류동자본으로부터 끌려나와 사회의 고정자본으로 옮겨지든가 또는 직접적소비에 예정된 저장으로 옮겨진다. 소비될수 있는 물품중 전자의》 (고정자본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남김없이 후자로》

〔직접적소비에 예정된 저장으로〕《들어가며 사회의 순수입의 일부분을 이룬다. 그러므로 류동자본의 이 세 부분의 유지는 사회의 순수입중 년간생산물중에서 고정자본의 유지에 필요한 부분이외에는 어떤 부분도 감소시키지 않는다.》(제2편 제2장, 191～192페지)

이것은 류동자본중 생산수단의 생산에 복무하지 않는 부분은 소비수단의 생산으로, 즉 년간생산물중 사회의 소비기금으로 예정된 부분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동의반복에 불과하다. 그러나 바로 그뒤를 이어서 말하고있는것은 중요하다.

《한 사회의 류동자본은 이 점에서는 한 개인의 류동자본과 다르다. 한 개인의 류동자본은 그의 순수입에서 완전히 제외되여있으며 결코 그 일부분을 이룰수 없다. 그의 순수입은 오직 그의 리윤으로써만 이루어질수 있을뿐이다. 그러나 비록 각 개인의 류동자본은 그 개인이 속한 사회의 류동자본의 일부분을 이루고있다 하더라도 그때문에 결코 무조건적으로 사회의 순수입에서 제외되는것은 아니며 그 일부분을 이룰수 있는것이다. 비록 소매상인의 상점에 있는 전체 상품들은 결코 그자신이 직접적소비에 예정된 저장에 포함되여서는 안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소비기금에는 들어갈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것은 다른 재원에서 얻은 수입에 의하여 소매상인의 자본도 그들의 자본도 감소시키지 않고 소매상인에게 그러한 상품의 가치를 그의 리윤과 함께 규칙적으로 보상하여주는 사람들이다.》(우와 같음)

그리하여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것을 듣게 된다.

1) 매 개별적자본가의 고정자본과 마찬가지로, 또 그 재생산(기능을 스미스는 잊고있다.)과 유지에 필요한 류동자본과 마찬가지로 소비수단의 생산에서 작용하는 그의 류동자본도 전부 **그의** 순수입에서 제외되여있으며 그의 순수입은 다만 그의 리윤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의 상품생산물중 그의 자본을 보상하는 부분은 그의 수입을 구성하는 가치구성부분

으로 분해될수 없는것이다.

2) 매 개별적자본가의 류동자본이 사회의 류동자본의 일부분을 이루고있는것은 매 개별적고정자본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3) 사회의 류동자본은 개별적류동자본의 총계에 불과하지만 매 개별적자본가의 류동자본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있다. 매 개별적자본가의 류동자본은 결코 **그의 수입**의 일부분을 이룰수 없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의 류동자본의 일부분(즉 소비수단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동시에 **사회의 수입**의 일부분을 이룰수 있다. 또는 스미스가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그것은 반드시 사회의 순수입을 년간생산물의 일부분만큼 감소시키는것은 아니다. A. 스미스가 여기에서 류동자본이라고 부르고있는것은 사실상 소비수단을 생산하는 자본가가 1년간에 류통에 투입하는, 1년간에 생산되는 상품자본이다. 그들의 이 년간상품생산물전체는 소비될수 있는 물품들로써 이루어지며 따라서 사회의 순수입(로임도 포함하여)이 실현 또는 지출되는 기금을 이룬다. A. 스미스는 소매상인의 상점에 있는 상품을 례로서 선택할것이 아니라 산업자본가들의 상품창고에 쌓여있는 대량의 화물을 선택하여야 할것이였다.

만약 A. 스미스가 앞에서는 그가 고정자본이라고 부르는것의 재생산을 고찰할 때에 그리고 다음에는 그가 류동자본이라고 부르는것의 재생산을 고찰할 때에 그의 머리에 떠오른 사상의 단편들을 총괄하여보았다면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을것이다.

Ⅰ. 사회의 년간생산물은 두 부류로써 이루어진다. 제1부류는 생산수단을 포괄하며 제2부류는 소비수단을 포괄한

다. 이 량자는 따로따로 취급하여야 한다.

Ⅱ. 년간생산물중 **생산수단**으로써 이루어지는 부분의 총가치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한 가치부분은 다만 이러한 생산수단의 생산에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에 불과하며 따라서 갱신된 형태로 재현하는 자본가치에 불과하다. 제2부분은 로동력에 투하된 자본의 가치와 같다. 즉 이 생산분야의 자본가들에 의하여 지불된 로임총액과 같다. 끝으로 제3가치부분은 이 부류의 산업자본가들의 리윤—지대도 포함한—의 원천을 이룬다.

제1구성부분, 즉 A. 스미스에 의하면 이 제1부류에서 사용되는 개별적자본전체의 고정자본부분이 재생산된것은 개별적자본가의것이든 사회의것이든간에 그것의 《순수입에서 분명히 제외되여있으며 결코 그 일부분을 이룰수 없다.》 그것은 언제나 자본으로서 기능하며 결코 수입으로서 기능하지 않는다. 그러한 한에 있어서는 매 개별적자본가의 《고정자본》도 사회의 고정자본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그러나 사회의 년간생산물중의 생산수단으로써 구성되여있는 다른 부분의 다른 가치부분들—따라서 또 이 생산수단총량중의 해당한 부분들에 존재하는 가치부분들—은 동시에 **이 생산에 참가한 모든 당사자들을 위한 수입** 즉 로동자들을 위한 임금, 자본가들을 위한 리윤과 지대를 이룬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부분은 **사회를 위하여는** 수입을 이루는것이 아니라 **자본**을 이룬다. 비록 사회의 년간생산물은 다만 그 사회에 속하는 개별적자본가들의 생산물의 총계로써만 이루어지고있을뿐이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그 성격으로 보아 생산수단으로서 기능할수 있을따름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수단으로서 기능할수 있는 부분까지도 새로운 생산의 원료나 보조재료로서 복무하도

록 예정되여있는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그러한것으로서—즉 자본으로서—기능하는것은 그 생산자들의 수중에서가 아니라 그 사용자들의 수중에서이다. 즉

Ⅲ. 제2부류의 자본가, 직접 **소비수단**을 생산하는 자본가의 수중에서이다. 그러한 부분은 제2부류의 자본가들을 위하여 소비수단의 생산에서 소비된 자본을(그것이 로동력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에서는, 따라서 이 제2부류의 로동자들의 로임총액이 아닌 한에서는) 보상하는데 한편 이 소비된 자본, 즉 이제는 소비수단을 생산하는 자본가들의 수중에서 소비수단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본은 그것으로서는—따라서 사회적관점에서는—**제1부류의 자본가들과 로동자들이 그들의 수입을 실현하는 소비기금을 이룬다.**

만일 A. 스미스가 여기까지 분석을 추진하였더라면 전체 문제의 해결에 거의 도달하였을것이다. 그는 사실상 문제해결의 직전에 있었다. 왜냐 하면 그는 이미 다음과 같은것을 포착하고있기때문이다. 즉 사회의 년간총생산물을 이루는 상품자본의 **한 종류**(생산수단)의 가치의 일정한 부분은 그 생산에 종사하는 개별적로동자들과 자본가들을 위한 수입을 이루지만 그러나 사회의 수입의 구성부분을 이루지는 않으며 또 **다른** 종류(소비수단)의 가치의 일부분은 그 종류의 상품자본의 개별적소유자, 즉 이 투자분야에 활동하는 자본가들을 위한 자본가치를 이루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만 사회적수입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것을 포착하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것만은 상술한것으로부터도 이미 명백하다.

첫째로, 사회적자본은 다만 개별적자본들의 총계와 같을

따름이며 따라서 사회의 년간상품생산물(또는 상품자본)도 이러한 개별적자본의 상품생산물의 총계와 같을따름이며 따라서 또 매 개별적상품자본에 적용되는 상품가치의 그 구성부분들로의 분해는 전체 사회의 상품자본에도 적용되지 않으면 안되며 또 결국은 실제에 있어서도 적용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성부분들이 사회적총재생산과정에 나타날 때에 취하는 현상형태는 **다른** 형태인것이다.

둘째로, 단순재생산의 기초우에서도 로임(가변자본)과 잉여가치의 생산이 진행될뿐만아니라 새로운 불변자본가치의 직접적생산도 진행된다. 비록 로동일은 다만 두 부분으로써 이루어질뿐이며 그 한 부분에서는 로동자는 가변자본을 보상하며 사실상은 그의 로동력의 구매를 위한 등가를 생산하며 제2부분에서는 잉여가치(리윤, 지대 등)를 생산하는것이기는 하지만.—즉 생산수단의 재생산에 지출되는—그리고 그 가치가 로임과 잉여가치로 분할되는—매일의 로동은 소비수단의 생산에 지출된 불변자본부분을 보상하는 새로운 생산수단에서 실현된다.

주요한 곤난들은—그러나 그 최대의 부분은 상술한바에 의하여 이미 해결되였으나—그것은 축적의 고찰에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재생산의 고찰에서 나타난다. 그렇기때문에 A.스미스(제2편)의 경우에도 또 그 이전에는 께내(《경제표》)의 경우에도 사회의 년생산물의 운동과 류통에 의하여 매개되는 그 재생산이 문제로 될 때에는 언제나 단순재생산이 출발점으로 되는것이다.

B. 스미스에 의한 교환가치의 v+m으로의 분해

A. 스미스의 교조에서는 매 개별적상품—따라서 사회의 년간생산물을 구성하는 모든 상품의 합계(그는 어디서나 정당하게도 자본주의적생산을 전제로 한다.)—의 가격 또는 교환가치는 세 구성부분으로 구성되여있다고 하거나 로임, 리윤, 지대로 분해된다고 하는데 이 교조는 결국 상품가치=v+m, 즉 상품가치는 선대가변자본가치에 플루스 잉여가치와 같다는것으로 귀착될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리윤과 지대를 우리가 m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공통한 단위로 환원시킨다는 것은 다음의 인용문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A. 스미스가 우리에게 똑똑히 용허하는바이다. 다음의 인용문에서는 우리는 우선 부차적인 점들은 일체 무시하기로 한다. 따라서 특히 상품가치는 우리가 오직 v+m으로서 표시하는 제 요소들로써만 이루어진다는 교조로부터 모든 외관상 또는 사실상 배리되는 점들은 일체 무시하기로 한다.

제조업에서는

《로동자가 재료에 첨가하는 가치는… 두 부분으로 나뉘여지며 그 한부분은 그들의 로임을 지불하고 다른 한 부분은 그들의 고용주가 재료나 임금으로서 선대한 전체 자본에 대한 고용주의 리윤을 지불한다.》(제1편 제6장, 40~41페지)—《제조업자 (제조업로동자) 는 그들의 고용주로부터 임금의 선대를 받지만 사실상 고용주에게 조금도 비용을 들이게 하는것이 아니다. 왜냐 하면 통례로 이 로임의 가치는 그의 로동이 가해진 대상의 증대된 가치중에 리윤과 함께 보존되기때문이다.》(제2편 제3장, 221페지)

자본중에서 《생산적로동의 유지》에 투하되는 부분은 《그》〔고

용주) 《를 위한 자본의 기능을 수행한 다음에 그들》 (로동자들) 《의 수입으로 된다》 (제2편 제3장, 223페지).

A. 스미스는 방금 인용한 장에서 다음과 같이 명백히 말하고있다.

《매개 나라의 토지와 로동의 년간생산물의 전체는…자연히 두 부분으로 나뉘여진다. 그중 한 부분, 흔히는 최대부분은 우선 자본을 보상하고 자본으로부터 떼낸 생활수단이나 원료나 완성생산물을 갱신하는데 사용되여야 한다. 다른 부분은 이 자본의 소유자를 위하여 그의 **자본리윤**으로서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하여 그의 **토지**의 지대로서 —수입으로 되여야 할것이다.》 (222페지)

앞에서 우리가 A. 스미스에게 들은바에 의하면 다만 자본의 한 부분만이, 즉 생산적로동의 구매에 투하된 부분만이 동시에 다른 어떤 사람의 수입을 이룬다. 이 부분—가변자본—은 우선 고용주의 수중에서 그를 위하여 《자본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다음에는 생산적로동자 자신을 위한 《수입을 이룬다》. 자본가는 자기의 자본가치의 일부분을 로동력으로 전화시키며 또 바로 그렇게 하는데 의하여 그것을 가변자본으로 전화시킨다. 오직 이 전화에 의하여서만 자본의 이 부분뿐만아니라 그의 전체 자본이 산업자본으로서 기능한다. 로동자—로동력의 판매자—는 로임이라는 형태로 로동력의 가치를 받는다. 그의 수중에서는 로동력은 판매할수밖에 없는 상품이며 그가 그것을 팔아서 살아가는 상품, 따라서 그의 수입의 유일한 원천을 이루는 상품이다. 로동력은 그 구매자인 자본가의 수중에서만 비로소 가변자본으로서 기능한다. 그리고 자본가는 구매가격자체를 다만 외관상으로 선대할따름이다. 왜냐 하면 그 가치는 벌써 로동자에 의하여 미

리 자본가에게 제공되여있기때문이다.

이리하여 A. 스미스는 제조업에서의 생산물의 가치=v+m (여기에서는 m=자본가의 리윤)이라는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농업에서는 로동자들은

《그들자신의 소비와, 또는 그들을 일시키는》〔가변〕《자본과 자본가의 리윤과 같은 가치의 재생산》외에—또 《차지농업가의 자본과 그의 전체 **리윤**을 넘어서 규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지대**의 재생산도 진행한다.》(제2편 제5장, 243페지)

지대가 토지소유자의 수중으로 들어간다는것은 우리가 고찰하고있는 문제에 대하여는 아무래도 좋다. 지대는 토지소유자의 수중으로 들어가기전에 차지농업가의 수중에, 즉 산업자본가의 수중에 있지 않으면 안된다. 지대는 그것이 어떤 사람의 수입으로 되기전에 생산물의 가치의 한 구성부분을 이루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A. 스미스자신에 있어서는 지대도 리윤도 다만 생산적로동자가 그자신의 로임, 즉 가변자본의 가치와 함께 부단히 재생산하는 잉여가치의 구성부분들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대도 리윤도 잉여가치 m의 부분들이며 따라서 A. 스미스에게 있어서는 모든 상품의 가격이 v+m으로 분해되는것이다.

모든 상품(따라서 또 년간상품생산물)의 가격은 로임+리윤+지대로 분해된다는 교조는 스미스의 저작자체를 단속적으로 관통하고있는 심오한 부분에서는 각 상품의 가치는 따라서 사회의 년간상품생산물의 가치도 v+m에, 로동력에 투하되여 로동자들에 의하여 부단히 재생산되는 자본가치 플루스 로동자의 로동에 의하여 첨가되는 잉여가치와 같다는 형태를 취한다.

A. 스미스에게 있어서의 이 최후결과는 동시에—아래의 설명을 보라—상품가치가 분해될수 있는 제 구성부분에 대한 그의 일면적분석의 근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부분이 동시에 생산에서 기능하는 각이한 계급들을 위한 각이한 수입원천을 이룬다는 사정은 이러한 구성부분들의 각개의 량적규정이나 그것들의 가치총액의 한계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A. 스미스가

《로임과 리윤과 지대는 모든 수입의 그리고 또 모든 교환가치의 세 근원이며 다른 모든 소득은 결국은 이러한 근원의 하나로부터 파생한것이다.》(제1편 제6장, 43페지)

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여러가지 혼란이 쌓여있다.

1) 로동하든 하지 않든간에 직접 재생산에 참가하는 사회성원이 아닌 사람들은 년간상품생산물중에서의 그들의 몫—즉 그들의 소비수단—을 직접으로는 생산물이 직접 귀속하는 계급들—생산적로동자와 산업자본가와 토지소유자—의 수중으로부터 끌어낼수밖에 없다. 그러한 한에 있어서는 그들의 수입은 실질적으로는 로임(생산적로동자의)과 리윤과 지대에서 파생한것이며 따라서 이 본원적수입에 대하여 파생적 수입으로서 나타나는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의미에서의 파생적수입을 취득하는 사람들은 왕, 성직자, 교수, 매음부, 병사 등등으로서의 그들의 사회적기능에 의하여 이 수입을 얻는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자기들의 이러한 기능들을 자기들의 수입의 근원이라고 볼수 있다.

2) 여기에서 A. 스미스의 엉터리없는 착오가 그 절정에 이르고있다. 그는 상품의 여러 가치구성부분들과 이것들에 구

현되여있는 가치생산물의 총액을 정확히 규정하고 다음에 이러한 구성부분들이 어떻게 그와 같은 수의 각이한 수입원천을 이루는가를 론증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고있다(39). 이와 같이 가치로부터 수입을 파생시키고나서 다음에는—그런데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우세한 견해이지만—반대로 제 수입을 《모든 교환가치의 구성부분》으로부터 《모든 교환가치의 **근원**》으로 바꾸어버렸으며 이로 하여 그는 속류경제학을 위하여 문호를 널리 개방하였다. (우리의 로쉐르의 저서를 보라.)[90]

C. 불변자본부분

그러면 우리는 A. 스미스가 어떻게 상품가치로부터 자본의 불변가치부분을 쫓아버리려고 하는가를 보자.

《레컨대 곡물의 가격에서 그 일부분은 토지소유자의 지대를 지불한다.》

이 가치구성부분의 근원은 그 부분이 토지소유자에게 지불되여 지대라는 형태로 그의 수입을 이룬다는 사정과는 관계가 없다. 이것은 바로 다른 가치구성부분들의 근원이 그 구성부분들이 리윤이나 로임으로서 수입원천을 이룬다는것과는 관계가 없는것과 마찬가지이다.

《다른 한 부분은 곡물생산에 사용된 로동자》 (및 역축! 이라고 그는 첨가한다.) 《의 로임과 생계에 지불하는것이며 제3부분은 차지농업가의 리윤을 지불하는것이다. 이러한 세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또는

---

(39) 이 구절은 여기에서의 관련으로 보아서는 앞의 글이나 다음에 계속되는 글과 모순되는듯 하지만 나는 이것을 원고에 있는 그대로 둔다. 이 외관상의 모순은 다음 제4항 《A. 스미스에게 있어서의 자본과 수입》 에서 해결된다. —F. 엥겔스

결국 곡물의 전체 가격을 구성하는것 같이 보인다.》(40) (seem—확실히 그렇게 **보일뿐이다.**)

이 전체 가격, 즉 그 량적규정은 세 종류의 사람들사이에서의 이 가격분배와는 절대로 관계되지 않는다.

《차지농업가의 자본을 보상하기 위하여 또는 그의 역축이나 기타 농구의 마멸을 보상하기 위하여 제4부분이 필요할것 같이 보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어떠한 농구 례컨대 부림말의 가격은 그자체가 역시 상술한 세 부분, 즉 부림말을 사육하는 토지의 지대, 말을 사육하는 로동 그리고 이 토지의 지대와 이 로동의 임금을 선대하는 차지농업가의 리윤이라는 세 부분으로써 이루어진다는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곡물의 가격은 말의 가격과 그 유지비를 보상할수 있지만 그러나 전체 가격은 언제나 직접적으로 또는 결국 이 세 부분들, 즉 지대, 로동》[그가 말하는것은 로임이다.] 《및 리윤으로 분해된다.》 (제1편 제6장, 42페지)

이상이 A. 스미스가 그의 놀라운 교조의 론거로서 제시한 글자 그대로의 전부이다. 그의 론증은 단순히 동일한 주장의 반복에 불과하다. 그는 례컨대 곡물의 가격은 v+m으로써 구성될뿐만아니라 또한 곡물생산에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격으로써도, 즉 차지농업가가 로동력에 투하한것이 아닌 자본가치로써도 구성된다는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생산수단자체의 가격도 곡물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역시 v+m으로 나뉘여진다고 말한다. 다만 A. 스미스는 그외에 그러한 생산수단 그자체의 생산에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격에도

---

(40) 이러한 례를 든것이 특히 애담의 불행이였다는것은 여기에서 전혀 도외시한다. 곡물의 가치가 로임, 리윤, 지대로 분해되는것은 오직 역축이 소비하는 식료품이 역축의 임금으로서 표시되고 역축이 임금로동자로서 표시되며 이에 따라서 또 임금로동자가 역축으로서 표시되기때문이다. (제Ⅱ고로부터의 추가)

나뉘여진다고 첨가할것을 잊고있다. 그는 한 생산부문에서 다른 생산부문으로 또는 그 생산부문으로부터 제3의 생산부문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있다. 상품의 전체가격이 《직접적으로》 또는 《결국》 v+m으로 분해된다는것이 공허한 둔사가 아니게 되는것은 다만 다음과 같은것이 론증되는 경우뿐일것이다. 즉 그 가격이 직접적으로는 c(소비된 생산수단의 가격)+v+m으로 분해되는 상품생산물도 결국은 그 《소비된 생산수단》을 완전히 보상하나 반대로 그자체는 다만 가변자본, 즉 로동력에만 투하되는 자본의 투하에만 의하여 생산되는 상품생산물에 의하여 보상된다는 그것이다. 만일 이것이 론증된다면 그 경우에는 후자의 상품생산물의 가격은 직접 v+m과 같을것이다. 따라서 전자의 상품생산물의 가격 c+v+m (이 c는 불변자본부분이다.)도 결국 v+m으로 분해될것이다. A. 스미스자신도 자기가 든 스코틀랜드마노채집자들①에 관한 례에 의하여 이러한 론증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채집자들은 스미스에 의하면 1) 어떤 종류의 잉여가치도 제공하지 않고 다만 그들자신의 로임만을 생산하며 2) 어떤 생산수단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마노를 운반하기 위한 광주리나 자루나 기타 용기형태로 생산수단을 사용하는것이지만.)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바와 같이 A. 스미스는 나중에는 스스로 자기자신의 리론을 뒤집어엎었으나 자기의 모순은 의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모순의 근원은 바로 그의 학문상의 출발점에서 찾아야 할것이다. 로동으로 전환된 자본은 그 자체의 가치보다도 큰 가치를 생산한다. 어떻게 해서인가?

① 본권 402페지의 주(38)을 보라.—편집자

A.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생산과정에서 로동자들은 자기가 가공하는 물건들에 대하여 하나의 가치를 새겨넣는데 이 가치는 그들자신의 구매가격의 등가외에 그들의것으로 되지 않고 그들의 고용주의것으로 되는 잉여가치(리윤과 지대)를 형성하기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또 이것이 로동자들이 하며 또 그들이 할수 있는 전부이다. 1일의 산업로동에 대하여 할수 있는것은 전체 자본가계급에 의하여 1년간 움직여지는 로동에 대하여도 말할수 있다. 그러므로 1년간의 사회적 가치생산물의 총량은 다만 v+m으로, 즉 로동자들이 그들자신의 구매가격으로서 지출된 자본가치를 보상하는 등가와 그들이 그 이상으로 그들의 고용주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안되는 추가적가치로 분할될수 있을뿐이다. 그러나 상품의 이 두 가치요소는 동시에 재생산에 참가하는 각이한 계급들을 위한 수입원천을 이룬다. 즉 제1요소는 로동자의 수입인 로임을 이루며 제2요소는 잉여가치를 이루며 그 일부분을 산업자본가는 리윤의 형태로 자기의 수중에 보존하고 다른 한 부분을 토지소유자의 수입인 지대로서 양도하는것이다. 그런데 년간 가치생산물은 v+m이외에는 어떤 요소도 포함하고있지 않다면 또 하나의 다른 가치구성부분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단순재생산이라는 기초우에 서있다. 년간총로동량은 로동력에 투하된 자본가치의 재생산에 필요한 로동과 잉여가치의 창조에 필요한 로동으로 분해되므로 로동력에 투하되지 않은 자본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로동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사태는 다음과 같이 되여있다.

1) A. 스미스는 상품의 가치를 임금로동자가 로동대상에 첨가하는(adds) 로동량에 의하여 규정한다. 그의 말대로 하

면 《제재료에》 첨가하는 로동량에 의하여서인데 그가 그렇게 말하는것은 그자신이 이미 로동생산물을 가공하는 제조업을 취급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도 사태를 변경시키는것이 아니다. 로동자가 어떤 물건에 첨가하는(이 《adds》는 애담의 표현이다.) 가치는 가치가 첨가되는 이 대상이 이 첨가 **이전**에 이미 그자체가 가치를 가지고있는가 어떤가 하는것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것이다. 따라서 로동자는 상품형태로 가치생산물을 창조한다. 이 가치생산물의 일부분은 A. 스미스에 의하면 일부분은 그의 로임의 등가이며 따라서 이 부분은 그의 로임의 가치의 크기에 의하여 규정되여있다. 그 가치의 크기에 따라 그는 자기의 로임의 가치와 동일한 가치를 생산 또는 재생산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로동을 첨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로동자는 이와 같이 하여 그어진 한계를 넘어서 그 이상의 로동을 첨가하며 이 로동은 그를 사용하는 자본가를 위한 잉여가치를 형성하는것이다. 이 잉여가치가 전부 그 자본가의 수중에 남는가 또는 조금씩 그에게서 제3자에게 인도되지 않으면 안되는가 하는것에 의하여서는 임금로동자가 첨가하는 잉여가치의 질적인(그것이 일반적으로 잉여가치라는) 규정에도 량적인(크기의) 규정에도 절대로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 그것이 가치라는것은 생산물의 그외의 어느 가치부분과 마찬가지이지만 그것이 다른 가치부분과 다른 점은 로동자는 그 등가를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받지 않을것이며 또 이 가치는 도리여 자본가에 의하여 등가없이 취득된다는 점이다. 상품의 총가치는 로동자가 그 상품의 생산에서 지출한 로동량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 총가치의 일부분은 그것이 로임의 가치와 같다는것, 즉 로임의 등가라는것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

러므로 제2부분, 즉 잉여가치도 필연적으로 마찬가지로 규정된다. 즉 그것은 생산물의 총가치에서 로임의 등가인 가치부분을 감한것과 같다. 따라서 상품의 생산에서 창조된 가치생산물중 그것에 포함되여있는 그의 로임의 등가와 같은 가치부분을 넘는 초과분과 같다.

2) 개개의 산업기업소에서 매 개별적로동자에 의하여 생산되는 상품에 대하여 말할수 있는것은 모든 생산부문의 년간생산물을 합계한것에 대하여도 말할수 있다. 개별적 생산로동자의 1일로동에 대하여 말할수 있는것은 생산적로동계급전체에 의하여 류출되는 년간로동에 대하여도 말할수 있다. 이 년간로동은 지출된 년간로동량에 의하여 규정되는 총가치를 년간생산물중에 《고정시킨다.》(스미스의 표현) 그리고 이 총가치는 두 부분으로 나뉘여진다. 그 한 부분은 년간로동중 로동자계급이 자기의 년간임금의 등가를, 사실은 이 임금자체를 창조하는 부분에 의하여 규정되며 다른 한 부분은 로동자가 자본가계급을 위한 잉여가치를 창조하는 추가적년간로동에 의하여 규정된다. 따라서 년간생산물에 포함되여있는 년간가치생산물은 다만 두 요소로써만 이루어진다. 즉 로동자계급이 받는 년간임금의 등가와 1년간에 자본가계급에게 제공되는 잉여가치로써 구성된다. 그런데 년간임금은 로동자계급의 수입을 이루며 잉여가치의 년간총액은 자본가계급의 수입을 이룬다. 따라서 이 량자는(그리고 이 관점은 단순재생산의 설명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년간소비기금의 상대적 몫을 표시하며 또 이 기금에서 실현된다. 그런 까닭에 불변자본가치를 위한, 즉 생산수단의 형태로 기능하는 자본의 재생산을 위한 여지는 아무데도 없다. 그러나 상품가치중 수입으로서 기능하는 부분전체가 사회적소비기금으로 예정된 년

간로동생산물과 일치한다는것은 A. 스미스가 그의 저서의 서론에서 명백히 말하고있다.

《대체로 국민의 수입이란 무엇이였는가 또는…그들의 매년의 소비분을 제공한(supplied) 기금의 성격은 무엇이였던가 하는것을 설명하는것이 이 최초의 4편의 목적이다.》(12페지)

그리고 서론의 첫 문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매개 국민의 년간로동은 그 국민이 고 1년간에 소비하는 모든 생활수단을 각 국민에게 본원적으로 제공하는 기금이다. 그리고 이 생활수단은 언제나 이 로동의 직접적생산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이 생산물들로 다른 국민으로부터 구매한 제 대상으로 이루어진다.》(11페지)

그런데 A. 스미스의 첫째 오유는 그가 년간**생산물가치**를 년간**가치생산물**과 동일시하고있는 점에 있다. 가치생산물은 **다만** 그해의 로동의 생산물만이다. 생산물가치는 그외에 년간생산물의 생산에 소비되였으나 **그 전해, 그리고 일부는 그 몇해 이전에 생산된** 모든 가치요소를 포함한다. 즉 그 가치가 다만 **재현될**따름인 생산수단—그 가치로 보면 그해에 지출된 로동에 의하여 생산된것도, 재생산된것도 아닌 생산수단—의 가치를 포함한다. 이 혼동에 의하여 A. 스미스는 년간생산물의 불변가치부분을 좇아버리고있다. 이 혼동자체는 그의 기본적견해중에 있는 또 하나의 오유에 기인하고있다. 즉 그는 로동자체의 이중적성격, 즉 로동력의 지출로서 가치를 창조하는 한에서의 로동과 구체적유용로동으로서 사용대상(사용가치)을 창조하는 한에서는 로동이라는 이중적성격을 구별하지 않는다. 1년간에 생산되는 상품의 총액, 따라서 **년간총생산물**은 그 1년간에 작용한 **유용**로동의 생산물이다. 오직 사회적으로 사용된 로동이 각종 유용로동들의 여러 곁가

지로 갈라진 체계속에서 지출된것에 의하여서만 이러한 모든 상품은 존재하는것이며 오직 이러한것에 의하여서만 그것들의 상품의 총가치중 그것들의 상품생산에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가 새로운 현물형태로 재현되여 보존되고있는것이다. 따라서 **년간생산물**의 총체는 1년간에 지출된 **유용**로동의 결과이다. 그러나 년간**생산물가치**는 다만 그 일부만이 그 1년간에 창조된것이다. 이 부분이 바로 그 1년간에 류출된 로동의 총량을 표시하는 년간**가치생산물**이다.

따라서 방금 인용한 개소에서 A. 스미스가

《매개 국민의 년간로동은 그 국민이 1년간에 소비하는 모든 생활수단을 각 국민에게 본원적으로 제공하는 기금이다…》

라고 말할 때 그는 일면적으로 단순한 유용로동의 립장에 서있으며 이 유용로동은 모든 이러한 생활수단들에 소비될수있는 형태를 부여하였다는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가 망각하고있는것은 이러한것도 몇해전부터 내려온 로동수단과 로동대상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였다는것이며 따라서 가치를 형성한 한에서의 《년간로동》은 결코 이 로동에 의하여 완성된 생산물의 전체 가치를 창조한것이 아니라는것, 즉 가치생산물은 생산물가치보다 적다는것이다.

이 분석에서 A. 스미스가 그의 모든 후계자들이 도달하고있는데까지밖에는 나가지 않았다는(문제의 정확한 해결의 맹아는 이미 중농학파에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것은 비난할수 없다 하더라도 그는 다시 혼돈속에서 헤매고있는데 그 리유는 주로 상품가치일반에 관한 그의 《심오한》 견해가 부단히 피상적인 견해와 교차되고있어 때로는 그의 과학적인 본능이 다시 심오한 관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피상적인 견

해쪽이 큰 지폭을 차지하고있다는데 있다.

D. A. 스미스에게 있어서의 자본과 수입

매개 상품(따라서 또 년간생산물)의 가치중 다만 로임의 등가를 이룰뿐인 부분은 자본가가 로임으로서 선대한 자본과 같다. 즉 그의 선대총자본의 가변적구성부분과 같다. 자본가는 선대자본가치의 이 구성부분을 임금로동자들에 의하여 제공된 상품중의 새로 생산된 가치구성부분에 의하여 회수한다. 가변자본이 선대된다는것은 아직 판매될만큼 완성되여있지 않든가 또는 완성되여있지만 아직 자본가가 판매하지 않은 생산물중의 로동자들의 몫을 자본가가 화폐로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의미에서 가변자본이 선대되든가 또는 그 몫을 자본가가 로동자들에 의하여 제공된 상품들의 판매에 의하여 이미 받은 화폐로써 지불하든가 또는 그가 신용에 의하여 이 화폐를 앞당기여 받았든가—이러한 모든 경우에 자본가는 가변자본을 지출하며 그것이 화폐로서 로동자들의 수중에 흘러가는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자본가는 이 자본가치의 등가를 자기의 상품의 다음과 같은 가치부분에서 가지고 있는것이다. 즉 이 가치부분에 의하여 로동자들은 상품의 총가치중에서 자기의것으로 되는 몫을 새로 생산한것이다. 바꾸어말하면 이 가치부분에 의하여 로동자들은 자기의 로임의 가치를 생산한것이다. 자본가는 로동자에게 이 가치부분을 로동자자신들의 생산물의 현물형태로 지불하는것이 아니라 화폐로 그들에게 지불한다. 그리하여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그의 선대자본가치의 가변적구성부분이 이제는 상품형태를

취하는데 한편 로동자들은 자기가 판매한 로동력의 등가를 화폐형태로 받았다.

이리하여 자본가가 선대한 자본중 로동력의 구매에 의하여 가변자본으로 전화된 부분은 생산과정자체내에서 활동하는 로동력으로서 기능하며 또한 이 힘의 지출에 의하여 새로운 가치로서 상품형태로 새로 생산, 즉 재생산—따라서 선대자본가치의 재생산, 즉 새로운 생산—되는데 로동자들은 그들이 판매한 로동력의 가치 또는 가격을 생활수단으로, 자기들의 로동력의 재생산수단으로 지출한다. 가변자본과 같은 화폐액이 로동자들의 수익 따라서 그들의 수입을 이루는데 이 수입은 로동자들이 자기들의 로동력을 자본가에게 판매할 수 있는 동안에만 지속된다.

임금로동자의 상품—그의 로동력자체—이 상품으로서 기능하는것은 오직 그것이 자본가의 자본에 합체되여 자본으로서 기능하는 한에서이다. 다른 한편 자본가가 화폐자본으로서 로동력의 구매에 지출하는 자본은 로동력의 판매자인 임금로동자의 수중에서는 수입으로서 기능한다.

여기에는 A. 스미스가 구별하지 않는 여러가지 류통과정과 생산과정들이 뒤엉키여있다.

첫째, **류통**과정에 속하는 제 행위. 로동자는 자기의 상품—로동력—을 자본가에게 판다. 자본가가 로동력을 사는 화폐는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가치증식을 위하여 투하한 화폐, 즉 화폐자본이다. 그것은 지출되는것이 아니라 선대된다(이것은 《선대》—중농학파들이 말하는 《avance》—의 진정한 의미인데 이것은 자본가가 이 화폐자체를 어디에서 가져오는가 하는것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자본가가 생산과정을 위하여 지불하는 가치는 모두 자본가에 있어서는 선대

되는것이며 이 지불이 사전에 실시되든 사후에 실시되든간에 거기에는 변함없다. 그 가치는 생산과정자체에 선대되여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모든 상품판매에 있어서와 같은것이 발생할따름이다. 즉 판매자는 사용가치(여기에서는 로동력)를 내주고 화폐로 그 가치를 받는다(그 가격을 실현한다.). 구매자는 자기의 화폐를 내주고 그대신에 상품자체—여기에서는 로동력—를 받는다.

둘째, 지금 **생산**과정에서는 구매된 로동력은 기능자본의 일부를 이루며 로동자자신은 여기에서는 다만 이 자본중 생산수단의 현물형태로 존재하는 요소들과는 구별되는 하나의 특수한 현물형태로서 기능할뿐이다. 이 과정에서 로동자는 자기가 생산물로 전화시키는 생산수단에 자기의 로동력의 가치와 같은 가치를(잉여가치는 도외시하고) 자기의 로동력의 지출에 의하여 첨가한다. 따라서 로동자는 자본가가 로동자에게 로임으로서 이미 선대한 또는 이제부터 선대할 자본부분을 자본가를 위하여 상품형태로 재생산하며 자본가를 위하여 이 자본부분의 등가를 생산한다. 따라서 로동자들은 새로 로동력의 구매에 《선대》할수 있는 자본을 자본가를 위하여 생산한다.

셋째, 따라서 상품의 판매에서 그 판매가격의 일부분은 자본가를 위하여 자본가가 선대한 가변자본을 보상하며 따라서 자본가로 하여금 새로 로동력을 구매할수 있게 하며 또 로동자들로 하여금 새로 로동력을 판매할수 있게 한다.

일체 상품의 매매에서는—다만 교환자체만이 고찰되는 한에서는—판매자가 자기의 상품을 팔아 얻은 화폐가 그의 수중에서 어떻게 되는가, 또 구매자가 산 사용물품이 그의 수중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는것은 전혀 아무래도 좋다. 따라서 단순히 류통과정만이 고찰되는 한에서는 자본가가 구매한

로동력이 그를 위하여 자본가치를 재생산한다는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로동력의 구매가격으로서 얻은 화폐가 로동자에게 있어서 수입을 형성한다는것도 전혀 아무래도 좋다. 로동자가 교환하는 물품, 즉 그의 로동력의 가치량은 이 가치량이 그들에게 있어서 수입을 형성한다는것에 의해서도, 그의 교환품을 구매자가 사용하는것이 이 구매자를 위하여 자본가치를 재생산한다는것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로동력의 가치—즉 이 상품의 적당한 판매가격—는 로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로동량에 의하여 규정되며 이 로동량 자체는 또 여기서는 로동자의 필요생활수단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즉 그의 생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로동량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므로 로임은 로동자가 그것에 의하여 생활할수 밖에 없는 수입으로 된다.

A. 스미스가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는것은(223페지) 전적으로 그릇된것이다.

《생산적로동의 유지를 위하여 투하되는 **자본부분**은…그를 위하여》〔자본가를 위하여〕《자본의 기능을 수행한 다음에는…그들의》〔로동자들의〕《수입을 이룬다.》

자본가가 자기가 구매하는 로동력의 대가를 지불하는 **화폐**가 《그를 위하여 자본의 기능을 수행한다》는것은 그 화폐로써 그가 로동력을 자기 자본의 물적구성부분들에 합체시키며 이리하여 그의 자본을 비로소 생산자본으로서 기능할수 있게 하는 한에서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로동력은 로동자의 수중에서는 **상품**이며 자본이 아니다. 그리고 로동력이 로동자에게 있어서 수입을 형성하는것은 그가 로동력을 부단히 반복하여 팔수 있는 한에서이다. 로동력은 판매

된**후에** 자본가의 수중에서 생산과정자체내에서 자본으로 기능한다. 이 경우에 두번 복무하는것은 로동력이다. 즉 로동력은 로동자들의 수중에서는 가치대로 판매되는 상품으로서 복무하며 그것을 구매한 자본가의 수중에서는 가치와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힘으로서 복무한다. 그러나 로동자가 자본가로부터 받는 화폐는 그의 로동력이 자본가에 의하여 사용된 후에야, 그의 로동력이 이미 로동생산물의 가치로 실현된후에야 비로소 지불받는것이다. 자본가는 이 가치를 지불하기 전에 자기의 수중에 가지고있다. 따라서 화폐가 두번, 즉 처음에는 가변자본의 화폐형태로서, 그다음에는 로임으로서 기능하는것이 아니다. 그런것이 아니라 로동력이 두번 기능한 것이다. 즉 첫번째는 로동력이 팔릴 때에 **상품**으로서 기능하였다.(화폐는 지불되여야 할 임금이 약정될 때에는 다만 관념적인 가치척도로서 작용할뿐이며 그때에 아직은 자본가의 수중에 있어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두번째는 생산과정에서 기능한것인데 거기서 로동력은 **자본**으로서, 즉 사용가치와 가치를 창조하는 요소로서 자본가의 수중에서 기능한다. 로동력은 로동자에게 지불되여야 할 등가를 자본가가 로동자에게 화폐형태로 지불하기전에 이미 상품형태로 제공하였다. 그러므로 로동자는 자기도 지불기금을 창조하여 그것에서 자본가가 그들에게 지불하는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로동자가 받는 화폐는 그에 의하여 자기의 로동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된다. 따라서—자본가계급과 로동계급을 전체로서 보면—이 화폐는 자본가를 위하여 다만 자기만이 자본가로 남을수 있기 위한 도구로 유지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되는것이다.

따라서 로동력의 부단한 매매는 한편으로는 로동력을 자

본의 요소로서 영구화하는데 이것에 의하여 자본은 상품, 즉 가치를 가진 사용물품의 창조자로서 나타난다. 그리고 또 이에 의하여 로동력을 구매하는 자본부분은 로동력자체의 생산물에 의하여 부단히 생산되며 이에 따라서 로동자는 자기가 지불을 받는 자본기금을 스스로 부단히 창조한다. 다른 한편으로 로동력의 부단한 판매는 부단히 갱신되는 로동자의 생활유지의 원천으로 되며 그리하여 그의 로동력은 그가 생활해나가기 위한 수입을 얻는 능력으로서 나타난다. 여기에서 수입이라고 하는것은 한 상품(로동력)의 부단히 반복되는 판매에 의하여 생기는 가치의 취득에 지나지 않는다. 이 경우에 이 가치자체는 판매되여야 할 상품의 부단한 재생산을 위하여 복무할따름이다. 그런데 A. 스미스가 로동자들자신이 창조한 생산물의 가치중 자본가가 로동자들에게 로임의 형태로 등가를 지불하는 부분은 로동자에게 있어서의 수입의 원천이 된다고 말하는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이로 하여 상품의 이 가치부분의 성질이나 크기가 변경되는것이 아닌것인데 이는 생산수단이 자본가치로서 기능한다고 하여 생산수단의 가치가 변경되는것이 아닌것과 마찬가지이며 또는 직선이 삼각형의 밑변으로서 기능하거나 타원형의 직경으로서 기능한다고 하여 직선의 성격과 길이가 변경되는것이 아닌것과 마찬가지이다. 로동력의 가치는 바로 이 생산수단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의연히 독립적으로 규정되여있는것이다. 상품의 이 가치부분은 그것을 구성하는 독립적인 한 요인으로서의 수입**으로써 이루어지는것**도 아니며 수입**으로 분해되는것도** 아니다. 로동자들에 의하여 부단히 재생산되는 이 새 가치가 그에게 있어서 수입의 원천을 이룬다고 하여 반대로 그의 수입이 그가 생산하는 새 가치의 한 구성부분을 이루는것은 아니다. 그가 창조하는 새

가치중 그에게 지불되는 몫의 크기가 그의 수입의 가치의 크기를 규정하는것이고 그와 반대인것이 아니다. 새 가치의 이 부분이 그에게 있어서 수입을 이룬다는것은 이 부분이 무엇이 되는가 하는것을, 즉 그의 용도의 성격을 표시할따름이며 그 가치부분의 형성에나, 다른 어떤 가치의 형성에나 아무런 관계도 없다. 내가 매주 10탈레르의 수입이 있다고 하면 이 매주의 수입이라는 사정은 10탈레르의 가치의 **성격**이나 그 가치의 **크기**를 조금도 변경시키는것이 아니다. 다른 어떤 상품의 경우에나 다 그러한것처럼 로동력의 경우에도 그 가치는 재생산에 필요한 로동량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다. 이 로동량이 로동자의 필요생활수단의 가치에 의하여 규정되며 따라서 그의 생활조건자체의 재생산에 필요한 로동과 같다는 사정은 이 상품(로동력)에 특유한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역축의 가치가 역축의 유지에 필요한 생활수단의 가치에 의하여, 따라서 이 생활수단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인간로동의 량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사정이상으로 더 특징적인것은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A. 스미스에게 있어서 모든 불행의 원인으로 되고있는것은 《수입》이라는 범주이다. 그에게 있어서는 각이한 종류의 수입이 1년간에 생산되고 새로 창조되는 상품가치의 《구성부분》들을 이루는데 반대로 이 상품가치가 **자본가에게 있어서** 분할되는 두 부분—로동을 구입할 때 화폐형태로 선대되는 그의 가변자본의 등가와 역시 그에게 속하는것이나 그에게 아무 비용도 들이게 하지 않는 다른 가치부분인 잉여가치—이 수입원천을 형성하는것이다. 가변자본의 등가는 새로 로동력에 선대되며 그 한에서는 그의 로임이라는 형태로 로동자의 수입을 형성한다. 다른 부분—잉여가치—은 자본가를 위하여 선대자본을 보상할 필요가 없는것

이므로 어떤 종류의 자본가치도 형성하지 않고 자본가에 의하여 소비수단(필수품과 사치품)으로 지출될수 있으며 수입으로서 소비될수 있다. 이 수입의 전제는 상품가치자체이며 이 상품가치의 구성부분들이 자본가에게 있어서 구별되는것은 다만 그것들의 구성부분이 그가 선대한 가변자본가치에 **대한** 등가를 이루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가변자본가치를 **넘는** 초과분을 이루든가 하는 한에 있어서만이다. 량자는 상품생산에 지출되여서 류동화되여 로동으로 된 로동력이외의 어떤것으로써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들은 수입으로써가 아니라 지출로써—로동지출로써—이루어진다.

상품가치가 수입의 원천이 되는것이 아니라 수입이 상품가치의 원천이 된다는 이러한 잘못으로 하여 이제는 상품가치가 각종 수입으로써 《합성된것》으로서 나타난다. 각종 수입은 호상 독립적으로 규정되며 이러한 수입의 가치량의 합계에 의하여 상품의 총가치가 규정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로 되는것은 상품가치의 원천이라고 하는 이 매개 수입의 가치는 어떻게 규정되는가 하는것이다. 로임의 경우에는 그것을 규정할수 있다. 왜냐 하면 로임은 그 상품인 로동력의 가치이며 이 가치는(다른 모든 상품들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이 상품의 재생산에 필요한 로동에 의하여 규정될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잉여가치 또는 A. 스미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그 두 형태인 리윤과 지대는 어떻게 규정될수 있는가? A. 스미스는 여기서는 그저 수다스러운 공담을 늘여놓고있을뿐이다. 그는 때로는 로임과 잉여가치(또는 로임과 리윤)를 상품가치 또는 가격이 그것에 의하여 합성되는 제구성부분들로서 설명하고 또 때로는 그리고 흔히는 거의 같은 순간에 상품가격이 《분해》되는 제 부분으로서 설명하고있다. 즉 우에서와는 반대로 상품

가치가 먼저 주어진것이며 이 주어진 가치의 각이한 부분이 생산과정에 참가하는 각이한 사람들의 수중에 각이한 수입의 형태로 들어간다는것이다. 이것은 결코 이 세 《구성부분》으로써 가치가 합성된다는것과는 같은것이 아니다. 내가 각이한 세 직선의 길이를 따로따로 정하고 그다음에 이 세 선을 《구성부분》으로 하여 그것들의 길이의 합계와 같은 제4의 직선을 만든다고 하면 이 수속은 결코 타방으로 내앞에 하나의 주어진 직선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는, 《분해》하는 수속과 같은것이 아니다. 전자의 경우에 선의 길이는 합계되여 선을 만드는 세 선의 길이가 변함에 따라 완전히 변한다. 후자의 경우에 선의 세 부분의 길이는 그것들이 주어진 길이의 하나의 직선의 부분들을 이루고있다는것에 의하여 처음부터 제한되여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A. 소미스의 설명중의 옳은 점, 즉 사회의 년간상품생산물(매 개별적상품이나 또는 1일간 생산물, 1주간 생산물 등도 마찬가지이지만)에 포함되여있는 **년간로동에 의하여 새로 창조된 가치는** 선대가변자본의 가치(따라서 다시 로동력의 구매에 돌려지는 가치부분)와 자본가가—단순재생산 및 기타의 동일한 사정하에서—자기의 개인적소비수단으로 실현할수 있는 잉여가치와의 합계와 같다는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한, 그리고 또 가치를 창조하는 로동이 로동력지출인 한에서의 로동과 사용가치를 창조하는 로동이 유용한 합목적적형태로 지출되는 한에서의 로동과를 스미스가 혼동하고있다는것을 잊지 않는다면 그의 견해전체는 다음과 같은것으로 귀착된다. 매개 상품의 가치는 로동의 생산물이며 따라서 또 년간로동의 생산물의 가치 또는 년간의 사회적상품생산물의 가치도 역시 로동의 생산물이다. 그러나

모든 로동은 1) 로동자가 그의 로동력의 구매에 선대된 자본의 등가만을 재생산할뿐인 필요로동시간과 2) 자본가가 아무 등가도 지불하지 않는 가치, 즉 잉여가치를 로동자가 자본가에게 제공하는 잉여로동으로 분해되므로 모든 상품가치는 다만 각이한 이 두 구성부분으로만 분해될수 있을뿐이며 따라서 결국 로임으로서 로동자계급의 수입을 이루며 또 잉여가치로서 자본가계급의 수입을 이룬다. 그러나 불변자본가치 즉 년간생산물의 생산에 소비되는 생산수단의 가치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 가치가 새로운 생산물의 가치속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는것은(자본가가 자기의 상품을 팔 때 그것을 구매자에게 부담시킨다는 상투적인 문구외에는) 물론 설명될수 없으나 결국 이 가치부분도 생산수단자체가 로동의 생산물이므로 그자체가 역시 가변자본의 등가와 잉여가치로써, 필요로동과 잉여로동의 생산물로만 이루어질수밖에 없는것이다. 이러한 생산수단의 가치가 그 사용자의 수중에서 자본가치로서 기능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가치가 《본원적으로는》 또 그 근본을 따져볼 때 타인의 수중에서—그 이전에라도—동일한 두 가치부분으로, 따라서 두개의 각이한 수입원천으로 나뉘여질수 있는것이였다는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여기에 있는 하나의 정확한 점은 사회적자본—개별적자본들의 총체—의 운동에서는 사태는 매 개별적자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고찰하는 경우, 즉 매개 자본가의 관점에서 보는 사태와는 다르게 표시된다는것이다. 매 개별적자본가에게 있어서는 상품가치는 1) 어떤 불변적인 요소(스미스가 말하는 제4요소)와 2) 로임 및 잉여가치의 합계 또는 로임, 리윤, 지대의 합계로 분해된다. 그런데 사회적관점에서 보면 스미스가 말하는 제4요소, 즉 불변자본가치는 없어진다.

E. 개 괄

로임, 리윤, 지대라는 세 수입이 상품가치의 세 《구성부분》을 이룬다는 어리석은 공식은 A. 스미스에게 있어서는 상품가치가 이 세 구성부분들로 분해된다는 보다 그럴듯한 공식으로부터 나온다. 이 후자의 공식도 상품가치는 소비된 로동력의 등가와 로동력에 의하여 창조된 잉여가치로 나뉘여질수 있을뿐이라고 전제하더라도 역시 그릇된것이다. 그러나 오유는 여기서도 보다 깊은 진실한 기초에 립각하고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생산적로동자가 자기의 로동력을 자기의 상품으로서 자본가에게 팔며 다음 이 로동력이 자본가의 수중에서 다만 그의 생산적자본의 한 요소로서 기능한다는데 기초하고있다. 류통에 속하는 이 거래—로동력의 매매—는 생산과정을 준비할뿐만아니라 생산과정의 특수한 성격을 암시적으로 규정한다. 사용가치의 생산은, 또는 상품의 생산도(왜냐 하면 상품의 생산은 독립적인 생산적로동자에 의하여도 진행할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오직 자본가를 위한 절대적 및 상대적 잉여가치생산의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산과정의 분석에 있어서 어떻게 절대적 및 상대적잉여가치의 생산이 1) 1일의 로동과정의 길이를 규정하며 2)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의 사회적 및 기술적인 전 모습을 규정하는가를 보았던것이다. 이 생산과정자체내에서 가치(불변자본가치)의 단순한 유지와 선대된 가치(로동력의 등가)의 현실적재생산과 잉여가치, 즉 자본가가 그것에 대하여 사전에 등가를 선대한것도 아니고 사후에 등가를 지불하는것도 아닌 가치의 생산과의 구별은 실현된다.

잉여가치—자본가가 선대한 가치의 등가를 넘는 가치—

의 취득은 로동력의 매매에 의하여 준비되는것이지만 생산과정자체내에서 진행되는 행위이며 생산과정의 본질적계기를 이루는것이다.

하나의 류통행위를 이루는 준비적행위, 즉 로동력의 매매는 그자체가 또 사회적**생산물**의 분배에 선행하고 그 전제로 되여있는 생산**요소**의 분배에 기초한다. 즉 로동자의 상품으로서의 로동력이 비로동자의 소유물로서의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된다는것에 기초한다.

그러나 동시에 잉여가치의 이러한 획득, 즉 가치생산이 선대가치의 재생산과 아무런 등가도 보상하지 않는 새 가치(잉여가치)의 생산으로 분리된다는것은 가치자체의 실체나 가치생산의 성격을 조금도 변경시키는것이 아니다. 가치의 실체는 지출된 로동력—즉 로동, 그러나 이 로동의 특수한 유용적 성격과는 관계없는 로동—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며 또 언제나 그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가치생산은 이 지출의 과정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례컨대 농노는 6일간 로동력을 지출하며 6일간 로동한다. 그가 이 로동일중 례컨대 3일간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밭에서 일하며 나머지 3일간은 자기의 령주를 위하여 령주의 밭에서 일한다는것은 로동력의 이와 같은 지출이라는 사실 그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차이도 가져오지 않는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진행하는 자발적로동이나 령주를 위하여 진행하는 강제로동이나 다같이 로동이다. 그의 로동이 그것에 의하여 창조되는 가치 또는 유용생산물에 관련된 로동으로서 고찰되는 한 그의 6일간의 로동에는 아무런 차이도 생기지 않는다. 차이는 오직 6일이라는 로동시간의 두 절반에 그의 로동력을 지출하게 하는 각이한 사정에 관련될따름이다. 임금로동자의 필요로동과 잉여로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생산과정은 상품에서 없어진다. 그 상품의 생산에 로동력이 지출되였다는것은 이제는 상품이 가치를 가지고있다는 그 물적속성으로서 나타난다. 이 가치의 크기는 지출된 로동의 크기에 의하여 측정된다. 상품가치는 그 이상의것으로는 분해되지 않으며 그 이외의 어떤것으로써도 구성되지 않는다. 내가 일정한 길이의 직선을 하나 그었다면 나는 우선 나와는 독립한 어떤 규칙(법칙)에 따라 진행되는 작도법에 의하여 직선을 하나 《생산》(물론 내가 전부터 알고있는것을 다만 상징적으로)한것이다. 내가 이 직선을 세 부분(그것들은 또 일정한 문제에 대응할것이다.)으로 나누어도 이 세 부분의 각개는 여전히 직선인것이며 그것들을 부분으로 하고있는 직선전체는 이 분할로 말미암아 직선과는 구별되는 어떤것 례컨대 어떤 종류의 곡선으로 분해되지는 않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주어진 길이의 선을 분할하되 그 부분들의 합계가 분할되기전의 그 선자체보다 더 길게 되도록 할수는 없다. 따라서 분할되기전의 선의 길이가 임의로 정해진 부분선의 길이에 의하여 정해져있는것은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부분선의 상대적길이가 그것들을 부분으로 하고있는 선의 한계에 의하여 처음부터 한정되여있는것이다.

그 한에 있어서는 자본가에 의하여 생산된 상품은 자립적로동자나 로동자공동체나 또는 노예에 의하여 생산된 상품과 아무런 차이도 없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로동생산물전체도 그 전체의 가치도 자본가의것이다. 자본가는 다른 모든 생산자와 마찬가지로 상품을 우선 판매에 의하여 화폐로 전화시키지 않고서는 그다음의 조작을 진행할수 없다. 그는 상품을 일반적등가의 형태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

화폐로 전환되기 이전의 상품생산물을 고찰하여보자. 그

것은 전부 자본가의것이다. 다른 한편 그것은 유용한 로동생산물로서는—사용가치로서는—죄다 지나간 로동과정의 생산물이다. 그것의 가치는 그렇지 않다. 이 가치의 일부는 다만 상품의 생산에 지출된 생산수단의 가치가 새로운 형태로 재현한 것에 불과하다. 이 가치는 이 상품의 생산과정에 생산된것이 아니다. 왜냐 하면 이 가치를 생산수단은 이미 이 생산과정 이전에 이 생산과정과는 독립하여 가지고있었기때문이다. 생산수단은 이 가치의 담당자로서 이 과정에 들어왔다. 갱신되고 변경된것은 다만 이 가치의 현상형태뿐이다. 상품가치의 이 부분은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그의 선대불변자본가치중 상품생산에 소비된 부분의 등가를 이룬다. 그것은 전에는 생산수단의 형태로 존재하였다. 그것은 이제는 새로 생산된 상품의 가치의 구성부분으로서 존재한다. 이 상품이 화폐화되자면 이제는 화폐로 존재하는 이 가치는 다시 생산수단으로, 즉 생산과정과 거기에서의 자기의 기능에 의하여 규정되는 그 원래의 형태로 전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상품의 가치적성격은 이 가치의 자본기능에 의하여 조금도 변경되지 않는다. —

상품의 제2의 가치부분은 임금로동자가 자본가에게 파는 로동력의 가치이다. 이 가치도 생산수단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로동력이 들어가야 할 생산과정과는 독립적으로 규정된다. 그리고 로동력이 생산과정으로 들어가기전에 로동력의 매매라는 류통행위에서 확정된다. 임금로동자는 그의 기능—그의 로동력의 지출—에 의하여 그의 로동력의 사용대가로서 자본가가 그에게 지불하여야 할 가치와 같은 상품가치를 생산한다. 그는 자본가에게 이 가치를 상품으로서 주며 자본가는 이 가치를 그에게 화폐로 지불한다. 상품가치의 이 부분이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다만 로임으로서 선대하여야 할 그

의 가변자본의 등가에 불과하다는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조금도 변경시키는것이 아니다. 즉 이 가치부분이 생산과정 중에 새로 창조된 상품가치이며 이 가치를 형성하는것은 잉여가치를 형성하는것—바로 지나간 로동력의 지출—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도 변경하는것이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실은 자본가가 임금이라는 형태로 로동자에게 지불하는 로동력의 가치가 로동자에게 있어서는 수입이라는 형태를 취한다는것에 의하여서도 또 이것에 의하여 로동력이 부단히 재생산될뿐만아니라 임금로동자계급자체도 따라서 또 자본주의적생산전체의 기초도 부단히 재생산된다는것에 의하여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 두 가치부분의 합계가 상품가치의 전체를 이루는것은 아니다. 이 두 부분을 넘는 초과분, 즉 잉여가치가 남아있다. 잉여가치도 로임으로서 선대된 가변자본을 보상하는 가치부분과 마찬가지로 생산과정에 로동자에 의하여 새로 창조된 가치—응결된 로동—이다. 다만 그것은 생산물전체의 소유자인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는것이다. 사실상 이 마지막 사정은 자본가가 이 잉여가치를 전부 수입으로서 소비할수 있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본가가 잉여가치의 어떤 부분을 다른 관여자에게 양도하지 않아도 좋은 경우인데 지대를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이러한 제3자의 수입을 이루는것이다. 바로 이 사정은 또한 우리의 자본가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상품생산에 종사하게 한 추진적동기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잉여가치를 얻어내려는 그의 착한 의도를 처음부터 그가 가지고있었다는것도, 그 잉여가치를 그와 기타 사람들이 후에 수입으로서 지출한다는것도 잉여가치자체에 영향을 주는것은 아니다. 그러한 사정들은 잉

여가치가 부지불로동의 응결된것이라는 사정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으며 또 잉여가치의 크기를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으며 이 크기는 전적으로 다른 조건들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다.

그런데 만일 A. 스미스가 실제로 그가 그렇게 하고있다는듯이 이미 상품가치의 고찰에 있어서 총재생산과정에서 상품가치의 각이한 부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놀것인가 하는것을 문제로 하려고 하였다면 특수한 부분들이 수입으로서 기능할 때 다른 부분들은 역시 부단히 자본으로서 기능한다는것은 명백하였으며 따라서 그의 론리에 의하면 그러한 부분들은 상품가치를 구성하는 부분들로서 또는 상품가치가 분해되는 부분들로서 표시되지 않으면 안되였을것이다.

A. 스미스는 상품생산일반을 자본주의적상품생산과 동일시한다. 생산수단은 처음으로 《자본》이며 로동은 처음부터 임금로동이다. 따라서

《유용하고 생산적인 로동자의 수는…언제나 그들을 일시키기 위하여 사용된 자본의 량에 비례한다.》(서론 12페지)

한마디로 말하면 로동과정의 각이한 요인—대상적 및 인적요인—은 처음부터 자본주의적생산시대의 탈을 쓰고 나타난다. 따라서 또 상품가치의 분석도 어느 정도까지 이 가치가 한편으로는 투하자본의 단순한 등가를 이루는가, 어느 정도까지 그것이 다른 한편으로 조금도 선대자본가치를 보상하지 않는 《자유로운》가치, 즉 잉여가치를 이루는가 하는 고려와 직접 일치하고있다. 그리하여 이 관점에서 서로 비교된 상품가치의 부분들이 슬그머니 상품가치의 독립적《구성부분》들로 전화하며 결국은 《모든 가치의 원천》으로 전화한다. 또 하나의 결론은 상품가치가 각종 수입들로써 구성된다는것, 또

는 상품가치가 각종 수입으로 《분해》 된다는것이며 그리하여 수입이 상품가치로써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상품가치가 《수입》으로써 이루어진다는것이다. 그러나 상품가치 또는 화폐가 자본가치로서 기능하여도 상품가치로서의 상품가치 또는 화폐로서의 화폐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것처럼 상품가치가 후에 어떤 사람의 수입으로서 기능하여도 그로 하여 상품가치의 성격이 변하는것은 아니다. A. 스미스가 문제로 삼고있는 상품은 처음부터 상품자본(그것은 상품의 생산에 소비된 자본가치외에 잉여가치를 포함하고있다.)이며 따라서 자본주의적으로 생산된 상품이며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이 과정이, 따라서 또 그것에 포함되여있는 가치증식과정 및 가치형성과정이 미리 분석되여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이 과정의 전제자체가 또 상품류통이므로 이 과정의 설명은 또 이 과정과 독립한 그에 선행하는 상품분석을 필요로 하는것이다. A. 스미스가 《비전적으로》 간혹 정확한 점을 포착하고 있는 한에서도 그는 언제나 다만 상품분석, 즉 상품자본의 분석의 기회에만 가치생산에 대하여 고려를 돌리고있을따름이다.

3. 그후의 경제학자들(41)

리카도는 A. 스미스의 리론을 거의 글자그대로 복사하고있다.

《한 나라의 생산물이 모두 소비된다는데 대하여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수 없으나 그것이 다른 가치를 재생산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소비되는가 또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하여 소비되는가에 따라 한량없이 큰 차이가 생긴다. 우리가 수입이 저축되여 자본에 가해진다고 말할

(41) 이하부터 본장 말까지는 제2고로부터 추가.

때 그 의미는 자본에 가해지는 수입부분은 비생산적로동차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생산적로동자에 의하여 소비된다는것이다.》(《원리》 163페지)

사실 리카도는 상품가격이 로임과 잉여가치로(또는 가변자본과 잉여가치로) 분해된다는데 관한 A. 스미스의 리론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그가 스미스와 다투는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하여서이다. 1) 잉여가치의 구성부분들에 관하여. 그는 지대를 잉여가치의 필연적인 요소로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2) 리카도는 상품가격을 이 구성부분들로 **나눈다**. 따라서 가치의 크기가 앞선것이다. 제 구성부분의 합계가 주어진 크기로 전제되고 그것이 출발점으로 되여있는데 A. 스미스가 흔히 그와 반대로 또 그자신의 깊은 견해에도 상반되게 하고 있는것처럼 상품가치의 크기가 후에 제 구성부분의 가산에 의하여 도출되지는 않는다.

램지는 리카도를 반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리카도는 생산물전체가 로임과 리윤으로 나뉘여질뿐만이 아니며 일부분은 고정자본의 보상을 위하여서도 필요하다는것을 망각하고있다.》(《부의 분배에 관한 론술》 1836년 에딘버러판, 174페지)

램지가 고정자본이라고 말하고있는것은 내가 말하는 불변자본과 같은것이다.

《고정자본은 가공중에 있는 상품의 생산에는 기여하나 로동자의 생계에는 기여하지 않는 형태로 존재한다.》(59페지)

A. 스미스는 자기가 상품가치, 따라서 또 사회적년간생산물의 가치도 로임과 잉여가치로, 따라서 단순한 수입으로 분배된다는 자기 주장의 필연적결론을 거부하였다. 그것은, 즉 그렇게 되면 년간생산물은 전부 소비될수 있다는 결론이다.

독창적사상가들은 결코 리치에 어긋나는 결론들을 끌어내지 않는다. 그들은 그러한 일은 쌔나 매칼러크따위에게 맡긴다.

쌔는 사실 이 문제를 손쉽게 처리하고있다. 한사람에게는 자본의 선대인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수입이고 순생산물이며 또는 그러하였다. 총생산물과 순생산물과의 구별은 순전히 주관적이며

《그리하여 사회의 총생산물의 총가치는 수입으로서 분배되였다.》(쌔의 《정치경제학개론》 1817년판, 제2권, 64페지)《매개 생산물의 총가치는 그 생산에 기여한 토지소유자, 자본가 및 산업로동자의 리윤으로써 구성된다.》[로임이 여기에서는 산업로동자의 리윤으로서 나타나고있다.] 《이로 말미암아 사회의 수입은 **생산된 총가치**와 같은것이며 일파의 경제학자들》[중농학파들]《이 생각하듯이 토지의 순생산물과만 같은것이 아니다.》(63페지)

쌔의 이러한 발견은 특히 쁘루동이 표절하였다.

쑤또르호는 원칙적으로는 역시 A. 스미스의 학설을 받아들이고있지만 쌔가 하고있는것과 같은 응용은 지지할수 없는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한 국민의 수입은 그 총생산물과 같다는것, 즉 자본》[불변자본이라고 말하여야 할것이다.]《도 공제될수 없다는것을 인정한다면, 이 국민은 그 장래의 수입을 조금도 손상하지 않고 그 년간생산물의 전체 가치를 비생산적으로 소비할수 있다는것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한 국민의》[불변] 《자본을 이루는 생산물은 소비할수 없는것이다.》(슈또르호 《국민소득의 성격에 관한 고찰》 1824년 빠리판, 147, 150페지)[91]

그러나 슈또르호는 이 불변자본부분의 존재가 그가 받아들인 스미스의 가격분석, 즉 상품가치는 로임과 잉여가치만을 포함하고 불변자본부분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가격분석과

어떻게 일치하는가에 대하여 말하는것을 잊었다. 이 가격분석이 리치에 맞지 않는 결론으로 이끈다는것은 슈또르흐에 있어서는 쌔를 통해서만 분명하게 된다. 그리고 이 점에 관한 그자신의 마지막 말은 다음과 같다.

《필요가격을 그 가장 간단한 요소들로 분해하는것은 불가능하다.》(《정치경제학 강의》 1815년 빼께르부르그판, 제2권, 141페지)

씨스몽디는 특히 자본과 수입의 관계를 고찰하고 실제로 이 관계의 특수한 해석을 자기의 《새 원리》의 특징으로 하고있으나 과학적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문제의 해명에는 조금도 기여하지 않았다.

바튼, 램지 및 쉐르뷜리에[92]는 스미스의 견해를 륭가하여보려고 시도하고있다. 그들이 실패한것은 불변자본가치와 가변자본가치의 구별을 고정자본과 류동자본의 구별로부터 명백히 가르지 않고 처음부터 문제를 일면적으로 제기하고있기때문이다.

죤 스튜어트 밀도 여전히 틀을 차리면서 A. 스미스가 그의 추종자들에게 전한 교리를 중복하고있다.

결론. 스미스의 사상적혼란은 오늘날까지 존속하고있으며 그의 교조는 정치경제학의 정통파적신조로 되고있다.

제 20 장

단 순 재 생 산

1. 문제의 제기

만약(42) 사회적자본 즉 총자본—개별적자본들은 그 단편들을 이루는데 불과하며 이 단편들의 운동은 그것들의 개별적운동인 동시에 총자본의 운동을 구성하는 고리이기도 하다.— 이 사회적자본의 1년간의 기능을 그 결과에서 고찰한다면, 즉 사회가 1년간에 제공하는 상품생산물을 고찰한다면 사회적자본의 재생산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어떠한 성격이 이 재생산과정을 개별적자본의 재생산과정으로부터 구별하는가 또 어떠한 성격이 이 량자에 공통적인가 하는것들이 밝혀지지 않을수 없다. 년간생산물은 사회적생산물중 자본을 보상하는 부분들, 즉 사회적재생산을 포함하는 동시에 소비기금에 들어가서 로동자들과 자본가들에 의하여 소비되는 부분을 포함하며 따라서 생산적소비와 함께 개인적소비를 포함한다. 그것은 또한 자본가계급과 로동자계급의 재생산(즉 유지)을 포함하며 따라서 또 총생산과정의 자본주의적성격의 재생산도 포함한다.

---

(42) 제2고에서.

우리가 분석하여야 할것은 분명히 $W'-\begin{cases}G-W\cdots P\cdots W'\\ g-w\end{cases}$ 이라는 류통공식인데 여기에서는 소비가 반드시 역할을 한다. 왜냐 하면 출발점 $W'=W+w$, 즉 상품자본은 불변자본가치와 가변자본가치를 포함하고 잉여가치도 포함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상품자본의 운동은 생산적소비와 함께 개인적소비도 포함한다. $G-W\cdots P\cdots W'-G'$ 및 $P\cdots W'-G'-W\cdots P$ 순환에서는 **자본**의 운동이 출발점이며 종점이다. 물론 여기에는 소비도 포함되여있다. 왜냐 하면 이 상품, 이 생산물은 판매되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이다. 그러나 이 판매가 수행되는것으로 전제하면 이 상품이 그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것은 개별적자본의 운동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좋다. 이와는 반대로 $W'\cdots W'$ 운동에서는 바로 이 총생산물 W'의 매개 가치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것이 명시되여야 한다는 그것으로부터 사회적재생산의 조건들이 인식될수 있다. 총재생산과정은 여기에서는 자본자체의 재생산과정을 포함하는것과 같은 정도로 류통에 의하여 매개되는 소비과정도 포함한다.

그리고 재생산과정은 우리의 당면한 목적을 위해서는 W'의 개개의 구성부분들의 가치보상과 소재보상의 관점에서 고찰되여야 한다. 우리는 이제는 개별적자본의 생산물가치를 분석할 때와는 달라서 개별적자본가가 자기의 상품생산물의 판매에 의하여 자기의 자본의 구성부분들을 우선 화폐로 전화시키고 그다음에 상품시장에서의 생산요소들의 재구매에 의하여 그것들을 생산자본으로 재전화시킬수 있다고 **전제**하는데 만족할수 없다. 이 생산요소들은 그것들이 물질적인 성격의것인 한 그것들과 교환되며 또 그것들에 의하여 보상되

는 개별적완성생산물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자본의 한 구성부분을 이룬다. 다른 한편 사회적상품생산물중 로동자가 자기의 로임의 지출에 의하여 소비하고 자본가가 잉여가치의 지출에 의하여 소비하는 부분의 운동은 총생산물의 운동을 구성하는 하나의 고리일뿐만아니라 개별적자본의 운동과 엉키며 따라서 이 과정은 단지 그 발생을 전제하는것만으로써는 설명할수 없다.

우리가 직접 당면하고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즉 생산에서 소비된 **자본**은 그 가치상으로 어떻게 년간생산물에 의하여 보상되는가, 또 이 보상의 운동은 자본가에 의한 잉여가치의 소비와 로동자에 의한 로임의 소비와 어떻게 엉키는가 하는것이다. 따라서 우선 문제로 되는것은 단순한 규모에서의 재생산이다. 다음 또 생산물들이 서로 가치대로 교환된다는것이 전체로 될뿐만아니라 생산자본의 구성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런 가치혁명도 일어나지 않는다는것도 전제로 된다. 가격이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사회적자본의 운동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전체로서는 여전히 동일한 량의 생산물이 교환될것이다. 비록 개별적자본가가 이 생산물의 몫에 참여하는 가치비률은 그들 각자의 선대에도, 각자가 개별적으로 생산한 잉여가치량에도 비례하지 않지만, 또 가치혁명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것이 일반적이고 또 균등하게 배당되는 한 그것은 년간총생산물의 가치구성부분들간의 비률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가치혁명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또 불균등하게 배당되는 한 그것은 교란을 표시하는데 이 교란은 **첫째로**, 다만 그것이 원래대로의 가치비률로부터의 **배리**로서 간주되는 한에서만 교란으로서 리해될수 있다.

그러나 **둘째로**, 년간생산물의 가치의 일부분은 불변자본을 보상하고 다른 일부분은 가변자본을 보상한다는 법칙이 증명된다면 불변자본 또는 가변자본의 가치에 혁명이 일어나도 그것은 이 법칙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을것이다. 그것은 다만 불변자본 또는 가변자본으로서 기능하는 가치부분들의 상대적크기를 변경시킬따름일것이다. 왜냐 하면 원래의 가치 대신에 다른 가치가 나타날것이기때문이다.

우리가 자본의 가치생산과 생산물가치를 개별적으로 고찰한 동안에는 상품생산물의 현물형태는 그것이 레컨대 기계로 되여있든 곡물로 되여있든 거울로 되여있든간에 분석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좋은것이였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의 례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그 어떤 생산부문이든지 모두 례증으로 될수 있었다. 우리가 문제로 삼았던것은 어떤 경우에나 하나의 개별적인 자본의 과정으로서 나타나는 직접적생산과정자체였다. 자본의 재생산이 고찰되게 된 한에 있어서는 상품생산물중 자본가치를 표시하는 부분은 자기의 생산적요소들로, 따라서 또 생산자본으로서의 자기의 모습으로 재전화할 기회를 류통분야에서 발견한다는것을 전제하는것으로 충분하였다. 그것은 마치도 로동자와 자본가가 그들의 로임과 잉여가치로써 구매하려고 하는 상품들을 시장에서 발견한다고 전제하는것으로 충분하였던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사회적총자본과 그의 생산물가치의 고찰에 있어서는 이러한 순전히 형태적인 설명방식으로는 이미 불충분한것이다. 생산물가치의 일부분이 자본으로 재전화하고 다른 일부분이 자본가계급과 로동자계급의 개인적소비로 들어가는것은 총자본이 결실한 생산물가치자체의 내부에서의 운동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 운동은 가치보상일뿐만아니라 소재보상이기도 하며 따

라서 사회적생산물의 가치구성부분들의 호상 비률에 의하여 제약되여있는 동시에 그것들의 사용가치, 그것들의 소재적모습에 의해서도 제약되여있다.

그런데(43)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기초우에서는 축적 또는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이 전혀 없다는것이 이상한 가정인만큼,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이 진행되는 제 관계가 어느해에나 절대로 불변인것이 아닌만큼(그런데 그것이 불변인것으로 전제되여있다.) 변함없는 규모에서의 단순재생산이라는것은 하나의 추상이다. 그 전제는 상품의 형태들을 재생산과정에서 변경될수 있다 하더라도 주어진 가치의 사회적자본은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같은 량의 상품가치를 다시 제공하여 같은 량의 욕망을 충족시킨다는것이다. 그러나 축적이 진행되는 한 단순재생산은 언제나 축적의 일부분을 이루며 따라서 그 자체로서 고찰될수 있으며 그것은 축적의 현실적요인이다. 년간생산물의 가치는 사용가치의 량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소될수 있다. 이 가치는 사용가치의 량이 감소하더라도 동일할수 있다. 가치량과 재생산된 사용가치의 량이 동시에 감소될수도 있다. 이 모든것은 재생산이 종전보다 유리한 조건하에서 진행되는가, 보다 곤난한 조건하에서 진행되는가 하는데 귀착되는데 후자의 경우에 그 결과는 불완전한—불충분한—재생산으로 될수 있다. 이 모든것은 다만 재생산의 여러가지 요소의 량적측면에 영향줄수 있을뿐 그 요소들이 재생산하는 자본으로서 또는 재생산되는 수입으로서 총과정에서 노는 역할에는 관련되지 않는다.

---

(43) 이 단락은 제8고에서.

2. 사회적생산의 두 부류(44)

사회의 총생산물, 따라서 또 사회의 총생산은 다음과 같은 2대부류로 나뉘여진다.

Ⅰ. **생산수단**. 생산적소비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거나 또는 적어도 들어갈수 있는 형태를 취하는 상품들.

Ⅱ. **소비수단**. 자본가계급과 로동자계급의 개인적소비로 들어가는 형태를 취하는 상품들.

이 두 부류에 있어서 매개 부류에 속하는 각이한 생산부문들전체는 단일한 큰 생산부문을 이룬다. 즉 한편으로는 생산수단의 생산부문을 이루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수단의 생산부문을 이룬다. 두 생산부문에서 각각 사용되는 총자본은 사회적자본의 하나의 특수한 큰 부류를 이룬다.

매개 부류에서 자본은 다음과 같은 두 구성부분으로 나뉘여진다.

1) **가변자본**. 이것은 **가치**로 보면 이 생산부문에 사용되는 사회적로동력의 가치와 같으며 따라서 이 로동력에 대하여 지불되는 로임의 총액과 같다. 소재로 보면 이것은 발현되고있는 로동력자체로써 이루어진다. 즉 이 자본가치에 의하여 움직이는 산로동으로써 이루어진다.

2) **불변자본**. 즉 이 부문에서의 생산에 사용되는 모든 생산수단의 가치. 이 생산수단자체는 또 **고정**자본 즉 기계, 도구, 건물, 역축 등등과 **류동적**불변자본 즉 원료, 보조재료, 반제품 등등과 같은 생산재료로 나뉘여진다.

---

(44) 주로 제2고에서. 공식은 제8고에서.

이 자본의 도움에 의하여 두 부류에서 각각 생산된 년간 총생산물의 가치는 생산에서 소비되여 가치로 보아서는 다만 생산물로 이전된데 불과한 불변자본 c의 가치부분과 년간총로동에 의하여 첨가된 가치부분으로 나뉘여진다. 이 후자는 또 선대된 가변자본 v의 보상분과 그 가변자본을 초과하여 잉여가치 m을 형성하는 초과분으로 나뉘여진다. 따라서 각 개별적상품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매개 부류의 년간총생산물의 가치도 c+v+m으로 나뉘여진다.

생산에서 **소비된** 불변자본을 표시하는 가치부분 c는 생산에 **사용된** 불변자본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 생산재료는 물론 전부 소비되며 따라서 그 가치는 전부 생산물로 이전되여간다. 그러나 사용된 **고정**자본은 다만 그 일부만 완전히 소비되며 따라서 그 부분의 가치만이 생산물로 이전되여간다. 고정자본인 기계, 건물 등등의 나머지부분은 년년의 마멸에 의거하여 그 가치가 감소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존재하며 기능을 계속한다. 고정자본중 기능을 계속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생산물가치를 고찰할 때에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자본가치중 이 새로 생산된 상품가치와는 독립하여 그것과 병존하고있는 부분을 이룬다. 이것은 이미 개별적자본의 생산물가치의 고찰에 있어서(제1권 제6장, 192페지[93]) 밝혀졌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우리는 거기에서 적용된 고찰방식으로부터 잠시 떠나지 않으면 안된다. 개별적자본의 생산물가치를 고찰할 때 우리가 본바와 같이 마멸에 의하여 고정자본에서 상실되는 가치는 마멸되는 기간에 생산된 상품생산물로 이전되는데 이 고정자본의 일부가 이 기간에 이전된 가치로 하여 현물로 보상되느냐 보상되지 않느냐 하는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와는 반대로 여기에서

사회적총생산물과 그 가치를 고찰함에 있어서는 그 고정자본이 그 일년간에 다시 현물로 보상되여있지 않는 한 마멸에 의하여 일년간에 고정자본에서 년간생산물로 이전된 가치부분을 적어도 잠시 도외시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는 이 장의 뒤의 한절에서 이 점을 따로 론하게 될것이다.

우리는 단순재생산의 연구를 위하여 다음의 공식을 기초로 삼으려 한다. 여기서 c=불변자본, v=가변자본, m=잉여가치이며 가치증식률 $\frac{m}{v}$=100%라고 가정한다. 수자는 수백만 마르크, 수백만프랑 또는 수백만파운드 등의 어느것으로 생각해도 좋다.

Ⅰ. 생산수단의 생산

자본……4,000c+1,000v=5,000

상품생산물…4,000c+1,000v+1,000m=6,000

생산물은 생산수단으로서 존재한다.

Ⅱ. 소비수단의 생산

자본……2,000c+500v=2,500

상품생산물…2,000c+500v+500m=3,000

생산물은 소비수단으로서 존재한다.

요약하면 년간총상품생산물은 다음과 같다.

Ⅰ. 4,000c+1,000v+1,000m=6,000 생산수단

Ⅱ. 2,000c+ 500v+ 500m=3,000 소비수단.

총가치=9,000인데 그 현물형태로 계속 기능하는 고정자본은 전제에 의하여 여기에서 제외되고있다.

지금 우리는 단순재생산의 기초우에서의, 즉 잉여가치전체가 비생산적으로 소비되는 경우의 필요한 교환들을 연구한

다면, 그리고 이러한 교환들을 매개하는 화폐류통을 당분간 고려하지 않는다면 여기서는 처음부터 다음과 같은 세개 요점이 나타난다.

1) Ⅱ부류의 로동자의 로임 500v와 자본가의 잉여가치 500m은 소비수단으로 지출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그것들의 가치는 Ⅱ부류의 자본가의 수중에서 선대된 500v를 보상하며 500m을 대표하는 1,000이라는 가치의 소비수단중에 존재한다. 따라서 Ⅱ부류의 로임과 잉여가치는 Ⅱ부류내에서 Ⅱ부류의 생산물과 교환된다. 이리하여 총생산물중에서 (500v+500m) Ⅱ=1,000이 소비수단으로서 사라진다.

2) Ⅰ부류의 1,000v+1,000m도 소비수단에, 즉 Ⅱ부류의 생산물에 지출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그것들은 Ⅱ부류의 생산물중 아직 남아있는 같은 액수의 불변자본부분 2,000c와 교환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대신에 Ⅱ부류는 같은 액수의 생산수단, 즉 Ⅰ부류의 1,000v+1,000m의 가치가 체현되여있는 Ⅰ부류의 생산물을 받는다. 이리하여 2,000Ⅱc와 (1,000v+1,000m) Ⅰ이 계산에서 사라진다.

3) 아직 4,000Ⅰc가 남아있다. 이것은 생산수단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생산수단은 Ⅰ부류에서만 사용될수 있으며 Ⅰ부류의 소비된 불변자본의 보상에 복무하며 따라서 Ⅰ부류의 개별적자본가들사이에서의 호상교환에 의하여 처리되는것은 (500v+500m) Ⅱ가 Ⅱ부류의 로동자와 자본가사이의 교환이나 또는 개별적자본가사이의 교환에 의하여 처리되는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상은 잠시 아래에서 말하게 되는것을 보다 잘 리해하기 위한것에 불과하다.

3. 두 부류간의 교환:
Ⅰ(v+m) 대 Ⅱc(45)

두 부류간의 큰 교환부터 시작하자. (1,000v+1,000m) Ⅰ—이 가치는 생산수단의 현물형태로 그 생산자들의 수중에 존재한다.—은 2,000Ⅱc 즉 소비수단의 현물형태로 존재하는 가치와 교환된다. 그러한 교환에 의하여 Ⅱ부류의 자본가들은 그들의 불변자본=2,000을 소비수단의 형태로부터 다시 소비수단의 생산수단의 형태로 전화하였다. 즉 불변자본이 새로 로동과정의 요인으로서도, 가치증식을 위한 불변자본가치로서도 기능할수 있는 형태로 전화하였다. 다른 한편 이 교환에 의하여 Ⅰ부류의 로동력의 등가(1,000Ⅰv)와 Ⅰ부류의 자본가의 잉여가치(1,000Ⅰm)는 소비수단으로 실현되였다. 량자는 생산수단의 현물형태로부터 수입으로서 소비될수 있는 현물형태로 전화되였다.

그러나 이 상호교환은 화폐류통에 의하여 성립되는데 이 화폐류통은 이 교환을 매개함과 그 교환을 리해하기 곤난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왜냐 하면 가변자본부분은 부단히 새로 화폐형태로서 나타나야 하기때문이다. 즉 화폐형태로부터 로동력으로 전화되는 화폐자본으로서 나타나야 하기때문이다. 가변자본은 사회의 전체 범위에 걸쳐 동시에 병존하여 운영되는 모든 생산부문들—그것들이 Ⅰ부류에 속하든 Ⅱ부류에 속하든간에—에서 화폐형태로 선대되지 않으면 안된다. 자본가가 로동력을

---

(45) 이하는 또 제8고에서.

구매하는것은 로동력이 생산과정에 들어가기전이지만 로동력에 지불하는것은 약속한 기한이 된 때이며 로동력이 이미 사용가치의 생산에 지출된후이다. 생산물가치중의 나머지부분과 마찬가지로 로동력의 지불에 지출된 화폐의 등가에 불과한 부분, 즉 생산물가치중 가변자본가치를 대표하는 부분도 자본가의것이다. 이 가치부분에서 로동자는 자기의 로임의 등가를 이미 자본가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상품의 화폐로의 재전화, 즉 상품의 판매에 의하여서만 자본가는 자기의 가변자본을 화폐자본으로서 회복시키며 그 화폐자본을 로동력의 구입에 다시 선대할수 있다.

이리하여 Ⅰ부류에서는 전체 자본가는 Ⅰ부류의 생산물, 즉 로동자가 생산한 생산수단의 가치중 v부분으로서 존재하고있는 가치부분 대신에 1,000파운드(내가 파운드라고 말하는것은 다만 그것이 **화폐형태**로 있는 가치라는것을 표시하기 위한데 불과하다.)=1,000v를 로동자들에게 지불하였다. 로동자들은 이 1,000파운드로써 동일한 가치의 소비수단을 Ⅱ부류의 자본가로부터 구매하며 이리하여 Ⅱ부류의 불변자본의 절반을 화폐로 전화시킨다. Ⅱ부류의 자본가들은 또 이 1,000파운드로써 1,000의 가치가 있는 생산수단을 Ⅰ부류의 자본가로부터 구매한다. 이리하여 Ⅰ부류의 자본가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생산물의 일부분으로서 생산수단의 현물형태를 취하고있던 가변자본가치=1,000v가 다시 화폐로 전화되여 이제는 Ⅰ부류의 자본가들의 수중에서 새로 화폐자본으로서 기능할수 있으며 이 화폐자본이 로동력으로, 즉 생산자본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전화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Ⅰ부류의 자본가들의 가변자본은 그들의 상품자본의 일부분이 실현되는데 의하여 그들의 수중에 화폐형태로 환류한다.

그러나 Ⅰ부류의 상품자본중의 m부분과 Ⅱ부류의 불변자본의 나머지 절반과의 교환에 필요한 화폐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여러가지 방식들로 선대될수 있다. 현실에 있어서는 이러한 류통은 두 부류의 개별적자본가들의 무수한 개별적매매를 포함하는데 어떠한 사정하에서도 화폐는 이 자본가들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 하면 로동자들에 의하여 류통에 투입된 화폐량은 이미 계산되였기때문이다. 혹은 Ⅱ부류의 한 자본가가 자기의 생산자본외에 수중에 가지고있는 화폐자본으로써 Ⅰ부류의 자본가들로부터 생산수단을 구매하는수도 있으며 혹은 반대로 Ⅰ부류의 한 자본가가 자본지출이 아니라 개인적지출을 위한 화폐기금으로써 Ⅱ부류의 자본가들로부터 소비수단을 구매하는수도 있다. 우의 제1편 및 제2편에서 밝혀진바와 같이 자본선대를 위해서이든 수입의 지출을 위해서이든 일정한 화폐준비가 어떤 사정하에서도 생산자본과 함께 자본가들의 수중에 있어야 한다고 전제되여 있다. 우리가—이 경우에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는 이 비률은 아무래도 좋다.—화폐의 절반이 Ⅱ부류의 자본가들에 의하여 그들의 불변자본을 보상하기 위하여 생산수단의 구매에 선대되며 다른 절반이 Ⅰ부류의 자본가에 의하여 소비를 위하여 지출된다고 가정한다면 Ⅱ부류는 500파운드를 선대하여 그것으로써 Ⅰ부류로부터 생산수단을 구매하고 이렇게 하여(Ⅰ부류의 로동자로부터 나오는 상술한 1,000파운드를 포함하여) Ⅱ부류의 불변자본의 $\frac{3}{4}$ 을 현물로 보상하며 Ⅰ부류는 이렇게 하여 받은 500파운드로써 Ⅱ부류로부터 소비수단을 구매하며 이리하여 Ⅰ부류의 상품자본중 m으로써 되여있는 부분의 절반을 위하여 류통 w—g—w를 수행한것이며 Ⅰ부류의 이

생산물을 소비기금으로 실현하였다. 이 제2과정에 의하여 500파운드가 화폐자본으로서 Ⅱ부류 자본가의 수중으로 돌아가며 Ⅱ부류는 그 생산자본외에 이 화폐자본을 가지게 된다. 다른 한편 Ⅰ부류는 그 상품자본중 아직 생산물로서 수중에 저장되여있는 ⅲ부분의 절반의 판매를 예견하고—그것이 판매되기전에—Ⅱ부류의 소비수단을 구매하기 위하여 500파운드의 화폐를 지출한다. Ⅱ부류는 이 500파운드로써 Ⅰ부류로부터 생산수단을 구매하며 그렇게 하여 그 불변자본의 전부(1,000+500+500=2,000)를 현물로 보상하였는데 다른 한편 Ⅰ부류는 그 잉여가치의 전부를 소비수단으로 실현하였다. 전체로서 4,000파운드의 상품의 교환이 2,000파운드의 화폐류통으로써 수행되였는데 이 2,000파운드라는 금액이 나오는 것은 우리의 서술에 의하면 다만 년간생산물의 전체가 몇개의 큰 부분으로 나뉘여 한번에 교환되기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뿐이다. 즉 Ⅱ부류는 소비수단의 형태로 재생산된 자기의 불변자본을 다시 생산수단의 형태로 전화시켰는데 그뿐만아니라 Ⅱ부류가 생산수단을 구매하기 위하여 류통에 선대한 500파운드가 그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그것이며 또 Ⅰ부류도 생산수단의 형태로 재생산한 자기의 가변자본을 다시 화폐형태로, 직접 로동력으로 전화될수 있는 화폐자본으로서 다시 소유할뿐만아니라 그밖에 Ⅰ부류가 자기 자본의 잉여가치부분을 판매하기전에 이 판매를 예견하고 소비수단의 구매에 앞당겨 지출한 500파운드가 그에게로 돌아온다는 그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Ⅰ부류에 환류하는것은 이 지출이 수행되였기때문이 아니라 Ⅰ부류의 상품생산물중 Ⅰ부류의 잉여가치의 절반을 담당하는 부분이 후에 판매될수 있기때문이다.

이 두 경우에 Ⅱ부류의 불변자본이 생산물형태로부터 다시 생산수단의 현물형태로, 즉 그것이 자본으로서 기능할수 있는 유일한 형태로 전화할뿐만이 아니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Ⅰ부류의 가변자본부분이 화폐형태로 전화하고 Ⅰ부류의 생산수단의 잉여가치부분이 수입으로서 소비될수 있는 형태로 전화될뿐만이 아니다. 그뿐만아니라 Ⅱ부류에는 500파운드의 화폐자본이 돌아오는데 이 500파운드는 Ⅱ부류가 불변자본중 이 액수에 해당하며 이것을 보상하는 가치부분—그것은 소비수단의 형태로 존재한다.—을 판매하기전에 생산수단의 구매에 선대한것이다. 또 Ⅰ부류에는 Ⅰ부류가 소비수단의 구매에 앞당겨 지출하였던 500파운드가 돌아온다. Ⅱ부류에서는 자기의 상품생산물중의 불변부분의 판매를 예견하고 선대한 화폐가 환류하고 Ⅰ부류에는 자기의 상품생산물중의 잉여가치부분의 판매를 예견하고 선대한 화폐가 환류한다면 그것은 다만 한 부류의 자본가들은 Ⅱ부류의 상품형태로 존재하는 불변자본외에, 또 다른 부류의 자본가들은 Ⅰ부류의 상품형태로 존재하는 잉여가치외에 각각 더 500파운드의 화폐를 류통에 투입하였기때문이다. 결국 그들은 각자의 상품등가의 교환에 의하여 서로 완전히 지불을 끝낸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상품의 가치액이외에 이 상품교환의 수단으로서 류통에 투입한 화폐는 그들 각자가 류통에 투입한 비률에 따라 류통으로부터 다시 그들 각자에게 돌아온다. 그들은 이에 의하여서는 한푼도 더 얻지 못하였다. Ⅱ부류는 소비수단의 형태로 불변자본=2,000과 화폐형태로 500을 가지고있었는데 그들은 지금도 종전대로 생산수단으로 2,000과 화폐로 500을 가지고있다. 마찬가지로 Ⅰ부류도 종전대로 1,000의 잉여가치(상품, 생산수단으로부터 이제는 소비기금으로 전화되여있

다.)와 화폐로 500을 가지고있다.—일반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산업자본가들이 그들자신의 상품류통을 매개하기 위하여 류통에 투입하는 화폐는 상품의 불변가치부분의 판매를 예견하고 투입되든 또는 상품에 존재하는 잉여가치—그것이 수입으로서 지출되는 한에서의—의 실현을 예견하고 투입되든간에 자본가들이 화폐류통을 위하여 선대한만큼한 액수가 그들 각자의 수중으로 돌아온다.

제Ⅰ부류의 가변자본의 화폐형태로의 재전화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 가변자본은 Ⅰ부류의 자본가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그것을 로임으로 투하한후에는 우선 상품형태로 존재하는데 이 형태로 로동자들이 가변자본을 자본가들에게 제공한 것이다. 자본가들은 이 자본을 화폐형태로 로동자들에게 그들의 로동력의 가격으로서 지불하였던것이다. 자본가들은 그 한에 있어서는 그들의 상품생산물중 화폐로 투하된 이 가변자본과 같은 가치구성부분을 이미 지불한것이다. 그대신에 그들은 상품생산물중의 이 부분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로동계급중 Ⅰ부류 자본가들에 의하여 사용된 부분은 자기자신이 생산한 생산수단의 구매자가 아니다. 이 로동자부분은 Ⅱ에 의하여 생산된 소비수단의 구매자이다. 따라서 로동력의 대가를 지불할 때 화폐로 선대된 가변자본은 Ⅰ부류의 자본가들에게로 직접 돌아오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로동자들이 수행하는 구매를 통하여 로동자들에게 필요하며 또 일반적으로 그들이 입수할수 있는 상품의 자본주의적생산자들의 수중으로, 즉 Ⅱ부류 자본가들의 수중으로 옮겨가며 이 Ⅱ부류 자본가들이 이 화폐를 생산수단의 구입에 사용하는데 의하여 비로소, 즉 이렇게 우회적으로 Ⅰ부류 자본가의 수중으로 돌아온다.

이리하여 다음과 같은것이 분명해진다. 단순재생산에 있어서는 Ⅰ부류의 상품자본중의 가치액 v+m은(따라서 또 Ⅰ부류의 총상품생산물중의 이에 해당한 비례적부분도) Ⅱ부류의 총상품생산물중의 역시 비례적부분으로서 분리되는 불변자본 Ⅱc와 같지 않으면 안된다. 즉 Ⅰ(v+m)=Ⅱc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4. Ⅱ부류내부에서의 교환. 필요생활수단과 사치품

다음에는 Ⅱ부류의 상품생산물의 가치중에서 그 구성부분 v+m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찰은, 즉 여기서 우리가 취급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즉 매 개별적 자본주의적상품생산물의 가치의 c+v+m으로의 분해는 비록 그것이 각이한 현상형태들에 의하여 매개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년간총생산물의 가치에도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와는 조금도 관계가 없다. 이 문제는 한편으로는 Ⅰ(v+m)대 Ⅱc의 교환에 의하여 해결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Ⅰ부류의 년간상품생산물중의 Ⅰc의 재생산에 관한 연구—후에 하기로 보류한다.—에 의하여 해결된다. Ⅱ(v+m)은 소비재의 현물형태로 존재하므로 또 로동력에 대한 지불로 로동자들에게 선대된 가변자본은 대체로 그들에 의하여 소비수단에 지출되지 않으면 안되므로, 또 상품의 가치부분 m은 단순재생산이라는 전제하에서는 실제상 수입으로서 소비수단에 지출되므로 얼핏보아도 명백한것은 Ⅱ부류 로동자들은 Ⅱ부류 자본가들로부터 받은 로임으로 그들 자신의 생산물의 일부분—로임으로 받은 화폐가치의 크기

에 상응한 부분—을 되산다는것이다. 이에 의하여 Ⅱ부류 자본가계급은 로동력에 대한 지불에 선대한 자기의 화폐자본을 화폐형태로 재전화시킨다. 그것은 그들이 로동자들에게 단순한 가치기호로서 지불한것이나 완전히 동일한것이다. 로동자들이 자기들이 생산한것이고 자본가의것인 상품생산물의 일부분을 구매하는데 의하여 이 가치기호를 실현하면 이 가치기호는 자본가의 수중으로 되돌아가는것이지만 다만 여기서는 이 가치기호가 가치를 표시할뿐만아니라 자기의 금은제의 육체중에 가치를 가지고있다는것뿐이다. 이와 같이 화폐형태로서 선대된 가변자본이 로동계급이 구매자로서 나타나고 자본가계급이 판매자로서 나타나는 과정을 거쳐 돌아온다는 환류에 대하여서는 후에 상세히 연구할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또 하나의 다른 문제점이 이와 같이 가변자본이 그 출발점으로 환류한다는것에 관련하여 고찰되지 않으면 안된다.

년간상품생산의 Ⅱ부류는 극히 다종다양한 산업부문들로 구성되는데 이 부문들은 그것들의 생산물로 보아 다음과 같은 두개의 큰 아부류로 나뉘여질수 있다.

(a) 소비수단. 이것은 로동계급의 소비로 들어가는것이며 또 그것이 필요생활수단인 한에서는 비록 질과 가치로 보아 로동자들의 필요생활수단과는 흔히 다르다 하더라도 역시 자본가계급의 소비의 한 부분을 이루고있다. 이 아부류 전체를 우리의 연구목적을 위해서는 **필요**소비수단이라는 항목에 개괄할수 있다. 그런데 이에 있어서 레컨대 담배와 같은 생산물이 생리학적관점에서 필요소비수단이냐 아니냐 하는것은 아무래도 전혀 좋으며 관습상 그것이 필요소비수단이면 그만이다.

(b) **사치**소비수단. 이것은 자본가계급의 소비로만 들어가며 따라서 로동자들의 수중에는 결코 들어오지 않는 잉여

가치의 지출분과만 교환될수 있는것이다. 첫째 항목에서는 분명히 이에 속하는 상품종류의 생산에 선대된 가변자본은 Ⅱ부류의 자본가계급중 이 필요생활수단을 생산하는 부분(즉 Ⅱa의 자본가들)에게 화폐형태로 직접 환류하여야 한다. 그들은 그들자신의 로동자들에게, 로임으로서 그들에게 지불한 가변자본액수만큼 이 필요생활수단을 판매한다. 이 환류는 비록 여러가지 관계산업부문들의 자본가들사이에서의 거래—이런 거래들에 의하여 이 환류하는 가변자본은 비례적으로 분배된다.—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Ⅱ부류의 자본가계급의 이 아부류 a 전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이다. 이것은 로동자들이 지출하는 화폐에 의하여 류통수단을 직접 제공하는 류통과정이다. 그러나 아부류 Ⅱb에 있어서는 사정이 다르다. 가치생산물중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로 삼고있는 부분의 전체, 즉 Ⅱb(v+m)은 사치품의 현물형태로 존재한다. 즉 생산수단의 형태로 존재하는 상품가치 Ⅰv와 마찬가지로 로동계급이 구매할수 없는 물품의 현물형태로 존재한다. 이 사치품이나 그 생산수단이나 다 이 로동자들의 생산물이기는 하지만 로동자들은 구매할수 없다. 그러므로 이 아부류에 선대된 가변자본을 그 화폐형태로 자본주의적생산자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환류는 직접적일수 없으며 Ⅰv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간접적으로 진행되지 않을수 없다.

례컨대 우에서 Ⅱ부류 전체에 대하여 가정한것처럼 v=500, m=500이라고 가정하지만 가변자본도, 그에 상응하는 잉여가치도 다음과 같이 분배된다고 가정하자.

아부류 a: 필요생활수단: v=400, m=400. 따라서 400v+400m=800의 가치가 있는 필요소비수단으로 이루어진 상품량. 즉 Ⅱa(400v+400m).

아부류 b: 100v+100m=200의 가치가 있는 사치품. 즉 Ⅱb (100v+100m).

Ⅱb의 로동자들은 자기들의 로동력에 대한 지불로서 화폐로 100, 레컨대 100파운드를 받았다. 그들은 이 화폐로써 Ⅱa의 자본가들로부터 100이라는 액수의 소비수단을 구매한다. 이리하여 이 자본가계급은 Ⅱb의 상품을 100만큼 구매하며 이것으로 하여 Ⅱb의 자본가들에게는 그들의 가변자본이 화폐형태로 환류한다.

Ⅱa에서는 자본가들의 수중에 그들자신의 로동자들과의 교환에 의하여 이미 400v가 화폐형태로 존재한다. 그외에 그들의 생산물중 잉여가치를 표시하는 부분의 $\frac{1}{4}$이 Ⅱb의 로동자들에게 인도되였으며 그 대신에 사치품으로 Ⅱb(100v)가 인수되였다.

지금 수입의 지출이 필요생활수단과 사치품으로 분할되는 비률이 Ⅱa의 자본가들에게 있어서도, Ⅱb의 자본가들에게 있어서도 같다고 전제하면—량자가 다 필요생활수단에 $\frac{3}{5}$, 사치품에 $\frac{2}{5}$를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아부류 Ⅱa의 자본가들은 그들의 잉여가치수입의 400m의 $\frac{3}{5}$, 즉 240을 그들자신의 생산물인 필요생산수단에 지출하고 $\frac{2}{5}$, 즉 160을 사치품에 지출할것이다. 아부류 Ⅱb의 자본가들도 그들의 잉여가치=100m을 마찬가지로 분할할것이다. 즉 $\frac{3}{5}$=60을 필요생활수단에, $\frac{2}{5}$=40을 사치품에 지출할것이다. 이 사치품은 그들자신의 아부류 내부에서 생산되고 교환되는것이다.

(Ⅱa)m이 받는 사치품 160은 다음과 같이 Ⅱb 자본가들에게로 흘러간다. 우리가 본바와 같이 (Ⅱa) 400m중 필요생활수단의 형태로 있는 100은 사치품으로 존재하는 같은 액의 (Ⅱb)v와 교환되였으며 또 필요생활수단으로서의 60은 사치품으로서의 (Ⅱb) 60m과 교환되였다. 그러면 총계산은 다음과 같이 된다.

Ⅱa: 400v+400m; Ⅱb: 100v+100m.

1) 400v(a)는 Ⅱa의 로동자들에 의하여 소비되는데 그것은 그들의 생산물(필요생활수단)의 일부분을 이루는것이다. 로동자들은 그것을 그들자신의 부류의 자본주의적생산자들로부터 구매한다. 이리하여 이 자본주의생산자들에게 400파운드의 화폐가 돌아간다. 즉 그들이 이 로동자들에게 로임으로 지불한 가변자본가치 400이 돌아간다. 그들은 이 화폐로 다시 로동력을 구매할수 있다.

2) 400m(a)중 100v(b)와 동일한 부분, 즉 잉여가치 (a)의 $\frac{1}{4}$은 다음과 같이 사치품에서 실현된다. (b)의 로동자들은 자기들의 부류 (b)의 자본가들로부터 로임으로 100파운드를 받는다. 그들은 그것으로써 m(a)의 $\frac{1}{4}$을, 즉 필요생활수단으로 이루어진 상품을 구매한다. a의 자본가들은 이 화폐로써 동일한 가치액의 사치품=100v(b)를, 즉 전체 사치품생산물의 절반을 구매한다. 그리하여 b의 자본가들에게로 그들의 가변자본이 화폐형태로 돌아간다. 그리하여 그들은 로동력을 새로 구매하는데 의하여 그들의 재생산을 다시 시작할수 있다. 왜냐 하면 Ⅱ부류 전체의 불변자본은 전부 이미 Ⅰ(v+m)대 Ⅱc의 교환에 의하여 보상되였기때문이다. 따라서

사치품생산로동자들의 로동력이 새로 판매될수 있는것은 다만 그들자신의 생산물중 그들의 로임의 등가로서 창조된 부분이 Ⅱa의 자본가들에 의하여 그들의 소비기금으로 들어가고 화폐로 전화되기때문이다(이것은 Ⅰ부류의 로동력의 판매에도 적용된다. 왜냐 하면 Ⅰ(v+m)와 교환되는 Ⅱc는 사치품으로도 구성되고 필요생활수단으로도 구성되며 또 Ⅰ(v+m)에 의하여 갱신되는것은 사치품의 생산수단과 필요생활수단의 생산수단을 이루기때문이다.).

3) 다음에는 두 아부류의 자본가들의 교환에 불과한 한에서의 a와 b간에서의 교환으로 넘어가자. 상술한바에 의하여 a의 가변자본(400v)과 잉여가치의 일부분(100m), 그리고 b의 가변자본(100v)은 이미 해결되였다. 우리는 더 나아가 두 아부류의 자본가가 그들의 수입을 지출할 때의 평균적인 비률을 사치에 $\frac{2}{5}$, 생활상의 필요에 $\frac{3}{5}$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므로 아부류 a전체에는 이미 사치품에 지출된 100이외에 아직 사치를 위한 60이 있으며 또 b에도 동일한 비률로 사치를 위한 40이 있다.

그리하여(Ⅱa) m은 생활수단을 위한 240, 사치품을 위한 160으로 분할되며 240+160=400m(Ⅱa)으로 된다.

(Ⅱb)m은 생활수단을 위한 60, 사치품을 위한 40으로 분할되며 60+40=100m(Ⅱb)으로 된다. 이 마지막 40을 이 아부류는 그자신의 생산물중에서 소비하며 (그 잉여가치의 $\frac{2}{5}$) 생활수단을 위해 60을 이 아부류는 그의 잉여생산물중의 60을 60m(a)과 교환하는데 의하여 얻는다.

그리하여 Ⅱ부류의 전체 자본가계급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된다(그 경우에 v+m은 아부류 a에서는 필요생활수단으로 되여있고 아부류 b에 있어서는 사치품으로 되여있다.).

Ⅱa(400v+400m)+Ⅱb(100v+100m)=1,000. 이것은 운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실현된다. 500v(a+b)〔400v(a)와 100m(a)로 실현되는것〕+500m(a+b)〔300m(a)+100v(b)+100m(b)로 실현되는것〕=1,000.

a와 b를 각각 그자체로서 고찰하면 실현은 다음과 같이 된다—

$$\text{(a)}\ \frac{v}{400v(a)} + \frac{m}{240m(a)+100v(b)+60m(b)} = 800$$

$$\text{(b)}\ \frac{v}{100m(a)} + \frac{m}{60m(a)+40m(b)} \cdots\cdots\cdots\cdots = 200$$

1000

간단히 하기 위하여 가변자본과 불변자본간의 비률을 전과 같다고 하면(부대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400v(a)에 대해서는 불변자본은 1,600이고 100v(b)에 대해서는 불변자본은 400으로 되며 Ⅱ부류의 두 아부류 a와 b는 다음과 같이 된다.

(Ⅱa) 1,600c+400v+400m=2,400

(Ⅱb) 400c+100v+100m=600

합계는 다음과 같이 된다.

2,000c+500v+500m=3,000

이에 상응하여 2,000Ⅰ(v+m)과 교환되는 소비수단으로서의 2,000Ⅱc중 1,600은 필요생활수단의 생산수단으로 전환되고 400은 사치품의 생산수단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200Ⅰ(v+m)는 그자체가 또 a를 위한 (800v+800m)Ⅰ, 즉 필요생활수단을 위한 생산수단 1,600과 b를 위한(200v+200m)Ⅰ, 즉 사치품의 생산수단 400으로 분할될것이다.

본래의 로동수단뿐만아니라 원료나 보조재료 등등도 그 현저한 부분이 어느 부류에 있어서나 같은 종류의것이다. 그러나 총생산물 Ⅰ(v+m)의 각이한 가치부분들의 전환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 분할은 중요하지 않을것이다. 상술한 800Ⅰv와 200Ⅰv는 다음과 같이 실현된다. 즉 로임이 소비수단 1,000Ⅱc로 지출되며 따라서 로임으로서 선대된 화폐자본이 돌아올 때에 Ⅰ부류 자본주의적생산자들간에 평등하게 분배되여 그들의 출자에 비례하여 그들의 선대가변자본이 다시 화폐로 보상되는데 의하여 실현된다. 다른 한편 1,000Ⅰm의 실현에 관하여 말한다면 여기서도 자본가들은 평등하게(그들의 m의 크기에 비례하여) Ⅱc의 나머지 절반전체=1,000으로부터 소비수단으로서의 600Ⅱa와 400Ⅱb를 끌어낼것이다. 따라서 Ⅱa의 불변자본을 보상하는 자본가는

600c(Ⅱa)으로부터 $480\left(\frac{3}{5}\right)$과 400c(Ⅱb)로부터의 $320\left(\frac{2}{5}\right)$의 합계 800을 끌어내며 따라서 Ⅱb의 불변자본을 보상하는 자본가는

600c(Ⅱa)으로부터 $120\left(\frac{3}{5}\right)$, 400c(Ⅱb)에서 $80\left(\frac{2}{5}\right)$=200을 끌어낼것이다. 합계는 1,000이다.

여기에서 임의로 정해져있는것은 Ⅰ부류에서나 Ⅱ부류에서나 가변자본과 불변자본의 비률이며 또 Ⅰ부류에서나 Ⅱ부류에서나 그 아부류에서나 이 비률이 동일하다는것이다. 이것이 동일하다는데 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여기에서 간단히

하기 위하여 가정된데 지나지 않으며 각이한 비률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문제의 조건들과 그것의 해결에는 절대로 아무런 변화도 없을것이다. 그런데 단순재생산의 전제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필연적결과에 이르게 된다.

1) 생산수단의 현물형태로 년간로동에 의하여 새로 창조되는 가치(v+m으로 나눌수 있는)는 년간로동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생산되는 생산물 가치중의 소비수단의 형태로 재생산되는 불변자본가치 c와 같다. 그것이 Ⅱc보다도 작다면 Ⅱ부류는 그 불변자본을 전부 보상하지는 못할것이다. 그것이 Ⅱc보다 크다면 초과분은 리용되지 않고 남을것이다. 두 경우에 모두 단순재생산이라는 전제가 위반될것이다.

2) 소비수단의 형태로 재생산되는 년간생산물의 경우에는 화폐형태로 선대되는 가변자본 v가 그 취득자들이 사치품생산에 종사하는 로동자들인 한에서는 필요생산수단중에서 그것의 자본주의적생산자들의 잉여가치가 구현되여있는 부분에서만 이 사치품생산로동자들에 의하여 실현된다. 따라서 사치품생산에 투하되는 v는 필요생활수단의 형태로 생산되는 m중의 이 v의 가치량에 해당하는 부분과 같으며 따라서 이 m 전체, 즉(Ⅱa)m보다 작지 않을수 없다. 그리고 다만 그 v가 m의 이 부분에서 실현되는데 의해서만 사치품의 자본주의적 생산자들에게 그들의 선대가변자본이 화폐형태로 돌아간다. 이것은 Ⅰ(v+m)의 Ⅱc로의 실현과 완전히 같은 현상이다. 다만 여기서는 (Ⅱb)v가 (Ⅱa)m중 가치량으로 보아 자기와 같은 **부분**에 실현되여있을뿐이다. 이러한 관계는 년간총생산물이 류통에 의하여 매개되는 년간재생산과정에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한 년간총생산물의 매 차례의 분배에서 질적으로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Ⅰ(v+m)은 Ⅱc에서만 실현될수 있으며

생산자본의 구성부분으로서 기능하는 Ⅱc는 오직 이 실현에 의해서만 그 기능을 갱신할수 있다. 마찬가지로 (Ⅱb)v는 오직 (Ⅱa)m의 일부분에서만 실현될수 있으며 또 오직 그 실현에 의해서만 (Ⅱb)v는 화폐자본으로서의 그 형태에로 재전화할수 있다. 더 말할것도 없이 상술한것들이 적용될수 있는것은 오직 이 모든것이 현실적으로 재생산과정자체의 결과인 한에서이며 따라서 례컨대 Ⅱb의 자본가들이 v를 위한 화폐자본을 신용에 의하여 다른데로부터 얻지 않는 한에서이다. 이와 반대로 량적으로는 년간생산물의 여러가지 부분들간의 교환이 상술한 비례를 가지고 진행될수 있는것은 다만 생산의 규모와 생산의 가치관계가 불변인 한에서만이며 또한 이 엄밀한 비례관계들이 대외무역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에서이다.

그런데 만약 A. 스미스식으로 Ⅰ(v+m)은 Ⅱc로 분해되며 또 Ⅱc는 Ⅰ(v+m)으로 분해된다거나 또는 그가 더욱 빈번히 그리고 더욱 명청하게 되풀이하여 말하고있는것처럼 Ⅰ(v+m)은 Ⅱc의 가격(또는 가치, 그는 교환가치라고 말하고있다.)의 구성부분들을 이루며 또 Ⅱc는 가치 Ⅰ(v+m)의 전체 구성부분을 이룬다고 말하려 한다면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말할수도 있을것이며 또 말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즉 (Ⅱb)v는 (Ⅱa)m으로 또는 (Ⅱa)m은 (Ⅱb)v로 분해된다고. 또는 (Ⅱb)v는 잉여가치 Ⅱa의 구성부분을 이루며 또 그 반대이기도 하다고, 그리하여 잉여가치는 로임, 따라서 가변자본으로 분해되고 또 가변자본은 잉여가치의 한 《구성부분》을 이룬다는것으로 된다. 사실 A. 스미스에게서는 이러한 어리석은 것을 볼수 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로임은 필요생활수단의 가치에 의하여 규정되며 이러한 상품가치는 또 반대로

그것에 포함되여있는 로임(가변자본)의 가치와 잉여가치에 의하여 규정되기때문이다. 그는 자본주의적기초우에서 1로동일의 가치생산물이 분할될수 있는 부분들—v+m—에 정신이 팔려 다음과 같은것은 아주 잊고있다. 즉 단순한 상품교환에서는 각이한 현물형태로 존재하는 등가물들이 지불로동으로써 구성되여있는가 또는 부지불로동으로써 구성되여있는가 하는것은 어느 경우나 다 그것들의 생산에 같은 량의 로동이 들기때문에 아무래도 좋다는것이며 또 A의 상품은 생산수단이고 B의 상품은 소비수단인가 아닌가, 판매된후에는 한 상품은 자본의 구성부분으로 기능하여야 하는데 그와 반대로 다른 상품은 소비기금으로 들어가서 애담이 말하는것처럼 수입으로서 소비되는가 아닌가 하는것은 역시 아무래도 좋다는 것이다. 개별적구매자가 자기의 상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것은 상품교환과는 관계가 없는것이며 따라서 류통분야에 속하지 않는것이며 상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은 년간사회적총생산물의 류통을 분석할 때에는 이 생산물의 각이한 구성부분의 일정한 용도, 그것들의 소비의 계기가 고려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으로 해서는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상술한바와 같이 (Ⅱb)v 대 (Ⅱa)m중의 등가부분의 전환에서는 또 더 나가서 (Ⅱa)m과 (Ⅱb)m사이의 전환에서도, Ⅱa나 Ⅱb의 개별적자본가들이든, 그 부류의 자본가전체이든간에 그들이 자기들의 잉여가치를 필요소비대상과 사치수단으로 동일한 비률로 분할한다는것은 결코 전제되여있지 않다. 어떤 사람은 보다 많이 이 소비에 지출할수 있고 다른 어떤 사람은 보다 많이 저 소비에 지출할수 있다. 단순재생산의 기초우에서는 다만 전체 잉여가치와 같은 가치액이 소비기금

으로 실현된다는것이 전제로 되여있을뿐이다. 따라서 한계가 주어져있는것이다. 매 부류내부에서는 어떤 사람은 a에 보다 많이 지출할수 있고 다른 사람은 b에 보다 많이 지출할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상쇄될수 있으며 따라서 a 및 b의 자본가계급은 전체로서 보면 각각 동일한 비률로 a 및 b의 생산물의 소비에 참가한다. 그러나 가치비률—즉 II의 생산물의 총가치중에서 a 및 b의 두 종류의 생산자가 차지하는 비례적몫은, 따라서 그 생산물들을 제공하는 생산부문들간의 일정한 량적비률도 매개 구체적경우에는 언제나 필연적으로 주어져있다. 다만 례로서 든 비률이 가정적인것일따름이다. 다른 비률이 가정된다 하여 질적계기들은 조금도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량적규정이 변경될따름이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사정에 의하여 a 및 b의 크기의 비률에 현실적변화가 일어난다면 그에 따라 단순재생산의 제조건도 변화될것이다.

(IIb)v가 (IIa)m중의 등가 부분으로 실현된다는 사정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즉 년간생산물중의 사치품부분이 증대하고 따라서 사치품생산에 흡수되는 로동력의 비률이 증대함에 따라 그와 같은 정도로 (IIb)v에 선대된 가변자본이 화폐자본으로 재전화하여 그것이 가변자본의 화폐형태로 기능하게 되는것은,. 따라서 또 로동계급중 IIb에 종사하는 부분의 생존과 재생산—이 부분에로의 필요소비수단의 공급—은 자본가계급의 랑비, 즉 이 계급의 잉여가치의 큰 부분의 사치품에로의 전화를 조건으로 한다는것이다.

매 차례의 공황은 일시적으로 사치품소비를 감소시킨다. 공황은 (IIb)v의 화폐자본으로의 재전화를 지연시키고 정체시키며 이 재전화를 부분적으로만 진행되게 하며 따라서 사

치품생산에 종사하는 로동자의 일부분을 해고하는데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필요소비수단의 판매를 정체시키며 감소시킨다. 그들과 동시에 해고되는 비생산적로동자들—이들은 자기들의 복무에 대하여 자본가들의 사치적지출의 일부를 받으며(그 한에 있어서 이 로동자들자신이 사치품이다.) 또 특히 필요생활수단 등등의 소비에도 관여하는바가 매우 크다—은 전혀 도외시한다. 번영기 특히는 투기의 최성기에는 사태가 이와 반대이다. 이러한 시기에는 상품에 표현된 화폐의 상대적가치가 이미 다른 여러가지 리유로도(현실적인 가치혁명이 없는데도) 내리며 따라서 상품의 가격이 상품자체의 가치와는 관계없이 오른다. 단지 필요생활수단의 소비가 늘뿐만이 아니다. 로동계급(이제는 그의 전체 예비군이 현역으로서 참가한다.)도 일시적으로 평소에는 자기의 수중에 들어올수 없는 사치품의 소비에 참가하며 그리고 평소에는 대부분이 다만 자본가계급들의 《필요》소비수단으로만 되고있는 종류의 필요소비품의 소비에도 참가하는데 이것이 또한 가격의 등귀를 초래한다.

공황이 지불능력있는 소비의 부족으로, 또는 지불능력있는 소비자의 부족으로 일어난다고 말하는것은 순전한 동의반복이다. 자본주의제도는 구제대상자인 적빈자나 《도적》의 소비를 제외하고는 지불하는 소비가 아닌 소비는 모른다. 상품이 판매될수 없다는것은 상품의 지불능력있는 구매자, 즉 소비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는(상품을 사는것이 결국은 생산적소비를 위하든, 아니면 개인적소비를 위하든간에)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만일 누가 로동계급은 그들자신의 생산물중의 너무나 적은 부분을 받고있으므로 로동계급이 보다 큰 몫을 받으며 따라서 그들의 로임이 증대되면 이 폐단은 제거

될것이라는것을 주장함으로써 이 동의반복에 보다 심오한 근거가 있는듯한 외관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하여서는 그저 다음과 같이 말하면 될것이다. 로임이 일반적으로 올라서 로동계급이 년간생산물중의 소비용부분의 보다 큰 몫을·현실적으로 받는 바로 그 시기가 언제나 공황을 준비한다고. 이러한 시기는—이 건전하고 《단순한》(!) 상식의 기사들의 관점에서는—도리여 공황을 없앨터인데. 그리하여 자본주의적생산은 선의나 악의와는 관계없는 제조건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건이 로동계급의 상대적번영을 일시적으로만, 그리고 언제나 다만 공황의 전조로서만 허용하는것처럼 보이는것이다.(46)

앞에서 본바와 같이 필요소비수단의 생산과 사치품의 생산간의 비례관계는 Ⅱ(v+m)가 Ⅱa와 Ⅱb로 분할되는것을 조건으로 하며 따라서 또 Ⅱc가 (Ⅱa)c와 (Ⅱb)c로 분할되는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 분할은 생산의 성격과 량적관계에 대하여 근본적의의가 있는것이며 생산의 총형태를 본질적으로 규정하는 하나의 계기인것이다.

단순재생산은 본질상 소비를 목적으로 하고있다. 비록 잉여가치의 획득이 개개의 자본가들의 동기로서 나타나지만. 그러나 잉여가치는—그의 비례적크기가 어떠하든간에— 결국 여기서는 다만 자본가들의 개인적소비를 위하여 복무할뿐이다.

단순재생산이 모든 확대된 규모에서의 년간재생산의 부분이고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인 한 이 개인적소비의 동기는 치부의 동기자체에 수반되는것이며 또 그에 대립하는것이다. 사태는 현실에서는 더 복잡한 형태로 나타난다. 왜냐 하면

---

(46) 로드베르투스의 공황론을 신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에게 주는 참고로서 제공한다. —F. 엥겔스

획득물—자본가의 잉여가치—을 나누어가지는자들은 이 자본가와는 독립한 소비자로서 나타나기때문이다.

5. 화폐류통에 의한 교환의 매개역할

지금까지 전개해온 한에 있어서는 각이한 부류의 생산자들간의 류통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진행되였다.

1) Ⅰ부류와 Ⅱ부류간에서는

Ⅰ. 4,000c+1,000v+1,000m

Ⅱ. …… 2,000c……500v+500m.

이리하여 Ⅱc=2,000의 류통은 끝났으며 그것은 이미 Ⅰ(1,000v+1,000m)와 교환되였다.

아직 남아있는것은—4,000Ⅰc는 잠시 제외하므로—Ⅱ부류내에서의 v+m의 류통이다. 그런데 이 Ⅱ(v+m)은 두 아부류 Ⅱa와 Ⅱb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분할된다.

2) Ⅱ. 500v+500m=a(400v+400m)+b(100v+100m).

400v(a)는 그자신의 아부류내에서 류통한다. 이것으로 지불을 받는 로동자들은 그것과의 교환으로 그들자신이 생산한 필요생활수단을 그들의 고용주인 Ⅱa자본가들로부터 구매한다.

두 아부류의 자본가들은 그들의 잉여가치의 $\frac{3}{5}$을 Ⅱa의 생산물(필요생활수단)에 지출하고 $\left(\frac{2}{5}\right)$를 Ⅱb의 생산물(사치품)에 지출하므로 a의 잉여가치의 $\left(\frac{3}{5}\right)$, 즉 240은 아부류 Ⅱa 자체내에서 소비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b의 잉여가치(이것은 사치품으로 생산되여 존재하고있다.)의 $\left(\frac{2}{5}\right)$는 아부류 Ⅱb내

에서 소비된다.

따라서 Ⅱa 및 Ⅱb간에서 아직 교환되여야 할것은

Ⅱa측에 160m이며

Ⅱb측에 100v+60m이다. 이것들은 서로 삭제한다. Ⅱb의 로동자들은 화폐임금으로 받은 100으로 Ⅱa로부터 100만큼의 필요생활수단을 구매한다. 마찬가지로 Ⅱb의 자본가들도 그들의 잉여가치의 $\left(\frac{3}{5}\right)$=60만큼의 필요생활수단을 Ⅱa로부타 구매한다. 이에 의하여 Ⅱa의 자본가들은 우에서 가정한대로 그들의 잉여가치의 $\left(\frac{2}{5}\right)$=160m을 Ⅱb에 의하여 생산된 사치품(지불한 로임을 보상하는 생산물로서 Ⅱb의 자본가들의 수중에 있는 100v와 그밖에 60m)에 투하하기에 필요한 화폐를 얻는다. 그리하여 이것을 표시하는 공식은

3) Ⅱa. (400v)+(240m) +160m

Ⅱb. ····· 100v+60m+(40m)

로 되며 여기에서 괄호안에 넣은 금액은 그자신의 아부류내에서만 류통하며 소비되는것이다.

가변자본으로서 선대된 화폐자본의 직접적환류는 다만 필요생활수단을 생산하는 Ⅱa의 자본가부류에게 있어서만 있는 일인데 이러한 환류는 다만 류통에 화폐를 선대하는 상품생산자들에게는 상품류통의 경과가 정상적이면 그 화폐가 돌아온다는 이 상술한 일반적법칙이 특수한 조건들에 의하여 수정되여 나타난것에 불과하다. 지나가는김에 말하지만 여기에서 또 다음과 같은것도 나온다. 만일 상품생산자의 배후에 어떤 화폐자본가가 있어서 그가 또 산업자본가에게 화폐자본(이 용어의 가장 엄밀한 의미에서의 화폐자본, 즉 화폐형태

에 있는 자본가치)을 선대한다면 이 화폐의 본래의 환류점은 이 화폐자본가의 호주머니라고 할수 있다. 이리하여 화폐는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 많게 적게 류통하지만 류통하는 화폐의 대량은 화폐자본중 은행 등의 형태로 조직화되고 집적된 부류에 속한다. 이 부류가 그 자본을 선대하는 방식은 이 부류에로의 화폐형태로서의 부단한 종국적환류를 필연적인것으로 만든다. 비록 이 환류는 다시 산업자본의 화폐자본으로의 재전화에 의하여 매개되지만.

상품류통에는 언제나 두가지 물건이 필요하다. 그것은 즉 류통에 투입되는 상품과 류통에 투입되는 화폐이다. 《류통과정은 직접적생산물교환과는 달리 사용가치의 장소변환 또는 소유자변환에 의하여 사라져버리는것이 아니다. 화폐는 최후에 한 상품의 형태변화의 계렬로부터 리탈한다고 해서 사라져버리는것이 아니다. 화폐는 언제나 상품이 내준 류통장소에 가라앉는다.》(제1권 제3장, 92페지)[82]

례컨대 우리는 Ⅱc와 Ⅰ(v+m)간의 류통에서 이 류통을 위하여 500파운드의 화폐가 Ⅱ부류에 의하여 선대된다고 가정하였다. 큰 사회적생산자군들간의 류통은 무수한 류통과정으로 분해되는데 이 무수한 류통과정에 있어서는 때로는 이 생산자군의 한 생산자가, 때로는 저 생산자군의 한 생산자가 우선 구매자로서 나타날것이며 따라서 화폐를 류통에 투입할 것이다. 이것은 개별적사정들을 전혀 도외시하고라도 이미 생산기간들, 따라서 여러가지 상품자본의 회전이 각이하다는데 의해서도 조건이 지어진다. 그리하여 Ⅱ부류는 500파운드로써 동일한 가치액의 생산수단을 Ⅰ부류로부터 구매하고 Ⅰ부류는 Ⅱ부류로부터 500파운드의 소비수단을 구매한다. 따라서 이 화폐는 다시 Ⅱ부류에로 환류한다. Ⅱ부류는 이

환류에 의하여 결코 치부하지는 못한다. Ⅱ부류는 처음에 500파운드의 화폐를 류통에 투입하고 동일한 가치액의 상품을 류통으로부터 끌어냈으며 다음에는 500파운드의 상품을 판매하고 동일한 가치액의 화폐를 류통으로부터 끌어낸다. 이리하여 500파운드는 환류한다. 사실상 Ⅱ부류는 500파운드의 화폐와 500파운드의 상품=1,000파운드를 류통에 투입하였다. Ⅱ부류는 류통으로부터 500파운드의 상품과 500파운드의 화폐를 끌어낸다. 류통은 500파운드의 상품(Ⅰ)과 500파운드의 상품(Ⅱ)의 교환을 위하여 500파운드의 화폐를 필요로 할따름이다. 따라서 타인의 상품을 구매할 때 화폐를 선대한자가 자기의 상품을 판매할 때 다시 화폐를 얻는다. 그러므로 가령 Ⅰ부류가 우선 Ⅱ부류로부터 500파운드의 상품을 구매하고 다음에 Ⅱ부류에 500파운드의 상품을 판매한다면 그 500파운드는 Ⅱ부류에로가 아니라 Ⅰ부류에로 돌아오게 될것이다.

Ⅰ부류에서 로임에 투하된 화폐, 즉 화폐형태로 선대된 가변자본은 직접으로가 아니라 간접으로, 우회적으로 이 형태로 돌아간다. 반대로 Ⅱ부류에서는 500파운드의 로임이 직접 로동자들로부터 자본가들에게로 돌아가는데 이는 마치도 같은 사람들사이에서 매매가 반복되여 그들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상품의 구매자 또는 판매자로서 부단히 대립하는 경우에 언제나 그러한 복귀가 직접적인것과 마찬가지이다. Ⅱ부류의 자본가는 화폐로 로동력의 대가를 지불한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로동력을 자기의 자본에 합체시키며 또 그에게 있어서는 화폐자본의 생산자본으로의 전화에 불과한 이 류통행위에 의해서만 그는 산업자본가로서 자기의 임금로동자인 로동자와 대립한다. 그러나 그다음에, 첫단계에서는 자신의

로동력의 판매자이며 상인이였던 로동자는 둘째 단계에서는 구매자로서, 화폐소유자로서 상품판매자인 자본가와 대립하며 그리하여 로임에 투하된 화폐는 자본가에게로 환류한다. 이 상품의 판매가 사기 등등을 포함하지 않고 상품과 화폐와의 등가물들이 교환되는 한 그 판매는 자본가를 치부하게 하는 과정은 아니다. 자본가는 로동자에게 처음에는 화폐로, 그다음에는 상품으로 두번 지불하는것이 아니다. 자본가의 화폐는 로동자가 화폐를 자본가의 상품과 교환하자마자 자본가에게로 돌아가는것이다.

그러나 가변자본으로 전화된 화폐자본—즉 로임으로서 선대된 화폐—은 화폐류통 그 자체에서 주요한 역할을 논다. 왜냐 하면 로동계급은 그날 벌어 그날 사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산업자본가들에게 어떤 장기신용을 줄수는 없으므로 각이한 산업부문들에서의 자본의 회전기간이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사회의 같지 않은 무수한 지점들에서 한주일과 같은 특정의 단기간마다, 즉 비교적 급속히 반복되는 기간마다 가변자본이 화폐형태로 동시에 선대되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이다(이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 경로를 거쳐 한꺼번에 류통에 투입되는 화폐총액은 상대적으로 작을수 있다.). 이와 같이 선대되는 화폐자본은 자본주의적생산이 진행되는 모든 나라에서 총류통중에서 비률상 결정적인 부분을 이루는데 이는 동일한 화폐가 그 출발점으로 환류하기전에 극히 다종다양한 경로들을 거치고 기타 무수한 사업들을 위하여 류통수단으로서 기능하는만큼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 이제는 Ⅰ(v+m)과 Ⅱc간의 류통을 다른 한 관점

에서 고찰하기로 하자.

Ⅰ부류 자본가들은 로임을 지불하기 위하여 1,000파운드를 선대하며 그것을 가지고 로동자들은 Ⅱ부류 자본가들로부터 1,000파운드의 생활수단을 구매하며 Ⅱ부류 자본가들은 또 이 화폐를 가지고 Ⅰ부류 자본가들로부터 생산수단을 구매한다. 그리하여 Ⅰ부류 자본가들에게는 그들의 가변자본이 화폐형태로 돌아왔는데 한편 Ⅱ부류 자본가들은 그들의 불변자본의 절반을 상품자본의 형태로부터 생산자본으로 재전화시켰다. Ⅱ부류 자본가들은 500파운드의 화폐를 새로 선대하여 Ⅰ에서 생산수단을 구매한다. Ⅰ의 자본가들은 이 화폐를 Ⅱ의 소비수단에 지출한다. 이리하여 이 500파운드는 Ⅱ부류 자본가들의 수중에 환류한다. 그들은 이 500파운드를 또 새로 선대하여 상품으로 전화된 그들의 불변자본의 마지막 $\frac{1}{4}$을 그 생산적현물형태로 재전화시킨다. 이 화폐는 다시 Ⅰ에로 환류하며 또 새로 Ⅱ에서 같은 금액의 소비수단을 끌어낸다. 이리하여 이 500파운드는 Ⅱ로 환류한다. Ⅱ의 자본가들은 이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500파운드의 화폐와 2,000파운드의 불변자본을 가지고있는데 이 불변자본은 상품자본의 형태로부터 생산자본으로 새로 전환되여있다. 1,500파운드의 화폐로 5,000파운드의 상품량이 류통되였다. 즉 1) Ⅰ은 로동자들에게 1,000파운드를 같은 가치액의 로동력의 대가로서 지불한다. 2) 로동자들은 그 1,000파운드로 Ⅱ로부터 생활수단을 구매한다. 3) Ⅱ는 동일한 화폐로 Ⅰ로부터 생산수단을 구매하며 이로 하여 Ⅰ에는 1,000파운드의 가변자본이 화폐형태로 회수된다. 4) Ⅱ는 500파운드로 Ⅰ로부터 생산수단을 구매한다. 5) Ⅰ은 그 500파운드로 Ⅱ로부터 소비수단을 구

매한다. 6) Ⅱ는 그 500파운드로 Ⅰ로부터 생산수단을 구매한다. 7) Ⅰ은 그 500파운드로 Ⅱ로부터 생활수단을 구매한다. 따라서 Ⅱ에게는 500파운드가 환류하였는데 이것은 Ⅱ가 상품으로서의 자기의 2,000파운드외에 류통에 투입하였던것이며 그 대신에 상품으로서의 등가를 류통으로부터 끌어내지 않은것이다.(47)

그리하여 교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Ⅰ은 1,000파운드의 화폐를 로동력에, 즉 1,000파운드의 상품에 지불한다.

2) 로동자들은 그들의 로임으로 Ⅱ로부터 1,000파운드의 금액의 소비수단을 구매한다. 즉 1,000파운드의 상품을 구매한다.

3) Ⅱ는 로동자들에게서 얻은 1,000파운드로 Ⅰ로부터 동일한 가치의 생산수단을 구매한다. 즉 1,000파운드의 상품을 구매한다.

이리하여 1,000파운드의 화폐가 가변자본의 화폐형태로서 Ⅰ에로 환류하였다.

4) Ⅱ는 500파운드로 Ⅰ부류로부터 생산수단을 구매한다. 즉 500파운드의 상품을 구매한다.

5) Ⅰ은 그 500파운드로 Ⅱ로부터 소비수단을 구매한다. 즉 500파운드의 상품을 구매한다.

6) Ⅱ는 그 500파운드로 Ⅰ로부터 생산수단을 구매한다.

---

(47) 여기의 설명은 우의 설명(374페지①)과 좀 다르다. 우에서는 Ⅰ도 500파운드라는 독립적인 금액을 류통에 투입하였다. 여기에서는 Ⅱ만 이 류통을 위한 추가적화폐재료를 제공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종국적결론을 조금도 변동시키는것이 아니다. —F. 엥겔스

---

① 본권 444페지를 보라. —편집자

즉 500파운드의 상품을 구매한다.

7) Ⅰ은 그 500파운드로 Ⅱ로부터 소비수단을 구매한다. 즉 500파운드의 상품을 구매한다.

판매된 상품가치총액은 5,000파운드이다.

Ⅱ가 구매를 위하여 선대한 500파운드는 그에게로 복귀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된다.

1) Ⅰ은 가변자본을 화폐형태로 가지고있는데 그 액수는 그가 처음에 류통에 선대한 1,000파운드이다. 그밖에 Ⅰ은 자기의 개인적소비를 위하여 1,000파운드를 지출하였다. — 그자신의 상품생산물로. 즉 Ⅰ은 1,000파운드라는 가치액의 생산수단을 팔아서 얻은 화폐를 지출하였다.

다른 한편 화폐형태로 존재하는 가변자본이 전환되지 않으면 안되는 현물형태—로동력—는 소비에 의하여 유지되고 재생산되며 그리고 그 소유자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팔지 않으면 안되는 유일한 상품으로서 다시 존재한다. 따라서 또 임금로동자와 자본가의 관계도 재생산되였다.

2) Ⅱ의 불변자본은 현물로 보상되였으며 또 같은 Ⅱ가 류통에 선대한 500파운드는 Ⅱ에로 복귀하였다.

Ⅰ의 로동자들에게 있어서는 류통은 W—G—W라는 단순한

$$\overset{1}{W}(\text{로동력})-\overset{2}{G}(\text{Ⅰ의 가변자본의 화폐형태 1,000 파운드})-\overset{3}{W}(\text{1,000파운드의 필요생활수단})$$

이다. 이 1,000파운드는 상품형태 즉 생활수단의 형태로 존재하는 Ⅱ의 불변자본을 같은 가치액만큼 화폐화한다.

Ⅱ의 자본가들에게 있어서는 과정 W—G는 그들의 상품생

산물의 일부분의 화폐형태에로의 전화이며 이 화폐형태로부터 상품생산물은 생산자본의 구성부분들로 즉 그들에게 필요한 생산수단의 일부분으로 재전화된다.

Ⅱ의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의 다른 부분을 구매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G(500파운드)의 선대에서는 Ⅱc중 아직 상품형태(소비수단)로 존재하는 부분의 화폐형태가 앞당기여 사용되는것이다. Ⅱ가 G로써 구매하며 Ⅰ의 W가 판매되는 행위 G—W에서는 화폐(Ⅱ)가 생산자본의 일부분으로 전화되고 한편 W(Ⅰ)는 행위 W—G를 통과하여 화폐로 전화되는데 이 화폐는 Ⅰ에 있어서는 자본가치의 구성부분을 표시하지 않고 다만 소비수단으로만 지출되는 화폐화된 잉여가치를 표시한다.

류통 G—W…P…W′—G′에서 한 자본가의 제1행위 G—W는 다른 자본가의 최후행위 W′—G′(또는 그 일부분)이다. 이 W에 의하여 G는 생산자본으로 전환되는데 이 W가 W의 판매자(즉 이 W를 화폐로 전환시키는 사람)에게 있어서 불변자본구성부분을 표시하는가, 가변자본구성부분을 표시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잉여가치를 표시하는가 하는것은 상품류통 그자체에 대하여서는 아무래도 좋은것이다.

Ⅰ부류는 그 상품생산물의 v+m라는 구성부분에 관하여 말한다면 자기가 투입한것보다 많은 화폐를 류통으로부터 끌어낸다. 첫째로, Ⅰ에는 1,000파운드의 가변자본이 복귀한다. 둘째로 Ⅰ은(상술한 교환 4를 보라.) 500파운드분의 생산수단을 판매한다. 이로 하여 Ⅰ의 잉여가치의 절반이 화폐화되였다. 다음으로(교환 6) Ⅰ은 다시 500파운드분의 생산수단을 판매한다. 즉 그 잉여가치의 나머지 절반을 판매하며 이로 하여 잉여가치의 전부가 화폐형태로 류통에서 끌리여나왔다. 따라서 순차적으로 1) 가변자본이 화폐로 재전화하는

것=1,000파운드, 2) 잉여가치의 절반이 화폐화되는것=500파운드, 3) 잉여가치의 나머지 절반=500파운드, 따라서 합계 1,000v+1,000m이 화폐화되는것=2,000파운드로 된다. Ⅰ은(나중에 고찰되는 Ⅰc의 재생산을 매개하는 교환들은 도외시하고) 1,000파운드만을 류통에 투입하였는데 그 2배를 류통에서 끌어내였다. 물론 화폐화된(G로 전화된) m은 이 화폐가 소비수단으로 지출되는데 의하여 즉시로 또 타인의 수중(Ⅱ)으로 사라지고만다. Ⅰ의 자본가들은 자기들이 **상품**으로서 투입한것만큼한 가치만을 **화폐**로서 끌어내였을따름이다. 이 가치가 잉여가치라는 사실, 즉 자본가들에게 아무런 비용도 들이게 하지 않는것이라는 사실은 이 상품의 가치자체를 조금도 변경시키는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상품류통에서의 가치교환이 문제인 한에서는 아무래도 좋다. 물론 잉여가치의 화폐화는 선대자본이 그 제 전환에서 순차로 통과하는 다른 모든 형태들과 마찬가지로 순간적이다. 그것이 지속하는 것은 바로 Ⅰ의 상품의 화폐로의 전화와 그에 계속되는 Ⅰ의 화폐의 Ⅱ의 상품으로의 전화사이의 동안뿐이다.

회전이 보다 짧다고 가정하면—또는 단순한 상품류통의 관점에서 보아 류통하는 화폐의 류통회수가 보다 많다고 가정하면—교환되는 상품가치들을 류통시키기 위하여서는 보다 적은 화폐로서 충분할것이다. 그 화폐액은 순차적으로 수행되는 교환의 도수가 주어져있다면 언제나 류통상품의 가격총액 또는 가치총액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 경우에 이 가치총액이 어떤 비률로 일방의 잉여가치와 타방의 자본가치로 구성되는가 하는것은 아무래도 좋다.

우리의 례에서 Ⅰ에서 로임이 1년에 4회 지불된다고 하

면 4×250=1,000이다. 따라서 류통 Ⅰv−$\frac{1}{2}$Ⅱc를 위하여서는, 또 가변자본 Ⅰv와 Ⅰ의 로동력간의 류통을 위하여서는 250파운드의 화폐로 충분할것이다. 마찬가지로 Ⅰm과 Ⅱc간의 류통이 4회전으로 수행된다면 그것을 위하여서는 250파운드만 필요할것이다. 따라서 전체로서는 5,000파운드라는 금액의 상품의 류통을 위하여 500파운드의 화폐액 또는 화폐자본만 필요할것이다. 이 경우 잉여가치는 순차적으로 절반씩 2회에 걸쳐 화폐화되는것이 아니라 이제는 순차적으로 $\frac{1}{4}$씩 4회에 걸쳐 화폐화될것이다.

상술한 교환 (4)에서 Ⅱ가 아니라 Ⅰ이 구매자로서 나타나며 따라서 500파운드의 화폐를 동일한 가치량의 소비수단에 지출한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교환 (5)에서는 Ⅱ가 동일한 500파운드로써 생산수단을 구매하며, (6)에서는 Ⅰ이 그 500파운드로써 소비수단을 구매하며, (7)에서는 Ⅱ가 그 500파운드로써 생산수단을 구매한다. 그리하여 결국 500파운드는 우의 경우에 Ⅱ에 복귀한것처럼 Ⅰ에게로 복귀한다. 이 경우에 잉여가치는 그 자본주의적생산자자신이 개인소비에 지출하는 화폐에 의하여 화폐화되는데 이 화폐는 예상수입, 즉 앞으로 판매될 상품에 포함되여있는 잉여가치로부터의 예상수입을 나타낸다. 이 잉여가치의 화폐화는 500파운드의 환류에 의하여 일어나는것이 아니다. 왜냐 하면 Ⅰ은 Ⅰv의 1,000파운드외에 교환 (4)의 종말에 화폐로 500파운드를 류통에 투입하는데 이 화폐는 추가된것이고—우리가 아는 한에서는—판매된 상품의 대금이 아니였기때문이다. 이 화폐가 Ⅰ에 환류하여도 이에 의하여 Ⅰ은 자기의 추가적화폐를 회

수할뿐이고 Ⅰ의 잉여가치를 화폐화한것은 아니다. Ⅰ의 잉여가치의 화폐화는 이 잉여가치가 포함되여있는 Ⅰm의 상품의 판매에 의하여서만 비로소 일어나는것이며 또 이 화폐화가 지속하는것은 언제나 다만 상품의 판매에 의하여 얻은 화폐가 또 새로 소비수단으로 지출되지 않는 동안뿐이다.

Ⅰ은 추가적화폐(500파운드)로 Ⅱ로부터 소비수단을 구매한다. 이 화폐는 Ⅰ에 의하여 지출되였으며 그 대신에 Ⅰ은 Ⅱ의 상품으로 등가를 가지고있다. 이 화폐는 Ⅱ가 Ⅰ로부터 500파운드의 상품을 구매하는데 의하여 비로소 환류한다. 따라서 그것은 Ⅰ이 판매한 상품의 등가로서 환류하는것이지만 이 상품은 Ⅰ에게 아무런 비용도 부담시키지 않는것이며 따라서 Ⅰ에게 있어서 잉여가치를 이루는것이며 이리하여 **Ⅰ자신이 류통에 투입한 화폐가 Ⅰ자신의 잉여가치를 화폐화하는것이다.** 또 Ⅰ은 자기의 제2의 구매 (6)에서는 그 등가를 Ⅱ의 상품으로 받았다. 그리하여 가령 지금 Ⅱ가(7에서) Ⅰ로부터 생산수단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하면 Ⅰ은 사실상 1,000파운드를 소비수단에 지불한것—자기의 잉여가치를 전부 수입으로서 소비한것—으로 될것이다. 즉 500은 Ⅰ의 자기의 상품(생산수단)으로, 500은 화폐로 지불한것으로 될것이다. 그대신에 Ⅰ은 아직 Ⅰ의 자기의 상품(생산수단)으로 500파운드를 창고에 가지고있을것이며 또 그대신에 500파운드를 화폐로 내놓은셈으로 될것이다.

이에 반하여 Ⅱ는 자기의 불변자본의 $\frac{3}{4}$을 상품자본의 형태로부터 생산자본으로 재전화시켰을것이다. 그런데 $\frac{1}{4}$은 화폐자본(500파운드)의 형태에 있는, 실제로는 놀고있는 화폐,

즉 기능을 중지하고 대기하고있는 화폐의 형태에 있는것으로 될것이다. 만일 이 상태가 더 오래 계속되면 II는 재생산의 규모를 $\frac{1}{4}$만큼 축소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그런데 I이 부담하고있는 생산수단으로서의 500은 상품형태로 존재하는 잉여가치가 아니다. 그것은 선대된 500파운드의 화폐대신에 거기에 있는것이며 그 500파운드는 I이 상품형태로 있는 자기의 잉여가치 1,000파운드외에 가지고있는것이다. 화폐로서는 그것은 언제나 실현될수 있는 형태로 있다. 상품으로서는 그것은 잠시 판매될수 없는 상태에 있다. 여기에서 다음것만은 명백하다. 즉 단순재생산이—거기에 있어서는 생산자본의 각 요소가 II에서도, I에서도 보상되지 않으면 안되는—이 경우에 의연히 가능한것은 오직 I이 처음에 날려보낸 500이라는 금새가 I에게로 복귀할 경우뿐이라는것이다.

어떤 자본가가(여기에서 우리앞에 있는것은 아직 산업자본가뿐이며 이는 동시에 다른 모든 자본가의 대표자이기도 하다.) 화폐를 소비수단에 지출한다고 하면 그 화폐는 그에게 있어서는 자기 할바를 다한것이며 자기 갈길을 다 걸어간 것이다. 그것이 다시 그에게로 환류한다면 그 환류가 일어나는것은 다만 그가 상품을 미끼로 하여—즉 그의 상품자본에 의하여—류통으로부터 그것을 낚아내는 한에서이다. 그의 년간총상품생산물(그에게 있어서는 상품자본)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그 각 요소의 가치, 즉 매개 상품의 가치도 그에게 있어서는 불변자본가치와 가변자본가치와 잉여가치로 분해될수 있다. 따라서 제 상품(그것들이 요소로 되여 상품생산물을 형성한다.)의 매개의 화폐화는 동시에 전체 상품생산물에 포함되여있는 잉여가치의 일정한 부분의 화폐화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자본가자신의 화폐를 류통에 투입하며—그 화폐를 소비수단에 지출하며—이 화폐로 그의 잉여가치가 화폐화된다는것, 다시말하면 실현된다는것은 완전히 옳은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화폐라고 하는것은 같은 화폐쪼각인것이 아니라 자본가가 개인적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류통에 투입한 액(또는 그 일부분)과 동일한 액의 현금인것이다.

실제에 있어서 이것은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업이 바로 그해에 개시되였다면 자본가가 기업소득자체에서 자기의 개인적소비를 위한 화폐를 지출할수 있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며 최선의 경우라도 수개월은 걸린다. 그렇다고 하여 그가 일순간이라도 소비를 멈추는것은 아니다. 그는 이제부터 획득할 잉여가치를 기대하고 자기자신에게 화폐를 선대한다(이 경우에 제 주머니에서 선대하는가 신용에 의하여 남의 주머니에서 선대하는가 하는것은 아무래도 좋다.). 따라서 또 나중에 실현될 잉여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류통수단을 선대하는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기업이 이미 오래전부터 규칙적으로 진행되고있다면 지불도 수입도 1년내에 몇개 시기에 분배된다. 그러나 자본가의 소비는 중단없이 계속되는데 이 소비는 앞당기여 하는것이며 그 소비의 규모는 통례의 수입 또는 예상되는 수입에 대한 일정한 비률에 의하여 계산된다. 상품들 각 부분이 판매될 때마다 1년간에 생산되는 잉여가치의 일부분도 실현된다. 그러나 만일 생산된 상품중에서 1년간에 판매되는것이 그 상품에 포함되여있는 불변자본가치와 가변자본가치를 보상하기에 필요한만큼밖에 안된다면 또는 가격이 하락하여 년간상품생산물을 전부 팔아도 그것에 포함되여있는 선대자본가치밖에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장래의 잉여가치를 기대하고 앞당기여 지출

된것이라는 성격이 명백히 나타날것이다. 만일 우리의 자본가가 파산한다면 그의 채권자나 재판소는 그의 앞당겨진 개인적지출이 그의 기업의 규모 및 그 기업에 관습적으로 또는 표준적으로 상응하는 잉여가치수입의 규모에 어울리는가 어떤가를 조사하게 된다.

그러나 자본가계급전체에 대하여 말한다면 자본가계급은 자기의 잉여가치의 실현을 위하여(또는 불변자본도, 가변자본도 포함한 자기 자본의 류통을 위하여서도) 스스로 화폐를 류통에 투입하지 않을수 없다는 명제는 역설적인것이 아닐뿐만아니라 전체 기구의 필요조건으로서 나타난다. 왜냐 하면 여기에는 다만 두 계급, 즉 자기들의 로동력을 처분할수 있을뿐인 로동계급과 사회적생산수단도, 화폐도 독점하고있는 자본가계급이 있을따름이기때문이다. 상품에 포함되여있는 잉여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화폐를 먼저 로동계급이 자기의 자금으로 선대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역설일것이다. 그런데 개별적자본가가 이 선대를 하는것은 언제나 다만 자기가 구매자로서 행동한다는 형태로, 즉 다만 소비수단의 구매에 화폐를 **지출**하든가 또는 로동력이든 생활수단이든간에 자기의 생산자본의 요소의 구입에 화폐를 **선대**하는 형태로서이다. 그는 언제나 등가를 받지 않고서는 화폐를 내놓지 않는다. 그는 다만 자기가 류통에 상품을 선대하는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화폐를 류통에 선대할뿐이다. 어느 경우에나 다 그는 화폐 또는 상품의 류통의 출발점으로서 행동한다.

현실적과정은 다음과 같은 두 사정에 의하여 애매하게 된다.

1) 산업자본의 류통과정에서는 **상업자본**(그 제1형태는 언제나 화폐이다. 왜냐 하면 상인자체는 《생산물》이나 《상

품》은 생산하지 않기때문이다.)과 **화폐자본**이 특별한 종류의 자본가들이 수행하는 경영대상으로서 나타난다는것.

2) 잉여가치—이것은 처음에는 언제나 산업자본가의 수중에 있지 않으면 안된다.—가 각이한 범주들로 나뉘여지며 이러한 범주들의 담당자로서는 산업자본가외에 토지소유자(지대의 경우), 고리대금업자(리자의 경우) 등이 나타나며 또 정부나 그 관리, 금리생활자 등이 나타난다는것, 이런자들은 산업자본가에 대하여 구매자로서 나타나며 또 그 한에서는 산업자본가의 상품을 현금화하는 사람으로서 나타난다. 그들도 각자가 《화폐》를 류통에 투입하는데 산업자본가는 이 화폐를 그들에게서 얻는다. 이 경우에 언제나 망각되는것은 그들이 이 화폐를 어떤 원천에서 시초에 얻었으며 또 부단히 반복하여 얻는가 하는것이다.

6. Ⅰ부류의 불변자본(48)

연구할것으로 아직 남아있는것은 Ⅰ부류의 불변자본 4,000 Ⅰc이다. 이 가치는 Ⅰ부류의 상품생산물에 재현하고있으며 이 상품량의 생산에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와 같다. 이 재현하는 가치는 Ⅰ부류의 생산과정에서 생산된것이 아니고 전해에 불변가치로서, 즉 Ⅰ부류의 생산과정에서 생산수단의 주어진 가치로서 이 생산과정에 들어간것인데 이것은 이제는 Ⅰ부류의 상품량중 Ⅱ부류에 의하여 흡수되지 않은 부분전체에 존재한다. 그런데 이렇게 되여 Ⅰ부류의 자본가들의 수중에 남아있는 이 상품량의 가치는 그들의 전체 년간상품생산물가치

(48) 이하는 제2고에서.

의 $\frac{2}{3}$와 같다. 어떤 특수한 종류의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개별적자본가에 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수 있다. 그는 자기의 상품생산물을 판매하고 그것을 화폐로 전화시킨다. 그는 상품생산물을 화폐로 전화시킴으로써 자기생산물의 불변가치부분도 화폐로 재전화시킨다. 다음에 그는 화폐로 전화된 이 가치부분으로써 다시 다른 상품판매자들로부터 자기의 생산수단을 구입한다. 즉 자기의 생산물의 불변가치부분을 새로 생산적불변자본으로서 기능할수 있는 현물형태로 전화시킨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전제는 불가능하게 된다. Ⅰ부류의 자본가계급은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자본가전체를 포괄하고있다. 그밖에 그들의 수중에 남아있는 4,000의 상품생산물은 사회적생산물중 다른 어떤 부분과도 교환될수 없는 한 부분이다. 왜냐 하면 년간생산물중에는 그러한 다른 부분은 이제는 존재하지 않기때문이다. 이 4,000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미 전부 처리되였다. 한 부분은 사회적소비기금에 의하여 흡수되였으며 또 다른 한 부분은 Ⅱ부류의 불변자본을 보상하여야 할것인데 Ⅱ부류는 Ⅰ부류와 교환할수 있는 것은 이미 모두 교환하였다.

Ⅰ부류의 상품생산물전체는 그 현물형태로 보아 생산수단으로, 즉 불변자본자체의 소재적요소들로 구성되여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곤난은 극히 간단히 해결된다. 여기서는 상술한 Ⅱ부류에서 나타난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다만 나타나는 모양이 다를뿐이다. Ⅱ부류에서는 상품생산물이 전부 소비수단이다. 그러므로 이 전체 상품생산물중 그것에 포함되여있는 로임과 잉여가치를 가한것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부류의 생산자들에 의하여 소비될수 있다. 이 Ⅰ부류에서는

전체 상품생산물이 생산수단으로, 즉 건물, 기계, 용기, 원료 및 보조재료 등등으로 구성되여있다. 그러므로 그의 일부분, 즉 이 부문에서 사용된 불변자본을 보상하는 부분은 그 현물형태대로 즉시 새로 생산자본의 구성부분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그 부분이 류통에 들어가는 한 그것은 Ⅰ부류내에서 류통하는것이다. Ⅱ부류에서는 상품생산물의 일부분은 현물로 그 부류의 생산자들에 의하여 개인적으로 소비되는데 이와는 반대로 Ⅰ부류에서는 생산물의 일부분은 현물형태로 그 자본주의적생산자들에 의하여 생산적으로 소비된다.

Ⅰ부류의 상품생산물의 일부분 4,000c에는 이 부류에서 소비된 불변자본가치가 재현하는데 그것도 이 부분이 즉시로 다시 생산적불변자본으로서 기능할수 있는 현물형태로서 재현한다. Ⅱ부류에서는 3,000의 상품생산물중 그 가치가 로임과 잉여가치를 가한것(=1,000)과 같은 부분은 직접 Ⅱ부류의 자본가들과 로동자들의 개인적소비로 들어가는데 그와는 반대로 이 상품생산물중의 불변자본가치(=2,000)는 Ⅱ부류의 자본가들의 생산적소비로 다시는 들어갈수 없으며 Ⅰ부류와의 교환에 의하여 보상되여야 할것이다.

반대로 Ⅰ부류에서는 6,000의 상품생산물중 그 가치가 로임과 잉여가치를 가한것(=2,000)과 같은 부분은 그의 생산자들의 개인적소비로는 들어가지 않으며 또 그 현물행태로 보아도 들어갈수 없는것이다. 이 부분은 우선 Ⅱ부류와 교환되지 않으면 안된다. 반대로 이 생산물의 불변가치부분 =4,000은—Ⅰ부류의 자본가계급을 전체로서 고찰한다면—직접 Ⅰ부류의 불변자본으로서 다시 기능할수 있는 현물형태로 있다. 바꾸어말하면 Ⅰ부류의 생산물전체는 현물형태로 보아—자본주의적생산방식에 있어서는—다만 불변자본의 요소로

서만 작용할수 있는 사용가치들로써 구성되여있다. 따라서 6,000의 가치가 있는 이 생산물중 $\frac{1}{3}$(2,000)은 Ⅱ부류의 불변자본을 보상하며 나머지 $\frac{2}{3}$는 Ⅰ부류의 불변자본을 보상한다.

Ⅰ부류의 불변자본은 제철소에 얼마, 탄광에 얼마 등등이라는 식으로 여러가지 생산수단생산부문들에 투하되는 대량의 여러가지 자본군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 자본군의 각개 또는 이 사회적자본군의 각개는 다시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다소간의 많은 개별적자본들로써 구성된다. 우선 사회의 자본 레컨대 7,500(단위는 100만 등등일수 있다.)은 여러가지 자본군으로 나뉘여진다. 가치 7,500인 사회적자본은 각 특수부분으로 나뉘여지며 그 각 부분은 어떤 특수한 생산부문에 투하된다. 사회적자본가치중 각 특수생산부문에 투하된 부분은 현물형태로 보면 일부분은 각 특수생산부문의 생산수단으로 구성되며 일부분은 그 각 부문의 경영에 필요하며 또 각 부문에 적합한 기능을 가진 로동력—분업에 의하여, 개별적 각 생산부문에서 수행되여야 할 로동의 특수성에 따라 여러가지로 변화되는 로동력—으로 구성된다. 사회적자본중 각 특수생산부문에 투하된 부분은 다시 이 부분에 투하된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개별적자본들의 총화로써 구성된다. 이것은 더 말할것도 없이 Ⅰ부류에도 적용되고 Ⅱ부류에도 적용된다.

그런데 Ⅰ부류에서 상품생산물의 형태로 재현하는 불변자본가치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 일부분은 그것이 생산물로서 나온 특수생산부문으로(또는 개별적기업으로까지도) 다시 생산수단으로서 들어간다. 레컨대 곡물이 곡물생산으로, 석탄

이 석탄생산으로, 철이 기계형태로 철생산으로 들어가는 등등이다.

그런데 Ⅰ부류의 불변자본가치를 구성하는 부분적생산물이 다시 직접 자기들의 특수한 생산부문 또는 자기의 개별적 생산부문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생산물은 다만 장소를 바꿀뿐이다. 그것들은 현물형태로 Ⅰ부류의 다른 어떤 생산부문으로 들어가며 Ⅰ부류의 다른 생산부문들의 생산물이 그것들을 현물로 보상한다. 이것은 이 생산물들의 위치변환에 불과하다. 그것들은 모두 Ⅰ부류에서의 불변자본을 보상하는 요인들로서 다시 들어가는데 다만 Ⅰ부류의 어떤 군의 불변자본을 보상하는것이 아니라 다른 군의 불변자본을 보상할뿐이다. 이 경우에 Ⅰ부류의 개별적자본가들사이의 교환이 진행되는 한 그것은 불변자본의 한 현물형태와 불변자본의 다른 현물형태와의 교환이며 어떤 종류의 생산수단과 다른 종류의 생산수단과의 교환이다. 그것은 Ⅰ부류의 여러가지 개별적불변자본부분들 호상간의 교환이다. 생산물들이 직접 그 자체의 생산부문들에서 생산수단으로서 사용되지 않는 한 그것들은 그 자체의 생산장소로부터 다른 어떤 생산장소로 이동하며 그리하여 번갈아 서로 보상할것이다. 바꾸어 말하면(Ⅱ부류에서 잉여가치에 의하여 그러하였던것과 마찬가지로) Ⅰ부류에서의 각 자본가는 자기가 이 4,000의 불변자본의 공동소유자인 그 몫에 비례하여 이 총상품량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해당한 생산수단을 끌어낸다. 가령 생산이 자본주의적이 아니고 사회적이라면 분명히 Ⅰ부류의 이 생산물들은 재생산을 위하여 마찬가지로 부단히 생산수단으로서 이 부류의 생산부문들간에 다시 분배될것이며 일부분은 직접 그 생산물들을 생산한 부문에 남아있을것이며 다른 일부분은 다른

생산장소들에 이동될것이며 그리하여 이 부류의 각이한 생산장소들간에서의 부단한 왕래가 일어날것이다.

7. 두 부류의 가변자본과 잉여가치

이리하여 1년간에 생산되는 소비수단의 총가치는 1년간에 재생산되는 Ⅱ부류의 가변자본가치+새로 생산되는 Ⅱ부류의 잉여가치(즉 Ⅱ부류에서 1년간에 생산되는 가치)와 1년간에 재생산되는 Ⅰ부류의 가변자본가치+새로 생산되는 Ⅰ부류의 잉여가치(즉 Ⅰ부류에서 1년간에 생산되는 가치)를 합한것과 같다.

따라서 단순재생산의 전제하에서는 1년간에 생산되는 소비수단의 총가치는 1년간의 가치생산물, 즉 사회적로동에 의하여 1년간에 생산되는 전체 가치와 같다. 그것이 같지 않을수 없는것은 단순재생산하에서는 이 가치전부가 소비되기때문이다.

사회적총로동일은 두 부분으로 나뉘여진다. 1) 필요로동—이것은 1년간에 1,500v라는 가치를 창조한다. 2) 잉여로동—이것은 1,500m이라는 추가적가치 또는 잉여가치를 창조한다. 이 두 가치의 합계=3,000은 1년간에 생산되는 소비수단의 가치 3,000과 같다. 따라서 1년간에 생산되는 소비수단의 총가치는 사회적총로동일이 1년간에 생산하는 총가치와 같으며 사회적가변자본의 가치+사회적잉여가치와 같으며 1년간의 새로운 생산물전체와 같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있는바와 같이 이 두 가치량은 일치하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결코 Ⅱ부류상품, 즉 소비수단

의 전체 가치가 사회적생산의 이 부류에서 생산된것은 아니다. 이 두 가치량이 일치하게 되는것은 Ⅱ부류에서 재현되는 불변자본가치가 Ⅰ부류에서 서로 생산되는 가치(가변자본가치+잉여가치)와 같기때문이다. 이때문에 Ⅰ(v+m)은 Ⅱ부류의 생산물중 그 생산자들(Ⅱ부류에서의)에 있어서 불변자본가치를 표시하는 부분을 구매할수 있다. 그러므로 Ⅱ부류의 자본가들에 있어서는 그들의 생산물의 가치가 c+v+m으로 나뉘여지는데 사회적으로 보면 이 생산물의 가치는 v+m으로 나뉘여지는것이 무엇때문인가를 알수 있다. 그것이 그렇게 되는것은 오직 Ⅱc가 이 경우에는 Ⅰ(v+m)과 같으며 사회적생산물의 이 두 구성부분이 교환에 의하여 그것들의 현물형태를 서로 교환하며 그리하여 이 교환이 있은후에는 Ⅱc는 다시 생산수단으로 존재하나 Ⅰ(v+m)은 이와 반대로 소비수단으로 존재하기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 사정이 A. 스미스로 하여금 년간생산물의 가치는 v+m으로 분해된다고 주장하게 한것이다. 그렇게 말할수 있는것은 1) 다만 년간생산물중 소비수단으로써 구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만이며 2) 이 부분의 총가치가 Ⅱ에서 생산되며 따라서 Ⅱ의 생산물가치는 Ⅱ에서 선대되는 가변자본가치 플루스 Ⅱ에서 생산되는 잉여가치와 같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할수 있는것이 아니다. 그런것이 아니라 다만 Ⅱ(c+v+m)=Ⅱ(v+m)+Ⅰ(v+m) 이라는 의미에서 또는 Ⅱc=Ⅰ(v+m) 이기때문에 그렇게 말할수 있을뿐이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이 된다.

사회적로동일(즉 온 한해동안에 전체 로동계급에 의하여 지출된 로동)은 각개 로동일과 마찬가지로 다만 두 부분으로, 즉 필요로동과 잉여로동으로 나뉘여질뿐이고 따라서 또

이 로동일에 의하여 생산되는 가치도 역시 다만 두 부분으로, 즉 가변자본가치, 즉 로동자가 자기자신의 재생산수단을 구매하기 위한 가치부분과 잉여가치, 즉 자본가가 그자신의 개인적소비에 지출할수 있는 가치부분으로 나뉘여질뿐이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적로동일의 일부분은 오직 **새로운 불변자본의 생산**에, 즉 오직 로동과정에서 생산수단으로서 기능할, 따라서 또 로동과정에 수반하는 가치증식과정에서 불변자본으로서 기능할 생산물의 생산에만 지출된다. 우리의 전제에 의하면 사회적로동일전체는 3,000이라는 화폐가치로 표시되는데 다만 $\frac{1}{3}$=1,000만이 소비수단을 생산하는 Ⅱ부류에서 생산되며 이 부류의 소비수단은 사회의 총가변자본가치와 총잉여가치자 결국 거기에 실현되는 상품인것이다. 따라서 이 전제에 의하면 사회적로동일의 $\frac{2}{3}$는 새로운 불변자본의 생산에 사용된다. Ⅰ부류의 개별적자본가나 개별적로동자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로동일의 이 $\frac{2}{3}$는 전적으로 Ⅱ부류의 사회적로동일의 나머지 $\frac{1}{3}$과 마찬가지로 다만 가변자본가치+잉여가치의 생산에 복무할뿐이지만 사회적로동일의 이 $\frac{2}{3}$는 사회적으로 보면—생산물의 사용가치로 고찰하여도—다만 생산적소비과정에 있거나 또는 소비된 불변자본의 보상분을 생산할따름이다. 개별적으로 고찰하더라도 로동일의 이 $\frac{2}{3}$는 비록 생산자들에게 있어서는 다만 가변자본가치+잉여가치와 같을뿐인 총가치를 생산하는것이지만 그러나 로임이나 잉여가치가 거기에 지출될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사용가치를 생

산하는것은 아니다. 그 생산물은 생산수단이다.

우선 지적하여야 할것은 Ⅰ부류의 경우나 Ⅱ부류의 경우나 사회적로동일의 어느 부분도 이 2대생산부문에 사용되여 거기서 기능하고있는 불변자본의 가치를 생산하는데 복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거기서 생산되는것은 다만 불변자본가치=4,000Ⅰc+2,000Ⅱc에 추가되는 추가적가치 2,000Ⅰ(v+m)+Ⅰ,000Ⅱ(v+m)뿐이다. 생산수단의 형태로 생산된 새로운 가치는 아직 불변자본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 앞으로 불변자본으로서 기능할 사명을 가지고있을뿐이다.

Ⅱ부류의 전체 생산물, 즉 소비수단은 그의 사용가치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는 그의 현물형태에서 고찰하면 Ⅱ부류에 의하여 지출된 $\frac{1}{3}$의 사회적로동일의 생산물이다. 그것은 이 부류에서 사용된 직조로동, 빵구이로동 등등으로서의 구체적형태를 가진 로동의 생산물, 즉 로동과정의 주체적요소로서 기능하는 한에서의 이 로동의 생산물이다. 그런데 Ⅱ부류의 이 생산물의 불변가치부분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이전에는 생산수단의 형태로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사용가치로, 새로운 현물형태, 즉 소비수단의 형태로 재현할따름이다. 그의 가치는 로동과정을 통하여 그의 낡은 현물형태로부터 새로운 현물형태로 이전되여있다. 그러나 생산물가치의 이 $\frac{2}{3}$의 **가치**=2,000은 Ⅱ부류의 그해의 가치증식과정에서 생산된것은 아니다.

로동과정의 관점에서 보면 Ⅱ부류의 생산물은 새로 기능하는 산로동과 이 로동이 실현되기 위한 대상적 제 조건으로서 이 로동에 주어졌으며 전제로 된 생산수단의 결과이지만

이와 꼭 마찬가지로 가치중식과정의 관점에서 보면 Ⅱ부류의 생산물가치=3,000은 사회적로동일중 새로 첨가된 $\frac{1}{3}$에 의하여 생산된 새로운 가치(500v+500m=1,000)와 여기서 고찰되고 있는 Ⅱ부류의 생산과정이전에 경과한 과거의 사회적로동일의 $\frac{2}{3}$가 대상화되여있는 불변가치로써 구성되여있다. Ⅱ부류의 생산물의 이 가치부분은 이 생산물자체의 한 부분으로 표시된다. 그것은 사회적로동일의 $\frac{2}{3}$에 해당하는 2,000이란 가치를 가진 일정한 분량의 소비수단에 존재한다. 이 소비수단은 그 가치부분이 재현하는 새로운 사용형태이다. 따라서 소비수단의 일부분=2,000Ⅱc와 Ⅰ부류의 생산수단=Ⅰ(1,000v+1,000m)과의 교환은 사실상 총로동일의 $\frac{2}{3}$—그해의 로동의 어떤 부분도 이루지 않고 그해 이전에 경과한—와 그해에 새로 첨가된 로동일의 $\frac{2}{3}$와의 교환이다. 그해의 사회적로동일의 $\frac{2}{3}$는 만일 그것이 1년간에 소비되는 소비수단중 그해동안에가 아니라 그해 이전에 지출되였으며 실현된 로동일의 $\frac{2}{3}$가 들어있는 가치부분과 교환되지 않는다면 불변자본의 생산에 사용되면서 동시에 가변자본가치+잉여가치를 그것들자체의 생산자들을 위하여 형성하지는 못할것이다. 이것은 그해 로동일의 $\frac{2}{3}$와 그해 이전에 지출된 로동일의 $\frac{2}{3}$와의 교환이며 그해의 로동시간과 그해이전의 로동시간과의 교환이다. 따라서 이것은 다음과 같은 수수께끼를 풀수 있게 한다. 그것은 즉 사회적로동일전체의 $\frac{2}{3}$는 가변자본 또는 잉여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대상들의 생산에 지출되는것이 아니라 그 한해에 소비된 자본을 보상하기 위한 생산수단의 생산에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적로동일전체의 가치생산물은 가변자본가치+잉여가치로 분해될수 있는가 하는 수수께끼이다. 이 수수께끼는 Ⅰ부류의 자본가들과 로동자들이 생산한 가변자본가치+잉여가치를 거기에 실현하는, Ⅱ부류의 생산물가치의 $\frac{2}{3}$(이것은 총년간생산물가치의 $\frac{2}{9}$를 이룬다.)는 가치의 측면에서 고찰하면 그해 이전에 경과한 사회적로동일의 $\frac{2}{3}$의 생산물이라는것으로써 간단히 해명된다.

Ⅰ부류 및 Ⅱ부류의 사회적생산물의 합계, 즉 생산수단과 소비수단들은 그 사용가치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그 현물형태에서 보면 그해의 로동의 생산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 로동자체가 유용적, 구체적 로동인 한에서만 그러하고 그 로동이 로동력의 지출로서, 가치형성의 로동으로서 고찰되는 한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전자의 경우에도 생산수단은 그것에 첨가되며 그것을 다루는 산로동에 의하여서만 새로운 생산물, 즉 그해의 생산물로 전화하였다는 의미에서만 그러하다. 그러나 반대로 그해의 로동도 그와는 독립한 생산수단이 없이는, 로동수단과 생산재료가 없이는 생산물로 전화될수는 없을것이다.

8. 두 부류의 불변자본

총생산물가치 9,000과 그것이 나뉘여지는 여러가지 범주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 분석은 개별적자본의 생산물가치의

분석보다 더 곤난한것은 없으며 오히려 그것과 같은것이다.

여기서 사회적년간생산물 전체중에는 3개의 년간사회적 로동일이 포함되여있다. 이러한 로동일의 매개의 가치표현은 3,000이다. 그러므로 총생산물의 가치표현은 3×3,000=9,000이다.

그리고 또 이 로동시간중 우리가 지금 그 생산물을 분석하고있는 1년간의 생산과정 **이전에** 지나간것은 Ⅰ부류에서는 $\frac{4}{3}$로동일(가치생산물 4,000)이며 Ⅱ부류에서는 $\frac{2}{3}$로동일(가치생산물 2,000)이다. 이것들은 도합 2사회적로동일이며 그 가치생산물은 6,000이다. 따라서 4,000Ⅰc+2,000Ⅱc=6,000은 사회의 생산물가치전체중에 재현하는 생산수단의 가치, 즉 불변자본가치로서 나타난다.

그리고 또 Ⅰ부류에서 새로 첨가된 사회적년간로동일중의 $\frac{1}{3}$은 필요로동이다. 즉 가변자본가치 1,000Ⅰv를 보상하며 Ⅰ에서 사용된 로동의 가격을 지불하는 로동이다. 마찬가지로 Ⅱ부류에서도 사회적로동일의 $\frac{1}{6}$은 500의 가치액을 가진 필요로동이다. 따라서 1사회적로동일의 절반의 가치표현 1,000Ⅰv+500Ⅱv=1,500v는 이해에 첨가된 총로동일중 필요로동으로써 구성되는 첫 절반의 가치표현이다.

끝으로 Ⅰ에서는 총로동일의 $\frac{1}{3}$(가치생산물=1,000)은 잉여로동이다. Ⅱ에서는 로동일의 $\frac{1}{6}$, 가치생산물=500은 잉여로동이다. 이것들을 합하면 첨가된 총로동일의 나머지 절반이 된다. 따라서 생산된 총잉여가치=1,000Ⅰm+500Ⅱm=1,500m이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된다.

사회적생산물가치의 불변자본부분(c):

이 생산과정 이전에 지출된 2로동일, 가치표현=6,000.

1년간에 지출된 필요로동(v):

년간생산에서 지출된 반로동일, 가치표현=1,500.

1년간에 지출된 잉여로동(m):

년간생산에 지출된 반로동일, 가치표현=1,500.

년간로동의 가치생산물(v+m)=3,000.

총생산물가치(c+v+m)=9,000.

따라서 곤난은 사회적생산물가치자체의 분석에 있는것은 아니다. 곤난은 사회적생산물의 **가치**구성부분을 그 **물질적**구성부분과 비교할 때에 생기는것이다.

변하지 않는, 그저 재현할따름인 가치부분은 이 생산물중 **생산**수단으로써 구성되는 부분의 가치와 같으며 이 부분에 구현되여있다.

그해에 새로운 가치생산물v+m은 이 생산물중 **소비수단**으로써 구성되는 부분의 가치와 같으며 이 부분에 구현되여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무의미한 례외들을 제외한다면 생산수단과 소비수단은 전혀 다른 종류의 상품이며 전혀 다른 현물형태 또는 사용형태를 가진 생산물이며 따라서 또 전혀 다른 종류의 구체적로동의 생산물이다. 생활수단의 생산에 기계를 사용하는 로동은 기계를 제작하는 로동과는 전혀 다르다. 가치표현이 3,000인 년간총로동일전체는 소비수단 3,000의 생산에 지출되고 이 3,000에는 어떤 불변가치부분도 재현하고 있지 않은것처럼 보인다. 왜냐 하면 이 3,000=1,500v+1,500m은 가변자본가치+잉여가치로 분해될따름이기때문이다. 또 한

편 불변자본가치=6,000은 소비수단과 전혀 다른 종류의 생산물인 생산수단에 재현하고있는데 그러나 사회적로동일의 어떠한 부분도 이 새로운 생산물의 생산에는 지출되지 않은것처럼 보인다. 반대로 이 로동일천체는 오히려 생산수단이 아니라 소비수단을 그 결과로 가져오는 그러한 종류들의 로동방식으로써만 구성되는것처럼 보인다. 비밀은 이미 해명되여있다. 년간로동의 가치생산물은 Ⅱ부류의 생산물가치, 즉 새로 생산된 소비수단의 총가치와 같다. 그러나 이 생산물가치는 년간로동중 소비수단의 생산(Ⅱ부류)에 지출된 부분보다 $\frac{2}{3}$만큼 더 크다. 년간로동의 $\frac{1}{3}$만이 소비수단의 생산에 지출되여있다. 이 년간로동의 $\frac{2}{3}$는 생산수단의 생산에서, 따라서 Ⅰ부류에서 지출되여있다. 이 기간에 Ⅰ부류에서 생산된 가치생산물, 즉 Ⅰ부류에서 생산된 가변자본가치+잉여가치와 같은 그것은 Ⅱ부류에서 소비수단에 재현하고있는 Ⅱ부류의 불변자본가치와 같다. 따라서 그것들은 서로 교환되며 현물로 보상될수 있다. 그러므로 Ⅱ부류의 소비수단의 총가치는 Ⅰ부류+Ⅱ부류의 새로운 가치생산물의 합계와 같다. 즉 Ⅱ(c+v+m)=Ⅰ(v+m)+Ⅱ(v+m)이다. 따라서 년간로동에 의하여 v+m의 형태로 생산된 새로운 가치의 합계와 같다.

또 한편으로 생산수단(Ⅰ)의 총가치는 생산수단(Ⅰ)의 형태로 재현하는 불변자본가치와 소비수단(Ⅱ)의 형태로 재현하는 불변자본가치의 합계와 같으며 따라서 사회의 총생산물에 재현하는 불변자본가치의 합계와 같다. 이 총가치는 Ⅰ의 생산과정 이전에 지나간 $\frac{4}{3}$로동일과 Ⅱ의 생산과정 이

전에 지나간 $\frac{2}{3}$로동일의 가치표현과 같으며 따라서 도합 2총로동일의 가치표현과 같다.

따라서 곤난은 사회적년간생산물의 경우에 다음과 같은 데서 생긴다. 즉 불변가치부분은 거기에 첨가되여 소비수단의 형태로 나타나는 새 가치 v+m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생산물—생산수단—의 형태로 나타난다는데로부터 생긴다. 그리하여 외관상에서는 소비된 생산물량의 $\frac{2}{3}$는—가치로 보면—그 생산에 사회에 의하여 어떠한 로동도 지출됨이 없이 새로운 형태로서, 새로운 생산물로서 재현하는듯이 보인다. 개별적자본의 경우에는 이렇지 않다. 매 개별적자본가는 일정한 종류의 구체적로동을 사용하며 이 로동은 그에 특유한 생산수단을 생산물로 전화시킨다. 례컨대 자본가는 기계제조업자이며 1년간에 지출된 불변자본=6,000c, 가변자본=1,500v, 잉여가치=1,500m이라고 하자. 생산물=9,000인데 그것을 18대의 기계라고 하면 매 1대=500이다. 전체 생산물은 이 경우에 기계라는 동일한 형태로 존재한다(만일 그가 여러가지 종류를 생산한다고 하면 매개 종류가 따로따로 계산된다.). 전체 상품생산물은 1년간에 기계제조에 지출된 로동의 생산물이며 동일한 종류의 구체적로동과 동일한 생산수단과의 결합물이다. 따라서 생산물가치의 각이한 부분들은 동일한 현물형태로 나타난다. 즉 기계 12대에는 6,000c, 3대에는 1,500v, 3대에는 1,500m가 포함되여있다. 이 경우에 분명하지만 기계 12대의 가치=6,000c인것은 이 12대에는 다만 기계제조 이전의 과거의 로동만이 구현되여있을뿐이고 이 기계제조에 지출된 로동이 구현되여있지 않기때문인것은 아니다. 18대의 기

계를 제조하기 위한 생산수단의 가치가 그대로 12대의 기계로 전화되지는 않았으나, 이 12대의 기계의 가치(그자체는 4,000c+1,000v+1,000m으로써 구성되여있다.)는 18대의 기계에 포함되여있는 불변자본가치의 총액과 같다. 그러므로 이 기계제조업자는 18대의 새로운 기계의 재생산에 필요한, 자기가 치출한 불변자본을 보상하기 위하여서는 18대의 기계중에서 12대를 팔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반대로 사용된 로동은 기계제조만으로 구성됨에도 불구하고 그 로동의 결과로서는 한편으로는 1,500v+1,500m와 같은 6대의 기계가 나오며 다른 한편으로는 6,000c의 가치액의 철, 동, 라선, 피대 등 즉 주지하는바와 같이 개개의 기계제조자본가가 자기로 생산하는것이 아니라 류통과정을 통하여 보상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물형태로의 기계의 생산수단이 나온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사태는 설명될수 없을것이다. 그러나 사회적년간생산물의 재생산은 얼핏 보면 이러한 불합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것처럼 보인다.

개별적자본—즉 사회적자본중 독립적으로 기능하며 자체의 생명이 부여되여있는 단편—의 생산물은 그 어떤 현물형태를 가지고있다. 유일한 조건은 그 생산물이 현실적으로 어떤 사용형태, 어떤 사용가치를 가지고있어야 하며 이 사용가치가 그 생산물을 상품세계의 류통능력있는 일환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는것이다. 그 생산물이 자기가 생산물로서 나오는 동일한 생산과정에 생산수단으로서 다시 들어갈수 있는가 어떤가, 즉 그의 생산물 가치중 불변자본부분을 표시하는 부분이 실제로 다시 불변자본으로서 기능할수 있는 현물형태를 가지고있는가 어떤가 하는것은 아무래도 좋은 우연적인 일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생산물가치의 이 부분은 매매를 통

하여 다시 그의 물질적생산요소들의 형태로 전화되며 그 전화에 의하여 불변자본이 그 기능할수 있는 현물형태로 재생산되는것이다.

사회적총자본의 생산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재생산의 모든 물질적요소가 그것들의 현물형태로써 이 생산물자체의 부분들을 이루지 않으면 안된다. 소비된 불변자본부분은 생산물에 재현하는 불변자본부분의 전체가 현실적으로 불변자본으로서 기능할수 있는 새로운 생산수단의 현물형태로 재현하는 한에서만 총생산에 의하여 보상될수 있다. 그러므로 단순재생산을 전제로 하면 생산물중 생산수단으로써 구성되는 부분의 가치는 사회적자본의 불변가치부분과 같지 않으면 안된다.

다음으로 개별적으로 보면 자본가가 새로 첨가된 로동에 의하여 생산하는것은 그의 생산물가치중의 가변자본+잉여가치뿐이며 불변가치부분은 새로 첨가된 로동의 구체적성격에 의하여 생산물로 이전되는것이다.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적로동일중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부분, 또는 생산수단에 새로운 가치를 첨가하는 동시에 그 생산에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를 생산수단에 이전하는 부분은 새로운 **불변자본**이외에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 즉 낡은 생산수단의 형태로 Ⅰ부류와 Ⅱ부류에서 소비된 불변자본을 보상하여야 할 불변자본이외에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 그 부분은 다만 생산적소비에 사용될 생산물만을 생산한다. 따라서 이 생산물의 전체 가치는 불변자본으로서만 새로 기능할수 있는 가치, 현물형태로의 불변자본만을 되살수 있는 가치, 따라서 사회적으로 보면 가변자본으로도, 잉여가치로도 분해되지 않는 가치일따름이다.—또 한편으로 사회적

로동일중 소비수단을 생산하는 부분은 사회적보상자본의 어떠한 부분도 생산하지 않는다. 그것이 생산하는것은 현물형태로 Ⅰ부류 및 Ⅱ부류에서의 가변자본의 가치와 잉여가치를 실현할 사명을 가진 생산물일뿐이다.

사회적고찰방법에 대하여 말할 때, 따라서 사회적자본의 재생산도, 개인적소비도 포함하는 사회적총생산물을 고찰할 때 자산계급적경제학에서 모방한 쁘루동의 방법에 얽매여 마치도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사회는 전체로서 보면 그에 특수한, 이러한 력사적경제적성격을 상실하는것처럼 문제를 고찰하여서는 안된다. 그와는 정반대이다. 여기서 연구되여야 할것은 총자본가이다. 총자본은 모든 개별적자본가들 총체의 주식자본으로서 나타난다. 이러한 주식회사는 누구나 자기가 투입하는것은 알고있으나 자기가 끌어내는것은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다른 많은 주식회사들과 공통하다.

9. A. 스미스, 슈또르흐 및 램지에 대한 회고

사회적생산물의 총가치는 9,000=6,000c+1,500v+1,500m이다. 바꾸어말하면 6,000은 생산수단의 가치를 재생산하며 3,000은 소비수단의 가치를 재생산한다. 따라서 사회적수입의 가치(v+m)는 총생산물가치의 $\frac{1}{3}$에 불과하다. 그리고 로동자도 자본가도 포함한 소비자의 전체는 다만 이 $\frac{1}{3}$의 가치액만큼 상품을, 생산물을 사회적총생산물중에서 끌어내여 자기의 소비기금에 합체시킬수 있다. 그와 반대로 6,000=생산물

가치의 $\frac{2}{3}$는 현물로 보상되지 않으면 안되는 불변자본의 가치이다. 따라서 이만큼한.액수의 생산수단이 다시 생산기금에 합체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필요함을 슈또르흐는 비록 증명할수는 없었으나 이미 깨닫고있었다.—

《년간생산물의 가치가 자본과 리윤으로 분할된다는것과 또 년간 생산물가치의 이 두 부분은 국민이 그 자본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그 소비기금을 갱신하기 위하여서도 필요로 하는 생산물을 규칙적으로 구매한다는것은 분명하다…한 국민의 **자본**을 이루고있는 생산물은 **소비될수 없는것이다.**》(슈또르흐 《국민소득의 성질에 관한 고찰》, 1824년 빠리판, 134~135, 150페지)

그러나 A. 스미스는 이러한 황당무계한 교조를 내세웠는데 그의 이 교조를 사람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사회적총생산물가치의 전체가 수입, 즉 로임 플루스 잉여가치로, 또는 그의 말대로 하면 로임 플루스 리윤(리자) 플루스 지대로 분해된다는 상술한 형태로서 신봉하고있을뿐만아니라 더 통속적인 형태로서, 즉 **소비자는** 《결국은》 **전체 생산물가치**를 생산자들에게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형태로 신봉하고있다. 이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소위 정치경제학의 가장 널리 승인되고있는 상투어의 하나이며 지어는 영원한 진리의 하나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그럴듯한 방식으로 설명된다. 어떤 하나의 상품종류, 례컨대 아마포샤쯔를 들어보자. 우선 아마실의 방적업자는 아마재배자에게 아마의 전체 가치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아마종자, 비료, 역축의 사료 등의 가치, 건물이나 농구 등과 같은 아마재배업자의 고정자본이 이 생산물에 이전되는 가치부분, 아마의 생산에 지불된 로임, 그리고 아마에 포함되여있는 잉여가치(리윤, 지대),

끝으로 아마의 생산지로부터 방적공장까지의 아마의 운임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다음에 직포업자는 아마실방적업자에게 이러한 아마가격뿐만아니라 아마에 이전된 기계, 건물 등 요컨대 고정자본의 가치부분, 방적과정에서 소비된 일체 보조재료, 방적공의 로임, 잉여가치 등을 보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표백업자, 완성아마포의 운송비, 끝으로 샤쯔제조업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자기에게 원재료를 제공하였을따름인 그 이전의 모든 생산자들의 전체 가격을 지불한다. 그런데 샤쯔제조업자에게 있어서도 계속 가치첨가가 일어나는데 그 일부분은 로동수단이나 보조재료 등의 형태로 샤쯔제조에 소비된 불변자본의 가치에 의하여 일어나며 또 일부분은 샤쯔제조에 지출되여 샤쯔제조공의 로임의 가치 플루스 샤쯔제조업자의 잉여가치를 첨가하는 로동에 의하여 일어난다. 그런데 이 샤쯔라는 생산물전체에는 결국 100파운드가 든다고 하고 이것이 년간생산물가치 전체중 사회가 샤쯔에 지출한 몫이라고 하자. 샤쯔의 소비자들은 100파운드를 지불한다. 즉 샤쯔에 포함된 일체 생산수단의 가치와 아마재배업자, 방적업자, 직포업자, 표백업자, 샤쯔제조업자 그리고 전체 운수업자들의 로임 플루스 잉여가치를 지불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옳다. 이것은 사실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그러나 또 계속하여 말한다. 다른 모든 상품들의 가치도 그러하다고. 오히려 **모든 소비수단**의 가치, 사회적생산물중 소비기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의 가치, 즉 사회적생산물가치중 수입으로서 지출될수 있는 부분의 경우도 그러하다고 말해야 할것이다. 확실히 이 모든 상품의 가치총액은 이러한 상품에 소비된 모든 생산수단(불변자본부분)의 가치 플루스 최후에 첨가된 로동이 창조한 가치(로임 플루스 잉여가

치)와 같다. 따라서 소비자의 전체는 이 가치액의 전체를 지불할수 있다. 왜냐 하면 매개 상품의 가치는 c+v+m으로써 구성되지만 소비기금으로 들어가는 모든 상품의 가치총액은 그 최대의 경우에도 다만 사회적생산물가치중 v+m으로 분해되는 부분에, 즉 1년간에 지출된 로동이 기존생산수단—불변자본가치—에 첨가한 가치와 같을수 있을뿐이기때문이다. 그러나 불변자본가치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미 본바와 같이 그것은 사회적생산물량에서 두가지 방식으로 보상된다. 첫째로는 소비수단을 생산하는 Ⅱ의 자본가들과 그것을 위한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Ⅰ의 자본가들과의 교환에 의하여 보상된다. 그리고 여기에, 일방에 있어서는 자본인것이 타방에 있어서는 수입[94]이라는 상투적인 말의 근원이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2,000의 가치가 있는 소비수단으로서 존재하는 2,000Ⅱc는 Ⅱ의 자본가계급에게 있어서는 불변자본가치를 이루고있다. 따라서 그들은 이것을 소비할수 없다. 생산물의 현물형태로 보면 그것은 소비될수밖에 없지만. 다른 한편 2,000Ⅰ(v+m)은 Ⅰ의 자본가계급과 로동계급에 의하여 생산된 로임 플루스 잉여가치이다. 그것들은 생산수단의 현물형태로 존재한다, 즉 그대로는 그자체의 가치를 소비할수 없는 물건들의 현물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4,000이라는 가치액이 있으며 교환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 절반은 다만 불변자본을 보상하고 절반은 수입을 이룰따름이다.—그러나 둘째로 Ⅰ부류의 불변자본은 일부분은 Ⅰ의 자본가들 상호간의 교환에 의하여, 일부분은 매개 기업내에서 수행되는 현물로서의 보상에 의하여 현물로 보상되는것이다.

년간생산물가치의 전체가 결국은 소비자들에 의하여 지불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상투어가 옳은 경우는 다만 소비자

중에 개인적소비자와 생산적소비자라는 전적으로 다른 두 종류를 포함하는 경우뿐일것이다. 그러나 생산물의 일부분은 **생산적으로** 소비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의 의미는 그것이 **자본**으로서 **기능**하지 않으면 안되며 **수입**으로서 **소비**될수 없다는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닌것이다.

우리가 총생산물의 가치=9,000을 6,000c+1,500v+1,500m으로 분할하고 3,000(v+m)을 수입이라는 그 속성에서만 고찰한다면 반대로 가변자본은 사라져버렸고 자본은—사회적으로 고찰하면—불변자본으로써만 구성되는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최초에 1,500v로서 나타난것은 사회적수입의 일부분으로, 로임 즉 로동계급의 수입으로 분해되였으며 그와 함께 그의 자본성격은 사라져버리기때문이다. 사실상 이러한 결론이 램지에 의하여 도출되였다. 그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고찰한다면 자본은 다만 고정자본으로써만 구성되고있으나 그가 고정자본이라고 하는것은 불변자본을 말하며 생산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가치량을 말하는데 이 생산수단은 로동수단이든 또는 원료, 반제품, 보조재료 등과 같은 로동재료이든 상관없다. 그는 가변자본을 류동자본이라고 부른다.

《류동자본은 로동자들에게 그들의 로동생산물이 완성되기전에 선대되는 생활수단과 기타 필수품으로써만 구성된다.…엄밀히 말하면 국민적부의 원천으로 되는것은 류동자본이 아니고 고정자본뿐이다.… 류동자본은 생산에서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힘이 아니며 또 대체로 생산을 위하여 불가결한것도 아니며 다만 통탄할 인민대중의 빈곤으로 말미암아 필요하게 된 하나의 편의에 불과하다.…국민적견지에서는 고정자본만이 생산비의 한 요소를 이루는것이다.》(램지, 우와 같은 책, 23~26페지의 이곳저곳)

램지는 그가 불변자본의 의미로 리해하고있는 고정자본

을 더 상세히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있다.

《그 로동》 (즉 그 어떤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로동) 《의 생산물의 일부분이 고정자본으로서, 즉 장래의 상품의 생산에는 도움이 되지만 **로동자들의 생활을 유지하지는 않는** 형태로서 존재하는 시간의 길이.》 (59페지)

여기에서도 우리는 A. 스미스가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구별을 고정자본과 류동자본의 구별속에 침몰시킴으로써 그가 야기한 불행을 다시 보게 된다. 램지의 불변자본은 로동수단으로써 구성되고있으며 그의 류동자본은 생활수단으로써 구성되고있다. 량자는 주어진 가치를 가진 상품이다. 잉여가치를 생산할수 없는것은 량자가 다 마찬가지이다.

10. 자본과 수입: 가변자본과 로임(49)

1년간의 총재생산, 이해의 총생산물은 이해의 유용로동의 생산물이다. 그러나 이 총생산물의 가치는 이 가치중 이해에 지출된 로동력으로서의 년간로동이 구현되여있는 부분보다 크다. 이해의 **가치생산물**, 즉 이해에 상품형태로 새로 창조된 가치는 **생산물가치**, 즉 이 온 1년간에 생산된 상품량의 총가치보다 작다. 년간생산물의 총가치에서 이해의 년간로동에 의하여 년간생산물에 첨가된 가치를 공제하여 얻는 차액은 현실적으로 재생산된 가치가 아니며 다만 새로운 존재형태로 재현한 가치에 불과하다. 그것은 년간생산물에 앞서 존재하는 가치로부터 년간생산물에 이전된 가치이며 이 가치는 이해의 사회적로동과정에서 함께 작용한 불변자본구성부분들의 수명여하에 따라 그

(49) 이하는 8고에서.

출생날자가 보다 이를수도 있고 또 보다 늦을수도 있는 가치이며 작년이나 또는 수년전에 이 세상에 나온 생산수단의 가치에서 나올수도 있는 가치이다. 여하튼 그것은 그 이전해의 생산수단으로부터 이해의 생산물로 이전된 가치이다.

우리의 공식을 사용하면 지금까지 고찰한 제 요소의 Ⅰ과 Ⅱ사이에서의 교환 및 Ⅱ내부에서의 교환이 진행된후에는 다음과 같이 된다.

Ⅰ. 4,000c+1,000v+1,000m(마지막의 이 2,000은 소비수단 Ⅱc에 실현된다.)=6,000.

Ⅱ. 2,000c(Ⅰ(v+m)과의 교환에 의하여 재생산된다.)+500v+500m=3,000.

가치총액=9,000.

1년간에 새로 생산된 가치는 v와 m에만 포함되여있다. 따라서 이해의 가치생산물의 총액은 v+m의 총액과 같으며 2,000Ⅰ(v+m)+1,000Ⅱ(v+m)=3,000이다. 이해의 생산물가치중 나머지 모든 가치부분은 다만 이전부터 있었고 이해의 생산에서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로부터 이전된 가치에 불과하다. 3,000이라는 가치이외에는 이해의 년간로동은 다른 어떤 가치도 생산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 로동의 년간가치생산물의 전부이다.

그런데 우리가 본바와 같이 2,000Ⅰ(v+m)은 Ⅱ부류를 위하여 그 2,000Ⅱc를 생산수단의 현물형태로 보상한다. 따라서 년간로동중 Ⅰ부류에서 지출된 $\frac{2}{3}$는 Ⅱ의 불변자본을 그 전체가치와 아울러 그 현물형태도 새로 생산한것이다. 그리하여 사회적으로 고찰하면 1년간에 지출된 로동의 $\frac{2}{3}$는 Ⅱ부

류에 알맞는 현물형태로 실현된 새로운 불변자본가치를 창조하였다. 따라서 사회적년간로동의 과반부분은 소비수단의 생산에 지출된 불변자본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새로운 불변자본(생산수단으로 존재하는 자본가치)의 생산에 지출되였다. 이 점에서 자본주의사회를 미개인으로부터 구별하는것은 씨니어(50)가 생각하듯이 수입, 즉 소비수단으로 분해될수 있는(전환될수 있는) 어떤 과실도 자기에게 가져오지 않는 로동을 일정한 시간 지출하는것이 미개인의 특권이며 특성이라는데 있는것이 아니다. 량자의 구별은 다음과 같은 점에 있다.

(a) 자본주의사회는 그가 마음대로 사용할수 있는 년간 로동의 보다 많은 부분을 생산수단(즉 불변자본)의 생산에 사용하는데 이것은 로임의 형태로나 잉여가치의 형태로 수입으로는 분해될수 없는것이며 다만 자본으로서 기능할수 있을 따름이다.

(b) 미개인이 활, 화살, 돌마치, 도끼, 바구니 등을 만들 때 그는 자기가 그것에 들인 시간을 소비수단의 생산에 들인것이 아니였다는것, 따라서 그는 생산수단에 대한 자기의 수요를 충족시켰을따름이였다는것을 아주 명확히 알고있다. 그밖에 미개인은 시간랑비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하는것으로 하여 경제상의 엄중한 죄를 범하는것이며 레컨대 타일러(51)가 말하는바에 의하면 화살 하나를 만드는데 흔히 웅근 한달을 들이는것이다.

---

(50) 《미개인이 활을 만들 때 그는 한 산업에 종사하는것이지 절욕을 하는것은 아니다.》(씨니어 《정치경제학 기본원리》, 아리바베네 역, 1836년 빠리판, 342~343페지)— 《사회가 진보하면 할수록 사회는 보다 많은 절욕을 요구한다.》(우와 같은 책, 342페지)[95]— 《자본론》(제1권 제22장 제3절, 619페지[96]를 참조하라.)

(51) E. B. 타일러 《인류원시사 연구》 H. 뮐레르 역, 라이프제히판(출판날자 없음), 240페지.

일부 정치경제학자들은 리론적곤난, 즉 현실적관련의 리해를 지금 류행되는 견해에 의하여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견해—일방에 대하여 자본인것이 타방에 대하여서는 수입이며 또 그와 반대이기도 하다는 견해—는 부분적으로는 옳으나 만일 그것이 일반적으로 제기되면 즉시 완전히 그릇된것으로 된다(즉 그것은 년간재생산에 수반하여 진행되는 전체 교환과정에 대한 완전한 오해를 포함하고있으며 따라서 또 부분적으로 옳은것의 사실적기초에 대한 오해를 포함하고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견해의 부분적정확성의 기초로 되고있는 사실적 제 관계를 개괄해보기로 하자. 그렇게 하면 동시에 이제 관계에 대한 그릇된 리해도 분명하여질것이다.

1) 가변자본은 자본가의 수중에서는 자본으로서 기능하며 임금로동자의 수중에서는 수입으로서 기능한다.

가변자본은 우선 **화폐자본**으로서 자본가의 수중에 존재한다. 그것이 **화폐자본**으로서 기능하는것은 자본가가 그것을 가지고 로동력을 구매하기때문이다. 그것이 자본가의 수중에서 화폐형태로 머물러있는 한 그것은 화폐형태로 존재하는 주어진 가치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며 따라서 하나의 불변량이며 가변량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 잠세적으로 가변자본일따름이다. —바로 로동력으로의 그것의 전환가능성에 의하여. 그것이 비로소 현실적가변자본으로 되는것은 오직 그 화폐형태를 벗어버린후이고 로동력으로 전환된후이며 이 로동력이 자본주의적 과정에서 생산자본의 구성부분으로서 기능하게 될 때부터이다.

처음에 자본가를 위하여 가변자본의 화폐형태로서 기능한 **화폐**는 이제는 로동자의 수중에서 그가 생활수단으로 전환하는 그의 로임의 화폐형태로서 기능하며 따라서 그가 자기의 로동력을 부단히 반복하여 판매하는데 의하여 얻는 **수**

입의 화폐형태로서 기능한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것은 다만 구매자(여기서는 자본가)의 **화폐**가 그의 수중으로부터 판매자(여기서는 로동력의 판매자, 즉 로동자)의 수중으로 넘어가는 간단한 사실에 불과하다. 가변**자본**이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자본으로서, 로동자에게 있어서는 수입으로서 2중으로 기능하는것이 아니라 동일한 **화폐**가 처음에는 자본가의 수중에서 그의 가변자본의 화폐형태로서, 따라서 잠세적인 가변자본으로서 존재하고 다음에 자본가가 그것을 로동력으로 전환시키면 로동자의 수중에서, 판매된 로동력에 대한 등가로서 복무하는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화폐가 판매자의 수중에서는 구매자의 수중에 있을 때와는 다른 용도에 쓰이는것은 어느 상품매매에나 다 있는 현상이다.

변호론자적경제학자들이 사태를 그릇되게 설명한다는것은 다음과 같이 하면 가장 잘 드러난다. 즉 오직 류통행위 G—A(=G—W), 즉 자본가인 구매자측에서의 화폐의 로동력에로의 전환과 A—G(=W—G), 즉 판매자인 로동자측에서의 상품로동력의 화폐에로의 전환만을 념두에 두고 그다음에 생기는 일은 잠시 문제로 하지 않으면 된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동일한 화폐가 여기서 두 자본을 실현한다. 구매자—자본가—는 자기의 화폐자본을 산 로동력으로 전환시키고 이 로동력을 자기의 생산자본에 합체시킨다. 다른 한편으로 판매자—로동자—는 자기의 상품—로동력—을 화폐로 전환시키고 그 화폐를 수입으로서 지출하며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로동력을 부단히 반복하여 판매할수 있게 되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로동력을 유지할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의 로동력은 그자체가 상품형태로 있는 그의 자본이며 이

것으로부터 그의 수입이 부단히 샘솟아나온다고. 사실상 로동력은 그의 재산(부단히 갱신되며 재생산되는 재산)이지 그의 자본인것은 아니다. 로동력은 그가 부단히 판매할수 있으며 또 살기 위하여 부단히 판매하지 않으면 안되는 유일한 상품이며 다만 그 구매자, 즉 자본가의 수중에서만 비로소 자본(가변자본)으로서 작용하는 상품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로동력, 즉 자기자신을 부단히 반복하여 어떤 제3자에게 판매하도록 강제당한다는것은 상술한 경제학자들이 말하는데 의하면 그가 자본가라는것을 증명하는데 그 리유는 그가 언제나 판매할 《상품》(자기자신)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이 의미에서는 노예도 자본가이다. 비록 노예는 제3자에 의하여 영구히 상품으로서 매도되지만. 왜냐 하면 이 상품—로동노예—의 성격은 그 구매자가 매일 반복하여 그들을 로동시킬 뿐만아니라 부단히 반복하여 로동할수 있도록 생활수단을 준다는것을 수반하고있기때문이다—(이에 관하여서는 맬서스에게 보낸 편지에서의 씨스몽디와 쌔를 대비하라).[97]

2) 이리하여 1,000 Ⅰv+1,000 Ⅰm 대 2,000 Ⅱc의 교환에서는 일방에 대하여 불변자본인것 (2,000 Ⅱc)이 타방에 대하여서는 가변자본과 잉여가치, 즉 일반적으로 수입이 되며 또 일방에 대하여 가변자본과 잉여가치(2,000 Ⅰ(v+m))즉 일반적으로 수입인것이 타방에 대하여서는 불변자본이 된다.

우리는 우선 Ⅰv 대 Ⅱc의 교환을 고찰하기로 하자. 그리고 처음에는 로동자의 립장에서 보기로 하자.

Ⅰ의 총로동자는 자기의 로동력을 Ⅰ의 총자본가에게 1,000으로 판매하였다. Ⅰ의 총로동자는 이 가치를 로임의 형태로 지불된 화폐로 받는다. 이 화폐로써 Ⅰ의 총로동자는 Ⅱ로부터 동일한 가치액의 소비수단을 구매한다. Ⅱ의 자본가는 Ⅰ의

로동자에게는 다만 상품의 판매자로서 대립할뿐이며 그 이외의 어떤것으로서 대립하는것이 아니며 로동자가 자기자신의 자본가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례컨대 상술한(380페지①) 500Ⅱv의 교환과 같은 경우에도 같은것이다. 그의 상품인 로동력이 통과하는 류통형태는 다만 욕망의 충족을 목적하고 소비를 목적하는 단순한 상품류통의 형태이며 W(로동력)—G—W(소비수단, Ⅱ의 상품)이라는 형태이다. 이 류통과정의 결과는 로동자가 자기를 Ⅰ의 자본가를 위한 로동력으로서 유지하였다는것이며 또 앞으로도 그러한것으로서 자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는 부단히 새로 A(W)—G—W라는 과정을 반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이다. 그의 로임은 소비수단으로 실현되며 그것은 수입으로서 지출되며 그리고 로동계급을 전체로서 보면 부단히 반복하여 수입으로서 지출된다.

이제는 Ⅰv 대 Ⅱc의 이 동일한 교환을 자본가의 립장에서 고찰하자. Ⅱ의 전체 상품생산물은 소비수단으로써 구성된다. 따라서 1년간의 소비로 들어가야 할, 즉 그 어떤 사람을 위하여(여기에서 고찰하고있는 경우에는 Ⅰ의 총로동자를 위하여) 수입의 실현에 복무하여야 할 물건들로써 구성된다. 그러나 Ⅱ의 총자본가에게 있어서는 그 상품생산물의 일부분 =2,000은 이제는 그의 생산자본의 불변자본가치가 상품으로 전화된 형태이며 그것은 이 상품형태로부터 새로 생산자본의 불변부분으로서 작용할수 있는 현물형태로 재전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Ⅱ의 자본가가 이제까지 달성한것은 상품형태(소비수단)로 재생산된 그의 불변자본가치의 절반(=1,000)을 Ⅰ의 로동자들에 판매하는데 의하여 화폐형태로 재전화시켰다는것

① 본권 450페지를 보라. —편집자

이다. 따라서 또 불변자본가치 Ⅱc의 이 첫 절반으로 전환된 것은 Ⅰv가 아니라 Ⅰ에 있어서 로동력과의 교환에서 화폐자본으로서 기능하였고 따라서 로동력의 판매자의 수중에 들어온 화폐인데 이 화폐는 판매자에 대하여 자본을 표시하는것이 아니라 화폐형태로서의 수입을 표시하는것이다. 즉 그것은 소비수단의 구매수단으로서 지출되는것이다. 다른 한편 Ⅰ의 로동자들로부터 Ⅱ의 자본가들에게로 흘러간 화폐=1,000은 Ⅱ의 생산자본의 불변요소로서 기능할수 없다. 그것은 다만 Ⅱ의 상품자본의 화폐형태에 불과하며 앞으로 불변자본의 고정적구성부분으로나 류동적구성부분으로 전환되여야 할것이다. 따라서 Ⅱ는 자기의 상품의 구매자인 Ⅰ의 로동자들로부터 얻은 화폐로써 Ⅰ로부터 1,000의 생산수단을 구매한다. 이리하여 Ⅱ의 불변자본가치는 그 총액의 절반이 다시 Ⅱ의 생산자본의 요소로서 기능할수 있는 현물형태로 갱신된다. 이 경우에 류통형태는 W—G—W였다. 즉 가치 1,000의 소비수단—화폐=1,000—가치 1,000의 생산수단이였다.

그러나 W—G—W는 여기서는 자본운동이다. W는 로동자에게 판매되여 G로 전화되고 이 G는 생산수단으로 전화된다. 그것은 상품으로부터 이 상품의 소재적형성요소들로의 재전화이다. 다른 한편 Ⅱ의 자본가가 Ⅰ에 대하여 다만 상품구매자로서 기능하는것처럼 Ⅰ의 자본가는 여기서는 Ⅱ에 대하여 다만 상품의 판매자로서 기능한다, 최초에 Ⅰ은 가변자본으로서 기능하여야 할 1,000이라는 화폐로써 1,000의 가치를 가진 로동력을 구매하였다. 따라서 Ⅰ은 화폐형태로 내준 자기의 1,000v에 대한 등가를 받았다. 이 화폐는 이제는 로동자의것이며 로동자는 그것을 Ⅱ로부터의 구매에 지출한다. 이리하여 Ⅱ의 금고에 흘러들어간 이 화폐를 Ⅰ이 회수하는

데는 동일한 가치액의 상품을 판매하는데 의하여 이것을 다시 낚아내는것밖에는 다른 수가 없다.

처음에 Ⅰ은 가변자본부분으로서 기능하여야 할 일정한 화폐액=1,000을 가지고있었다. 그것은 동일한 가치액의 로동력으로 전환되는데 의하여 가변자본부분으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로동자는 생산과정의 결과로서 6,000의 가치를 가진 상품량(생산수단)을 Ⅰ에게 제공하였다. 그중 $\frac{1}{6}$, 즉 1,000은 그 가치로 보면 화폐로 선대된 가변자본부분의 등가이다. 이 가변자본가치는 이전에 화폐형태로 있은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상품형태로 있어도 가변자본으로서는 기능하지 않는다. 그것이 처음으로 가변자본으로서 기능할수 있는것은 산 로동력으로의 전환이 수행된후에 있어서이며 다만 이 로동력이 생산과정에서 기능하는 동안뿐이다. 화폐로서는 가변자본가치는 다만 잠세적인 가변자본이였다. 그러나 그것은 직접 로동력으로 전환할수 있는 형태에 있었다. 상품으로서는 이 동일한 가변자본가치는 다만 잠세적인 화폐가치에 불과하다. 그것은 상품을 판매하는데 의하여, 즉 여기서는 Ⅱ가 1,000의 상품을 Ⅰ로부터 구매하는데 의하여 비로소 최초의 화폐형태로 갱신된다. 여기서는 류통운동은 1,000v(화폐)—가치 1,000의 로동력—가치 1,000의 상품(가변자본의 등가)—1,000v(화폐)이며 따라서 G—W…W—G(=G—A…W—G)이다. W…W사이에 있는 생산과정자체는 류통분야에 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년간재생산의 각이한 요소의 호상 교환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비록 이 교환은 생산자본의 모든 요소의 재생산—그 불변요소와 가변요소, 즉 로동력—의 재생산을 포함하지만. 이 교환의 모든 담당자들은 다만 구매자 또는 판매자로서 또

는 량자로서 나타난다. 로동자는 여기에서는 다만 상품구매자로서 나타날뿐이다. 자본가는 번갈아 구매자로서도, 판매자로서도 나타난다. 그리고 일정한 한계내에서는 일방적으로 상품구매자로서만 또는 일방적으로 상품판매자로서만 나타난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Ⅰ은 그 자본의 가변가치부분을 다시 화폐형태로, 즉 그것이 다만 그것으로부터만 직접 로동력으로 전환될수 있는 화폐형태로 소유한다. 즉 그것이 현실적으로 Ⅰ의 생산자본의 가변요소로서 선대될수 있는 유일한 형태로 다시 그것을 소유한다. 다른 한편 로동자는 다시 상품의 구매자로서 나타날수 있기 위하여서는 이제는 그보다 앞서 상품판매자로서, 자기의 로동력의 판매자로서 나타나지 않으면 안된다.

Ⅱ부류의 가변자본(500Ⅱv)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 생산부류의 자본가들과 로동자들사이에서의 류통과정은 우리가 그것을 Ⅱ의 총자본가와 Ⅱ의 총로동자사이에서 진행되는것으로서 고찰하는 한 이 류통과정은 직접 진행된다.

Ⅱ의 총자본가는 500v를 동일한 가치액의 로동력의 구매에 선대한다. 여기서 총자본가는 구매자이며 총로동자는 판매자이다. 그다음에 로동자는 자기의 로동력을 팔아서 얻은 화폐를 가지고 그자신이 생산한 상품의 일부분의 구매자로서 나타난다. 따라서 이번에는 자본가는 판매자이다. 로동자는 자본가가 로동자의 로동력을 구매할 때 로동자에게 지불한 화폐를 생산된 Ⅱ의 상품자본의 일부분, 즉 상품으로 있는 500v로써 자본가에게 보상하였다. 자본가는 로동력으로 전환시키기전에 화폐형태로 소유하였던 그 동일한 v를 이제는 상품형태로 소유한다. 다른 한편 로동자는 이미 자기의 로동력의 가치를 화폐로 실현하였으며 이 화폐를 이제는 자기의 소

비의 충족을 위하여 수입으로서 지출하는데 의하여, 즉 그자신이 생산한 소비수단의 일부분의 구매에 그 화폐를 지출하는데 의하여 실현한다. 이것은 로동자의 화폐로서의 수입과 로동자자신이 상품형태로 재생산한 자본가의 상품구성부분 500v와의 교환이다. 이리하여 이 화폐는 Ⅱ의 자본가의 수중에 그의 가변자본의 화폐형태로서 돌아간다. 여기서는 화폐형태에 있는 대등한 수입가치가 상품형태에 있는 가변자본가치를 보상한다.

자본가는 자기가 로동력을 구입할 때 로동자에게 지불한 화폐를 그것과 같은 가치의 상품량을 로동자에게 판매하는데 의하여 다시 로동자로부터 끌어내는것으로써 치부하는것은 아니다. 만일 자본가가 로동력을 구입할 때 먼저 500을 로동자에게 지불하고 그밖에 자기가 로동자로 하여금 생산하게 한 500의 가치를 가진 상품량을 무상으로 로동자에게 준다면 사실상 그는 로동자에게 두번 지불하는것으로 될것이다. 반대로 만일 로동자가 자본가를 위하여 상품으로서의 500을 자기 로동력가격 500의 등가로서 생산할뿐 그외에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면 자본가는 이 교환후에도 그전과 완전히 같은 상태에 있을것이다. 그러나 로동자는 3,000의 생산물을 재생산하였다. 그는 생산물의 불변가치부분, 즉 그것에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2,000을 그 생산수단이 새로 생산물로 전화하는데 의하여 유지하였다. 그밖에 그는 이 주어진 가치에 1,000(v+m)이라는 가치를 첨가하였다(화폐로서의 500의 환류에 의하여 자본가가 잉여가치를 획득한다는 의미에서 자본가가 치부한다는듯이 생각하는 견해를 데스뛰뜨 드 뜨라씨는 전개하고있는데[98] 이에 관하여는 이 장의 13절에서 상세히 론술하기로 한다.).

Ⅱ의 로동자가 500의 가치가 있는 소비수단을 구매하는데 의하여 Ⅱ의 자본가에게는 이제는 그가 상품으로 가지고 있었던 500Ⅱv라는 가치가 다시 화폐형태로서, 즉 그가 처음에 그것을 선대하였을 때의 형태로 돌아간다. 이 교환의 직접적인 결과는 다른 모든 상품판매에서 그러한것처럼 주어진 가치의 상품형태로부터 화폐형태로의 전환이다. 또 이 교환에 매개되여 화폐가 그 출발점으로 환류하는것도 특수한것은 아니다. 가령 Ⅱ의 자본가가 이 500의 화폐로 Ⅰ의 자본가에게서 상품을 구매하고 그다음에 자기측에서 500의 상품을 Ⅰ에게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역시 500의 화폐는 그의 수중에 환류할것이다. 이 500의 화폐는 1,000의 상품량의 교환을 위하여 복무하였을따름일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상술한 일반적 법칙에 따라 이 상품량의 교환을 위하여 화폐를 류통에 투입한 사람의 수중에 환류할것이다.

그러나 Ⅱ의 자본가에게로 환류한 500의 화폐는 동시에 화폐형태에 있는 갱신된 잠세적인 가변자본이다. 왜 그런가? 화폐, 따라서 또 화폐자본이 잠세적인 가변자본인것은 오직 그것이 로동력으로 전환될수 있는때문이며 또 그 한에서이다. Ⅱ의 자본가에게로 500파운드의 화폐가 돌아간다는것에는 Ⅱ의 로동력이 시장으로 돌아가는것이 수반된다. 량자가 반대의 극에 돌아간다는것은—따라서 500의 화폐가 화폐로서 뿐만아니라 화폐형태의 가변자본으로서도 재현한다는것은—하나의 동일한 수속을 조건으로 한다. 화폐=500이 Ⅱ의 자본가의 수중에로 환류하는것은 그가 Ⅱ의 로동자에게 500의 소비수단을 판매하였기때문이며 따라서 로동자가 자기의 로임을 지출하여 자기와 가족을, 따라서 또 자기의 로동력을 유지하였기때문이다. 앞으로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또 앞으로

도 상품의 구매자로서 나타날수 있기 위하여서는 그는 새로 자기의 로동력을 판매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Ⅱ의 자본가에게 500의 화폐가 돌아간다는것은 동시에 로동력이 500의 화폐로써 구매할수 있는 상품으로서 돌아간다는것, 따라서 로동력이 의연히 그러한 상품이라는것이며 따라서 또 500의 화폐가 잠세적인 가변자본으로서 돌아간다는것이다.

다음으로 사치품을 생산하는 Ⅱb부류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 v 즉 (Ⅱb)v의 경우도 Ⅰv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Ⅱb의 자본가들을 위하여 그들의 가변자본을 화폐형태로 갱신하는 화폐는 Ⅱa의 자본가들의 손을 거쳐 우회적으로 Ⅱb의 자본가의 수중에 흘러간다. 그렇지만 로동자들이 자기들의 로동력을 판매하는 상대인 자본주의적생산자들에게서 직접 자기의 생활수단을 구매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로동자들이 다른 부류의 자본가들에게서 생활수단을 구매하여 이들을 매개로 하여 우회적으로만 전자의 자본가의 수중에 화폐가 돌아가는가 하는데 따라 차이가 생긴다. 로동계급은 그날 벌어 그날 사는 생활을 하므로 그들은 구매할수 있는만큼은 구매한다. 자본가의 경우는 례컨대 1,000Ⅱc 대 1,000Ⅰv의 교환의 경우에는 다르다. 자본가는 그날 벌어 그날 사는 생활을 하는것이 아니다. 자기의 자본을 될수 있는대로 증식하는것이 그의 추진적동기이다. 그러므로 어떤 종류의 사정이 생겨서 Ⅱ의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불변자본을 즉시 갱신하기보다는 적어도 그 일부분을 화폐형태로 더 보유하는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1,000Ⅱc(화폐로서의)의 Ⅰ에로의 환류는 지연된다. 따라서 1,000Ⅰv의 회수도 지연되여 Ⅰ의 자본가는 다만 준비금을 리용할수 있는 경우에만 동일한 규모로 사업을 계속할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가변자본가치의 화폐로서

의 환류가 빠르고 늦음에 관계없이 중단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화폐로서의 준비자본이 필요한것이다.

그해의 재생산의 각이한 요소들의 교환을 연구하려면 과거의 년간로동, 즉 이미 지나간 해의 로동의 결과도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년간생산물을 낳은 생산과정은 이미 끝났고 이미 지나갔으며 자체의 생산물속에 사라져버렸다. 따라서 이 생산과정에 선행하거나 그것과 병행하는 류통과정, 잠세적인 가변자본으로부터 현실적인 가변자본으로의 전환, 즉 로동력의 매매에 이르러서는 더욱 그러하다. 로동시장은 이미 여기에서 우리 앞에 있는 상품시장의 일부를 이루지 않는다. 로동자는 여기에서 이미 자기의 로동력을 판매하였을뿐만아니라 잉여가치이외에 자기로동력의 가격의 등가를 상품으로 제공하였다. 한편 그는 자기의 로임을 주머니에 넣고있으며 이 교환에서 언제나 상품(소비수단)의 구매자로서만 나타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년간생산물은 재생산의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되며 생산자본의 모든 요소, 따라서 또 특히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변자본을 획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이미 본바와 같이 가변자본에 관하여서는 교환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된다. 로동자는 상품의 구매자로서 자기의 로임의 지출에 의하여 또 구매한 상품의 소비에 의하여 자기가 판매할수 있는 유일한 상품인 로동력을 유지하며 재생산한다. 즉 이 로동력을 구매할 때 자본가가 선대한 화폐가 그 자본가의 수중에로 돌아가는 것처럼 로동력도 그 화폐와 교환될수 있는 상품으로서 로동시장에 돌아오는것이다. 그 결과로서는 여기에서 특히 1,000 Ⅰv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된다. Ⅰ의 자본가측에는 화폐로서의 1,000v—이에 대립하여 Ⅰ의 로동자측에는 1,000—의

가치가 있는 로동력이 있으며 따라서 Ⅰ의 전체 재생산과정은 새로 시작될수 있다. 이것이 교환과정의 하나의 결과이다.

다른 한편 Ⅰ의 로동자에 의한 로임의 지출은 1,000c의 소비수단을 Ⅱ로부터 끌어내였으며 이리하여 그것을 상품형태로부터 화폐형태로 전화시켰다. Ⅱ는 Ⅰ로부터 상품=1,000v를 구매하는데 의하여 이 1,000c를 이 화폐형태로부터 Ⅱ의 불변자본의 현물형태로 재전화시키며 이로 말미암아 Ⅰ에는 그 가변자본가치가 다시 화폐형태로 환류한다.

Ⅰ의 가변자본은 세개의 전화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전화는 년간생산물의 교환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든가 또는 암시적으로 나타날뿐이다.

1) 제1형태. 즉 화폐로서의 1,000Ⅰv이며 이 화폐가 동일한 가치액의 로동력으로 전화된다. 이 전화 그자체는 Ⅰ과 Ⅱ사이에서의 상품교환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나 그 결과는 Ⅰ의 로동계급이 1,000의 화폐를 가지고 Ⅱ의 상품판매자와 대립한다는데 나타나는데 이것은 바로 Ⅱ의 로동계급이 500의 화폐를 가지고 상품형태로 있는 500Ⅱv의 상품판매자에 대립하는것과 완전히 마찬가지이다.

2) 제2형태. 가변자본이 현실적으로 변화하며 가변자본으로 기능하는 유일한 형태. 여기에서는 가치창조력이 그것과 교환되는 주어진 가치 대신에 나타나는데 이 제2형태는 다만 이미 끝난 생산과정에만 속하는것이다.

3) 제3형태. 이 형태에서는 가변자본이 생산과정의 결과에서 자기를 가변자본으로서 실증하였는데 이 형태는 년간가치생산물이며 따라서 Ⅰ에서는 1,000v+1,000m=2,000Ⅰ(v+m)이다. 가변자본의 최초의 가치=화폐로서의 1,000 대신에 그 2배의 가치=상품으로서의 2,000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상품

으로서의 가변자본가치=1,000은 생산자본의 요소로서의 가변자본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생산물의 절반에 불과하다. 상품으로서의 1,000Ⅰv는 총자본중 Ⅰ에 의하여 최초에 1,000v의 화폐로 선대되여 가변자본으로서 예정된 부분의 정확한 등가이다. 그러나 그것은 상품형태로서는 잠세적인 화폐에 불과하며(그것이 현실적으로 화폐로 되는것은 그것이 판매되여서부터이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가변적인 화폐자본인것은 더구나 아니다. 그것이 마침내 이러한 화폐자본으로 되는것은 1,000Ⅰv의 상품이 Ⅱc에게 판매되는데 의하여서이며 로동력이 구매할수 있는 상품으로서, 1,000v의 화폐가 교환될수 있는 재료로서 즉시 재현하는데 의하여서이다.

이러한 모든 전환이 진행되는 동안 Ⅰ의 자본가는 부단히 가변자본을 자기 수중에 가지고있다. 1) 처음에는 화폐자본으로서. 2) 그다음에는 자기의 생산자본의 요소로서. 3) 또 그다음에는 자기의 상품자본의 가치부분으로서, 즉 상품가치로서. 4) 마지막으로 다시 화폐로서. 이 화폐에는 로동력이, 즉 이 화폐가 전환될수 있는 로동력이 다시 대립하는것이다. 로동과정의 진행중에 자본가는 가변자본을, 주어진 크기의 가치로서가 아니라 작용하고있는, 가치를 창조하는 로동력으로서 자기 수중에 가지고있다. 그러나 자본가는 언제나 로동자의 로동력이 길거나 짧은 일정한 시간 작용한후에야 비로소 로동자에게 지불하므로 그는 그 로동력에 의하여 창조된 그자신의 보상가치 플루스 잉여가치도 이미 그가 로동자에게 지불하기전부터 자기 수중에 가지고있는것이다.

가변자본은 언제나 그 어떤 형태로 자본가의 수중에 있으므로 그것이 어떤 사람의 수입으로 전환된다고는 결코 말할수 없다. 상품으로서의 1,000Ⅰv는 오히려 Ⅱ에 판매되는

데 의하여 화폐로 전환되는데 이 Ⅱ를 위하여 그것은 불변자본의 절반을 현물로 보상한다.

수입으로 분해되는것은 Ⅰ의 가변자본, 즉 화폐로서의 1,000v가 아니다. 이 화폐는 로동력으로 전환되면 Ⅰ의 가변자본의 화폐형태로서는 기능하지 않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어느 상품판매자①의 화폐도 그가 그것을 어떤 판매자의 상품으로 전환시키면 그의 소유물을 대표하는것이 아니게 되는것과 마찬가지이다. 로임으로서 받은 화폐가 로동계급의 수중에서 겪는 교환은 결코 가변자본의 교환인것이 아니라 화폐로 전환된 이 계급의 로동력의 가치의 교환이다. 그것은 마치도 로동자가 창조한 가치생산물(2,000Ⅰ(v+m))의 교환이 다만 자본가에게 속하는 상품의 교환일뿐 로동자에게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자본가는—그리고 그의 리론적해석자인 정치경제학자는 더구나—로동자에게 지불된 화폐가 여전히 그의, 즉 자본가의 화폐라는 망상으로부터 쉽게 벗어날수 없다. 만약 자본가가 금생산자라면 가변가치부분—즉 그를 위하여 로동의 구매가격을 보상하는 상품으로서의 등가—은 그자체가 직접 화폐형태로 나타나며 따라서 또 환류라는 우회를 하지 않고도 다시 가변적화폐자본으로서 기능할수 있다. 그러나 Ⅱ의 로동자에 관하여 말한다면—우리가 사치품생산로동자를 무시하는 한—500v 그자체가 로동자의 소비를 위하여 예정되여있는 상품으로 전재하는것이며 이 상품을 로동자는 총로동자로서 보면 자기가 로동력을 판매한 상대인 동일한 총자본가에게서 직접 다시 구매하는것이다. Ⅱ의 자본의 가변가치부분은 그 현물형태로 보면 대부분 로동계급

① 1893년의 독일문판에 《판매자》로 되여있다. 맑스의 원고에 의해 개정한다. —편집자

의 소비를 위하여 예정되여있는 소비수단으로 구성되여있다. 그러나 로동자가 이 형태로 지출하는것은 가변자본이 아니다. 그것은 로임이며 로동자의 화폐인데 이 화폐가 이 소비수단으로 실현된다는 바로 그것에 의하여 그것은 자본가를 위하여 가변자본 500Ⅱv를 그 화폐형태로 회복하는것이다. 가변자본 Ⅱv는 불변자본 2,000Ⅱc와 마찬가지로 소비수단으로 재생산되여있다. 전자나 후자나 다 수입으로는 분해되지 않는다. 수입으로 분해되는것은 이 두 경우에 다 로임이다.

그러나 로임이 수입으로서 지출되는데 의하여 한 경우에는 1,000Ⅱc가, 또한 이 우회적인 길을 통하여 1,000Ⅰv가,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500Ⅱv가, 따라서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이 (가변자본에 있어서는 일부분은 직접적환류에 의하여, 일부분은 간접적환류에 의하여) 다시 화폐자본으로서 회복된다는 것은 년간생산물의 교환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다.

11. 고정자본의 보상

년간재생산의 교환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하나의 큰 곤난은 다음과 같은것이다. 사태를 표시하는 가장 간단한 형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Ⅰ) 4,000c+1,000v+1,000m+

(Ⅱ) 2,000c+ 500v+ 500m=9,000,

이것은 결국 다음과 같이 분해된다.

4,000Ⅰc+2,000Ⅱc+1,000Ⅰv+500Ⅱv+1,000Ⅰm+500Ⅱm =6,000c+1,500v+1,500m=9,000. 불변자본가치의 일부분은 그것이 고유한 의미에서의 로동수단(생산수단의 특수부류로서의)

으로써 구성되는 한 로동수단으로부터 로동생산물(상품)로 이전된다. 이 로동수단은 생산자본의 요소로서, 그것도 낡은 현물형태로서 기능을 계속한다. 로동수단의 마멸, 즉 이 로동수단이 일정한 기간 계속 기능하는 동안에 점차 상실하는 가치는 바로 그 로동수단에 의하여 생산된 상품의 가치요소로서 재현하는것이며 로동도구로부터 로동생산물로 이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년간재생산에 관련하여 여기서 문제로 되는것은 처음부터 고정자본중 1년이상의 수명을 가진 구성부분들뿐이다. 그것들이 전부 그해에 사멸한다면 그것들은 역시 년간재생산에 의하여 전부 보상되고 갱신되여야 할것이며 따라서 문제로 되는 점은 그것들과는 처음부터 관계가 없다. 기계나 기타 오래 견디는 고정자본의 형태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전체 건물 또는 기계의 동체는 수명이 길더라도 그것들의 일정한 부분들은 1년내에 몽땅 보상되여야 하는 일이 생길수 있으며 또 빈번히 생긴다. 이 부분들은 고정자본중 1년동안에 보상되여야 할 요소들과 동일한 범주에 속한다.

상품의 이 가치요소는 결코 수리비와 혼동되여서는 안된다. 상품이 판매되면 이 가치요소는 다른 가치요소들과 마찬가지로 화폐화된다. 즉 화폐로 전화된다. 그러나 그것이 화폐로 전화된후에는 다른 가치요소들과의 구별이 나타난다. 상품의 생산에 소비된 원료와 보조재료는 상품의 재생산을 시작하기 위해서는(일반적으로 상품의 생산과정이 지속적인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현물로 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상품에 지출된 로동력도 역시 새로운 로동력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상품을 팔아서 얻은 화폐는 부단히 생산자본의 이 요소들로, 화폐형태로부터 상품형태로 다시 전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례컨대 원료와 보조재료가 일

정한 기간을 두고 생산용재고를 형성할만큼 대량으로 구매되고 따라서 일정한 기간내에는 이러한 생산수단들을 새로 구매할 필요가 없게 되며 따라서 또 이러한 재고가 없어지지 않을 동안은 상품판매에서 얻게 되는 화폐도—그것이 이 목적에 복무하는 한—축적될수 있으며 그리하여 불변자본의 이 부분이 잠시 능동적인 기능을 정지하고있는 화폐자본으로서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런것은 사태를 조금도 변경시키지 못한다. 이것은 수입자본이 아니다. 이것은 화폐형태로 정지되고 있는 생산자본이다. 생산수단의 갱신은 비록 그 갱신의 형태가 류통과 관련되여 각이할수 있지만 부단히 진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새로운 구매, 즉 생산수단을 갱신하며 보상하기 위한 류통행위는 비교적 장기간을 두고 진행되는수도 있다. 그 경우에는 한번에 대량의 화폐가 투입되며 그에 상응하는 생산용재고에 의하여 보상된다. 혹은 또 이러한 류통행위가 단기간을 두고 뒤에 뒤를 이어 진행되는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급속히 련이어 조금씩 화폐가 지출되며 소량의 생산용재고가 있게 된다. 이 모든것은 사태 그자체를 조금도 변경시키지 못한다. 로동력도 마찬가지이다. 생산이 한해동안 련속 같은 규모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소비된 로동력은 부단히 새로운 로동력에 의하여 보상된다. 농업에서처럼 로동이 계절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시기에 따라 각이한 분량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구매되는 로동력의 량도 때로는 적고 때로는 많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상품판매에서 얻은 화폐는 그것이 고정자본의 마멸분과 같은 상품가치부분을 화폐화하는 한에서는 그것이 그 생산자본이 가치상실을 보상한다 하더라도 생산자본의 구성부분으로는 재전화하지 않는다. 그것은 생산자본의 곁에서 침전하며 화폐형태로 남아있는다.

이 화폐침전은 불변자본의 고정적요소가 그의 낡은 현물형태로 생산과정에서 기능을 계속하는 많거나 적은 몇년간의 재생산기간이 끝날 때까지 반복된다. 건물, 기계 등등과 같은 고정적요소들이 수명이 끝나 이제는 생산과정에서 기능할수 없게 되면 그 가치는 그 고정적요소들의 곁에 완전히 화폐로 보상되여 존재한다. 즉 화폐침전의 총액에 의하여, 즉 고정자본으로부터 그의 참여하에 생산된 상품으로 점차 이전된, 상품의 판매에 의해 화폐형태로 이행한 가치의 총액에 의하여 보상되여 존재한다. 다음으로 이 화폐는 고정자본(또는 고정자본의 요소들, 이렇게 말하는것은 고정자본의 여러가지 요소들은 수명이 각이하기때문이다.)을 현물로 보상하기 위하여, 따라서 생산자본의 이 구성부분을 현실적으로 갱신하기 위하여 복무한다. 따라서 이 화폐는 불변자본가치의 일부분, 즉 그 고정적부분의 화폐형태이다. 그러므로 화폐축장은 그자체가 자본주의적재생산과정의 한 요소이다. 즉 고정자본의 수명이 끝나고 따라서 자기의 전체 가치를 생산된 상품에 이전하고 이제는 현물로 보상되지 않으면 안될 때까지의 고정자본 또는 그 개별적요소들의 가치의 재생산과 축적—화폐형태로서의—이다. 그러나 이 화폐는 고정자본의 수명이 끝난 요소들을 보상하기 위하여 그 새로운 요소들에 재전화하였을 때 비로소 그 축장화폐의 형태를 잃으며 따라서 그때에야 비로소 다시 능동적으로 류통에 의하여 매개되는 자본의 재생산과정에 들어가는것이다.

단순한 상품류통이 결코 생산물교환과 같은것이 아닌것처럼 년간상품생산물의 교환도 결코 그의 각이한 구성부분들의 직접적인 호상 교환으로 분해될수는 없다. 화폐는 그 교환에서 특수한 역할을 노는데 이 역할은 특히 고정자본가치의 재

생산방식에서도 표현된다(생산이 공동적이여서 상품생산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는것을 전제하면 이와는 사태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것인가 하는것은 나중에 연구할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의 기본공식으로 돌아가면 그것은 Ⅱ부류에 대하여서는 2,000c+500v+500m이였다. 1년간에 생산된 소비수단의 총액은 여기서는 3,000이라는 가치와 같다. 그리고 상품총액을 구성하는 각이한 매개 상품요소들은 그 가치로 보면 $\frac{2}{3}$c+$\frac{1}{6}$v+$\frac{1}{6}$m로, 또는 백분비로는 $66\frac{2}{3}$c+$16\frac{2}{3}$v+$16\frac{2}{3}$m으로 나뉘여진다. Ⅱ부류의 각이한 상품종류는 불변자본을 각이한 비률로 포함하고있을것이다. 또 불변자본의 고정부분도 역시 상품종류에 따라 각이할것이다. 또 고정자본부분의 수명도, 따라서 또 매년의 마멸, 또는 고정자본부분으로부터 그것에 사용되여 생산된 상품에 비례적으로 이전된 가치부분도 마찬가지일것이다. 이러한것은 여기에서는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재생산과정에 관하여 문제로 되는것은 다만 Ⅱ부류와 Ⅰ부류들간의 교환뿐이다. Ⅱ와 Ⅰ은 여기에서는 다만 두 부류의 사회적인 대량관계에서 서로 대립하고있을뿐이다. 그러므로 Ⅱ의 상품생산물중의 가치부분 c의 크기의 비률(여기에서 취급하고있는 문제에서는 이것만이 결정적의의를 가진다.)은 Ⅱ에 포괄되는 모든 생산부문들을 총괄한 경우의 평균적인 비률이다.

이리하여 그 총가치가 2,000c+500v+500m으로 구성되는 상품종류(그런데 이것은 대부분 동일한 상품종류들이다.)의 각개는 그 가치로 보면 마찬가지로 $66\frac{2}{3}$%c+$16\frac{2}{3}$%v+$16\frac{2}{3}$%m이다. 이것은 c, v, m의 그 어느것으로 구분되는 상품에 대하

여도 매 100개에 적용되는 구성이다.

2,000c가 구현되여있는 상품들은 가치로 보면

1) $1,333\frac{1}{3}$c+$333\frac{1}{3}$v+$333\frac{1}{3}$m=2,000c로 나뉘여진다.

마찬가지로 500v는

2) $333\frac{1}{3}$c+$83\frac{1}{3}$v+$83\frac{1}{3}$m=500v로 나뉘여진다.

끝으로 500m은

3) $333\frac{1}{3}$c+$83\frac{1}{3}$v+$83\frac{1}{3}$m=500으로 나뉘여진다.

이제 1) 2) 3)에 있어서의 c를 합계하면 $1,333\frac{1}{3}$c+$333\frac{1}{3}$c+$333\frac{1}{3}$c=2,000으로 된다. 마찬가지로 $333\frac{1}{3}$v+$83\frac{1}{3}$v+$83\frac{1}{3}$v=500으로 되며 m을 가하여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총계는 상술한바와 같이 3,000의 총가치로 된다.

따라서 3,000의 가치를 가진 Ⅱ의 상품량에 포함되여있는 불변자본가치는 전부 2,000c에 포함되여있으며 500v나 500m은 그 1개 원자도 포함하지 않는다. v와 m에 대하여도 꼭같이 말할수 있다.

바꾸어말하면 Ⅱ의 상품량중 불변자본가치를 표시하며 따라서 불변자본의 현물형태로나 화폐형태로 재전환될수 있는 부분전체는 2,000c중에 존재한다. 따라서 Ⅱ의 상품의 불변자본가치의 교환과 관련된 모든것은 2,000Ⅱc의 운동에 국한되여있다. 그리고 이 교환은 Ⅰ(1,000v+1,000m)에 대하여서만 가능하다.

또 Ⅰ부류에 대하여서도 이 부류에 속하는 불변자본가치의 교환과 관련된 모든것은 4,000Ⅰc의 고찰에 국한되지 않으면 안된다.

A. 마멸가치부분의 화폐형태에서의 보상

그러면 우선

Ⅰ. 4,000c+1,000v+1,000m

Ⅱ. …… 2,000c +500v+500m

을 들어보면 상품 2000Ⅱc와 같은 가치의 상품 Ⅰ(1,000v+1,000m)과의 교환은 2,000Ⅱc가 전부 현물형태로 Ⅰ부류에 의하여 생산된, Ⅱ부류의 불변자본의 현물적구성부분으로 재전화된다는것을 전제로 할것이다. 그러나 Ⅱ부류의 불변자본이 존재하는 2,000의 상품가치는 고정자본의 가치상실분을 보상하는 한 요소를 포함하는데 이 요소는 즉시에 현물로 보상될 필요가 없고 화폐로 전화되면 되는것이며 이 화폐는 고정자본이 현물형태로 갱신되여야 할 기한이 닥쳐올 때까지 점차 축적되여 총액에 달하는것이다. 매년은 고정자본의 죽음의 해인바 고정자본은 이러저러한 개별적기업에서 또는 이러저러한 산업부문에서 보상되여야 한다. 동일한 개별적자본에 있어서도 고정자본의 이러저러한 부분이 보상되여야 한다. (그 부분들의 수명이 같지 않기때문이다.) 년간재생산을 고찰하는 경우에—단순한 규모에서, 즉 모든 축적을 도외시하고 고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우리는 처음부터 시작하는것이 아니다. 우리가 고찰하는것은 여러해중의 한해이며 자본주의적생산이 탄생한 첫해가 아니다. 그러므로 Ⅱ부류의 여러가지 생산부문들에 투하되는 각이한 자본들은 년령이 각이하며 이 생산부문들에서 일하는 사람들가운데 매년 죽는 사람이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매년 다량의 고정자본들이 그해에

림종에 도달하여 축적된 화폐기금으로부터 현물로 갱신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기때문에 2,000Ⅱc와 2,000Ⅰ(v+m)과의 교환에는 2,000Ⅱc의 상품형태(소비수단으로서의)로부터의 현물적요소로의 전화가 포함되여있으며 이 현물적요소는 비단 원료나 보조재료들로써뿐만아니라 고정자본의 현물적요소들인 기계, 도구, 건물 등등으로써도 이루어져있다. 그러므로 2,000Ⅱc의 가치중에서 **화폐**로 보상되여야 할 마멸분은 결코 기능하고있는 고정자본의 량과도 일치하는것이 아니다. 왜냐 하면 고정자본의 일부분은 매년 **현물로** 보상되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 전화에 필요한 화폐가 그 이전의 몇해동안에 Ⅱ부류의 자본가들의 수중에 축적되여있다는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바로 이 전제는 그전 몇해에 적용된것과 같이 이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Ⅰ(1,000v+1,000m)과 2,000Ⅱc와의 교환에 있어서 우선 지적하여야 할것은 가치액 Ⅰ(v+m)에는 불변가치요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것, 따라서 또 보상되여야 할 마멸분을 위한 가치요소, 즉 불변자본의 고정적구성부분으로부터 v+m이 현물형태로 존재하는 상품으로 이전된 가치를 위한 가치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는것이다. 이와 반대로 Ⅱc중에는 이 요소가 존재하며 바로 고정자본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이 가치요소의 일부분은 화폐형태로부터 즉시 현물형태로 전화될것이 아니라 우선 화폐형태에 머물러있어야 하는것이다. 그러므로 Ⅰ(1,000v+1,000m)과 2,000Ⅱc와의 교환에서는 당장 다음과 같은 곤난이 생긴다. 그것은 즉 2,000(v+m)이 존재하는 현물형태인 Ⅰ부류의 생산수단은 그 가치의 전액 2,000이 Ⅱ부류의 소비수단으로 있는 등가와 교환되여야 하는데 한편 소비수단 2,000Ⅱc는 그 가치의 전액만큼은 생산

수단 Ⅰ(1,000v+1,000m)과 교환될수 없다는 곤난이다. 왜냐하면 이 가치의 한 부분—고정자본중 보상을 요하는 마멸분 또는 가치상실분과 같은 부분—은 우선 화폐형태대로 침전되여야 하는데 그 화폐는 여기서 단독으로 고찰되는 이해의 재생산기간에는 다시 류통수단으로서는 기능하지 않기때문이다. 그러나 상품가치 2,000Ⅱc속에 포함되여있는 마멸요소를 화폐화하기 위한 화폐는 Ⅰ부류에서만 나올수 있다. 왜냐 하면 Ⅱ부류는 자기가 자기에게 지불할수는 없으며 자기의 상품을 판매하는데 의하여서만 지불받기때문이며 또 전제에 의하면 Ⅰ(v+m)은 2,000Ⅱc의 전 상품액을 구매하기때문이다. 따라서 Ⅰ부류는 그것을 구매함으로써 Ⅱ부류의 그 마멸분을 화폐로 전화시켜주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앞에서 서술한 법칙에 따라 류통에 선대된 화폐는 나중에 같은 량의 상품을 류통에 투입하는 자본주의적생산자의 수중에 돌아간다. Ⅰ부류는 Ⅱc를 구매할 때 분명히 2,000의 상품외에 또 여분의 화폐액을 영구적으로(교환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Ⅰ부류의 수중에로 돌아옴이 없이) Ⅱ부류에 줄수는 없다. 그럴수 있다면 Ⅰ부류는 Ⅱc의 상품량을 그 가치보다 높게 구매하게 되는것이다. Ⅱ부류가 실제로 자기의 2,000c와 교환하여 Ⅰ(1,000v+1,000m)을 입수하였다고 하면 Ⅱ부류는 Ⅰ부류에게서 그 이상 요구할것이 없으며 이 교환에서 류통하는 화폐가 Ⅰ부류에 돌아가는가 Ⅱ부류에 돌아가는가 하는것은 그 화폐를 량자중 누가 류통에 투입하였는가에 따라, 즉 누가 먼저 구매자로 나타났는가에 따라 결정되는것이다. 동시에 이 경우에 Ⅱ부류는 자기의 상품자본을 그 가치액대로 전부 생산수단의 현물형태로 재전화하였을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전제에 의하면 Ⅱ부류는 자기의 상품자본을 팔아도 그 한

부분만은 그해의 재생산기간에는 화폐로부터 Ⅱ부류의 불변자본의 고정적구성부분의 현물형태로 재전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Ⅱ부류에게로 화폐차액이 들어올수 있는것은 Ⅱ부류가 Ⅰ부류에 2,000의 상품을 판매하였지만 Ⅰ부류에게서 구매하는 상품은 2,000보다 적을 때 례컨대 1,800에 불과할 때 만일것이다. 이 경우에 Ⅰ부류는 이 차액을 200의 화폐에 의하여 메우지 않으면 안될것인데 이 화폐는 Ⅰ부류에 환류하지 않을것이다. 왜냐 하면 Ⅰ부류는 류통에 선대한 이 화폐를, 상품=200을 류통에 투입함으로써 류통으로부터 다시 끌어내지는 않을것이기때문이다. 이 경우에 Ⅱ부류에는 고정자본의 마멸분을 보상하는 화폐기금이 생길것이나 다른 한편, 즉 Ⅰ부류에서는 200의 가치를 가진 생산수단의 과잉생산이 생길것이며 그리하여 공식의 전체 기초가 파괴될것이다. 즉 여러가지 생산체계들간의 완전한 균형을 전제로 하는 불변의 규모의 재생산이 파괴될것이다. 하나의 곤난은 이보다 훨씬 시끄러운 다른 곤난에 의해서만 제거되는것이다.

이 문제에는 독특한 곤난이 있으며 또 이 문제는 지금까지 대체로 정치경제학자들이 취급하지 않은것이므로 우리는 문제의 모든 가능한(적어도 가능하게 보이는) 해결을, 아니 오히려 문제자체의 제기를 순차적으로 고찰하기로 하자.

우선 바로 우에서 우리가 가정한바에 의하면 Ⅱ는 Ⅰ에게 2,000의 상품을 판매하는데 Ⅰ로부터는 1,800의 상품만을 구매한다. 2,000Ⅱc의 상품가치중에는 화폐로 적립되여야 할 마멸보상분 200이 포함되여있다. 그리하여 2,000Ⅱc라는 가치는 Ⅰ의 생산수단과 교환되여야 할 1,800과 화폐로(Ⅰ에 2,000c를 판매한후에) 보존되여야 할 마멸보상분 200으로 나뉘여질것이다. 또는 그 가치에 대하여 말하면 2,000Ⅱc

=1,800c+200c(d)로 될것이다. 이 d는 déchet{마멸분}이다.

이제 다음과 같은 교환을 고찰하지 않으면 안된다.

Ⅰ. 1,000v + 1,000m

Ⅱ. 1,800c + 200c(d).

Ⅰ은 로동력에 지불되는 로임으로서 로동자의 수중에 들어간 1,000파운드로 1,000Ⅱc만큼의 소비수단을 구매한다. Ⅱ는 이 1,000파운드로써 1,000Ⅰv만큼의 생산수단을 구매한다. 이리하여 Ⅰ의 자본가들에게는 그들의 가변자본이 화폐형태로 환류하며 그들은 이것으로써 다음해에도 동일한 가치액의 로동력을 구매할수 있다. 즉 그들의 생산자본의 가변부분을 현물로 보상할수 있다.—그리고 Ⅱ는 선대한 400파운드로 Ⅰm의 생산수단을 구매하며 또 Ⅰm은 그 400파운드로써 Ⅱc의 소비수단을 구매한다. 이리하여 Ⅱ가 류통에 선대한 400파운드는 Ⅱ의 자본가의 수중에로 돌아왔으나 그것은 다만 판매된 상품의 등가로서 돌아왔을뿐이다. Ⅰ은 선대한 400파운드만큼의 소비수단을 구매한다. Ⅱ는 Ⅰ에게서 400파운드만큼의 생산수단을 구매한다. 이리하여 이 400파운드는 Ⅰ에게로 환류한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된다.

Ⅰ은 상품으로 1,000v+800m을 류통에 투입한다. 그리고 화폐로써 로임으로서의 1,000파운드와 그리고 Ⅱ와의 교환을 위한 400파운드를 류통에 투입한다. 교환이 끝난후에는 Ⅰ은 화폐형태로 1,000v, 800Ⅱc(소비수단)로 전환된 800m, 그리고 화폐로 400파운드를 가지고있다.

Ⅱ는 상품(소비수단)으로 1,800c와 화폐로 400파운드를 류통에 투입한다. 교환이 끝난후에는 Ⅱ는 Ⅰ의 상품(생산수

단)으로 1,800, 화폐로 400파운드를 가지고있다.

이제 그밖에도 Ⅰ측에는 200m가(생산수단의 형태로), Ⅱ측에는 200c(d)가(소비수단의 형태로) 있다.

전제에 의하면 Ⅰ은 200파운드로써 가치액 200의 소비수단 c(d)를 구매한다. 그런데 Ⅱ는 이 200파운드를 보류한다. 왜냐 하면 200c(d)는 마멸분을 표시하며 직접 다시 생산수단으로 전화되여서는 안되기때문이다. 따라서 200Ⅰm은 판매될 수 없는것으로 된다. 보상되여야 할 Ⅰ의 잉여가치의 $\frac{1}{5}$은 실현될수 없으며 그 생산수단의 현물형태로부터 소비수단의 현물형태로 전환될수 없다.

이것은 단순한 규모에서의 재생산이라는 전제와 모순될 뿐만이 아니다. 그것은 그자체로서 200c(d)의 화폐화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화폐화가 설명될수 없다는것을 의미한다. 200c(d)가 어떻게 화폐화되는가를 론증할수 없기때문에 다음과 같은것이 가정된다. 즉 Ⅰ이 친절히도 그것을 화폐화해주는데 그 리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Ⅰ은 자기의 나머지 200m을 화폐화할수 없기때문인것이다. 이것을 교환기구의 하나의 정상적인 조작으로서 보는것은 바로 200c(d)를 규칙적으로 화폐화하기 위하여 매년 200파운드가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가정하는것과 같은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의 황당성이 직접 눈에 띄이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즉 Ⅰm이 여기에서와 같이 그 원래의 존재방식으로 나타나지 않고—즉 생산수단의 가치구성부분, 따라서 그 자본주의적생산자들이 판매에 의하여 화폐로 실현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품의 가치구성부분으로서 나타나지 않고—자본가와 배당을 나누는 사람들의 수중에서 나

타나는 경우, 례컨대 지대로서 토지소유자의 수중에서 나타나든가 리자로서 화폐대부업자의 수중에서 나타나는 경우이다. 그러나 만일 상품에 포함되여있는 잉여가치중 산업자본가가 지대나 리자로서 자기 이외의 잉여가치의 공동소유자들에게 양도하여야 할 부분이 오래동안 상품자체의 판매에 의하여 실현될수 없다면 지대나 리자의 지불도 계속될수 없게 되며 따라서 토지소유자나 금리생활자도 지대나 리자를 지출하는데 의하여 년간재생산의 일정한 부분들을 임의로 화폐화하기 위하여 기계의 신[99]으로서 복무할수 없을것이다. 또 소위 비생산적로동자들인 관리, 의사, 변호사 등과 그밖에도 정치경제학자들이 자기들로서는 설명할수 없는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공중》이라는 신분으로 정치경제학자들에게 《복무》하는 사람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지출에 대하여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Ⅰ과 Ⅱ사이에서의—자본주의적생산자들자신의 2대 부류 사이에서의—직접적교환대신에 상인을 매개자로서 끌어들여 그의 《화폐》로써 모든 곤난을 해결하려 하여도 역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례컨대 지금의 경우에는 200Ⅰm은 결국 종국적으로는 Ⅱ의 산업자본가들에게 판매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일련의 상인들의 손을 거칠지 모르나 최후의 상인은—가정에 의하면—Ⅱ에 대하여 Ⅰ의 자본주의적생산자가 처음에 있은것과 같은 상태에 있게 된다, 즉 그들은 200Ⅰm을 Ⅱ에게 판매할수 없다. 그리고 이 판매되지 않는 구매액은 Ⅰ과의 사이에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할수 없다.

여기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우리의 본래의 목적으로부터 떠나서 보더라도 사회적재생산과정이 직접 그 복잡한 구체적형태대로 분석의 대상으로 되는 경우에 《과학적》인 설

명의 외관을 띠게 하는 그릇된 둔사들을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재생산과정을 그 기본형태—그 경우에는 사태를 애매하게 하는 모든 난관들이 완전히 제거된다.—에서 고찰하는것이 완전히 필요하다.

이리하여 재생산(단순한 규모의 재생산이든 확대된 규모의 재생산이든간에)의 과정이 정상적이라면 자본주의적생산자가 류통에 선대한 화폐는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된다(이 경우에 그 화폐는 자기의것이든 차용한것이든 아무래도 좋다.)는 법칙은 200Ⅱc(d)가 Ⅰ부류의 선대한 화폐에 의하여 화폐화된다는 가정을 결정적으로 배제한다.

B. 고정자본의 현물로의 보상

방금 고찰한 가정을 배제한 다음에 아직 남는것은 마멸분의 화폐에 의한 보상이외의 완전히 사멸한 고정자본의 현물로의 보상을 포함하는 가능성들뿐이다.

우리는 우에서 다음과 같은것을 전제로 하였다.

a) Ⅰ이 로임으로 지불한 1,000파운드는 로동자들에 의하여 동일한 가치액의 Ⅱc에 지출된다는것, 즉 그들이 그것으로써 소비수단을 구매한다는것.

이 경우에 1,000파운드가 Ⅰ에 의하여 화폐로 선대된다는것은 다만 사실을 확인하는데 불과하다. 로임을 해당한 자본주의적생산자들이 화폐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다음에 이 화폐는 로동자들에 의하여 생활수단으로 지출되며 또 생활수단의 판매자들을 위하여서는 그들의 불변자본을 상품자본으로부터 생산자본으로 전환시킬 때 다시 류통수단으로서 복무한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수로들(소매상인, 가옥소

유자, 세금징수자 그리고 로동자자신에게 필요한 비생산적로동자, 례컨대 의사 등등)을 통하여 흐르며 따라서 다만 일부분만이 직접 Ⅰ의 로동자들의 수중으로부터 Ⅱ의 자본가계급의 수중으로 흘러간다. 이 흐름은 많게나 적게 정체될수도 있으며 따라서 자본가측에 새로운 화폐준비가 필요할수 있다. 이 모든것들은 이 기본적형태로는 고찰되지 않는다.

b) 전제에 의하면 한 경우에는 Ⅰ이 Ⅱ에게서 구매하기 위하여 새로 다른 400파운드를 화폐로 선대하며 이 화폐가 그에게로 환류하며 또 한 경우에는 Ⅱ가 Ⅰ에게서 구매하기 위하여 400파운드를 선대하며 그것이 Ⅱ에게로 환류한다는것이였다. 이렇게 전제하는것이 필요하게 되는것은 이와는 반대로 Ⅰ의 자본가계급이나 Ⅱ의 자본가계급이 일방적으로 상품교환에 필요한 화폐를 류통에 선대한다고 가정하는편이 도리여 자의적인것으로 될것이기때문이다. 그런데 전항 (1)에서 밝혀진바와 같이 Ⅰ부류가 200Ⅱc(d)를 화폐화하기 위하여 추가적화폐를 류통에 투입한다는 가정은 황당한 가정으로서 배척받아야 할것이므로 다음에 남아있는것은 분명히 다음과 같은 외관상 더 황당한 가정뿐이다. 그것은 즉 고정자본의 마멸분을 보상하여야 할 상품가치구성부분을 화폐화하기 위한 화폐가 Ⅱ부류자체에 의하여 류통에 투입된다는것이다. 례컨대 X씨의 방적기계가 생산에서 상실하는 가치부분은 면사의 가치부분으로서 재현한다. 그의 방적기계가 일방에서 가치 또는 마멸분으로 상실하는것이 타방에서는 화폐로서 그의 수중에 적립되게 된다. 이 X는 례컨대 200파운드로 면화를 Y에게서 구매하며 따라서 화폐로 200파운드를 류통에 선대한다고 하자. Y는 이 200파운드로 X에게서 면사를 구매하며 이 200파운드가 다음에는 X에게 있어서 방적기계의 마멸

을 보상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복무한다. 그리하여 결국은 다음과 같이 될것이다. X는 그의 생산이나 그 생산물의 판매는 별도로 하고 방적기계의 가치상실분을 자기자신에게 지불하기 위하여 200파운드를 보유할것이라는것, 즉 그가 최후에 새로운 방적기계를 구매할수 있기 위하여 그는 자기의 방적기계의 가치상실분 200파운드이외에 또 다른 200파운드를 화폐로 매년 자기 주머니로부터 추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외관상의 황당성에 불과하다. Ⅱ부류는 많은 자본가들로 구성되여있는데 그들의 고정자본은 서로 완전히 다른 재생산기한에 처하여있다. 일부 자본가들에게 있어서는 고정자본이 전부 현물로 보상되여야 할 시기에 도달하였다. 또 다른 자본가들에게 있어서는 고정자본이 이 단계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다소간 시간이 있다. 이 뒤부류의 모든 자본가들에게 공통적인것은 그들의 고정자본이 현실적으로 재생산될 필요가, 즉 현물로 갱신되거나 또는 동종의 신품에 의하여 보상될 필요가 없으며 그 가치가 순차로 화폐형태로 축적된다는것이다. 앞부류의 자본가들은 창업할 때 화폐자본을 가지고 시장에 나타나서 이 화폐자본을 한편으로는 (고정적 및 류동적) 불변자본으로 전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로동력으로, 즉 가변자본으로 전화하던것과 완전히(또는 부분적이라고 하여도 여기에서는 상관이 없다.) 같은 정형에 있다. 그들은 창업당시와 같이 지금도 다시 이 화폐자본을 류통에 선대하여야 하며 따라서 류동자본 및 가변자본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불변고정자본의 가치도 류통에 선대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Ⅱ부류의 자본가계급이 Ⅰ부류와의 교환을 위하여 류통에 투입하는 400파운드중의 절반은 Ⅱ부류의 자본가들중 자기의 상품에 의하여 류동자본에 속하는 자기의 생

산수단을 갱신하여야 할뿐만아니라 자기의 화폐에 의하여 자기의 고정자본도 현물로 보상하여야 하는 자본가의 수중으로부터 나온다고 전제하며 한편 Ⅱ부류의 자본가들의 나머지 절반은 자기의 화폐로써는 다만 자기의 불변자본의 류동부분을 현물로 보상할뿐이고 자기의 고정자본을 현물로 갱신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면 환류하는 400파운드(Ⅰ이 그것으로 소비수단을 구매하기만 하면 환류하는)가 이제는 Ⅱ의 이러한 두 부분의 자본가들사이에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분배된다는 점에는 전혀 아무런 모순도 없다. 이 400파운드는 Ⅱ부류에게 환류하나 동일한 사람들의 수중으로 환류하는것이 아니고 이 Ⅱ부류내에서 다른 방식으로 분배되여 그 부류의 일부분 사람들로부터 다른 부분의 사람들에게로 넘어간다.

Ⅱ의 자본가들의 한 부분은 생산수단중 결국 자기의 상품에 의하여 보상되는 부분이외에 200파운드의 화폐를 현물형태의 새로운 고정자본요소들로 전화시켰다. Ⅱ부류의 이 부분이 그와 같이—바로 창업당시에 있어서와 같이—지출한 화폐는 수년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이 고정자본으로써 생산되는 상품의 마멸가치구성부분으로서 류통으로부터 Ⅱ의 이 부분의 수중에로 환류한다.

이와 반대로 Ⅱ의 자본가들의 다른 부분은 Ⅰ로부터 200파운드로 상품을 구매하지 않았으나 Ⅰ이 Ⅱ의 이 부분에 지불하는 화폐는 자본가들의 제1부분이 고정자본요소를 구매하기 위하여 투하한 그 화폐인것이다. Ⅱ의 자본가들의 한 부분은 다시 자기의 고정자본가치를 갱신된 현물형태로 소유하는데 다른 부분의 자본가들은 앞으로 자기의 고정자본을 현물로 보상하기 위하여 또 그 가치를 화폐형태로 적립하는 일에 전념한다.

지금까지의 제 교환이 수행된뒤에 우리의 출발점으로 되여야 할 상태는 쌍방에 교환되여야 할 상품의 나머지, 즉 Ⅰ에서는 400m이고 Ⅱ에서는 400c이다.(52) 이 800이라는 액수의 상품의 교환을 위하여 Ⅱ가 400을 화폐로 선대한다고 가정하자. 400의 절반(=200)은 어떠한 사정하에서도 Ⅱc중 마멸가치로서 200을 화폐로 적립하였으며 이제는 이 화폐를 또 자기의 고정자본의 현물형태로 재전화하여야 할 부분에 의하여 지출될수밖에 없다.

불변자본가치, 가변자본가치, 잉여가치—상품자본의 가치는 Ⅱ에서나 Ⅰ에서나 다 이 세가지로 나뉘여진다. —를 Ⅱ 또는 Ⅰ의 상품자체의 특수한 비례적부분들로 표시할수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불변자본가치 자체내에서도 또한 고정자본의 현물형태로 아직 전환되지 않고 당분간은 화폐형태로 점차 적립되여야 할 가치부분도 역시 그와 같이 표시할수 있다. 일정한 량의 Ⅱ의 상품(따라서 우리의 례에서는 나머지 절반=200)은 이 경우에는 아직 이 마멸가치의 담당자에 불과하며 이 가치는 교환에 의하여 화폐로 침전되지 않으면 안된다(Ⅱ의 자본가중 고정자본을 현물로 갱신하는 제1부분 자본가들은—여기에는 다만 나머지만 나타나고있는—상품량의 마멸부분으로써 고정자본의 마멸가치의 일부분을 이미 이와 같이 실현하였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 자본가부분에 있어서는 200의 화폐가 앞으로 실현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 이 나머지의 교환에서 Ⅱ가 류통에 투입하는 400파운드의 나머지 절반(=200)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Ⅰ로부터 불변자본의 류동적구성부분을 구매한다. 이 200파운드

---

(52) 이 수자들은 또 이상에서 가정한것들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래도 여기에서의 문제는 다만 비률뿐이므로 이 불일치는 아무래도 좋다. —F. 엥겔스

의 일부분은 Ⅱ의 자본가들의 두 부분에 의하여 류통에 투입될수도 있고 고정적가치구성부분을 현물로 갱신하지 않는 자본가부분에 의하여서만 투입될수도 있다.

따라서 이 400파운드로써 Ⅰ로부터 끌어내는것은 1) 고정자본의 제 요소로써만 구성되는 200파운드의 상품과 2) Ⅱ의 불변자본의 류동적부분의 현물적요소만을 보상하는 가치 200파운드의 상품이다. 그러면 Ⅰ은 자기의 년간상품생산물을 그것이 Ⅱ에게 판매되여야 하는것인 한 전부 판매하였다. 그런데 그 $\frac{1}{5}$의 가치 400파운드는 이제는 화폐형태로 Ⅰ의 수중에 있다. 그러나 이 화폐는 잉여가치가 화폐화된것이며 이것은 수입으로서 소비수단에 지출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Ⅰ은 이 400으로써 Ⅱ의 상품가치=400의 전액을 구매한다. 이리하여 이 화폐는 Ⅱ의 상품을 끌어내는데 의하여 Ⅱ에게로 환류한다.

이제 세 경우를 가정하자. Ⅱ부류의 자본가들중 고정자본을 현물로 보상하는 부분을 《제1부분》이라고 부르고 고정자본의 마멸가치를 화폐형태로 적립하는 부분을 《제2부분》이라고 부르자. 세 경우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a) Ⅱ의 상품으로서 아직 남아있는 400중의 어떤 분량이 제1부분과 제2부분을 위하여(례컨대 $\frac{1}{2}$씩) 불변자본의 류동적부분의 일정한 분량을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 (b) 제1부분이 이미 그 상품전부를 판매하였고 따라서 제2부분이 아직 400을 판매하여야 하는 경우, (c) 제2부분이 마멸가치를 담당하는 200외에는 상품을 전부 판매한 경우.

그때에는 다음과 같은 분배가 나온다.

(a) 아직 Ⅱ의 수중에 있는 상품가치=400c중 제1부분은 100을, 제2부분은 300을 소유한다. 이 300중 200은 마멸분을 표시한다. 이 경우에 치금 Ⅰ이 Ⅱ의 상품을 끌어내기 위하여 반환하는 400파운드의 화폐에서 제1부분이 최초에 투하한 것은 300이다. 즉 200은 고정자본요소의 현물을 Ⅰ에게서 구매하였을 때에 투하한 화폐이며 100은 Ⅰ과의 상품교환의 매개를 위하여 투하한 화폐이다. 그런데 제2부분은 역시 Ⅰ과의 상품교환의 매개를 위하여 400중 $\frac{1}{4}$만을, 즉 100만을 선대하였다.

요컨대 400의 화폐중 제1부분은 300을, 제2부분은 100을 선대하였다.

그런데 이 400은 다음과 같이 환류한다.

제1부분에는 100이 환류한다. 즉 제1부분이 선대한 화폐의 $\frac{1}{3}$만이 환류한다. 그러나 제1부분은 나머지 $\frac{2}{3}$ 대신에 200의 가치가 있는 갱신된 고정자본을 가지고있다. 이 200의 가치가 있는 고정자본요소를 구매하기 위하여 제1부분은 Ⅰ부류에 화폐를 주었으나 그후에 상품을 주지는 않았다. 이 200에 관하여는 제1부분은 Ⅰ에 대하여 구매자로써만 나타나고 그후 다시 판매자로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화폐가 제1부분에 환류할수 없다. 만일 환류한다고 하면 제1부분은 Ⅰ로부터 고정자본요소들을 그저 증여받은셈이 될 것이다. —제1부분은 자기가 선대한 화폐의 최후의 $\frac{1}{3}$에 관하여서는 우선 자기의 불변자본의 류동적구성부분의 구매자로서 나타난다. 그 같은 화폐로써 Ⅰ은 제1부분으로부터 100의 가치가 있는 나머지 상품을 구매한다. 이리하여 이 화폐

는 Ⅱ부류의 제1부분에 환류한다. 왜냐 하면 제1부분은 우선 상품의 구매자로서 나타난후에 즉시 판매자로서 나타나기때문이다. 만일 이 화폐가 환류하지 않는다면 Ⅱ(Ⅰ의 제1부분)는 100이라는 액의 상품을 얻기 위하여 Ⅰ에 우선 화폐로 100을 주고 다음에 또 상품으로 100을 더 주는셈으로 될것이며 따라서 자기의 상품을 Ⅰ에 그저 증여한것으로 될것이다.

이와 반대로 화폐로 100을 투하한 제2부분에는 300이 화폐로 환류한다. 그중 100이 환류하는것은 제2부분이 우선 구매자로서 100의 화폐를 류통에 투입하고 그런 다음에 판매자로서 그것을 회수하였기때문이며 200이 환류하는것은 제2부분이 200의 가치액의 상품의 판매자로서 기능할뿐 구매자로서는 기능하지 않기때문이다. 따라서 이 화폐는 Ⅰ에는 환류할수 없다. 이리하여 고정자본의 마멸분은 Ⅱ(그 제1부분)가 고정자본요소를 구매할 때 류통에 투입한 화폐에 의하여 보상되고 있다. 그러나 그 화폐는 제1부분의 화폐로서가 아니라 Ⅰ부류에 속하는 화폐로서 제2부분의 수중으로 들어간다.

(b) 이 전제하에서는 Ⅱc의 나머지는 제1부분이 화폐로 200을 소유하고 제2부분이 상품으로 400을 소유하도록 분배된다.

제1부분은 자기의 상품을 전부 판매하였으나 화폐로서의 200은 자기의 불변자본의 고정적구성부분의 전화된 형태로 있으며 이 구성부분을 제1부분은 현물로 갱신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제1부분은 이 경우에는 다만 구매자로서만 나타나며 자기의 화폐대신에 동일한 가치액의 고정자본의 현물적요소로서의 Ⅰ부류의 상품을 받는다. 제2부분은 최대한으로(Ⅰ과 Ⅱ사이의 상품교환을 위하여 Ⅰ이 화폐를 선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만 200파운드만 류통에 투입하면 된다. 왜

냐 하면 제2부분은 자기의 상품가치의 절반에 대해서는 다만 Ⅰ에 대한 판매자일따름이고 Ⅰ로부터의 구매자는 아니기때문이다.

제2부분에는 류통으로부터 400파운드가 돌아간다. 그중 200이 돌아가는것은 제2부분이 구매자로서 그것을 선대하였고 200의 상품의 판매자로서 그것을 회수하기때문이며 나머지 200이 돌아가는것은 200의 가치가 있는 상품을 Ⅰ에 판매할뿐이고 그대신 상품등가를 다시 Ⅰ로부터 끌어내지 않기때문이다.

(c) 제1부분은 화폐로 200, 상품으로 200c를 가지고있으며 제2부분은 상품으로 200c(d)를 가지고있다.

이 전제하에서는 제2부분을 조금도 화폐로 선대할 필요가 없다. 왜냐 하면 제2부분은 Ⅰ에 대하여 결코 더는 구매자로서 기능하는것이 아니고 다만 판매자로서 기능할따름이며 따라서 Ⅰ이 구매하러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때문이다.

제1부분은 400파운드를 화폐로 선대한다. 그중 200은 Ⅰ과의 호상 상품교환을 위하여, 200은 Ⅰ로부터의 단순한 구매자로서. 이 나중의 200파운드의 화폐로써 제1부분은 고정자본요소를 구매한다.

Ⅰ은 제1부분으로부터 200파운드의 화폐로 200의 상품을 구매하며 그리하여 제1부분에는 이 상품교환을 위하여 자기가 선대한 200파운드의 화폐가 환류한다. 또 Ⅰ은 다른 200파운드—역시 제1부분으로부터 받은것—로써 제2부분으로부터 200의 상품을 구매하며 그리하여 제2부분에는 그의 고정자본마멸분이 화폐로 침전한다.

이 (c)의 경우에는 Ⅱ부류(제1부분) 대신에 Ⅰ부류가 200의 화폐를 현존상품의 교환을 위하여 선대한다고 전제하

더라도 사태는 결코 변경되지 않을것이다. 그 경우에 Ⅰ이 먼저 200의 상품을 Ⅱ의 제2부분으로부터 구매한다면—전제에 의하면 제2부분이 앞으로 판매하여야 할 상품의 나머지는 이것뿐이지만—이 200파운드는 Ⅰ에 돌아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Ⅱ의 제2부분은 다시는 구매자로서 나타나지 않기때문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 Ⅱ의 제1부분은 구매를 위한 화폐로서 200파운드와 교환하여야 할 상품으로서 200을 가지고있으며 따라서 전체로서는 400을 Ⅰ부류로부터 교환에 의하여 받아야 한다. 그 경우에 200파운드의 화폐가 Ⅱ의 제1부분으로부터 Ⅰ부류에로 돌아온다. 이 200파운드를 Ⅰ이 다시 Ⅱ의 제1부분으로부터 200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투하하여도 Ⅱ의 제1부분이 400의 상품의 나머지 절반을 Ⅰ부류로부터 구매하면 이 200파운드는 또 Ⅰ로 돌아온다. 제1부분(Ⅱ)은 고정자본의 요소들의 단순한 구매자로서 200파운드의 화폐를 투하하였다. 그러므로 이 200파운드는 제1부분으로 돌아오지 않고 Ⅱ의 제2부분의 나머지 상품 200c를 화폐화하는데 복무하며 한편 Ⅰ에는 상품교환을 위하여 투하된 화폐 200파운드가 Ⅱ의 제2부분을 경유하여서가 아니라 Ⅱ의 제1부분을 경유하여 환류한것이다. Ⅰ의 상품 400 대신에 400의 상품등가가 돌아갔다. 800의 상품의 교환을 위하여 Ⅰ이 선대한 200파운드의 화폐도 역시 Ⅰ에 돌아갔다. 그리하여 만사가 훌륭하게 처리되였다.

Ⅰ. $\underbrace{1,000v+1,000m}$

Ⅱ. 2000c

라는 교환에 있어서 발생한 곤난은 다음과 같은 잔액의 교환

에 있어서의 곤난에 귀착한다.

Ⅰ. ……400m

Ⅱ. (1)200화폐+200c상품+(2)200c상품, 또는 사태를 보다 똑똑히 표시하면

Ⅰ. 200m+200m

Ⅱ. (1)200화폐+200c상품+(2)200c상품.

Ⅱ의 제1부분에서는 상품 200c가 200Ⅰm(상품)와 교환되고 또 이 Ⅰ과 Ⅱ사이에서의 400의 상품의 교환에서 류통하는 모든 화폐는 그것을 선대한 Ⅰ이나 Ⅱ에 환류하기때문에 Ⅰ과 Ⅱ부류사이의 교환의 요소로서의 이 화폐는 사실상 우리가 여기에서 취급하고있는 문제의 요소는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200Ⅰm(상품) 대 200Ⅱc(Ⅱ의 제1부분의 상품)의 교환에서 화폐는 지불수단으로서 기능하고 구매수단으로서는, 따라서 또 가장 협소한 의미에서의 《류통수단》으로서는 기능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그 경우에 명확한것은 상품 200Ⅰm과 200Ⅱc(제1부분)는 가치액이 같으므로 200의 가치가 있는 생산수단이 200의 가치가 있는 소비수단과 교환된다는것이며 이 경우에 화폐는 오직 관념적으로만 기능할뿐이며 그 어느측에서도 차액결제를 위하여 화폐가 현실적으로 류통에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Ⅰ과 Ⅱ의 쌍방으로부터 상품 200Ⅰm과 그 등가인 상품 200Ⅱc(제1부분)를 지워버리면 문제는 순수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서로 상쇄되는 동등한 가치의 Ⅰ부류와 Ⅱ부류의 상품액을 지워버린후에는 교환하여야 할 잔액이 남는데 여기서 문제가 순수한 형태로 나타나는것이다. 즉

Ⅰ. 200m상품.

Ⅱ. (1)200c화폐+(2)200c상품.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것이 명백해진다. Ⅱ부류의 제1부분은 200의 화폐로써 자기의 고정자본의 구성부분 200Ⅰm을 구매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Ⅱ부류의 제1부분의 고정자본은 현물로 갱신되며 가치가 200인 Ⅰ부류의 잉여가치는 상품형태(생산수단, 그것도 고정자본의 요소)로부터 화폐형태로 전화된다. 이 화폐로써 Ⅰ부류는 Ⅱ부류의 제2부분으로부터 소비수단을 구매한다. 그리하여 Ⅱ부류에 있어서의 그 결과는 제1부분에서는 그 불변자본의 고정적구성부분이 현물로 갱신되여있고 제2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한 구성부분(고정자본의 마멸분을 보상하는)은 화폐로 침전되여있다. 그리하여 이 침전은 이 구성부분도 현물로 갱신될 때까지 해마다 계속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분명히 다음과 같은것이 전제조건으로 된다. 그것은 즉 Ⅱ부류의 불변자본중 그 가치로 보아 전부가 화폐로 재전화하고 따라서 매년 현물로 갱신되여야 할 일방의 고정적구성부분(제1부분)은 Ⅱ부류의 불변자본중 아직 원래의 현물형태대로 기능을 계속하고 그 마멸분—즉 생산되는 상품으로 이전되는 가치상실분—이 우선 화폐로 보상되여야 할 타방의 고정적구성부분의 매년의 마멸분과 같다는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균형은 불변의 규모에서의 재생산의 법칙으로서 나타날것이다. 이것은 바꾸어말하면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Ⅰ부류에서는 그것이 한편으로는 Ⅱ부류의 불변자본의 류동적구성부분을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고정적구성부분을 제공하는 한 Ⅰ부류에서의 로동의 비례적 분할은 불변한채로 그냥 유지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더 상세히 연구하기전에 우선 Ⅱc(1)의 잔액이 Ⅱc(2)의 잔액과 같지 않으면 사태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것

올 고찰하여야 한다. 전자가 후자보다 클수도 있고 작을수도 있다. 이 두 경우를 순차로 고찰하자.

첫째 경우

Ⅰ. 200m

Ⅱ. (1)200c(화폐)+(2)200c(상품).

이 경우에 Ⅱc(1)는 200파운드의 화폐로 상품 200Ⅰm을 구매하며 Ⅰ은 그 동일한 화폐로 상품 200Ⅱc(2), 즉 화폐로 침전되여야 할 고정자본의 구성부분을 구매한다. 따라서 이 구성부분은 화폐화된다. 그러나 화폐로서의 20Ⅱc(1)는 고정자본의 현물로 재전화할수 없게 되였다.

이 폐단은 우리가 Ⅰm의 나머지가 200이 아니라 220이라고 하고 따라서 2,000Ⅰ중 1,800이 아니라 1,780만이 이전의 교환에 의하여 처리되였다는데 의하여 제거할수 있는듯이 보인다. 그리하여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된다.

Ⅰ. 220m.

Ⅱ. (1)220c(화폐)+(2)200c(상품).

Ⅱc(제1부분)는 220파운드의 화폐로 220Ⅰm을 구매하며 그다음에 Ⅰ은 200파운드로써 상품으로서의 200Ⅱc(2)를 구매한다. 그러나 그 경우에 Ⅰ측에 화폐로서의 20파운드가 남아있다. 그것은 잉여가치의 일부분이며 Ⅰ은 그것을 화폐로서 보존할수 있을뿐이고 소비수단으로 지출할수는 없다. 그리하여 다만 곤난이 Ⅱc(1)로부터 Ⅰm으로 옮겨졌을따름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Ⅱc(1)이 Ⅱc(2)보다 작은 경우를 가정하여보자.

둘째 경우

Ⅰ. 200m(상품).

Ⅱ. (1)180c(화폐)+(2)200c(상품).

Ⅱ(제1부분)는 180파운드의 화폐로 상품 180Ⅰm을 구매한다. Ⅰ은 이 화폐로 Ⅱ(제2부분)로부터 같은 가치액의 상품, 즉 180Ⅱc(2)를 구매한다. 일방에는 20Ⅰm이 팔리지 않고 남으며 타방에도 20Ⅱc(2)가 팔리지 않고 남는다. 40의 가치의 상품이 화폐로 전화될수 없게 된다.

Ⅰ의 잔액을 180이라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것이다. 그렇게 하면 Ⅰ에는 아무런 잔액이 남지 않을것이지만 Ⅱc(2)에는 20이라는 나머지가 역시 팔리지 않고 남아서 화폐로 전화될수 없을것이다.

첫째 경우, 즉 Ⅱc(1)이 Ⅱc(2)보다 큰 경우에는 Ⅱc(1)측에 고정자본으로 재전화될수 없는 화폐잔액이 남는다. 또는 Ⅰm의 잔액이 Ⅱc(1)과 같다고 가정하면 Ⅰm측에 소비수단으로 전화될수 없는 동일한 액수의 화폐잔액이 남는다.

둘째 경우, 즉 Ⅱc(1)이 Ⅱc(2)보다 작은 경우에는 200Ⅰm과 Ⅱc(2) 량측에 화폐부족이 생기며 량측에 다 같은 량의 상품과잉이 생긴다. 또는 Ⅰm의 잔액이 Ⅱc(1)과 같다고 하면 Ⅱc(2)측에 화폐부족과 상품과잉이 생긴다.

Ⅰm의 나머지가 언제나 Ⅱc(1)과 같다고 하면—주문이 생산을 결정하므로, 또 Ⅰ부류가 금년에는 Ⅱ[①]의 불변자본중 고정자본구성부분을 보다 많이 생산하고 명년에는 류동자본

① 제1판과 제2판에는 《Ⅱ와 Ⅰ의》로 되여있다. 엥겔스의 교정지에 의하여 정정하였다. —편집자

구성부분을 보다 많이 생산하더라도 재생산에는 변화가 없으므로—첫째 경우에는 Ⅰm이 소비수단으로 재전화될수 있는것은 Ⅰ이 Ⅰm으로써 Ⅱ의 잉여가치의 일부분을 구매하는 경우뿐일것이며 따라서 Ⅱ은 이 부분의 잉여가치를 소비하지 않고 화폐형태로 그것을 적립하는 경우뿐일것이다. 또 둘째 경우에 문제가 해결되는것은 Ⅰ차신이 화폐를 지출하는 경우뿐이지만 그러나 이 가설은 우리가 이미 배척한것이다.

만일 Ⅱc(1)이 Ⅱc(2)보다 크다면 Ⅰm의 화폐잔액을 실현하기 위하여 외국상품의 수입이 필요하다. 만일 Ⅱc(1)이 Ⅱc(2)보다 작다면 반대로 Ⅱc의 마멸분을 생산수단에 실현하기 위하여 Ⅱ부류의 상품(소비수단)의 수출이 필요하다. 따라서 두 경우에 다 대외무역이 필요하다.

불변의 규모에서의 재생산을 고찰함에 있어서는 모든 산업부문들의 생산성, 따라서 또 각 부문들의 상품생산물의 비례적가치관계가 불변이라고 가정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방금 우에서 말한 두 경우, 즉 Ⅱc(1)이 Ⅱc(2)보다 크든가 또는 작은 경우는 그러한 경우들이 무조건적으로 나타날수 있는 확대된 규모에서의 생산에 있어서 언제나 흥미가 있을것이다.

C. 결 론

고정자본의 보상에 관하여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만일—기타의 모든 조건들, 즉 생산의 규모뿐만아니라 특히 로동의 생산성도 불변이라고 전제하고—Ⅱc의 고정적요소중 지난해보다 더 큰 부분이 사멸한다면, 따라서 또 지난해보다 더 큰 부분이 현물로 갱신되여야 한다면 고정자본중

아직 사멸도중에 있으며 사멸의 순간까지는 잠시 화폐로 보상되여야 할 부분은 동일한 비률로 감소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 하면 전제에 의하면 Ⅱ부류에서 기능하는 고정자본부분의 총액(그 가치총액도)은 변하지 않기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초래한다. **첫째로**, Ⅰ부류의 상품자본의 보다 큰 부분이 Ⅱc의 고정자본의 요소들로써 구성된다면 그의 상응하는 보다 작은 부분은 Ⅱc의 류동적구성부분으로써 구성된다. 왜냐 하면 Ⅱc를 위한 Ⅰ부류의 총생산액은 변하지 않기때문이다. 그의 한 부분이 증대하면 다른 부분은 감소되며 반대의 경우에는 반대로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Ⅱ부류의 총생산액도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Ⅱ부류의 원료, 반제품, 보조재료(즉 Ⅱ부류의 불변자본의 류동적요소들)가 감소되는 경우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둘째로**, 화폐형태로 회복된 Ⅱc의 고정자본의 보다 큰 부분은 화폐형태로부터 현물형태로 재전화되기 위하여 Ⅰ부류에 흘러간다. 따라서 Ⅰ부류와 Ⅱ부류사이에서 단순한 상품교환을 위하여 류통하는 화폐이외에 보다 많은 화폐가 Ⅰ부류에 흘러간다. 이러한 화폐는 상호적상품교환을 매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만 구매수단의 기능을 가지고 나타나는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Ⅱc중 마멸분의 가치보상의 담당자인 상품량이 비례적으로 감소될것이며 따라서 Ⅰ부류의 상품과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Ⅰ부류의 화폐와 교환되여야 할 Ⅱ부류의 상품량이 비례적으로 감소될것이다. 그러므로 Ⅱ부류로부터 Ⅰ부류에로 보다 많은 화폐가 단순한 구매수단으로서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Ⅱ부류의 상품중 Ⅰ부류가 그에 대하여 단순한 구매자로서 기능하여야 할 상품이 감소될것이다. 따라서 Ⅰm의 보다 큰 부분은—Ⅰv는 이미 Ⅱ부류의 상품과 교환되

여있으므로—Ⅱ부류의 상품으로 전화될수 없을것이며 화폐형태로 머물러있을것이다.

이와 반대의 경우, 즉 1년간에 Ⅱ부류의 고정자본의 사멸하는 부분의 재생산이 보다 작고 반대로 마멸분은 보다 큰 경우에 대하여는 이 이상 더 고찰할 필요가 없다.

그리하여 불변의 규모에서의 재생산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공황—생산공황—이 발생하게 될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단순재생산에 있어서 또 제 조건이 변함없는 경우, 특히 로동의 생산력과 그 총량과 또 그 강도가 변함없는 경우에 사멸하는(갱신되여야 할) 고정자본과 원래의 현물형태로 계속 작용하는(마멸보상분만이 생산물에 가치를 첨가하는) 고정자본과의 사이에 불변의 비률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에는 재생산되여야 할 류동적구성부분의 량은 동일할것이지만 재생산되여야 할 고정적구성부분의 량은 증대될것이다. 따라서 Ⅰ부류의 총생산액은 증대되지 않으면 안될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화폐 제 관계를 도외시하더라도 재생산의 부족이 생길것이다.

또 다른 경우에는 만일 현물로 재생산되여야 할 Ⅱ부류의 고정자본의 비례적크기가 감소되고 따라서 Ⅱ부류의 고정자본중 다만 화폐로 보상되기만 하면 되는 구성부분이 동일한 비률로 증가된다면 Ⅰ부류에 의하여 재생산되는, Ⅱ부류의 불변자본의 류동적구성부분의 량은 변하지 않을것이지만 재생산되여야 할 고정적구성부분의 량은 감소될것이다. 따라서 Ⅰ부류의 총생산액이 감소되든가 혹은 과잉(먼저 경우의 부족과 같이)이, 그것도 화폐화될수 없는 과잉이 생길것이다.

물론 첫째 경우에는 동일한 로동이 그 생산성, 시간 및 강도의 증대에 의하여 보다 많은 생산물을 제공할수 있다. 그

리하여 첫째 경우의 부족은 보충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는 로동과 자본이 Ⅰ부류의 어떤 생산부문으로부터 다른 부문으로 이동함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을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이동이 있을 때마다 일시적혼란이 일어날것이다. 그리고 둘째로(로동의 시간과 강도가 증대되는 한) Ⅰ부류는 보다 많은 가치를 Ⅱ부류의 보다 적은 가치와 교환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며 따라서 Ⅰ부류의 생산물의 감가가 생길것이다.

둘째 경우에는 그와 반대이다. 이 경우에는 Ⅰ부류가 그 생산을 축소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것은 그 생산에 종사하는 로동자들과 자본가들에 대하여서는 공황을 의미한다. 혹은 또 Ⅰ부류가 과잉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그들에 대하여 공황으로 된다. 그와 같은 과잉은 그자체로서는 해로운것이 아니고 리로운것이나 자본주의적생산에 있어서는 해로운것이다.

대외무역은 두 경우에 다 도움이 될수 있다. 첫째 경우에는 화폐형태로 고착되고있는 Ⅰ부류의 상품을 소비수단으로 전화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수 있고 둘째 경우에는 상품으로 있는 과잉을 판매해버리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수 있다. 그러나 대외무역은 그것이 다만 제 요소를(가치로 보아서도) 보상하는것이 아닌 한 모순들을 보다 넓은 면으로 옮겨놓으며 그 모순들을 위하여 보다 큰 활동범위를 열어놓을따름이다.

재생산의 자본주의적형태가 일단 폐지되면 문제는 다음과 같이 귀착된다. 즉 고정자본(여기서는 소비수단의 생산에서 기능하고있는)중의 사멸하고있는, 따라서 현물로 보상되여야 할 부분의 크기는 해마다 변동한다. 만일 이 부분이 어느 해에 매우 크게 되면(인간에 있어서와 같이 평균사망률을 초과하여) 그다음 해에는 틀림없이 많이 작아질것이다. 그렇

다고 하여 소비수단의 년간생산에 필요한 원료, 반제품, 보조재료의 량은—기타의 조건들이 변함없다고 전제하면—감소되는것은 아니다. 따라서 생산수단의 총생산은 한 경우에는 증가되고 다른 경우에는 감소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오직 계속적인 상대적과잉생산에 의하여서만 구원될수 있다. 즉 한편으로는 직접 필요한것보다 많게 일정한 량의 고정자본이 생산되는데 의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년간의 직접적필요를 초과하는 원료 등등의 재고(이것은 특히 생활수단에 대하여 적용된다.)에 의하여 구원될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과잉생산은 사회가 그자체의 재생산의 대상적 수단들을 조정하는것과 같은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내부에서는 이러한 과잉생산은 하나의 무정부적요소이다.

고정자본에 관한 이 례는—재생산의 규모가 변하지 않는 경우에—적절한것이다. 고정자본과 류동자본의 생산에 있어서의 불균형은 경제학자들이 공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애용하는 론거의 하나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고정자본이 그저 **유지**될뿐인 경우에도 발생할수 있으며 또 발생하지 않을수 없다는것—이것은 그들에게는 새로운것이다. 즉 그것은 리상적인 정상적생산의 전제하에서도, 이미 기능하고있는 사회적자본의 단순한 재생산의 경우에도 발생할수 있으며 또 발생하지 않을수 없다는것이다.

---

12. 화폐재료의 재생산

지금까지는 하나의 계기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그것은

즉 금과 은의 년간재생산이다. 단순한 사치품이나 도금 등 재료로서는 다른 어떤 생산물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는것이다. 그런데 금과 은은 화폐재료로서는, 따라서 또 잠세적인 화폐로서는 중요한 역할을 논다. 여기에서 간단을 기하기 위하여 화폐재료로서 금만을 들기로 한다.

년간금생산의 총량은 비교적 낡은 재료에 의하면 80만 내지 90만폰드, 즉 약 11억 내지 12억 5,000만마르크였다. 그런데 죄트베르에 의하면(53) 1871—1875년간의 평균은 170,675 킬로그람에 불과하였으며 그 가치는 약 4억 7,600만마르크에 불과하였다. 그중 오스트랄리아는 약 1억 6,700만마르크, 미국은 1억 6,600만마르크, 로씨야는 9,300만마르크를 공급하였다. 나머지는 각이한 나라들에서 공급된것인데 그 금액은 각각 1,000만마르크 이하이다. 같은 기간의 년간은생산은 200만킬로그람보다 약간 적은데 그 가치는 3억 5,450만마르크였다. 그중 대략적인 수자로 멕시코는 1억 800만마르크, 미국은 1억 200만마르크, 남아메리카는 6,700만마르크, 독일은 2,600만마르크 등등을 공급하였다.

자본주의적생산이 우세한 나라들중 미국만이 금은생산국이다. 구라파의 자본주의나라들은 그 금의 거의 전부와 은의 매우 큰 부분을 오스트랄리아, 미국, 멕시코, 남아메리카, 로씨야로부터 얻는다.

그러나 우리는 금광산을 우리가 지금 그 년간 재생산을 분석하고있는 자본주의적생산의 나라에 옮겨보기로 한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과 같은 리유에서이다.

자본주의적생산은 대체로 대외무역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

(53) A. 죄트베르 《귀금속생산》 1879년 고타판(112페지).

다. 그러나 어떤 일정한 규모에서의 정상적인 년간재생산이 가정된다면 그와 동시에 다음과 같은것이 가정되는것으로 된다. 즉 대외무역은 다만 국내생산물을 사용형태나 현물형태가 다른 물품과 대체할따름이며 가치의 비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것, 따라서 또 생산수단과 소비수단이라는 두 부류가 서로 교환되는 가치비률에도 또 이러한 부류의 매개 생산물의 가치가 분해될수 있는 불변자본, 가변자본 및 잉여가치의 비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것이다. 따라서 1년간에 재생산되는 생산물가치를 분석할 때 대외무역을 끌어들이는것은 다만 혼란을 일으킬수 있을따름이며 문제나 그 해결의 아무런 새로운 계기도 제공하는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외무역은 전적으로 무시되여야 하며 여기에서는 금도 년간재생산의 직접적요소로서 취급되여야 할것이며 교환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요소로서 취급될것이 아니다.

금의 생산은 금속생산일반과 마찬가지로 Ⅰ부류에 속한다. 즉 생산수단의 생산을 포괄하는 부류에 속한다. 년간의 금생산을 30이라고 가정하자(편의상 이렇게 하는데 실제는 이것은 우리의 공식의 수자들에 비하여 훨씬 높이 잡은것이다.). 이 가치는 20c+5v+5m으로 분해될수 있다고 가정한다. 20c는 Ⅰc의 다른 요소들과 교환되여야 할것이다. 이것은 나중에 고찰되지만① 5v+5m(Ⅰ)은 Ⅱc의 요소들, 즉 소비수단과 교환되여야 할것이다.

5v에 관하여 말한다면 어느 금생산기업이나 우선 로동력을 구매하는것으로써 일을 시작한다. 자기로 생산한 금을 가지고 하는것이 아니라 국내에 저장되여있는 화폐의 일부분을

① 본권 531페지 주 (55)를 보라. —편집자

가지고 그것을 한다. 로동자는 이 5v로 Ⅱ로부터 소비수단을 구매하고 Ⅱ는 또 이 화폐로써 Ⅰ로부터 생산수단을 구매한다. 가령 Ⅱ가 Ⅰ로부터 2만큼의 금을 상품재료 등등(Ⅱ의 불변자본의 구성부분)으로서 구매한다면 2v는 이미 그전부터 류통에 들어가있었던 화폐로서 Ⅰ의 금생산자에게로 돌아온다. 만약 Ⅱ가 그밖에는 Ⅰ로부터 재료를 구매하지 않는다면 Ⅰ은 자기의 금을 화폐로써 류통에 투입하는데 의하여 Ⅱ로부터 구매한다. 그것은 금은 어떤 상품이나 다 구매할수 있기때문이다. 다른 점이라면 다만 이 경우에는 Ⅰ이 판매자로서가 아니라 구매자로서만 나타난다는것뿐이다. Ⅰ의 채금업자는 자기들의 상품을 언제나 판매할수 있으며 그들의 상품은 언제나 직접 교환될수 있는 형태로 있다.

어떤 방적업자가 5v를 자기의 로동자들에게 지불하고 그대신 로동자들은—잉여가치는 제외하고—방사를 생산물=5로서 그에게 제공한다고 가정하자. 로동자들은 이 5로 Ⅱc로부터 구매하며 Ⅱc는 화폐로서의 5로 Ⅰ로부터 방사를 구매하며 이리하여 5v가 화폐로 방적업자에게 환류한다. 이와는 반대로 여기서 가정한 경우에는 Ⅰg(금생산자를 이렇게 부르기로 하자)는 5v를 자기의 로동자들에게 이미 그전부터 류통하고있은 화폐로 선대한다. 로동자들은 이 화폐를 생활수단에 지출한다. 그러나 이 화폐는 5중 2만이 Ⅱ로부터 Ⅰg로 돌아온다. 그러나 Ⅰg는 방적업자와 마찬가지로 재생산과정을 새로 시작할수 있다. 왜냐 하면 Ⅰg의 로동자들은 금으로 5를 Ⅰg에 제공하였으며 Ⅰg는 그중 2를 팔고 3을 금으로 가지고있으며 따라서 다만 그것을 주화(54)로 만들든가 은행권으로 바꾸기만 하면 직접, 즉 그 이상으로 Ⅱ의 매개에 의존함이 없이 Ⅰg의 전체 가변자

본이 다시 화폐형태로 Ⅰg의 수중에 있게 되기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이 년간재생산의 최초의 과정에서도 현실적으로 또는 잠세적으로 류통에 속하는 화폐량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우리가 가정한바에 의하면 Ⅱc는 2v(Ⅰg)를 재료로서 구매하였으며 3은 Ⅰg에 의하여 역시 가변자본의 화폐형태로서 Ⅱ의 내부에 투하되고있다. 따라서 새로운 금생산①에 의하여 제공된 화폐량중 3은 Ⅱ의 내부에 머물러 있고 Ⅰ에로 환류하지 않는다. 전제에 의하면 Ⅱ는 금재료에 대한 자체의 수요를 이미 충족시켰다. 3은 축장금으로서 Ⅱ의 수중에 남아있다. 이 3은 Ⅱ의 불변자본의 요소로 될수 없으므로 또 Ⅱ는 이미 이전부터 로동력을 구매하기 위한 충분한 화폐자본을 가지고있었으므로 그리고 또 마멸요소를 제외하면 Ⅱc의 일부분과 교환된 이 추가적 3g는 Ⅱc의 내부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없고(그것은 Ⅱc(1)이 Ⅱc(2)보다 작은 우연적인 경우에 그만큼 마멸요소를 보충하는데 복무할수 있을따름일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바로 마멸요소만을 제외하고 Ⅱc의 전체 상품생산물이 Ⅰ(v+m)의 생산수단과 교환되지 않으면 안되므로—그렇기때문에 이 화폐는 전부 Ⅱc로부터 Ⅱm으로—지금 이 Ⅱm이 필요생활수단으로서 존재하든가 사치품으로 존재하든가에 관계없이—이전되지 않으면 안되며 그대신 그에 상응하는 상품가치가 Ⅱm으로부터 Ⅱc로 이전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 결과는 잉여가치의 일부

(54) 《상당한 량의 자연금(금덩이)이… 채금업자에 의하여 직접 샌 프런씨스코우의 조폐소에 운송된다.》—《주재국들의 상공업에 관한 영국 대사관 및 공사관 서기관들의 보고서》 1879년판, 제3부, 337페지.

① 제1판과 제2판에는 화폐생산이라고 되여있는데 엥겔스의 교정에 따라 고쳤다.—편집자

분이 축장화폐로서 적립된다.

재생산의 제2년도에도 1년간에 생산된 금중에서 동일한 비률이 계속 재료로서 리용된다면 다시 2는 Ⅰg에로 환류할 것이며 3은 현물로 보상될것이다. 즉 3은 다시 Ⅱ내부에서 축장화폐로서 유리될것이다, 등등.

가변자본 일반에 관하여 말한다면 Ⅰg의 자본가는 다른 어떤 자본가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것처럼 이 자본을 부단히 화폐로 로동의 구매에 선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v에 관하여 말한다면 Ⅱ로부터 구매하여야 하는것은 Ⅰg의 자본가가 아니라 그의 로동자들이다. 따라서 그가 구매자로서 나타나는 경우, 즉 Ⅱ가 주동적으로 Ⅱ에 금을 투입하는 경우는 결코 생길수 없다. 그러나 Ⅱ가 그로부터 재료를 구매하여 자기의 불변자본 Ⅱc를 금재료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되는 한 (Ⅰg)v의 일부분은 그것이 Ⅰ의 다른 자본가들에게로 환류하는것과 같은 방식으로 Ⅱ로부터 Ⅰg에게로 환류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는 자기의 v를 직접 자기의 생산물에서 금으로 보상한다. 그러나 화폐로 선대된 v가 Ⅱ로부터 그에게로 환류하지 않는것과 같은 비률로 Ⅱ에서는 기존의 류통화폐의 일부분(Ⅰ로부터 Ⅱ에게로 흘러가서 Ⅰ에로 돌아가지 않는 화폐)이 축장화폐로 전화되며 그만큼 Ⅱ의 잉여가치의 일부분은 소비수단으로 지출되지 않는다. 부단히 새로운 금광들이 개발되든가 낡은 금광이 재개발되므로 Ⅰg가 v에 투하하는 화폐의 일정한 부분은 언제나 새로운 금생산이전부터 존재하고있으며 Ⅰg에 의하여 그 로동자들을 통하여 Ⅱ에 투입되는 화폐량의 일부분을 이루고있으며 또 이 화폐량이 Ⅱ로부터 Ⅰg에로 돌아가지 않는 한 그것은 Ⅱ에서 화폐축장의 요소로 되는것이다.

그런데 (Ⅰg)m에 관하여 말한다면 Ⅰg는 이 경우에 언제나 구매자로서 나타날수 있다. Ⅰg는 자체의 m을 금으로서 류통에 투입하며 그 대신에 Ⅱc의 소비수단을 끌어낸다. Ⅱ에서 이 금은 일부분은 재료로서 소비되며 따라서 생산자본의 불변적구성부분 C의 현실적요소들로서 기능한다.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금은 Ⅱm중의 화폐로 머물러있는 부분으로서 화폐축장의 요소로 된다. 이로부터 알수 있는것은—나중에 고찰되는 Ⅰc는 도외시하고(55)—단순재생산의 경우에도 거기서는 용어의 고유한 의미에서의 축적, 즉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은 제외되여있는데도 불구하고 화폐의 적립 또는 화폐축장이 필연적으로 포함되여있다는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매년 새로 반복되므로 자본주의적생산을 고찰할 때 출발점으로 되는 전제, 즉 재생산이 시작될때 상품교환에 상응하는 분량의 화폐수단이 Ⅰ과 Ⅱ의 자본가계급의 수중에 있다는 전제는 이것으로써 설명된다. 이러한 적립은 류통화폐의 마멸로 말미암아 상실되는 금을 공제한후에도 발생된다.

두말할것도 없지만 자본주의적생산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모든 면에서 적립되는 화폐총량은 점점 더 커지며 따라서 매년의 새로운 금생산이 이 화폐량에 첨가하는 비률은 점점 작아진다. 이 첨가분은 그 절대량으로 보면 큰것일수 있지만 그 비률은 작아진다. 이제 다시 한번만 더 투크에 대한 반론①을 돌이켜 보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결국은 자본가계급자신이 일반적으로 화폐를 류통에 투입하는

(55) Ⅰ부류의 불변자본내부에서의 새로 생산된 금의 교환에 관한 연구는 원고에 없다. —F. 엥겔스

① 본권 364~365페지를 보라. —편집자

원천이라고 보지 않을수 없다면 매개 자본가나 년간생산물로부터 잉여가치를 화폐로 끌어낸다는것, 즉 그가 류통에 투입하는것보다 많은 화폐를 류통으로부터 끌어낸다는것은 어떻게 가능한가고.

우리는 이에 대하여는 이미 이전에 서술한것(제17장)을 개괄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하자.

1) 여기서 필요한 단 하나의 전제, 즉 일반적으로 년간 재생산량의 각이한 요소를 교환하기 위하여 충분한 화폐가 현존한다는 전제는 상품가치의 일부분이 잉여가치로써 구성된다는것에 의하여서는 결코 좌우지되지 않는다. 가령 전체 생산이 로동자들자신의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잉여로동이 자본가들을 위한 잉여로동이 아니라 오직 그들자신을 위한 잉여로동이라고 하더라도 류통하는 상품가치의 량은 동일할것이며 또 기타의 사정들이 변함없다면 류통을 위하여서는 동일한 화폐량이 필요할것이다. 따라서 두 경우에 다 문제로 되는것은 다만 이 총상품가치를 교환하기 위한 화폐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것일뿐이다. 그리고 잉여가치의 화폐화를 위한 화폐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것은 결코 아니다.

여하튼 다시한번 되풀이하여 말하면 매개 상품은 c+v+m으로 구성되며 따라서 총상품량의 류통을 위하여서는 한편으로는 자본 c+v의 류통을 위한 일정한 화폐액이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가의 수입, 즉 잉여가치 m의 류통을 위하여 다른 어떤 화폐액이 필요하다. 개별적자본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본가계급전체에 있어서도 자본을 선대하는 경우의 화폐는 수입을 지출하는 경우의 화폐와 다르다. 이 후자의 화폐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오직 자본가계급의 수중에 있는 화폐량의 일부분, 따라서 대체로 말하면 사회내부에

있는 총화폐량의 일부분이 자본가의 수입을 류통시킨다는것이다. 이미 우에서도 본바와 같이 새로운 기업을 시작하는 자본가는 누구나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비수단에 지출한 화폐를 기업이 일단 궤도에 오르면 자기의 잉여가치의 화폐화를 위하여 복무하는 화폐로서 다시 낚아들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전체 곤난은 두 원천에서 나온다.

첫째로, 우리가 다만 자본의 류통이나 회전만을 고찰한다면, 따라서 또 자본가를 자본의 인격화로서—자본주의적소비자나 향락자로서가 아니라—고찰한다면 우리는 물론 그가 잉여가치를 자기의 상품자본의 구성부분으로서 류통에 부단히 투입하는것을 볼수 있지만 그러나 화폐를 그의 수중에 있는 수입의 형태로서는 결코 볼수 없다. 우리는 그가 잉여가치의 소비를 위하여 화폐를 류통에 투입하는것은 결코 볼수 없다.

둘째로, 자본가계급이 일정한 화폐액을 수입의 형태로 류통에 투입한다면 마치도 자본가계급이 년간총생산물의 이 부분에 대한 등가를 지불하는것처럼 보이며 따라서 이 부분은 잉여가치를 표시하지 않게 되는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잉여가치를 나타내는 잉여생산물은 자본가계급에게 있어서 아무런 비용도 부담시키지 않는것이다. 자본가계급은 계급으로서 그것을 무상으로 소유하고 향락하는것이며 화폐류통은 이것을 조금도 변경시킬수 없다. 화폐류통에 의하여 매개되는 변화는 다만 매개 자본가가 자기의 잉여생산물을 현물로 소비한다는 거의 있을수 없는 일 대신에 자기가 취득한 잉여가치액만큼 온갖 종류의 상품을 년간사회적잉여생산물의 총량중에서 끌어내여 자기의것으로 한다는 거기에 있다. 그러나 류통의 기구가 보여준바와 같이 자본가계급은 수입을 지출하

기 위하여 화폐를 류통에 투입하더라도 그 화폐를 다시 또 류통으로부터 끌어내며 이리하여 동일한 과정을 끊임없이 새로 시작할수 있으며 따라서 자본가계급으로서 보면 여전히 이 잉여가치의 화폐화를 위하여 필요한 화폐액을 가지고있는 것이다. 따라서 잉여가치가 상품의 형태로 자본가에 의하여 자기의 소비기금으로서 상품시장으로부터 끌어낼뿐만아니라 동시에 그가 이러한 상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하는 화폐도 그의 수중에로 환류한다면 분명히 그는 그러한 상품을 등가없이 류통으로부터 끌어낸것으로 된다. 그는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화폐를 지불하지만 이러한 상품은 그에게 아무런 비용도 부담시키지 않는것이다. 내가 1파운드로 상품을 구매하고 다음에 그 상품의 판매자가 그 1파운드를 나에게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는 잉여생산물에 대한 대가로 나에게 도로 준다면 분명히 나는 그 상품을 그저 무상으로 얻은것으로 된다. 이러한 교환이 부단히 반복된다 하더라도 내가 부단히 상품을 끌어내면서도 부단히 그 1파운드를 소유한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으며 비록 내가 상품을 획득하기 위하여 그 1파운드를 잠시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 사실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는것이다. 자본가는 자기에게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는 잉여가치의 화폐로서 이 화폐를 부단히 회수한다.

우리가 본바와 같이 A. 스미스에게 있어서는 사회적총생산물가치가 수입 v+m으로 분해되며 따라서 불변자본가치는 령으로 되여있다. 그리하여 필연적으로 년간수입의 류통을 위하여 필요한 화폐는 년간총생산물의 류통을 위하여서도 충분하다는것으로 되며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는 3,000이라는 가치가 있는 소비수단의 류통을 위하여 필요한 화폐가 9,000이라는 가치가 있는 년간총생산물의 류통을 위하여서도 충분

하다는것으로 된다. 이것이 사실상 A. 스미스의 견해이며 이 견해가 또 T. 투크에 의하여 반복된다. 수입의 화폐화를 위하여 필요한 화폐량과 사회적총생산물을 류통시키는데 필요한 화폐량의 관계에 관한 이 그릇된 견해는 년간총생산물의 각이한 소재적요소와 가치적요소가 재생산되며 해마다 보상되는 방식이 리해되지 않고 사고력없이 표상된 필연적결과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이미 론박되였다.

스미스와 투크자신이 말하는것을 들어보기로 하자.

스미스는 제2편 제2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매개 나라의 류통은 두 부분으로 나뉘여질수 있다. 상인들 호상간의 류통 및 상인들과 소비자들간의 류통으로 나뉘여진다. 지페이든 금속화페이든간에 동일한 화페가 때로는 일방의 류통에, 때로는 다른 일방의 류통에 사용될수 있다 하더라도 이 두 류통은 동시에 계속 병행되는것이며 그에 따라 두 류통은 각기 자기의 진행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러저러한 종류의 화페의 일정한 량이 필요하다. 각이한 상인들간에서 류통되는 상품의 가치는 결코 상인들과 소비자들간에서 류통되는 상품의 가치를 초과할수 없다. 왜냐 하면 상인들이 무엇을 구매하던 결국 그것은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이다. 상인들간에서의 류통은 도매로 진행되기때문에 일반적으로 매개 거래는 상당한 큰 액이 필요하다. 그런데 상인들과 소비자들간에서의 류통은 대개 소매로 진행되고 또 흔히 극히 작은 액의 화페를 필요로 할따름이다. 1실링이나 반펜스로도 충분한 일이 흔히 있다. 그러나 작은 액은 큰 액보다 훨씬 빨리 류통한다…. 그러므로 소비자전체의 년간구매량은 가치에 있어서 상인전체의 구매량과 적어도 〔이《적어도》는 훌륭하다!〕 같지만 전자는 보통 훨씬 적은 화페량으로써 처리될수 있다.》 등등.

애담의 이 구절에 대하여 T. 투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통화원리의 연구》 1844년 런던판[100], 34～36페지의 이곳저곳.).

《여기에서 하고있는 구별이 사실상 옳다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상인들과 소비자들간의 교환에는 소비자들의 주요한 수입을 이루는 로임의 지불도 포함된다…상인과 상인간의 모든 거래, 즉 생산자나 수입업자들로부터 제조업 등의 중간과정의 모든 단계를 거쳐서 소매상인이나 수출상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판매는 자본이전의 운동으로 분해될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자본이전은 대다수의 거래에서는 그 이전이 진행될 때의 은행권이나 주화의 현실적양도—이것은 실질적양도이고 의제적양도가 아니다.—를 반드시 전제로 하는것은 아니며 또 실제에 있어서도 그것을 수반하지 않는다…상인들과 상인들간의 교환총액은 결국 상인과 소비자간의 거래액에 의하여 결정되며 제한될수밖에 없다.》

만일 이 마지막 구절이 단독적으로 서술된것이라면 투크는 다만 상인들 호상간의 거래와 상인들과 소비자들간의 거래사이에는, 바꾸어말하면 년간총수입의 가치와 그것을 생산하는 자본의 가치사이에는 일정한 비률이 있다는것뿐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는 A. 스미스의 견해를 명백히 승인하고있다. 그러므로 그의 류통리론의 특별한 비판은 필요하지 않다.

2) 어느 산업자본이나 다 창업시에는 그 고정적구성부분 전체를 위하여 단번에 화폐를 류통에 투입하는데 그 구성부분을 도로 끌어내는것은 수년간에 걸쳐서 매년의 생산물을 판매하면서 점차적으로 도로 끌어낼뿐이다. 따라서 처음에는 류통으로부터 끌어내는것보다 많은 화폐를 류통에 투입하는것이다. 이것은 총자본이 현물로 갱신될 때마다 반복된다. 그것은 자기의 고정자본을 현물로 갱신하여야 할 일정한 수의 기업들에 있어서 매년 반복된다. 그것은 고정자본의 보수 또는 부분적인 갱신이 있을 때마다 부분적으로 반복된다. 따

라서 한편에서는 류통에 투입하는것보다 많은 화폐를 류통으로부터 끌어낸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와 반대되는것이 진행된다.

생산기간(로동기간과 다른것으로서의)이 비교적 긴 기간에 걸치는 모든 산업부문들에서는 이 기간에 자본주의적생산자들이 혹은 사용하는 로동력에 대한 저불을 위하여, 혹은 소비되는 생산수단의 구매를 위하여 부단히 화폐를 류통에 투입한다. 그리하여 생산수단은 직접 상품시장으로부터 끌려나오며 소비수단은 부분적으로는 자기 로임을 지출하는 로동자들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부분적으로는 자기의 소비를 결코 정지하지 않는 자본가들자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상품시장으로부터 끌려나오는데 이 때 이러한 자본가들은 동시에 즉시 상품으로서의 등가를 시장에 투입하는것이 아니다. 이 기간에 그들이 류통에 투입한 화폐가 잉여가치도 포함한 상품가치의 화폐화를 위하여 복무한다. 이 계기는 발전된 자본주의적생산에서 주식회사 등에 의하여 경영되는 장기적인 기업의 경우에 대단히 중요하다. 례컨대 철도, 운하, 도크, 도시의 대건축물 등의 건설, 철선건조, 대규모의 토지배수공사 등과 같은 경우이다.

3) 다른 자본가들이—고정자본에 대한 투하는 제외하고—로동력과 류동적요소의 구매에서 류통에 투입하는것보다 많은 화폐를 류통으로부터 끌어낼 때 금과 은을 생산하는 자본가들은—원료로서 복무하는 귀금속은 제외하고—화폐만을 류통에 투입하여 상품만을 류통으로부터 끌어낸다. 마멸부분을 제외한 불변자본, 가변자본의 상당히 큰 부분,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자신의 수중에서 적립되는 축장화폐를 제외한 전체 잉여가치가 화폐로서 류통에 투입된다.

4) 확실히 한편으로는 그해에 생산된것이 아닌 여러가지 물건, 레컨대 토지, 가옥 등등과 또 생산기간이 1년이상 되는 생산물, 레컨대 가축, 목재, 포도주 등이 상품으로서 류통한다. 이러한 현상들과 기타의 현상들에 대하여 중요한것은 직접적류통에 필요한 화폐액이외에 언제나 일정한 량의 화폐가 잠재적인, 기능하지 않는 상태에 있어서 그것이 자극을 받기만 하면 기능을 시작할수 있다는것을 잊지 않는것이다. 이러한 생산물의 가치는 흔히 일부분씩 점차적으로 류통하는데 레컨대 가옥의 가치는 집세로서 수년간에 걸쳐 류통한다.

다른 한편 재생산과정의 모든 운동이 화폐류통에 의하여 매개되는것은 아니다. 총생산과정은 그 요소들이 일단 입수되기만 하면 화폐류통으로부터 배제된다. 그리고 또 생산자가 개인적으로든 생산적으로든 직접 자기 자신이 다시 소비하는 생산물은 모두 그러하며 또 농촌로동자들의 현물급여도 이에 속한다.

이리하여 년간생산물을 류통시키는 화폐량은 사회에 현존하여있으며 점차 축적된것이다. 그것은 마멸된 주화를 보상하는 금 등을 제외하고 그해의 가치생산물에는 속하지 않는다.

이 서술에서는 오직 귀금속화폐의 류통을 전제로 하며 또 이 류통에 있어서도 현금매매라는 가장 간단한 형태를 전제로 한다.—비록 단순한 금속류통의 기초우에서도 화폐는 지불수단으로서 기능할수 있으며 또 력사상 현실적으로 그렇게 기능하여왔으며 또 이 기초우에서 신용제도와 그 기구의 일정한 측면들이 발전되여왔지만.

이 전제는 단순히 방법상의 고려에서만 한것은 아니지만 이 고려의 중요성은 이미 다음과 같은데서도 나타난다. 즉 투크와 그 학파뿐만아니라 그 반대자들도 그들의 론쟁에서는

언제나 은행권의 류통을 론할 때 순수한 금속류통이라는 가정에로 되돌아가지 않을수 없었다는것이 그것이다. 그들은 늦게나마 그렇게 하지 않을수 없었고 또 극히 피상적으로 그렇게 하였는데 그것은 필연적이였다. —왜냐 하면 그들의 방식에서는 출발점이 분석에서 하나의 부차적인 역할밖에는 놀지 못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 그 **자연발생적**형태로 표시되는 화폐류통—그런데 이것은 여기에서 년간재생산과정의 내재적계기이다.—의 극히 단순한 고찰에 의하여서도 다음과 같은것을 알수 있다.

a) 발전된 자본주의적생산, 따라서 임금로동제도의 지배를 전제로 하면 화폐자본은 그것이 가변자본이 선대되는 형태인 한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의 주요한 역할을 논다. 임금로동제도가 발전함에 따라서 모든 생산물은 상품으로 전화되며 따라서—약간의 중요한 례외는 있지만—모든 생산물이 그 운동의 한 단계로서 화폐로의 전화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된다. 류통화폐량은 상품량들의 이러한 화폐화를 위하여 충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 화폐량의 최대의 부분은 로임의 형태로 공급된다. 즉 가변자본의 화폐형태로서 산업자본가들에 의하여 로동력에 대한 지불에 선대되며 로동자들의 수중에서는—그 대부분이—류통수단(구매수단)으로서만 기능하는 화폐의 형태로 공급된다. 이러한것은 어떤 예농제도(농노제도를 포함하여)의 기초우에서도 우세한, 그리고 예농관계 또는 노예제관계가 혼합되여있든 있지 않든간에 다소간 원시적인 공동체의 기초우에서는 더 한층 우세한 자연경제와는 완전히 대립적인것이다.

노예제도에 있어서는 로동력의 구매에 투하되는 화폐자본은 고정자본의 화폐형태의 역할을 놀며 이 고정자본은 노

예의 활동적생존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보상될뿐이다. 그러므로 아테네인에게 있어서는 노예소유자가 자기의 노예를 산업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직접 얻든가 또는 다른 산업적사용자에게(례컨대 광산로동에서) 노예를 임대함으로써 간접으로 얻는 리득이 선대화폐자본의 리자(및 원가상각)로서 간주되였을따름인데 그것은 마치도 자본주의적생산에서 산업자본가가 잉여가치의 일부분 플루스 고정자본의 마멸분을 자기의 고정자본의 리자 및 보상분으로서 계산하는것과 마찬가지이며 이것은 또 고정자본(가옥이나 기계 등)을 임대하는 자본가들에게 있어서 통례로 되고있는것이다. 단순한 가정노예는 그들이 필요한 봉사를 수행하기 위한것이든 또는 다만 사치를 자랑하기 위한것이든 여기에서는 문제가 아니다. 그들은 오늘날의 노비계급에 해당된다. 그러나 노예제도도—발전한 희랍 제 국가나 로마에 있어서와 같이 그것이 농업, 제조업, 항운업 등에서 생산로동의 지배적형태인 한에서는—자연경제의 요소를 보존하고있다. 노예시장 그자체도 그 로동력상품의 공급을 항상 전쟁이나 해상략탈 등에 의하여 받는데 이 략탈은 류통과정에 의하여 매개되는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육체적강제에 의한 타인의 로동력의 현물취득이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고용로동제를 실시하는 북부의 각 주들과 노예제를 실시하는 남부의 각 주들간의 중간지대가 남부를 위한 노예사육지대로 전화된후에도 따라서 남부에서는 노예시장에 투입된 노예자체가 년간재생산의 한 요소로 된후에도 장기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였으며 그때문에 시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될수 있는대로 오래동안 아프리카와의 노예무역이 계속되였던것이다.

b) 자본주의적생산의 기초우에서는 년간생산물의 교환에

있어서 화폐의 류출과 환류가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된다는것, 고정자본은 그 가치량으로 보아 전부 단번에 선대되는데 그 가치는 수년간에 걸쳐 점차 류통으로부터 끌려나오며 따라서 고정자본은 매년의 화폐축장에 의하여 점차 화폐형태로 재형성되여가며 이 화폐축장은 매년의 새로운 금생산에 립각하여 그것과 병행적으로 진행되는 화폐축장과는 본질상 전혀 다른 것이라는것, 상품들의 생산기간의 길이에 따라 화폐가 선대되지 않으면 안되는 시간의 길이가 각이하며 따라서 화폐가 상품의 판매에 의하여 류통으로부터 회수될수 있기전부터 언제나 반복하여 적립되지 않으면 안되는 시간의 길이가 각이하다는것, 판매시장으로부터의 생산장소의 거리가 각이한 그것만으로도 이미 선대기간의 길이가 각이하다는것, 마찬가지로 각이한 기업들에 있어서 또 동일한 생산부문의 각이한 개개의 자본가들에 있어서 생산용재고의 상태 또는 그 상대적 크기에 따라 환류의 크기와 주기가 각이하며 따라서 불변자본의 요소를 구매하는 시기가 각이하다는것—재생산년도중의 이 모든것들, 자연발생적운동의 이 모든 각이한 계기들은 경험에 의하여 알려지고 주목의 대상으로 되기만 하면 신용제도의 기계적보조수단에도, 대부될수 있는 현존하는 자본들을 현실적으로 낚아올리는데도 계획적으로 리용되게 된다.

이밖에 더 첨가되는것은 다른 사정이 정상적이면 련속적으로 동일한 규모에서 생산이 진행되는 기업들과 농업과 같이 계절이 다름에 따라 각이한 량의 로동력을 사용하는 기업들간의 구별이다.

13. 데스뛰뜨 드 뜨라씨의 재생산리론(56)

사회적재생산의 고찰에 있어서 정치경제학자들의 혼란과 호언장담으로 충만된 무사려의 례로서는 리카도까지도 그를 진지하게 대하여 《대단히 출중한 저술가》(《원리 333페지》)라고 부르고있는 대론리학자 데스뛰뜨 드 뜨라씨를 들수 있을것이다. (제1권, 147페지, 주 30[101]을 참조하라.)

이 출중한 저술가는 사회적 재생산과 류통의 총과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있다.

《사람들은 나에게 물을것이다. 어떻게 이러한 산업기업가들이 이렇게 큰 리윤을 얻는가 또 누구에게서 그것을 끌어낼수 있는가라고.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들이 그렇게 할수 있는것은 자기들이 생산하는것을 모두 자기가 그 생산에 들인것보다 비싸게 판매하는데 의하여서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판매한다.

1) 그들이 자기들이 리윤의 일부분으로써 지불하는, 그들의 욕망의 충족에 돌려지는 전체 부분에 대하여서는 그들은 호상간에 판매한다.

2) 임금로동자에게. 즉 그들이 고용하는 로동자에게도, 무위도식하는 자본가들이 고용하는 로동자에게도.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이러한 임금로동자들로부터 그 얼마 안되는 저축을 제외하고 모든 임금을 회수한다.

3) 무위도식하는 자본가들에게, 이러한 자본가는 그들에게 자기의 수입중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임금로동자에게 이미 지불한 이외의 부분을 지불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러한 무위도식하는 자본가들에게 매년 지불하는 전체 임료가 이러한 방식중 어느 한 방식에 의하여 다시 그들에게 환류한다.》(데스뛰뜨 드 뜨라씨 《의지 및 의지작용론》, 1826년 빠리판, 239페지).

---

(56) 제2고에서.

그러므로 자본가들이 치부하는것은 첫째로, 잉여가치중 자기들의 개인적소비에 충당하는 부분, 즉 수입으로서 소비하는 부분의 교환에 있어서 그들이 모두 서로 기만하는데 의하여서이다. 즉 만일 그들의 잉여가치 또는 리윤의 이 부분이 400파운드라고 하면 이 400파운드를 나누어 가진자들이 제각기 자기의 몫을 25%씩 부당하게 더 비싸게 타인에게 판매하는데 의하여 이 400파운드는 500파운드로 된다. 모두가 다 이렇게 하므로 결과는 그들이 서로 정당한 가치대로 판매하는것과 같은것이다. 다만 그들이 400파운드의 상품가치를 류통시키는데 500파운드의 화폐량을 필요로 할따름이며 이것은 부를 늘이는 방법이라기보다 오히려 빈궁을 늘이는 방법인것 같다. 왜냐 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총재산의 큰 부분을 류통수단이라는 무익한 형태로 비생산적으로 보존하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이다. 이 모든것이 귀착하는바는 자본가계급은 자기의 상품가격의 전면적인 명목적인상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개인적소비를 위하여 서로 분배하게 되는것은 400파운드의 가치의 상품량뿐이라는것이며 그리고 500파운드의 상품가치를 류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화폐량으로서 400파운드의 상품가치를 류통시키면서 서로 그것으로 만족한다는것이다.

여기서는 《그들의 리윤의 일부분》이 전제되고있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리윤을 표시하는 상품재고가 전제되고있다는것은 아주 도외시한다. 그런데 바로 이 리윤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것이 데스뛰뜨가 우리에게 설명하려 하는것이다. 이 리윤을 류통시키는데 필요한 화폐량은 전혀 종속적인 문제이다. 리윤을 표시하는 상품량은 자본가들이 이 상품량을 서로 판매할뿐만아니라—이것만으로도 대단히 훌륭하고 의미가 깊다.—모두가 서로 부당하게 더 비싸게 판매하는데서 나

오는것처럼 보인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자본가들의 치부의 한 원천을 알게 된다. 이 원천은 결국은 《감독관 브래지히》[102]의 비밀에, 즉 큰 빈궁은 큰 Pauvreté[빈궁]에서 나온다는 비밀에 귀착된다.

2) 그리고 이 자본가들은 또

《임금로동자에게, 즉 그들자신이 고용하는 로동자에게도, 무위도식하는 자본가들이 고용하는 로동자들에게도》 판매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이러한 임금로동자들로부터 그 얼마 안되는 저축을 제외하고 모든 임금을 회수한다.》

자본가가 로동자에게 임금을 선대하였을 때의 형태인 화폐자본이 자본가의 수중에로 환류한다는것은 데스뛰뜨씨에 의하면 이러한 자본가들의 치부의 제2원천을 이룬다.

따라서 자본가계급이 례컨대 100파운드를 로동자들에게 임금으로서 지불하고 그다음에 동일한 로동자들이 동일한 자본가계급으로부터 동일한 100파운드의 가치의 상품을 구매하며 이리하여 자본가가 로동력의 구매자로서 선대한 100파운드의 금액이 로동자들에게 100파운드의 상품을 판매하는데 의하여 그 자본가에게로 환류하면 그것에 의하여 자본가는 **치부**한다는것이다. 상식의 관점으로 보면 이러한 수속에 의하여 자본가는 자기가 이 수속이전에 가지고있은 100파운드를 다시 가지는것 같다. 이 수속이 시작될 때 그들은 100파운드의 화폐를 가지고있으며 이 100파운드로 그들은 로동력을 구매한다. 구매된 로동은 이 100파운드의 화폐 대신으로 어떤 가치의 상품을 생산하는데 이 가치는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있는 한에서는 100파운드이다. 100파운드의 상품을 로동자들에게 판매하는데 의하여 자본가는 100파운드의 화폐를

회수한다. 이리하여 자본가는 다시 100파운드의 화폐를 가지며 또 로동자들은 그들자신이 생산한 100파운드의 상품을 가진다. 이 경우에 자본가가 대체 어떻게 치부하는가 하는것은 알수 없다. 만일 100파운드의 화폐가 자본가의 수중에로 환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로동자에게 첫째로, 그 로동에 대한 대가로 100파운드의 화폐를 지불하고 둘째로, 이 로동의 생산물인 100파운드분의 소비수단을 무상으로 로동자들에게 주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따라서 이 환류에 의하여 설명될수 있는것은 기껏해야 자본가가 이 조작에 의하여 왜 더 빈궁하게 되지 않는가 하는것뿐이고 결코 그들이 왜 그것에 의하여 더 부유하게 되는가 하는것은 아닐것이다.

물론 또 하나의 문제는 자본가가 어떻게 100파운드의 화폐를 가지는가 하는것이며 또 로동자는 왜 자기들의 돈으로 자기가 상품을 생산하지 않고 자기의 로동력을 이 100파운드와 교환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하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데스뛰뜨와 같은 사상가에 있어서는 자명한것이다.

데스뛰뜨자신도 이러한 해결로써 완전히 만족하고있는것은 아니다. 확실히 그는 어떤 사람이 100파운드라는 화폐액을 지출하고 그다음에 100파운드라는 화폐액을 회수하는데 의하여, 즉 100파운드라는 화폐의 환류에 의하여 그 사람이 치부한다고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 환류가 보여주는것은 다만 왜 100파운드의 화폐가 없어지지 않는가 하는것뿐이다. 그가 우리에게 말한것은 자본가가 치부하는것은

《자기들이 생산하는것을 모두 자기가 그 생산에 들인것보다 비싸게 판매하는데 의하여서이다.》는것이였다.

따라서 자본가들은 로동자들과의 거래에서도 로동자들에

게 부당하게 더 비싸게 판매하는데 의하여 치부할수밖에 없다. 참 훌륭하다!

《그들은 로임을 지불한다.…그것은 모두 그들의 수중에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지출에 의하여 환류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로임때문에 그들》[자본가]《이 들인것보다 더 많이 그들에게 그것들》[생산물]《의 대가를 지불한다.》(240페지)

따라서 자본가는 로동자에게 100파운드의 임금을 지불하고 그다음에 로동자에게 그들자신의 생산물을 120파운드로 판매하며 이리하여 자본가의 수중에는 100파운드가 환류할뿐만아니라 또한 20파운드가 더 획득된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로동자들은 다만 자기들이 로임의 형태로 받은 화폐로써 지불할수 있을뿐이다. 만일 그들이 자본가들로부터 100파운드의 임금을 받는다면 그들은 100파운드분을 구매할수 있을뿐이며 120파운드분을 구매할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는 잘 되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다른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 로동자들은 자본가들로부터 100파운드로 상품을 구매하는데 실지는 80파운드의 가치의 상품을 받는데 불과하다. 그러므로 로동자들은 무조건적으로 20파운드를 사취당하고있다. 그리고 자본가는 무조건적으로 20파운드를 벌었다. 그것은 그가 로동력에 대하여 실지는 그 가치보다 20% 싸게 지불하였기때문이며 또는 우회적으로 명목로임에서 20%를 공제하였기때문이다.

자본가계급은 처음부터 로동자에게 80파운드의 임금만 지불하고 그후에 이 80파운드의 화폐와의 교환으로 실지는 80파운드의 상품가치를 로동자들에게 제공하더라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것이다. 이것은—계급전체를 고찰한다면—정상

적인 방식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데스뛰뜨씨자신에 의하면 로동계급은 《충분한 임금》(219페지)을 받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며 이 임금은 적어도 그들의 생존과 로동능력을 유지하고 겨우 밥이나 먹을수 있는 《생활수단을 얻을》(180페지) 수 있어야 하기때문이다. 만일 로동자들이 충분한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같은 데스뛰뜨에 의하면 그것은 《산업의 죽음》(208페지)이며 따라서 보건대 자본가들을 위한 치부수단이 아닌것 같다. 그러나 자본가계급이 로동계급에게 지불하는 임금의 높이가 어떠하든간에 여하튼 이 임금은 례컨대 80파운드라는 일정한 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만일 자본가계급이 로동자들에게 80파운드를 지불하려 한다면 그들은 로동자들에게 이 80파운드와의 교환으로 80파운드의 상품가치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 80파운드의 환류는 자본가계급의 부를 늘이는것은 아니다. 만일 자본가계급이 로동자들에게 화폐로 100파운드를 지불하고 그들에게 80파운드의 상품가치를 100파운드로 판다면 자본가계급은 그들에게 그들의 정상적임금보다 25%만큼 더 많이 화폐로 지불하는것으로 되며 그 대신에 상품으로는 25%만큼 더 적게 그들에게 제공하는것으로 된다.

바꾸어말하면 자본가계급일반이 자기들의 리윤을 끌어내는 기금은 정상적인 로임으로부터의 공제에 의하여 로동력에 대하여 그 가치보다 싸게, 즉 임금로동자로서의 로동력의 정상적재생산에 필요한 생활수단의 가치보다 싸게 지불하는데 의하여 형성되게 될것이다. 따라서 데스뛰뜨에 의하면 당연히 지불되여야 할 정상적로임이 지불된다면 리윤의 기금은 산업자본가에 대하여서도, 무위도식하는 자본가에 대하여서도 존재하지 않을것이다.

이리하여 데스뛰뜨씨는 자본가계급이 어떻게 치부하는가 하는 전체 비밀을 로임으로부터의 공제에 의한다는것에 귀착시키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그러면 그가 (1)과 (3)에서 말하고있는 잉여가치의 다른 기금은 존재하지 않는것으로 될것이다.

그리하여 로동자들의 화폐임금이 계급으로서의 그들의 생계에 필요한 소비수단의 가치로 축소되여있는 모든 나라에서는 자본가들을 위한 소비기금도 축적기금도 존재하지 않을것이며 따라서 자본가계급의 생존을 위한 기금도 존재하지 않을것이며 따라서 자본가계급도 존재하지 않을것이다. 그리고 데스뛰뜨에 의하면 오랜 문명을 가진 모든 부유한 발전된 나라에서는 바로 그러할것이다. 왜냐 하면 이

《오래된 우리 사회에서는 임금의 지불에 사용되는 기금은…거의 불변수》(202페지)

이기때문이다.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도 자본가들의 치부는 그들이 우선 로동자에게 화폐로 100파운드를 지불하고 그다음에 이 100파운드의 화폐와의 교환으로 80파운드의 상품을 로동자에게 제공한다는것—즉 사실상 80파운드의 상품을 100파운드, 즉 25%만큼 더 큰 화폐액에 의하여 류통시킨다는것—으로부터 나오는것이 아니라 자본가가 로동자의 생산물중에서 잉여가치—생산물중 잉여가치를 표시하는 부분—외에 로임의 형태로 로동자의것으로 되여야 할 생산물부분의 25%를 취득한다는데로부터 나오는것이다. 데스뛰뜨가 사태를 리해하는바와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방식으로는 자본가계급은 절대로 아무 리득도 보지 못할것이다. 자본가계급은 로임으로서 100파운드를 지불하고 그다음에 이 100파운드와의 교환으로 로

동자자신의 생산물중에서 80파운드의 상품가치를 로동자에게 반환한다. 그러나 바로 그다음 조작에서 자본가계급은 다시 동일한 수속을 위하여 100파운드를 선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자본가계급은 80파운드의 화폐를 선대하고 다음에 그것과의 교환으로 80파운드의 상품을 제공할 대신에 100파운드의 화폐를 선대하고 그것과의 교환으로 80파운드의 상품을 제공하는 쓸데없는 장난을 할따름이다. 즉 자본가계급은 자기들의 가변자본의 류통을 위하여 25%나 더 큰 화폐자본을 부단히 쓸데없이 선대하는데 이것은 아주 독특한 치부방법이다.

3) 끝으로 자본가계급은

《무위도식하는 자본가들에게 판매하는데 이러한 자본가는 그들에게 자기의 수입중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임금로동자들에게 이미 지불한 이외의 부분을 지불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런 무위도식하는 자본가들에게 매년 지불하는 전체 임료는 이러한 방식중 그 어느 방식에 의하여 다시 그들에게 환류한다.》.

우에서 본바와 같이 산업자본가들은

《그들의 소비중 그들의 욕망의 충족에 돌려지는 전체 부분을 그들의 리윤의 일부분으로써 지불한다.》.

그러면 그들의 리윤을 200파운드라고 가정하자. 그들은 자기들의 개인적소비를 위하여 례컨대 100파운드를 소비한다. 그러나 나머지 절반=100파운드는 그들의것이 아니고 무위도식하는 자본가들, 즉 지대취득자들과 리자를 받고 대부하는 자본가들의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 친구들에게 100파운드의 화폐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무위도식하는 자본가들은 이 화폐중에서 80파운드를 그들자신의 소비에 사용하고 20파운드를 노비 등의 구매에 사용한다고 하자. 따라

서 그들은 그 80파운드로써 산업자본가들로부터 소비수단을 구매한다. 이리하여 산업자본가에게는 그들로부터 80파운드의 생산물이 떨어져나가는 동안에 80파운드의 화폐가 환류한다. 즉 그들이 지대나 리자 등의 명목으로 무위도식하는 자본가들에게 지불한 100파운드의 $\frac{4}{5}$가 환류한다. 그리고 노비계급, 즉 무위도식하는 자본가들이 직접 사용하는 임금로동자들은 그들의 주인으로부터 20파운드를 받는다. 그들은 그것으로써 역시 산업자본가로부터 20파운드의 소비수단을 구매한다. 이리하여 산업자본가에게는 그들로부터 생산물이 떨어져나가는 동안에 20파운드의 화폐가 환류한다. 산업자본가들이 지대, 리자 등으로서 무위도식하는 자본가들에게 지불한 100파운드의 화폐의 마지막 $\frac{1}{5}$이 환류한다.

교환이 끝날 때 산업자본가들에게는 그들이 지대, 리자 등의 지불을 위하여 무위도식하는 자본가들에게 양도한 100파운드의 화폐가 환류하였는데 한편 그들의 잉여생산물의 절반=100파운드는 그들의 수중으로부터 무위도식하는 자본가들의 소비기금으로 이전되였다.

따라서 무위도식하는 자본가들과 그들이 직접 사용하는 임금로동자들사이에서의 100파운드의 분할을 어떤 방식으로 끌어들이는가 하는것은 여기에서 취급되고있는 문제에 대하여는 분명히 전혀 무용한것이다. 사태는 간단하다. 그들의 지대나 리자 요컨대 잉여가치=200파운드중에서 그들의것으로 되는 몫은 산업자본가로부터 100파운드의 화폐로 그들에게 지불된다. 이 100파운드로써 그들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산업자본가들로부터 소비수단을 구매한다. 따라서 그들은 100

파운드의 화폐를 도로 산업자본가들에게 지불하며 산업자본가들로부터 100파운드의 소비수단을 끌어낸다.

이리하여 산업자본가들로부터 무위도식하는 자본가들에게 지불된 100파운드의 화폐의 환류가 진행되였다. 이 화폐환류는 데스뛰뜨가 광신하는것처럼 산업자본가들에게 있어서 치부수단으로 되겠는가? 교환 이전에 그들은 200파운드의 가치액을 가지고있었다. 즉 그중 화폐로서의 100파운드와 소비수단으로서의 100파운드를 가지고있었다. 교환후에는 그들은 최초의 가치액의 절반만 가지고있을따름이다. 그들은 다시 화폐로 100파운드를 가지고있으나 소비수단으로서의 100파운드를 상실하였으며 그것은 무위도식하는 자본가들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따라서 그들은 100파운드만큼 더 부유하여진것이 아니라 100파운드만큼 더 가난하여졌다. 만일 그들이 처음에 100파운드의 화폐를 지불하고 그다음에 100파운드의 소비수단의 대가로 이 100파운드의 화폐를 회수하는 우회적인 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대나 리자 등을 자기들의 생산물의 현물형태로 지불하였다면 그들에게 100파운드의 화폐가 류통으로부터 환류하지 않을것이다. 왜냐 하면 그들은 100파운드의 화폐를 류통에 투입하지 않았기때문이다. 현물지불의 방식하에서는 사태가 간단히 그들이 200파운드의 가치의 잉여생산물중 절반은 자기가 보유하고 나머지 절반은 등가없이 무위도식하는 자본가들에게 주어버리는것으로 나타날것이다. 데스뛰뜨라도 이런것을 치부수단이라고 설명하려고 생각할수는 없을것이다.

산업자본가가 토지나 자본을 무위도식하는 자본가들로부터 빌리고 그 대신에 잉여가치의 일부분을 지대나 리자 등의 형태로 무위도식하는 자본가에게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

우에 이 토지나 자본은 물론 산업자본가들에게는 리윤을 낳는것이였다. 왜냐 하면 그것은 생산물일반에 대하여서나 생산물중 잉여생산물을 형성하며 잉여가치를 표시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나 그 생산조건들의 하나였기때문이다. 이 리윤은 빌린 토지나 자본의 리용에서 나오는것이고 그것들에 지불되는 가격에서 나오는것은 아니다. 이 가격은 오히려 리윤으로부터의 공제분을 이룬다. 그렇지 않다면 산업자본가가 잉여가치의 나머지 절반을 주어버리지 않고 자기에게 보유할수 있는 경우에 그들은 더 부유하여지는것이 아니라 더 가난하여진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그러나 화폐환류와 같은 류통현상을 다만 그와 같은 류통현상에 의하여 매개될 따름인 생산물분배와 혼동한다면 이러한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이 데스뛰뜨는 약삭바르게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무위도식하는 사람들의 수입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그들의 자본을 운용하는 사람들, 즉 그 비용보다도 더 많이 생산하는 로동을 그들의 기금으로써 고용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산업가들이 자기들의 리윤으로부터 이 무위도식하는 사람들에게 지불하는 임료에서 나오는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모든 부의 원천을 발견하기 위하여서는 언제나 산업가들에게로 소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산업가들은 무위도식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임금로동자들을 현실적으로 부양하는 사람들이다.》(246페지)

따라서 이번에는 이러한 지대 등의 지불은 산업가들의 리윤의 삭감이다. 그런데 앞에서는 그것은 산업가들에게 있어서 치부의 수단이였던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데스뛰뜨에게는 하나의 위안이 남아있

다. 이 용감한 산업가들은 자기들 호상간에서도 해왔고 로동자들에게 대하여서도 해온것과 같은것을 무위도식하는 자본가들과의 사이에서도 하는것이다. 산업가는 무위도식하는 자본가들에게 모든 상품을 부당하게 비싸게 례컨대 20% 더 비싸게 판매한다. 그리하여 여기에는 두 경우가 있을수 있다. 무위도식하는 자본가들은 그들이 산업가들로부터 매년 받는 100파운드외에 다른 화폐수단을 더 가지고있는 경우와 그것을 가지고있지 않은 경우이다. 첫째 경우에는 산업가들은 무위도식하는 자본가들에게 100파운드의 상품을, 따라서 100파운드의 가치를 례컨대 120파운드의 가격으로 판매한다. 따라서 산업가들의 수중에는 자기의 상품을 판매할 때 자기들이 무위도식하는 자본가들에게 지불한 100파운드가 환류할뿐만아니라 그외에 산업가들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새로운 가치인 20파운드가 더 들어온다.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되는가? 산업가들은 100파운드만큼 상품을 무상으로 주었다. 왜냐 하면 그들이 받는 지불의 일부분인 100파운드의 화폐는 그들자신의 화폐였기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자신의 상품의 대가가 그들자신의 화폐로써 그들에게 지불된것이다. 이리하여 100파운드가 손실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외에 가격이 가치를 넘는 초과분으로서 20파운드를 받았다. 따라서 20파운드가 리득이다. 이것에 100파운드의 손실을 가하면 결국 80파운드의 손실로 되며 결코 플루스가 되지는 않고 의연히 미누스이다. 무위도식하는 자본가들에게 대하여 한 사기는 산업가들의 손실을 경감시켰으나 그때문에 산업자본가들에 있어서 부의 손실을 치부수단으로 전화시킨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방법도 오래 가는것이 아니다. 왜냐 하면 무위도식하는 자본가들도 매년 100파운드의 화폐밖에

받지 못한다면 매년 120파운드의 화폐를 지불할수는 없기때문이다.

따라서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즉 산업가들은 자기들이 무위도식하는 자본가들에게 지불한 100파운드의 화폐와의 교환으로 80파운드의 가치의 상품을 판매한다. 이 경우에도 여전히 그들은 80파운드를 지대나 리자 등의 형태로 무상으로 주어버린다. 이러한 사기에 의하여 그들은 무위도식하는 자본가들에 대한 공물을 경감하였으나 이 공물은 여전히 존재하는것이며 무위도식하는 자본가들은 가격은 판매자의 호의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이 리론에 따라 앞으로는 자기의 토지나 자본에 대하여 이전과 같이 100파운드가 아니라 120파운드의 지대나 리자를 요구할수 있는것이다.

이 빛나는 전개는 이 심오한 사상가에게 아주 어울리는것이며 이 사상가는 한편으로는 A. 스미스로부터

《로동은 모든 부의 원천이다.》(242페지)

라는것과

《자기의 자본을 사용하는것은 리윤을 가하여 이 자본을 재생산하는 로동에 지불하기 위한것이다.》(246페지)

는것을 베껴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산업자본가들이

《다른 모든 인간들을 부양하며 자기들만이 공공재산을 늘이며 또 우리의 모든 향락수단을 창조한다.》(242페지)

고 결론하며 또 자본가들이 로동자에 의하여 부양되는것이 아니라 로동자들이 자본가들에 의하여 부양된다고 결론하며 그것도 그 훌륭한 리유로서 로동자들에게 지불되는 화폐가

로동자들의 수중에 남는것이 아니라 로동자들에 의하여 생산된 상품에 대한 지불을 위하여 자본가들에게로 부단히 복귀한다는것을 드는것이다.

《로동자들은 다만 한손으로 받고 다른 한손으로 반환할뿐이다. 따라서 그들의 소비는 그들을 고용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생기는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면 안된다.》(235페지)

이와 같이 화폐류통에 의하여 매개되는 사회적 재생산과 소비에 대하여 이렇게 남김없이 서술한후에 데스뛰뜨는 다음과 같이 계속한다.

《이것이야말로 부의 이 영구운동기구를 완성하는것인데 이 운동은 잘 리해되고있지 않지만》(mal connu—확실히 그렇다!)《정당하게도 류통이라고 불리우고있다. 왜냐 하면 이 운동은 사실상 하나의 순환이며 언제나 자체의 출발점으로 돌아오기때문이다. 이 출발점은 생산이 수행된 그 점이다.》(239~240페지)

데스뛰뜨, 아주 탁월한 저술가이며 프랑스학사원[103] 원사이며 필라델피아 철학회[104] 회원이며 또 실제로 어느 정도 속류경제학자들사이에서의 스타이기도 한 그는 끝으로 그가 사회적과정의 경과를 서술한 때의 경탄할만한 명료성과 그가 대상에 대하여 던지고있는 광명에 탄복할것을 독자들에게 요구하고있을뿐만아니라 실로 겸손하게도 이 모든 광명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독자들에게 알리고있다. 이것은 원문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된다.

《On remarquera, j'espère, combien cette manière de considérer la consommation de nos richesses est concordante avec toutce que nous avons dit à propos de leur production et de leur distribution, et en même temps

quelle clarté elle répand sur toute la marche de La société. D'où viennent cet accord et cette *Lucidité*? De ce que nous avons rencontré la vérité. Cela rappelle l'effet de ces miroirs où les objets se peignent nettement et dans leurs justes proportions, quand on est placé dans leur vrai pointde-vue, et où tout para ît confus et désuni, quand on en est trop près ou trop loin.》①(P. 242~243)

이만하면 자산계급적지둔도 행복의 극치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

① 《우리의 부의 소비에 대한 이러한 고찰방법이 부의 생산과 분배에 관하여 우리가 서술한 모든것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동시에 또 그것이 **사회의 전체 운동의 고찰에 얼마나 명료성을 던지고있는가** 하는데 주의를 돌려주기를 바란다. 이 일치와 이 명료성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였다는데서 온다. 그것은 거울의 작용을 상기시킨다. 즉 사람이 바른 관점에 서면 대상이 명료하게 균형이 잡히여 반영되지만 너무 가까이 서거나 너무 멀리 서있으면 모든것이 몽롱하고 찌그러지게 나타나는것이다.》—편집자

제 21 장

축적과 확대재생산(57)

축적이 개개의 자본가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은 제1권에서 밝혀졌다. 상품자본의 화폐화에 의하여, 잉여가치를 표시하는 잉여생산물도 화폐화된다. 이와 같이 화폐로 전화된 잉여가치를 자본가는 자기의 생산자본의 추가적 현물요소들로 재전화시킨다. 그다음의 순환에서는 증대된 이 자본이 증대된 생산물을 제공한다. 그런데 개별적자본에 있어서 나타나는것은 년간총재생산에서도 나타나지 않을수 없는데 이것은 단순재생산의 고찰에서 본바와 같이 개별적자본의 경우에 개별적자본의 소비된 고정적구성부분이 적립금으로서 순차적으로 침전된다는것이 사회적년간재생산에서도 표현되는것과 마찬가지이다.

어떤 개별적자본이 400c+100v이며 년간잉여가치가 100이라면 상품생산물은 400c+100v+100m이다. 이 600이 화폐로 전화된다. 이 화폐가운데서 400c는 다시 불변자본의 현물형태로, 100v는 로동력으로 전화되며 그리고—잉여가치가 전부 축적되는 경우에는—그외에 100m이 생산자본의 현물요소들과 교환됨으로써 추가적불변자본으로 전화된다. 이 경우에 다음과 같은것이 전제되고있다. 1) 주어진 기술적 제 조건하에서

---

(57) 여기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제8고에서.

는 기능하고있는 불변자본의 확장을 위하여서이든 새로운 산업기업의 창설을 위하여서이든 이 화폐액으로 충분하다는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이 시작되기전에, 즉 현실적축적, 생산의 확대가 진행되기전에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이 잉여가치를 화폐로 전화하고 이 화폐를 적립할 필요가 있게 되는수도 있다. 2) 확대된 규모에서의 생산이 사실상 이전부터 진행되고있다는것이 전제로 되고있다. 왜냐 하면 화폐(즉 화폐로 적립된 잉여가치)를 생산자본의 요소들로 전화할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는 이 요소들이 시장에서 상품으로서 구매될수 있는것으로 되여있어야 하기때문이다. 그 경우에 이 요소들이 기성품으로서 구매되지 않고 주문에 의하여 제조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차이도 없다. 이러한 요소의 대가가 지불되는것은 이러한 요소가 존재하게 된후이며 여하튼 이러한 요소들에 관하여 확대된 규모에서의 현실적재생산, 즉 종래의 정상적인 생산의 확장이 이미 진행된후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잠세적으로, 즉 이러한 요소들의 요소들로 이미 존재하고 있지 않으면 안되였다. 왜냐 하면 그것들의 생산이 현실적으로 진행되기 위하여서는 주문이라는 자극, 즉 상품의 존재에 선행하는 상품의 구매와 그 예상된 판매가 있기만 하면 되였기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일방의 화폐가 타방의 확대재생산을 불러일으키는데 그것은 **화폐**없이도 확대재생산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까닭이다. 왜냐 하면 화폐 그자체는 현실적재생산의 요소는 아니기때문이다.

레컨대 자본가 A가 1년간 또는 수년간에 걸쳐서 자기가 순차적으로 생산한 상품생산물을 판매한다면 그에 의하여 그는 상품생산물중 잉여가치의 담당자인 부분—잉여생산물—을 순차적으로 화폐로 전화시키며 따라서 그가 상품형태로 생

산한 잉여가치자체도 순차적으로 화폐로 전화시키며 이것을 점차적으로 적립하며 그리하여 잠세적인 새로운 화폐자본을 형성하는것이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것은 그 화폐자본이 생산자본의 요소들로 전화될수 있는 능력과 사명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상 그는 단순한 화폐축장을 할뿐이며 그것은 현실적생산의 요소는 아니다. 그리하여 그의 활동은 우선 다만 류통하고있는 화폐를 류통으로부터 순차로 끌어낼뿐이다. 물론 그가 그와 같이 보존하는 류통화폐 그자체가—류통으로 들어오기전에—다른 축장화폐의 일부분이였다는것이 배제되는것이 아니다. 이러한 A의 축장화폐는 잠세적으로는 새로운 화폐자본이라도 그것이 추가적인 사회적부가 아닌것은 바로 그것이 소비수단으로 지출되는 경우와 같은것이다. 그러나 류통으로부터 끌려나온, 따라서 이전에는 류통중에 있었던 화폐는 이전에 이미 축장화폐의 구성부분으로서 저장되여있은것일수도 있으며 로임의 화폐형태였을수도 있으며 생산수단이나 기타의 상품을 화폐화한 것일수도 있으며 어떤 자본가의 불변자본부분이나 수입을 류통시킨것일수도 있다. 그것이 새로운 부가 아닌것은 바로 화폐가 단순한 상품류통의 관점에서 보면 하루에 10회전하여 10개의 각이한 상품가치를 실현하였다고 하여 그 현재의 가치의 담당자뿐만아니라 그 10배의 가치의 담당자로 되는 것은 아닌것과 마찬가지이다. 상품은 화폐없이도 존재하며 화폐자체는 1회전하든 10회전하든 원래대로 있다(또는 오히려 마멸에 의하여 감소되였다.). 다만 금생산에서만—금생산물이 잉여가치의 담당자인 잉여생산물을 포함하고있는 한—새로운 부(잠세적화폐)가 창조되는것이며 또 새로운 금생산물[①]전체가 류통에 들어가는 한에서만 그것은 잠세적인 새

로운 화폐자본의 화폐재료를 증가시킨다.

화폐형태로 적립된 이 잉여가치는 추가적인 새로운 사회적부는 아니지만 그것의 적립목적으로 되는 그 기능때문에 새로운 잠세적인 화폐자본을 나타낸다(새로운 화폐자본은 잉여가치의 점차적화폐화 이외의 방도에 의하여서도 생길수 있다는것을 나중에 보게 될것이다.).

화폐는 상품이 판매된후에 구매가 뒤따르지 않는것으로 하여 류통으로부터 끌려나와 축장화폐로서 저장된다. 따라서 이 조작이 일반적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대체 구매자가 어디서 나와야 할것인가를 알수 없는것처럼 보인다. 왜냐 하면 이 과정에서는—어떤 개별적자본이나 다 축적과정에 있을 수 있기때문에 이 과정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각자가 화폐를 축장하기 위하여 판매하려 하는데 아무도 구매하려 하지 않기때문이다.

만약 년생산의 각이한 부분들간의 류통과정이 직선적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한다면—이것이 잘못이라고 하는것은 이 과정은 약간의 례외는 있지만 언제나 서로 상반되는 방향의 운동들로써 구성되기때문에—그 경우에는 팔지는 않고 사기만 하는 금생산자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판매한다고 전제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그 경우에는 년간사회적총잉여생산물의 총체(총잉여가치의 담당자)가 그의 수중에로 넘어갈것이며 다른 모든 자본가들은 날 때부터 화폐로 존재하는 금생산자의 잉여생산물, 즉 그의 잉여가치의 자연적금화신을 자기들사이에서 비례적으로 분배할것이다. 왜냐 하면 금생산자의 생산물중 그의 기능

① 제1판과 제2판에서는 《화폐생산물》로 되여있다. 엥겔스의 교정지에 의하여 개정하였다. —편집자

자본을 보상하여야 할 부분은 이미 구속되여 처리되고있기때문이다. 그 경우에는 금으로서 생산되는 금생산자의 잉여가치는 다른 모든 자본가들이 자기들의 년간잉여생산물의 화폐화를 위한 재료를 끌어내는 유일한 기금일것이다. 따라서 그의 잉여가치는 가치량으로 보면 우선 축장화폐라는 형태의 번데기로 되지 않으면 안되는 년간사회적총잉여가치의 전체와 같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이러한 어리석은 전제들은 일반적이며 동시적인 화폐축장의 가능성을 설명하는외에는 아무런 소용도 없으며 이것으로써는 재생산자체는 금생산자측 이외에는 일보도 전진하지 않을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외관상의 곤난을 해결하기전에 Ⅰ부류(생산수단의 생산)에서의 축적과 Ⅱ부류(소비수단의 생산)에서의 축적을 구별하여야 한다. Ⅰ부류로부터 시작하자.

1. Ⅰ부류에서의 축적

A. 화폐축장

Ⅰ부류를 구성하는 많은 산업부문들에 투하된 자본들이나 또 이러한 각 산업부문내에 투하된 각이한 개별적자본들이나 그것들의 규모, 기술적조건들, 시장관계들 등등을 전혀 도외시하면 그것들의 년령, 즉 이미 경과한 기능기간에 따라 그것들은 잉여가치가 순차적으로 잠세적화폐자본으로 전화하는 과정의 각이한 단계들에 처하여있다는것은 분명한데 이에 있어서 이 화폐자본이 그 투자의 기능자본의 확대에 복무할것인가 또는 새로운 산업기업의 창설에 복무할것인가(이것은

생산확대의 두 형태이다.) 하는것은 아무래도 좋다. 그러므로 자본가들의 일부는 해당한 크기로 증가된 자기의 잠세적 화폐자본을 부단히 생산자본으로 전화시킨다. 즉 잉여가치의 화폐화에 의하여 적립된 화폐로써 불변자본의 추가적요소들인 생산수단을 구매한다. 그런데 한편 자본가들의 다른 일부는 아직도 자기의 잠세적화폐자본의 적립에 종사하고있다. 따라서 두 부류의 자본가들은 일방은 구매자로서, 다른 일방은 판매자로서, 또 이 쌍방의 각자는 어느 일방의 역할만을 담당하고 서로 대립하고있는것이다.

례컨대 A가 600(=400c+100v+100m)을 B(1명이상의 구매자를 대표하여도 좋다.)에게 판매한다고 하자. A는 600의 상품을 판매하고 600의 화폐를 얻는데 그중 100은 잉여가치를 나타낸다. 그는 이 100을 류통으로부터 끌어내여 그것을 화폐형태로 적립한다. 그러나 이 100의 화폐는 100이라는 가치의 담당자였던 잉여생산물의 화폐형태에 불과하다. 화폐축장은 결코 생산이 아니며 따라서 처음부터 생산의 증가분이 아니다. 그 경우에 이 자본가의 행위는 다만 100이라는 잉여생산물의 판매에 의하여 얻은 화폐를 류통으로부터 끌어내여 그것을 단단히 붙잡아 억류하는것이다. 이러한 조작은 A측에서만 수행되는것이 아니며 류통분야의 많은 점들에서 기타의 자본가들 A′, A″, A‴ 에 의해서도 수행되며 그들은 모두다 이러한 화폐축장에 열중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 많은 점들에서 화폐가 류통으로부터 끌려나와 수많은 개별적축장화폐 또는 잠세적화폐자본으로 적립되는것은 그만큼 많은 수의 류통장애로 되는것처럼 보인다. 왜냐 하면 그러한 점들은 화폐의 운동을 멈춰세워 장기간이든 단기간이든 화폐의 류통능력을 빼앗기때문이다. 그러나 상품류통이 자본주의적상품생산에

기초하게 되기 훨씬 이전에 단순상품류통에서도 화폐축장이 일어난다는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회에 현존하는 화폐량은 그중 현실적으로 류통하고있는 부분—이 부분은 사정들의 변화에 따라 증가되거나 감소되기는 하지만—보다 언제나 크다. 그와 동일한 축장화폐를 그리고 동일한 화폐축장을 우리는 여기에서도 다시 발견하는것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자본주의적생산과정에 내재하는 한 계기로서 발견하는것이다.

신용제도하에서 이 모든 잠세적자본이 은행 등등의 수중에 집적됨으로써 리용할수 있는 자본으로, 《대부할수 있는 자본》으로, 화폐자본으로 되며 그것도 이제는 피동적인것으로, 미래 음악[105]으로가 아니라 능동적인, 자기 증식적인것으로 된다(여기에서 증식적[Wuchernd]이란 증대한다는 의미이다.)면 그 만족은 알만한것이다.

그러나 A가 이 화폐축장을 수행하는것은 그가—그의 잉여생산물에 관하여서는—판매자로서만 나타날따름이고 그후에 구매자로서는 나타나지 않는 한에서만이다. 따라서 그가 잉여생산물—화폐화되여야 할 그의 잉여가치의 담당자—을 련속적으로 생산하는것이 그의 화폐축장의 전제이다. Ⅰ부류내에서만의 류통을 고찰하고있는 지금의 경우에 있어서는 잉여생산물의 현물형태는 그것을 한부분으로 하는 총생산물의 현물형태와 마찬가지로 Ⅰ부류의 불변자본의 한 요소의 현물형태이다. 즉 그것은 생산수단의 생산수단이라는 범주에 속한다. 그것이 B, B′, B″ 등등의 구매자들의 수중에서 어떻게 되는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가 하는것은 곧 알게 될것이다.

그러나 우선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A는 자기의 잉여가치만큼한 화폐를 류통으로부터 끌어내

여 그것을 적립하지만 다른 한편 그는 상품을 류통에 투입하면서 그대신에 다른 상품을 류통으로부터 끌어내지 않는데 그때문에 B, B′, B″ 등등의 측에서는 화폐를 류통에 투입하고 그대신에 그저 상품만을 류통으로부터 끌어낼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 이 상품은 그의 현물형태로 보나 그의 용도로 보나 고정적 또는 류동적 요소로서 B, B′ 등등의 불변자본으로 들어간다. 이 후자에 관하여서는 잉여생산물의 구매자 B, B′ 등등을 문제로 하게 될 때 더 론하기로 하자.

여기에서 말이 난김에 다음과 같은것을 말하여둔다. 앞에서 단순재생산을 고찰한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것을 보게 된다. 년간생산물의 각이한 구성부분들의 교환, 즉 그것들의 류통(이것은 동시에 자본의 재생산을, 그것도 불변자본, 가변자본, 고정자본, 류동자본, 화폐자본, 상품자본이라는 각이한 규정을 가진 자본의 회복을 포괄하지 않으면 안된다.)은 그뒤에 진행되는 판매에 의하여 보충되는 단순한 상품구매 또는 그뒤에 진행되는 구매에 의하여 보충되는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치경제학 특히 중농학파나 애담 스미스 이래의 자유무역학파가 가정하고있는것처럼 사실상 상품 대 상품이라는 교환만이 일어난다는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우리가 알고있는바와 같이 고정자본은 일단 투하되기만 하면 그 전체 기능기간에는 갱신되지 않고 원래의 형태로 계속 작용하는데 그동안에 그의 가치는 점차 화폐형태로 침전한다. 그런데 우리가 본바와 같이 IIc의 고정자본[IIc의 총자본가치는 I(v+m)의 가치만큼한 요소들로 전화된다.]의 주기적갱신은 한편으로는 IIc중 화폐형태로부터 현물형태로 재전화되는, 고정적부분의 **단순**

한 구매—이것에 대응하는것은 Ⅰm측의 단순한 판매—를 전제로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Ⅱc측의 **단순한 판매**, 즉 Ⅱc중 화폐로 침전되는 고정적(마멸)가치부분의 판매—이것에 대응하는것은 Ⅰm측의 단순한 구매—를 전제로 한다. 이 경우에 교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하여 전제로 되여야 할것은 Ⅱc측의 단순한 구매가 가치량으로 보아 Ⅱc측의 단순한 판매와 동등하다는것, 또 마찬가지로 Ⅱc의 제1부분에 대한 Ⅰm측의 단순한 판매가 Ⅱc측의 제2부분측의 단순한 구매와 동등하다는것이다(440페지①). 그렇지 않으면 단순재생산은 교란된다. 일방에서의 단순한 판매는 타방에서의 단순한 구매에 의하여 상쇄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 전제로 되여야 할것은 Ⅰm중 화폐축장부분인 A, A′, A″의 단순한 판매는 Ⅰm중 자체의 축장화폐를 추가적생산자본의 요소들로 전화하는 부분인 B, B′, B″의 단순한 구매와 균형이 보장된다는것이다.

구매자가 후에 같은 가치액의 판매자로서 나타남으로써 또 반대로 판매자가 후에 같은 가치액의 구매자로서 나타남으로써 균형이 회복되는 한, 화폐는 구매할 때에 그것을 선대하였고 다시 구매하기전에 먼저 판매한측으로 환류한다. 그러나 상품교환자체에 관하여, 즉 년간생산물의 각이한 부분들의 교환에 관하여 현실적인 균형은 서로 교환되는 상품들의 가치액이 동등하다는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다만 일방적인 교환, 즉 한편에서는 대량의 단순한 구매, 다른 한편에서는 대량의 단순한 판매가 일어나는 한—그런데 우리가 이미 본바와 같이 자본주의적기초우에서

① 본권 519~520페지를 보라.—편집자

의 년간생산물의 정상적교환은 이와 같은 일방적인 형태변화들을 필연적인것으로 만든다.—일방적인 구매의 가치액과 일방적인 판매의 가치액이 서로 일치한다는 전제하에서만 균형은 보장된다. 상품생산이 자본주의적생산의 일반적형태라는 사실은 이미 화폐가 자본주의적생산에서 단지 류통수단으로서뿐만아니라 화폐자본으로서도 노는 역할이 포함되여있으며 또 그 사실은 정상적인 교환을 위한, 따라서(단순한 규모에서이든 확대된 규모에서이든간에) 재생산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한, 이 생산방식에 특유한 어떠한 조건들을 조성하는데 이 조건들은 그것과 같은 수의, 재생산의 비정상적인 진행의 조건들로, 공황의 가능성들로 전변한다. 왜냐 하면 균형은—이 생산의 자연발생적형태에서는—그자체가 하나의 우연이기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이미 본바와 같이 Ⅰv와 Ⅱc의 상응가치액과의 교환에서는 확실히 Ⅱc에 대해서는 결국 Ⅱ부류의 상품이 Ⅰ부류의 같은 가치액의 상품에 의하여 보상되며 따라서 Ⅱ부류의 총자본가치측에서는 이 경우에는 자기 상품의 판매가 후에 같은 가치액의 Ⅰ부류의 상품의 구매에 의하여 보충된다. 이 보상은 진행되지만 그러나 Ⅰ부류와 Ⅱ부류의 자본가들사이의 상품의 교환에서는 그들간의 상품의 교환이 진행되는것은 아니다. Ⅱc는 자기들의 상품을 Ⅰ부류의 로동계급에게 판매하며 후자는 일방적으로 상품구매자로서 전자에 대립하고 전자는 일방적으로 상품판매자로서 후자에 대립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얻은 화폐를 가지고 Ⅱc는 일방적으로 상품구매자로서 Ⅰ부류의 총자본가에 대립하며 후자는 일방적으로 Ⅰv의 가치액만큼 상품판매자로서 전자에 대립한다. 오직 이러한 상품판매에 의하여서만 Ⅰ부류는 결국 자기의 가변자

본을 다시 화폐자본의 형태로 재생산한다. Ⅰ부류의 자본이 일방적으로 Ⅰv의 액수만큼 상품판매자로서 Ⅱ부류의 자본에 대립한다면 Ⅰ부류의 로동계급에 대하여서는 그들의 로동력을 구매할 때 상품구매자로서 대립한다. 또 Ⅰ부류의 로동계급이 Ⅱ부류의 자본가에 대하여서는 일방적으로 상품구매자로서(즉 생활수단의 구매자로서) 대립한다면 Ⅰ부류의 자본가에 대하여서는 일방적으로 상품판매자로서, 즉 자기 로동력의 판매자로서 대립한다.

Ⅰ부류의 로동자계급측으로부터 로동력이 부단히 공급된다는것, Ⅰ부류의 상품자본의 일부분이 가변자본의 화폐형태로 재전화된다는것, Ⅱ부류의 상품자본의 일부분이 불변자본 Ⅱc의 현물적요소들에 의하여 보상된다는것—이 모든 필연적 전제들은 호상 조건으로 되고있으나 그러나 대단히 복잡한 하나의 과정에 의하여 매개된다. 이 과정은 호상 독립하여 진행되면서 호상 엉키여있는 세개의 류통과정들을 포함한다. 그 과정자체의 복잡성은 또한 그만큼 많은 원인을 비정상적 진행에 부여하게 된다.

B. 추가적불변자본

잉여가치의 담당자인 잉여생산물은 그것을 취득하는 Ⅰ부류의 자본가들에게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게 한다. 그들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화폐 또는 상품도 선대할 필요는 없다. 선대(avance)는 이미 중농학파에 있어서도 생산자본의 제요소에 실현된 가치의 일방적형태이다. 따라서 Ⅰ부류의 자본가들이 선대하는것은 다만 그들의 불변자본과 가변자본뿐이다. 로동자는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로동에 의하여 그들

의 불변자본을 유지해줄뿐이 아니다. 로동자는 그들을 위하여 상품의 형태로 새로 창조된 해당한 가치부분에 의하여 가변자본가치를 보상해줄뿐이 아니다. 로동자는 그외에 자기의 잉여로동에 의하여 그들에게 잉여생산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잉여가치를 제공해준다. 이 잉여생산물의 련속적인 판매에 의하여 자본가들은 축장화폐, 즉 추가적인 잠세적화폐자본을 형성한다. 지금 여기서 고찰되고있는 경우에는 이 잉여생산물은 처음부터 생산수단의 생산수단으로써 구성되여있다. 이 잉여생산물은 B, B′, B″ 등등(Ⅰ부류)의 수중에서야 비로소 추가적불변자본으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그것은 판매되기전에 이미 화폐축장자들인 A, A′, A″(Ⅰ부류)의 수중에서 잠세적인 추가적불변자본으로 되여있다. 만약 우리가 Ⅰ부류측의 재생산의 가치량만을 고찰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단순재생산의 한계내에 있다. 왜냐 하면 이 잠세적인 추가적불변자본(잉여생산물)을 창조하기 위하여 어떠한 추가자본도 사용되지 않고있으며 단순재생산의 기초우에서 지출된 잉여로동보다도 더 큰 잉여로동도 사용되지 않고있기때문이다. 이 경우에 구별은 다만 사용되는 잉여로동의 형태에 있을뿐이며 그 특수한 유용적방식의 구체적성질에 있을뿐이다. 이 잉여로동은 Ⅱc를 위한 생산수단에가 아니라 Ⅰc의 생산수단에 지출되여있으며 소비수단을 위한 생산수단이 아니라 생산수단을 위한 생산수단에 지출되여있다. 단순재생산에 있어서는 Ⅰ부류의 전체 잉여가치는 수입으로서 지출되며 따라서 Ⅱ부류의 상품에 지출된다고 전제되였다. 따라서 그것은 다만 불변자본 Ⅱc를 자기의 현물형태로 다시 보상하여야 할 생산수단으로써 구성되여있었다. 따라서 단순재생산으로부터 확대재생산으로 이행하기 위하여서는 Ⅰ부류에서의 생산은 Ⅱ부류를

위한 불변자본의 요소들을 보다 적게 하고 그만큼 보다 많이 Ⅰ부류를 위한 불변자본의 요소들을 생산할수 있게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이행은 언제나 곤난이 없이 수행되는것은 아니지만 Ⅰ부류의 일부 생산물들이 어느 부류에서도 생산수단으로서 복무할수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그 이행이 용이하게 된다.

따라서—가치량으로만 본다면—단순재생산의 내부에서 확대재생산의 물질적기초가 생산된다고 결론할수 있다. 이 물질적기초는 순전히 직접 Ⅰ부류의 생산수단의 생산에, Ⅰ부류의 잠세적추가자본의 창조에 지출된 Ⅰ부류로동계급의 잉여로동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A, A′, A″(Ⅰ부류)측에서의 잠세적인 추가적화폐자본의 형성—그 어떤 자본주의적화폐지출도 없이 형성되는 그들의 잉여생산물을 련속적으로 판매하는데 의한—은 순전히 추가적으로 생산된 Ⅰ부류의 생산수단의 화폐형태이다.

따라서 잠세적인 추가적자본의 생산은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왜냐 하면 우리가 나중에 보는바와 같이 이 추가적자본은 전혀 다르게도 형성될수 있기때문이다.) 생산과정자체의 한 현상, 즉 일정한 형태에서의 생산자본의 요소들의 생산이라는 현상이외의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는다.

따라서 잠세적인 추가적화폐자본의 대규모생산—류통면의 많은 점들에서의—은 잠세적인 추가적생산자본의 다방면적인 생산의 결과 및 표현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며 이 생산자본의 형성자체는 산업자본가측에서의 어떠한 추가적화폐지출도 전제로 하지 않는다.

A, A′, A″ 등등(Ⅰ부류)측에서의 이 잠세적인 추가적생산자본이 잠세적인 화폐자본(축장화폐)으로 련속적으로 전화

하는것은 그들의 잉여생산물의 련속적인 판매—따라서 구매에 의하여 보충되지 않는 일방적인 상품판매의 반복—를 조건으로 하고있는데 이러한 전화는 화폐를 류통으로부터 반복하여 끌어냄으로써 또 이에 상응하여 화폐축장을 형성하는것으로써 수행된다. 이러한 화폐축장은—금생산자가 구매자인 경우를 제외하면—결코 귀금속부의 추가를 전제로 하는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류통하고있은 화폐의 기능의 변화를 전제로 할따름이다. 이전에는 이 화폐는 류통수단으로서 기능하였는데 이제는 축장수단으로서, 형성되고있는 잠세적인 새로운 화폐자본으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추가적화폐자본의 형성과 한 나라에 있는 귀금속량은 호상 어떠한 인과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로부터 또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수 있다. 즉 한 나라에서 기능하고있는 생산자본(생산자본의 합체된 로동력, 즉 잉여생산물의 생산자를 포함하여)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로동의 생산력이 발전하고 따라서 생산수단생산의 급속한 확대의 기술적수단이 발전하면 할수록—따라서 또 잉여생산물량이 그 가치로 보나 그 가치를 나타내는 사용가치량으로 보나 크면 클수록—그만큼 다음과 같은 두가지가 더 크게 되는것이다.

1) A, A′, A″ 등등의 수중에서 잉여생산물의 형태로 있는 잠세적인 추가적생산자본과 또

2) A, A′, A″ 의 수중에 있는 화폐로 전화된 이 잉여생산물의 량, 즉 잠세적인 추가적화폐자본의 량. 따라서 례컨대 풀러튼이 보통 의미에서의 과잉생산에 관하여서는 알려고 하지 않으나 자본, 즉 화폐자본의 과잉생산은 알려고 한다면 이것은 또다시 가장 우수한 자산계급경제학자들조차 자기들의 제도의 기구에 대하여서 전혀 모르고있다는것을 증명한다.

자본가 A, A′, A″(Ⅰ부류)에 의하여 직접 생산되고 취득되는 잉여생산물이 자본축적, 즉 확대재생산의 현실적기초라면—그것이 현실적으로는 B, B′, B″ 등(Ⅰ부류)의 수중에서야 비로소 이 자격으로서 기능하게 되는것이지만—이 잉여생산물은 그것이 화폐라는 번데기로 된 상태에서는—축장화폐로서는 그리고 다만 점차로 형성되고있을따름인 잠세적화폐자본으로서는—절대로 비생산적인것이며 이 형태로 생산과정에 병행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생산과정의 밖에 놓여있는것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적생산의 부담(dead weight)이다. 잠세적화폐자본으로서 적립되여가는 이 잉여가치를 리윤 및 수입으로 사용될수 있는것으로 만들고저 하는 욕망은 신용제도와 유가증권에서 그 노력의 목표를 발견한다. 이에 의하여 화폐자본은 또 다른 형태로 자본주의적생산체계의 진행과 강력한 발전에 대한 거대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잠세적화폐자본으로 전화되는 잉여생산물은 그 량으로 보면 이미 기능하고있는 자본—그의 기능에서 이 잉여생산물이 나온것이다.—의 총액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클것이다. 그러나 해마다 재생산되는 잠세적화폐자본의 량이 절대적으로 증대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의 분렬도 보다 쉽게 되며 그리하여 그 자본은 보다 급속히 특수한 기업—동일한 자본가의 수중에 있는것이든, 타인(례컨대 유산분배에 참가하는 가족성원 등등)의 수중에 있는것이든—에 투하될수 있다. 여기에서 화폐자본의 분렬이라는것은 그것이 새로운 화폐자본으로서 새로운 독립적인 기업에 투하되기 위하여 원래의 자본으로부터 아주 분리되는것을 의미한다.

잉여생산물의 판매자인 A, A′, A″ 등(Ⅰ부류)은 그 잉여생산물을 생산과정의 직접적결과로서 얻었으며 이 생산과정

은 단순재생산에 있어서도 필요한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선대외에는 아무런 류통행위도 전제로 하지 않으며 그리고 이리하여 그들은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의 현실적기초를 제공하고 사실상 잠세적추가자본을 만들어내는데 이에 대하여 B나 B′나 B″ 등(Ⅰ부류)은 사정이 다르다. 1) B, B′, B″ 의 수중에서만 비로소 A나 A′나 A″ 등의 잉여생산물은 현실적으로 추가적불변자본으로서 기능한다(생산자본의 다른 요소인 추가적로동력, 즉 추가적가변자본은 당분간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2) 이 잉여생산물이 그들의 수중에 들어오기 위하여서는 류통행위가 필요한바 그들은 이 잉여생산물을 구매하지 않으면 안된다.

1)에 대하여 여기에서 지적하여야 할것은 A나 A′나 A″(Ⅰ부류)에 의하여 생산되는 잉여생산물(잠재적인 추가적불변자본)의 큰 부분은 그해에 생산되는것이지만 다음해나 또는 그보다도 더 후에 가서야 비로소 현실적으로 B나 B′나 B″의 수중에서 산업자본으로서 기능할수 있다는것이다. 2)에 대하여서는 이 류통과정에 필요한 화폐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문제이다.

B나 B′나 B″(Ⅰ부류) 등이 생산하는 생산물자체가 다시 현물로서 동일한 생산과정에 들어가는 한에서는 두말할것도 없이 분명히 그 몫만큼 그들자신의 잉여생산물의 일부분이 직접(류통의 매개없이) 그들의 생산자본으로 이전되며 불변자본의 추가적요소로서 생산과정에 들어가는것이다. 그러나 그 한에 있어서는 그들은 A나 A′ 등(Ⅰ부류)의 잉여생산물을 화폐화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점은 제쳐놓고 그 화폐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가 알고있는바에는 그들도 그들 각자의 잉여생산물을 판매하는데 의하여 A나 A′ 등과 마찬가지

로 자기의 축장화폐를 형성하였는데 이제는 축장화폐로서 적립되였고 다만 잠재적일따름인 그들의 화폐자본이 현실적으로 추가적화폐자본으로서 기능하여야 할 목표에 도달한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써는 그저 빙빙 돌아칠뿐이다. 아직도 문제는 의연히 B 등(Ⅰ부류)이 이전에 류통으로부터 끌어내여 적립한 화폐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단순재생산의 고찰에서도 알고있는 바와 같이 Ⅰ과 Ⅱ의 자본가들의 잉여생산물을 교환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의 수중에 일정한 화폐량이 있어야 한다. 단순재생산에서는 다만 수입으로서 소비수단에 지출되는데 복무한 화폐는 자본가들이 그들 각자의 상품의 교환을 위하여 그것을 선대한 정도에 따라 그들의 수중에로 복귀하였다. 확대재생산에서도 동일한 화폐가 다시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기능은 다르다. A 등등과 B 등등(Ⅰ부류)은 잉여생산물을 잠재적인 추가적화폐자본으로 전화시키기 위하여 화폐를 서로 번갈아 제공하며 또한 새로 형성된 화폐자본을 구매수단으로서 서로 번갈아 류통에 도로 투입한다.

여기서 유일한 전제로 되고있는것은 국내에 존재하는 화폐량만으로(류통속도 등은 변함없는것이라 하고) 능동적인 류통을 위하여서도 준비축장화폐를 위하여서도 충분하다는것—따라서 우리가 이미 본바와 같이 단순한 상품류통의 경우에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는 전제와 동일한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축장화폐의 기능이 달라졌을따름이다. 또 현존화폐량도 더 크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 하면 1) 자본주의적생산에서는 모든 생산물은(새로 생산되는 귀금속과 생산자자신에 의하여 소비되는 약간의 생산물을 제외하고) 상품으로서 생산되며 따라서 화폐라는 번데기로 되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

으면 안되기때문이다. 2) 자본주의적기초우에서는 상품자본의 량과 그 가치량은 절대적으로 더 클뿐만아니라 비할바없이 큰 속도로 증대하기때문이다. 3) 점점 증대되는 가변자본이 부단히 화폐자본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이다. 4) 생산의 확대와 함께 새로운 화폐자본의 형성이 진행되므로 이 자본의 축장화폐형태의 재료도 거기에 존재하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이다.—이것이 그대로 적용되는것은 신용제도에도 금속을 주로 하는 류통이 수반되는 자본주의적생산의 첫단계인데 그것은 또 신용제도가 가장 발달한 단계에도 신용제도의 기초가 의연히 금속류통인 한에서는 역시 적용되는 것이다. 이 후자의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귀금속의 추가적생산은 그것이 번갈아 풍부하여졌다 빈약하여졌다 하는 한에서 비교적 장기간뿐만아니라 극히 짧은 기간내에도 상품가격에 교란적영향을 미칠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체 신용기구가 각종 조작이나 방법이나 기술적설비에 의하여 부단히 현실의 금속류통을 상대적으로 점점 감소되는 최저한으로 제한하려고 애쓴다. 그와 동시에 전체 기구의 인위성과 그 정상적진행이 교란되는 기회도 증대된다.

B나 B′나 B″ 등(Ⅰ부류)의 잠재적인 새로운 화폐자본이 현실적자본으로서 작용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생산물(그들의 잉여생산물의 제 부분)을 서로 매매하여야 하는수도 있다. 그한에서는 잉여생산물의 류통에 선대된 화폐는—정상적인 진행에 있어서는—B 등이 그것을 자기들 각자의 상품의 류통을 위하여 선대한것과 동일한 비률로 그들 각자의 수중에 환류한다. 만일 화폐가 지불수단으로서 류통한다면 그 경우에는 호상 매매가 일치하지 않는 한 그 차액만을 지불하면 된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나 여기에서 진행되고있는것과 마찬

가지로 우선 가장 단순하고 가장 시초적인 형태의 금속류통을 전제로 하는것이 중요하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하는데 의하여 류출이나 환류나 차액결제 등 요컨대 신용제도하에서 의식적으로 규제되는 과정으로서 나타나는 모든 계기들이 신용제도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것으로서 나타나는 한에서이며 사태가 그후에 반영된 형태로서가 아니라 자연발생적인 형태로서 나타나기때문이다.

C. 추가적가변자본

이제까지는 추가적불변자본만을 고찰하였으므로 이제는 추가적가변자본의 고찰에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제1권에서 상세히 론술한바와 같이 로동력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우에서는 언제든지 마련되여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고용로동자수 또는 로동력의 량을 증가시키지 않고서도 보다 많은 로동을 움직일수 있다. 그러므로 당분간 이 점을 이 이상 상세히 론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새로 형성된 화폐자본중 가변자본으로 전화될수 있는 부분은 그것이 전화되여야 할 로동력을 언제든지 발견한다고 가정하여야 한다. 역시 제1권에서 론술한바와 같이 주어진 자본은 축적이 없이도 어느 한도까지는 자체의 생산규모를 확대할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로 되고있는것은 특수한 의미에서의 자본축적이므로 생산의 확대는 잉여가치의 추가자본으로의 전화를 조건으로 하며 따라서 또 생산의 자본기초의 확대를 조건으로 하는것이다.

금생산자는 자기의 금형태의 잉여가치의 일부분을 잠세적화폐자본으로서 축적할수 있다. 그것이 필요한 량에 달하

기만 하면 그는 그것을 직접 새로운 가변자본으로 전화시킬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하여 먼저 자기의 잉여생산물을 판매하지 않으면 안될것은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는 그것을 직접 불변자본의 요소들로도 전화시킬수 있다. 그렇지만 이 나중의 경우에는 그는 불변자본의 이러한 물적요소들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에 지금까지의 서술에서 가정한바와 같이 매개 생산자가 저장을 위하여 생산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기성품을 시장에 가져가든 그가 주문을 받고 생산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다. 두 경우에 다 생산의 현실적확대, 즉 잉여생산물이 전제로 되고있는데 그것은 첫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것으로서 전제되고 둘째 경우에는 잠재적으로 존재하는것, 제공될수 있는것으로서 전제되고있다.

2. Ⅱ부류에서의 축적

이상에서는 A, A′, A″(Ⅰ부류)가 그들의 잉여생산물을 동일한 Ⅰ부류의 B, B′, B″ 등등에게 판매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A(Ⅰ부류)가 그의 잉여생산물을 Ⅱ부류의 B에게 판매함으로써 화폐화한다고 하자. 그렇게 될수 있는것은 다만 A(Ⅰ부류)가 B(Ⅱ부류)에게 생산수단을 판매하고 그후에 소비수단을 구매하지 않는다는데 의해서만, 즉 A측의 일방적판매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Ⅱc가 상품자본의 형태로부터 생산불변자본의 현물형태로 전화될수 있는것은 다만 Iv 뿐만아니라 적어도 Ⅰm의 일부분도 소비수단의 형태로 존재하는 Ⅱc의 일부분과 교환되는데 의해서만 가능한데 이제 A가 자기의 Ⅰm을 화폐화하는것은 이 교환이

수행되지 않는데 의하여, 즉 이 A가 자기의 Ⅰm을 판매하여 Ⅱ부류로부터 얻은 화폐를 소비수단 Ⅱc의 구매에 소비할 대신에 오히려 류통으로부터 끌어내기때문이다. 이러한 한에서는 확실히 A(Ⅰ부류)측에는 잠재적인 추가적화폐자본의 형성이 진행되지만 다른측에는 B(Ⅱ부류)의 불변자본중 가치량으로 보아 그와 동등한 일부분이 생산불변자본의 현물형태로 전화되지 못하고 상품자본의 형태로 고착되여있게 된다. 바꾸어말하면 B(Ⅱ부류)의 상품의 일부분이 팔리지 않게 되여있으며 그것도 우선 그것이 팔리지 않으면 그가 자기의 불변자본을 생산적형태로 전부는 재전화할수 없는 그런 일부분이 팔리지 않게 되여있다. 그러므로 이 B에 관하여서는 과잉생산이 일어나는데 이 과잉생산은 또한 이 부분에 관하여 재생산—지어는 불변의 규모에 있어서조차—을 방해하는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A(Ⅰ부류)측의 잠재적인 추가적화폐자본은 확실히 잉여생산물(잉여가치)의 화폐화된 형태이지만 그러나 잉여생산물(잉여가치)자체로 보면 그것은 이 경우에는 단순재생산의 현상이고 아직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의 현상은 아니다. 달라지지 않는 규모에서의 Ⅱc의 재생산이 진행되기 위하여서는 Ⅰ(v+m)은 결국 Ⅱc와 교환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것은 여하튼 m의 일부분에 적용된다. A(Ⅰ부류)는 자기의 잉여생산물을 B(Ⅱ부류)에 판매하는데 의하여 그것에 대응하는 불변자본가치부분을 현물형태로 B(Ⅱ부류)에 제공하였으나 동시에 류통으로부터 화폐를 끌어냄으로써—자기의 판매를 그후의 구매에 의하여 보충하는것을 그만둠으로써—가치로 보아 그것과 동등한 B(Ⅱ부류)의 상품부분을 판매될수 없게 하였다. 따라서 우리가 사회적총재생산—그것은 Ⅰ과 Ⅱ의 자본가들을 다같이 포함한다.—을 념두에 둔다면

A(Ⅰ부류)의 잉여생산물이 잠재적화폐자본으로 전화한다는것은 가치량으로 보아 그것과 동등한 B(Ⅱ)의 상품자본이 생산(불변)자본으로 재전화될수 없다는것을 표시한다. 즉 잠재적으로 확대된 규모에서의 생산을 표시하는것이 아니라 단순재생산의 저애를, 따라서 단순재생산에 있어서의 부족을 표시하는것이다. A(Ⅰ부류)의 잉여생산물의 형성과 판매는 그자체가 단순재생산의 정상적현상이므로 여기서는 이미 단순재생산의 기초우에서도 다음과 같은 호상 제약하는 현상들을 보게된다. 즉 Ⅰ부류에서의 잠재적인 추가적화폐자본의 형성(따라서 Ⅱ의 립장에서 보면 소비부족), Ⅱ부류에서의 생산자본으로 재전화될수 없는 상품재고의 체화(따라서 Ⅱ에서의 상대적과잉생산), Ⅰ에서의 화폐자본의 과잉과 Ⅱ에서의 재생산에서의 부족.

이 점에는 이 이상 더 머무르지 않고 다만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하여둔다. 단순재생산의 서술에 있어서는 Ⅰ과 Ⅱ의 잉여가치가 전부 수입으로서 지출된다는것을 전제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잉여가치의 일부분은 수입으로서 지출되고 다른 부분은 자본으로 전화된다. 현실적축적은 다만 이 전제하에서만 진행된다. 축적이 소비를 희생으로 하여 진행된다는것—이러한 일반적인 표현방식—은 그자체가 자본주의적생산의 본질과 모순되는 환상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자본주의적생산의 목적이고 추진적동기가 소비이고 잉여가치의 획득과 그 자본화, 즉 축적이 아니라는것을 전제로 하고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Ⅱ부류에서의 축적을 좀 더 상세히 고찰하여보자.

IIc측의 첫째 곤난, 즉 II부류의 상품자본의 구성부분으로부터 II부류의 불변자본의 현물형태로의 전화는 단순재생산에 관련된것이다. 이전의 공식을 들기로 하자.

(1,000v+1,000m) I 이

2,000 IIc와 교환된다.

이제 례컨대 I부류의 잉여생산물의 절반, 즉 $\frac{1,000}{2}$m 또는 500Im이 다시 불변자본으로서 I부류에 합체된다고 하면 이러한 잉여생산물중 I부류에 보류되는 부분은 IIc의 어떤 부분도 보상할수 없다. 그것은 소비수단으로 전화하지 않고(만약 전화한다면 I부류와 II부류사이에서의 류통의 이 부분에서는—I부류의 로동자들에 의하여 매개되는, 1,000Iv에 의한 1,000IIc의 보상과 달라서—현실적인 호상교환, 즉 상품의 쌍방의 장소변환이 일어난다.) I부류자체에서 추가적생산수단으로서 복무하여야 한다. 그것은 이 기능을 I부류와 II부류에서 동시에 수행할수는 없다. 자본가는 자기의 잉여생산물의 가치를 소비수단에 지출하면서 동시에 이 잉여생산물자체를 생산적으로 소비할수는 없다. 즉 자기의 생산자본에 합체할수는 없다. 따라서 2,000I(v+m)가 아니고 1,500만이, 즉(1,000v+500m) I만이 2,000IIc로 교환될수 있다. 따라서 500IIc는 그의 상품형태로부터 II부류의 생산(불변)자본으로 재전화될수 없다. 따라서 II부류에서는 생산과잉이 일어날것이며 그 과잉의 크기는 바로 I부류에서 진행되는 생산확대의 크기에 상응할것이다. II부류의 과잉생산은 아마도 I부류에 몹시 반작용하며 그때문에 I부류의 로동자들이 II부류의 소비수단에 지출한 1,000까지도 일부만 환류할것이며 따라서 이 1,000은 가변적화폐자본의 형태로는 I부류의

자본가들의 수중으로 되돌아오지 않을것이다. 이 Ⅰ부류의 자본가들은 단지 재생산을 확대하려는 그 기도때문에 불변의 규모에서의 재생산에 있어서까지도 큰 지장을 받는다는것을 느끼게 될것이다. 이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것은 Ⅰ부류에서는 사실상 단순재생산만이 일어났다는것이며 그리고 공식에서 보는 요소들은 장래의 확대, 례컨대 그 다음해의 확대를 위하여 다르게 조합되여있을뿐이라는것이다.

이 곤난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해볼수도 있을것이다. 즉 자본가의 창고에 누워있으며 직접 생산자본으로 전화될수 없는 500Ⅱc는 결코 과잉생산인것은 아니며 도리여 지금까지 우리가 무시하여온 재생산의 하나의 필연적요소를 나타낸다. 이미 본바와 같이 일부는 Ⅰ자체내부에서의 새로운 화폐자본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또 일부는 점차 소비되는 고정자본의 가치를 과도적으로 화폐형태로 확보하기 위하여 화폐준비가 많은 점에서 적립되여야 하며 따라서 류통으로부터 끌려나와야 한다. 그러나 공식이 표시하는 바에 의하면 화폐나 상품은 모두 처음부터 오직 Ⅰ과 Ⅱ의 자본가들의 수중에 있을뿐이며 여기에는 상인도 화폐거래자도, 은행업자도 또 다만 소비만 하고 상품생산에는 직접 참가하지 않는 제 계급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품재고가 여기서는 각기 생산자들의 수중에서 부단히 형성되는것도 재생산의 기계를 정지시키지 않기 위하여서는 불가결한것이다. 따라서 Ⅱ의 자본가들의 창고에 누워있는 500Ⅱc가 표시하는 소비수단의 상품재고는 재생산에 포함되는 소비과정의 련속성을 매개하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어느해로부터 다음해로의 이행을 매개한다. 이 소비기금은 여기서는 또 그 판매자인 동시에 생산자이기도 한 사람의 수중에 있는데 그것은 금년

에 령으로 감소되여 그다음해에 령에서 시작할수는 없으며 이것은 바로 오늘로부터 래일로의 이행에 있어서도 그럴수 없는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상품재고의 형성은 비록 그 규모는 변동된다 하더라도 부단히 새로 생기지 않으면 안되므로 우리의 자본주의적생산자 Ⅱ는 자기의 생산자본의 일부분이 일시적으로 상품형태대로 누워있어도 자기의 생산과정을 계속 진행할수 있게 하는 화폐준비자본을 가지고있지 않으면 안된다. 전제에 의하면 그들은 상인적 전체업무와 생산업무를 겸하고있다. 따라서 그들은 재생산과정의 개개의 기능들이 여러가지 종류의 자본가들간에서 독립화되여있으면 상인들의 수중에 있는 추가적화폐자본도 자유로 처분할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반박할수 있다. 1) 이러한 재고형성과 그 필요성은 Ⅰ과 Ⅱ를 포함한 모든 자본가들에게 적용되는것이다. 단순한 상품판매자로서 고찰한다면 그들은 각이한 종류의 상품들을 판매한다는것으로써만 서로 구별된다. Ⅱ의 상품의 재고는 그 이전부터의 Ⅰ의 상품의 재고를 전제로 하는것이다. 만일 우리가 한측에서의 이 재고를 무시한다면 다른측에서의 재고는 무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그것을 두 측에서 다 고려하여도 그것으로 하여 문제는 조금도 변경되지 않는다. 2) 금년은 Ⅱ측에서 래년을 위한 상품재고를 가지고 끝나는것과 마찬가지로 금년은 동일한 Ⅱ측에서 그전해부터 물려받은 상품재고를 가지고 시작한것이다. 따라서 년간재생산—그 가장 추상적인 표현으로 환원된것—의 분석에서는 우리는 상품재고를 두 경우에 다 지워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우리가 금년의 전체 생산을, 따라서 상품재고로서 금년으로부터 래년에 넘기

는것도 금년의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한편에서는 또 전해로부터 금년에 남겨준 상품재고를 금년에서 공제하는것이며 이리하여 우리는 사실상 1평균년의 총생산물을 분석대상으로 우리앞에 놓게 된다. 3) 우리가 단순재생산의 고찰에 있어서는 회피하려는 곤난에 봉착하지 않았다는 단순한 사정은 여기서의 문제가 다만 Ⅰ부류의 요소들의 다른 조합(재생산에 관한)에 의해서만, 즉 그것 없이는 확대된 규모에서의 어떠한 재생산도 근본적으로 일어날수 없는 조합의 변경에 의하여서만 일어나는 하나의 특수한 현상에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3. 공식에 의한 축적의 서술

이제 다음의 공식에 따라 재생산을 고찰하자.

공식(a) $\left.\begin{array}{l}\text{Ⅰ. } 4,000c+1,000v+1,000m=6,000\\ \text{Ⅱ. } 1,500c+\ 376v+\ 376m=2,252\end{array}\right\}$ 합계=8,252.

우선 지적할것은 년간의 사회적생산물의 총액이 8,252로서 제1공식에서 9,000이였던것에 비하여 작다는것이다. 그보다 훨씬 큰 액수를 가정하여도, 례컨대 그것을 10배로 하여도 될것이다. 제1공식의 총액보다 작은 액수를 택한것은 바로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이것은 여기에서는 보다 큰 투자로써 운영되는 생산을 의미할따름이다.)은 생산물의 절대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것, 또한 이 재생산은 주어진 상품량에 있어서는 주어진 생산물의 여러가지 요소들의 각이한 조합 또는 각이한 기능상의 규정을 전제로 할따름이며 따라서 가치량으로 보면 우선은 단순재생산에 불과하다는것을 명

확히 하기 위해서이다. 변경되는것은 단순재생산의 주어진 요소들의 량이 아니라 그 질적인 규정이며 이 변경은 그뒤에 오는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의 물질적전제인것이다.(58)

가변자본과 불변자본간의 비률이 다른 경우에는 공식을 달리 표시할수도 있을것이다. 례컨대 다음과 같이 표시할수 있다.

공식(b) $\left.\begin{matrix}\text{Ⅰ.}\ 4,000c+875v+875m=5,750\\ \text{Ⅱ.}\ 1,750c+376v+376m=2,502\end{matrix}\right\}$ 합계=8,252.

이렇게 되면 이 공식은 단순한 규모에서의 재생산을 위하여 배렬된것으로 될것이며 그리하여 잉여가치는 전부 수입으로서 지출되고 조금도 축적되지 않을것이다. (a)에서나 (b)에서나 두 경우에 다 년간생산물의 가치량은 동일한것인데 다만 (b)의 경우에는 년간생산물의 요소들의 기능배렬은 동일한 규모에서의 재생산이 다시 시작되도록 되여있으며 (a)의 경우에는 그 기능배렬이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의 물질적기초를 이루고 있을뿐이다. 즉 (b)에서는 (875v+875m) Ⅰ=1,750 Ⅰ (v+m)이 남음이 없이 1,750Ⅱc와 교환되는데 (a)에서는 (1,000v+1,000m) Ⅰ=2,000 Ⅰ (v+m)이 1,500Ⅱc와 교환될 때에 Ⅰ부류에서의 축적을 위하여 500 Ⅰm이라는 초과분이 남게 되는것이다.

그러면 공식 (a)를 더 상세히 분석해보기로 하자. Ⅰ에서나 Ⅱ에서나 다 잉여가치의 절반은 수입으로서 지출되지 않고 축적된다는것, 즉 추가자본의 요소로 전환된다는것을 전제로 하자. 1,000 Ⅰm의 절반=500은 이러저러한 형태로 축적되고

---

(58) 이것은 제1권(제22장 제5절, 634페지 주(65)[106])에서 다른 관점으로부터 론술한 자본축적에 관한 제임즈 밀과 S. 베일리사이에서의 론쟁, 즉 산업자본의 크기가 변함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작용의 확장가능성에 관한 론쟁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는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는 나중에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추가적화폐자본으로서 투하되여야 하므로, 즉 추가적생산자본으로 전화되여야 하므로(1,000v+500m) Ⅰ만이 수입으로서 지출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Ⅱc의 정상적인 크기로서 나타나는것은 역시 1,500뿐이다. 1,500Ⅰ(v+m) 대 1,500Ⅱc간의 교환은 단순재생산과정으로서 이미 서술되였으므로 그 이상 연구할 필요는 없다. 마찬가지로 4,000Ⅰc도 여기서는 고찰되지 않는다. 그것은 새로 시작되는 재생산(이것은 이번에는 확대된 규모에서 진행된다.)을 위한 그 재배렬도 역시 단순재생산의 과정으로서 론술되였기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연구의 대상으로 남는것은 다만 500Ⅰm과 (376v+376m)Ⅱ뿐인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Ⅰ과 Ⅱ의 각 내부관계가 고찰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두 부류간의 운동이 고찰되는 한에서 그것이 연구되는것이다. Ⅱ에서도 역시 잉여가치의 절반이 축적된다는것이 전제로 되고있으므로 Ⅱ에서는 188이 자본으로 전화되게 되며 그중 $\frac{1}{4}$=47이 가변자본으로 전화되게 되며 이것을 개수로 48이라 하면 나머지 140이 불변자본으로 전화되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는데 그러한 문제가 존재한다는것만으로도 보통의 견해에 대하여서는 기묘한것으로 보이지 않을수 없다. 보통의 견해란 어떤 종류의 상품이 다른 종류의 상품과 교환되는것이, 또는 같은 말이지만 상품이 화폐와 교환되고 그 화폐가 또 다른 종류의 상품과 교환되는것이 상례라고 하는 견해이다. 140Ⅱm은 다만 Ⅰm의 상품중 그것과 동일한 가치액의 일부분에 의하여 보상됨으로써만 생산자본으로 전화될수 있다. 두말할것도 없이 Ⅰm중 Ⅱm과 교환되여야 할 부분은 Ⅰ의 생산에도, Ⅱ의

생산에도 들어갈수 있는 생산수단으로나 그렇지 않으면 오직 Ⅱ의 생산에만 들어갈수 있는 생산수단으로 구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보상은 Ⅱ측에서의 일방적인 구매에 의하여서만 일어날수 있다. 왜냐 하면 이제부터 고찰되여야 할 잉여생산물 500Ⅰm은 전부 Ⅰ내부에서의 축적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할것이며 따라서 Ⅱ의 상품과 교환될수 없는것이기때문이다. 바꾸어말하면 그것이 Ⅰ에 의하여 동시에 축적도 되고 소비도 될수는 없기때문이다. 따라서 Ⅱ는 140Ⅰm을 현금으로써 구매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후에 Ⅱ의 상품이 Ⅰ에게 판매되는데 의하여 이 화폐가 Ⅱ에게로 환류하지는 않기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매년의 새로운 생산에 있어서 그 생산이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인 한 부단히 반복되는 과정인것이다. 그것을 위한 화폐원천은 Ⅱ의 어디에 있는가?

도리여 Ⅱ는 새로운 화폐자본의 형성을 위하여서는, 즉 현실적축적을 수반하는 자본주의적생산에서 이 축적의 조건으로 되고있으며 사실상으로는 우선 단순한 화폐축장으로서 나타나는 새로운 화폐자본의 형성을 위하여서는 완전히 불모의 땅처럼 보인다.

우선 376Ⅱv가 있다. 로동력에 선대된 이 376이라는 화폐자본은 Ⅱ의 상품의 구매에 의하여 부단히 화폐형태로서의 가변자본으로서 Ⅱ의 자본가에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부단히 반복하여 출발점—자본가의 주머니—으로부터 떠나갔다가 다시 거기로 돌아오는것은 이 순환에서 돌고있는 화폐를 결코 증가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은 결코 화폐축적의 원천이 아니다. 이 화폐는 또한 적립되는 잠재적인 새로운 화폐자본을 형성하기 위하여 이 류통으로부터 끌려나올수도 없다.

그러나 잠간만! 여기에 다소라도 벌이를 할 구멍이 없는가?

Ⅱ부류는 자기가 사용하는 로동자들이 그들자신이 생산한 상품을 Ⅱ로부터 다시 구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서 Ⅰ부류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Ⅱ부류는 로동력의 구매자인 동시에 자기가 사용하는 로동력의 소유자들에 대한 상품의 판매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Ⅱ부류는

1) 이것은 Ⅰ부류의 자본가에게도 공통한것이지만 간단히 임금을 그 정상적인 평균수준이하로 인하할수 있다. 이에 의하여 가변자본의 화폐형태로서 기능하는 화폐의 일부분은 유리된다. 그리고 이것은 이 동일한 과정이 부단히 반복되면 Ⅱ부류에서의 화폐축장의, 따라서 또 잠재적인 추가적화폐자본형성의 하나의 정상적원천으로 될수 있을것이다. 우연한 사기적리윤은 정상적인 자본형성을 문제로 하는 여기에서는 물론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될것은 현실적으로 지불되는 정상적인 로임(그것은 다른 사정들이 변하지 않는 한 가변자본의 크기를 규정한다.)은 결코 자본가들의 호의에서 지불되는것이 아니라 주어진 관계하에서 지불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의 설명방식은 이것으로 제거된다. 우리는 376v를 Ⅱ부류가 지출하여야 할 가변자본으로서 전제하였으므로 지금 새로 봉착하는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서도 갑자기 Ⅱ가 선대하는것은 376v가 아니라 다만 350v에 불과하다는 가정을 끄집어내서는 안된다.

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Ⅱ부류는 전체로서 보면 우에서 말한바와 같이 로동력의 구매자인 동시에 자기자신의 로동자에 대한 자기의 상품의 판매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Ⅰ부류보다 유리한것이다. 그런데 이 유리한 점을 어떻게 리용할수 있는가—어떻게 명목상으로는 정상적인 로임을 지불하여도 사실상은 그 일부분을 해당한 상품등가없이 다시 되

돌려올수 있는가, 다시말하면 도로 훔쳐낼수 있는가, 어떻게 이러한것을 혹은 현물지급제도에 의하여, 혹은 류통매개물의 위조(아마 법적으로는 붙잡히지 않을수 있는것이라 하더라도)에 의하여 달성할수 있는가—이것에 관하여는 누구에게나 명백한 자료들이 모든 공업국에 다 있다. 례컨대 영국에도 미국에도 있다(이 기회에 이것을 적당한 례들에 의하여 좀 더 상세히 설명할것.). 이것은 (1)에서 서술한것과 같은 방식인데, 다만 그것이 변장되여있고 우회적으로 수행될따름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앞방식과 마찬가지로 배제되여야 할것이다. 여기에서 문제로 되는것은 명목적으로 지불되는 로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불되는 로임이다.

우리가 알고있는바와 같이 자본주의적기구의 객관적분석에 있어서는 지금도 이 기구에 례외적으로 붙어있는 어떤 오점들을 리론적곤난들을 제거하기 위한 둔사로서 리용할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에 대한 자산계급적비판가들의 대다수는 마치도 내가 례컨대 《자본론》 제1권에서 자본가가 로동력의 현실적가치를 지불한다—자본가는 대체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가정함으로써 마치도 자본가들에게 대하여 어떤 부당한짓을 한것처럼 떠들어댄다(여기에서 나에게 주어진 관용으로써 쇄플레[107]를 인용하여도 좋을것이다.)!

따라서 상술한 목적을 위하여서는 376Ⅱv로써는 아무 소용도 없다.

그러나 376Ⅱm으로써는 더욱 어려울것 같다. 이 경우에는 다만 동일한 부류의 자본가들만이 서로 대립하며 자기들이 생산한 소비수단을 서로 판매하고 서로 구매한다. 이 교환에 필요한 화폐는 류통수단으로서 기능할뿐이며 정상적인 진행에 있어서는 관계자들이 그것을 류통에 선대한 정도에

따라서 그들에게로 환류하여 부단히 새로 이 궤도를 달리지 않으면 안된다.

이 화폐를 잠재적인 추가적화폐자본의 형성을 위하여 류통으로부터 끌어내는것은 오직 두가지 방도로만 가능한것 같이 보인다. 그 한가지 방도는 Ⅱ의 자본가들의 일부분이 다른 부분을 기만하여 돈도적질에 성공하는것이다. 새로운 화폐자본의 형성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알고있는바와 같이 미리 류통매개물이 증가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어느 편에서든 화폐가 류통으로부터 끌려나와 축장화폐로서 적립되여야 하는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화폐가 훔친것일수 있다는것, 따라서 Ⅱ의 자본가들의 어떤 부분에서의 추가적 화폐자본의 형성이 다른 일부분의 직접적화폐손실과 결부될 수 있다는것은 사태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Ⅱ의 자본가들중 기만을 당한 부분은 좀 호사스럽게 살지 못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그저 그뿐일것이다.

또 하나의 방도는 Ⅱm중 필요생활수단의 형태로 나타나는 부분이 Ⅱ부류내에서 직접 새로운 가변자본으로 전화되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것은 이 장의 마지막(제4절)에서 연구될것이다.

A. 제 1 례

(A) 단순재생산의 공식

Ⅰ. 4,000c+1,000v+1,000m=6,000
Ⅱ. 2,000c+ 500v+ 500m=3,000
} 합계=9,000

(B)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의 출발공식

Ⅰ. 4,000c+1,000v+1,000m=6,000
Ⅱ. 1,500c+ 750v+ 750m=3,000
} 합계=9,000

공식 (B)에서 Ⅰ부류의 잉여가치의 절반, 즉 500이 축적된다고 가정하면 우선 (1,000v+500m)Ⅰ 또는 1,500Ⅰ(v+m)이 1,500Ⅰc에 의하여 보상되여야 한다. 그때에 Ⅰ부류에서 남는것은 4,000c+500m인데 그중 후자가 축적되는것이다. (1,000v+500m)Ⅰ이 1,500Ⅱc에 의하여 보상되는것은 단순재생산의 한 과정이다. 이것은 단순재생산의 고찰에서 이미 해명되였다.

500Ⅰm중 400은 불변자본으로, 100은 가변자본으로 전화되여야 한다고 가정하자. 이리하여 자본화되여야 할 이 400m의 Ⅰ부류내부에서의 교환은 이미 고찰되였다. 그것은 직접 Ⅰc에 합체될수 있다. 그때에 Ⅰ부류에서는 다음과 같이 된다.
4,400c+1,000v+100m(이 100m은 100v로 전화되여야 한다.)

Ⅱ부류측에서는 축적을 목적으로 Ⅰ부류로부터 100Ⅰm(생산수단으로서 존재하는)을 구매하며 이 후자가 이번에는 Ⅱ부류의 추가적불변자본을 형성하는데 그 목적을 위하여 Ⅱ부류가 지불한 화폐 100은 Ⅰ부류의 추가적가변자본의 화폐형태로 전화된다. 그때에는 Ⅰ부류의 자본은 4,400c+1,100v(후자는 화폐로서 존재한다.)=5,500으로 된다.

Ⅱ부류는 이제는 불변자본으로서 1,600c를 가지고있다. 이 자본을 운용하기 위하여 Ⅱ부류는 화폐로 50v를 새로운 로동력의 구입에 추가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리하여 Ⅱ부류의

가변자본은 750에서 800으로 증대한다. 이러한 Ⅱ부류의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합계 150의 증대는 Ⅱ부류의 잉여가치로 지불된다. 따라서 750Ⅱm중 Ⅱ부류의 자본가들의 소비기금으로서 남는것은 600m뿐이며 그들의 년간생산물은 이제는 다음과 같이 나뉘여진다.

Ⅱ. 1,600c+800v+600m(소비기금)=3,000

소비수단으로서 생산되여 여기서 (100c+50v)Ⅱ로 전화되는 150m은 그 현물형태대로 전부 로동자들의 소비로 들어간다. 즉 상술한바와 같이 100은 Ⅰ부류의 로동자들(100Ⅰv)에 의하여, 50은 Ⅱ부류의 로동자들(50Ⅱv)에 의하여 소비된다. 사실상 Ⅱ부류에서는 전체 생산물이 축적에 필요한 형태로 마련되기때문에 여기에서는 잉여가치중 100만큼 증대된 부분이 **필요**소비수단의 형태로 재생산되지 않으면 안된다.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이 실제로 개시되면 Ⅰ부류의 가변화폐자본 100은 자체의 로동자계급의 손을 거쳐 Ⅱ부류로 환류하는데 이에 대하여 Ⅱ부류는 상품재고에서 100m을 Ⅰ부류에 넘겨주며 동시에 상품재고에서 50을 자기자체의 로동자계급에게 넘겨준다.

축적을 목적으로 변경된 배렬은 이제는 다음과 같다.

Ⅰ. 4,400c+1,100v+500소비기금=6,000

Ⅱ. 1,600c+ 800v+600소비기금=3,000

총계=9,000

(우에서와 같음.)

그중 자본은

Ⅰ. 4,400c+1,100v(화폐)=5,500
Ⅱ. 1,600c+ 800v(화폐)=2,400
} =7,900,

그런데 생산이 개시되였을 때는 다음과 같았다.

$$\left.\begin{array}{l} \text{Ⅰ.}\ 4,000c+1,000v = 5,000 \\ \text{Ⅱ.}\ 1,500c+\ 750v = 2,250 \end{array}\right\} = 7,250.$$

이제 현실적축적이 이 기초우에서 진행된다고 하면, 즉 이제 이 증가된 자본으로써 현실적으로 생산이 진행된다고 하면 다음년도말에는 다음과 같이 된다.

$$\left.\begin{array}{l} \text{Ⅰ.}\ 4,400c+1,100v+1,100m=6,600 \\ \text{Ⅱ.}\ 1,600c+\ 800v+\ 800m=3,200 \end{array}\right\} = 9,800.$$

이제 Ⅰ부류에서는 동일한 비률로 축적이 계속되며 따라서 550m은 수입으로서 지출되고 550m은 축적된다고 하자. 그러면 우선 1,100Ⅰv는 1,100Ⅱc에 의하여 보상되며 다음에 또 550Ⅰm이 같은 액수의 Ⅱ부류의 상품으로 실현되여야 하며 따라서 합계는 1,650Ⅰ(v+m)이다. 그러나 보상되여야 할 Ⅱ부류의 불변자본은 1,600뿐이며 따라서 나머지 50은 800Ⅱm중에서 보충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에 당분간 화폐를 도외시하면 이 거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Ⅰ. 4,400c+550m(자본화되여야 할 잉여가치), 이밖에 자본가들과 로동자들의 소비기금으로 1,650(v+m)이 상품 Ⅱc에 실현되여있다.

Ⅱ. 1,650c(상술한바와 같이 그중의 50은 Ⅱm에서 추가되였다.)+800v+750m(자본가들의 소비기금).

그러나 Ⅱ부류에서 v대 c의 비률이 이전대로이라면 50c에 대하여서는 25v가 더 투하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또 750m중에서 받아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된다.

Ⅱ. 1,650c+825v+725m

Ⅰ부류에서는 550m이 자본화되여야 한다. 만일 이전의

비률대로 유지된다면 그중 440은 불변자본을 형성하고 110은 가변자본을 형성한다. 이 110은 결국 725Ⅱm에서 받아야 한다. 즉 110이란 가치의 소비수단이 Ⅱ부류의 자본가들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Ⅰ부류의 로동자들에 의하여 소비될것이며 따라서 Ⅱ부류의 자본가들은 그들이 소비할수 없는 이 110m을 자본화하지 않을수 없다. 이렇게 되여 725Ⅱm중 615Ⅱm이 남는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여 Ⅱ부류가 이 110을 추가적불변자본으로 전화할 때에는 Ⅱ부류는 55의 추가적가변자본을 더 필요로 한다. 이것도 역시 Ⅱ부류의 잉여가치중에서 받지 않으면 안된다. 615Ⅱm에서 이것을 빼내면 Ⅱ부류의 자본가들의 소비를 위하여는 560이 남으며 이리하여 모든 현실적 및 잠세적 이전들이 수행된후에 자본가치는 다음과 같이 된다.

Ⅰ. (4,400c+440c)+(1,100v+110v)
=4,840c+1,210v=6,050

Ⅱ. (1,600c+50c+110c)+(800v+25v+55v)
=1,760c+ 880v=2,640

8,690

사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Ⅱ부류에서의 축적이 Ⅰ부류에서보다 급속히 수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 하면 그렇지 않다면 Ⅰ(v+m)중 상품 Ⅱc와 교환되여야 할 부분이 그것과 유일하게 교환될수 있는 Ⅱc보다 더 급속히 증대하기 때문이다.

이 기초우에서 다른 사정들이 변함없는 조건하에서 재생산이 계속된다면 그다음 년도말에는 다음과 같이 된다.

Ⅰ. 4,840c+1,210v+1,210m=7,260
Ⅱ. 1,760c+ 880v+ 880m=3,520
} =10,780

잉여가치의 분할비률이 변하지 않는다면 먼저 Ⅰ부류에 의하여 수입으로서 지출되여야 할것은 1,210v와 잉여가치의 절반 605로서 합계 1,815이다. 이 소비기금은 또 Ⅱc보다 55만큼 더 크다. 이 55는 880m으로부터 얻어야 하며 그리하여 825가 남는다. 55Ⅱm이 Ⅱc로 전화될 때에는 또 Ⅱm중에서 그것에 상응하는 가변자본=$27\frac{1}{2}$을 더 공제할것을 전제로 한다. 소비될것으로는 $797\frac{1}{2}$ Ⅱm이 남는다.

이제는 Ⅰ부류에서 자본화되여야 할것은 605m인데 그중 484는 불변자본으로 전화되고 121은 가변자본으로 전화된다. 후자는 이제는 $797\frac{1}{2}$인 Ⅱm으로부터 공제되여야 하며 그리하여 나머지는 $676\frac{1}{2}$이다. 따라서 Ⅱ부류는 121을 불변자본으로 다시 전화하며 이것을 위하여 가변자본 $60\frac{1}{2}$이 더 필요하게 된다. 이것도 또한 $676\frac{1}{2}$중에서 공제된다. 소비될것으로는 616이 남는다.

이때의 자본은 다음과 같이 된다.

Ⅰ. 불변자본 4,840+484=5,324
　　가변자본 1,210+121=1,331
Ⅱ. 불변자본 1,760+55+121=1,936
　　가변자본 $880+27\frac{1}{2}+60\frac{1}{2}=968$

합계: $\left.\begin{array}{l}\text{Ⅰ. } 5,324c+1,331=6,655\\ \text{Ⅱ. } 1,936c+\ 968v=2,904\end{array}\right\}=9,559$

년도말의 생산물은 다음과 같이 된다.

$$\left.\begin{array}{l}\text{Ⅰ. } 5,324c+1,331v+1,331m=7,986\\ \text{Ⅱ. } 1,936c+\ 968v+\ 968m=3,872\end{array}\right\}=11,858$$

동일한 계산을 반복하고 분수를 생략하면 다음년도말에 생산물은 다음과 같이 된다.

$$\left.\begin{array}{l}\text{Ⅰ. } 5,856c+1,464v+1,464m=8,784\\ \text{Ⅱ. } 2,129c+1,065v+1,065m=4,259\end{array}\right\}=13,043$$

또 그다음 년도말에 생산물은 다음과 같이 된다.

$$\left.\begin{array}{l}\text{Ⅰ. } 6,442c+1,610v+1,610m=9,662\\ \text{Ⅱ. } 2,342c+1,172v+1,172m=4,686\end{array}\right\}=14,348$$

5년간의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기간에 Ⅰ부류와 Ⅱ부류의 총자본은 5,500c+1,750v=7,250으로부터 8,784c+2,782v=11,566으로, 즉 100:160의 비률로 증대하였다. 총잉여가치는 처음에 1,750이였는데 지금은 2,782이다. 소비된 잉여가치는 처음에는 Ⅰ부류에 있어서 500, Ⅱ부류에 있어서 600, 합계 1,100이였는데 최종년도에는 Ⅰ부류에 있어서 732, Ⅱ부류에 있어서 745, 합계 1,477이였다. 따라서 그것은 100:134의 비률로 증대하였다.[108]

B. 제 2 례

이번에는 년간생산물을 9,000이라고 하고 이 년간생산물이 전부 상품자본으로서 산업자본가계급의 수중에 있고 그중 가변자본과 불변자본의 일반적평균률이 1:5로 되여있다고 가정하자. 이것은 다음과 같은것을 전제로 한다. 즉 자본주의적생산 및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로동의 생산력이 이미 현저히 발전되여있다는것, 생산규모가 이미 그전부터

현저히 확대되고있다는것, 끝으로 로동계급속에 상대적과잉인구를 산생하는 모든 조건들이 발전하고있다는 그것이다. 그때에는 년간생산물은 분수를 생략하면 다음과 같이 나뉘여진다.

Ⅰ. 5,000c+1,000v+1,000m=7,000
Ⅱ. 1,430c+ 285v+ 285m=2,000 } 합계=9,000

이제 Ⅰ부류의 자본가계급이 잉여가치의 절반인 500을 소비하고 그 나머지 절반을 축적한다고 하자. 그러면 (1,000v+500m) Ⅰ=1,500이 1,500Ⅱc로 전화되여야 할것이다. 이 경우에 Ⅱc는 1,430밖에 안되므로 70은 잉여가치로부터 첨가되여야 한다. 이것을 285Ⅱm에서 감해내면 215Ⅱm이 남는다. 이리하여 다음과 같이 된다.

Ⅰ. 5,000c+500m(자본화될 잉여가치)+1,500(v+m) 자본가들과 로동자들의 소비기금.

Ⅱ. 1,430c+70m(자본화될 잉여가치)+285v+215m.

이 경우에 70Ⅱm은 직접 Ⅱc에 합체되므로 추가적불변자본을 운동시키기 위하여서는 $\frac{70}{5}$=14의 가변자본이 필요하다. 이 14도 또한 215Ⅱm에서 공제된다. 남는것은 201Ⅱm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Ⅱ. (1,430c+70c)+(285v+14v)+201m

1,500Ⅰ(v+$\frac{1}{2}$m) 대 1,500Ⅱc의 교환은 단순재생산의 한 과정이며 이 점에 관해서는 이미 서술되여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지적하지 않으면 안될 약간의 특성이 있다. 그것은 축적이 진행되고있는 재생산에 있어서 Ⅰ(v+$\frac{1}{2}$m)은 Ⅱc에 의

하여서만 보상되는것이 아니라 IIc플루스 IIm의 일부분에 의하여 보상된다는데로부터 생기는 특성이다.

축적을 전제로 한다면 I(v+m)은 IIc보다 더 크며 단순생산에서처럼 IIc와 같지는 않다는것은 자명하다. 왜냐 하면 1) I부류는 그 잉여생산물의 일부분을 그자신의 생산자본에 합체시키며 그중의 $\frac{5}{6}$를 불변자본으로 전환시키며 따라서 이 $\frac{5}{6}$를 II부류의 소비수단에 의하여 동시에 보상할수는 없기때문이며, 2) I부류는 그의 잉여생산물중에서 II부류내부에서의 축적에 필요한 불변자본을 위하여 소재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인데 이것은 II부류가 I부류의 잉여생산물중 I부류자신에 의하여 추가적불변자본으로서 사용되는 부분을 운동시켜야 할 가변자본을 위하여 I부류에 소재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되는것과 꼭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알고있는바와 같이 현실적가변자본은 로동력으로써 구성되며 따라서 추가적가변자본도 로동력으로써 구성된다. I부류의 자본가는 자기가 사용할 추가로동력을 위하여 II부류로부터 필요생활수단을 구매하여 그것을 저장하여두거나 또는 이런 필요생활수단을 축적하여두지는 않는다. 그러나 노예소유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II부류와 거래하는것은 로동자들자신이다. 그러나 자본가의 관점에서 보면 추가로동력의 소비수단은 그가 사용하게 될 추가로동력의 생산수단 및 유지수단에 불과하며 따라서 그들의 가변자본의 현물형태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무방하다. 그들(여기에서는 I부류의 자본가)자신의 직접적활동은 추가로동력의 구매에 필요한 새로운 화폐자본을 저장하는것뿐이다. 그들이 추가로동력을 자기의 자본에 합체하기만 하면 이 화폐는 이 로동력에 대하여 II부류의 상품의 구매수단으로 되

며 따라서 이 로동력의 소비수단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

겸하여 말해두지만 자본가씨와 그의 신문은 로동력이 자기의 화폐를 지출하는 방식과 로동력이 이 화폐를 실현하는 Ⅱ의 상품에 대하여 종종 불만을 느끼고있다. 이것을 기회로 그는 철학을 론하고 문화를 말하여 박애를 설교하는데 례컨대 워싱톤주재 영국공사관 서기관 드라먼드씨가 바로 그렇게 한다. 그에 의하면 《더 네이션》지〔잡지〕는 최근 1879년 10월말에 흥미있는 글을 게재하였는데 거기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로동자는 문화에 있어서 발명의 진보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있다. 많은 물품이 그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였으나 그들은 그 사용방법을 모르며 따라서 그러한 물품을 위한 시장을 만들지 못한다.》〔물론 자본가는 누구나 로동자들이 자기의 상품을 구매할것을 원한다.〕

《로동자는 자기와 동일한 금액을 버는 목사나 변호사나 의사와 똑같은 안락을 누릴것을 원하여서는 안된다는 리유는 없다.》〔이러한 변호사나 목사나 의사는 사실상 많은 안락품을 얻을것을 바라고있다.〕

《그러나 로동자는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 문제는 여전히 어떻게 하면 로동자를 소비자로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방식으로 향상시킬수 있는가 하는것이다.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왜냐 하면 로동자의 야심은 기껏해야 자기의 로동시간의 단축을 바라는것뿐이며 또 선동가도 로동자의 정신적 및 도덕적 능력의 개선에 의하여 그의 상태를 향상시키는것보다도 오히려 로동시간의 단축을 바라는 방향으로 그를 선동하기때문이다.》(《주재국의 공상업 등에 관한 영국 대사관 및 공사관 서기관들의 보고》1879년 런던판, 404페지)

긴 로동시간은 로동자의 정신적 및 도덕적 능력의 개선에 의하여 그의 상태를 향상시켜 그를 합리적인 소비자로 만들기 위한 합리적이며 건전한 방법의 비밀인것 같다. 자본가의 상품의 합리적인 소비자로 되기 위하여서는 로동자는 무

엇보다도 먼저—그런데 선동가가 그것을 방해한다!—자기의 자본가로 하여금 자기의 로동력을 불합리하게 또 건강에 해롭게 소비하게 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본가가 말하는 합리적인 소비라는것이 무엇인가는 자본가가 몸을 굽히여 직접 자기의 로동자들의 소비거래에 참여하는 경우에—현물지급제도의 경우에 알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로동자에 대한 주택공급, 즉 그의 자본가가 동시에 그의 집주인으로 되는것도 이 제도의 많은 부문중의 하나인것이다.

로동계급의 향상을 위한 자본주의적기도에 열중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동일한 드라먼드는 동일한 보고에서 특히 로웰—로렌스—의 모범적면방직공장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있다. 녀공들을 위한 식사제공숙사는 공장의 소유자인 주식회사의것이다. 숙사의 녀관리인들은 이 주식회사의 고용인들이며 회사는 그들에게 숙사규칙을 규정해준다. 녀공들은 밤 10시전으로 숙사에 돌아오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그 정화라고 할만한것은 이 숙사규칙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의 전속경찰이 부근을 순시한다는것이다. 밤 10시후에는 녀공은 출입이 허락되지 않는다. 녀공은 회사의 소유지밖에서 하숙하여서는 안된다. 회사의 소유토지에서는 매개 집에서 매주 회사에 약 10딸라의 집세를 바친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행복에 넘친 합리적소비자를 본다.

《그러나 설비가 제일 좋은 다수의 녀공숙사들에는 어디에나 다 피아노가 있으므로, 적어도 10시간의 련속적인 직기로동을 한후에는 정말 휴식보다도 오히려 단조로운 생활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음악이나 노래나 무용이 큰 역할을 논다.》(412페지)

그러나 로동자를 어떻게 합리적소비자로 만드는가 하는

주요비밀은 이제부터 나온다. 드라먼드씨는 터나스폴스(콘네티커트강안)의 칼제조공장을 방문하였는데 그 주식회사의 회계주임 오크만씨는 특히 미국제 식탁용 철물이 품질에 있어서 영국제품보다 낫다는것을 말한후에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우리는 가격에 있어서도 영국을 이길것이다. 품질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이미 영국보다 앞서고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공인하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가격을 더 낮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강철을 더 싸게 얻고 우리의 로동을 더 값싸게 하면 된다!》(427페지)

로임의 인하와 긴 로동시간—이것이야말로 로동자를 합리적인 소비자의 영광스러운 지위로 제고시키고 문화와 발명의 진보로 말미암아 로동자의 수중에 들어갈수 있게 된 많은 물건들의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합리적이며 건전한 방법의 핵심인것이다.

따라서 Ⅰ부류가 자기의 잉여생산물중에서 Ⅱ부류의 추가적불변자본을 제공하여야 하는것처럼 Ⅱ부류도 이 의미에서 Ⅰ부류를 위한 추가적가변자본을 제공한다. 가변자본이 문제인 한에서는 Ⅱ부류는 Ⅰ부류를 위하여 또 그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총생산물, 따라서 또 특히 자기의 잉여생산물의 보다 큰 부분을 필요소비수단의 형태로 재생산함으로써 축적한다.

자본의 증대를 기초로 하는 생산에 있어서는 Ⅰ(v+m)은 Ⅱc 플루스 잉여생산물중 자본으로서 다시 합체되는 부분 플루스 Ⅱ부류의 생산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불변자본의 추가부분과 같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 Ⅱ부류의 생산확대의 최저한은 그것이 없이는 Ⅰ부류자체에서 현실적축적이, 즉 현실적생산확대가 수행될수 없는 그러한 크기이다.

그러면 우에서 방금 고찰한 경우로 되돌아가자. 그 경우의 특성은 IIc가 I (v+$\frac{1}{2}$m)보다도, 즉 I부류의 생산물중 수입으로서 소비수단에 지출되는 부분보다도 작으며 따라서 1,500 I (v+m)과 교환될 때에 이것으로부터 곧 II부류의 잉여생산물의 일부분=70이 실현된다는것이다. IIc=1,430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II부류에서 단순재생산이 진행될수 있기 위하여서는 다른 조건들이 변하지 않는 정황하에서 언제나 동일한 가치액의 I (v+m)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여기에서 더 고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보충적인 70IIm은 사정이 다르다. I부류에서는 단순히 수입을 소비수단으로 보상하는것, 즉 단순히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교환 이것이 II부류에서는 단순재생산에서와는 달리 단순히 그 불변자본이 상품자본형태로부터 불변자본의 현물형태로 재전화하는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축적과정이며 II부류의 잉여생산물의 일부가 소비수단의 형태로부터 불변자본의 형태로 전화하는것이다. I부류가 70파운드의 화폐(잉여가치의 전화를 위한 화폐준비금)로써 70IIm을 구매하며 II부류가 이 화폐로 70 I m을 구매하지 않고 이 70파운드를 화폐자본으로서 축적한다면 이 70파운드의 화폐자본은 생산으로 다시 들어가는 생산물의 표현은 아니더라도 언제나 추가생산물의 표현이다(바로 II부류의 잉여생산물의 표현이며 추가생산물은 이 잉여생산물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II부류측에서의 이 화폐축적은 동시에 생산수단의 형태에 있는, 팔리지 않는 70 I m의 표현일것이다. 따라서 II부류측에서의 재생산이 동시에 확대되지 않는것에 상응하여 I부류에서 상대적과잉생산이 일어날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점을 도외시한다. Ⅰ부류로부터 나온 화폐 70은 Ⅱ부류측에서의 70Ⅰm의 구입을 통하지 않고 Ⅰ부류로 돌아오든가 또는 부분적으로만 돌아오는 기간에 그 화폐 70은 Ⅱ부류의 수중에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재적인 추가적화폐자본으로서 나타난다. 이것은 Ⅰ부류와 Ⅱ부류사이에서 진행되는 어떤 교환에 대하여서도 쌍방의 상품들이 서로 보상됨으로써 화폐가 그의 출발점으로 환류하게 되기전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나 일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화폐가 다만 일시적으로 이 역할을 놀뿐이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추가적으로 유리되는 모든 화폐가 즉시에 능동적으로 추가적화폐자본으로서 기능하게 되는 신용제도하에서는 이렇게 일시적으로만 유리된 화폐자본이 구속될수 있으며 례컨대 Ⅰ부류에서의 새로운 기업들을 위하여 Ⅰ부류의 다른 기업들에 아직 정체되고있는 추가적생산물을 그것이 류동시키지 않으면 안될 때에 복무할수 있다. 그리고 또 지적하여야 할것은 Ⅱ부류의 불변자본에 70Ⅰm을 합체시키기 위해서는 동시에 Ⅱ부류의 가변자본을 14만큼 증대시키는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증대는—Ⅰ부류에서 잉여생산물 Ⅰm이 직접 자본 Ⅰc에 합체될 때와 마찬가지로—Ⅱ부류에서의 재생산이 이미 가일층의 자본화의 경향을 가지고 수행된다는것, 다시말하면 Ⅱ부류의 재생산이 잉여가치중 필요생활수단으로써 구성되는 부분의 증대를 포함한다는것을 전제로 한다.

이미 본바와 같이 제2례에서의 9,000의 생산물은 재생산의 목적을 위하여 500Ⅰm이 자본화되여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할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에 우리는 다만 상품만을 고찰하고 화폐류통은 무시한다.

Ⅰ. 5,000c+500m(자본화될 잉여가치)+1,500(v+m)소비기금=7,000상품.

Ⅱ. 1,500c+299v+201m=2,000상품. 총액=9,000상품생산물

자본화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Ⅰ부류에서는 자본화되는 500m은 $\frac{5}{6}$=417c+$\frac{1}{6}$=83v로 분할된다. 이 83v는 Ⅱm중에서 동일한 액수를 끌어내며 그것으로 불변자본의 요소들을 구매하여 Ⅱc에 추가한다. Ⅱc가 83만큼 증가하는것은 Ⅱv도 83×$\frac{1}{5}$=17이 증가될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교환이 진행된후에는 다음과 같이 된다.

Ⅰ. (5,000c+417m)c+(1,000v+83m)v

=5,417c+1,083v=6,500

Ⅱ. (1,500c+83m)c+(299v+17m)v

=1,583c+ 316v=1,899

합계: 8,399

Ⅰ부류의 자본은 6,000으로부터 6,500으로, 즉 $\frac{1}{12}$이 증가되였다. Ⅱ부류의 자본은 1,715로부터 1,899로, 즉 거의 $\frac{1}{9}$이 증가되였다.

제2년도에는 이 기초우에서 재생산이 진행되여 년말에는 자본이 다음과 같이 된다.

Ⅰ. (5,417c+452m)c+(1,083v+90m)v

=5,869c+1,173v=7,042

Ⅱ. (1,583c+42m+90m)c+(316v+8m+18m)v

=1,715c+342v=2,057

그리고 제3년도말의 생산물은 다음과 같이 된다.

Ⅰ. 5,869c+1,173v+1,173m

Ⅱ. 1,715c+ 342v+ 342m

이 경우에 Ⅰ부류가 종전대로 잉여가치의 절반을 축적한다고 하면 Ⅰ(v+$\frac{1}{2}$m)=1,173v+587($\frac{1}{2}$m)=1,760으로 되며 따라서 1,715Ⅱc 전체보다 크며 45가 더 많게 된다. 따라서 이 차액은 다시 동일한 액수의 생산수단이 Ⅱc로 넘겨짐으로써 상쇄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리하여 Ⅱc는 45가 증가되며 따라서 그것은 또 Ⅱv도 그 $\frac{1}{5}$=9가 증가될것을 요구한다. 다음으로 자본화된 587Ⅰm도 $\frac{5}{6}$와 $\frac{1}{6}$, 즉 489c와 98v로 분할되며 이 98은 Ⅱ부류의 불변자본이 98이 더 증가될것을 요구하며 이것은 또 Ⅱ부류의 가변자본이 그 $\frac{1}{5}$=20이 더 증가될것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된다.

Ⅰ. (5,869c+489m)c+(1,173v+98m)v

=6,358c+1,271v=7,629

Ⅱ. (1,715c+45m+98m)c+(342v+9m+20m)v

=1,858c+ 371v=2,229

총자본=9,858

따라서 3년간의 확대재생산에서 Ⅰ부류의 총자본은 6,000으로부터 7,629로, Ⅱ부류의 총자본은 1,715로부터 2,229로, 사회적총자본은 7,715로부터 9,858로 증가되였다.

C. 축적에 있어서의 Ⅱc의 교환

따라서 Ⅰ(v+m)과 Ⅱc와의 교환에는 여러가지 경우들이

발생한다.

단순재생산에서는 량자는 같지 않으면 안되며 또 서로 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다면 우에서 본바와 같이 단순재생산은 교란없이는 진행될수 없기때문이다.

축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축적률을 고찰하여야 한다. 이상의 경우들에서 Ⅰ부류에서의 축적률은 $\frac{1}{2}$mⅠ이며 년도가 달라도 변하지 않는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축적된 자본이 가변자본과 불변자본으로 분할되는 비률만이 변동되는것으로 가정하였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경우가 있었다.

1) Ⅰ$(v+\frac{1}{2}m)$=Ⅱc이며 따라서 Ⅱc가 Ⅰ$(v+m)$보다 작다.

이것은 언제나 그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Ⅰ부류에서는 축적이 안될것이다.

2) Ⅰ$(v+\frac{1}{2}m)$이 Ⅱc보다 크다. 이 경우에는 Ⅱc에 Ⅱm의 해당한 부분이 첨가되여 Ⅱc의 총액이 Ⅰ$(v+\frac{1}{2}m)$과 같게 됨으로써 보상이 실현된다. 이 경우에 교환은 Ⅱ부류에 있어서는 그의 불변자본의 단순재생산이 아니라 이미 축적이며 그의 잉여생산물중 Ⅰ부류의 생산수단과 교환되는 부분만큼 그의 불변자본이 증가되는것이다. 이 증가는 동시에 Ⅱ부류가 또 그 증가에 상응하게 그의 가변자본을 자기의 잉여생산물중으로부터 증대시키는것을 포함한다.

3) Ⅰ$(v+\frac{1}{2}m)$이 Ⅱc보다 작다. 이 경우에 Ⅱ부류는 교환에 의하여 그의 불변자본을 전부 재생산하지는 못하며 따라서 Ⅰ부류로부터 구매하는데 의하여 부족액을 보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Ⅱ부류의 가변자본이 더

축적될 필요는 없게 하는데 그것은 Ⅱ부류의 불변자본은 그 크기로 보아 이러한 구매에 의하여서만 비로소 전부 재생산되기때문이다. 다른 한편 이 교환에 의하여 Ⅰ부류의 자본가중 추가적화폐자본을 적립하기만 하는 부분은 이미 이러한 종류의 축적의 일부분을 수행한것이다.

Ⅰ(v+m)=Ⅱc라는 단순재생산의 전제는 자본주의적생산과 량립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이것은 10~11년의 산업순환에 있어서 어떤 해의 총생산액이 그전해의 총생산액보다 적은 일이 종종 있으며 따라서 그전해에 비하여 단순재생산도 일어나지 않는다는것을 배제하는것은 아니다. 그뿐만아니라 매년 인구의 자연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가에 상응하여 보다 많은 수의 비생산적하인들이 총잉여가치를 대표하는 1,500의 소비에 참여하는 한에서만 단순재생산이 일어날수 있을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자본의 축적, 즉 현실적인 자본주의적생산은 불가능할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축적이라는 사실은 Ⅱc=Ⅰ(v+m)의 가능성을 배제한다. 그렇지만 자본주의적축적에 있어서도 이전의 일련의 생산기간에 수행된 축적과정의 진행의 결과로 Ⅱc가 Ⅰ(v+m)과 같을뿐만아니라 지어는 그보다 크기조차 한 경우가 나타날수 있을것이다. 이것은 Ⅱ부류에서의 생산과잉이며 그것은 큰 공황에 의해서만 조정될수 있을것인데 그 결과로 자본은 Ⅱ부류로부터 Ⅰ부류에로 넘어간다는것을 의미한다. Ⅱ부류의 불변자본의 일부분이 자기자신을 재생산하는 경우, 례컨대 농업에서 자기가 생산한 종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Ⅰ(v+m)과 Ⅱc와의 관계는 변경되지 않을것이다. Ⅰ부류와 Ⅱ부류사이의 교환에서 Ⅱc의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것은 Ⅰc가 그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는것과 마찬가지이다. 또 이번에는 Ⅱ부류의

생산물의 일부분이 생산수단으로서 Ⅰ부류로 들어갈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문제의 본질을 조금도 변동시키지 못한다. 이 부분은 Ⅰ부류에 의하여 제공되는 생산수단의 일부분과 서로 상쇄되는데 우리가 만일 사회적생산의 2대부류(생산수단의 생산자들과 소비수단의 생산자들)사이에서의 교환을 순수하고 교란됨이 없이 연구하려면 처음부터 이 부분을 쌍방으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적생산에서는 Ⅰ(v+m)은 Ⅱc와 같을수 없다. 바꾸어말하면 량자가 교환에서 서로 일치될수 없다. 이와는 반대로 $\text{Ⅰ}\frac{\text{m}}{x}$이 Ⅰm중 Ⅰ부류의 자본가들의 수입으로서 지출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text{Ⅰ}(v+\frac{\text{m}}{x})$은 Ⅱc와 같든가 그보다 크든가 또는 그보다 작을수 있다. 그러나 $\text{Ⅰ}(\text{Ⅰ}+\frac{\text{m}}{x})$는 언제나 Ⅱ(c+m)보다는 작지 않으면 안된다. 그 차액이 Ⅱm중 Ⅱ부류의 자본가계급이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로 소비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이다.

지적하여야 할것은 이상과 같은 축적의 서술에서는 불변자본의 가치는 그것이 상품자본중 그것의 참가하에 생산된 부분인 한에서는 정확히 서술되여있지 않다는것이다. 새로 축적된 불변자본의 고정적부분은 다만 점차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이 고정적요소들의 성격에 따라 각이한 방식으로 상품자본으로 들어갈뿐이므로 원료나 반제품 등이 대량으로 상품생산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상품자본의 비교적 큰 부분이 류동적불변구성부분과 가변자본의 보상분으로써 구성된다(그러나 이와 같이 취급될수 있는것은 류동적구성부분의 회전때문이다. 따라서 류동적부분이 그것에 이전된 고정자본의 가치부분과 함

께 1년중에 몇번이고 회전하여 제공된 상품의 총액이 년간생산에 들어가는 총자본의 가치와 같다는것이 가정되고있다.). 그러나 기계적경영에 있어서 보조재료만 사용되고 원료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로동요소=v가 상품자본중의 보다 큰 구성부분으로서 재현되지 않을수 없다. 리윤률에 있어서는 고정적구성부분이 주기적으로 생산물에 이전되는 가치가 많든적든 간에 총자본에 대하여 잉여가치가 계산되는데 주기적으로 생산되는 매개 상품자본의 가치에 있어서는 불변자본의 고정적 부분은 다만 그 소비에 의하여 평균적으로 가치를 생산물자체에 이전하는 한에서만 계산에 들어가야 할것이다.

---

4. 보 충 설 명

Ⅱ를 위한 최초의 화폐원천은 Ⅱc의 일부분과 교환되는 Ⅰ의 금생산자의 v+m이다. 금생산자가 잉여가치를 적립하든가 또는 그것을 Ⅰ의 생산수단으로 전화시켜 자기의 생산을 확대하는 한에서는 그의 v+m은 Ⅱ로 들어가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금생산자자신측에서의 화폐의 축적이 결국 확대재생산을 초래하는 한 금생산자의 잉여가치중 수입으로서 지출되지 않는 부분은 금생산자의 추가적가변자본으로서 Ⅱ로 들어가며 거기에서 새로운 화폐축장을 촉진하든가 또는 직접 Ⅰ에 다시 판매함이 없이 Ⅰ로부터 구매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을 준다. 이 금생산의 Ⅰ(v+m)에서 나오는 화폐로부터 Ⅱ의 어떤 생산부문이 원료 등으로써 요컨대 그 불변자본의 보상요소로써 필요되는 금부분이 공제된다. Ⅰ과 Ⅱ사이

에서 진행되는 교환에 있어서 그에 선행하는—즉 장래의 확대재생산을 목적으로 하여 하는—화폐축장을 위한 요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생긴다. Ⅰ에 있어서는 Ⅰm의 일부분이 일방적으로, 반대 구매가 없이 Ⅱ에게 판매되여 여기에서 Ⅱ의 추가적불변자본으로서 복무하는 경우뿐이다. Ⅱ에 있어서는 Ⅰ측에서 추가적가변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일한 일이 진행되는 경우와 또 Ⅰ에 의하여 수입으로서 지출되는 잉여가치의 일부분이 Ⅱc에 의하여 상쇄되지 않고 그것에 의하여 Ⅱm의 일부분이 구매되여 그리하여 화폐로 전화되는 경우이다. 만일 $Ⅰ(v+\frac{m}{x})$이 Ⅱc보다 크다면 Ⅱc는 그 단순재생산을 위하여서는 Ⅰ이 Ⅱm중에서 소비해버린것을 Ⅰ의 상품에 의하여 보상할 필요는 없다. 문제로 되는것은 Ⅱ의 자본가들사이에서의 교환—Ⅱm의 호상교환으로써만 이루어질수 있는 교환—의 내부에서 어느 정도로 화폐축장이 진행될수 있는가 하는것이다. 우리가 알고있는바와 같이 Ⅱ내부에서 직접적인 축적이 진행되는것은 Ⅱm의 일부분이 직접 가변자본으로 전화된다(마치도 Ⅰ내부에서 직접적인 축적이 진행되는것은 Ⅰm의 일부분이 직접 불변자본으로 전화되기때문인것처럼)는데 의하여서이다. Ⅱ의 각이한 생산부문들 내부에서도, 또 매개 생산부문에서는 개별적자본가에 있어서도 축적의 년령은 각이하지만 사태는 필요한 변경을 가한다면 Ⅰ의 경우와 꼭 마찬가지로 설명된다. 일방은 아직 화폐축장의 단계에 있어 구매함이 없이 판매하며 타방은 재생산의 현실적 확대의 시점에 달하여 판매함이 없이 구매한다. 추가적가변화폐자본은 물론 우선은 추가로동력에 투하된다. 그러나 이 로동력은 지금 화폐축장을 하고있는 로동자용 추가적소비수

단의 소유자로부터 생활수단을 구매한다. 이 소유자들의 화폐축장의 정도에 비례하여 화폐는 그들의 수중으로부터 출발점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들에 의하여 적립된다.

주　　해

주 해

1. 맑스는 1843년말부터 정치경제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19세기 50년대와 60년대인 1857～1858년, 1861～1863년, 1864～1865년에 그는 선후하여 《자본론》 총 3권 4책의 내용에 관계되는 원고를 집필하였다. 맑스가 최초로 《자본론》의 《4책 계획》을 언급한것은 1865년 7월 31일이였다. 맑스는 엥겔스에게 보낸 서한에 이렇게 썼다. 《이제 제3장을 더 쓰면 리론부분(전 3책)을 끝낼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제4책을 즉 력사문헌부분을 써야 하겠습니다.》 1866년 10월 13일 맑스는 L. 쿠겔만에게 보낸 서한에서 총 3권 4책에 대한 기획을 언급하였다. 《전부의 저서는 다음의 몇개 부분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제1책 자본의 생산과정, 제2책 자본의 류통과정, 제3책 일반과정의 각 형태, 제4책 리론사로 말입니다. 제1권에는 1, 2책을 포함시키겠습니다. 저는 제3책을 제2권으로 편집하고 제4책을 제3권으로 할 생각입니다.》 1867년에 《자본론》 제1권이 간행되기 전후에 맑스의 3권 4책 계획은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즉 맑스는 제1권에 제1책만 포함시키고 제2권에 제2책과 제3책을 포함시키며 제3권에 제4책을 포함시킬 생각이였다. 이에 관한 내용은 맑스가 쓴 《자본론》 제1권의 《제1판 서문》(《맑스엥겔스전집》 중문 제2판 제44권 제12페지)에 서술되여 있다. 맑스가 서거한후 엥겔스는 제2책을 제2권으로 편집하고 제3책을 제3권으로 편집하였다. 엥겔스가 서거한후 카우츠키가 《잉여가치에 관한 제 학설》을 독립적인 저서로 간행하였다 (주해 3을 보라). 《잉여가치에 관한 제 학설》을 최초로 《자본론》 제4권으로 간행한것은 쏘련공산당 맑스레닌주의연구원이 편집간행한 《맑스엥겔스전집》 로문 제2판에서였다.

맑스는 1865년 상반년에 《자본론》 제2권(제2책)에 관한 제1

원고 또는 제Ⅰ고를 집필하고 제목을 《제2책 자본의 류통과정》이라고 하였다. 1868년말부터 1870년 7월까지 맑스는 제2권 또는 제2책의 두번째 원고(즉 제Ⅱ고)를 집필하였다. 이 원고는 그후의 제2권의 3개 부분을 모두 망라하여 《제2책의 원고중 어느 정도까지 완성된 유일한 수정고였다》(본권 7페지를 보라). 이 기간에 맑스는 또 제Ⅲ고(1867년 9월)와 제Ⅳ고(1868년 4~5월) 및 엥겔스가 제2권 《서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두 원고를 집필하였는데 그중 하나는 제1장에 속하는 원고로서 1868~1870에 쓴것이고 다른 하나의 원고는 제3부분에 속하는 원고로서 1870년에 쓴것이다. 그후 맑스는 몸이 좋지 않아 오래동안 이 작업을 중단하였다가 1877년에야 다시 쓰기 시작하였다.

1877~1881년 기간에 맑스는 제Ⅴ고(1877년 4~9월), 제Ⅵ고(1877년 10월~1878년 6월), 제Ⅶ고(1878년 7월 2일 완성), 제Ⅷ고(1880~1881년) 및 엥겔스가 《서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제1장에 속하는 3개의 원고(각각 1877년 3월과 4~5월에 집필)를 썼다. 맑스는 그의 생애의 마지막 2년에 제2권(제2책)의 작업에 종사하지 않았다. 제2권, 제3권을 간행하는 중임은 그의 절친한 친구 엥겔스의 어깨에 놓이게 되였다.

엥겔스는 맑스가 남겨놓은 원고내용을 검토하고 원고의 편폭을 고려한후 맑스의 원래의 구상을 따르지 않고 제2권의 2책, 즉 제2책과 제3책을 2권으로 즉 제2권과 제3권으로 편찬하여 간행하였다.

엥겔스는 맑스의 원고들을 극히 신중하게 대하였다. 그는 그가 말한것처럼 《원고를 될수 있는 한 원문 그대로 재현하고 문체에 있어서는 맑스자신도 변경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것만을 변경하고 또 설명을 위한 삽입문이나 련결구들은 그것이 절대로 필요할 뿐만아니라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만 삽입하였다》(본권 3페지). 제2권의 편, 장, 절들도 그는 《자본론》 제1권 제2판(1872년)의 편목구조에 근거하여 처리하였다. 2년여의 피타는 로동의 대가로 엥겔스가 맑스의 미완성 원고들에 근거하여 편집한 《자본론》 제2권이 1885년 7월 함부르그에서 간행되였다. 엥겔스

가 《서문》을 써서 편집작업과 각 원고들의 사용정황에 대해 설명을 가한 한편 자산계급이 맑스를 비난한데 대해 반박하였다. 1893년에 《자본론》 제2권 제2판이 간행되였다.

본 권의 역문은 《맑스엥겔스전집》 중문 제1판 제24권의 기초우에서 민주독일 맑스레닌주의연구원이 편집한 《맑스엥겔스전집》 1963년 독일문판 제24권에 근거하여 새로 교정하였다.—3페지

2.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 제1분책을 두고 말한다. 이 책은 1859년 6월 베를린에서 간행되였다(《맑스엥겔스전집》, 중문 제2판, 제31권, 411～582페지를 보라).—4페지
3. 엥겔스는 원래 맑스의 《잉여가치에 관한 제 학설》을 《자본론》 제4권으로 간행하려 하였으나 그는 이 계획을 실현하지 못하였다. 1905～1910년에 K. 카우츠키가 《잉여가치에 관한 제 학설》을 편집출판하였는데 그는 맑스의 원고들을 많이 삭제하고 변동시켰다. 1954～1961년에 쏘련공산당 중앙맑스레닌주의연구원이 《잉여가치에 관한 제 학설》 로문 신판본을 간행하였다. 민주독일은 1956～1962년에 로문판에 근거하여 독일문 신판본을 간행하였다. 《잉여가치에 관한 제 학설》의 최초의 중문 번역본은 곽대력이 카우츠키의 판본에 근거하여 번역한것인데 《잉여가치 학설사》(도합 3권)라는 책명으로 1949년 6월 장춘의 신중국서국이 출판발행하였다. 《잉여가치에 관한 제 학설》로 유명한 이 원고는 현재 《맑스엥겔스전집》, 중문 제2판, 제33～35권에 수록되여있다.—4페지
4. **강단사회주의**는 19세기 70～90년대에 있은 독일자산계급 정치경제학의 한 류파이다. 강단사회주의자—국가사회주의자의 대표인물들은 독일대학교의 교수들로서 그들은 대학의 강단에서 자산계급 개량주의를 고취하였다. 강단사회주의는 착취계급이 맑스주의가 전파되고 로동운동이 발전되는것을 두려워하고 자산계급사상가들이 로동계급이 고분고분 말을 들을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수단을 찾기 위해 애를 쓰던중 생겨난것이다. 강단사회주의의 대표자들인 G. 슈몰레르, L. 브렌타노, A. 와그네르, K. 뷔테르, W. 좀바르트 등은 국가를 초계급적인 조직으로 보고 자산계급과 무산계급간의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자산계급의 리익을 건드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행해나갈것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강단사회주의의 강령은 일부 사회적개량조치를 내놓는것에 국한되여있었다. 례컨대 그들은 로동자의 질병보험, 사상사고보험 등을 설립할것을 제안하였다. 그들의 목적은 혁명적사회민주주의의 영향을 격퇴하고 로동자들을 반동적인 프로씨아국가와 화해시키려는데 있었다. 그들은 프로씨아정부가 실시하고있는 철도국유화와 비스마르크가 획책하고 실행하고있는 담배 및 소주의 국가독점을 《국가사회주의》라고 불렀다. 맑스와 엥겔스는 강단사회주의를 반대하여 시종 변함없는 투쟁을 진행하고 그들의 반동적이고 비과학적인 본질을 폭로하였다.—9페지

5. 맑스의 《철학의 빈곤. 프루동씨의 〈철학의 빈곤〉에 대한 대답》은 1847년에 프랑스문으로 집필, 간행되였다. 맑스의 생전에 이 글의 전문이 재판되지 않았다. E. 베른슈타인과 K. 카우츠키가 번역한 최초의 독일문판본은 1885년 1월에 출판되였다. 엥겔스는 이 판본을 위해 역문을 교정하면서 많은 주석을 달았고 서문을 썼다. 이 서문은 1884년 10월 23일에 집필되였으며 《맑스와 로드베르투스》라는 표제로 1885년 1월의 《신시대》잡지 제1호에 발표되였다.—10, 23페지

6. 맑스가 표절을 했다고 비난한 로드베르투스의 편지는 1875년 3월 14일 J. 쩰레르에게 보낸것이다. 로드베르투스는 그해 세상을 떠났다. 엥겔스가 1879년에 로드베르투스가 직접 나섰다고 말한것은 이 편지가 1879년에 최초로 《종합국가잡지》(튀빙겐)에 발표된것을 두고 한 말이다.—10페지

7. 맑스의 개인 장서중에 로드베르투수-야게초우박사의 《서한 및 사회정문집》이 보관되여있다. 그 책속에는 엥겔스가 쓴 평어가 들어있다.—10페지

8. 《신라인신문》이 1848년에 베를린 의원으로서의 로드베르투스의 연설과 대신으로서의 그의 행동을 비판한 글들은 《신라인신문》 1848년 6월 24일 제24호의 《한저맨내각》, 1848년 7월 4일 제34호의 《타협 변론》, 1848년 7월 26일 제56호의 《구(区)급회의와

관련한 타협 변론》, 1848년 9월 10일 제99호의 《사업대각의 와해》, 1848년 9월 12일 제100호의 《위기와 반혁명》, 1848년 11월 9일 제138호의 《베를린의 위기》를 보라.—12페지

9. J. K. 로드베르투스 《폰 키르호만에게 보내는 사회서한. 제3서한: 리카도의 지대론에 대한 반박과 새로운 지대론의 론증》, 1851년 베를린판, 87페지.—13페지

10. 엥겔스가 본권에서 말하는 《〈비판〉 원고》는 모두 《정치경제학 비판(1861～1863년의 원고)》를 두고 말한다. 이것은 편폭이 상당히 큰 원고이다. 이 원고의 《잉여가치에 관한 제 학설》 부분에서 맑스는 잉여가치에 관한 제 학설의 핵심문제를 둘러싸고 각 류파의 자산계급경제학자들의 리론에 대해 체계적으로 력사적으로 비판을 가한 동시에 론전의 형식으로 자신의 정치경제학 리론중의 많은 중요방면에 대해 천명하였다. 맑스는 본래 이 부분의 원고에 기초하여 그가 력사부분, 력사비판부분 또는 력사문헌부분이라고 일컫는 《자본론》 제4권을 쓰려고 기획하였다. 맑스는 《자본론》의 전3권은 리론부분이라고 불렀다.—13페지

11. **중상주의**(Merkantilismus)란 15～16세기 구라파 각국에서 류행되던 경제학파들을 말한다. 이 학파는 그 시기 상업자본의 리익과 요구를 반영하고있었다. 중상주의자들은 화폐는 부의 기본형식이라고 인정하면서 국가는 경제생활에 대해 간여해야 하는바 조치를 취하여 대외무역에서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화폐가 자국에 류입되도록 해야 하며 화폐가 국외로 흘러나가는것을 엄격히 금지시키고 수입에 대해 보호관세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기의 중상주의는 중금주의의 형식을 취하면서 화폐수출을 금지하고 금은수입을 늘여야 한다는 화폐차액론을 주장하였다. 만기의 중상주의는 17세기에 류행되였는데 공업을 발전시키고 대외무역의 흑자를 확대하고 대량 화폐의 수입을 보장해야 한다는 무역차액론을 주장하였다.—13, 17페지

12. A. 스미스 《제 국민의 부의 본성과 원인의 연구》(신판 4권집), 1843년 런던판 제1권, 131～132페지.—14페지

13. A. 스미스 《제 국민의 부의 본성과 원인의 연구》(신판 4권집),

1843년 런던판 제1권, 134페지.—14페지

14. A. 스미스 《제 국민의 부의 본성과 원인의 연구》(신판 4권집), 1843년 런던판 제1권, 171～173페지.

맑스는 이 책 1828년 애딘버러-런던판(매칼러크가 쓴 저자 전기, 서문, 주해 및 보충적론술이 부록되여있음)에서 발췌한적이 있다. 《런던노트》(1850～1853년)중 노트 Ⅶ과 노트 Ⅷ(《맑스엥겔스전집》 1986년 력사고증판 제4부분 제8권, 272, 279, 284～286페지)을 보라.—14페지

15.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원고)》 노트Ⅵ 254페지를 보라.—15페지

16. 《자본론》, 중문 제2판 제1권, 594-598페지를 보라.—16페지

17. 《자본론》, 중문 제2판 제1권, 678페지 각주(26)를 보라.—16페지

18. **《믿어지지 않는 구두쟁이》**는 《매칼러크씨의 〈정치경제학원리〉에 대한 약간의 설명》 1826년 애딘버러판에서 나온 말이다. 이 소책자는 출판할 때 M. 말리언이라는 필명을 사용했는데 저자는 J. 윌슨이다. J. 윌슨은 매칼러크를 《믿어지지 않는 구두쟁이》라고 불렀다.—17페지

19. **오엔의 공산주의**는 그가 《신도덕세계서》 등 저서에서 론술한 공상적사회주의의 리론을 두고 말한다. 오엔은 사회주의는 환경의 산물이므로 오직 사회주의를 실현해야만 사회의 모든 죄악을 극복할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1824년에 오엔은 미국으로 건너가 공산주의의 《신협화촌》을 시험적으로 만들어 생산수단의 공유와 집단로동을 실행하였는데 나중에 파산하여 실패하고말았다. 1829년에 영국으로 돌아온후 먼저는 런던에 전국공평로동 교환상점을 건립하여 이런 상점을 통해 중간착취를 피하려고 시도하였으며 후에는 또 전국산업대련합을 발기하여 설립하였으나 나중에 모두 실패하고말았다. 만년에 그는 공산주의의 주장을 제출하였으나 로동자들의 정치투쟁은 반대하였으며 지식의 전파에 의하여 사회의 병폐를 없앨수 있고 사회모순을 극복할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는 희망을 인자한 통치자에게 두고있었다. 오엔은 19세기초 가장 영향력있는 공상적사회주의자의 한 사람이다. 엥겔스는 70년대에 집필

한 《반듀링론》에서 《영국에서의 로동자들에게 유리한 모든 사회운동, 모든 실제적인 진보들은 모두 오엔의 이름과 련계되여있다》고 썼다.—18페지

20. 맑스의 《철학의 빈곤, 프루동씨의 〈철학의 빈곤〉에 대한 대답》, 제1장 제2절, 《가치 또는 종합가치의 구성》을 보라.—18페지

21. J. K. 로드베르투스의 《서한 및 사회정문집》, R. 마이에르 출판, [1881년] 베를린판 제1권, 111페지.—22페지

22. 맑스의 《잉여가치에 관한 제 학설》중 로드베르투스의 지대에 관한 리론부분을 두고 말한다.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원고)》노트X, 445～459페지를 보라.—23페지

23.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원고)》 노트 X, 449, 469～473페지, 노트 XI, 528～569페지, 노트 XIII, 666-694페지를 보라.—24페지

24. 《자본론》, 중문 제2판 제3권, 29～233페지를 보라.—24페지

25. 《자본론》, 제1권 제7편, 《자본의 축적과정》(《자본론》, 중문 제2판 제1권, 651～887페지)를 보라.—40페지

26. 로씨야의 1861**년 농노제도개혁**을 두고 말한다. 19세기중엽에 농노제는 자본주의의 발전을 크게 가로막고있었다. 1853년～1856년의 크림전쟁실패후 혁명형세가 발전하고 농민운동이 날로 고조되자 알렉산드르 2세 정부는 핍박에 의하여 《농민을 농노예속관계에서 해탈시킴에 관한 1861년 2월 19일 법령》을 반포하였다. 이 법령은 농민은 인신자유가 있으며 지주는 농민을 매매 또는 증정의 대상으로 하지 못한다는것, 농민은 자기재산의 지배권리, 소송진행의 권리, 상공업종사의 권리가 있다는것, 그러나 토지는 여전히 지주에게 속하므로 농노가 상기 자유를 얻으려면 반드시 고액의 몸값을 지불해야 한다는것을 규정하였다.—40페지

27. 《자본론》, 중문 제2판 제1권, 696～697페지를 보라.—48페지.

28. **중금주의** 또는 **화폐체계**(Monetarsystem)는 중상주의(주해 11을 보라)의 초기의 형태이다.—72페지.

29. [베일리, 쌔뮤얼]《가치의 성격, 척도 및 원인에 관한 비판적론

술, 주로 리카도씨 및 그의 추종자들의 저작에 관하여》, 1825년 런던판, 72페지를 보라.—123페지

30. 맑스는 시스몽디의 《정치경제학의 새 원리》에서 발췌한적이 있다. 맑스가 1845년에 쓴 《브류쎌 필기》(《맑스엥겔스전집》 1998년 력사고증판 제4부분 제3권)를 보라.—129페지

31. **잉카국**은 남아메리카주의 서남부에 존재하였던 고대국가이다. 잉카국의 군주를 잉카라고 불렀고 국민을 잉카인이라고 불렀다. 11세기 이후 애마라와 케츄시아 량대 부족이 뻬루의 쿠스커곡지에서 부근의 지역들을 륙속 겸병하여 15세기 중엽에 이르러 강대한 노예제국가를 형성하였다. 잉카국은 원시사회의 잔재를 많이 보존하고있었다. 잉카사회는 엄밀한 행정제도가 있었으며 국민은 귀족, 평민, 노예 등 3개 계급으로 구분하였다. 사회를 이루는 기본단위는 같은 조상을 둔 여러개의 가족으로 구성된 씨족공동체 또는 농민공동체(Aylla)였으며 이들은 토지와 가축을 공동 점유하고있었다. 16세기가 잉카국의 전성시대였는데 이 시기 잉카국의 판도는 뻬루, 에꽈도르, 볼리비아와 칠레북부까지 확장되였었다. 1533년에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에 의해 멸망되였다.—133, 167페지

32. **《희랍인과 희랍인이 만나면 격투가 벌어진다.》**(when Greek meets then comes the tug of war) 이것은 너새네일얼 리의 《다투는 왕비들》에서 인용한 말이다. 그의 《희곡집》 1734년 런던판 제3권, 266페지를 보라.—147페지

33. 맑스는 께내의 《경제표의 분석》과 《상업 및 수공업자들의 로동에 관한 대화》에서 발췌한적이 있다. 노트 Ⅶ중 1859～1862년 런던에서 한 발췌노트와 보충노트C를 보라.—148페지

34. 《자본론》, 중문 제2판 제1권, 413～414페지를 보라.—151페지

35. 맑스는 T. 코비트의 《개인의 부의 원인과 그 취득방식에 관한 연구》에서 발췌한적이 있다. 《런던필기》(1850～1853년) 노트Ⅶ(《맑스엥겔스전집》 1986년 력사고증판 제4부분 제8권)을 보라.—156페지

36. A. 스미스《제 국민의 부의 본성과 원인의 연구》(신4권집), 1843년 런던판 제2권, 249～252페지.—157페지

37. J. 레일러 《화폐와 도덕, 현대의 서적》, 1852년 런던판, 43～44페지.—157페지

38. J. B. L. 씨몽드 드 시스몽디 《정치경제학개론》, 1837년 브류쎌판 제1권, 49페지와 이하 여러 페지. 맑스가 1845년에 쓴 《브류쎌 필기》에 이 책에서 발췌한 내용이 들어있다. 《맑스엥겔스전집》, 1998년 력사고증판 제4부분 제3권을 보라.—157페지

39. **미국남북전쟁** 즉 1861～1865년기간에 일어난 미국국내전쟁을 두고 말한다. 19세기중엽에 미국남부의 농장주들이 실시하는 노예제와 북부자산계급이 실시하는 고용로동제간의 모순이 갈수록 심각해졌다. 1860년 11월 노예제를 제한할것을 주장한 공화당 립후보자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미국남부의 노예주들은 노예제를 수호하기 위한 반란을 일으켰다. 1861년 2월에 선후로 독립을 선포한 남부의 11개 주는 몽고메리대회에서 국가의 공개적인 분렬을 의미하는 미국남부동맹을 결성하고 그해 4월 12일에 샘터요새(남칼로리나주)를 포격하고 국내전쟁을 도발하였다. 1865년 4월 남부 동맹의 수도 리치먼드가 공략되고 남부동맹의 련합군이 투항함으로써 전쟁은 결속되였다. 북부 각주는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국가의 통일을 수호하였으며 자본주의의 줄기찬 발천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였다.—158페지

40. 《자본론》, 중문 제2판 제1권, 717～724페지를 보라.—159페지

41. J. B. 쌔 《정치경제학개론》, 1817년 빠리 제3판 제2권, 433페지. 맑스의 개인 장서중에는 쌔의 이 저서뿐아니라 리카도의 《정치경제학과 조세원리》, 1821년 런던판본도 수장되여있다. 맑스가 쌔의 《정치경제학개론》에 대해 발췌한것은 1844년의 《빠리필기》(《맑스엥겔스전집》 1981년 력사고증판 제4부분 제2권, 301～327페지)를 보라.—168페지

42. 《자본론》, 중문 제2판 제1권, 653페지를 보라.—172페지

43. 맑스는 뉴먼의 《정치경제학원리》에서 발췌한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런던필기》(1850～1853년) 노트ⅩⅤ와 노트ⅩⅤⅠ를 보라.—173페지

44. 맑스는 챠머즈의 《정치경제학에 관하여》에서 발췌한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런던필기》(1850～1853년) 노트Ⅸ(《맑스엥겔스전집》, 1986년 력사고증판 제4부분 제8권, 572～589페지)를 보라.—173페지

45. 《자본론》, 중문 제2판 제1권, 236페지를 보라.—176페지

46. 램지의 잘못된 견해에 대해서는 그의 《부의 분배에 관한 론술》 1836년 에딘버러판을 보라. 맑스는 이 책에서 발췌한적이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런던필기》(1850～1853년) 노트Ⅸ과 노트Ⅹ(《맑스엥겔스전집》, 1986년 력사고증판 제4부분 제8권) 및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원고)》 노트ⅩⅧ 1086페지를 보라.—178페지

47. 《자본론》, 중문 제2판 제1권, 212～213페지를 보라.—178페지

48. 《자본론》, 중문 제2판 제1권, 212페지를 보라.—179페지

49. 《자본론》, 중문 제2판 제1권, 207～213페지를 보라.—180페지

50. 《자본론》, 중문 제2판 제1권, 194～205페지를 보라.—185페지

51. R. P. 윌리엄즈의 보고 《철도로반의 유지에 관하여》는 1867년 12월 2일부 《화폐시장평론》에 발표되였다.—190, 201페지

52. 라드너 《철도경제: 수송의 새 방법》에서는 약 8%이다. 만일 정확히 8%라면 본문에서는 $12\frac{1}{2}$이 되여야 할것이다.—191페지

53. 《자본론》, 중문 제2판 제1권, 240, 465페지를 보라.—193페지

54. 《자본론》, 중문 제2판 제1권, 490～491페지의 각주(190a)를 보라.—194페지

55. 이 론문은 1868년 1월 25일부 《화폐시장평론》에 발표되였다.—199페지

56. 맑스는 《자본론》 제3권에서 자본주의신용제도에 대해 서술하였다. 《자본론》, 중문판 제2판 제3권, 297～692페지를 보라.—202페지

57. 맑스의 노트Ⅶ중 1859～1862년에 런던에서 한 발췌필기중에 뮐레르의 《국가관리예술원리》에서 발췌한 글이 있다.—207페지

58. 여기서는 A. 포터의 저서 《정치경제학: 그 대상, 용도, 원리. 미국인의 생활상태에 의하여 고찰》, 1841년 뉴욕판을 인용하고있

다. 서언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이 저서는 대부분 1833년에 영국에서 발표된 G. 스쿠르프의 《정치경제학원리》 첫 10장을 복제한것이다(A. 포터가 일부 수정을 가했을뿐이다).

그 밑의 인용문은 맑스의 노트Ⅶ중 1859-1862년 런던에서 한 발췌필기에서 온것이다. 그 이전인 1851년에도 맑스는 스쿠르프의 《정치경제학 원리》에서 발췌한적이 있다. 《맑스엥겔스전집》, 1986년 력사고증판 제4부분 제8권, 592～596페지를 보라.—207페지

59. 맑스는 원고에서 자본회전시간의 이러한 계산방법은 틀린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인용문에서 표시된 1회전의 평균시간(16개월)은 전체 자본 50,000딸라에 대한 $7\frac{1}{2}$%의 리윤을 고려하여 계산하고있다.

리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자본의 회전기간은 18개월이다.—207페지

60. 《자본론》, 중문 제2판 제1권, 166페지를 보라.—209페지

61. 맑스가 뛰르고의 《부의 형성과 분배에 관한 고찰》에서 발췌한 글은 노트Ⅶ중 1859～1862년 런던에서 한 발췌필기를, 께내의 《경제표의 분석》에서 발췌한 글과 뒤뽕 드 느무르의 《께내의사의 준칙》에서 발췌한 글은 보충노트C를, G. 르 뜨론의 《가치, 류통, 공업, 국내외무역에 있어서의 사회리익에 관하여》에서 발췌한 글은 보충노트 D와 E를 보라.—212페지

62. 《자본론》, 중문 제2판 제1권, 236페지.—225페지

63. 《자본론》, 중문 제2판 제1권, 207～217페지를 보라.—227페지

64. 《자본론》, 중문 제2판 제1권, 703～706페지를 보라.—239페지

65. 《자본론》, 중문 제2판 제3권, 222～226페지를 보라.—240페지

66. 《자본론》, 중문 제2판 제1권, 717～718페지를 보라.—241페지

67. 맑스의 노트Ⅶ중 1859～1862년 런던에서 한 발췌필기에는 F. 웨일런드의 《정치경제학 원리》에서 발췌한 글이 있다. 맑스는 《자본론》 제1권을 집필할 때 웨일런드의 인용문을 인용한적이 있다. 《자본론》, 중문 제2판 제1권, 241페지의 각주(25)를 보라.—251페지

68. 맑스의 《런던필기》(1850~1853년) 노트Ⅸ에는 J. 바튼의 《사회의 로동자계급의 형편에 영향을 주는 제 사정의 고찰》에서 발췌한 글이 있다. 《맑스엥겔스전집》, 1986년 력사고증판 제4부분 제8권, 518~521페지를 보라. 맑스는 《자본론》 제1권을 집필할 때 바튼의 한단락 글을 인용하였다. 《자본론》, 중문 제2판 제1권, 728페지를 보라.—252페지

69. 《자본론》, 중문 제2판 제3권, 29~82페지를 보라.—253페지

70. J. St. 밀《정치경제학의 약간의 미해결문제에 관한 론술》, 1844년 런던판, 164페지.

맑스가 1845년에 쓴 글 《만체스터필기》중에는 밀의 이 저서에서 발췌한 글이 있다. 《맑스엥겔스전집》, 1988년 력사고증판 제4부분 제4권을 보라.—254페지

71. G. 램지의 《부의 분배에 관한 론술》, 1836년 에딘버러판, 21~24페지

맑스가 1845년에 쓴 글 《만체스터필기》중에는 램지의 이 저서에서 발췌한 글이 있다. 《맑스엥겔스전집》, 1988년 력사고증판 제4부분 제4권을 보라.—254페지

72. H. D. 머클라우드 《정치경제학원리》, 1858년 런던판, 76~80페지.

맑스가 1845년에 쓴 글 《만체스터필기》중에는 머클라우드의 이 저서에서 발췌한 글이 있다. 《맑스엥겔스 전집》, 1988년 력사고증판 제4부분 제4권을 보라.—254페지

73. R. H. 패터슨 《재정학. 실용교정》, 1868년 에딘버러-런던판, 129~144페지.

맑스가 1845년에 쓴 글 《만체스터필기》중에는 패터슨의 이 저서에서 발췌한 글이 있다. 《맑스엥겔스전집》, 1988년 력사고증판 제4부분 제4권을 보라.—254페지

74. **《마누법전》**은 고대인도의 종교, 법률, 례의와 관련된 계률을 집성하고 인도노예제국가의 수요와 브라만교의 교의에 따라 편찬한 초기 관습법 법전의 하나이다. 《마누법전》은 모든 인도인이 브라만교의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전설에 의하면 이 법전은 신화중의 인류의 시조 마누(범어에서 말하는 《인

간》)의 손으로 작성되였다 한다. 이 법전의 재료는 여러 세기에 걸쳐 점차적으로 축적되였으며 기원이 시작될 때 법전 륜곽이 형성되였다고 한다. 《마누법전》은 원시공동체의 많은 잔재가 남아 있는 인도노예제사회의 발전의 특징을 반영하고있다.

맑스가 여기에서 인용하고있는 이 말은 《마나바 다르마 싸스뜨라 또는 꾸루까의 주석에 의한 마누법전. 인도의 종교적 및 세속적 제 의무의 체계를 포함》, 1863년 마드라스, 제3판 281페지를 보라.—264페지

75. 《자본론》, 제1권 제8장 제4절, 《주간로동과 야간로동》(《자본론》 중문 제2판 제1권, 297～304페지)를 보라.—266페지

76. 맑스의 노트Ⅶ중 1859～1862년 런던에서 한 발췌필기중에는 쟝귀스따브 꾸르쎌 스뇌이의 《공업, 상업, 농업 기업의 리론과 실천 개론》에서 발췌한 글이 있다.—267페지

77. 맑스의 《런던필기》(1850-1853년) 노트Ⅸ중에는 토머스 호지스킨의 《통속정치경제학》에서 발췌한 글이 있다. 《맑스엥겔스전집》, 1986년 력사고중판 제4부분 제8권, 549～562페지를 보라.—270페지

78. 맑스는 《잉여가치에 관한 제 학설》에서 매칼러크, 제임즈 밀 등의 그릇된 견해에 대해 분석하고 비판하였다.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원고)》 노트ＸＩＶ 845페지 및 이하 여러 페지를 보라. —274페지

79. 《자본론》, 제1권 제9장, 《잉여가치률과 잉여가치총량》(《자본론》, 중문 제2판 제1권, 351～361페지)를 보라.—331페지

80. 《자본론》, 중문 제2판 제1권, 653～654페지를 보라.—342페지

81. 《자본론》, 중문 제2판 제1권, 163～166페지를 보라.—360페지

82. 《자본론》, 중문 제2판 제1권, 134페지를 보라.—378, 460페지

83. 《자본론》, 중문 제2판 제1권, 137～138페지를 보라.—379페지

84. 《맑스엥겔스전집》, 중문 제2판 제31권, 520페지를 보라.—382페지

85. 《자본론》, 중문 제2판 제1권, 721～724, 873～874페지를 보라.—396페지

86. 맑스는 《잉여가치에 관한 제 학설》에서 께내의 《경제표》에 대

해 보다 상세한 분석을 가하였다.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원고)》 노트 X 422～436페지를 보라.

엥겔스는 70년대에 쓴 《반듀링론》에서 맑스의 원고에 근거하여 께내의 《경제표》에 대해 또 상세한 분석을 가하였다. 《반듀링론》, 제2편 제10장, 《〈비판사〉 론술》을 보라.—398페지

87. N. 랭개가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그의 《민법론 또는 사회의 기본원리》, 1676년 런던판, 제1～2권을 보라. 맑스는 랭개의 이 저서에서 일부를 발췌하고 평가를 하였다.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원고)》 노트X, 438～440페지를 보라.—399페지

88. 《자본론》, 중문 제2판 제1권, 682페지를 보라.—399페지

89. 《자본론》, 제2권 제1판중에는 이어서 다음과 같은 한단락의 말이 있다. 《스미스의 고정자본에 대한 분석에 관해서는 이러한 하나의 주장으로 귀결할수 있다. 즉 고정자본은 생산과정에 투입된 선대된 공업자본의 한부분이다. 스미스가 187페지에서 말한것처럼 〈그 특성은 류통을 경과하거나 주인을 바꿀 필요가 없이 수입 또는 리윤을 제공할수 있는것이며〉 또는 스미스가 185페지에서 말한것처럼 그것은 〈소유자의 수중에 남아있거나 원상을 유지하고 있다.〉》—404페지

90. W. 로쉐르 《국민경제체계》, 제1권 《국민경제학원리》, 1858년 슈투트가르트-아우그스부르그 수정증보 제3판. 맑스가 노트 Ⅶ중 1859～1862년 런던에서 한 발췌필기에 《국민경제학원리》에서 발췌한것이 있다.—413페지

91. 맑스가 1845년에 집필한 《브류쎌필기》에는 슈또르흐의 이 저작에서 발췌한것이 있다. 《맑스엥겔스전집》, 1998년 력사고증판 제4부분 제3권을 보라.—433페지

92. A. 쉐르뷜리에의 그릇된 견해는 그의 《부유 또는 가난》, 1841년 빠리판을 보라, 맑스는 쉐르뷜리에의 이 저작에서 일부 발췌를 하고 평가를 가하였다.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원고)》 노트 XⅧ 1102～1121페지를 보라.—434페지

93. 《자본론》, 중문 제2판 제1권, 235～237페지를 보라.—440페지

94. 《일방에 있어서는 자본인것이 타방에 있어서는 수입이다.》는 이 말은 자본가가 생산로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그 부분의 자본이 로동자의 수입을 형성한다는 스미스의 주장을 가리켜 말한다. 스미스의 이 주장에 대한 비판은 본권 401～402페지를 보라. —486페지

95. 맑스는 1845년에 집필한 《브류쎌필기》중에 씨니어의 《정치경제학 기본원리》에서 발췌한 글이 있다. 《맑스엥겔스전집》, 1998년 력사고증판 제4부분 제3권을 보라.—489페지

96. 《자본론》, 중문 제2판 제1권, 689페지를 보라.—489페지

97. J. B. 쌔 《정치경제학의 각이한 문제, 특히 상업의 전반적침체의 원인에 관하여 맬서스씨에게 보내는 편지》, 1820년 빠리판.—491페지

98. 데스뛰뜨 드 뜨라씨의 견해에 대해서는 그의 《의식형태원리》 제4～5부분을 보라. 맑스의 개인 장서중에 그의 이 저서가 보관되여 있으며 맑스가 1845년에 쓴 《브류쎌필기》에 이 책에서 발췌한 부분이 있다. 《맑스엥겔스전집》, 1998년 력사고증판 제4부분 제3권을 보라.—496페지

99. **기계의 신**의 원문은 dei ex machina이다. 직역하면 《기계에서 나온 신》(고대의 연극에서는 신의 역을 하는 배우를 특수한 기계장치로 무대에 등장시켰다.)이라는 말인데 전의하면 《갑자기 나타나 위태로운 국면을 돌려세우는 사람》이라는 뜻이다.—510페지

100. 맑스의 《런던필기》(1850～1853년) 노트Ⅶ에는 투크의 이 저작에서 발췌한 부분이 있다. 《맑스엥겔스전집》, 1986년 력사고증판 제4부분 제8권, 199～211페지를 보라.—534페지

101. 《자본론》, 중문 제2판 제1권, 190페지를 보라.—539페지

102. **《감독관 부래지히》**(Entspektor Brasig)는 독일의 유모아작가 F. 로이테르의 일부 작품들에 나오는 인물이다.—540페지

103. **프랑스학사원**은 1795년에 설립된 프랑스의 최고과학기구로서 여러개의 학원으로 구성되였다. 1806년 이전에는 국립 과학과 예술연구원이라고 불리웠다. 데스뛰뜨 드 뜨라씨는 륜리학 및 정치학 학원 원사였다.—549페지

104. **필라델피아 철학회**는 미국의 가장 오래된 과학협회의 하나이다. 1740년에 가장 일찍이 설립되였다.—549페지

105. **《미래의 음악》**이라는 말은 1850년에 출판된 독일 작곡가 리챠드 와그네르의 저서 《미래의 예술작품》에서 나온것이다. 와그네르의 음악창작관점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말에다 풍자적함의를 부여하였다.—555페지

106. 중문 제2판 제1권, 704페지의 각주(64)를 보라.—570페지

107. A. 쇄플레는 그의 저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1870년 튀빙겐판에서 맑스는 자본가가 로동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지불하는것을 《관용한 행위》라고 단언하였다고 말하였다. 맑스는 《A. 와그네르의 〈정치경제학교과서〉를 평함》이라는 글에서 방주를 달아 이 점에 대하여 언급하였다.—573페지

108. 《자본론》 제2권 제1판(1885년)과 제2판(1893년)에서는 이 단락이 이렇게 되여있다. 《4년간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기간에 Ⅰ부류와 Ⅱ부류의 총자본은 5,400c+1,750v=7,250으로부터 8,784c+2,782v=11,566으로, 즉 100:160의 비률로 증대하였다. 총잉여가치는 처음에 1,750이였는데 지금은 2,782이다. 소비된 잉여가치는 처음에는 Ⅰ부류에 있어서 500, Ⅱ부류에 있어서 535, 합계 1,035였는데 최종년도에는 Ⅰ부류에 있어서 732, Ⅱ부류에 있어서 958, 합계 1,690이였다. 따라서 그것은 100:163의 비률로 증대하였다.》

본 판에서는 이 단락에 대해 정정하였다.—579페지

本书根据人民出版社2004年1月第1版北京第1次印刷版本翻译出版。

이 책은 인민출판사 2004년 1월 제1판 북경 제1차인쇄본에 의하여 번역출판한다.

마 스

자 본 론

제 2 권

★

중국민족어문번역센터 번역

민족출판사 출판발행

(북경시 화평리 북가 14호　우편번호 100013)

http://www.mzcbs.com

중국민족어문번역센터 컴퓨터조판

북경시예휘인쇄유한회사 인쇄　각지 신화서점 판매

조문실 전화: 58130528　발행부 전화: 64211734

2008년 11월 제1판　2008년 11월 북경 제1차 인쇄

판본기록: 850×1168mm 1/32　전지: 24.625

값: 45.00원

图书在版编目(CIP)数据

资本论. 第2卷：朝鲜文 / 中央马列编译局编；中国民族语文翻译中心译. —北京：民族出版社，2007. 5
ISBN 978-7-105-08278-0

Ⅰ.资… Ⅱ.①中…②中… Ⅲ.马克思著作-马克思主义政治经济学-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Ⅳ. A123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7)第064557号



中国民族语文翻译中心译
民族出版社出版发行
（北京市和平里北街14号 邮编 100013）
http://www.mzcbs.com
中国民族语文翻译中心微机照排
北京市艺辉印刷有限公司　各地新华书店经销
朝文室电话：58130528　发行部电话：64211734
2008年11月第1版　2008年11月北京第1次印刷
开本：850×1168毫米 1/32　印张：24.625
ISBN 978-7-105-08278-0/A · 95
民文(朝16)　定价：45.00元